

声 明

本电子书由民族出版社数字出版，相关权利归民族出版社拥有。读者、著作权人和（或）依法可以行使著作权的权利人如有疑问，请与民族出版社联系：

地址：北京安外和平里北街 14 号

邮编：100013

电话：010-64212794

传真：010-64212794

民族出版社



레닌선집

전 세계 무산자는 연합하라!

레닌선집

1
(2)

민족출판사

민주주의혁명에서의 사회민주당의 두가지 전술²²¹

서 문

혁명적시기에는 혁명적당들의 전술적구호를 평가할 새 자료를 비상히 많이 제공하여주는 사건들을 따라가기가 매우 어렵운것이다. 이 소책자는 오데싸사건^①이 있기전에 쓴것이다. 우리는 이미 《무산자》²²²(제9호, 《혁명은 가르친다》)^②에서 그 사건은 봉기-과정의 이론을 만들어낸, 그리고 임시혁명정부에 관한 선전을 거부하여온 사회민주주의자들까지도 사실상 자기의 론적편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넘어가기 시작하도록 하였다는것을 지적하였다. 의심할바없이 혁명은 정치적발전의 평화적시기에는 그야말로 믿을수 없으리만큼 빠르게 또 철저하게 사람들을 가르쳐준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것은 혁명이 령도자들뿐아니라 대중들도 가르쳐준다는 점이다.

혁명이 로씨야의 로동자대중에게 사회민주주의를 가르쳐주리라하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없다. 혁명은 여러 사회계급의 실재적본성을 보여주며 우리 나라 민주주의파의 자산계급적성격을 보여주며 또한 농민—자산계급민주주의적정신에서는 혁

① 장갑함 《보폭전공작》호의 봉기를 두고 말한다.(1907년판에 가한 저자의 주—편집자)

② 《레닌전집》, 한문판, 제9권, 134페이지를 보라.—편집자

명적이지만 《사회화》의 사상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농민적자산계급과 농촌무산계급간의 새로운 계급투쟁을 내포하고 있는 농민—의 실지향성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민주당의 강령과 전술의 정당성을 사실상 확증하여줄것이다. 구인민주주의의 낡은 환상, 례컨대 로씨야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성격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나 농민봉기의 완전한 승리의 의의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사회혁명당》208의 강령초안에 그렇게도 명료하게 나타나고 있는 그 모든 환상은 혁명의 폭풍에 의하여 사정없이 깡그리 가시어질것이다. 혁명은 여러 계급에게 처음으로 참다운 정치적 세제를 줄것이다. 이 계급들은 자기의 사상가의 강령과 전술적구호에서뿐만아니라 또 대중의 공개적인 정치적행동을 통해서도 자기자신을 나타냄으로써 명확한 정치적면모를 가지고 혁명가운데 나타날것이다.

혁명이 우리를 가르쳐주며 인민대중을 가르쳐주리라는것은 조금도 의심할바없다. 그러나 지금 투쟁하고 있는 정당앞에 문제로 나서고 있는것은 우리가 혁명에다 무엇을 가르쳐줄수 있는가 하는것이며, 혁명에 무산계급적락인을 찍으며 혁명을 말로써가 아니라 사실상으로 진정한 결정적승리에까지 이끌어 가고 민주주의적자산계급의 동요성, 불철저성, 배반성을 마비시키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사회민주주의적학설의 정확성 및 유일하게 끝까지 혁명적계급인 무산계급과 우리와의 련결을 리용할수 있는가 하는것이다.

우리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한편으로는 정치적국세에 대한 우리의 정확한 평가와 정확한 전술적구호가 있어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또 이 구호들을 로동자대중들이 실제적 전투력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우리 당의 모든 조직 및 단체들

이 일상적으로 정규적으로 항상 진행하는 온갖 사업, 즉 선전, 선동 및 조직 사업은 모두 우리와 균중과의 연결을 강화확대하는 데 돌려져 있다. 이런 사업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그러나 혁명 시기에는 그 어느때보다도 더 다그쳐 진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시기에는 로동계급은 본능적으로 공개적인 혁명으로 진출하게 되므로 우리는 이 진출행동의 임무를 옹기 제기할 줄 알아야 하며 그런 다음 이 진출의 임무를 뉘 수 있는 대로 널리 알게 하며 리해시킬 줄 알아야 한다. 대중과의 우리의 연결에 대해 류행되고 있는 비판주의는 오늘날 특히 혁명에서의 무산계급의 역할에 대한 자산계급적 견해를 항상 은폐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로동계급을 교육하고 조직하는 면에서 아직도 매우 많은 일을 하여야 한다는 것은 의심할바 없었지만 그러나 모든 문제는 지금 이런 교육사업과 조직사업의 주되는 정치적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하는데 있다. 직업동맹과 합법적단체들에 돌 것인가? 아니면 무장봉기에, 혁명군과 혁명정부를 건립하는데 돌 것인가? 그 어느 것이나 다 로동계급을 교육하고 조직할 수 있다. 물론 어느 것이나 다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당면한 혁명에 있어서는 모든 문제는 로동계급을 교육하고 조직하는 사업의 중심을 어디에 돌 것인가? 즉 전자에 돌 것인가 아니면 후자에 돌 것인가 하는데 귀착된다.

혁명의 결말은 로동계급이 자산계급의 보조자의 역할을, 즉 전제제도를 공격하는 면에서는 강유력하나 정치적으로는 연약무력한 자산계급의 보조자의 역할을 하느냐 아니면 인민혁명의 평도자의 역할을 하느냐 하는데 달린다. 자산계급의 각성한 대표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해방》잡지²²³는 아끼모브주의를, 즉 직업동맹과 합법적단체들을 오늘날 첫자리에 내세우는 사회민주당내의 《경제주의》를 찬양하는 것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스트루웨씨는 신이스크라파

내의 아끼모브주의의 원칙적경향을 환영하는것이다. (《해방》잡지, 제72호)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3차대회^①의 결의들에 나타나있는 가증스러운 혁명적협애성에 대하여 한사코 공격하는것이다.

사회민주당의 정확한 전술적구호들은 오늘날 대중을 령도하는데 있어서 특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혁명시기에 원칙적으로 견정한 전술적구호의 의의를 경시하는것보다 더 위험한것은 없다. 예를 들면 《이스크라》¹³⁸지는 제104호에서 사실상 사회민주당내에 있는 자기의 론적편으로 넘어가고있으나 그와 동시에 실생활에 앞서서 나아가는, 운동의(약간의 좌절을 당하고 파오를 범하면서도) 나아갈 길을 가리켜주는 그런 구호와 전술적결정들의 의의에 대하여 경시하는 태도를 취하고있다. 이와 반대로 사건의 꼬리만을 간신히 따라다니는것이 아니라 견정한 맑스주의원칙에 따라 무산계급을 령도하려는 당에 있어서는 정확한 전술적결정을 작성하는것이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있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3차대회²²⁴의 결정서와 당에서 갈라져나간 파의 대표회의^①의 결정서는 개별적문필가들이 우연히 말한것이 아니라 사회민주주의적무산계급의 책임있는 대표자들에 의하여 정식으로 채택된 전술적관점을 가장 정확하고 가장 세밀하고 가장 완전하게 표현하였다. 우리 당은 그 어느 정당보다도 선진적인 당으로서 전당에 의하여 채택된 정확한 강령을 가지고있다. 《해방단》의 민주주

①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3차대회(1905년 5월에 런던에서 열린)에는 다만 볼셰위크들만이 참가하였다. 《대표회의》(같은 시기에 제네바에서 열린)에는 멘셰위크들만이 참가하였다. 이 소책자에서는 이 멘셰위크들을 가끔 《신이스크라파》라고 부르고있다. 왜냐 하면 그들은 《이스크라》지를 계속 출판하면서도 구《이스크라》와 신《이스크라》 사이에는 실연이 있다고 당시 그들과 한편이었던 프로프즈키의 입을 통하여 선언하였기때문이다. (1907년판에 관한 저자의 주—편접자)

의적자산계급의 기회주의와는 전혀 반대로 또는 혁명시기에야 비로소 자기의 강령《초안》을 제기할것을 갑자기 생각하며 눈앞에서 발생하고있는 혁명이 자산계급혁명이나 하는 문제를 처음으로 연구하기 시작하는 사회혁명당원들의 혁명적공담과는 전혀 반대로 우리 당은 자기의 전술적결정서를 엄격히 대하는것으로써도 다른 정당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될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3차대표대회의 전술적결정서와 대표회의의 전술적결정서들을 면밀히 연구하며 결정서가운데 있는 맑스주의적원칙으로부터 리탈된 편향들을 판명하고 민주혁명에서의 사회민주주의적무산계급의 구체적임무를 해명하는것이 혁명적사회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인정한다. 이 소책자는 바로 이 사업을 위해서 쓴것이다. 맑스주의의 원칙과 혁명의 교훈의 견지로부터 우리의 전술을 검토하는것은 훈계의 말만으로 그치려 하지 않고 전 로씨야 사회민주로동당을 장차 완전히 통일할 기초인 전술의 통일을 진정으로 준비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것이다.

엔 . 레닌

1905년 7월

1

긴급한 정치문제

지금의 혁명시기에는 전인민적헌법제정회의의 소집에 관한 문제가 일정에 오르고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 지금 세가지 정치적경향을 볼수 있다. 짜리정부는 인민대표회의를 소집할 필요성을 인정하고있지만 그 대표회의가 전인민적인 회의로 또는 헌법제정회의로 되는것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용인하려 하지 않는다. 만일 불리긴위원회225의 사업에 관한 신문의 보도를 믿는다면 짜리정부는 선동의 자유가 없이 엄격한 자격제한 또는 엄격한 신분제한의 조건밑에서 선거되는 자문회의의 소집에 대하여서는 동의하는듯하다. 혁명적무산계급은 사회민주당이 그들을 명도하는 한에서는 정권을 헌법제정회의에 완전히 넘길것을 요구하며 그러한 목적에서 일반적선거권과 완전한 선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힘쓰고있을뿐아니라 짜리정부를 즉시 뒤엎고 립시혁명정부로써 그것을 바꾸려고 힘쓰고있다. 마지막으로 소위 《립헌민주당》⁸⁴의 수령들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념원을 표명하고있는 자유주의자산계급은 짜리정부의 전복을 요구하지 않으며 립시정부의 구호를 내세우지 않으며 또 선거가 완전히 자유롭고 공평하게 되며 대표회의가 참으로 전인민적회의로, 참으로 헌법제정회의로 되게 할 실제적보장을 주장하지 않는다. 기실 《해방파》의 단 하나의 중요한 사회적기둥인 자유주의자산계급은 짜리와 혁명적인민간에 될수 있는 대로 평화적타협을 달성시키려고 노력하고있으며 그것도 그들 자산계급에게 가장 큰 권력이 차츰치고 혁명적인민인 무산계

급과 농민에게는 가장 작은 권력이 차폐되는 그러한 타협을 달성시키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당면의 정치정세이다. 이것이 바로 현대로씨야의 세계의 주요한 사회적세력에 상응하는 세계의 주요한 정치적경향이다. 《해방파》가 어떻게 가짜민주주의적인사로써 혁명에 대한 자기의 불철저한 정책을, 즉 보다 솔직하고 보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혁명에 대한 자기의 변질적반역적정책을 은폐하고있는가에 대하여서는 우리는 이미 《무산자》(제3, 4, 5호)^①에서 여러번 말하였다. 이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현 시기의 임무를 어떻게 생각하고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이 점에 있어서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3차대회와 당에서 갈라져나간 파의 《대표회의》에서 최근에 각각 채택된 두개의 결정서가 가장 훌륭한 자료로 된다. 이 두 결정서가운데서 대체어느것이 당면의 정치적정세를 보다 정확하게 고찰하였으며 또 혁명적무산계급의 진출을 보다 정확하게 규정하였는가 하는 문제는 극히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그러므로 선전자, 선동자 및 조직자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자각적으로 리행하려고 하는 모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문제의 본질에 관계되지 않는 고려들을 완전히 버리고 모든 주의를 이 문제의 연구에 기울여야 한다.

당의 진출이란 당의 정치적행동을, 또는 당의 정치적활동의 성격, 방향, 방법을 의미한다. 진출적결정서는 새로운 임무와 관련하여 또는 새로운 정치적정세에 직면하여 전당이 취하여야 할 정치적행동을 정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당대회에서 채택되는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정세는 로씨야에서 시작

① 《메닌전집》, 한문판, 제8권, 454~462페이지와 479~492페이지를 보라.—편집자

된 혁명이 즉 인민의 압도적다수의 짜리정부와의 완전하고 단호하고 공공연한 결렬이 만들어내었다. 새로운 문제는 어떠한 실제적방법으로써 진정으로 전 인민적인, 진정으로 뒤흔친 회의(리론상에서는 그 회의에 관한 문제는 사회민주당이 이미 오래전에 다른 모든 정당들보다 먼저 자기의 당강령에서 정식으로 해결하였다.)를 조직할것인가 하는데 있다. 만일 인민이 정부와 갈라졌고 또 새 제도를 세울 필요성을 대중이 깨닫고있다면 정부의 전복을 목표로 하고있는 당은 전복될 낡은 정부를 어떤 정부로써 바꾸어야 할것인가 하는것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리하여 임시혁명정부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생긴다. 이 문제에 원만한 대답을 주기 위하여서는 각성한 무산계급의 당은 다음과 같은것을 천명하여야 한다. 즉 첫째로 지금 진행되고있는 혁명에서와 무산계급의 모든 투쟁에 있어서의 임시혁명정부의 의의, 둘째로 임시혁명정부에 대한 당자체의 태도, 셋째로 사회민주당이 이 정부에 참가함에 있어서의 명확한 조건, 넷째로 그 정부내에 사회민주당이 참가하지 않은 경우에 아래로부터 그 정부에 압력을 가할 조건을 천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모든 문제를 천명하는 때에라야만이 점에서의 당의 정치적행동이 원칙적이며 명확하고 견정하게 될것이다.

이제 로씨야사회민주노동당 제3차대회의 결정서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그 결정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임시혁명정부에 관한 결정서》

(1) 무산계급의 직접적리익이나 사회주의의 종국적목표를 위하여 투쟁하는 무산계급의 리익이 될수 있는대로 충분한 정치적자유를 요구하며 따라서 전제적통치형태를 민주공화제로써 바꾸기를 요구한다는것,

(2) 로씨야에서의 민주공화제의 실현은 오직 인민봉기가 승리한 결과로써만 가능하며 이 승리한 인민봉기의 기관으로 되는것은 임시혁명정부일것이며 이 임시혁명정부만이 선거전의 선동에 대한 충분한 자유를 보장할수 있으며 무기명투표에 의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제를 기초로 하여 진정으로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할수 있다는것,

(3) 로씨야에서 이러한 민주혁명은 현존사회경제제도밑에서는 자산계급의 지배형태를 약화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강화할것이며 자산계급은 반드시 일정한 시기에 가서는 아무런 주저도 없이 로씨야무산계급으로부터 혁명시기의 전취물을 뺏을수 있는대로 많이 빼앗으려고 시도할것이라는것, —

이상의 점들을 고려하여 로씨야사회민주노동당 제3차대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가) 혁명의 가장 가능한 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 그리고 혁명발전의 일정한 시기에는 필연적으로 임시혁명정부가 출현할것이며 무산계급이 우리의 강령(즉 췌저강령)의 모든 당면한 정치적 및 경제적 요구의 실현을 그 정부에 요구하게 될것이라는데 대한 구체적인 개념을 노동계급속에 널리 선전하는것이 필요하다.

(나) 역량대비와 미리 정확하게 판정할수 없는 기타 요인이 우리에게 유리할 경우에는 우리 당의 전권대표들이 모든 반혁명적시도를 반대하여 무자비하게 투쟁하며 노동계급의 독자적리익을 수호할 목적으로 임시혁명정부에 참가하는것을 허용할수 있다.

(다) 이러한 참가의 필수조건으로 되는것은 자기의 전권대표에 대하여 당이 엄격한 통제를 실시하는것 그리고 완전한 사회주의혁명을 지향하며 그런만큼 모든 자산계급정당들에 대하여 비타협적으로 적대하는 사회민주당의 독립성을 확고히

수호하는것이다.

(근) 사회민주당이 립시혁명정부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것과는 관계없이 혁명의 전취물을 보위하며 공고히 하며 확대하기 위하여 사회민주당의 령도를 받는 무장한 무산계급이 립시혁명정부에 부단히 압력을 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상을 가장 광범한 무산계급대중속에 선전하여야 할것이다.»

2

립시혁명정부에 관한 로씨야사회민주 로동당 제3차대회의 결정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3차대회의 결정서는 그 제목으로부터도 알수 있는바와 같이 전적으로 그리고 오로지 립시혁명정부에 관한 문제에 바쳐지고있다. 이것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립시혁명정부에의 참가가 문제의 한 부분으로 거기에 들어있다는것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 여기서 언급되고있는것은 다만 립시혁명정부문제일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이를테면 《정권탈취》에 관한 문제나 그와 유사한 문제도 여기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 대회가 이 《정권탈취》에 관한 문제나 그와 유사한 문제들을 제쳐놓고 언급하지 않은것이 옳은 일이었는가? 의심할바없이 옳은 일이었다. 왜냐 하면 로씨야의 정치정세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결코 일정에 내세우고있지 않기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전제제도의 전복과 헌법제정회의의 소집문제가 전 인민에 의하여 일정에 오르고있다. 당

대회가 내놓고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은 어느 문필가들이 때에 맞게 언급했거나 또는 때에 맞지 않게 언급한 그러한 문제들인것이 아니라 시국 및 사회 발전의 객관적진전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정치적의의를 가지는 그러한 문제들인것이다.

임시혁명정부는 지금의 혁명에 있어서 또 무산계급의 일반적투쟁에 있어서 어떠한 의의를 가지고있는가? 대회의 결정서는 무산계급의 직접적리익의 전지로 보거나 또는 《사회주의의 종국적목표》의 전지로 보아서 《될수 있는대로 충분한 정치적자유》가 필요하다는것을 첫머리에 지적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명하고있다. 그런데 충분한 정치적자유를 얻기 위하여서는 이미 우리 당의 강령이 인정한바와 같이 짜리전제제도를 민주공화제로 바꾸는것이 필요하다. 대회의 결정서에서 민주공화제라는 구호를 강조하는것은 론리적으로나 원칙적으로나 다 필요한것이다. 왜냐 하면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선진적투사로서의 무산계급은 바로 충분한 자유를 획득하려고 노력하고있기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우리 나라에서 지금 군주주의자들, 즉 소위 럽헌《민주》당 또는 《해방》당이 바로 《민주주의》의 기발을 들고나서서 활동하고있기때문에 현시기에 이 구호를 강조하는것은 더욱 적절하다. 공화제를 건립하기 위해서는 인민대표회의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한것이며 또한 그 회의는 반드시 전인민적인(무기명투표에 의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를 기초로 한) 회의, 헌법제정회의라야 한다. 대회의 결정서는 다음에 바로 이것을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이 결정서는 이것에 그치지 않는다. 《진정으로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새 제도를 창건하기 위하여서는 대표회의를 헌법제정회의라고 부르는것만으로써는 불충분하다. 이 회의는 반드시 헌법을 《제정할》 권력과 실력을 가져야 한다. 대회의 결정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헌법제정회의》라는 이 형식적구호

에만 그치지 않고 이 회의가 자기의 임무를 참으로 집행할수 있도록 보장하는 유일한 조건인 물질적조건들도 첨부하였다. 말로서의 헌법제정회의가 실제상의 헌법제정회의로 될수 있게 하는 온갖 조건들을 이와 같이 지적하는것은 절실히 필요한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미 거듭 지적한바와 같이 럽헌군주당을 대표자로 한 자유주의자산계급은 전인민적헌법제정회의라는 구호를 교의적으로 외곡하여 그것을 빈말로 만들고있기 때문이다.

대회의 결정서에는 오직 립시혁명정부만이, 그것도 승리한 인민봉기의 기관으로서의 립시혁명정부만이 선거권의 선동에 대한 충분한 자유를 보장할수 있으며 또 진정으로 인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회의를 소집할수 있다고 말하고있다. 이 론단이 옳은가? 이 론단을 론박하려고 하는자는 짜리정부가 반동적세력을 원조하지 않을수 있으며 짜리정부가 선거에서 중립을 지킬수 있으며 짜리정부가 인민의 의사의 진정한 표현을 배려할수 있다고 주장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와 같은 주장은 너무나 황당한것이므로 누구도 그것을 공공연히 변호하려 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바로 우리의 해방파는 자유주의의 기발밑에서 그것들을 은밀히 끌어들이고있다. 누구이든 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하여야 할것이며 누구이든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보장하여야 할것이며, 누구이든 완전한 실력과 권력을 이 회의에 부여하여야 할것이다. 그런데 봉기기관인 혁명정부만이 성심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수 있는것이다. 짜리정부는 필연코 이렇게 하는것을 반대할것이다. 짜리와 타협하였고 인민의 봉기에 전혀 의거하지 않는 자유주의적정부는 결코 그것을 성심으로 하려 하지 않을것이며 또 가령 아무리 성심으로 하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현할수는 없을것이다. 그러므로 대회의 결정서에

서 내놓은 구호는 유일하게 정확하며 또 아주 철저한 민주주의적구호인것이다.

그런데 립시혁명정부의 의의를 평가할 때 만일 민주주의 혁명의 계급적성격을 념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 평가는 불완전하며 부정확할것이다. 그러므로 결정서는 혁명이 자산계급의 지배를 강화할것이라고 부언하고있다. 이것은 지금의 사회경제제도 즉 자본주의적사회경제제도밑에서는 불가피한것이다. 그러나 다소라도 정치적자유를 가지고있는 무산계급에 대한 자산계급의 지배가 강화되면 그 결과 두개 계급 사이에는 결사적인 정권쟁탈전이 필연적으로 벌어질것이며 자산계급은 틀림없이 결사적으로 《무산계급으로부터 혁명시기의 전취물을 빼앗으려》 시도할것이다. 그러므로 무산계급은 모든 사람의 앞에 서서 모든 사람을 이끌고 민주제도를 위해 싸울 때 잠시라도 자산계급민주운동내부에 숨어있는 새로운 모순과 새로운 투쟁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립시혁명정부의 의의는 자유와 공화제를 위한 투쟁에 대한 그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나 헌법제정회의에 대한 그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나 새로운 계급투쟁을 위하여 기반을 닦는 민주주의혁명에 대한 그 정부의 관계에 있어서나 할것없이 우리가 연구한 결의의 부분에서 충분히 평가되고있다.

다음에 문제로 되는것은 립시혁명정부에 대한 무산계급의 태도는 대체로 어떠하여야 할것인가 하는것이다. 대회의 결의는 무엇보다도먼저 립시혁명정부가 필요하다는 확신을 로동계급가운데 널리 선전하라고 전당에 직접 권고하는것으로써 이 문제에 대답하고있다. 로동계급은 그것이 필요하다는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적》자산계급이 짜리정부를 전복하는 문제를 덮어감추고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첫자리에 내세우고 립시혁명정부가 필요하다는것을 강력히 주장하여야

한다. 이밖에 우리는 또한 지금의 역사적시기의 객관적조건과 무산계급민주주의자의 임무에 부합되는 이 정부의 행동강령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강령은 우리 당의 전체 최저강령, 즉 당면한 정치적 및 경제적 개혁의 강령이다. 이러한 개혁은 한편으로는 현존하는 사회-경제적관계의 기초우에서 완전히 실현될수 있으며 다른편으로는 또 계속 전진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이다.

이와 같이 결정서는 임시혁명정부의 성격과 목표를 충분히 밝히고있다. 이 정부는 그자체의 기원과 기본적성격에 있어서는 인민봉기의 기관으로 되어야 할것이며 그자체의 형식상의 사명에 있어서는 전인민적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하는 도구로 되어야 할것이며 그 활동내용에 있어서는 전제제도를 반대하여 결기한 인민의 이익을 보장할수 있는 유일한 강령인 무산계급민주주의의 최저강령을 실현하여야 할것이다.

임시정부는 그것이 임시적인 기관이기때문에 아직 전인민의 승인을 받지 못한 건설적인 강령을 실시할수 없다고 반박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런 반박은 반동파나 《전제주의자》들의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아무런 건설적강령도 실시하지 않는다는것은 썩어빠진 전제제도의 농노제적관계가 계속 존재하는것을 용인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그러한 관계를 용인하는것은 다만 혁명사업을 배반한자들의 정부만이 할수 있을뿐 인민봉기기관인 정부는 할수 없는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헌법제정회의가 집회의 자유를 승인하지 않을수도 있다는 구실밑에서 헌법제정회의가 집회의 자유를 승인하기전까지는 그 자유를 실지로 실현하는것을 단념하자고 제의한다면 그것은 웃음거리일것이다! 임시혁명정부가 최저강령을 즉시 실현하는데 대하여 반대하는것은 그와 똑같은 웃음거리인것이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여들것은 결정서가 최저강령의 실현을

립시혁명정부의 임무로 제기함으로써 최고강령의 즉시적실현이라든가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정권탈취라든가 하는따위의 황당한 절반무정부주의적사상을 배제하고있다는 그 점이다. 로씨야경제발전의 정도(객관적조건) 및 광범한 무산계급대중의 각성정도(객관적조건과 불가분적으로 련결되어있는 주관적조건)는 모두 노동계급이 즉시에 완전히 해방되는것을 불가능하게 한다. 다만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지금 일어나고있는 민주주의혁명의 자산계급적성격을 무시할수 있는것이다. 다만 가장 천진란만한 탁관주의자들만이 사회주의라는 목표와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을 노동자대중이 아직도 잘 알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망각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노동자들의 해방은 오직 노동자들자신의 일이라는것을 확신한다. 대중의 자각성과 조직성이 없이는, 전 자산계급과의 공공연한 계급투쟁으로써 대중을 훈련하고 교육함이 없이는 사회주의혁명에 대하여 운운할 여지도 없는것이다. 무정부주의자들은 우리가 사회주의혁명을 지연시키고있는듯이 말하고있지만 우리는 이들의 이 반대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대답할것이다. 즉 우리는 사회주의혁명을 지연시키고있는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가능한 방법에 의하여 유일하게 옳은 길을 따라 즉 민주공화제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혁명에로의 첫걸음을 내디디고있는것이다. 누구든지 정치적민주제도를 거치지 않고 다른 길을 따라 사회주의로 나아가려 한다면 그는 불가피적으로 경제적의미에서나 정치적의미에서나 모두 황당하고 반동적인 결론에 이르게 될것이다. 만일 해당한 시기에 어떤 노동자들이 우리에게 무슨 까닭으로 우리자신이 최고강령을 실현해서는 안되느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민주주의적정서를 가진 인민대중이 아직 사회주의와는 인연이 멀며 계급적모순이 아직 발전되지 못하였으며 무산자들이 아직 조직되지 못하였다는것

을 지적하는것으로써 그들에게 대답할것이다. 로씨야전역에서 수십만의 노동자들을 조직하여보라! 수백만의 대중속에서 우리의 강령에 대한 공명을 일으켜보라! 요란스러운, 그러나 공허한 무정부주의적인사에 그치지 말고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여보라! 그러면 이러한 조직임무를 실현하고 이러한 사회주의적교육을 진행하려면 각종 민주주의개혁을 될수 있는대로 완전히 실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을 대번에 알게 될것이다.

더 나아가 보기로 하자. 립시혁명정부의 의의와 이 정부에 대한 무산계급의 태도가 해명된 이상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긴다. 즉 우리가 이 정부에 참가(즉 우로부터의 행동)하는것이 허용될것인가, 또 어떠한 조건밑에서 허용될것인가? 우리는 또 아래로부터 어떻게 행동하여야 할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결정서는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 명확한 대답을 주고 있다. 결정서는 사회민주당이 립시혁명정부에 참가(민주주의혁명시기에, 공화제를 위한 투쟁시기에)하는것은 원칙상 허용될수 있다고 단호히 선언하고있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이 참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무정부주의자들과 철저히 계선을 나누었으며 또 이 정부에 우리가 필연적으로 참가하게 될 그러한 사태가 닥쳐오리라는것으로써 우리를 놀라게 한 사회민주당내의 추미주의자들(마르띠노브와 신이스크라파와 같은)파도 철저히 계선을 나누었다. 로씨야사회민주당 제3차대회는 이 선언으로써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립시혁명정부에 참가하는것은 변상적인 밀레랑주의¹⁴³이며 그것은 자산계급제도를 신성화하는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될수 없다는 등등의 신《이스크라》지의 의견들을 단호히 부정하여버렸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허용될수 있다는것은 아직 실제에 있어서 반드시 적절하다는것은 물론 아니다. 당대회에서 승인된 이 새로운 투쟁방식 즉 《우로부터의》 투쟁방식은 어떠한

조건하에서 적절한가? 력량대비 등등과 같은 구체적조건들에 대하여 지금 말할수 없는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결정서는 자연히 그 조건들을 미리 규정하지 않았다. 총명한 사람이라면 누구도 지금에 있어서 이 문제에 대하여 미리 단언하려고 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참가하는 성격과 목적은 확정할수 있으며 또 확정하여야 한다. 결정서는 바로 그렇게 하였으며 우리가 거기에 참가하는 두가지 목적—(1) 반혁명적 시도와 무자비하게 투쟁할것, (2) 로동계급의 독자적리익을 수호할것—을 지적하고있다. 자유주의자산자들이 혁명적인민을 놀래우고 또 그들로 하여금 전제제도앞에 양보하게 하려고 애쓰면서 반동파의 심리를 열심히 운운하기 시작하는 때에 (《태방》잡지 제71호에 실린 스트루웨씨의 가장 교훈적인 《공개서한》을 보라.) 무산계급정당이 반혁명파의 참다운 투쟁의 임무에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것은 특히 시기에 맞는것이다. 정치적자유와 계급투쟁이란 큰 문제는 결국에 가서 오직 힘으로써만 해결되는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힘을 준비하고 조직할데 대하여, 그 힘을 적극적으로—방어에뿐만 아니라 공격에도—사용할데 대하여 관심을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빠리공분당시로부터 거의 간단없이 구라파를 지배하고있던 긴정치적반동기는 우리를 오직 《아래로부터》의 행동만을 고려하는데 너무도 습관되게 하였고 또 우리를 오직 방어적투쟁에만 류의하는데 너무나 습관되게 하였다. 지금 우리는 의심할 여지없이 새시대에 들어섰다. 정치적동란과 혁명의 시기가 시작되었다. 로씨야가 지금 처하고있는 이러한 시기에 자기를 낡은 방식에만 국한시켜서는 안된다. 우로부터 행동한다는 사상을 선전하며 가장 전결한 공격적행동을 준비하며 그러한

행동의 조건들과 형식들을 연구하여야 한다. 대회의 결정서는 그러한 조건들중에서 두가지 조건을 첫자리에 내세우고있는데 그 하나는 사회민주당이 임시혁명정부에 참가하는 형식적방면에 관한것(당이 자기의 전권대표에 대하여 엄격히 통제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참가의 성격자체에 관한것(완전한 사회주의혁명이라는 목표를 잠시라도 잊지 않을것)이다.

결정서는 지금까지 거의 보지 못한 새 투쟁방식, 즉 《우로부터》 행동할데 관한 당의 정책을 각 방면으로 이와 같이 밝힌 다음 또 우리가 우로부터 행동하지 못할 그러한 경우도 예상하고있다. 임시혁명정부에 대하여 아래로부터 영향을 주는것은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든지 우리가 해야 할 임무이다. 이와 같이 아래로부터 압력을 가하기 위하여서는 무산계급은 반드시 무장하여야 하며—왜냐 하면 혁명적시기에는 사태가 특히 급속하게 직접적인 내전에까지 발전하기때문이다—반드시 사회민주당의 령도를 받아야 한다. 무산계급이 무력으로써 압력을 가하는 목적은 《혁명의 전취물》, 즉 무산계급리익의 견지로 보아 우리의 최저강령전부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그러한 전취물을 《보위하며 공고히 하며 확대하려는》데 있다.

우리는 이상으로써 임시혁명정부에 관한 제3차대회의 결정서의 간단한 분석을 끝마친다. 독자들이 보는바와 같이 이 결정서는 새로운 문제의 의의도 밝혔고 이 문제에 대한 무산계급정당의 태도 및 임시혁명정부의 내부에서와 외부에서의 당의 정책도 하나하나 밝혔다.

이제는 《대표회의》의 이에 해당하는 결정서를 보기로 하자.

3

《짜리제도에 대한 혁명의
결정적승리》란 무엇인가?

《대표회의》의 결정서는 전적으로 《정권탈취와 임시정부에
의 참가에 관한》 문제를 취급하고있다^①. 우리가 이미 지적한바
와 같이 문제를 이렇게 제기하는 그자체에 벌써 혼란이 내포
되어있다. 한편으로는 문제를 협소하게 제기하고있는바 다만
임시혁명정부에 우리가 참가하는것만을 문제로 삼고있을뿐이
고 일반적으로 임시혁명정부에 대한 당의 임무는 문제로 삼
고있지 않다. 다른 편으로는 성격이 전혀 다른 두가지 문제,
즉 **민주주의혁명의 한 단계에 우리가 참가하는 문제와 사회주
의혁명문제를 혼동하고있다.** 사실상 사회민주당에 의한 《정권
탈취》라는 말을 그의 직접적인 일반적의미로 사용한다면 바로
다름아닌 사회주의혁명이지 그외의 다른 어떤것으로 될수는
없는것이다. 만일 이 말을 사회주의혁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혁명을 위하여 정권을 탈취한다는 의미로 리해한다면
임시혁명정부에 참가하는데 대해서만이 아니라 《정권탈취》**일
반에 대해서까지 말하는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우리의 《대
표회의파》들자신까지도 대체 무엇에 대해 말하여야 할것인가를
—민주주의혁명에 대하여 말하여야 할것인가, 아니면 사회주
의혁명에 대하여 말하여야 할것인가를 잘 알지 못하였다는것

① 독자들은 이 책의 523, 527, 533, 568, 571페이지의 인용문을 면결시킴으
로써 이 결정서의 원문전부를 찾아낼수 있을것이다.(1907년판에 가한
저자의 주, 이 책의 693, 700~702, 706~708, 749, 754페이지를 보라.
—편집자)

이 명백하다. 이 문제에 관한 저서에 주의를 돌려온 사람은 마르피노브동지가 그의 유명한 소책자 《두가지 독재》에서 이 혼란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것을 알것이다. 신이스크라파는 이 전형적인 추미주의의 저작에서 내놓은(일찍 1월9일사건226 이전에 내놓은) 문제의 제기에 대하여 회상하기를 즐치지 않으나 그 저작이 대표회의에 사상적영향을 주었다는것은 의심할바없는것이다.

그러나 그 결정서의 제목은 언급하지 않기로 하자. 그 결정서의 내용은 비할바없이 심각하고 엄중한 오유를 보여준다. 그 결정서의 첫부분은 다음과 같다.

《짜리제도에 대한 혁명의 결정적승리는 승리한 인민봉기에서 생긴 립시정부의 성립으로 표현되든가 혹은 인민의 직접적인 혁명적압력밑에서 전인민적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할것을 결정하는 어떤 대표기관의 혁명적발기로써 표현되든가 할것이다.》

요컨대 그들은 짜리제도에 대한 혁명의 결정적승리는 승리한 봉기일수도...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대표기관의 결정일수도 있다고 우리에게 말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어떻게 리해해야 하는가? 결정적승리가 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결정》으로써 표현될수 있을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승리》를 《승리한 인민봉기에서 생긴》 립시정부의 성립과 동일시하고있는것이다! 대표회의는, 승리한 인민봉기와 립시정부의 성립은 혁명의 실제상의 승리를 의미하는것이고 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할데 대한 《결정》은 혁명의 말로만의 승리를 의미한다는것은 깨닫지 못하였다.

멘체위크-신이스크라파의 대표회의는 자유파들인 해방파가 항상 범하는 바로 그 오유를 범하였다. 해방파는 실력과 정권이 의연히 짜리의 손에 쥐여져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수줍

은듯이 눈을 감고,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서는 헌법을 제정할 실력이 있어야 한다는 도리를 망각하고서 《헌법제정》회의에 관하여 말공부를 한다. 대표회의는 또 어떠한 대표자들의 《결정》이든지 그 《결정》으로부터 그의 실현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다는것을 망각하였다. 대표회의는 또 정권이 짜리의 손에 쥐여져있는 동안에는 어떠한 대표자들의 어떠한 결정도 1848년의 독일혁명의 역사에서 유명한 프랑크푸르트의회27의 《결정》과 같은 그러한 공허하고 가없는 공담으로 되고만다는것을 망각하였다. 혁명적무산계급의 대표자인 맑스는 일찌기 자기의 《신라인신문》48에서 프랑크푸르트의 자유주의적《해방파》를 아주 날카롭게 조소하였는데 그것은 그들이 아름다운 말들을 많이 하였고 각양각색의 민주주의적《결정》을 채택하였고 각양각색의 자유를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정권을 국왕의 손에 남겨두었고 국왕의 손에 쥐여있는 무력을 반대하기 위한 무장투쟁을 조직하지 않았기때문이었다. 프랑크푸르트의 해방파가 공담을 일삼고있는 동안에 국왕은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고 자기의 무력을 강화하였다. 따라서 반혁명은 실력에 의거하여 민주주의파들을 그들의 모든 화려한 《결정》과 함께 산산이 짓부셔버렸다.

대표회의는 바로 승리의 결정적조건이 구비되어있지 않는데 그것을 결정적승리와 동일시하였다. 우리 당의 공화주의적강령을 승인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어찌하여 이런 오류를 범하게 되었는가? 이 이상한 현상을 알기 위하여서는 당에서 갈라져나간 파에 대한 제3차대회의 결정서①를 보아야 한다. 그

① 이 결정서의 전문을 아래에 인용하기로 하자. 《대회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내에, 당이 경제주의와 투쟁하던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자이한 정도와 각이한 방면에서 경제주의와 혈연적관계를 가진 일부 색채가 아직 보존되고있다는것을 지적한다. 이 색채의 특징은 무산계급투쟁

결정서에는 《경제주의와 혈연적관계를 가진》 여러가지 류파가 우리 당내에 남아있다는것이 지적되어있다. 우리의 대표회의 파들(그들이 마르띠노브의 사상적지도밑에 있다는것은 참으로 우연한 일이 아니다.)은 경제파들의 정치투쟁 또는 8시간로동제에 대한 논의와 똑같은 정신으로써 혁명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경제파들은 즉시로 《단계론》을, 즉 (1) 권리를 위한 투쟁, (2) 정치적선동, (3) 정치적투쟁—또는 (1) 10시간로동제, (2) 9시간로동제, (3) 8시간로동제를 내세웠다. 이 《과정-전술》로부터 어떠한 결과가 생겼는가 하는것은 모두가 잘 아는바이다. 지금은 또 혁명에 대해서도 미리 다음과 같은 몇 개 단계로 잘 나누라고 우리에게 제의한다. 즉 (1) 짜리가 대표기관을 소집하는것, (2) 그 대표기관이 《인민》의 압력밑에서 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는것, (3) ... 셋째 단계에 관하여서는 멘셰위크들은 아직 의견이 일치하지 않다. 그들은 인민의 혁명적압력이 짜리제도의 반혁명적압력에 봉착한

중에서의 의식적요소들의 의의를 저하시켜 그 요소들을 자연발생적요소들에 종속시키는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 색채들의 대표자들은 조직문제에서는 계획적으로 규정되는, 당사업에 맞지 않는 과정-조직의 원칙을 이론적으로 내세우고 실천에서는 많은 경우에 당의 규율과 어긋나는 방식을 실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로씨야현실생활의 객관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의 원칙을 널리 적용할것을 당내의 의식수준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겐 신뢰함으로써 현시기에 유일하게 가능한 당적결정의 기초를 파괴하려고 기도한다. 전술문제에서 그들은 자유주의자관계급당에 대하여 완전히 독자적인 당적인 전술을 반대하며 우리 당이 인민봉기를 조직할 사명을 담당할수 있으며 그것을 담당하는것이 적당하다는것을 반대하며 당이 어떠한 조건밑에서도 민주적임시혁명정부에 참가하는것을 반대하면서 당의 사업범위를 좁히려고 애쓴다.

대회는 혁명적사회민주당의 원칙으로부터의 그와 같은 부분적리탈에 대하여 곳곳에서 험한 사상투쟁을 벌릴것을 전체 당원들에게 제의한다. 그러나 대회는 그와 동시에 어느 정도 그러한 전례에 따르는자들이 하나의 필수적조건—그들이 당대회와 당규약을 승인하고 당의 규율에 전적으로 복종한다는 조건—밑에서는 당조직에 가입할수 있다고 인정한다. (1907년판에 관한 저자의 주 —편집자)

다는것, 또 그렇기때문에 《결정》이 실현되지 못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민봉기의 승리나 실패가 사태를 결정한다는것을 망각하였다. 대표회의의 결정서도 경제파들의 다음과 같은 의론, 즉 로동자들의 결정적승리는 8시간로동제를 혁명적수단으로 실현하는데서 표현되든지 아니면 10시간로동제가 허여되고, 9시간로동제로 넘어간다는것을 《결정》하는데서 표현될수도 있다는 논의와 똑같은것이다. … 실로 조금도 다름바가 없다.

결정서의 집필자들은 봉기의 승리를 짜리가 소집한 대표기관의 《결정》과 동일시하려고 한것이 아니라 다만 두가지 경우에 대하여 당의 전술을 미리 규정하려고 하였을 따름이라고 우리를 반박할수도 있을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이렇게 대답할것이다. (1) 결정서의 원문은 솔직하고 명확하게 대표기관의 결정을 《짜리제도에 대한 혁명의 결정적승리》라고 하고있다. 그것은 문구작성에 부주의한 결과일수도 있고 혹은 회의록에 근거하여 고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고쳐지지 않은 한 그것은 한가지 의미밖에 없으며 그 의미는 완전히 **해방교조적인것**이다. (2) 결정서의 집필자들이 빠져들어간 《해방파》적사유과정은 신이스크라파의 다른 저작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나있다. 예를 들면 찌플리스위원회의 기관지인 《사회민주주의자》(그루지야어로 출판되는 신문으로서 《이스크라》 제100호에서 크게 찬양을 받은적이 있다.)에 게재된 《국민대표회의와 우리의 전술》²²⁸이라는 논문은 《국민대표회의를 우리의 활동중심으로 택하는〔우리가 첨부하여 말하거니와, 국민대표회의의 소집에 대하여 우리는 아직 아무것도 확실한것을 알지 못한다!〕 전술》이 무장봉기를 일으키며 립시혁명정부를 성립하는 《전술》보다 《우리에게 더 유리하다》고까지 말하였다. 그 논문에 대하여 우리는 후에 다시 언급하려고 한다. (3) 혁명이 승리하는 경우나 혁명이 실패하는 경우나 봉기가 성공되는 경우

나 봉기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당의 전술을 미리 토의하는것을 반대할 아무런 리유도 없다. 짜리정부가 자유주의적자산계급과 타협할 목적으로 대표회의를 소집하는데 성공할수도 있으므로 제3차대회의 결정서는 그것을 예견하고 《위선적정책》, 《가짜민주주의》, 《소위 국민대표회의와 같은 만화적인 인민대표기관》에 대하여 직접 말하고있다①.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립시혁명정부에 관한 결정서에 서술될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왜냐 하면 그것은 립시혁명정부와 관계가 없기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봉기와 립시혁명정부성립에 대한 문제를 제쳐놓게 되고 문제를 변경시키는 일 등등이 생길것이다. 지금 문제로 되는것은 온갖 경우가 다 가능하다는, 즉 승리도 실패도 끝은길도 굽은길도 다 있을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혁명의 길에 대한 로동자들의 인식에 혼란을 가져오게 하는것은 사회민주당의자들에게 허용될수 없는 일이라는것, 승리의 **기본적조건**이 구비되지 못한것을 해방파처럼 결정적승리라고 말하는것은 허용될수 없다는 그것이다.

① 혁명전야의 정부의 전술에 대한 태도에 관한 그 결정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당면한 혁명시기에 정부는 자기를 보존하려는 목적에서 주로 무산계급의 각성한 분자들을 반대하기 위한 상투적탄압을 강화하는 동시에 (1) 양보와 개량을 약속하는것으로써 로동계급을 정치적으로 타락시키고 따라서 그들을 혁명투쟁으로부터 이탈시키려 시도하고있으며, (2) 역시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에 자기들의 대표를 파견하라고 로동자들에게 권유하는것으로부터 소위 국민대표회의와 같은 만화적인 인민대표기관을 세우는데 이르기까지 가짜민주주의적으로써 자기의 위선적양보정책을 덮어감추고있으며, (3) 소위 흑태단을 조직하며 또한 인민가운데의 모든 반동분자, 각성하지 못한 분자나 혹은 인종적, 종교적 증오심으로 하여 눈이 어두워진 분자들을 혁명을 반대하도록 부추기고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로씨야사회민주당 제3차대회는 아래와 같은것을 모든 당조직에 제의하기로 결정한다.

1. 정부가 하는 양보의 반동적목적을 폭로하는 동시에 선전선동사

8시간로동제조차 우리는 일거에 얻을수 있는것이 아니라 먼 굽은길을 걸은후에야 겨우 얻을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지체, 연기, 타협, 변절, 반동을 막을 힘이 없는 무산계급의 그러한 무기력과 나약성을 로동자들의 승리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것인가? 로씨야혁명이 언젠가 《전진》지①가 말한바와 같이 《혁명적류산》으로써 끝날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과연 결정적투쟁의 전야에 그 류산을 《짜리제도에 대한 결정적승리》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을 변호하는것으로 될수 있겠는가? 어쩌면 우리는 공화제를 쟁취하지 못할뿐아니라 헌법까지 환영적인 《취보브식》헌법 229으로 되코마는 최악의 경우에 부딪칠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공화제에 관한 우리의 구호를 말살하는것을 과연 용서할수 있겠는가?

물론 신이스크라파는 아직 이 구호를 말살하는데까지는 이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 혁명정신이 어느 정도에까지

업을 통하여 한편으로는 그 양보가 부득이한것이라는것, 그리고 다른편으로는 전제정부가 무산계급을 만족시킬만한 개량을 실시할수는 절대 없다는것을 강조할것,

2. 선거경쟁선동을 리용하여 정부가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전까의의를 로동자들에게 해설하며 무산계급에게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를 기초로 하여 혁명적방법으로 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설명할것,

3. 8시간로동제와 로동계급의 기타 당면한 요구를 혁명적방법으로써 즉시 실현하기 위하여 무산계급을 조직할것,

4. 흑백단 및 정부가 명도하는 모든 반동분자들의 진출에 대처하여 무장반격을 조직할것.) (1907년판에 가한 저자의 주—편집자)

① 제비박에서 발간된 《전진》지는 1905년 1월부터 우리 당의 불채위크파의 기관지로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1월부터 5월까지 도합 18호가 발행되었다. 5월부터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3차대회(그 대회는 같은 해 5월에 런던에서 열렸다. 멘세위크들은 런던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제비박에서 자기들의 《대표회의》를 열었다.)의 결정에 의하여 《전진》대신에 《무산자》가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중앙기관지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1907년판에 가한 저자의 주—편집자)

날아났으며 생기없는 궤변이 어느 정도에까지 그들을 현시기의 전투적임무와 격리시켰는가는 그들이 자기의 결정서에서 공화제에 대하여 말하는것을 잊어버렸다는 바로 그 점에서 특히 뚜렷하게 볼수 있다! 그것은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사실이다. 사회민주당의 모든 구호는 대표회의의 여러가지 결정서에서 확인되고 반복되고 해설되고 상세히 설명되었으며 심지어는 로동자들이 기업별로 리사와 대표들을 선거할것까지도 망각하지 않았건만 립시혁명정부에 관한 결정서에서 공화제에 대하여 언급할 기회만은 얻지 못하였다. 인민봉기의 《승리》와 립시정부의 성립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러한 《조치》 및 행동과 공화제를 전취하는것과의 관계를 밝히지 않은것은 무산계급의 투쟁을 평도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무산계급운동의 꿈무니를 어정어정 따라가기 위하여 결정서를 썼다는것을 의미한다.

요컨대 결정서의 첫부분은 (1) 공화제를 위하여 투쟁하며 참으로 전 인민적이고 참으로 헌법을 제정하는 회의를 확보하는 전지에서 본 립시혁명정부의 의의를 전혀 밝히지 않았고, (2) 진정한 승리의 기본조건이 아직 결핍한 바로 그러한 사태를 짜리제도에 대한 혁명의 결정적승리와 동일시함으로써 무산계급의 민주주의적의식에 직접 혼란을 가져왔다.

4

군주제도의 철폐와 공화제

결정서의 다음부분으로 넘어가기로 하자.

«...어떤 경우에서나를 물론하고 이러한 승리는 혁명시대의 새 단계에 들어서는 발단으로 될것이다.

사회발전의 객관적조건에 의하여 이 새 단계에 자연발생적으로 제기되는 임무는 정치적으로 해방된 자산계급사회의 각종 요소들이 자기들의 사회적이익을 실현하며 정권을 직접 장악하기 위하여 서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신분제적군주제도전체를 종국적으로 철폐하는것이다.

그러므로 그 력사적성격으로 보아 자산계급적인 이 혁명의 임무의 실현을 담당할 임시정부는 반드시 해방되는 민족내의 대립되는 각 계급들간의 상호투쟁을 조절함으로써 혁명적발전을 추진시킬뿐만아니라 또 자본주의제도의 기초를 위협하는 혁명적발전의 요소들을 반대하여서도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결정서의 독립적 한절로 되어있는 이 부분을 고찰하여보기로 하자. 우리가 발췌한 이 논의의 기본내용은 대회결정서의 제3항에 서술된 내용과 일치하다. 그러나 그 두 결정서의 이 부분을 서로 대조하여보면 그 둘 사이에 있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차이가 대번에 눈에 띈다. 대회의 결정서는 혁명의 사회경제적기초를 간략하게 설명한후 모든 주의력을 일정한 전취물을 쟁탈하기 위한 각 계급들의 매우 확정적인 투쟁에 돌리고있으며 무산계급의 전투적임무를 첫자리에 내세우고있다. 대표회의의 결정서는 혁명의 사회경제적기초를 장황하게, 뭉뚱하게, 혼란하게 묘사하면서 일정한 전취물을 위한 투쟁에 관하여서는 아주 애매하게 말하고있으며 무산계급의 전투적임무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있다. 대표회의의 결정서는 사회내의 여러 요소들이 서로 투쟁하는 과정에서 낡은 제도를 철폐한다고 말하고있다. 그러나 대회의 결정서는 우리 무산계급의 당이 그 철폐를 수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 그의 진정한 철폐는 오직 민주공화제를 전립하는것이라는것, 우리는 그 공화제를 전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것 그리고 그 공화제와 충분한 자유를 위하여 전제제도와 투쟁할뿐만아니라 자산계급이

우리에게서 우리의 전취물을 빼앗으려고 기도할(그들은 꼭 기도할것이다.) 때에는 또한 그들과도 투쟁할것이라는것을 말하고있다. 대회의 결정서는 일정한 계급에게 명확히 규정된 당면목표를 위하여 싸우라고 호소하고있다. 대표회의의 결정서는 여러 세력들의 상호간의 투쟁에 대하여 논의하고있다. 전자는 적극적투쟁의 심리를 표현하고 후자는 소극적관망의 심리를 표현하고있다. 전자는 생기있는 활동에로의 호소로 일관되어있고 후자는 생명없는 궤변으로 가득차있다. 지금 일어나고있는 혁명은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다름발자국을 내디디기 위한 첫걸음일따름이라는것을 두 결정서는 다 인정하고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전자는 그 첫걸음을 되도록 재우치고 되도록 빨리 끝마쳐야 하며 공화제를 전취하고 반혁명을 무자비하게 진압하여 둘째 걸음을 걷기 위한 지반을 닦아야 한다는 결론을 짓고있다. 그러나 후자는 그야말로 첫걸음에 대한 장황한 서술에 파묻혀있으며 이 첫걸음에(속되게 말하는것을 용서하라.) 미친듯이 키스를 보내고있다. 대회의 결정서는 맑스주의의 낡은, 그러나 영원히 새로운 사상(민주주의혁명을 자산계급성격을 띤 혁명으로 인정하는)을 접수하여 그것을 민주주의혁명을 위하여, 또 사회주의혁명을 위하여 분투하는 선진계급의 선진적임무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위한 서론 또는 전제로 삼고있다. 대표회의의 결정서는 서론 하나에만 매여달려서 그것을 되짚으며 그것에 대하여 잔재간을 부리고있다.

이 차이는 오래전부터 로씨야맑스주의자들을 두 파로, 즉 이전의 합법적맑스주의157의 시기에는 궤변파와 전투파로 분렬시켰고 대중적운동이 일어나고있는 시기에는 경제파와 정치파로 분렬시킨 바로 그 차이이다. 경제파들은 일반적으로는 계급투쟁, 특수적으로는 정치투쟁의 깊은 경제적근원에 관한 맑스주의의 정확한 전제에 근거하여 정치투쟁을 외면하고 돌아서

서 그 발전을 저해하고 그 규모를 좁히고 그 임무를 축소하여야 한다는 기묘한 결론을 내렸다. 정치파들은 그와 반대로 같은 전제에 근거하여 다른 결론, 즉 지금 우리의 투쟁의 근원이 깊으면 깊을수록 우리는 그 투쟁을 보다 광범하게, 보다 대담하게, 보다 단호히, 보다 주동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금도 우리앞에서는 역시 같은 그 투쟁이 다른 정제하에서 변형된 다른 형태로 벌어지고있다. 민주주의혁명은 아직 결코 사회주의혁명이 아니라는것, 민주주의혁명은 결코 다만 무산자들만이 《관심》하는것이 아니라는것, 민주주의혁명의 가장 깊은 근원은 자산계급사회전체의 불가피한 수요와 요구에 있다는것—우리는 이런 전제에 근거하여, 선진계급은 더욱 대담하게 자기의 민주주의적임무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임무를 더욱 명백하게 끝까지 다 말하며 공화제의 구호를 직접 제출하며 임시혁명정부가 필요하다는 사상과 반혁명을 무자비하게 진압하는것이 필요하다는 사상을 선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런데 우리의 론적인 신이스크라파는 같은 이 전제에 근거하여 민주주의적결론을 끝까지 다 말하지 말아야 하며 실천적구호에 공화제라는 구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임시혁명정부의 성립이 필요하다는 사상을 선전하지 않아도 되며 헌법제정회의의 소집에 관한 결정도 결정적승리라고 부를수 있으며 반혁명과 투쟁할 임무를 우리의 행동의 임무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그것을 《서로 투쟁하는 과정》이라는 막연한(그리고 우리가 곧 보게 되는바와 같이 옳지 못하게 규정된) 론의속에 파묻어버려도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것은 정치가의 말이 아니라 문서보판원의 말이다!

신이스크라파의 결정서의 매개 규정을 더 주의하여보면 볼수록 우에서 지적인 그 결정서의 기본특점을 한층더 명백히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들은 《정치적으로 해방된 자산계급사회의 각종 요소들이...서로 투쟁하는 과정》에 대하여 말한다. 우리는 결정서에 든슬득여있는 주제(임시혁명정부)를 기억하고있기때문에 의혹을 가지고 이렇게 묻는다. 즉 서로 투쟁하는 과정에 대하여 말하면서 어찌 자산계급사회를 정치적으로 **예속시키는** 요소들에 대하여서는 침묵을 지킬수 있겠는가? 대표회의 파들은 그들이 일단 혁명의 승리를 가정한 이상 그러한 요소들이 벌써 없어진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그와 같은 생각은 일반적으로는 황당무계한것이며 특수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가장 유치하고 가장 근지안적인것이다. 혁명이 반혁명을 타승한후 반혁명은 없어져버리는것이 아니라 도리어 불가피하게 새로운, 더한층 결사적인 투쟁을 일으키게 될것이다. 우리의 결정서가 혁명이 승리하는 때의 임무를 분석하는데 바쳐지는 이상, 우리는 반드시 반혁명의 진공을 물리칠 임무에 대하여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것이다.(대회의 결정서는 이렇게 하였다.) 그리고 전투적정당의 당면한, 긴요한, 초미의 정치적임무를, 목전의 혁명시기가 지나간 뒤에는 어떻게 될것인가, 《정치적으로 **해방된** 사회》가 이미 존재하게 되는 그때에는 어떻게 될것인가 하는 일반적론의속에서 파묻어버려서는 안되는것이다. 경제파들이 정치는 경제에 종속한다는 일반적진리를 빌어다가 초미의 정치적임무에 대한 자기들의 물리해를 덮어감추던것과 마찬가지로 신이스크라파도 정치적으로 **해방된** 사회내부에 투쟁이 일어난다는 일반적진리를 빌어다가 그 사회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는 초미의 혁명적임무에 대한 자기들의 물리해를 덮어감추고있다.

《신분제적군주제도진체를 종국적으로 철폐한다.》는 말을 보기로 하자. 군주제도의 종국적철폐라는것을 알기 쉽게 말하면 민주공화제를 건립한다는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선량한 마

르프노브와 그의 숭배자들에게는 그렇게 말하는것이 너무 간단명료한듯이 생각되는것이다. 그들은 기어이 《좀더 심각하게》 하려 하며 《좀더 재치있게》 말하려고 한다. 그 결과 한편으로는 심각하게 하려다가 가소로운 헛수고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구호 대신에 서술이 생기고 전진하라는 힘찬 호소 대신에 뒤를 돌이켜보는 그런 우울한 회고감이 생긴다. 우리앞에 나타난것은 참으로 지금 당장 공화제를 위하여 분투하려는 산사람들이 아니라 낡은 견해를 가지고 영구적면으로부터 문제를 고찰하는 굳어진 미이라인것이다.

다음으로 넘어가자. 《림시정부는…자산계급적인 이 혁명의 임무의…실현을 담당할것이다.》…여기에서는 우리의 대표회의파들이 무산계급의 정치적평도자들앞에 나선 구체적문제를 보지 못하였다는것이 대번에 드러난다. 림시혁명정부에 관한 구체적문제는, 일반적자산계급혁명임무를 완성할 상태의 일련의 정부에 관한 문제에 가리워져 그들의 시야로부터 사라져버렸다. 만일 당신들이 문제를 《력사적으로》 관찰하려고 한다면 구라파의 어떠한 나라의 실례든지, 바로 전혀 《림시》적이 아닌 일련의 정부가 자산계급혁명의 력사적임무를 완수하였으며 심지어는 혁명을 패배시킨 정부까지도 결국은 그 패배한 혁명의 력사적임무를 완수하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을 당신들에게 보여줄것이다. 그러나 《림시혁명정부》로 불리우는 그런 정부는 결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정부가 아니다. 이런 정부는 인민들속에서 나온 그 어떤 대표기관인것이 아니라 전복된 정부를 직접 대체하며 인민의 봉기에 의거하는 혁명시대의 정부인것이다. 림시혁명정부는 혁명을 즉시 승리하게 하며 반혁명적기도들을 즉시 분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기관이지 자산계급혁명일반의 력사적임무를 완수하는 기관은 결코 아니다. 제씨들이여! 우리와 당신들이 혹은 어떤 정부가 자산계급

혁명의 어떠한 임무를 완수하였는가를 확정하는것은 미래의 《로씨야의 옛날》¹⁸⁷을 통하여 미래의 역사가들이 하도록 맡겨 두자! —그 일은 30년이 지난후에 해도 늦지 않을 일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공화제를 목표로 하는 투쟁을 위하여, 그 투쟁에 무산계급을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시키기 위하여 구호와 실천적지시를 주어야 한다.

우에서 지적한 리유로 하여 결정서에서 우리가 발취한 부분의 마지막 몇개의 론점도 불만족스러운것이다. 립시정부가 대립되는 여러 계급들의 호상투쟁을 《조절》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은 극히 부적당한 말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졸렬한 말이다. 맑스주의자는 사람들에게 계급투쟁의 기관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조절자》인 정부가 있을수 있다는듯이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자유주의적해방파식의 말을 써서는 안된다. ... 정부는 《혁명적발전을 추진시킬뿐아니라 또 자본주의제도의 기초를 위협하는 혁명적발전의 요소들을 반대하여서도 투쟁》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 《요소》라고 하는것은 다름아닌 무산계급, 즉 그 결정서가 그 이름을 빌어 말한 바로 그 무산계급이다! 그 결정서는 무산계급이 지금 어떻게 《혁명적발전을 추진시킬것인가》(립헌파자산계급이 희망하는것보다 더 멀리 추진시킬것인가)에 대하여 제시할 대신에, 또 자산계급이 혁명의 성과를 반대하여 돌아서는 경우에 자산계급과 투쟁하기 위하여 일정한 방법을 뭘것을 무산계급에게 권고할 대신에 **우리의** 활동의 구체적임무에 대하여서는 일언반구도 말하지 않고 과정에 대한 일반적서술에 그치고있다. 자기들의 사상에 대한 신이스크라파의 서술방식은 변증법적관념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낡은 유폴론에 대한 맑스의 비평(포이에르바흐에 대한 맑스의 저명한 《제강》에서)을 현상시킨다. 철학자들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세계를 해석하고있을뿐이나 문제는 이 세계를 **개변**하는데 있

다230고 밝스는 말하였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이스크라파도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지고있는 투쟁의 과정을 가까스로 묘사하고 설명할줄은 알지만 그러나 그 투쟁을 위한 정확한 구호는 전혀 내놓지 못하고있다. 행진은 부지런히 하면서도 지휘가 서투른 그들은 혁명의 물질적조건을 인식하고 선진계급의 선두에 선 정당들이 력사상에서 일으킬수 있으며 또 일으키지 않으면 안될 적극적인 지도적역할과 향도적역할을 홀시함으로써 유물사관의 의의를 저하시키고있다.

5

어떻게 《혁명을 추진시켜야》 하는가?

결정서의 그다음부분을 인용하여보자.

《이러한 조건밑에서 사회민주당은 혁명의 전반 과정에서 자신이 혁명을 추진시킬 가능성을 가장 잘 보장하며 자산계급 정당들의 불철저하고도 리기적인 정책과 투쟁하는데 있어서 속수무책으로 되지 않으며 자산계급민주파측에 용해당하지 않게 할수 있는 그러한 입장을 유지하도록 힘쓰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므로 사회민주당은 정권을 탈취하거나 또는 임시정부내에서 권력을 나누는데 목표를 들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혁명적반대당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혁명을 추진시킬 가능성을 가장 잘 보장하는 입장을 취하라는 권고는 대단히 우리 마음에 든다. 이런 훌륭한 권고이외에 우리는 또 바로 지금, 당면한 정치적정세하에서 즉 인민대표회의의 소집에 관한 소문이나 추측이나 논의가 자자하고 그 계획이 수두룩한 때에 사회민주당이 어떻게 혁명을 추진할것

인가에 대한 명확한 지지도 있었으면 한다. 인민과 짜리와의 《타협》이라는 해방파적리론의 위험성을 리해하지 못하며 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한다는 《결정》 하나만을 가지고 승리라고 고아대며 또 립시혁명정부가 필요하다는 사상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는것을 임무로 삼지 않는자들이 지금 혁명을 추진할수 있겠는가? 민주공화제라는 구호를 제기하지 않는자들이 지금 혁명을 추진할수 있겠는가? 그러한 인간들은 **정치적실천적면에서 해방파의 립장의 수준에 머물러있기때문에 사실에 있어서는 혁명을 후퇴시키고있는것이다.** 혁명시기에 있어서의 당의 당면한 임무와 최근의 임무를 규정하는 전술적결정서에 공화제를 위한 투쟁의 구호를 제기하지 않은 이상 그들이 공화제로써 전제제도를 대체할것을 요구하는 강령을 승인한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해방파적립장, 즉 립헌주의적자산계급의 립장이야말로 지금 사실상 전인민적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하기로 결정하는것을 결정적승리라고 간주하며 그리고 립시혁명정부와 공화제에 관하여서는 조심스레 침묵을 지킨다는것으로써 특징지어지는것이다! 혁명을 **앞으로** 추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즉 군주주의적자산계급이 그것을 추진하는 그 한계보다 더 멀리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자산계급적민주파의 《불철저성》을 **무조건 배제하는** 구호들을 적극적으로 제출하고 강조하며 전면에 내세워야 할것이다. 지금 그러한 구호는 **단 두가지뿐**이다. 그것은 즉 (1) 립시혁명정부와 (2) 공화제이다. 왜냐 하면 전인민적헌법제정회의라는 구호는 군주주의적자산계급에게 **접수되었는데**(《해방단》의 강령을 보라.) 그나마 바로 혁명을 덮어감추어버리기 위하여, 혁명이 완전히 승리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대자산계급과 짜리정부간의 장사군식타협을 위하여 접수된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표회의가 유일하게 혁명을 추진시킬수 있는 그 두가지 구호중에서 공화제라는 구호

는 전혀 망각하고 또 임시혁명정부라는 구호를 해방파의 전 인민적헌법제정회의라는 구호와 동일시하면서 양자를 다 《혁명의 결정적승리》라고 말하고있는것을 보게 된다!!

그렇다, 그것은 의심할바없는 사실로서 로씨야사회민주주의운동사를 쓸 미래의 역사가에게 로정표로 되리라는것을 우리는 확신한다. 1905년 5월에 열린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대표회의는 민주주의혁명을 추진시키는것이 필요하다는 번지르르한 말을 하였으나 사실 혁명을 후퇴시키는, 사실 군주주의적자산계급의 민주주의적구호보다 더 나아가지 못하는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신이스크라파는 무산계급이 자산계급적민주파에 용해될 위험성이 있다는것을 우리가 홀시하고있다고 비난하기 좋아한다. 우리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3차대회의 결정서원문에 근거하여 그러한 비난을 증명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조보고싶다. 우리는 우리의 론적들에게 이렇게 대답할것이다. 프 자산계급사회내부에서 활동하고있는 사회민주당은 어떤 개별적인 경우에 자산계급적민주파와 나란히 나아가지 않고서는 정치에 참가할수 없다. 이 면에서 우리와 당신들과의 차이는, 우리는 혁명적공화주의적자산계급과 나란히 나아가면서도 그들과 융합되어있지 않지만, 당신들은 자유주의적인 군주주의적자산계급과 나란히 나아가면서도 그들과 융합되어있지 않는다는데 있는것이다. 사태는 바로 이러한것이다.

대표회의의 명의로써 제출한 당신들의 전술적구호는 《혁명민주》당 즉 군주주의적자산계급적당의 구호와 일치하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 일치를 깨닫지 못하였으며 의식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당신들은 사실상 해방파의 꼬리를 따라간것이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3차대회의 명의로써 제출한 우리의 전술적구호는 민주주의혁명적공화주의적자산계급의 구호

와 일치하다. 이러한 자산계급과 소자산계급은 로씨야에서 아직 하나의 큰 인민적인 당으로 형성되지 못하였다^①. 그러나 지금 로씨야에서 일어나고있는 일을 모르는 사람만이 그러한 당의 요소가 존재한다는것을 의심할것이다. 우리는(로씨야의 위대한 혁명이 성과적으로 진행되는 정황에서) 사회민주당이 조직한 무산계급뿐만아니라 우리와 어깨걸고 나아갈수 있는 그 소자산계급도 명도하려고 한다.

대표회의는 자기의 결정서에 의하여 자유주의적군주주의적자산계급의 수준에까지 무의식적으로 떨어져내려간다. 당대회는 자기의 결정서에 의하여 중개인노릇을 할 능력이 아니라 투쟁할 능력을 가진 혁명적민주파분자들을 대회의 수준에까지 의식적으로 끌어올린다.

이러한 분자들은 농민가운데 가장 많다. 우리가 큰 사회집단들을 그 정치적경향에 따라서 분류할 때에 혁명적공화주의적민주파를 농민군중과 동일하다고 하여도 큰 잘못은 아닐것이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로동계급을 사회민주당과 동일하다고 보는 경우와 같은 그러한 의미에서 그러한 단서와 암시적인 조건에서 그러한것이다. 바꾸어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결론을 다음과 같은 말로도 정식화할수 있다. 즉 대표회의는 혁명시기에 제기한 자기의 전국적인^② 정치적구호로 하여 무의식적으로 지주군중의 수준에까지 떨어져내려간다. 당대표대회는 자기의 전국적인 정치적구호로 하여 농민대중을 혁명적수준에까지 끌어올린다. 이러한 결론을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역설을 즐긴다고 비난하는자가 있다면 우리는 다음과 같

- ① 《사회혁명당》은 그러한 당의 맹아라기보다는 지식인들의 레로주의적집단이라고 하는것이 나올것이다. —비록 이 집단의 활동의 객관적의의는 바로 혁명적공화주의적자산계급의 임무를 실현하는데 있다 하더라도.
- ② 우리는 특별결정서에 설명된 농민에 관한 특별구호에 대하여서는 말하지 않는다.

은 톤점을 반박하여보라고 그에게 도전할것이다. 즉 만일 우리가 혁명을 끝까지 진행할 힘이 없다면, 만일 혁명이 해방파식의 《결정적승리》로, 짜리가 소집한, 웃음거리로서나 헌법제정회의라고 부를수 있는 그러한 대표회의로 끝난다면 그 혁명은 **지주와 대자산계급의** 요소들이 우세를 차지한 혁명일것이다. 그와 반대로 만일 우리가 참으로 위대한 혁명을 체험하게 된다면, 만일 력사가 이번에는 《류산》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만일 우리가 혁명을 끝까지 결정적승리(해방파나 신이스크라파가 말하는 의미에서의 결정적승리가 아닌)를 얻을 때까지 진행할 힘이 있다면 그때에는 이 혁명이 농민과 무산계급의 요소가 우세를 차지한 혁명일것이다.

이러한 우세에 관한 사상을 가정하는것은 당면한 혁명의 자산계급성에 대한 신념을 버리는것이라고 인정할 사람들도 있을것이다. 우리가 《이스크라》지에서 보는것과 같이 이 개념을 탐용한다면 이런 의심은 아주 가능한것이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분석하는것은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다.

6

무산계급이 불철저한 자산계급과의 투쟁에서 속수무책이 될 위험은 어디서 오는가?

맑스주의자들은 로씨야혁명의 자산계급적성격을 무조건적으로 확신한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로씨야에 대하여 필연적인것으로 된 정치제도의 민주주의적개혁과 사회-경제적개혁이 그자체로서는 자본주의의 파괴와 자산계급 지배의 파괴를 의미하지 않을뿐아니라 도리어 그것이 처음으로 자

본주의가 아세아식으로가 아니라 구라파식으로 광범하고 급속하게 발전할 기반을 본격적으로 닦는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며 그것이 처음으로 계급으로서의 자산계급의 지배를 가능하게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사회혁명당원들은 이 사상을 리해하지 못한다. 그것은 그들이 상품생산 및 자본주의적생산의 발전법칙을 조금도 알지 못하기때문이며 농민봉기가 완전히 성공되고 모든 토지를 농민의 리익을 위하여, 농민들의 소원대로 재분배하는(《분여지의 민중적재분배》 또는 그와 유사한 다른 조치) 경우에도 그것이 결코 자본주의를 소멸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본주의발전에 자극을 주며 농민자체의 계급분화를 가속화한다는것을 보지 못하기때문이다. 이 진리를 모르기때문에 사회혁명당원들은 무의식적인 소자산계급사상가로 된것이다. 이 진리를 고수하는것은 사회민주당에 대하여 리론적으로뿐아니라 정치적으로, 실천적으로도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왜냐 하면 이것으로부터는 현재의 《일반적민주주의》운동에서 무산계급정당이 반드시 완전한 계급적독자성을 보전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기때문이다.

그러나 이로부터 **민주주의혁명**(그 사회경제적내용으로 보아 자산계급적인 혁명)이 무산계급에게 **거대한** 리익을 주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오는것은 결코 아니다. 이로부터 민주주의혁명이 두가지 형태로, 즉 혹은 주로 대자본가, 금융거두, 《개명》지주에게 유리한 형태로 혹은 농민과 로동자에게 유리한 형태로 실현될수는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것은 결코 아니다.

신이스크라파는 자산계급혁명이라는 개념의 내용과 의의를 전혀 그릇되게 리해한다. 그들의 론의가운데서는 자산계급혁명을 다만 자산계급에게 유리한 결과만을 줄수 있는 그러한 혁명으로 보는 견해가 항상 드러나고있다. 그러한 견해보다 더 큰 잘못은 없다. 자산계급혁명은 자산계급적한계, 즉 자본

주의적사회경제제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혁명이다. 자산계급혁명은 자본주의의 토대를 소멸하지 않을뿐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확대심화하면서 자본주의발전의 수요를 표현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그 혁명은 로동계급의 리익뿐 아니라 전체 자산계급의 리익도 대표하는것이다. 자본주의제도하에서는 로동계급에 대한 자산계급의 지배가 불가피한만큼 자산계급혁명은 무산계급의 리익보다는 오히려 자산계급의 리익을 대표한다고 충분한 리유를 가지고 말할수 있다. 그러나 자산계급혁명이 무산계급의 리익을 전혀 대표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전혀 얼토당토않은것이다. 이 얼토당토않은 생각은 결국 자산계급혁명은 무산계급의 리익에 모순되는것이므로 자산계급의 정치적자유는 우리에게 소용이 없다고 하던 옛날 인민주의리론에 귀착되든가 그렇지 않으면 자산계급정치, 자산계급혁명 및 자산계급의회에 무산계급이 참가하는것을 모조리 거부하는 무정부주의사상에 귀착되든가 할것이다. 이 사상은 리론적으로는 상품생산의 토대우에서는 자본주의가 불가피하게 발전한다는 맑스주의의 초보적원리를 망각하고있다는것을 말하는것이다. 맑스주의는 상품생산을 토대로 하고 자본주의적문명국가들과 교환관계를 맺고있는 사회는 그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그자체가 불가피하게 자본주의길에 들어서게 된다는것을 가르치고있다. 인민파와 무정부주의자들은 제2차 로씨야가 자본주의발전을 피할수 있으며 자본주의자체의 지반우에서 또 그범위안에서 진행되는 계급투쟁의 길 이외의 어떠한 다른 길로 자본주의로부터 벗어저나가거나 또는 자본주의를 뛰어넘어갈수 있다고 말하는데 맑스주의는 그들의 이 망상과는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

맑스주의의 이 모든 원리는 일반적으로나 또는 특히 로씨야에 관하여서나 다 자세히 론증되었고 또 거듭 설명되었다.

이런 원리로부터 로동계급의 출로를 자본주의의 가일층의 발전이외에 다른 어떤것에서 찾으려는 망상은 다 **반동적**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로씨야와 같은 이런 나라에서는 로동계급은 자본주의로 인하여서보다도 오히려 자본주의발전의 불충분으로 하여 고통을 받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로동계급은 자본주의의 가장 광범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급속한 발전과 **절대적으로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 로동계급에게는 자본주의의 광범하고, 자유롭고, 급속한 발전을 방해하는 모든 낡은 시대의 잔재를 가지여버리는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자산계급혁명은 바로 낡은 제도의 잔재, 즉 농노제의 잔재(전제제도뿐 아니라 군주제도도 이 잔재에 속한다.)를 가장 결정적으로 쓸어버리며 자본주의의 가장 광범하고 자유롭고 급속한 발전을 가장 충분하게 보장하는 그러한 혁명이다.

그러므로 **자산계급혁명은 무산계급에게 극히 유리한것이다**. 자산계급혁명은 무산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것이다. 자산계급혁명이 더 충분하게, 더 결정적으로, 더 철저하게 진행될수록 무산계급이 사회주의를 위하여 자산계급과 투쟁하는것이 더 잘 보장될것이다. 과학적사회주의의 초보도 알지 못하는 인간들에게만 이 결론이 새로운것으로 생각되거나 또는 이상하고 황당한것으로 생각될것이다. 그런데 이 결론으로부터 자산계급혁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산계급에게보다도 무산계급에게 **더 유리하다**는 원리도 나오게 된다. 이 원리는 바로 다음과 같은 의미에서 의심할바가 없는것이다. 즉 자산계급에게는 무산계급을 반대하기 위하여 낡은 제도의 그 어떤 잔재, 폐킨대 군주제도, 상비군 등등에 의거하는것이 유리하다. 자산계급에게는 자산계급혁명이 낡은 제도의 일체 잔재를 너무 결정적으로 가지여버리지 말고 그중에서 약간한것은 남겨두는것이, 다시말하면 그 혁명이 완전히 철저하게 되

지 말고 끝까지 진행되지 말고 단호하고 무자비하게 되지 않는것이 유리하다.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흔히 이 사상을 다소 달리 표현한다. 즉 자산계급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배반한다고 말하며 자산계급은 자유를 위한 사업을 배반한다고 말하며 자산계급은 철저한 민주주의를 수행할수 없다고 말한다. 자산계급에게는 자산계급민주주의적방향에 필요한 온갖 개혁이 혁명의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개량의 방법으로써 좀더 서서히, 좀더 점진적으로, 좀더 신중하게, 좀더 우유부단하게 진행되는편이 더 유리하며 이러한 개혁이 농노제도의 《존귀한》기구(군주제도같은)에 대하여 될수 있는대로 좀더 신중한것이 더 유리하며 이 개혁들이 서민, 즉 농민과 특히 노동자들의 혁명적인 독자성과 주동성 및 의력을 될수 있는대로 적게 발전시키는것이 더 유리하다. 왜냐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랑스사람들이 말하는바와 같이 《총을 이쪽 어깨에서 저쪽 어깨에로 바꾸어메는》것이 노동자들에게는 더 쉽게 될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들이 자산계급혁명이 그들에게 공급하는 무기와 이 혁명이 그들에게 주는 자유 그리고 농노제가 일소된 지반우에서 산생되는 민주주의적기구들로써 자산계급자신을 반대하는것이 더욱 쉽게 될것이기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노동계급에게는 자산계급민주주의적방향에서 필요한 여러가지 개혁이 바로 개량의 길이 아니라 혁명적길을 거쳐 실현되는것이 더 유리하다. 왜냐 하면 개량의 길은 시일을 절절 끌게 하는 길이며 인민이라는 유기체내의 썩어가는 부분의 사멸과정을 고통스러우리만큼 더디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그 부분이 썩는것으로 하여 누구보다도 먼저 또 누구보다도 많이 고통을 받는것은 무산계급과 농민이다. 혁명적 길은 무산계급에게 대하여 고통이 가장 적도록 수술을 빨리 하는 길이며 썩은 부분을 직접 베어버리는 길이며 군주제도와

그리고 이 제도에 상응하는 가증하고 추악하고 부패하고 악취를 풍기는 여러가지 기구에 대하여 가장 비타협적이며 가장 결단적인 길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의 자산계급자유주의자들의 출판물은 혁명적길이 가능한것으로 하여 비탄하며 혁명을 두려워하며 혁명을 가지고 짜리를 위혁하며 혁명을 피하려고 애쓰며 개량주의적길의 기초로 되는 보잘것없는 개량을 구걸하여 비굴한 태도를 취하며 아첨하는데 그것은 단지 출판물검열제도를 고려하는 까닭만도 아니며 단지 당국을 겁내는 까닭만도 아니다. 《로씨야시보》, 《조국의 아들》, 《우리의 생활》, 《현시대》뿐아니라 자유로운 비합법적출판물인 《해방》잡지²³¹도 이 법장에 서있는것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자산계급의 계급적지위자체는 불가피하게 그자신을 민주주의혁명에서 불철저하게 만드는것이다. 무산계급의 계급적지위자체는 불가피하게 그자신을 철저한 민주주의자로 되게 하는것이다. 자산계급은 무산계급을 강력하게 만들게 되는 민주주의적진보가 두려워서 뒤를 돌아다보는것이다. 무산계급에게는 철쇄밖에 아무것도 잃을것이 없으며 그는 민주주의제도의 도움으로써 전 세계를 얻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자산계급혁명의 민주주의적개혁이 철저하면 할수록 그 혁명이 단지 자산계급에게만 유리하게 되고마는 일이 그만큼 적어질것이다. 자산계급혁명이 철저하면 할수록 그 혁명이 민주주의혁명에서의 무산계급과 농민의 이익을 그만큼 더 많이 보장하여주게 된다.

맑스주의는 무산자들에게 자산계급혁명에서 물러서지 말며 그 혁명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지 말며 그 혁명의 평도권을 자산계급에게 넘겨주지 말고 반대로 그 혁명에 가장 정력적으로 참가하며 철저한 무산계급민주주의를 위하여, 혁명을 끝까지 진행하기 위하여 가장 전철히 투쟁하라고 가르치

고있다. 우리는 로씨야혁명의 자산계급민주주의적범위를 벗어날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는 그 범위를 훨씬 넓힐수는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 범위안에서 무산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무산계급의 당면한 수요를 위하여, 장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무산계급의 힘을 축적할 조건들을 만들기 위하여 투쟁할수 있는것이며 또 투쟁하여야 한다. 자산계급적민주파에도 여러가지가 있다. 상원을 옹호하며 일반적선거제를 《요구》하며 동시에 비밀리에 불완전한 헌법에 관해서 짜리정부와 은밀히 타협하는 군주파의 지방자치인사도 자산계급적민주파이다. 무기를 손에 들고 지주와 관리들을 반대하며 《소박한 공화주의정서》로 《짜리를 내쫓자》^①고 제의하는 농민 역시 자산계급적민주파이다. 자산계급민주주의제도에는 독일것과 같은것도 있고 영국것과 같은것도 있으며 오지리것과 같은것도 있고 미국이나 스위스것과 같은것도 있다. 맑스주의자로서 민주주의혁명시기에 민주주의의 각종 정도상의 이런 차이를 보지 못하고 민주주의의 이러저러한 형태의 성격상의 구별을 보지 못하고 어쨌든 그것이 《자산계급혁명》이며 《자산계급혁명》의 과실이라고 《잔재간을 부리》는데만 그친다면 그는 그야말로 대단한 맑스주의자일것이다.

그런데 자기의 근지안을 가지고 뽐내는 그러한 재물들이 바로 우리의 신이스크라파들이다. 그들은 불철저한 자산계급적민주주의와 철저한 무산계급적민주주의의 차이에 대해서는 더 말할나위도 없거니와 바로 공화주의적혁명파의 자산계급적민주주의와 군주주의적자유파의 자산계급적민주주의를 잘 구별할수 있어야 할 그러한 때와 그러한 곳에서 혁명의 자산계급적성격에 대한 논의에만 그치고있다. 현시기의 혁명에 **민주주의**

① 《해방》잡지, 제71호, 337페이지의 주해 2를 보라.

적지도를 주며 스트루웨 씨 및 그 일파의 반역적구호와 구별하여
 선진적민주주의적구호를 강조하며 지주 및 공장주들의 자유
 주의적중개인적행위와 구별하여 무산계급 및 농민의 참으로
 혁명적인 투쟁의 당면임무를 직접 명확하게 지시하는것이 문
 제로 되어있는 때에 그들은 그야말로 《갑축에 든 사람》²³²으로
 되어 《대립되는 각 계급들이 서로 투쟁하는 과정》을 우울하게
 이야기하는것으로써 만족하고있다. 제씨들! 당신들이 보지 못
 한 그 문제의 핵심은 지금 여기에 즉 우리의 혁명이 참으로
 위대한 승리로 끝나겠는가 아니면 가엾은 타협만으로 끝나겠
 는가 또 우리의 혁명이 무산계급 및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독
 재에까지 도달하겠는가 아니면 자유주의적-취보브적헌법에서
 《백을 다 빼버리고말겠는가》 하는데 있는것이다!

얼핏 보면 우리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것은 우리의 주제에
 서 완전히 벗어져나가는듯이 보일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얼핏 보기에만 그렇게 보일수 있는것이다. 사실상 로씨야사회
 민주로동당 제3차대회의 사회민주주의적전술과 신이스크라파
 의 대표회의에서 결정된 전술 사이에 지금 아주 뚜렷하게 나타
 난 원칙적의견상이의 근원은 바로 이 문제에 있는것이다. 신
 이스크라파는 로동자당에게는 비할수없이 더 복잡하고 더 중
 요하고 더 긴박한 문제, 즉 혁명시기의 로동자당의 전술에 관
 한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경제주의의 오유를 부활시킴으
 로써 지금에는 결국 2보가 아니라 3보를 뒤걸음쳐버렸다. 바
 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모든 주의를 기울여 여기에 제기된
 문제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신이스크라파의 결정서로부터 우리가 발취한 부분에는 사
 회민주당이 자산계급의 불철저한 정책과 투쟁하는데 있어서
 속수무책이 될 위험성이 있으며 또 사회민주당이 자산계급적
 민주파에게 용해당할 위험성이 있다는것이 지적되어있다. 이

위험성에 관한 사상은 신이스크라파의 대표적인 모든 저작에 한줄기 붉은선처럼 일관되어있다. 이 사상은 우리 당의 분렬에서 모든 원칙적립장의 진정한 관점으로 되어있는것이다.(이 분렬에서의 사소한 알록의 요소가 경제주의에로의 전환의 요소에 완전히 자리를 내어주게 된 그때로부터) 우리도 그러한 위험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것, 바로 로씨야혁명이 한창 진행되고있는 지금에 그러한 위험성이 특히 엄중하게 존재한다는것을 솔직히 승인한다. 우리들에게는 즉 사회민주당의 이론가들이나—나는 나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싶다—정론가들 모두에게는 그러한 위험이 실제상 어느측에서 오는가 하는것을 밝힐 절박하고도 비상히 중요한 임무가 부과되어있다. 왜냐 하면 우리의 의견상이의 근원이 그러한 위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론쟁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험성이 어느측에서 오는가, 《소수파》의 소위 추미주의에서 오는가 아니면 《다수파》의 소위 혁명주의에서 오는가 하는 론쟁에 있기때문이다.

곡해와 오해를 피면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먼저 우리가 말하는 위험성은 주관적방면에 있는것이 아니라 객관적방면에 있으며 또 사회민주당이 투쟁가운데서 취하게 될 형식상의 립장에 있는것이 아니라 현시기의 모든 혁명투쟁의 물질적결말에 있다는것을 지적한다. 문제는 이런 또는 저런 사회민주주의자집단이 자산계급적민주파에 용해되기를 원하는가 또 그들이 자신이 용해되는것을 의식하고있는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다.—우리가 말하는것은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회민주주의자치고 그 누구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문제가 소원에 있는것은 아니다. 문제는 또 이러저러한 사회민주주의집단이 혁명의 전 과정에서 자기의 형식상의 자립성, 특수성, 자산계급적민주파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전하는가 하는데 있는것도 아니다. 그들은 그런 《자립》을 선언할수 있을뿐아니라 또 그것을 형식상으로 보전할수도 있을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는 그들이 자산계급의 불철저성과 투쟁하는데 있어서 **속수무책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 사회민주당이 형식상의 《자립성》을 보전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조직적, 즉 당의 완전한 특수성을 보전하고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에서는 자립적이 아니며 사벌의 진행에 자체의 무산계급적자립성의 락인을 찍을수 없게 되고 매우 연약하기때문에 총적으로는, 결국에 가서는, 종말에 가서는 사회민주당이 자산계급적민주파에 《용해》되었다는것이 어쨌든 역사적사실로 될수 있는 혁명의 종국적인 정치적결과가 생길수도 있는것이다.

바로 여기에 실제적위험이 있다. 이제 이 위험이 어느측에서 오는가, 즉 우리가 생각하는바와 같이 신《이스크라》지가 대표하는 사회민주당의 우경으로부터 오는가 그렇지 않으면 신이스크라파가 생각하는바와 같이 《다수파》나 《전진》지 등등이 대표하는 사회민주당의 좌경으로부터 오는가를 보기로 하자.

이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여러가지 사회적세력의 역할의 객관적배합여하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다. 그 세력들의 성격은 이미 로씨야의 현실에 대한 맑스주의자들의 분석에 의하여 리론적으로 확정되어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 성격이 또 혁명의 행정에서의 각 집단과 계급들의 공개적행동에 의하여 실천적으로 확정되고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이 시대보다 훨씬 이전에 얻어낸 맑스주의자들의 모든 리론적분석과 또 혁명의 발전행정에 대한 모든 실제적관찰은 객관조건의 견지에서 볼 때 로씨야의 혁명에는 두가지 행정과결말이 있을수 있다는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로씨야의 경제

제도 및 정치제도가 자산계급적민주주의방향으로 개혁되는것은 불가피한 일이며 또 어찌할수 없는 일이다. 그러한 개혁을 막을만한 힘은 세상에는 없다. 그러나 그 개혁을 실현하는 현존하는 세력들의 역할의 배합여하에 따라 그 개혁의 두가지 결과 또는 두가지 형태가 생길수 있다. 그것은 다음 두가지중의 하나일것이다. 즉 (1) 《짜리제도에 대한 혁명의 결정적승리》로써 끝마치든가, 그렇지 않으면 (2) 결정적승리를 위해서는 힘이 부족하고 따라서 짜리정부와 자산계급중의 가장 《불철저하고》 가장 《리기적인》 분자들의 타협으로써 끝마치든가 하는것이다. 세목과 배합의 무한한 다양성은 아무도 예견할수 없지만 그러나 대체로 이 두가지 결말중의 어느 하나에 귀착되는것이다.

이제 이 두가지 결말을 첫째로는 그 사회적의의의 견지에서, 둘째로는 그 두가지 결말에서 사회민주당이 처하게 될 상태(사회민주당이 《용해》되거나 《축수무책》이 될)의 견지에서 고찰하여보기로 하자.

《짜리제도에 대한 혁명의 결정적승리》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신이스크라파가 이 개념을 사용하면서 이 개념의 가장 직접적인 정치적의의마저 이해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았다. 이 개념의 계급적내용에 대하여서는 그들은 더구나 이해하지 못하고있다. 우리 맑스주의자들은 여하를 물론하고 지금 많은 혁명적민주주의자들(가뿐따위의)처럼 《혁명》 혹은 《로씨야대혁명》이라는 말에 미련을 가져서는 결코 안된다. 우리는 대체 어떠한 현실적인 사회적세력들이 《짜리제도》(그것은 아주 현실적이며 또 누구에게나 아주 명백한 세력이다.)에 대항하고있으며 또 짜리제도에 대한 《결정적승리》를 얻을수 있는가 하는데 대하여 명확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대자산계급, 지주, 공장주들 그리고 해방파에 추종하는 《사회적인사

들》은 결코 그러한 세력일수 없다. 우리는 그들이 심지어 결정적승리를 원하지도 않는다는것을 알고있다. 우리는 그들이 자신의 계급적지위로 말미암아 짜리제도와 견결히 싸울수 없다는것을 알고있다. 그들은 사유재산, 자본, 토지 등 너무나 무거운 철쇄에 얽매여 견결히 투쟁할수 없는것이다. 무산계급과 농민을 반대하기 위하여 그들에게는 짜리제도와 경찰, 관료 및 군사력이 너무나도 필요하므로 그들은 짜리제도를 소멸하는데 힘쓸수 없는것이다. 아니, 《짜리제도에 대한 결정적승리》를 능히 거둘만한 세력은 오직 **인민**, 즉 무산계급과 농민—만일 농촌과 도시의 소자산계급(그들도 《인민》이다.)을 이 두 세력에다 각각 배속시키면서 기본적인 큰 세력들을 들어 말한다면—인것이다. 《짜리제도에 대한 혁명의 결정적승리》란 곧 **무산계급 및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독재**이다. 우리의 신이스크라파는 오래전에 《전진》지가 이미 지적한 이 결론을 도저히 회피하지 못할것이다. 이밖에 짜리제도에 대하여 결정적승리를 거둘수 있는 세력이라곤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러한 승리는 다름아닌 독재일것이다. 다시말하면 그것은 《합법적》, 《평화적방법》에 의하여 건립된 이런 또는 저런 기관에 의거하는것이 아니라 불가피적으로 군사력과 대중의 무장 및 봉기에 의거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그것은 독재가 아닐수 없다. 왜냐 하면 무산계급과 농민에게 즉시로 그리고 절대로 필요한 개혁의 실현은 지주, 대자산자 및 짜리제도의 결사적인 반항을 야기할것이기때문이다. 독재가 없이는 그 반항을 분쇄할수도, 반혁명적기도를 짓부실수도 없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사회주의적독재가 아니라 민주주의적독재일것이다. 그 독재는 자본주의의 기초물(혁명발전에서의 허다한 중간적단계가 없이는) 건드리지 못할것이다. 그 독재는 최상의 경우에라야 농민에게 유리하게 토지의 근본적인 재분배

를 실시하며 공화제에 이르기까지의 철저하고 완전한 민주주의를 실시하며 비단 농촌생활에서뿐아니라 공장생활에서도 모든 아세아적, 노예적 특색을 뿌리채 뽑아버리며 로동자들의 생활형편을 현저히 개선하고 그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를 닦으며 마지막으로, last but not least^① 혁명의 불길을 구라파에까지 타번지게 할것이다. 그러한 승리는 결코 아직 우리 나라의 자산계급혁명을 사회주의혁명으로 전변시키지 못할것이며 민주주의혁명은 자산계급적사회경제적관계의 범위를 직접 벗어나지는 못할것이다. 그러나 그 승리는 로씨야와 전 세계의 장래의 발전에 대하여 극히 중대한 의의를 가질것이다. 그 어떠한것도 로씨야에서 시작된 혁명의 이런 결정적승리와 같이 그렇듯 높은 정도로 전 세계 무산계급의 혁명적의력을 양양시키지는 못할것이며 또 그 어떠한것도 전 세계 무산계급의 완전한 승리에로의 길을 것처럼 현저하게 단축시키지는 못할것이다.

그러한 승리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하는가 하는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결코 맹목적으로 낙관하는 태도를 취하지 않으며 그 임무를 수행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것을 잊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투쟁에 나선 이상 승리에 대한 희망을 가져야 하며 승리로 나아가는 진정한 길을 제시할줄 알아야 한다. 그 승리에 도달할수 있는 추세가 현존한다는것은 논쟁할 여지도 없는 일이다. 사실 무산계급대중에 대한 우리 사회민주당의 영향은 아직 매우 부족하고 농민대중에 대한 혁명적영향도 극히 미소하며 또 무산계급, 특히 농민은 아직도 매우 산만하고 발달하지 못하고 무식하다. 그러나 혁명은 사람들을 급속히 묶어세우며 급속히 계발시킨

① 순서로는 마지막이지만 중요성으로는 마지막이 아니다.

다. 혁명발전의 걸음마다가 대중을 각성시키며 또 대중의 진정한 절실한 이익을 철저히 완전히 표현하는 유일한 강령인 혁명적강령의 편으로 대중을 막을수 없는 힘으로써 끌어들이나.

력학의 법칙에 의하면 작용은 반작용과 대등하다. 력사상에서 혁명의 파괴력여하도 자유를 갈망하는데 대한 압박이 얼마나 심하며 얼마나 오래 계속되는가 또 넓아빠진 《상부구조》와 현대의 신생력량과의 모순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데 적지 않게 의존한다. 국제정치형제도 많은 면에서 로씨야혁명에 더 말할나위없이 유리하게 변해가고있다. 로동자와 농민들의 봉기는 벌써 시작되었다. 그 봉기는 분산적이며 자연발생적이며 연약하다. 그러나 그 봉기는 결정적투쟁을 할 능력을 가지고있으며 결정적승리로 나아갈 힘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론쟁할 여지없이 무조건적으로 증명하고있다.

만일 그 힘이 부족된다면 그때에는 짜리정부는 불리긴일파와 스트루웨일파가 이미 땅쪽에서 준비하여온 타협에 성공할것이다. 그렇게 되는 때에는 사태는 불완전한 헌법으로 결말을 짓는가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최악의 경우에는—헌법을 졸렬하게 모방하는것으로 결말을 짓는가 할것이다. 이것 역시 《자산계급혁명》일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류산아, 조산아, 제대로 발육하지 못한 저능아일것이다. 사회민주당은 아무런 환상도 가지지 않는다. 그는 자산계급의 변질적본성을 알고있다. 그는 《쉬뵈브식의》 자산계급헌법이 룬성하는 가장 암담한 나날에도 낙심하지 않을것이며 무산계급을 계급적으로 교양하는 자기의 집요하고 참을성있고 견정불이한 사업을 버리지 않을것이다. 그러한 결말은 19세기에 구라파에 있는 거의 모든 민주주의혁명의 결말과 어느 정도 류사할것이다. 그때에는 우리 당의 발전은 어렵고 힘겨웁고 머나먼 그러나 잘 아는, 이미 닦아진 길로 나아가게 될것이다.

이제 문제로 되는것은 이 두가지 가능한 결말중의 어느 경우에 사회민주당이 불철저하고 리기적인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사실상 착수무책이 되며 자산계급적민주파에 사실상 《용해》되거나 혹은 거의 용해될것인가 하는것이다.

이 문제를 즉석에서 쉽게 해답하기 위하여서는 문제를 명백히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자산계급이 짜리정부와 타협하는 수단으로 로씨야혁명을 파괴하는데 성공한다면 그때에는 사회민주당은 불철저한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사실상 착수무책이 될것이며 그때에는 무산계급이 혁명에 자기의 선명한 락인을 찍지 못하게 되고 무산계급방식으로 혹은 맑스가 일찌기 말한바와 같이 《평민식》으로 짜리제도를 결판내지 못하게 될것이라는 의미에서 사회민주당은 자산계급적민주파에 《용해》되어버릴것이다.

혁명의 결정적승리가 달성된다면 그때에는 우리는 자프붕파식으로 혹은 달리말하면 평민식으로 짜리제도를 결판내게 될것이다. 맑스는 1848년에 유명한 《신라인신문》에서 《프랑스의 모든 데로주의는 자산계급의 적인 전제제도, 봉건제도 및 속물근성을 평민식으로 결판내는것 이외의 다른 아무것도 아니었다.》라고 하였다.(《맑스의 유저》(Marx' Nachlass) 메링판 제3권, 211페이지를 보라.)²³³ 민주주의혁명시대에 로씨야의 사회민주당의적로동자들을 《자프붕주의》라는 괴물로써 놀래우는 자들은 맑스의 이 말의 의미를 생각해본 일이 있는가?

현대로씨야사회민주당내의 지롱드파인 신이스크라파는 해방파와 합류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자기들 구호의 성격으로 하여 사실상 해방파의 꼬리를 따라가고있다. 그런데 해방파, 즉 자유주의적자산계급의 대표자들은 유순하게, 개량주의적으로 즉 귀족과 황실을 모욕하지 않고 양보해가며 현존하는 제도에 대한 아무 파괴도 없이 신중하게 신사들처럼 흰 장갑(피

비런 내가 나는 임금 니플라이가 《인민대표들》(?)을 접견할 때에 에트룬게위치씨가 이 교형리의 손에서 받아온 장갑같은것, 《무산자》지 제5호를 보라.)²³⁴을 손에 끼고 친절하게, 절절있게, 량반식으로 전제제도를 결판내려고 한다.

현대사회민주당내의 자코벳파인 불웨위크, 전진파, 대화파 또는 무산자파는—우리가 더 어떻게 달리 불려야 할지 모를—자기의 구호로써 혁명적 및 공화주의적 소자산계급과 특히 농민을 자체의 계급적특성을 완전히 보전하는 무산계급의 철저한 민주주의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려고 한다. 그들은 인민 즉 무산계급과 농민이 자유의 적들을 무자비하게 소멸하며 그 반항을 폭력으로써 진압하며 만악의 농노제도, 아세아식폭정 및 인간에 대한 폭행 등의 저주로운 잔재에 아무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 군주제도, 귀족들을 《평민식으로》 결판내기를 바란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1793년의 자코벳파를 반드시 모방하려고 한다든가 그들의 견해, 강령, 구호 및 행동방식을 채용하려고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그런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의 강령은 낡은 강령이 아니라 새로운 강령이며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최저강령이다. 우리는 무산계급 및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독재라는 새 구호를 가지고있다. 만일 우리가 혁명의 진정한 승리가 올 때까지 살아있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완전한 사회주의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로동계급정당의 성격과 목적에 알맞는 새로운 행동방식이 또 있게 될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는것은 다만 20세기의 선진계급인 무산계급의 대표들인 사회민주주의자들도 18세기의 선진계급인 자산계급의 대표들이었던 지롱드파와 자코벳파¹⁴⁸가 서로 갈라졌던것처럼 두 파(기회주의파와 혁명파)로 갈라져있다는것을 설명하려는것뿐이다.

오직 민주주의혁명이 완전히 승리하는 경우에 있어서만 무산계급이 불철저한 자산계급과의 투쟁에서 축수무책이 되지 않을 것이며 오직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만 무산계급이 자산계급적민주파에 《용해》되지 않고 또 혁명전체에 무산계급적인 또는 더 정확히 말한다면 무산계급적-농민적인 락인을 찍어놓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불철저한 자산계급적민주파와의 투쟁에서 축수무책이 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무산계급은 농민을 자각적으로 혁명하는 정도에까지 끌어올리며 그들의 진공을 평도할수 있도록 그리하여 철저한 무산계급적민주주의를 독자적으로 수행할수 있도록 충분히 자각되며 강력하게 되어야 한다.

신이스크라파가 그렇듯 잘못 해결한 문제 즉 불철저한 자산계급과의 투쟁에서 축수무책이 될 위험성에 대한 문제는 바로 이와 같은것이다. 자산계급은 언제나 불철저할것이다. 어떤 조건이나 조항들①—그것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자산계급적민주파를 인민의 거짓없는 벗으로 간주할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조건이나 조항들을 작성하려고 기도하는것보다 더 유치하고 더 무익한것은 없다. 민주주의를 위한 철저한 투사로 될수 있는것은 오직 무산계급뿐이다. 무산계급은 그의 혁명투쟁에 농민대중이 가담하는 조건하에서만 민주주의를 위하여 싸우는 불패의 투사로 될수 있다. 만일 무산계급에게 그렇게 할힘이 부족된다면 자산계급이 민주주의혁명의 전투에 서게 될것이며 그 혁명을 불철저한, 리기적인 혁명으로 되게 할것이다. 그런 위험을 방지하는데는 무산계급 및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독재를 실시하는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① 스탈로웨르가 제3차대회에서 취소된 자기의 결정서²³⁵에서 이렇게 하려고 시도하였으며 대표회의도 그보다 못지않게 잘못된 결정서에서 이렇게 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하여 우리는 신이스크라파의 전술이야말로 객관적으로 **자산계급적민주파를 리름게 해주는것**이라는 의심할수 없는 결론에 도달한다. 당내에서 전인민적투표제에까지, 협상원칙에까지, 당의 간행물을 당파 분리시키는데까지 이르게 하는 조직상의 산만성을 설교하는것, 무장봉기의 임무를 경시하는것, 혁명적무산계급의 전인민적정치구호와 군주주의적자산계급의 구호를 혼동하는것, 《짜리제도에 대한 혁명의 결정적승리》의 조건을 외곽하는것 — 이 모든것이 합하여 혁명시기의 추미주의정책, 즉 승리하는 유일한 길을 가리켜주며 인민중의 모든 혁명적공화주의적분자들을 무산계급구호에로 끌어들이 대신에 무산계급을 혼미하게 만들며 무산계급의 대오를 와해시키고 그들의 의식을 혼란하게 만들며 사회민주당의 전술을 짊어내리는 바로 그 추미주의정책을 구성하는것이다.

우리가 결정서를 분석한 기초에서 얻어낸 이 결론을 확증하기 위하여 이 문제를 다른 면으로부터 고찰해보기로 하자. 첫째로, 좀 친진하고 로골적인 멘체위크들이 그루지야《사회민주주의자》지에서 신이스크라파의 전술을 어떻게 해설하고있는가를 보기로 하고 둘째로, 현 정치정세하에서 사실상 누가 신《이스크라》의 구호들을 리용하고있는가를 보기로 하자.

7

《보수파를 정부에서 배제하는》 전술

멘체위크 쟁플리스《위원회》의 기관지(《사회민주주의자》제1호)에 실린 상기의 논문은 《국민대표회의와 우리의 전술》이라는 제목을 달고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우리의 강령을 아

적 죄다 잊어버리지는 않아서 공화제라는 구호를 내세우기는 하였지만 전술문제에 관하여서는 그는 아래와 같이 른술하고 있다.

《이 목적〔공화제〕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길을 지적할수 있다. 즉 정부가 소집하는 국민대표회의를 전혀 무시하고 무기를 손에 들고 정부를 타도하며 혁명정부를 조직하고 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하는 길이나 그렇지 않으면 국민대표회의를 우리의 행동중심으로 선포하며 무기를 손에 들고 그 구성과 그 활동에 영향을 주어 강박적으로 그자체를 헌법제정회의로 선포하게 하거나 또는 그것을 통하여 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하게 하는 길이다. 이 두가지 전술은 아주 판이한것이다. 이제 그중에서 어느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한가를 보기로 하자.》

보라, 로씨야의 신이스크라파들은 후에 우리가 앞에서 분석한 그 결정서에 체현된 사상을 바로 이와 같이 서술하고있다. 이것은 볼리긴의 《초안》이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쓰시마사건²³⁶이전에 쓴것이라는데 주의를 돌리기 바란다. 그당시 지어는 자유주의자들까지도 참다못하여 합법적출판물에서 불신임의 태도를 표시하였는데 이 사회민주당의 신이스크라파들은 오히려 자유주의자들보다도 더 경솔하게 믿고있었던것이다. 그는 국민대표회의가 《소집되고있다》고 선포하고있으며 또한 아직 존재하고있지도 않는 국민대표회의(혹 《국회》나 《법률자문회의》일는지?)를 우리의 행동중심으로 삼자고 제의할 정도로 짜리를 굳게 믿고있다. 대표회의에서 채택된 결정서의 필자보다 더 로골적이고 더 솔직한 우리의 썬플리스파는 이 두가지 《전술》(비할수없이 친진스럽게 서술된)을 동일시하는것이 아니라 오히려 둘째 전술이 《더 유리하다》고 선포한다. 들어보라.

《첫째 전술. 여러분들이 다 아는바와 같이 닥쳐오는 혁명은 자산계급적혁명이다. 다시말하면 이 혁명은 비단 무산계급뿐만아니라 자산계급사회전체에도 유리하게 현존제도를 개편할것을 목표로 한다. 모든 계

급, 심지어 자본가자신들까지도 정부에 대하여 반대적태도를 취하고 있다. 투쟁하는 무산계급과 투쟁하는 자산계급은 어떠한 의미에서는 함께 나아가면서 전체제도를 자이한 방면으로부터 함께 공격한다. 이 경우에 정부는 완전히 고립되고 사회의 동정을 잃고있다. 그러므로 그것을 뒤엎기는 매우 쉬운것이다. 진 로씨야 무산계급은 아직 단독으로 혁명을 수행할수 있으리만큼 각성되지도 못하였고 조직되지도 못하였다. 만일 무산계급이 그렇게 할수만 있다면 그는 자산계급혁명을 수행할것이 아니라 무산계급(사회주의적)혁명을 수행할것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동맹자를 찾지 못하게 하며 반대파를 분열시킬수 없게 하며 자산계급을 자기편에 끌어들이지 못하게 하고 무산계급을 고립시키지 못하도록 하는것이 우리에게는 유리하다.…»

요컨대 무산계급에게는 짜리정부가 자산계급과 무산계급을 분열시키지 못하게 하는것이 유리하다는것이다! 그루지야의 기관지를 《해방》이라 하지 않고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부르는것은 잘못된것이 아닌가? 보라, 이 얼마나 세상에 보기 드문 민주주의적혁명의 철학인가! 여기서 우리는 가련한 쥘리리스파가 《자산계급혁명》이라는 개념의 실교적-추미주의적해석에 의하여 완전히 혼란에 빠져버린 꼴을 똑똑히 보고있지 않는가? 그는 민주주의혁명에서 무산계급이 고립될수 있다는 문제를 논의하면서…**잊어버리고있다**. 크지 않은 일에 관하여 … 농민에 관하여 잊어버리고있다! 그는 무산계급의 가능한 동맹자들중에서 지방자치국71인 지주들을 알고있고 또 마음에 들어하지만 농민은 알지 못하고있다. 그나마 그것도 깡까즈에서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이스크라》지는 자기의 론의로써 혁명적 농민을 자기의 동맹자로 끌어올릴 대신에 그자신이 스스로 군주주의적자산계급의 수준에까지 떨어져내려가고있다고 말한것이 과연 옳지 않았던가?

《…반대의 경우에는 무산계급이 패배하고 정부가 승리할것은 피할수 없는 일이다. 전체정부는 바로 그것을 위하여 힘쓴다. 정부가 그 국

민대표회의에서 귀족, 지방자치기관, 도시와 대학 등의 자산계급기구의 대표들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의심할바 없다. 전제정부는 여러가지 조그마한 양보로써 그들을 통락하며 그리하여 그들을 자기와 화해시키려고 노력할것이다. 이렇게 하여 자기를 강력해지게 한 다음 정부는 온갖 힘을 다하여 고립되어있는 노동자대중을 타격할것이다. 우리의 책임은 바로 그러한 불행한 결말을 방지하는데 있다. 그런데 그것은 과연 첫째 길에 따라 수행할수 있겠는가? 가령 우리가 국민대표회의를 전혀 무시하고 독자적으로 봉기를 준비하기 시작하며 또 그 어느날 봉기를 들고 가두에 나가 투쟁한다고 하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둘이나 되는 적과 즉 정부와 국민대표회의와 맞서게 될것이다. 우리가 아직 준비하고있을 동안에 그들은 벌써 서로 합의하여 협정을 맺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헌법을 제정하며 또 자기들끼리 정권을 나누어가질것이다. 이것은 정부에 직접 유리한 전술이므로 우리는 그것을 가장 단호히 거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얼마나 로물적인 말인가! 《봉기를 준비하는 동안에》 정부가 자산계급과 타협을 하게 될것이므로 봉기를 준비하는 《전술》을 단호히 거부하여야 한다는것이다! 가장 완고한 《경제주의》의 낡은 문헌에서도 혁명적사회민주주의운동을 이처럼 모욕한 론조는 하나도 찾아볼수 없을것이다. 여기저기에서 노동자와 농민의 봉기와 불길이 일어나고있는것은 사실이다. 국민대표회의는 불티건의 약속에 불과하다. 그런데 찌플리스시의 《사회민주주의자》는 봉기를 준비하는 전술을 거부하고 《영향의 중심》인 국민대표회의를 기다리기로 결심한다....

《...둘째 전술은 그와 반대로 국민대표회의를 우리의 감독하에 두고 그것이 자기의 의사대로 행동하거나 정부와 타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①.

우리는 국민대표회의가 전제정부와 투쟁하는 경우에는 국민대표회

① 국민대표회의의 의원의 의사를 박탈하는 방법은 어떠한것인가? 특수한 리트머스시험지나 아닐는지?

의를 지지하며 전제정부와 타협하는 경우에는 그것과 투쟁한다. 우리는 강경한 간섭과 힘으로써 대표들을 서로 분렬시켜① 급진파를 우리 편에 가담시키고 보수파를 정부에서 배제하며 그리하여 국민대표회의 전체가 혁명의 길에 들어서도록 한다. 우리가 이런 전술을 쓰면 정부는 항상 고립되고말것이고 반정부당은 강하여질것이며 따라서 민주주의제도의 건립이 용이하게 될것이다.》

됐다! 됐다! 그래도 신이스크라파가 가장 비속한 경제주의의 방향으로 돌아서고있다는것은 우리가 과장한것이라고 말하려거든 말하라. 그것은 파리를 잡아놓고 그 몸애 뿌리면 죽는다는 유명한 파리약과 똑같은것이 아닌가. 국민대표회의의 대표들을 힘으로써 분렬시키고 《보수파를 정부에서 배제하면》 국민대표회의전체가 혁명의 길에 들어설것이다.… 실로 《자표뱅식》무장봉기도 다른 아무것도 필요없이 그저 그럭저럭 온화하게 거의 의회식으로 국민대표회의 의원들에게 《영향을 주면》 된다는것이다.

가련한 로씨야여! 너는 언제나 구라파에서 내버린 구식모자를 쓴다는 말을 들어왔다. 우리에게는 아직 의회가 없으며 불피긴조차 그것을 약속하지 않았다. 그런데 의회광신병²³⁷은 얼마든지 있는것이다.

《…이 간섭은 어떻게 실현되어야 할것인가? 무엇보다도먼저 우리는 국민대표회의가 무기명투표에 의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권에 의하여 소결되기를 요구할것이다. 그와 같은 선거수속을 공포하는② 동시에 선거경쟁선동에 대한 충분한 자유, 즉 집회, 언론 및 출판에 대한 자유, 선거자와 피선거자에 대한 불가침, 모든 정치범에 대한 석방

① 하느님 암시사! 그야말로 《심오한》 전술이다! 가두에서 싸울 힘은 없어도 《힘》으로써 《대표들을 분렬시킬》수는 있다. 쥘리우스의 동지들이여, 들으라, 거짓말을 해도 분수가 있어야지….

② 《이스크라》지에?

이 법률로 규정되어야 한다①. 선거자체는 우리가 인민에게 그것을 인식시키며 그것을 준비시킬 시간을 충분히 가지도록 될수 있는 한 시일을 늦게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대표회의소집에 관한 조폐작성은 내무대신 불리킨의 위원회에 위임되어있는것만큼 우리는 이 위원회와 그 위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으면 안된다②. 만일 불리킨의 위원회가 우리의 요구를 만족시키기를 거절하고③ 대표선거권을 유산자에게만 준다면 그때에는 우리는 이 선거에 간섭하고 선거자들이 선진적범후보자들을 선거하도록 혁명적수단으로 강요하며 또한 국민대표회의에서 헌법제정회의소집을 요구하여야 할것이다. 마지막으로 온갖 방법을 다하여, 즉 시위, 파업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봉기를 일으켜서라도 국민대표회의가 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하거나 그자체를 헌법제정회의로 선포하지 않을수 없게 하여야 할것이다. 무장한 무산계급은 헌법제정회의의 보위자여야 한다. 그러면 양자는 함께④ 민주공화제로 나아가게 될것이다.

사회민주당의 전술은 이러하다. 이 전술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여줄것이다.》

독자들은 이러한 얼토당토않은 망설을 신이스크라파의 어떤 책임도 없고 권위도 없는 사람의 단순한 글장난으로만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천만에, 이것은 신이스크라파의 당당한 위원회인 쥘러스위원회 기관지에 실린 말이다. 그뿐만아니라 이 망설을 《이스크라》지 제100호는 직접 찬성한적이 있는데 거기에는 《사회민주주의자》지에 대한 다음과 같은 평론이 있다.

《제1호는 생동하고 재치있게 편집되었다. 편집자—저술가의 경험있고 수완있는 솜씨가 확연히 보인다.… 이 신문은 자기에게 부과된 임무를 빛나게 완수하리라고 자신있게 말할수 있다.》

① 니콜라이에 의하여?

② 《보수파를 정부에서 배제하는》 전술이란 원래 이런것이다!

③ 우리에게 이렇듯 정확하고 또 심오한 전술이 있는 이상 그런 일은 있을수 없다!

④ 무장한 무산계급과 《정부에서 배제된》 보수파인가?

그렇다! 만일 그 임무라는것이 신이스크라파의 완전한 사상적부패를 모든 사람들에게 낱알이 보여주는데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빛나게》 완수되었다. 신이스크라파가 자유주의 자산계급적기회주의에까지 타락한것을 그보다 더 《생동하고 재치있고 또 수완있게》 표현할 사람은 없을것이다.

8

해방파와 신이스크라파

이제 우리는 신이스크라파의 정치적역할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주는 다른 하나의 사실을 보기로 하자.

홀륭하고 탁월하고 매우 교훈적인 논문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깨달을것인가》(《해방》잡지 제71호)에서 스트루웨씨는 우리 나라의 극단적정당들의 《강령적혁명주의》에 대하여 도전해나섰다. 스트루웨씨는 특히 나 개인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있다^①. 나로 말하면 나는 스트루웨씨에 대하여 더없이 만족하고있다. 그것은 내가 신이스크라파에서 되살아나고있는 경제주의와 《사회혁명당원들》의 완전한 무원칙성에 대한 투쟁에서 스트루웨보다 더 좋은 동맹자를 바랄수 없기때문이다.

① 《레닌씨와 그의 동지 제씨의 혁명주의와 비교하면 베벨이나 짐지어는 카우츠키의 서구파사회민주당의 혁명주의도 기회주의인것이다. 그런데 이미 온화해진 이 혁명주의의 기초도 벽사에 의하여 허물어지고 깨끗이 씻기워버렸다.》 매우 맹렬한 공격이다. 스트루웨씨가 나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고 모든것을 내게다 덮어씌울수 있을줄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헛된 생각이다. 나는 스트루웨씨에게 대하여 그가 영영 응전할수 없을 그러한 도전만 하면 그만이다. 내가 어디서, 언제 《베벨과 카우츠키의 혁명주의》를 기회주의라고 하였는가? 내가 어디서, 언제 베벨이나 카우츠키의 방향과 동일하지 않은 그 어떤 특별한 방향을 국제사회민주당의 운동가운데 제우려고 생각하였는가? 구경 어디서, 언제 나를 일방으로 하고 베벨과 카우츠키를 타방으로 한 의견상이, 즉 그 엄중성으로 보아 베

사회혁명당원들의 강령초안에서 수행된 맑스주의에 대한 온갖 《수정》의 반동성을 스트루웨씨의 《해방》잡지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증명하였던가에 관하여는 다른 기회에 다시 말하기로 하자. 스트루웨씨가 신이스크라파를 원칙적으로 찬성할 때마다 나에게 성실하고 믿음직하고 진실한 도움을 준데 대하여서는 이미 여러번 말하였지만① 지금 다시한번 더 말하여둔다.

스트루웨씨의 토론에는 아주 흥미있는 성명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여기에서 다만 부대적으로 지적하는데 그칠다. 스트루웨씨는 《계급투쟁에 의거할것이 아니라 계급협조에 의거하여 로씨야민주당을 창건》하려고 한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특권을 가진 지식계》(스트루웨씨가 진짜상류사회의...노복들이 하다싶이 우아한 자태로 극진히 공대하는 그 《문화귀족》과 같은)가 《그 사회적지위의 무게》(돈주머니의 무게)를

권대 브레슬라우대회에서 토지문제에 관하여 베벨과 카우츠키 사이에 있었던 그러한 정도의 의견상이²³⁸가 폭로되었던가? 이 세가지 질문에 대하여 스트루웨씨는 대답하여보라.

그리고 독자들에게는 다음과 같이 말하여둔다. 자유주의자산계급은, 언제 어디서나 다음과 같은 수단 즉 제 나라의 사회민주당의자들은 가장 비리성적이고 이웃나라의 사회민주당의자들은 모두 《얕건한 사람들》이라는것을 제 나라의 동행자들에게 믿도록 설득하는 수단을 쓰는것이다. 독일자산계급은 베벨, 카우츠키와 같은 사람들에게 대한 훈계로 프랑스사회주의자들은 《얕건한 사람들》이라고 몇백번이나 말하였다. 그런데 또 프랑스자산계급은 얼마전에 프랑스사회주의자들에 대한 훈계로 베벨을 《얕건한 사람》이라고 하였다. 스트루웨씨여, 이것은 낡은 방법이다! 어떤 낚시로는 어떤애나 무식쟁이밖에 낚지 못한다. 강령 및 전술에 관한 모든 중대한 문제에서 혁명적국제사회민주당이 완전히 일치하다는것은 문젠할 여지도 없는 사실이다.

- ① 《해방》잡지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것인가?》라는 토론(《이스크라》지, 제52호)을 기회주의자에게 순응하는 《중대한 전변》이라고 대단히 요란스럽게 환영하였다는것을 독자들에게 상기시킨다. 《해방》잡지는 로씨야 사회민주당의자들사이의 분렬문제에 관한 단평에서 신이스크라파의 원칙적경향에 특히 찬동하고있다. 《해방》잡지는 《우리의 정치적임무》라는 프로프끼의 소책자에 대하여 그 저자의 사상은 노동자사업파분자인 크리첵스끼, 마르피노브 및 아끼모브가 언젠가 쓰기도 하고 말하기도 한것

이 《비계급적》당에 투입할것이다. 스트루웨씨는 《자산계급이 놀라서 무산계급을 팔아먹고 자유를 위한 사업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급진주의적상투어》가 아무런 가치도 없다는것을 청년들에게 알려주고싶다고 말한다.(우리는 중심으로서 그 소원을 환영한다. 맑스주의적《상투어》에 대한 스트루웨씨의 공격은 이 《상투어》의 정당성을 더없이 확증하고있다. 스트루웨씨여, 아무쪼록 그 훌륭한 계획을 오래동안 계속에 넣어두지 말기를 바란다!)

우리가 논의하고있는 문제에서 중요한것은 그렇듯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어떤 조그마한 정세의 변동에도 예감한 로씨야 자산계급의 대표자가 지금 어떠한 **실천적**구호를 반대하여싸우고있는가 하는 점을 지적하는것이다. 첫째로, 공화주의의 구호와 싸운다. 스트루웨씨는, 이 구호는 《인민대중에게는 리해될수 없으며 그들과는 인연이 없는것》이라고 굳게 믿고있다.(자산계급에게는 리해는 되지만 불리하다고 침부할것을 그는 잊고있다!) 우리는 우리들의 소조와 군중대회에 참가한 노동자들에게서 스트루웨씨가 어떠한 대답을 받는가를 보고싶다! 혹은 노동자는 인민이 아니겠는지? 그러면 농민은? 스트루웨씨의 말에 의하면 농민에게는 《소박한 공화주의》사상(《짜리를 쫓아버리는것》)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자유주의자산계급은 앞으로 **소박한** 공화주의를 대신하여 **의식적공화주의**가 아니라 **의식적군주주의**가 나타나리라고 믿는다! 스트루웨씨여, 그것은 사정여하에 달린것이다. 짜리정부나 자산계급은

과 같은 종류의것이라고 지적하였다.(《전진》지가 발행한 인쇄물 《친절한 자유주의자》를 보라.) 《희망》잡지는 두가지 특제를 문한 마르피노브의 소책자를 환영하였다.(《전진》지 제9호의 단평을 보라.) 마지막으로 《우선 계선을 가르고 다음에 통일하라》는 구《이스크라》지의 낡은 구호에 대한 스타로웨트의 헛차뒤의 불평이 《희망》잡지의 특별한 동정을 받았다.

지주의 토지를 수탈하여 농민의 상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대하여는 반대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그런데 또 로동계급은 그 점에서 농민을 원조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둘째로, 스트루웨씨는 《국내전쟁에서는 공격하는 편이 언제나 옳지 못하다.》고 단언한다. 이 사상은 우에서 지적한 신이스크라파의 경향에 아주 가까운것이다. 우리는 물론 국내전쟁에서 공격하는것이 언제나 유리하다고는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때로는 방어적전술이 **당분간** 필요한 때도 있다. 그러나 스트루웨씨가 내놓은 그러한 논점을 1905년의 로씨야에 적용하는것은 바로 《급진주의적상투어》의 한토막(《자산계급이 놀라서 자유를 위한 사업을 팔아먹는다.》는)을 보여주는것을 의미한다. 오늘날, 전체제도나 반동적세력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는자, 그 공격을 준비하지 않는자, 그것을 선전하지 않는자들은 혁명의 옹호자라는 이름을 가질 자격이 없는자들이다.

스트루웨씨는 《비밀활동》과 《소동》(이것을 《소형적봉기》라고 하면서)이라는 구호를 비난한다. 스트루웨씨는 이 구호나 저 구호나 다 《군중의 접근》이란 견지에서 멸시한다! 우리는 스트루웨씨에게 묻고싶다. 당신은 당신이 극단적혁명주의자가 쓴것이라고 보는 저작, 레컨대 《무엇을 할것인가?》와 같은 저작에서 소동에 대한 선전을 지적할수 있겠는가? 또 《비밀활동》에 관하여 말한다면 레컨대 우리와 스트루웨씨와의 사이에 무슨 큰 차이가 있는가? 우리 쌍방은 다 《비밀리에》로씨야로 발송하여 《해방동맹》이나 로씨야사회민주노동당의 《비밀》단체에 복무하는 《비합법적》신문을 꾸리고있지 않는가? 우리의 로동자대중집회는 흔히 《비밀》리에 열리고있다. 그것은 확실하다. 그러면 해방파제씨의 회의는 또 어떤가? 스트루웨씨여, 경멸할 비밀활동의 경멸할 찬동자들앞에서 당신이 무슨 뽐낼만한것이 있는가?

사실 노동자들에게 무기를 공급하는데는 특별한 비밀공작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는 스트루웨씨가 제법 솔직하게 말하였다. 들어보라, 《무장봉기나 혹은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혁명에 관하여 말한다면 민주주의적강령의 대중적선전에 의하여서만 전반적무장봉기를 일으킬 사회적심리적조건을 창조할수 있다. 그리하여 내가 찬성하지 않는 견해, 즉 무장봉기를 지금 해방투쟁의 불가피한 결과라고 보는 견해에서도 민주주의적개혁의 사상으로써 대중을 교양하는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사업이다.》

스트루웨씨는 문제를 회피하려고 애쓴다. 그는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봉기가 필요하다는데 대해 말할 대신에 봉기의 불가피성에 대하여 말한다. 준비없는 자연발생적이고 분산적인 봉기는 벌써 시작되었다. 그것이 완전무결한 인민무장봉기에까지 발전하리라고 절대적으로 담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혁명세력(투쟁자체를 통하여서만 완전히 측정될수 있는)의 상태, 정부 및 자산계급의 태도와 그 밖에 확실하게 헤아릴수 없는 다른 여러가지 사정여하에 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스트루웨씨가 본 문제를 회피하면서 말하는 즉 구체적인 사건이 발생하는것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는 의미로서의 불가피성에 관하여서는 말할것도 없다. 만일 당신이 참으로 혁명을 옹호하려 한다면 혁명의 승리를 위해서는 봉기가 과연 필요하다, 봉기를 적극적으로 제기하며 선전하며 즉시 정력적으로 그것을 준비하는것이 과연 필요한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 말하여야 한다. 스트루웨씨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할리가 없다. 사실 그는 레킨대 현 혁명의 행정에 있어서 일반선거권의 획득이 불가피하다—이 문제는 정치가들에게 있어서는 논쟁할 여지가 있는, 긴박하지 않은 문제이다—는 문제으로써 일반선거권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이 문제는 민

주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론쟁할 여지조차 없는 문제이다 —를 가리워버리지 않는다. 스트루웨씨는 봉기가 필요하다는 문제를 회피함으로써 자유주의적자산계급의 정치적립장의 내막을 보여준다. 자산계급은 첫째로 전제제도를 타도하기보다는 그것과 타협하기를 즐긴다. 자산계급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무장투쟁을 노동자들에게 밀어맡기려 한다.(이것이 둘째이다.) 여기에 스트루웨씨가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의 **실제적목적**이 있는것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스트루웨씨는 봉기의 필요성에 관한 문제로부터 봉기의 《사회적-심리적》조건들에 관한 문제로, 사전에 《선전》할데 관한 문제로 **뒤걸음친다**. 마치 1848년에, 정부의 무장력에 대한 반격이 문제로 되고있을 때, 운동이 무장투쟁을 《필요로 하게 되었으며》 말로써만 설복하는 방법(준비기에 있어서는 백배나 필요한)이 비속한 자산계급적인 라태성과 비겁성으로 전환되었던 바로 그러한 시기에 프랑크푸르트의회의 자산계급공담가들이 결정서, 선언서 및 결의문 작성과 《광범한 선전》 및 《사회적-심리적조건》의 준비에 몰두하고있던것과 똑같이 스트루웨씨도 지금 **공허한 문구뒤에** 숨어서 봉기에 관한 문제를 회피하고있다. 스트루웨씨는 많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한사코 보려 하지 않는 사실, 즉 혁명시기에는 바로 군중의 정서, 각성 및 신념이 **행동**에서 나타나게 되며 또 사실 나타난다는 점에서 력사상의 일상적, 평시적인 예비시기와 다르다는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준다.

비속한 혁명주의는 말도 역시 하나의 행동이라는것을 리해하지 못한다. 이 명제는 력사**일반**에나 또는 군중의 공공연한 정치적진출이 없는(즉 결코 어떠한 맹동으로도 대체할수 없고 또 인위적으로 일으킬수도 없는 진출) 력사적시기에나 다 론쟁할 여지가 없이 적용된다. 혁명가들의 추미주의는 혁명시기가 시작되고 낡은 《상부구조》가 사처에 금이 생기고 자

기들의 새로운 상부구조를 창조하는 계급 및 대중의 공개적인 정치적인출이 사실로 되고 국내전쟁이 폭발된 때에도 《행동》으로 넘어가라는 **직접적구호**를 제기하지 않고 **이전대로** 《말》에 국한하는것, 《심리적조건》이나 일반적인 《선전》을 구실삼아 행동하려 하지 않는것은 생명이 없는것이며 죽은것이며 궤변이며 심지어는 혁명에 대한 배반이며 변절이라는것을 리해하지 못한다. 프랑크푸르트의 민주주의적사상계급공담가들이야말로 이와 같은 배반 또는 이와 같은 우둔한 궤변의 악명을 영원히 남길 역사적표본이다.

당신들은 비속한 혁명주의와 혁명가들의 추미주의간의 이러한 차이를 로씨야사회민주주의운동의 역사에 의하여 설명하여주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당신들에게 이렇게 설명하여줄터이다. 지나간지가 그리 오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벌써 먼 옛날처럼 생각되는 1901~1902년을 회상하라. 시위운동은 시작되었다. 비속한 혁명주의는 《돌격》을 부르짖었으며(《로동자사업》잡지139), 《피비린 내나는 인쇄물》(나의 기억으로는 베를린에서 나온것 같다.)을 발행하였으며 신문을 통하여 전 로씨야적 선동을 진행하자는 사상을 《문필가의 근성》이니 서재적기절이니 하고 공격하였다(나제즈진).²³⁹ 혁명가들의 추미주의는 그때 그와 반대로 《경제적투쟁은 정치적인선동의 가장 좋은 수단》이라고 고취하였다.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는 어떤 태도를 취하였던가? 그는 이 두 조류를 다 공격하였다. 공공연한 대중적인출은 태일의 일이라는것을 명백하게 보았고 또 보지 않을수 없었던 까닭에 그는 경솔한 행동과 돌격에 대한 고향을 비난하였다.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는 추미주의를 비난하고 또 전인민적무장봉기의 **구호까지도** 직접 제기하였는데 물론 그것은 직접 호소(스트루웨씨는 그때의 우리의 언론가운데서 《소동》에 관한 호소를 발견하지 못할것이다.)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필연적결론**이라는 의미에서, 《선전》(스트루웨씨는 이런 《선전》을 이제야 비로소 생각해냈으니 우리의 존경하는 스트루웨씨는 항상 몇해씩 뒤떨어진다.)이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당황망조한 소장인적자산계급대표자들이 지금 《구슬프게 때에 맞지 않게》 떠들고있는 그 《사회적-심리적조건》을 준비하기 위한 의미에서 제기한것이다. **그때에는** 선전과 선동, 선동과 선전이 객관적정황에 의하여 사실상 최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그때에는** 전국적정치신문의 발간을 위한 사업이 봉기의 준비사업의 핵심으로 제기될수 있었으며(그리하여 《무엇을 할것인가?》에 제기되었다.) 또 그것은 주간으로 발행되어도 매우 리상적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때에는** 직접적무장진출 대신에 대중적선동이라는 구호, 경솔한 행동 대신에 봉기의 사회적-심리적조건의 준비라는 구호가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의 유일정확한 구호였다. **지금에는** 이러한 구호는 사변에 뒤떨어지게 되었으며 운동은 앞으로 전진하였다. 이 구호들은 다만 해방과의 위선과 신이스크라파의 추미주의를 가리우기 위하여서만 적합한 폐물로, 누데기로 되었다!

혹은 내가 잘못 생각하는것인가? 혹은 혁명이 아직 시작되지 않지 않았는가? 여러 계급들이 공공연하게 정치적으로 진출할 시기가 아직 오지 않았는가? 국내전쟁은 아직 발생되지 않았고 따라서 지금 무기의 비판이 비판의 무기의 **필연적**이고 의무적인 상속자, 후계자, 유언 집행자, 못다한 사업의 완성자로 되어서는 안되지 않는가?

이 문제들에 대답하려면 자기의 주위를 살펴보며 서재에서 머리를 내밀고 거리를 내다보라. 정부자체가 적수공권의 무고한 공민을 도처에서 대량적으로 쏘아죽이면서 벌써 국내전쟁을 시작하고있지 않는가? 무장한 흑백단들이 전체정부의 《몬거》로서 활동하고있지 않는가? 자산계급야—심지어 자산계

답도—민병의 필요성을 의식하고있지 않는가? 극히 온화하고 단정한 스트루웨씨 자신이 《혁명적행동의 공개성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는것과 같은!] 지금에는 인민대중에게 교육적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이다.》라고 말하고있지 않는가?(가련하게도 그저 변명을 위해서 말하고있는데 지나지 않지만!)

온전한 눈을 가진 사람은 혁명의 옹호자들이 무장봉기에 관한 문제를 지금 설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는데 대하여 의심을 품을수 없다. 대중에게 다소라도 영향을 줄수 있는 자유로운 출판물들에 발표된 이 문제에 대한 세가지 제기를 보라.

첫째 제기. 그것은 로씨야사회민주노동당 제3차대회의 결정서^①이다. 이 결정서는 일반적민주주의혁명운동이 이미 무장봉기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소리높이 선언하였다. 봉기를 위하여 무산계급을 조직하는것은 당의 극히 중요하고 주요하고 필요한 임무의 하나로 일정에 올라있다. 무산계급을 무장시키고 또 봉기를 직접 령도할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장 강유력한 조치를 취할것이 위임되고있다.

둘째 제기. 그것은 《해방》잡지에 게재된 《로씨야혁명주의자들의 령수》(구라파자산계급의 권위있는 기관지인 《프랑크푸

① 그 결정서의 전문은 아래와 같다.

《(1) 무산계급은 그 처지로 보아 가장 선진적이고 또 유일하게 철저한 혁명계급이다. 그렇기때문에 그는 로씨야의 일반적민주주의혁명운동에서 령도적역할을 놀아야 할 사명을 지니고있다는것,

(2) 이 운동은 지금 벌써 무장봉기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는것,

(3) 무산계급은 불가피적으로 이 봉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될것이며 또 그의 참가는 로씨야혁명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리라는것,

(4) 무산계급은 사회민주노동당(사상적으로만이 아니라 실천적으로도 무산계급의 투쟁을 령도하는)의 기치밑에서 통일된 독립적정치체력으로 단결되는 때에야 이 혁명에서 령도적역할을 할수 있다는것,

르트신문》220이 얼마전에 스트루웨 씨를 이렇게 불렀다.) 또는 로씨야의 진보적자산계급의 수령이 쓴 그 원칙적문이다. 그는 봉기의 불가피성에 관한 의견에 찬성하지 않는다. 비밀활동과 소동은 분별없는 혁명주의의 특수한 수단이다. 공화주의는 사람을 질겁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무장봉기는 사실상 기술문제에 지나지 않으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사업》은 대중적선전과 사회적-심리적조건을 준비하는것이다.

셋째 제기. 그것은 신이스크라파의 대표회의의 결정서이다. 우리의 임무는 봉기를 준비하는것이다. 계획적인 봉기는 불가능하다. 봉기에 유리한 조건은 정부의 혼란과 우리의 선동 및 조직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다. 그때에야 비로소 《기술적전투준비가 다소간 중대한 의의를 가질수 있다》.

그뿐인가? 그뿐이다. 무산계급의 신이스크라파령도자들은 봉기가 필요하게 되였는가 하는것을 아직 모르고있다. 그들은게는 직접적투쟁을 위하여 무산계급을 조직하는 임무가 절박한가 하는것도 아직 명백하지 않다. 가장 강유력한 조치를 취

(5)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만 무산계급은 자산계급민주주의적 로씨야의 유산계급을 반대하고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의 가장 유리한 조건을 보장할수 있다는것, —

이상과 같은것을 고려하여 로씨야사회민주노동당 제3차대회는 무장봉기에 의한 전제제도와의 직접적투쟁으로 무산계급을 조직하는 임무가 현재의 혁명시기에 있어서 당이 하여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임무의 하나라고 인정한다.

그러므로 대회는 당의 모든 조직에 아래와 같은것을 위임한다.

(1) 탁쳐을 무장봉기의 정치적의의뿐아니라 그 실천적, 조직적 측면도 선전 및 선동의 방법으로써 무산계급에게 설명하여줄것,

(2) 선전과 선동 사업에서 봉기의 시초와 그 진행과정에 중요한 의의를 가질수 있는 대중적정치파업의 역할을 설명하여줄것,

(3) 무산계급을 무장시키며 그리고 무장봉기계획 및 그 직접적령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가장 강유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당의 일군들로 특별소조를 조직할것.》(1907년판에 가한 저자의 주—편집자)

하라고 호소할 필요는 없고 그 조치가 어떤 조건하에서 《다소 간 중대함》 의의를 가질《수 있다》는것을 대체적으로 설명하는것이 훨씬 중요하다.(1902년이 아니라 1905년에)...

신이스크라파의 동지들, 마르띠노브주의에로의 전향이 당신들을 어디로 전락시키었는지 이제는 알았는가? 당신들은 당신들의 정치철학이 이미 해방파의 철학을 되풀이하는것으로 되었다는것을 리해하는가? 당신들이 이미 군주주의적자산계급의 뒤꼬리를 따르게 되었다는것(당신들의 의사와는 반대로 그리고 당신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을 리해하는가? 당신들이 지나간 일을 반복하며 궤변을 일삼고있을 때에 당신들은—뽀뜨르 스트루웨의 잇을수 없는 론문에 있는 잇을수 없는 말을 빌다면—《혁명적행동의 공개성이 지금에는 인민대중에게 교육적영향을 주는 가장 중요한 조건중의 하나》라는 이 사실을 보지 못하였다는것이 지금 명백하여졌는가?

9

혁명시기에 극단적반대당으로 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 립시정부에 관한 결정서로 돌아가자. 우리는 신이스크라파의 전술이 혁명을 추진시키는데가 아니라—그들은 자기의 결정서로써 혁명을 추진시킬 가능성을 보장하고싶었겠지만—후퇴시킨다는것을 이미 지적하였다. 우리는 그들의 그 전술이 야말로 불철저한 자산계급과의 투쟁에서 사회민주당을 **속수무책이 되게** 하며 또 자산계급적민주당에 용해될 위험성을 예방하지 못한다는것을 밝히었다. 결정서의 그릇된 전제에서 다음과 같은 그릇된 결론이 나오는것은 당연한 일이다. 즉 《그러므로

사회민주당은 정권을 탈취하거나 또는 립시정부내에서 권력을 나누는데 목표를 둘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혁명적반대당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목표를 제기한 이 결론의 첫 절반을 보라. 신이스크라파는 짜리제도에 대한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사회민주당의 활동목표로 하고있는가? 하고있다. 그들은 결정적승리의 조건을 올바르게 규정하지 못하고 《해방파》의 규정에 미혹되어있지만 그래도 그들은 상기의 목표를 내세우고있다. 다음으로 그들은 립시정부를 봉기와 련결시키는가? 그렇다. 그들은 립시정부는 《승리한 인민봉기의 결과로 생긴다.》고 말하면서 그 두가지를 직접 련결시킨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봉기를 령도하는것을 자기의 목표로 하는가? 그렇다. 그들도 스트루웨씨와 마찬가지로 봉기를 필요하고 절박한것이라고 인정하는것을 회피하기는 하지만 그러면서도 스트루웨씨와는 달리 《사회민주당은 그것(봉기)을 자기의 영향과 령도에 복종시키며 로동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하기에 힘쓴다.》고 말한다.

이것은 그야말로 앞뒤가 잘 맞아떨어지고있지 않는가? 우리는 무산계급대중의 봉기나 비무산계급대중의 봉기를 다 우리의 영향과, 우리의 령도에 복종시키며 그것을 우리자신의 리익에 맞게 리용하는것을 우리의 목표로 한다. 따라서 우리는 봉기당시에는 무산계급뿐아니라 혁명적자산계급과 소자산계급(《비무산계급적집단》)까지도 다 령도하는것을, 다시말하면 사회민주당과 혁명적자산계급과의 사이에 봉기의 령도권을 《나누는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우리는 립시정부(《승리한 인민봉기의 결과로 생기는》 립시정부)를 반드시 세우게 될 봉기의 승리를 목표로 하고있다. 그러므로 ... 그러므로 우리는 정권을 탈취하거나 또는 립시혁명정부내에서 권력을 나누는데 목표를 두어서는 안된다!!

우리의 친구들은 도무지 앞뒤를 잘 맞추지 못한다. 그들

은 봉기에 대하여 말하기를 회피하는 스트루웨씨의 견해와 이 절박한 임무에 착수하라고 호소하는 혁명적사회민주당의 견해와의 사이에서 동요한다. 그들은 임시혁명정부에 참가하는것은 모두다 무산계급에 대한 배반이라고 원칙적으로 비난하는 무정부주의와 봉기에 대하여 사회민주당이 명도적영향을 준다는 조건하에서 임시혁명정부에 참가할것을 요구하는 맑스주의①와의 사이에서 동요한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독자적립장도 없다. 즉 짜리정부와 타협하기 바라며 그리하여 봉기문제를 회피하거나 얼버무려넘기지 않을수 없는 스트루웨씨의 립장도 없고 또 《우로부터》 행동하는것과 자산계급혁명에 참가하는것을 모두다 비난하는 무정부주의자의 립장도 없다. 신이 스크라파는 짜리정부와의 타협과 짜리제도에 대한 승리를 혼동한다. 그들은 자산계급혁명에 참가하려고 한다. 그들은 마르피노브의 《두가지 독재》보다는 다소간 전진하였다. 그들은 지어 인민의 봉기를 명도하는것까지 동의하고있다. 그러나 그것은 봉기가 승리한 직후에(혹은 어쩌면 승리하기 바로 직전에?) 곧 그 명도를 포기하기 위해서이다. 다시말하면 승리의 과실을 리용하려는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실을 몽땅 자산계급에게 넘겨주기 위한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이른바 《봉기를 로동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리용한다.》는것이다. ...

이 혼란에 대하여는 더 길게 말할 필요가 없다. 그보다도 《극단적인 혁명적반대당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 말에 의하여 표현되는 이 혼란의 유래를 고찰하여보는것이 더 유리할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혁명적국제사회민주당운동의 원리의 하나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옳은 원리이다. 그것은 이미 의회제가 실시되고있는 나라들에서 수정주의나 기회주의에 대한

① 《무산자》지, 제3호 《임시혁명정부에 관하여》, 제2편을 보라. (《레닌전집》, 한문판, 제8권, 441~449페이지—편집자)

모든 반대자들의 습관어로 되었다. 그것은 《의회광신병》, 밀레랑주의, 베른슈타인주의¹¹⁵, 뚜라띠식의 이딸리아개량주의에 대한 정당하고 필요한 반격으로서 일반에게 이미 공인된 것이다. 우리의 선량한 신이스크라파는 이 훌륭한 원리를 암기하여가지고 그것을 열심히 적용하는데... 전혀 시기에 맞지 않게 적용한다. 아무 의회도 존재하지 않는 정황에 부합되게 작성한 결정서에서 의회투쟁의 범주들을 제기하고있다. 아무도 봉기에 대하여 신중하게 말하지 않는 그러한 정치적형세의 반영이고 표현인 《반대당》이라는 개념이 봉기가 시작되었고 또 혁명의 옹호자들이 그것의 정도에 관하여 생각하며 말하고있는 그러한 형세에 무의미하게 적용되고있다. 봉기가 승리한 경우에는 **우로부터** 행동하는것이 필요하다는 문제를 혁명이 제기한 **바로 그때에** 종전과 같이, 즉 다만 《아래로부터》만 행동하는 데 **남아있겠다**는 소원이 굉장하고 요란스럽게 진술되고있다.

그렇다, 우리의 신이스크라파는 아주 재수가 없다! 그들은 올바른 사회민주주의적원리를 정식화하는 때에도 그것을 바로 운용할줄을 모른다. 그들은 혁명이 이미 개시된 시기에는, 의회가 없으며 국내전쟁이 진행되고있으며 봉기가 폭발되고있는 정세하에서는 의회투쟁에 관한 여러가지 개념과 술어가 다 그 대립물로 변하며 전화한다는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그들은 위에서 말한 정세하에서는 수정안은 가두시위운동을 통하여 제기되며 질문은 무장한 공민의 공격적행동을 통하여 제기되며 정부에 대한 반대는 폭력에 의한 정부의 전복을 통하여 실현된다는것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바로 우리 나라의 민간서사시에 나오는 유명한 주인공이 그의 그 훌륭한 충고를 부적당한 장면에서 되풀이한것처럼 우리의 마르띠노브숭배자들도 직접적군사행동이 시작되었다는것을 그들자신도 확인하는 바로 그러한 경우에 평화적의회투쟁

에 관한 설교를 되풀이하고있다. 《혁명의 결정적승리》 및 《인민봉기》에 대한 제시로 시작되는 결정서에서 《극단적인 반대당》이라는 구호가 그럴듯하게 제기되는것보다 더 가소로운 일은 없을것이다! 제씨들, 생각하여보라. 봉기시기에 《극단적인 반대당》으로 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정부를 폭로한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를 전복한다는 뜻인가? 그것은 정부를 반대하여 투표한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개적전투에서 정부의 무력을 격파한다는 뜻인가? 그것은 정부의 국고금보충을 거부한다는 뜻인가, 그렇지 않으면 봉기의 수요, 노동자와 농민의 무장, 헌법제정회의의 소집에 돌리기 위하여 그 국고금을 혁명적으로 탈취하자는 뜻인가? 제씨들, 당신들은 《극단적인 반대당》이라는 개념은 다만 소극적행동, 즉 폭로, 반대투표, 거부 등을 표현할뿐이라는것을 이해하기 시작하였는가? 왜 그런가? 그것은 이 개념은 오직 의회투쟁에만, 더군다나 아무도 《결정적승리》를 직접적투쟁의 목표로 제기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의 의회투쟁에만 관계되기때문이다. 정치적으로 압박받는 인민의 단호한 공격이 승리를 위한 결사적투쟁의 모든 전선에서 개시되는 그 순간부터는 이 면에서 사태가 근본적으로 변한다는것을 당신들은 이해하기 시작하였는가?

노동자들은 우리에게 묻는다. 긴박한 봉기사업을 힘차게 진행해야 하는가? 이미 시작된 봉기의 승리를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그 승리를 어떻게 리용해야 하는가? 승리한 그때에는 어떠한 강령을 실현할수 있으며 또 실현하여야 하는가? 맑스주의를 심화하고있는 신이스크라파는 대답한다. 극단적인 혁명적반대당으로 남아있어야 한다. ...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용사들을 속물적근성의 명물들이라고 부른것이 과연 옳지 않았던가?

10

《혁명적품문》과 무산계급 및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독재

신이스크라파의 대표회의는 신《이스크라》지가 취한 부정부주의적립장(《아래와 우로부터》가 아니라 다만 《아래로부터》 행동하는)을 고수하지 못하였다. 봉기는 허용하면서도 승리하는 것과 임시혁명정부에 참가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것은 너무나 황당무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결정서는 이 문제에 대한 마르피노브와 마르토프의 해답에 보류조건과 제한을 가하였다. 결정서의 다음부분에 서술된 그 보류조건을 살펴보기로 하자.

《이 전술[《극단적인 혁명적반대당으로 남아있어야 한다.》는]은 물론 전적으로 봉기의 파급과 정부의 와해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떤 도시에서나 어떤 지방에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정권을 탈취하며 혁명적품문을 설립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를 조금도 배제하지 않는다.》

만일 그렇다면 그것은 즉 다만 아래로부터뿐만 아니라 우로부터 행동하는 것도 원칙상 허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즉 《이스크라》지(제93호)에 실린 마르토프의 유명한 풍자소평에 제기된 론단이 부정되고 《아래로부터》의 행동뿐만 아니라 《우로부터》의 행동도 허용한다는 《전진》지의 전술이 옳다고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정권탈취(비록 부분적, 일시적 등등의 것일지라도)에는 단지 사회민주당만이, 무산계급만이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 그것은 민주주의혁명에 리해관계가

있고 또 이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는것은 무산계급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결정서의 첫머리에 쓰여있는바와 같이 봉기는 《인민》적이고 또 이 봉기에는 《비무산계급적집단》(봉기에 관한 대표회의파의 결정서의 표현), 즉 자산계급도 참가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곧 사회주의자들이 소자산계급과 함께 립시혁명정부에 참가하는것은 그 어떤것을 막론하고 모두 다 로동계급에 대한 배반이라는 원칙이 《전진》지가 바라는바와 같이 대표회의에 의하여 포기되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배반》은 그것을 구성하는 행동이 부분적, 일시적, 지방적 등등이라 하여 배반으로 되지 않는것이 아니다. 다시말하면 립시혁명정부에 참가하는것을 비속한 쇼베스주의와 동일시하는 견해는 《전진》지가 바라는바와 같이²⁴⁰ 대표회의에 의하여 포기되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정부는 그 권력이 여러 도시에가 아니라 한 도시에만, 여러 지방에가 아니라 한 지방에만 미친다고 하여, 그리고 또 그 정부에 어떤 명칭을 달았다 하여 정부가 아닌것이 아니다. 이리하여 신《이스크라》지가 제공하려고 한 문제의 원칙적제기는 대표회의에 의하여 포기되었다.

이제는 원칙적으로 용인되는 혁명정부의 성립과 그 정부에의 참가에 대하여 대표회의가 제기한 제한이 합리한가를 보기로 하자. 《일시적》(《эпизодический》)이라는 개념과 《림시적》(《временный》)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는 모르겠다. 아마도 여기서는 다만 명백한 사상의 결여를 외국말로나 《새로운》 말로써 가리우려는것 같다. 이것은 《더 심오한것》 같아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더 애매하고 혼란할 따름이다. 어떤 도시나 지방에서 부분적으로 《정권을 탈취하는것》이 《적합》하다는것은 전국적립시혁명정부에 참가하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1월9일사건이 발생한 빼쎈르부르그와 같은 지방도 하나의 《도시》가 아닌가? 많은 나라들보다도 더 큰 잭까즈와 같은

지방도 하나의 지역이 아닌가? 한 지역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한 도시에 있어서라도 《정권을 탈취하는》 때에 감옥, 경찰, 국고 등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문제(한때 신《이스크라》지를 난처하게 한 문제)가 우리앞에 나서고있지 않는가? 물론 힘이 부족하고 봉기의 승리가 완전하지 못하고 그 봉기가 결정적승리를 얻지 못한 경우에 부분적 도시적 및 기타의 립시혁명정부가 생길수 있다는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제씨들, 대체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당신들 자신이 결정서의 첫머리에서 《혁명의 결정적승리》, 《승리한 인민봉기》를 말하고있지 않는가?? 언제부터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무정부주의자들의 일, 즉 무산계급의 주의력과 목표를 분산시키고 그들을 보편적이며 통일적이며 완전하고 전면적인 투쟁에로가 아니라 《부분적》인 투쟁에로 끌여가는 일을 도맡게 되였는가? 당신들은 한 도시에서의 《정권탈취》를 예상하면서 그것은 《봉기의 파급》을 위하여서라고 말하고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을 다른 도시에로의 파급을 위해서라고 대담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아가서는 모든 도시에로의 파급이라고도 대담히 기대할수 있지 않겠는가? 제씨들, 당신들의 결론은 당신들의 전제와 마찬가지로 확실하지 못하고 우연적이고 모순되고 혼란하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3차대회는 립시혁명정부일반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상세하고도 명확한 대답을 주었다. 그 대답에는 모든 부분적인 립시정부까지도 포괄하고있다. 그런데 대표회의의 대답은 문제의 **한부분**을 인위적으로 제마음대로 갈라냄으로써 문제전체를 **도피하고**(성과는 없지만) 혼란을 가져왔을뿐이다.

《혁명적품문》이란 무슨 뜻인가? 이 개념은 《립시혁명정부》와 다른것인가? 만일 다르다면 어디가 다른가? 대표회의파의 제씨들자신도 그것을 모르고있다. 그들의 혁명적사상은 혼

란하여 결국은—늘 보는바와 같이— **혁명적공담**만을 늘어놓는다. 그렇다, 사회민주당대표들의 결정서에 《혁명적공문》이란 말을 쓰는것은 혁명적공담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다. 맑스는 **낡아빠진 과거의 《매력적인》** 술어로 미래의 임무를 가리워버리는 그와 같은 공담을 한두번만 비난하지 않았다. 력사에서 이미 역할을 다한 매력적인 술어는 이러한 경우에는 공허하고 유해한 장식품과 어린애들의 장난감으로 변한다. 우리는 로동자들과 전체 인민들에게, **무엇때문에** 우리가 임시혁명정부를 수립하려 하는가? 만일 앞으로 이미 시작된 인민봉기가 승리로 끝나서 우리가 정권에 결정적영향을 주게 되는 때에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개혁을** 실현할것인가 하는데 대하여 분명하고 명확한 개념을 주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치적평도자들앞에 제기되는 문제이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3차대회는 이러한 개혁에 관한 완전한 강령 즉 우리 당의 최저강령을 내놓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하여 심분 명확하게 대답하였다. 그런데 《공문》이란 말은 아무 대답도 주지 않고 다만 어떤 멀리 들리는 소리나... 텅 빈 소리로 머리를 어지럽혀놓을 따름이다. 이를테면 1871년의 파리공문이 우리에게 귀중할수록 파리공문의 오유와 특수 조건을 분석함이 없이 그것을 증거로 인용하여 어물어물 넘겨 버리는것은 더욱 용허할수 없는것이다. 이렇게 하는것은 공문의 매개 행동을 덮어놓고 숭배(1874년의 블랑끼파의 《선언》에서)하여 앵겔스에게 조소를 당한 블랑끼파의 어리석은것241을 되풀이하는것을 의미한다. 만일 로동자가 대표회의파의 결정서에 제기된 이 《혁명적공문》에 관하여 질문한다면 대표회의파는 무엇이라고 말할것인가? 그들은 그저 력사상 이러한 이름으로 불린 로동자정부가 있었는데 그 정부는 그때에 민주주의혁명의 요소와 사회주의혁명의 요소들을 분별할줄 몰랐고

또 분별할수도 없었으며 공화제를 위한 투쟁의 임무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임무를 혼동하였으며 베르싸이유에 대하여 강유력한 무력공격을 가해야 할 임무를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프랑스로행을 점령하지 않은 과오를 범하였다는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더 말하지 못할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당신들이 이 문제에 대답할 때 빠리품문을 가지고 말하든 어떤 다른 품문을 가지고 말하든간에 당신들은 반드시 **우리의 정부가 본받아서는 안될** 그러한 정부였다고 대답할것이다. 더 말할것없이 훌륭한 대답이다! 그러나 이처럼 당의 실천적강령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결정서에서 쓸데없이 력사강의를 하는것은 독경쟁이식의 궤변과 혁명자로서의 무능을 말해주는것이 아닌가? 이것은 바로 당신들이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려고 애쓰다가 성공하지 못한 그 오유, 즉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혼동한(어느《품문》도 이 량자를 똑똑히 분별하지 못한) 오유를 보여주는것이 아닌가?

림시정부(적당치 않게 품문이라고 불리운)의 목표로 선포된것은 《전적》으로 봉기를 과급시키는것과 정부를 와해시키는것이다. 《전적》이란 말은 문자 그대로 다른 모든 임무를 배제한다는것이며 《오직 아래로부터》라는 황당한 이론의 부활인것이다. 이같이 다른 모든 임무를 배제하는것은 또한 근시안이며 경솔한 생각인것이다. 《혁명적품문》 즉 혁명적정권은 그것이 한 도시에 국한되어있을지라도 불가피적으로 **모든** 국가 사무를(비록 림시적, 《부분적, 일시적》일지라도) 수행해야 하는데 그것을 눈을 감고 보지 않으려는것은 극히 우둔한 일이다. 그 정권은 8시간로동제를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며, 로동자에 의한 공장감독제를 세워야 하며, 무료의무교육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재판관의 선거제를 실시하여야 하며, 농민위원회를 설립하여야 하는 등등—한마디로 말하면 반드시 일련

의 개혁을 실시하여야 할것이다. 이러한 개혁을 《봉기의 파급을 촉진한다.》는 개념에다 끌어넣는것은 글장난을 하는것이며 완전히 명백해야 할곳을 고의로 더 애매하게 하는것이다.

신이스크라파의 결정서의 결말부분은 우리 당내에 다시 되살아난 《경제주의》의 원칙적경향을 비판하기 위한 새로운 자료를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에서 말한것을 다소 다른 각도로부터 실증하여준다.

결정서의 그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단 하나의 경우에만—즉 사회주의를 실현할 조건이 이미 상당히(?) 성숙된 서구라파의 선진국들에 혁명이 파급된 경우에만—사회민주당은 자기가 출선하여 정권을 탈취하며 또 정권을 될수록 오래동안 자기수중에 유지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로씨야혁명의 국한된 역사적한계가 현저히 넓어질수 있으며 사회주의개혁의 길에 들어설 가능성이 나타날수 있다.》

사회민주당은 혁명의 전 기간을 통하여 그 혁명행정에서 차례차례로 바뀌우는 모든 정부에 대하여 극단적인 혁명적반대당의 입장을 견지하는것을 자신의 전술을 세우는 기초로 삼는만큼 만일 정부의 권력이 자기의 수중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을 리용할 준비를 가장 잘할수 있는것이다.》

여기에 있는 기본사상은 《전진》지가 재삼 정식화한 그 사상이다. 《전진》지는 이렇게 썼다. 우리는 민주주의혁명에서의 사회민주당의 완전한 승리 즉 무산계급과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독재물(마르띠노브가 두려워하는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 하면 이러한 승리는 구라파를 쫓기시킬 가능성을 우리에게 주며 구라파의 사회주의적무산계급이 자산계급의 명에서 벗어나면 되돌아서서 우리의 사회주의혁명의 수행을

도와줄수 있기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상이 신이스크라파의 서술에 의하여 얼마나 잘못 고쳐졌는가를 보라. 우리는 그 세부적인 대목, 케컨대 정권탈취를 해로운 전술로 여기는 의식적 정당의 수중에 정권이 《들어올》수 있다는 잠꼬대같은 가설이라든가, 구라파에는 사회주의를 실현할 조건이 상당한 정도로 성숙된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성숙되었다는 점이라든가, 우리 당의 강령은 아무런 사회주의적개혁도 알지 못하고 다만 사회주의적혁명밖에 모른다고 하는 등에 관하여서는 더 언급하지 말기로 하자. 이제 《전진》지의 사상과 대표회의결정서의 사상간에 존재하는 주요하고 근본적인 차이를 보기로 하자. 《전진》지는 로씨야의 혁명적무산계급에게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승리하며 이 승리를 리용하여 혁명을 구라파에 파급시켜야 한다는 적극적임무를 제시하였다. 결정서는 우리의 《결정적승리》(신이스크라파의 의미에서가 아닌)와 구라파혁명과의 이 련계를 리해하지 못하였으며 그리하여 무산계급의 임무에 대하여서나 무산계급의 승리의 전망에 대하여 말하는것이 아니라 《만일 혁명이 파급된 경우...》라고 일반적가능성중의 하나에 대하여 말하였다. 《전진》지는 사회발전의 현 단계에 즈시 실현할수 있는것은 무엇이며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의 민주적전제조건으로서 맨먼저 실현하여야 할것은 무엇인가를 고려하면서 무산계급의 리익을 위하여 어떻게 《정부의 권력을 리용》할수 있고 또 리용하여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이 제시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3차대회의 결정서에 기입되었다.) 결정서는 《리용할 준비를 할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할수 있으며 어떻게 준비하며 어떠한 리용인가를 말하지 못하고 여기에서도 절망적으로 뒤흔리를 따라가고있다. 우리는 케컨대 신이스크라파가 당내의 령도적지위를 《리용할 준비를 할수 있다》는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

는 지금까지 그것을 리용하려는 그들의 시도와 준비가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화시킬 가망을 주지 않는다는데 있다. …

《전진》지는 《정권을 자기수중에 유지할》 실제적 《가능성》은 바로 무산계급 및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독재에, 모든 반혁명세력을 압도할만한 무산계급과 농민군중의 련합된 력량에 민주적개혁면에서의 이 두 계급의 리익의 필연적일치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였다. 대표회의의 결정서는 여기에서도 문제를 회피하기만 하고 아무런 긍정적인것도 주지 않는다. 로씨야에서 정권을 유지할 가능성은 필연코 로씨야자체의 사회적 력량의 구성, 로씨야에서 지금 진행되고있는 민주주의혁명의 조건에 의하여 제약되지 않을수 없다. 구라파에서의 무산계급의 승리(혁명이 구라파에 파급되는것과 무산계급의 승리와외 사이에는 아직 약간의 거리가 있다.)는 결정코 로씨야자산계급의 결사적인 반혁명적반항을 야기하게 될것이 아닌가—그런데 신이스크라파의 결정서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3차대회의 결정서에서 그 의의가 평가된 이 반혁명적세력에 대하여 한마디도 제기하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공화제와 민주제를 위하여 투쟁할 때 무산계급이외에 농민에게도 의거하지 못한다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은 가망이 없을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 정권을 유지하는 일이 가망없는것이 아니라면, 만일 《짜리제도에 대한 혁명의 결정적승리》가 그러한 가능성을 조성해준다면 우리는 이 가능성을 지적하고 그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전화시킬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며 혁명이 구라파에 파급되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서뿐아니라 혁명을 구라파에 파급시키기 위하여서도 실천적구호를 제기하여야 한다. 사회민주당내의 추미주의자들이 《로씨야혁명의 국한된 력사적한계》를 제기하는것은 다만 이 민주주의혁명의 임무와 이 혁명에서의 무산계급의 선진적역할에 대한 리해가 매우 불충분하다는것을 가리

우기 위해서일따름이다!

《무산계급 및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독재》라는 구호에 대한 반대의견의 하나는 독재는 《통일된 의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이스크라》지, 제95호) 무산계급과 소자산계급 사이에는 통일된 의지가 있을수 없다는것이다. 이 반대의견은 성립될수 없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은 반대의견은 《통일된 의지》란 이 개념의 추상적, 《형이상학적》 해석에 근거하고있기때문이다. 의지가 어떤 점에서는 통일되나 다른 점에서는 통일되지 않는 일은 흔히 있다. 사회주의문제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통일된 의지가 없다고 하여 민주주의문제와 공화제를 위한 투쟁에서도 통일된 의지가 있을수 없다고는 할수 없다. 이 점을 망각하는것은 바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 사이에 있는 론리적, 역사적 차이를 망각하는것으로 된다. 이 점을 망각하는것은 민주주의혁명의 전인민적성격을 망각하는것으로 된다. 《전인민적》인 이상 그것은 바로 이 혁명이 전 인민의 수요와 요구를 실현한다는 의미에서 《통일된 의지》도 있게 된다. 민주주의의 한계를 넘어서면 무산계급과 농민적자산계급간의 의지의 통일은 운운할수 없는것이다. 그들간의 계급투쟁은 불가피한것이다. 그러나 그 투쟁은 민주주의공화제의 기초우에서는 **사회주의를 위한 가장 심각하고 가장 광범한 인민적투쟁**으로 될것이다. 무산계급과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독재는 세상의 모든 사물과 마찬가지로 과거와 미래가 있다. 이 독재의 과거는 전제제도, 농노제도, 군주제도, 특권제도이다. 이 과거와의 투쟁, 즉 반혁명과의 투쟁에서는 무산계급과 농민의 《의지의 통일》이 가능하다. 왜냐 하면 여기에는 리익의 일치가 있기때문이다.

그 미래는 사적소유를 반대하는 투쟁, 기업주에 대한 임금로동자의 투쟁,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이다. 여기에서는 의지

의 동일이 불가능하다^①. 그때는 우리앞에 전제제도로부터 공화제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소자산계급적민주공화제로부터 사회주의로 나아가는 길이 놓여있게 된다.

물론 구체적인 역사적환경에서는 과거와 미래의 요소가 서로 엉켜있어 전후 두갈래 길이 서로 교차된다. 임금로동 및 사적소유에 대한 임금로동의 투쟁은 전제제도하에도 있으며 지어는 농노제시대에서도 싸르기 시작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발전의 큰 단계들을 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구분하는데 조금도 방해되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자산계급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은 전혀 다른것이라고 인정하며 우리는 모두 이 두 혁명을 엄격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을 무조건적으로 단호히 주장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두 혁명의 개개의 부분적요소가 역사상에서 서로 엉키여있다는 사실을 부인할수 있는가? 구라파의 민주주의혁명시대에 많은 사회주의운동과 사회주의적시도가 있지 않았는가? 그리고 구라파에는 미래의 사회주의혁명에서 수행하여야 할 민주주의적성격을 띤 일들이 아직도 수다하게 남아있지 않는가?

사회민주당의자들은 무산계급이 가장 민주주의적이고 공화주의적인 자산계급이나 소자산계급에 대해 불가피적으로 사회주의를 위한 계급투쟁을 진행하게 된다는것을 언제나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의심할바없는것이다. 이로부터 사회민주당은 독자적이고 계급성이 매우 엄격한 독립적당이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로부터 우리가 자산계급과 《함께 공격하는》 행동의 일시적성격과 우리가 《동맹자를 적처럼》 엄격히 감시할 필요성 등등의 결론이 나온다. 이 모든것 역시 조금도

① 자유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의 더욱 광범하고 더욱 급속한 자본주의의 발전은 불가피적으로 의지의 동일을 재빨리 증식시킬것이며 반혁명세력과 반동세력이 재빨리 분쇄되면 될수록 이 동일도 더 빨리 증식될것이다.

의심할바없는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비록 일시적이며 립시적일지라도 지금에는 긴박한 그런 임무를 망각, 홀시, 경시하는것은 가소롭고 반동적인것이다. 전제제도와와의 투쟁은 사회주의자들의 립시적이고 일시적인 임무이다. 그러나 이 임무를 홀시하거나 경시하는것은 모두 사회주의를 배반하고 반동세력에 봉사하는것과 같다. 무산계급 및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독재는 물론 사회주의자들의 일시적이고 립시적인 임무에 불과하다. 그러나 민주주의혁명시기에 이 임무를 홀시하는것은 그야말로 반동적이다.

구체적인 정치적임무는 구체적인 환경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모든것은 상대적이며 모든것은 류동하며 모든것은 변화한다. 독일사회민주당은 그 강령에 공화제의 요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거기에서는 공화제문제를 사회주의문제와 실천적으로 갈라놓기가 어려운 정세에 처해있다. (비록 독일에 관하여 앵겔스는 1891년의 에르푸르트강령초안을 평할 때 공화제와 공화제를 위한 투쟁의 의의를 파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지만! 242) 로씨야사회민주당에 있어서는 공화제의 요구를 강령과 선전사업에서 빼버리는 문제가 애당초 생기지 않았다. 왜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공화제문제와 사회주의문제의 불가분적연결에 대하여 더 말할 여지가 없기때문이다. 1898년의 독일사회민주주의자들이 공화제문제를 특히 첫자리에 내세우지 않은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서 놀랄것도, 비난할것도 못된다. 독일사회민주주의자들이 1848년에 공화제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혁명에 대한 직접적인 배반일것이다. 추상적진리는 없다. 진리는 언제나 구체적이다.

로씨야의 전제제도와와의 투쟁이 끝나고—로씨야의 민주주의혁명시기가 지나가버렸을 때—그때에 가서 무산계급과 농민의 《의지의 통일》이요 민주주의독재요 하는것들을 말한다면

그것은 가소로운 일이다. 그때에 가면 우리는 직접 무산계급의 사회주의적독재에 대하여 생각할 것이며 또 그것에 대하여 더 자세히 말할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선진계급의 정당은 짜리제도에 대한 민주주의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위하여 가장 정력적으로 노력하지 않을수 없다. 그런데 결정적승리란 다른것이 아니라 바로 무산계급 및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독재이다.

비고²⁴³

(1) 독자들은 《이스크라》지와 《전진》지의 문전에서 《이스크라》지가 푸라며에게 보낸 엥겔스의 서한을 인용하였다는것을 상기하기 바란다. 엥겔스는 이 서한에서 이탈리아개량주의자의(뒤날의) 지도자에게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혼동하여서는 안된다고 경고하였다. 엥겔스는 1894년의 이탈리아의 정치형세에 대하여 쓸 때 이탈리아의 닥처울 혁명은 사회주의혁명이 아니라 소자산계급적민주주의혁명일것이라고 하였다.²⁴⁴ 그런데 《이스크라》지는 엥겔스가 확립한 원칙으로부터 리탈하였다고 《전진》지를 비난하였다. 이러한 비난은 옳지 못한것이다. 왜냐 하면 《전진》지(제14호)^①는 19세기혁명에서의 세가지 주요력량의 엄밀한 구별에 관한 맑스의 이론은 전반적으로 정확하다는것을 전적으로 승인하였기때문이다. 이 이론에 의하면 낡은 제도 즉 전제제도, 봉건제도, 농노제도를 반대하여나서는것은 (1) 자유주의적대자산계급, (2) 급진주의적소자산계급, (3) 무산계급이다. 첫째의 력량은 립헌군주제를 위하여 싸우는데 불과하며 둘째의 력량은 민주공화제를 위하여 싸우며 셋째의 력량은 사회주의혁명을 위하여 싸운다. 완전한 민주주의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소자산계급의 두

① 《베닌전집》, 한문판, 제8권, 247~262페이지를 보라. —편집자

쟁과 사회주의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무산계급의 투쟁을 혼동하게 되면 사회주의자들은 정치적으로 파산될 위험성이 있다. 맑스의 이 경고는 전적으로 옳은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런 리유에서 <혁명적품문>이라는 구호는 잘못된것이다. 왜냐 하면 역사상에 알려진 품문은 바로 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혼동하였기때문이다. 그와 반대로 무산계급 및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독재라는 우리의 구호는 이런 오유를 범하지 않도록 완전히 보장해준다. 우리의 구호는 민주주의혁명의 한계를 직접적으로 벗어날수 없는 혁명의 자산계급적성격을 무조건 승인하면서도 지금의 이 혁명을 앞으로 추진시키며 이 혁명에다 무산계급에게 가장 유리한 형태를 부여할것을 지향하며 따라서 민주주의혁명을 사회주의를 위한 무산계급의 미래의 승리적투쟁의 목표에 최대한도로 리용할것을 지향한다.

11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3차대회의 약간의 결정서와 <대표회의>의 약간의 결정서와의 간단한 비교

림시혁명정부에 관한 문제는 오늘에 있어서 사회민주당의 전술문제의 중심이다. 대표회의의 기타 결정서들에 대하여는 그렇게 자세히 분석할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 우리는 다만 위에서 분석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3차대회의 결정서와 대표회의의 결정서의 전술적방향에 있어서의 원칙적차이를 확증하는 몇가지 점을 간단히 지적하는데 그치려 한다.

혁명전야에 있어서의 정부의 전술에 대한 태도문제를 보

자. 당신들은 이번에도 로씨야사회민주당 제3차대회의 결정서에서 이 문제에 대한 원만한 답안을 찾아낼것이다. 이 결정서는 특수한 시기의 여러가지 복잡한 조건과 임무를 고려하고있다. 즉 정부의 양보의 허위성을 폭로할것, 각종 《만화적인 인민대표기관》을 리용할것, 로동계급의 절박한 요구(8시간로동제를 비롯한)를 혁명적수단으로 실현할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흑백단에 대하여 반격을 가할것 등도 고려하고있다. 대표회의의 결정서에는 문제가 몇개 부분으로 분산되어있다. 즉 《암흑한 반동세력에 대하여 반격을 가할것》이라는것은 다만 다른 정당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결정서의 리유부분에서 언급되었을뿐이다. 대의기관선거에 참가하는 문제는 짜리제도가 자산계급과 《타협》하는 문제와 갈라놓고 고찰하고있다. 혁명적수단으로 8시간로동제를 실현하라고 호소할 대신에 《경제투쟁에 대하여》라는 요란스러운 제목을 붙인 특별결정서를 가지고(《로씨야사회생활에서 로동자문제가 차지하고있는 중심적지위》에 관하여라는 요란스럽고 매우 몰상식한 말의 뒤를 이어서) 다만 《8시간로동제를 법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는 낡은 선동적구호를 되풀이하고있을따름이다. 오늘에 있어서 이 구호가 불충분하고 뒤떨어졌다는것은 너무나 명료한 사실이므로 구태여 증명할 필요도 없다.

공개적인 정치활동에 관한 문제. 제3차대회는 우리의 활동이 오래지 않아 **근본적으로** 개편될 형편을 타산하고있다. 비밀활동과 비밀기구의 발전을 포기하여서는 결코 안된다. 그것을 포기하는것은 경찰을 위해 봉사하는것이며 정부에 더없이 유리한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공개활동문제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이런 공개활동에 적당한 형식을, 따라서 이 목적을 위하여 특별한 기구—그리 비밀적이 아닌—를 곧 **준비하여야 한다.** 합법적인 또는 절반합법적인 단체들을

리용하여 될수 있는대로 그것을 로씨야에서의 앞으로의 공개적사회민주로동당의 거점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대표회의는 여기에서도 완전한 구호라고는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문제를 분산시키고있다. 특히 합법적저술가의 《배치》에 주의를 돌리라는 조직위원회에 대한 가소로운 위임을 덕없이 내놓고있다. 《로동운동을 협조하는것을 자기의 목적으로 삼는 민주주의적신문들을 자기의 영향하에 종속시키자》고 하는 결정은 황당한것이다. 우리 나라의 모든 합법적자유주의신문들(《해방파》와 거의 다른없는 경향을 가진)은 다 그와 같은 목적을 내세우고있다. 《이스크라》지의 편집부는 어째서 자신이 자기의 충고를 출신적으로 실행하여 《해방》잡지를 사회민주당의 영향하에 종속시키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가? 그들은 우리에게 **당의** 거점을 만들기 위하여 합법적단체를 리용한다는 구호를 줄 대신에 첫째로는 《직업》동맹에 관하여서만 부분적충고를 주고(당원들은 반드시 이 동맹에 참가하여야 한다고), 둘째로는 《혁명적로동자조직》=《형태를 갖추지 않은 조직》=《혁명적로동자구락부》를 평도하라고 충고를 준다. 《구락부》가 어째서 형태를 갖추지 않은 조직으로 되었으며 이런 《구락부》란 도대체 어떠한것인가 하는것은 아무도 모른다. 우리앞에 있는것은 당의 최고기관의 명확한 지령인것이 아니라 저술가들의 어떤 간단한 감상문이나 수필같은것이다. 당이 자기의 모든 사업을 전혀 새로운 토대우에 놓기 시작할때 관한 완전한 설명이라고는 아무것도 찾아볼수 없다.

《농민문제》에 관하여 당대회와 대표회의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제기하였다. 대회에서는 《농민운동에 대한 태도》라는 결정서를 작성하였고 대표회의에서는 《농민속에서의 사업》이라는 결정서를 작성하였다. 전자의 결정서에는 짜리제도와외투쟁의 전인민적리익을 위하여 모든 광범한 혁명적민주주의

운동을 평도할 임무가 첫자리에 놓여있다. 후자의 결정서에는 문제가 다만 특수계층속에서의 《사업》에 귀결되고있다. 전자의 결정서에는 모든 민주적개혁을 실시하기 위하여 혁명적농민위원회를 즉시 조직하라는 중심적, 실천적 선동구호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후자의 결정서에는 《위원회를 조직하라는 요구》가 헌법제정회의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쓰여있다. 무엇때문에 우리는 기어이 이 헌법제정회의를 기다려야 하는가? 그 회의가 과연 헌법제정회의로 될것인가? 혁명적농민위원회를 먼저 또는 동시에 조직하지 않아도 그 헌법제정회의가 견고히 될수 있는가? — 이 모든 문제를 대표회의는 홀시하였다. 대표회의의 모든 결정서 가운데는 우리가 이미 고찰해온 총적사상, 즉 자산계급혁명에서는 우리가 전체 민주주의운동을 평도하거나 그 운동을 독자적으로 수행하려는것을 목표로 내세우지 말고 다만 자기의 전문적사업만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사상이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바로 경제파들이 항상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경제투쟁을 말고 자유주의파는 정치투쟁을 말아야 한다는 럽장에 떨어졌던것처럼 신이스크라파도 그들의 추론의 전반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자산계급혁명에서 썩 물러나 한쪽구석에 공손히 서있어야 하고 자산계급이 이 혁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는 럽장에 떨어졌다.

마지막으로 다른 정당에 대한 태도문제에 관한 쌍방의 결정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수 없다. 로씨야사회민주노동당 제3차대회의 결정서는 자산계급해방운동의 온갖 국한성과 불충분성을 폭로하라고 하였지만 그러나 매차의 대회에서 이런 국한성의 각종 형태를 털거하거나 불량한 자산자를 선량한 자산자와 구별하는 계선을 그으려는 유치한 생각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대표회의는 스파로웨르의 오유를 되풀이하면서 그러한 계선을 찾기에 몰두하며 그 유명한 《러트머스시험

지》의 이론을 전개하고있다. 스타로웨르는 자산계급에게 비교적 엄격한 조건을 제기하려는 아주 좋은 사상으로부터 출발하였다. 그런데 그는 다만 찬성, 협의의 달성 등을 할만한 자산계급적민주파와 그렇지 못한 자산계급적민주파를 미리 구별하려는 기도는 어떠한것을 막론하고 사건의 진전에 따라서 곧 포기되고야말, 그리고 무산계급의 계급의식을 모호하게 하는 《공식》에 불과하다는것을 잊어버렸을따름이다. 결국 중심점이 투쟁에서의 실제적통일로부터 성명, 약속, 구호에로 옮겨졌다. 스타로웨르는 《무기명투표에 의한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법》을 그러한 근본적구호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2년도 못 지나서 이 《리트머스시험지》는 쓸모없다는것이 증명되었으며 일반적선거법의 구호는 해방파에게 접수되었지만 해방파는 그로 인하여 사회민주당에 가까워진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구호를 리용하여 로동자를 미혹시키고 로동자를 사회주의로부터 이탈시키려 하였다.

지금 신이스크라파는 더욱 《엄격한》《조건》을 내놓고 짜리제도의 적들에게 《조직된 무산계급의 모든 견결한 행동을 정력적으로, 명확하게[?!] 지지할것》 등등과 심지어 《인민이 자체를 무장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가할것》까지 《요구》하고 있다. 계선은 현저하게 더욱 멀리 그어졌다. 그러나 그 계선은 또 이미 남아져서 곧 쓸모없이 되었다. 케를 들면 공화제라는 구호는 어째서 없는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무자비한 혁명전쟁으로 신분제적-군주제적질서의 모든 토대를 반대하기》 위하여 자산계급적민주파들에게 무엇이나 다 《요구》하면서 공화제를 위하여 투쟁할것만은 요구하지 않았으니 대체 어찌된셈인가?

이 문제는 결코 공연한 트집이 아니라는것, 신이스크라파의 오류는 확실히 매우 실제적인 정치적의의를 갖고있다는것

에 대하여서는 《로씨야해방동맹》이 증명한다. (《무산자》지 제4호를 참조)① 이 《짜리제도의 적들》은 신이스크라파의 모든 《요구》에 완전히 합치될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로씨야해방동맹》의 강령에는(또는 그 무강령성에는) 해방파의 정신이 넘쳐나고있으며 해방파는 그 동맹을 용이하게 끌고갈수 있다는것을 이미 지적하였다. 대표회의는 결정서의 끝부분에서 《사회민주당은 여전히 위선적인 인민의 벗들, 즉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들고나오면서도 무산계급의 혁명적투쟁을 진정으로 지지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정당을 반대할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로씨야해방동맹》은 이러한 지지를 거부하지 않을뿐아니라 도리어 그러한 지지를 열심히 제의하고있다. 이것은 《로씨야해방동맹》의 지도자들이 비록 해방파이기는 해도 《위선적인 인민의 벗들》은 아니라는 보증으로 될수 있겠는가?

보는바와 같이 신이스크라파는 미리 《조건》을 만들어내고 가소로울 정도로 어마어마하면서도 무력한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대번에 가소로운 처지에 빠지고말았다. 그들의 조건이나 요구는 산 현실을 고려하는데는 적합하지 않다는것이 대번에 드러났다. 공식을 추구하는 그들의 그와 같은 열광성은 무의미한것이다. 왜냐 하면 어떠한 공식으로도 자산계급적민주파의 위선과 불철저성 및 국한성의 온갖 표현을 다 포괄할수는 없기때문이다. 문제는 《리트머스시험지》에, 형식에, 기록되었

① 1905년 6월 4일에 발행된 《무산자》지 제4호에 《새로운 혁명적로동자동맹》이라는 장편문문이 게재되었다. (《레닌전집》, 한문판, 제8권, 467~478페이지를 보라. —편집자) 이 문문에는 《로씨야해방동맹》의 명칭을 채용하고 무장봉기를 통하여 헌법제정회의를 소집하는것을 자기의 취지로 한다는 이 동맹의 선언내용이 서술되었다. 그런 다음 이 문문에는 이러한 비당적동맹에 대한 사회민주당의자들의 태도가 규정되었다. 이 동맹이 어느 정도 실제적인것이며 혁명에서의 그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데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모른다. (1907년판에 가한 저자의 주. —편집자)

거나 인쇄된 요구에, 위선적인 《인민의 벗들》과 비위선적인 《인민의 벗들》을 미리 구별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투쟁에서의 진정한 통일에 있으며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자산계급적민주파의 《전정하지 못한》 조치들에 대하여 하나하나 꾸준히 비판하는데 있는것이다. 《민주적개조를 관심하는 모든 사회적력량을 진정으로 단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것은 대표회의가 그렇게 열심히 또 그렇게 무익하게 힘을 기울여 만든 《조목》들이 아니라 진정한 혁명적구호를 제기할줄 아는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은 혁명적-공화주의적자산계급을 무산계급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는 구호이지 무산계급의 임무를 군주주의적자산계급의 수준에까지 끌어내리는 구호가 아니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은 가장 정력적으로 봉기에 참가하는것이지 궤변을 늘어놓아 무장봉기라는 이 절박한 임무를 회피하는것이 아니다.

12

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자산계급이 떨어져 나간다면 그 혁명의 범위가 축소될것인가?

우의 몇줄을 다 쓰고난 뒤에 우리는 《이스크라》지가 발행한 신이스크라파의 깡까즈대표회의의 결정서를 받아보았다. Pour la bonne bouche(좋은 결말을 짓기 위하여) 우리는 이보다 더 좋은 자료는 생각해낼수 없을것이다.

《이스크라》지의 편집부는 정당하게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술의 기본적인문제에서는 깡까즈대표회의도 역시 전로써야대표회의〔즉 신이스크라파의 대표회의〕에서 채택된 결정과 류사한〔옳은 말이다!〕 결정을 채택하였다.》, 《범시혁명정

부에 대한 사회민주당의 태도에 관한 문제를 짚아주동지들은 <전진>집단과 이 집단에 가담한 소위 대회대표들이 선전하는 새 방법에 대하여 완전히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방향에서 결정을 채택하였다.》《자산계급혁명에서의 무산계급정당의 전술에 대하여 대표회의가 지은 규정은 아주 잘못된것으로 인정하여야 할것이다.》

옳은것은 옳은것이다. 신이스크라파의 근본적소유에 대한 이보다 더 《잘된》 규정은 아무도 지을수 없을것이다. 우리는 먼저 팔호안에서 뜻을 지적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맺는 열매를 지적하면서 이 규정을 전부 인용하여보자.

림시정부에 관한 신이스크라파 짚아주대표회의의 결정서는 다음과 같다.

《무산계급의 사회민주주의적의식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물론! 마르띠노브식으로 심화시키기 위하여라고 첨부하여야 할것이다!] 혁명시기를 리용하는것을 자기의 임무로 인정하면서 [공화제를 전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의식을 심화시키기 위해서뿐이란 말인가? 참으로 《심각하게》 혁명을 리해하고있는데!] 대표회의는 탄생할 자산계급국가제도를 비판할 가장 충분한 자유를 당에 보장할 목적으로 [공화제를 보장하는것은 우리가 할일이 아니다! 우리가 할일은 비판하는 자유를 보장하는것뿐이다. 무정부주의적사상은 《자산계급국가》제도라는 무정부주의적인사도 만들어낸다!] 사회민주주의적림시정부를 수립하는것과 그 정부에 참가하는것을 반대한다.[엥겔스가 인용한 에스빠냐혁명 10개월전의 바쿠닌주의자의 결정서를 상기하라. 《무산자》지 제3호를 참조245] 그리고 국가제도를 필수룩[?] 민주화하기 위하여 자산계급림시정부에 대하여 바로로부터[우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압력을 가하는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인정한다. 대표회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림시정부를 수립하거나 그 정부에 참가하거나 하는것은 한편 사회민주당에 실망한 무산계급의 광범한 대중이 이 당으로부터 이탈하는 결과를 가져올것이라고 인정한다. 왜냐 하면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탈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가 실현될 때까지는 노동계급의 긴박한 요구를 만족시킬수 없기때문이다.〔공화제는 긴박한 요구가 아니다! 결정서의 집필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산계급혁명에 참가하는것을 거부하는것 같은 순 무정부주의적인사를 쓰고있다는것을 천진하게도 깨닫지 못한다.〕 다른 한편 **자산계급들을 혁명사업으로부터 떨어뜨리나가게 할것이며 그리함으로써 혁명의 규모를 축소시킬것**이라고 인정한다.》

바로 여기에 문제의 요점이 있다. 바로 여기에 무정부주의적사상과 순수한 기회주의적사상이 서로 엉키여있다(서구라파의 베른슈타인파사이에서도 늘 볼수 있는바와 같이). 생각만이라도 하여보라. 림시정부에 참가하는것은 자산계급을 혁명사업으로부터 떨어뜨리나가게 하며 그리하여 혁명의 규모를 축소시키기때문에 림시정부에 참가하여서는 안된다는것이다! 여기에 벌써 신이스크라파의 철학, 즉 혁명이 자산계급적인것이므로 우리는 자산계급의 비속한 사상에 굴복하여야 하며 그들에게 길을 양보하여야 한다는 철학이 순수하고 철저하게 전부 드러나고있지 않는가. 우리가 림시정부에 참가하면 자산계급을 떨어뜨리나가게 할것이라는 생각에 지도된다면(비록 부분적으로라도, 일분간이라도) 우리는 혁명의 정도권을 전적으로 자산계급에게 양보하게 되는것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산계급이 떨어뜨리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무산계급을 언제나 온화하고 유순하게 만들어 그들을 전적으로 자산계급의 후견에 내맡기게 될것이다.(완전한 《비판의 자유》를 가지고있으면서!!) 우리는 자산계급이 떨어뜨리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무산계급

의 가장 긴박한 요구, 즉 경제파들과 그 아류들이 한번도 잘 리해한 일이 없는 무산계급의 정치적요구를 거세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무산계급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적으로 투쟁하는 지반으로부터 자산계급과 흥정을 하는 지반으로 완전히 넘어가 원칙을 배반하고 혁명을 배반한 대가로써 자산계급의 자발적동의(《떨어져나가지 않는다는것》)를 사게 될 것이다.

잡까츠의 신이스크라파는 두줄밖에 안되는 짧은 글에다가 혁명을 팔아먹고 무산계급을 자산계급들의 가련한 부속물로 만들어버리는 전술의 실질을 전부 표현하는데 성공하였다. T리가 앞에서 신이스크라파의 오류로부터 발견한 하나의 경향이 지금은 하나의 명확한 원칙, 즉 군주주의적자산계급의 위표리를 따라가야 한다는 원칙으로 발전하였다. 공화제의 실현은 자산계급을 떨어져나가게 할것이므로(또 벌써 그렇게 하고 있다.—스트루웨씨의 례) 공화제를 위한 투쟁은 집어치우라는 것이다. 무산계급의 견결하고 철저한 민주주의적요구는 어느것을 막론하고 언제나 또 전 세계의 어느곳에서나 반드시 자산계급을 떨어져나가게 할것이므로 노동자동무들은 굴속에 숨어서 다만 외부로부터만 행동하며 《자산계급국가》제도의 도구와 수단을 혁명에 리용하려고는 생각하지 말고 《비판의 자유》나 유지하라는 것이다.

《자산계급혁명》이라는 이 술어를 리해하는데 있어서의 근본적오류가 여기에서 적라타하게 폭로되었다. 이 술어를 마르띠노브식으로나 또는 신이스크라파식으로 《리해하는것》은 곧 무산계급의 위업을 자산계급에게 팔아먹는 결과를 가져온다.

넓은 경제주의를 잊어버린 사람, 그것을 연구하지 않고 상기하지 않는 사람은 경제주의가 오늘날 되풀이되고있다는것을 리해하기 어려울것이다. 베른슈타인주의의 《신조》¹¹⁴를 회

상하여보라. 그당시 사람들은 《순전히 무산계급적》인 견해와 강령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어냈다. 즉 사회민주주의자인 우리에게서 경제와 진정한 노동자의 사업과 온갖 책동을 비판하는 자유와 사회민주주의사업을 참으로 심화시키는것을 맡기고 정치는 자유주의파인 그들에게 맡기라는것이다. 주여, 《혁명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주옵소서—그것은 자산계급을 떨어뜨려나가지 않을수 없게 하나이다. 누구든지 《신조》를 전부 읽거나 또는 《노동자사상》지¹²³ 제9호(1899년 9월)의 별책부록을 읽는다면 거기서 이러한 논의의 모든 과정을 알수 있을것이다.

지금도 이전과 꼭 마찬가지로 다만 그 규모가 좀 커져서 로씨야의 《대》혁명전체를 평가하는데 그것이 적용되었을 따름이다.—아, 이 혁명은 정통적속류리론가들에 의하여 벌써 사전에 비속하게 되고 만화로까지 전락하여버렸다! 사회민주주의자인 우리에게서 비판의 자유와 의식의 심화와 밖으로부터의 행동을 맡기고 자산계급들인 그들에게는 행동의 자유, 혁명적지도(《자유주의적》지도라고 읽으라)의 활동무대에서의 자유와 우로부터 《개량》을 실시하는 자유를 맡기라고 한다.

맑스주의를 비속화하는 이런자들은 비판의 무기를 무기에 의한 비판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맑스의 말²⁴⁶을 한번도 생각하여본적이 없다. 그들은 맑스의 이름은 내세우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프랑크푸르트의 자산계급공당가들 즉 전제제도를 자유롭게 비판하고 민주주의적의식을 심화시키고 혁명의 시기는 행동하는 시기, 우로부터도 아래로부터도 행동하는 시기라는 것은 이해하지 못한 프랑크푸르트의 자산계급공당가들의 정신으로 전술적결정서를 작성한다. 그들은 맑스주의를 궤변으로 만들어가지고 가장 결정적이며 정력적인 선진적, 혁명적 계급의 사상으로부터 그 계급중의 가장 락후한 계층, 즉 어려운 혁명

적-민주주의적임무로부터 도피하며 그 민주주의적임무를 스트루웨의 동료제씨들에게 맡기는 그러한 계층의 '사상을 만들어 내었다.

만일 사회민주당이 혁명정부에 참가하는것으로 하여 자산계급들이 혁명사업으로부터 떨어져나간다면 그들은 이것으로써 《혁명의 규모를 축소시키게 될것》이라는것이다.

로씨야의 노동자들이여, 들어보라, 짜리제도를 타승하려는것이 아니라 그와 타협하려는 스트루웨의 제씨들이 사회민주당의자들의 위협을 받지 않고 혁명을 수행한다면 혁명의 규모가 더 확대될것이라고 한다. 앞에서 우리가 말한 로씨야혁명의 두가지 가능한 결말중에서 첫째것이 실현된다면 즉 군주주의적자산계급이 쉬뵘브식의 《헌법》으로 전제정부와 흥정을 하게 된다면 혁명의 규모가 더 확대될것이라고 한다!

전당을 지도하기 위하여 작성된 결정서에서 이런 치욕적인것을 쓰는 사회민주당의자들이나 이 《잘된》 결정서를 찬성하는 사회민주당의자들은 이미 맑스주의에서 산 정신을 다 빼버린 궤변에 눈이 어두워 이 결정서가 그들의 다른 좋은 말까지도 빈말로 만들어버렸다는것을 깨닫지 못한다. 《이스크라》지에 게재된 그들의 론문을 아무것이나 읽어보라. 우리의 유명한 마르피노브의 악명높은 소책자라도 좋으니 읽어보라. 여러분은 인민적봉기라느니, 혁명을 끝까지 수행한다느니, 불철저한 자산계급과의 투쟁에서 인민의 하층에 의거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느니 하는 말들을 읽게 될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좋은 말도 여러분이 자산계급과 인연을 끊는 결과로 《혁명의 규모》가 《축소》될것이라는 사상을 접수하거나 찬성하는 그 순간에 가련한 빈말로 변하여버리지 않는가. 여러분, 두가지가운데서 한가지다. 우리는 불철저하고 리기적이고 비겁한 자산계급을 녀두에 두지 말고 인민과 함께 혁명의 수행으로 매진하여 짜

리제도에 대한 완전한 승리를 전취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념두에 두지 않는것》을 허용하지 않고 말하자면 자산계급이 《떨어져나가지》 않도록만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 그때에는 우리는 자산계급에게, 불철저하고 리기적이고 비겁한 자산계급에게 무산계급과 인민을 팔아먹게 될 것이다.

나의 말을 폭해하려고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을 의식적 반역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고 떠들지 말라. 그런 것이 아니다. 낡은 경제파들이 맑스주의를 《심화》시킨다고 하면서 그것을 생기없고 생명없는 반혁명적《궤변》으로 만드는 내리받이로 건잡을수없이 또 돌아설수없이 끌려내려가던 것처럼 당신들도 무의식적으로 늘 감탕밭으로 끌려들어가고있으며 이제는 아주 빠져버리고만 것이다.

여러분, 당신들은 《혁명의 규모》가 어떠한 실제적인 사회적력량에 의존하는가를 생각해본적이 있는가? 외국의 정치, 국제적배합의 힘은 언급하지 않기로 하자.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매우 유리하게 되었으나 로씨야의 내부적힘이 문제로 되고있는만큼 우리는 그것을 모두 논의에서 빼기로 하자. 또 제외하는것이 정당한것이다. 이 내부적인 사회적힘을 살펴보자, 혁명을 적대시하는것은 전제제도, 황실, 경찰, 판리, 군대, 극소수의 귀족들이다. 인민의 격분이 심각하여질수록 군대는 더 믿음성 없게 되고 판리가운데의 동요가 더 심하여진다. 그다음 자산계급은 이제는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혁명의 편에서 열렬히 자유를 부르짖으며 인민의 명의로 또는 심지어 혁명의 명의로 더욱 빈번하게 의견을 발표하고있다①. 그런데 맑스주의자인 우리는 자산계급이 불철저하게, 리기적으로, 비

① 이 점에서 얼마전에 조레스가 신문 《인도》²⁴⁷에 실었고 스트루웨씨가 《해방》잡지 제72호에 실은 조레스에게 보낸 스트루웨씨의 공개서한이 흥미가 있다.

겉하게 혁명의 편에 서있다는것을 이론상으로 알고있으며 또 우리 나라의 자유주의파, 지방자치파, 해방파의 실패에서 날마다, 시간마다 보고있다. 자산계급은 그의 협애하고 리기적인 리익이 충족되고 철저한 민주주의로부터 《떨어져나가게》되자마자(아니 그들은 벌써 거기에서 떨어져나가고있다!) 불가피적으로 그 대다수가 반혁명의 편으로, 전제제도의 편으로 돌아서서 혁명을 반대하고 인민을 반대하게 될것이다. 남는것은 오직 《인민》 즉 무산계급과 농민뿐인데 오직 무산계급만이 끝까지 확고하게 나아갈수 있다. 왜냐 하면 무산계급은 민주주의혁명보다도 훨씬 더 멀리 나아가기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산계급은 자산계급이 떨어져나가지나 않을가 하는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어리석고 부당한 충고를 떨치하고 거절하며 제 1선에 서서 공화제를 위하여 투쟁한다. 농민가운데는 많은 반무산자와 함께 소자산계급분자도 포함되어있다. 이것이 또한 농민을 견실하지 못하게 하며 무산계급으로 하여금 계급성이 엄연한 당에 결속되지 않을수 없게 한다. 그러나 농민이 견실하지 못한것은 자산계급이 견실하지 못한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 하면 현시기에 농민들은 사적소유를 무조건 보존하는것보다도 오히려 사적소유의 주요형태의 하나인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데 관심을 돌리고있기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농민이 사회주의자로 되는것은 아니며 또 소자산계급적임을 면하는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농민은 민주주의혁명을 전심전력으로 가장 철저하게 옹호할수 있다. 농민은 만일 그들을 계몽하는 혁명적사변의 행정이 자산계급의 때만과 무산계급의 때배에 의하여 너무나 일찌기 중단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그렇게 될것이다. 상술한 조건에서는 농민은 반드시 혁명과 공화제의 기둥으로 될것이다. 왜냐 하면 오직 완전히 승리한 혁명만이 농민에게 토지개혁의 영역에서의 모든것, 즉 농민이 원

하고있고 동경하고있는 모든것을, 반농노제도의 수령으로부터, 억압과 예측의 암흑으로부터 쫓아나오기 위하여 또 오직 상품경제의 범위안에서 허용될수 있는 정도에서 자기의 생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사회혁명당원들》이 상상하는것처럼 자본주의를 폐절하기 위하여서가 아니라) 농민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모든것을 줄수 있기때문이다.

그뿐이 아니다. 철저한 토지개혁뿐아니라 농민의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모든 리익도 또한 농민들을 혁명으로 끌어간다. 농민은 심지어 무산계급과의 투쟁에서도 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된다. 왜냐 하면 민주주의제도만이 농민의 리익을 정확하게 표현하며 또 다수이며 대중인 그들로 하여금 우세를 차지할수 있게 하기때문이다. 농민은 계몽되면 될수록(그런데 대일전쟁이후 그들은 학교라는 자로밖에 계몽을 쟁출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상상할수도 못할만한 속도로 계몽되고있다.) 더 철저하게, 더 결정적으로 완전한 민주주의적변혁의 편에 서게 될것이다. 왜냐 하면 인민의 통치는 농민에게 있어서는 자산계급에게 있어서와 같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유익한 일이기때문이다. 농민은 소박한 군주주의로부터 구출되자마자 민주공화제가 그들의 리상으로 될것이다. 왜냐 하면 중개인노릇을 하는 자산계급의 의식적군주주의(상원 등등이 있는)는 농민에게 있어서는 구라파식립헌제도라는 철만 해놓았을뿐 종전과 다름없는 그 무권리와 억압과 무지몽매를 의미하기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까닭에 계급으로서의 자산계급은 자연히 또 피할수없이 자유주의적군주주의정당의 산하로 들어가고 대중으로서의 농민은 자연히 또 피할수없이 혁명적 및 공화주의적당의 평도밀도로 들어가는것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자산계급은 민주주의혁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없고 농민은 그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수 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모든 힘을

다하여 농민을 원조하여야 한다.

그것은 론증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초보적상식이다. 그것은 사회민주당의자들이 다 잘 안다.—이렇게 나를 반박할 수 있을것이다. 그렇지 않다. 자산계급이 혁명에서 떨어져나가는 결과로 혁명의 《규모가 축소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고있는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의 토지강령에서 따라의 운 문구를 되풀이하지만 그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있다. 만일 이해하고있다면 그들은 맑스주의적세계관전반과 우리의 강령에서 불가피적으로 도출되는 무산계급과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독재의 개념을 두려워하지 않을것이며 로씨야대혁명의 규모를 자산계급의 규모에 국한시키지 않을것이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추상적인 맑스주의적혁명적언사를 자기의 구체적인 반맑스주의적, 반혁명적 결정서로써 말살하여버린다.

로씨야혁명이 승리하는데 있어서의 농민의 역할을 참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자산계급이 떨어져나가게 되면 혁명의 규모가 축소된다고 할수는 없을것이다. 왜냐 하면 사실상 자산계급이 떨어져나가고 농민대중이 무산계급과 나란히 적극적인 혁명자로 나서는 때에야 비로소 로씨야혁명의 규모가 진정으로 발전하기 시작할것이기때문이며 또 그때에야 비로소 그 규모는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시기에 있을수 있는 가장 큰 진정한 혁명의 규모로 될것이기때문이다. 우리의 민주주의혁명이 끝까지 철저하게 수행되기 위하여서는 자산계급의 불가피적인 불철저성이 맥을 추지 못하도록 할수 있는(즉 갑까즈의 《이스크라》파가 사고부족으로 접내는—《자산계급이 떨어져나가지 않을수 없게 할만한》) 그런 력량에 반드시 의거하여야 할것이다.

무산계급은 폭력으로써 전제제도의 반항을 분쇄하며 자산계급의 불건실성이 맥을 추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농민대중을 자기편에 끌어넣으면서 민주주의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야 한

다. 무산계급은 폭력으로써 자산계급의 반항을 격파하며 농민과 소자산계급의 불건실성이 맥을 추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주민중의 반무산자대중을 자기편에 끌어넣으면서 사회주의혁명명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러한것이 무산계급의 임무인데 혁명의 규모에 관한 모든 논의와 결정서에서 신이스크라파는 이 임무를 매우 협소하게 제기하였다.

혁명의 《규모》에 대하여 논의할 때에 흔히 홀시되는 한가지 정확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만은 잊지 말아야 한다. 논쟁의 초점이 임무의 곤란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어느 길에서 이 임무의 해결방도를 찾을 것인가 하는데 있다는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논쟁의 초점이 혁명의 규모를 거대한것으로 또 불패의 것으로 만드는것이 쉬운가 어려운가 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그 규모를 거대하게 하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데 있다. 의견상이는 바로 행동의 기본적성격과 그 방향자체와 관련되고있다. 우리가 이 점을 강조하는것은 부주의하고 불성실한 사람들이 다음과 같은 서로 다른 두가지 문제를 자주 혼동하기때문이다. 즉 나갈 길의 방향에 관한 문제, 다시말하면 서로 다른 두 길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하는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결정된 길에서 목적을 실현하기가 쉬운가, 그 목적의 실현이 얼마나 가까운가 하는 문제를 너무나 자주 혼동하기때문이다.

이 마지막문제는 위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것은 이 문제가 우리 당내에서 논쟁이나 의견상이를 일으키지 않았기때문이다. 그러나 물론 그 문제자체는 극히 중요한 문제이며 모든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매우 신중한 주의를 돌려야 할 문제이다. 대중을, 로동계급대중뿐아니라 농민대중까지도 운동에 끌어들이는 사업과 관련된 여러가지 난관들을 잊어버리는것은 허용하지 못할 탁관주의일것이다. 바로 이 난관으로

말미암아 민주주의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려는 노력은 거듭 좌절되었는데 이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가장 큰 승리를 얻은것은 불철저하고 리기적인 자산계급이었으며 그들은 인민에 대한 군주주의적방어의 《밀첸도 얻어가졌고》 자유주의...또는 《해방파》의 《결백성도 준수》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끈난하다는것은 결코 실행할수 없다는것이 아니다. 중요한것은 선택된 길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인데 이 확신은 기적을 창조할 혁명적의력과 혁명적열정을 백배나 강하게 하는것이다.

길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오늘의 사회민주당의자들사이의 의견상이가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것은 잭까즈의 신이스크라파의 결정서와 로씨야사회민주당 제3차대회의 결정서를 대비하여보면 곧 알수 있다. 대회의 결정서는 자산계급은 불철저하며 우리에게서 혁명의 전취물을 기어이 빼앗으려 애쓸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동지들은 더욱 정력적으로 투쟁을 준비하고 무장하고 농민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라, 우리는 결코 우리가 혁명에서 얻은 전취물을 리기적인 자산계급에게 투쟁없이 양보하지 않을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잭까즈의 신이스크라파의 결정서는 자산계급은 불철저하며 그는 혁명으로부터 멀어져나갈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노동자동지들은 제발 립시정부에 참가하려고 하지 말라, 왜냐 하면 그렇게 하면 자산계급이 아마도 멀어져나갈것이며 그 결과 혁명의 규모가 축소될것이기때문이다라고 하였다.

한 결정서는 불철저한 자산계급의 반항과 소극적태도를 물리치고 혁명을 끝까지 추진시키라고 한다.

다른 한 결정서는 불철저한 자산계급이 혁명으로부터 멀어져나갈터이니 혁명을 자립적으로 끝까지 수행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한다.

우리앞에는 정반대되는 두가지 길이 있지 않는가? 한 전

술은 무조건적으로 다른 한 전술을 배제하는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첫째 전술은 혁명적사회민주당의 유일하게 정확한 전술이며 둘째 전술은 사실상 순전히 해방과적전술이라는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13

결론. 우리가 감히 승리해낼것인가?

로씨야사회민주당내의 사정을 피상적으로밖에 모르거나 경제주의시기이래의 우리 당내 투쟁의 전 역사를 모르면서 옆에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들은 지금, 특히 제3차대회이후에 명확하여진 전술상 의견상이를 어떠한 사회민주주의운동에나 자연적이고 불가피적이고 완전히 조정될수 있는 두가지 경향이라고 단순히 언급함으로써 흔히 어물어물 지나간다. 이러한 사람들은 말하기를, 한편에서는 보통적인 당면한 일상적사업을 그리고 선전 및 선동을 전개하며 력량을 준비하며 운동을 심화시키는 등등의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며 다른 한편에서는 운동의 전투적, 일반정치적, 혁명적 임무를 강조하며 무장봉기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혁명적민주주의독재와 임시혁명정부의 구호를 내세운다고 한다. 이편이나 저편이나 과장하여서는 안되며 여기에서나 저기에서나(세상의 어디서나 다 그러한것과 같이) 극단은 좋지 못하다느니 무어니 한다.

의심할바없이 이와 같은 논의속에는 처세(그리고 인용부호 안에 든 《정치적》)비결의 값싼 진리가 포함되어있다. 그러나 그것이 당의 절박하고 긴급한 요구에 대한 물리해를 너무 자주 은폐한다.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사이에 있는 오늘날의 전술상의 의견상이를 들어보자. 물론 전술에 관한 신이스크라

파의 론의중에서 보는, 일상적인 보통사업에 대한 힘찬 강조 그자체는 아직 아무런 위험도 나타낼수 없으며 또 전술적구호에서의 아무런 의견상이라도 일으킬수 없을것이다. 그런데 로씨야사회민주당로동당 제3차대회의 결정서와 대표회의의 결정서를 비교하여보기만 하면 곧 의견상이는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러면 문제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문제는 첫째로, 운동에 두가지 조류가 있다든가 또 극단은 해롭다는것을 일반적으로 추상적으로 지적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데 있다. 그 운동이 현재 어떤 결합을 가지고있는가 지금 당에 대하여 현실적, 정치적 위험이 무엇인가 하는것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둘째로는 이런 또는 저런 전술적구호가(혹은 이런 또는 저런 구호를 내세우지 않는것이) 어떠한 현실적, 정치적 역량에 도움을 주는것인가를 알아야 한다. 만약 신이스크라파의 말을 믿게 되면 여러분은 사회민주당이 군사적준비, 무장공격, 정권탈취 동등에 지나치게 열중하여 선전 및 선동, 경제투쟁 및 자산계급민주파에 대한 비판을 포기할 위험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것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실제적위험은 전혀 다른 면으로부터 당을 위협하고있다. 운동의 정형을 다스라도 잘 아는 사람, 운동의 정형을 세심하게, 주의깊이 관찰하는 사람은 신이스크라파의 공포심에는 가소로운 일면이 있다는것을 모를수 없을것이다. 로씨야사회민주당의 모든 사업은 벌써 그 중심이 선전 및 선동, 기동적집회 및 대중적집회, 선전물 및 소책자의 배포, 경제적투쟁에 대한 원조, 그 투쟁의 구호의 지지에 전적으로 집중될수 있도록 보장하는 확고부동한 틀에 짜여있다. 벌써 90년대의 하반기부터 확립된 이러한 적응에 대하여 언제나 부단히 99%의 주의와 힘과 시간을 기울이지 않는 당위원회나 구위원회나 중심회의나 공장조직은 하나도 없다. 다만 운동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

이 이것을 알지 못한다. 다만 극히 소박하거나 사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만이 신이스크라파가 특히 그럴듯하게 지나간 일을 되풀이하는것을 그대로 믿을수 있을것이다.

사실은 우리가 봉기의 임무나 일반적정치구호나 전인민적혁명의 지도사업에 지나치게 열중하고있지 않을뿐아니라 도리어 이 점에서야말로 **락후성**이 눈에 띄이며 이것이 가장 아픈곳을 이루고있으며 또 실제적인 혁명운동이 말로만의 혁명운동으로 퇴화하고있는(별써 어떤곳에서는 퇴화되고있다.) 그러한 운동의 현실적위험성을 보게 된다. 당의 사업을 수행하는 수천수백의 조직, 단체, 소조중에서 그것이 발생한 첫날부터 신《이스크라》지의 현자들이 새로운 진리나 발견한듯이 설교하는 그런 일상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은것은 하나도 없다. 다른 한편 이미 무장봉기의 임무를 의식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데 착수하고 짜리제도를 반대하는 전인민적혁명을 명도할 필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위하여 다른 어떤 구호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선진적구호를 내세워야 한다는것을 깨달은 그러한 단체나 소조는 극소수밖에 안된다.

우리는 선진적이고 참으로 혁명적인 임무로부터 상상하기도 어려울만큼 뒤떨어졌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러한 임무를 아직 의식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 점에서 뒤떨어졌던 까닭에 혁명적자산계급민주파들이 여기저기서 강화되고있는 사실을 감촉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신《이스크라》지의 문필가들은 사건의 행정과 시대의 요구를 등지고 서서 낡은것을 잊지 말라! 새것에 열중하지 말라고 고집스레 되풀이하고있다. 이것이 대표회의의 모든 중요한 결정서중의 변함없는 기본요지이다. 그런데 대회의 결정서들에는 다음과 같은 사상, 즉 낡은것을 확언하면서(그리고 그것은 그야말로 낡은것이며 별써 해결된것이며 또 서적과 결정서와 경험으로 굳어진것이기때문에

그것을 되짚지는 않으면서) 새 임무를 내세우며 그 임무에 주의를 돌리며 새 구호를 내세우며 진정한 혁명적사회민주당의 자들에게 이 새 구호를 실현하는 사업에 즉시 착수하기를 요구하는 사상이 시종 판통되어있다.

사실상 사회민주당의 전술면에서의 두가지 조류에 관한 문제는 이러하다. 혁명적시대는 새로운 임무들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것은 오직 완전한 장님뿐이다. 그리고 일부분의 사회민주당의자들은 조금도 주저없이 이 임무를 승인하면서 다음과 같은것을 일정에 올려놓고있다. 즉 무장봉기가 박두하였다. 즉시 이를 정력적으로 준비하라. 이것이 결정적승리를 위하여 필요하다는것을 명심하라, 공화제, 임시정부, 무산계급과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독재의 구호를 내세우라. 다른 일부분의 사회민주당의자들은 뒤걸음질하며 한자리에서 머뭇거리며 구호 대신에 머리말을 내놓으며 낡은것을 확인하면서 새것을 가리킬 대신에 낡은것을 장황하고 싫증나게 되짚으면서 새것을 회피할 구실을 조작하며 결정적승리를 위한 조건을 규정하지 못하며 완전승리를 얻으려는 지향에 유일하게 맞는 구호를 제기하지 못하고있다.

이 추미주의의 정치적결과는 우리의 눈앞에 나타났다. 로씨야사회민주당의 《다수파》가 혁명적자산계급민주파와 가까워지고있다는 우화는 어느 하나의 정치적사실로도, 《불쉐위크들》의 어느 하나의 권위있는 결정서로도, 로씨야사회민주당 제3차대회의 어느 하나의 행동으로도 확증할수 없는 우화로 남아있다. 다른 한편 《해방》잡지가 대표하는 기회주의적군주주의적자산계급은 오래전부터 신이스크라파의 《원칙적》경향을 환영하여왔고 지금에 와서는 벌써 직접 그들의 물을 끌어다가 자기의 방아를 찼고있으며 그들의 온갖 잡소리와 《사상》을 받아들여 《비밀활동》과 《소동》을 반대하며 혁명의

《기술적》측면의 파장을 반대하며 무장봉기라는 구호의 직접적제기를 반대하며 극단적요구를 내세우는 《혁명주의》 등등을 반대하고있다. 깡까즈에서 열린 사회민주주의자—《멘쉐위크》들의 전반 대표회의의 결정서와 이 결정서에 대한 신《이스크라》편집부의 찬성은 이 모든것에 대하여 명백한 정치적총화를 내리고있는데 그것은 즉 무산계급이 혁명적민주주의독재에 참가하는 경우에 자산계급이 떨어져나간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써 모든것이 다 드러났다. 이것으로써 무산계급을 군주주의적자산계급의 부속물로 만들어버리는 방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것으로써 사실상 개인의 우연한 성명으로써가 아니라 류파전체가 각별히 찬성한 결정서로써 신이스크라파의 추미주의의 정치적인의가 증명되었다.

이러한 사실을 깊이 생각해보는 사람은 사회민주주의운동의 두가지 측면과 두가지 경향에 대한 일반적지적이 가지는 진정한 의의를 알게 될것이다. 이러한 경향을 더욱 큰 범위에서 연구하기 위하여 베른슈타인파를 들어보자. 베른슈타인파는 그들이야말로 무산계급의 진실한 요구를 이해하고있으며 무산계급의 력량의 발전과 모든 활동의 심화와 새로운 사회요소의 준비와 선전 및 선동 등의 임무를 이해하고있노라고 결론 되풀이하여왔으며 또 지금도 되풀이하고있지 않는가. 우리는 존재하는것을 공개적으로 승인할것을 요구한다! 베른슈타인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으로써 《중국적목표》가 없는 《운동》을 신성화하며, 방어적전술 하나만을 신성화하면서 《자산계급이 떨어져나가지 않도록》이라는 비겁한 전술을 설교한다. 그리고 베른슈타인파는 일찌기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들의 《자교맹주의》에 대하여, 《로동자의 독자적활동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술가》 등등에 관하여 떠들었다. 사실에 있어서는 일반이 다 아는바와 같이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일상적인

사소한 사업이나 역량준비 등등을 내버려두려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다만 중국적목표를 명백히 의식할것과 혁명적임무를 명백히 제기할것을 요구하였을따름이다. 그들은 절반무산자계층과 절반소자산자계층을 무산계급의 혁명성에까지 끌어올리려고 하였지만 무산계급의 혁명성을 《자산계급이 떨어져나가지 않도록》이라는 기회주의적고려에까지 끌어내리려고 하지는 않았다. *Dürfen wir siegen?* 《우리가 감히 승리해낼것인가?》 승리하는것이 우리에게 허용된것인가? 승리하는것이 우리에게 위협하지 않은가? 우리는 승리하여야 할것인가? — 이 문제는 당의 지식인적-기회주의적일익과 무산계급적-혁명적일익간의 이 반목을 가장 뚜렷하게 표현하였다고 할수 있다. 이 문제는 일핏 보면 이상한듯하지만 제기되었었고 또 응답 제기되어야 할 문제였다. 왜냐 하면 기회주의자들은 승리를 두려워하였으며 무산계급을 그 승리로부러 물려서도록 위협하였으며 그 승리에서 불행이 생기리라는것을 예언하였으며 그 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라고 부르짖는 구호를 조소하였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기본상 지식인적-기회주의적경향과 무산계급적-혁명적경향으로 나누어지는것은 우리에게서도 볼수 있는데 거기에는 다만 사회주의혁명이 문제로 되고있는것이 아니라 민주주의혁명이 문제로 되고있다는 점에 매우 중요한 차이가 있을뿐이다. 우리에게서도 역시 《우리가 감히 승리해낼것인가?》 하는 일견 우스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만일 우리가 불기를 아주 잘 준비하여가지고 완전히 성공적으로 그것을 실현한다면 거기에서 불행이 생기리라고 예언한 마르피노브의 《두가지 독재》가운데서 제기되었다. 이 문제는 립시혁명정부에 관하여 쓴 신이스크라파의 모든 문헌에서도 제기되었는데 그들은 언제나 밀레랑이 자산계급적기회주의정부

에 참가한것을 와를렝²⁴⁸이 소자산계급적혁명정부에 참가한것과 뒤섞으려고 열성적으로 그러나 헛되이 기도하였다. 이 문제는 《자산계급이 떨어져나가지 않도록》이라는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그리고 케컨대 지금 카우즈키가 립시혁명정부에 관한 우리의 논쟁을 아직 잡지도 못한 꿈의 가죽을 분배하는 것과 같다고 조롱하려고 하지만 그와 같은 조롱은 다만 풍문으로만 알게 된것에 대하여 말할 때에는 현명한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도 실수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줄 따름이다. 독일사회민주주의자들은 꿈을 잡는 일이(사회주의혁명을 수행하는 일이) 아직 그다지 가까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꿈을 《감히》잡아낼것인가 하는 논쟁은 그들에게 있어서 거대한 원칙적인 실천적-정치적의의를 가지고있다.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자기의 꿈을 잡을》수 있게(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할수 있게) 되는 것은 아직 그다지 가까운 일이 아니지만 우리가 꿈을 《감히》잡아낼것인가 하는 문제는 로씨야의 전 장래를 위하여, 로씨야사회민주당의 장래를 위하여 극히 중대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우리가 《감히》승리해낼수 있다는 확신이 없이는 군대를 정력적으로, 성공적으로 모집한다는것과 그 군대를 병도한다는것은 말할 여지도 없다.

우리의 이전의 경제파들을 예로 들어보자. 그들도 역시 자기들의 론적들을 밀모자, 자끄뱅주의자라고 하였고(《로동자사업》잡지, 특히 제10호와 제2차대회에서 당의 강령에 관하여 토론하던 때의 마르띠노브의 연설을 보라.) 자기들의 론적들이 정치에 몰두하여 대중으로부터 리탈하고있으며 로동운동의 기초를 망각하고 로동자의 독자적활동성 등등을 등한시하고있다고 떠들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로동자의 독자적활동성》을 옹호한다는 이자들은 무산계급의 여러가지 임무에 대한 자기들의 편협하고 속물적인 리해를 로동자들에게 강

요하는 지식인적기회주의자들이었다. 사실에 있어서 구《이스크라》지에서 누구나 다 볼수 있는바와 같이 경제주의의 반대자들은 사회민주당의 사업의 어느 한 측면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뒤로 미루어두지도 않았으며 경제투쟁을 조금도 망각하지 않았을뿐아니라 그와 동시에 긴절하고 당면한 정치적임무들을 가장 광범하게 내세울줄 알았으며 노동자의 당을 자유주의자산계급의 《경제적》부속물로 만드는것을 반대하였다.

경제파들은 정치의 기초에는 경제가 놓여있다는것을 외워가지고 그것을 정치투쟁을 경제투쟁에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는것으로 《리해》하였다. 신이스크라파는 민주주의혁명은 그 경제기초로 보아 자산계급혁명이라는것을 외워가지고 그것을 무산계급의 민주주의적임무를 자산계급적 온건한 럽장의 수준에까지, 《자산계급이 떨어져나가지 않을》 그 한계에까지 끌어내려야 한다는것으로 《리해》하였다. 경제파들은 사업을 심화한다는 구실과 노동자의 독자적활동 및 순계급적정책이라는 구실밑에서 사실에 있어서는 노동계급을 자유주의자산계급의 정객들의 손에 넘겨주었다. 다시말하면 그 객관적의의가 있는 길로 당을 끌어갔다. 신이스크라파는 그와 똑같은 구실밑에 사실에 있어서는 민주주의혁명에서의 무산계급의 리익을 자산계급에게 팔아먹는다. 다시말하면 바로 그러한 객관적의의가 있는 길로 당을 끌어가고있다. 경제파들에게는 정치적투쟁에서 주도권을 잡는 일은 사회민주당의자들이 할일이 아니라 본래 자유주의자들이 할일이라고 생각되었다면 신이스크라파에게는 민주주의혁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것은 사회민주당의자들이 할일이 아니라 민주주의적자산계급이 할일이라고 생각된다. 왜냐 하면 무산계급이 명도하거나 주도적으로 참가하는것은 혁명의 《규모를 축소》시킬것이기때문이라고 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이스크라파는 비단 당의 제2차대회에서의 그들의 발생으로 보아서뿐만아니라 그들이 지금 내세우고있는 민주주의혁명에서의 무산계급의 전술적임무에 대한 제기로 보아서도 경제주의의 후계자들이다. 그들도 역시 당의 지식인적-기회주의적일익이다. 조직면에서 그들은 지식인의 무정부주의적개인주의로서 첫 무대에 등장하였고 당조직으로 부더의 출판물의 분리, 직접선거가 아닌 거의 4계단제나 되는 간접적선거, 민주주의적대표제 대신에 보나빠르트주의²⁴⁹적 전민투표제, 마지막으로 부분과 전체 사이의 《타협》원칙을 대표회의에서 채택된 《규약》²⁵⁰중에 명문으로 규정함으로써 《과정의 와해》로 끝을 맺었다. 당의 전술에 있어서도 그들은 그러한 내리막으로 미끌어져내려갔다. 그들은 지방자치파들앞에서 연설하는것을 《고급형태의 시위》라고 《지방자치파운동의 계획》에서 성명하였으며 정치무대에서 다만 두가지 적극적력량(1월9일사건 전야에!) 즉 정부와 자산계급적민주파밖에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무장에 대한 긴절한 임무를 《심화하여》이 직접적, 실천적 구호를 자체무장의 불타는 요구로 무장하라는 호소로 바꾸어놓는다. 무장봉기, 립시정부, 혁명적민주주의독재에 대한 임무는 그들에 의하여 지금 정식결정서에서 외곡되고 마비되었다. 《자산계급이 떨어져나가지 않도록》—이것은 그들의 최근의 결정서의 결속어로서 그들의 길이 당을 어디로 끌고가는가 하는 문제를 매우 똑똑히 보여준다.

로씨야에서의 민주주의혁명은 그 사회경제적본질로 보아 자산계급적혁명이다. 단지 정확한 이 맑스주의적원리를 되풀이하는것만으로써는 부족하다. 그것을 리해할줄 알며 또 그것을 정치적구호에 적용할줄 알아야 한다. 현대적생산관계, 즉 자본주의적생산관계의 기반우에서의 모든 정치적자유는 모두가 자산계급적자유이다. 자유에 대한 요구는 무엇보다도먼저

자산계급의 이익을 표현한다. 자산계급의 대표자들이 맨먼저 이 요구를 제기하였다. 자산계급의 지지자들은 획득한 자유를 도처에서 자기의 소유물처럼 리용하면서 그것을 온건하고 정밀한 자산계급의 척도에다 맞추었으며 평화시기에는 가장 교묘하게 그리고 폭풍우의 시기에는 야수적으로 혹독하게 혁명적무산계급을 탄압하는것과 그것파를 결합시켰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자유를 위한 투쟁을 부정하거나 경시할자는 다만 소동파인 인민파와 무정부주의자 및 《경제파》들뿐이다. 이러한 지식인적속물적학설을 무산계급에게 강요하는데 성공한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언제나 일시적이었으며 무산계급의 반항에 부딪쳤다. 무산계급은 정치적자유가 자산계급을 직접 강화하며 조직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에게, 누구보다도 자기들에게 더 필요하다는것을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무산계급은 자신의 구원을 계급투쟁으로부터의 도피에서 기대하는것이 아니라 계급투쟁의 발전에서, 계급투쟁의 범위의 확대에서, 계급투쟁의 자각성, 조직성과 견결성의 강화에서 기대한다. 정치적투쟁의 임무를 경시하는자는 사회민주당의자로 하여금 인민의 대표자로부터 로동조합의 서기로 변하게 하는것이다. 자산계급적민주주의혁명에서의 무산계급의 임무를 경시하는자는 사회민주당의자로 하여금 인민혁명의 지도자로부터 자유적직업동맹의 두목으로 변하게 하는것이다.

그렇다. 인민혁명이다. 사회민주당은 극히 정당하게도 인민이라는 말을 자산계급적민주파들이 람용하는것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왔으며 또 투쟁하고있다. 사회민주당은 인민내부에 있는 계급적적대에 대한 물리해를 이 말로써 엄폐하지 말것을 요구한다. 그들은 무산계급의 당이 완전히 계급적독자성을 가지고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전결히 주장한다. 그런데 사회민주당이 《인민》을 여러 《계급》으로 나누는것은 결코 선진계급

이 자기자신안에 폐쇄되어 편협한 틀안에 자기자신을 제한하며 어쨌든 세계의 경제적지배자들이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는 생각으로써 자기자신의 활동을 거세하여버리기 위하여 그리하는것이 아니라 선진계급이 중간계급들의 불철저성, 불결실성, 불결단성때문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이 전체 인민의 사업을 위하여 전체 인민의 선두에 서서 더 큰 의력과 더 큰 열의를 가지고 분투하기 위하여 그리하는것이다.

민주주의혁명에서의 적극적인 정치적구호를 제기할 대신에 《계급적》이라는 말을 여러가지로, 궤변식으로 되풀이하고만 있는 오늘의 신이스크라파는 바로 이 점을 너무나 자주 이해하지 못하고있다!

민주주의혁명은 자산계급적혁명이다. 분할지의 재분배 또는 토지와 자유라는 구호—이것은 억압당하고 몽매한 그러나 광명과 행복을 갈망하는 농민대중에게 매우 널리 보급된 구호이다.—는 자산계급적구호인것이다. 그러나 맑스주의자인 우리는 무산계급과 농민을 진정한 자유어로 이끄는 길은 자산계급적자유와 자산계급적진보의 길밖에는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현재 사회주의로 가까이 가는 데는 완전한 정치적자유, 민주주의공화제, 무산계급 및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독재이외의 다른 수단은 없으며 또 있을수도 없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보류조건도 없고 의혹도 없고 뒤를 돌아보는 일도 없는 혁명적인, 유일하게 혁명적인 선진계급의 대표자인 우리는 민주주의혁명의 임무를 필수 있는 대로 더 광범하게, 더 대담하게, 더 창발적으로 전체 인민앞에 내세워야 한다. 이 임무를 경시하는것은 이론적으로는 맑스주의를 만화화하며 그것을 속물적으로 외박하는것이며 정치적으로 실천적으로는 혁명의 철저한 수행에서 불가피적으로 떨어져나가는 자산계급에게 혁명위업을 넘겨주는것이다. 혁명의 완

전한 승리로 이르는 길에는 많은 곤란이 가로놓여있다. 만일 무산계급의 대표자들이 그들의 힘으로 할수 있는 일을 다 한다면 그들의 모든 노력이 반동세력의 저항, 자산계급의 배반, 대중의 몽매에 의하여 파탄된다 하더라도 아무도 그들을 비난할수 없을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회민주당이 승리를 두려워하며 자산계급이 떨어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는 생각으로 민주주의혁명의 혁명적력량을 약화시키며 혁명적열정을 타격한다면 누구나 다—누구보다도 먼저 작성한 무산계급이—그를 비난할것이다.

혁명은 력사의 기관차라고 맑스는 말하였다²⁵¹. 혁명은 피압박자들과 피착취자들의 성대한 명절이다. 인민대중은 혁명시기에 있어서처럼 그렇게 새 사회 질서의 적극적창조자로 행동하는 일은 결코 없다. 혁명시기에 있어서 인민은 점진적진보라는 협소한 시정배적척도의 견지로 보아서는 기적적인것을 창조해낼수 있다. 그러나 혁명적당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기들의 임무를 더욱 광범히 더욱 대담히 제기하여야 할것이며 그들의 구호가 언제나 대중의 혁명적인 자발적활동에 앞서 나아가 대중의 혁명적인 자발적활동의 등대가 되며 우리의 민주주의적 및 사회주의적 이상을 가장 위대하고 가장 훌륭하게 보여주며 무조건적이며 결정적인 완전승리로 향하는 가장 가깝고 가장 곧바른 길을 보여주어야 할것이다. 혁명을 두려워하며 곧바른 길을 두려워하여 돌음길, 에움길, 타협의 길을 꾸며내는 일은 《해방파》적자산계급의 기회주의자들에게 맡겨두자. 만일 강제로 우리가 이러한 길로 나아가지 않을수 없게 되여도 우리는 자기의 책임을 사소한 일상적사업에서라도 능히 리행할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우선 무자비한 투쟁을 통하여 길을 선택하는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만일 우리가 대중의 양양된 정력과 혁명적열정을 곧바르고도 결정적인 길을

위한 무자비하고 현신적인 투쟁에 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혁명에 대한 변절자나 반역자가 될 것이다. 자산계급의 기회주의자들이 장래의 반동을 겁내려거든 겁내라. 무서운 반동이 닥쳐올것이라거나 자산계급이 떨어져나갈것이라거나 하는 생각은 노동자들을 놀래우지 못한다. 노동자들은 타협을 기대하지 않으며 시여물을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반동세력을 무자비하게 분쇄하는대로, 즉 **무산계급 및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 독재**를 향하여 달려나가고있다.

착취자들이 노동계급의 피를 악착스럽게 서서히 빨아먹는 것을 의미하는 자유주의적진보라는 고요한 《항행》의 시기보다 폭풍우의 시기에 더 큰 위험성이 우리 당의 배를 위협한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혁명적민주주의독재의 임무가 《극단적반대파》의 임무나 한갓 의회투쟁의 임무보다 천배나 더 어렵고 복잡하다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혁명의 현시기에 고요한 항행이나 위험이 없는 《반대파》의 길을 의식적으로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당분간 사회민주당의 사업에서 떨어져서 혁명이 끝나는것을 기다리게 하는것이 더 좋을것이다. 그때에는 성대한 명절이 지나가고 다시 보통날이 시작되어 그의 평상적인 제한된 척도는 선진계급의 임무에 대하여 그렇듯 혐오스러운 불일치로, 그렇듯 기형적인 외곡으로는 되지 않을것이다.

전체 인민, 특히 농민의 선두에 서서 완전한 자유를 위하여, 철저한 민주주의혁명을 위하여, 공화제를 위하여 분투하자! 모든 근로자들과 피착취자들의 선두에 서서 사회주의를 위하여 분투하자! 혁명적무산계급의 정책은 사실상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 이러한것이 혁명시기의 노동자당의 매개전술문제의 해결책과 실천적인 매걸음을 일관하며 규정하여야 할 계급적구호이다.

후 기

다시한번 해방파에 대하여, 다시한번
신이스크라파에 대하여

《해방》잡지 제71~72호와 《이스크라》지 제102~103호는 이 소책자의 제8절에서 취급된 문제에 관하여 대단히 풍부한 새 자료를 제공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그 풍부한 자료를 최대한 리용할수는 도저히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지 다음과 같은 가장 중요한것에 대해서만 고찰하려 한다. 첫째로 《해방》잡지는 사회민주당내의 어떠한 종류의 《현실주의》를 찬양하며 또 어째서 그것을 찬양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둘째로 혁명이라는 개념과 독재라는 개념의 상호관계에 대하여서이다.

1. 자산계급자유주의적현실주의자들은
무엇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적《현실주
의자들》을 찬양하는가?

《로씨야사회민주당내의 분렬》이라는 논문과 《리지의 승리》라는 논문(《해방》잡지, 제72호)은 사회민주당에 대한 자유주의자산계급의 대표자들의 판단으로서 작성한 무산자들에게 있어서 매우 귀중한것이다. 모든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무조건적으로 이 두 논문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읽어보아야 하며 그 매개 구절을 자세히 생각해보아야 한다. 우리는 우선 이 두 논문의 주요한 논점을 아래에 소개한다.

《해방》잡지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옆에서 관찰해서는 사회민주당을 두 분파로 분렬시킨 의견상의 현실적인 정치적의의를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사업상 리익을 위하여 약간의 타협을 용인하는 <소수파>와는 달리 <다수파>는 더한층 급진적이고 또 직선적인 분파라고 규정하는것이 완전히 정확하다고는 할수 없으며 또 어쨌든 그 성격을 다 특정지었다고 할수 없다. 적어도 맑스주의정통파의 전통적교리는 레닌파보다 소수파가 아마 더 열심히 준수하고있는것 같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특정짓는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다수파>의 기본적인 정치적기분은 추상적혁명주의이며 소동주의이며 어떠한 수단으로든지 인민대중속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또 그들의 이름으로써 곧 정권을 탈취하려고 하는 경향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레닌파>를 사회혁명당원들과 가까와지게 하고있으며 또 그들의 의식속에서 계급투쟁의 사상을 전인민적로씨야혁명의 사상에 의하여 회미하게 만들고있다. 그리하여 <레닌파>는 실천상으로는 사회민주주의적학설의 많은 협애성을 포기하면서도 다른편으로는 혁명주의의 협애성에 물젼어 즉시 봉기를 일으킬 준비를 하는 이외의 온갖 다른 실천적활동을 포기하며 합법적 및 절반합법적 선동형태나 다른 반대파적류파들과의 실천적으로 유익한 모든 타협형태를 원칙적으로 무시하고있다. 그와는 반대로 소수파는 맑스주의적교리를 견지하고있으면서도 또한 맑스주의적세계관의 현실주의적요소도 보전하고있다. 이 분파의 기본적사상은 <무산계급>의 리익을 자산계급의 리익에 대립시키는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무산계급의 투쟁을—물론 사회민주당의 확고부동한 교리가 요구하는 일정한 한도내에서이기는 하지만—현실주의적으로 냉정하게 고려하며 이 투쟁의 모든 구체적 조건과 임무를 똑똑히 의식하고있다. 두 분파가 다 자체의 기본적견해를 완전히 시종여일하게 관철하지는 못하고있다. 그것은 즉 두 분파가 자기들의 사상적-정치적창조에 있어서 사회민주주의적교리의 엄격한 공식에 구속되어있기때문이다. 그 공식은 <레닌파>가 적어도 일부 사회혁명당원들처럼 직선적소동파로 되는것을 방해하고있으며 또 <이스크라파>가 로동계급의 현실적정치운동의 실천적령도자로 되는것을 방해하고있다.》

그리고 《해방》잡지의 필자는 몇개의 주요결정서의 내용을 인용하고서 그 결정서들에 대한 몇가지 구체적인견으로써 자기의 일반적《사상》을 설명하고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3차대회에 비하면 《소수파의 대

표회의는 무장봉기에 대하여 전혀 다른 태도를 취하고있다. 《무장봉기에 대한 태도가 다름에 따라》 임시정부에 관한 결정서들도 서로 같지 않다. 《이와 같은 의견상이는 직업동맹에 대한 태도에서도 나타나고있다. <에네파>는 그 결정서에서 노동계급에 대한 정치적교육과 조직화란 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에 관하여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소수파는 매우 정중한 결정서를 작성하였다.》 자유주의파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는, 필자는 두 분파가 일치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제3차대회는 《제2차대회에서 플레하노브의 제의에 의하여 채택된, 자유주의파에 대한 태도에 관한 결정서를 거의 원문 그대로 되풀이하고있으며 같은 대회에서 스태파워르의 제의에 의해 채택된, 자유주의파들에게 조더 호의를 표시한 결정서를 부인하고있다.》 농민운동에 관하여서는 대회와 대표회의의 결정서가 대체로 같으나 《<다수파>는 지주 등등의 로지를 혁명적수단으로 몰수한다는 사상을 더욱 강조하고있고 <소수파>는 국가적, 행정적 민주주의개혁을 요구하는것을 그 선동사업의 기초로 삼으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해방》잡지는 《이스크라》지 제100호에서 멘셰위크의 결정서 하나를 인용하고있는데 그 주요한 조목은 다음과 같다. 《지금에 있어서는 지하공작만으로는 대중이 당생활에 충분히 참가할수 있도록 보장할수 없으며 어느 정도 대중자체를 비밀조직원 당파 대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것을 고려하여 당은 합법적지반우에서 진행되는 노동자들의 직업동맹적투쟁을 자기수중에 틀어쥐고 이 투쟁을 사회민주당의 책임무와 엄격히 련계시킬 필요가 있다.》 《해방》잡지는 이 결정서에 관하여 《이 결정서를 러지의 승리로, 사회민주당의 일부 사람들의 전술상의 각성으로 보면서 우리는 열렬히 환영한다.》고 부르짖고있다.

이제야 독자들은 《해방》잡지의 모든 중요한 판단을 본셈이다. 이러한 판단을 객관적진리에 부합되는것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물론 극히 큰 잘못일것이다. 사회민주당의자라면 누구나 이 판단의 구절마다에서 잘못을 발견하기 어렵지 않을것이다. 이러한 모든 판단은 자유주의자산계급의 리익과 견해에 사로잡혀있으며 또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철두철미 편협하고

도 경향적이라는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유치한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오목거울이나 볼록거울이 물체를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사회민주당의 견해를 반영하고있다. 그러나 자산계급적으로 외박된 이러한 모든 판단은 결국 자산계급의 진정한 이익을 반영하고있다는것, 계급으로서의 자산계급은 사회민주당내의 어떤 경향이 그들—자산계급—에게 유익하고 가깝고 혈연적관계가 있고 호감을 주며 또 어떤 경향이 그들에게 해롭고 멀고 인연이 없고 반감을 주는가를 의심할바없이 옳게 리해하고있다는것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더욱 큰 잘못일것이다. 자산계급의 철학가나 자산계급의 정론가는 멘셰위크적사회민주당이든 볼셰위크적사회민주당이든간에 사회민주당이라는것을 결코 옳게 리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그가 다소라도 사리를 분별할줄 아는 정론가라면 그의 계급적본능이 그를 속이지 않을것이며 비록 그가 외박하여 묘사할지라도 사회민주당내의 이런 또는 저런 류파가 자산계급에 대하여 어떠한 의의를 가지는가 하는것을 언제나 본질적으로는 옳게 포착할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적들의 계급적본능과 그들의 계급적판단에 대하여 각성한 무산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언제나 그히 신중한 주의를 돌려야 한다.

그러면 로씨야자산계급의 계급적본능은 해방파의 입을 빌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있는가?

그것은 신이스크라파의 경향에 대한 만족감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신이스크라파의 현실주의, 명철성, 리지의 승리, 결정서의 신중성, 전술상의 각성, 실제성 등등을 찬양하고 제3차대회의 경향에 대한 불만을 분명히 표시하면서 제3차대회의 편협성, 혁명주의, 소동주의, 실천적으로 유익한 타협에 대한 거부 등등을 비난한다. 자산계급의 계급적본능은, 우리의 출판물에서 가장 정확한 자료에 의하여 재삼 증명된 바로 그

것을, 즉 신이스크라파는 현대로써야사회민주당내의 기회주의파이고 그의 반대자는 로씨야사회민주당내의 혁명파라는 것을 자산계급에게 일러준다. 자유주의파는 첫째 경향에 동감하지 않을수 없으며 둘째 경향을 비난하지 않을수 없다. 자유주의파는 자산계급의 사상가로서 로동계급의 《실체성, 명철성, 신중성》이 자산계급에게 유리하다는것 즉 그들의 활동무대를 사실상 자본주의나 개량이나 직업동맹적투쟁 등등의 범위내에 국한시키는것이 자산계급에게 유리하다는것을 잘 알고있다. 자산계급에게 위협하고도 두려운것은 무산계급의 《혁명주의적협애성》과 무산계급이 자기의 계급적임무를 위하여 로씨야의 전인민적혁명에서 평도적지위를 쟁취하려는 지향인것이다.

해방파적의미에서의 《현실주의》라는 말이 가지는 실제적의미가 이상과 같다는것은 특히 《해방》잡지와 스트루웨씨가 종래로 이 말을 어떻게 써왔는가 하는것으로 보아서도 명백히 알수 있다. 《이스크라》자체도 해방파적《현실주의》의 이러한 의미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레킨대 《이스크라》 제73~74호의 별책부록에 실린 논문 《때는 왔다!》를 상기하여보라. 그 논문의 필자(그는 일관적으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의 《진필파》의 견해를 표현하였다.)는 《아끼모브는 대회에서 기회주의의 진정한 대표자의 역할이라기보다 기회주의의 유명의를 역할을 놀았다.》고 자기의 의견을 솔직하게 표명하였다. 그리하여 《이스크라》의 편집부는 논문 《때는 왔다!》의 필자의 의견을 즉시 시정하지 않을수 없게 되어 주해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 의견에는 동의할수 없다. 강령에 대한 아끼모브동지의 견해에는 뚜렷한 기회주의의 흔적이 있는데 《해방》잡지의 비판가도 그 잡지의 최근 어느 호에서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아끼모브동지가 《현실주의적》—수정주의적이라고 읽으라.—파벌에 가담하고있다고 지적하고있다.》

이와 같이 《이스크라》자체가 해방파적《현실주의》는 다른것이 아니라 바로 기회주의라는것을 잘 알고있다. 《이스크라》는 지금 《자유주의적현실주의》를 공격하면서도(《이스크라》, 제 102호) **이스크라를 현실주의라고 자유주의파들이 찬양한** 사실에 대하여는 침묵을 지키고있다. 그것은 이러한 찬양이 그 어떠한 비난보다도 더 신랄하기때문이다. 이러한 찬양(《해방》잡지는 이러한 찬양을 우연하게 했거나 처음으로 한것이 아니다.)은 자유주의적현실주의와 사회민주주의적《현실주의》(기회주의라고 읽으라.)의 경향은—그것들은 신이스크라파의 모든 전술상립장이 잘못되어있는탓으로 그들의 매개 결정서에 일관되어있는 경향이다.—혈연적관계를 가지고있다는것을 실지로 증명하여준다.

사실에 있어서 로씨야자산계급은 자기들이 《전인민적》혁명에 있어서 불철저하며 리기적이라는것을 이미 완전히 폭로하였다.—스트루웨씨의 론의들을 통해서 폭로하였고 수많은 자유주의적신문들의 모든 론조와 내용을 통하여, 또 수많은 지방자치파와 수많은 지식인 그리고 프루베즈코이, 페트루께위치, 로지체브 및 그 일파의 모든 지지자들의 정치적연설의 성격을 통하여 폭로하였다. 일방으로 무산계급과 《인민》이 육탄으로서, 전제제도의 아성을 짓부시는 망치로서 **자산계급**혁명에 유익하나 타방으로 무산계급과 혁명적농민이 만일 《짜리제도에 대한 결정적승리》를 얻으며 민주주의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매우 위험하다는것을 자산계급은 언제나 똑똑히 알고있는것은 물론 아니지만 대체로 자기의 계급적본능으로 하여 그것을 썩 잘 감축하고있다. 그러므로 자산계급은, 무산계급이 혁명에서 《적당한》 역할을 노는것으로써 만족해하게 하며 또 보다 더 맹정하고 실천적이고 현실적으로 되게 하며 그의 활동이 《자산계급을 멀어져나가지 않도록

특》하는 원칙에 좇아 규정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력을 다한다.

학식있는 자산자들은 자기들이 로동운동을 막아낼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결코 로동운동을 반대하여나서거나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을 반대하여나서지 않는다. 아니다, 그들은 로동운동과 계급투쟁을 브렌타노적 또는 히르쉬-둥케르적인 것으로 리해하면서 심지어 파업의 자유와 문명한 계급투쟁에 대하여 백방으로 찬미하기까지 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다만 로동자들이 《소동주의》, 《편협한 혁명주의》, 《실천적으로 유익한 타협에 대한》적개심을 내버리기만 한다면, 그리고 《전인민적로씨야혁명》에다 자기들의 계급투쟁, 무산계급적일관성, 무산계급적결결성, 《평민적자코뱅주의》의 락인을 적으려는 요구와 열망을 내버리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파업과 결사의 자유(사실에 있어서는 벌써 로동자들 자신이 거의 전취한 자유)를 《양보》할 만단의 용의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식있는 자산자들은 전국각지에서 천만가지 수단과 방법으로—서적①, 보고, 연설, 담화 등등으로—(자산계급적)명철성, (자유주의적)실제성, (기회주의적)현실주의, (브렌타노적)계급투쟁¹⁸⁸, (히르쉬-둥케르적)직업동맹¹⁷⁶ 및 기타의 사상을 로동자들에게 고취하려고 전력을 다한다. 마지막 두 구호는 《혁명민주》당이나 《해방》당의 자산자들에게 특히 유리한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들은 표면상으로는 맑스주의적 구호와 일치하기때문이며 조금만 생략하거나 약간만 외곡하면 사회민주주의적구호와 혼동하기 쉽고 심지어 때로는 사회민주주의적구호인듯이 꾸밀수도 있기때문이다. 예를 들면 합법적 자유주의적신문 《러명》²⁵²(이 신문에 관하여는 앞으로 《무산자》지의 독자들과 자세히 말해보려고 한다.)은 계급투쟁이요,

① 프로코포위치의 《로씨야의 로동자문제》를 참조하라.

무산계급이 자산계급에게 기만당할 가능성이요, 노동운동이요, 무산계급의 독자적활동이요 하는것들에 대하여 그렇듯 《대담한》 언사들을 자주 되풀이하고있으므로 주의가 부족한 독자나 전식없는 노동자들은 그 신문의 《사회민주주의》를 진짜로 접수하기 쉬운 형편이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 그것은 사회민주주의를 자산계급적으로 위조한것이며 계급투쟁의 개념을 기회주의적으로 외곡하고 폭해한것이다.

이 일련의 굉장한(대중에 대한 영향의 넓이로 보아서) 자산계급적사기술책의 기초우에는 노동운동을 주로 직업동맹운동에 귀착시키며 그 운동을 독립적(즉 혁명적이며 민주주의독재를 목표로 하는)정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며 《노동자들의 의식속에서 전인민적로씨야혁명의 사상을 계급투쟁의 사상으로써 희미하게 만들려는》 경향이 가로놓여있다.

독자들이 보는바와 같이 우리는 《해방》잡지의 공식을 뒤바꾸어놓았다. 이것은 민주주의혁명에서의 무산계급의 역할에 대한 두가지 견해를, 즉 자산계급적견해와 사회민주당의 견해를 아주 명료하게 표현하는 절묘한 공식이다. 자산계급은 무산계급을 한갓 직업동맹운동에만 끌어넣으려 하며 그리함으로써 바로 《신조》의 베른슈타인파의 필자들이 노동자들의 의식속에서 정치투쟁의 사상을 《순수한 노동》운동의 사상으로써 희미하게 만들려고 한것과 같이 노동자들의 의식속에서 전인민적로씨야혁명의 사상을 《(브렌타노적)계급투쟁의 사상으로써 희미하게 만들려고》 한다. 이와는 반대로 사회민주당은 무산계급이 전인민적로씨야혁명에 참가하며 평도적역할을 감당하도록 무산계급의 계급투쟁을 발전시키려고, 다시말하면 그 혁명을 무산계급 및 농민의 민주주의독재에까지 이끌어가고한다.

자산계급은 무산계급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나라

의 혁명은 전인민적혁명이다. 그러므로 특수한 계급인 당신들은 자기의 계급투쟁에 국한해야 하며 《리치》를 위하여 자기의 주의력을 주로 직업동맹과 그 합법화에 돌려야 한다. 바로 이러한 직업동맹을 《자체에 대한 정치적교육과 조직화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혁명적시기에 있어서는 신이스크라파의 결정서와 같은 대체로 《신중》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자유주의파들에게 다소라도 호의적인》 결정서를 소중히 대하여야 한다. 《로동계급의 현실적정치운동의 실천적령도자》가 되려는 경향을 가진 령도자를 골라야 한다. 《맑스주의적세계관의 현실주의적요소를 보전》(만일 당신들이 유감스럽게도 이 《비과학적》교리문답의 《엄격한 공식》에 감염되었다면)하여야 한다.

사회민주당은 무산계급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나라의 혁명은 전인민적혁명이다. 그러므로 가장 선진적이며 또 어디까지나 유일하게 혁명적인 계급인 당신들은 그 혁명에 가장 정력적으로 참가해야 할뿐아니라 또한 이 혁명을 령도하기에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주로 공회운동이란 의미로 협애하게 리해된 계급투쟁의 범위안에 간혀있는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자기의 계급투쟁의 범위와 내용을 확대하여 오늘의 민주적, 전인민적 로씨야혁명의 모든 임무뿐아니라 앞날의 사회주의적혁명의 임무까지도 포괄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러므로 직업동맹운동을 무시하지 말고 사소한 합법적활동의 여지까지도 리용하기를 거부하지 말아야 하며 동시에 혁명시기에는 인민이 짜리제도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하며 민주공화제와 진정한 정치적자유를 전취할수 있는 유일한 길인 무장봉기와 혁명군대와 혁명정부를 세우는 임무를 첫자리에 내세워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신이스크라파의 결정서가 그들의 그릇된

《로선》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불견정하고 불철저하며 따라서 자연스럽게 자산계급의 호감을 사는 입장을 취하였는가 하는데 대하여서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2. 마르띠노브동지에 의한 문제의 새로운 《심각화》

《이스크라》지 제102호와 제103호에 게재된 마르띠노브의 논문으로 넘어가자. 마르띠노브는 엥겔스와 맑스의 저서에서 따온 일련의 인용문을 해석함에 있어서 우리의 해석은 옳지 못하고 자기의 해석은 옳다는것을 증명하려 하였는데 우리는 물론 그의 이런 시도를 논박하지 않겠다. 그 시도는 너무나 신중치 못하며 마르띠노브의 핑계는 매우 명백하고 문제는 매우 명확한것이므로 그것을 또한번 분석하는것은 흥미없는 일일 것이다. 특히 《무산자》지의 일부분 편집일군들이 준비하고있는 엥겔스의 소책자 《활동중의 바꾸닌주의자들》과 맑스의 소책자 《공산주의자동맹집행위원회의 호소문》(1850년 3월)253의 완전한 역본이 이제 곧 출판되게 된 이때에 분별있는 독자라면 누구나 다 마르띠노브가 전면적 퇴각을 하면서 구며던 어리석은 궤계를 쉽게 간파할것이다. 마르띠노브의 퇴각을 독자들에게 명확히 알리기 위해서는 그의 논문중에서 한구절만 인용하여도 충분할것이다.

마르띠노브는 《이스크라》지 제103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스크라》는 《림시정부의 창립은 혁명발전의 가능하고 적절한 길의 하나라고 인정하나 **자산계급** 림시정부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참가함이 적절하다는것은 부인하는데 그것은 바로 장차 사회주의적혁명을 위하여 국가기구를 완전히 장악할 필요성이 있기때문이다》. 바꾸어말하면 《이스크라》지는

국고나 은행에 대하여 혁명정부가 책임을 절가봐 별별 땀고 《감옥》 및 기타를 자기가 장악하는것은 위험하고 또 불가능한 일이라고 별별 떠는 그의 모든 고려는 황당한 일이라는것을 지금 이미 인정하고있다. 《이스크라》지는 민주주의독재와 사회주의독재를 혼동하면서 여전히 혼란에 빠지고있을따름이다. 퇴각을 엄호하기 위해서는 혼란은 불가피한것이다.

그런데 신《이스크라》의 혼란자들중에서도 마르피노브는 첫째가는 혼란자로서—만일 이렇게 말할수 있다면—재능있는 혼란자로서 특출하다. 문제를 《심각화》하려고 한껏 애를 쓰다가 도리어 문제를 혼란시켰을 경우마다 그는 거의 언제나 그와 동시에 자기 립장의 모든 허위성을 남김없이 폭로하는 새로운 공식까지 《고안》해낸다. 그가 경제주의시대에 어떻게 플레하노프를 《심각화》하였으며 《공장주와 정부에 대한 경제적투쟁》이라는 공식을 창조적으로 만들어내었던가를 상기하여보라. 경제파들의 전체 저작에서도 이 류파의 모든 허위성을 그보다 더 잘 알맞게 표현한 공식은 찾아내기 어려울것이다. 지금도 그렇다. 마르피노브는 신《이스크라》지를 위하여 열성껏 봉사하고있는데 그가 입을 벌리기만 하면 거의 언제나 신이스크라파의 허위적립장을 평가할수 있는 훌륭한 새 자료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제102호에서 그는 말하기를 레닌은 《혁명이란 개념을 독재라는 개념으로 슬쩍 바꾸어놓았다.》(제3면 제2단)고 한다.

우리에 대한 신이스크라파의 모든 비난은 본질상 이 비난에 귀착된다. 그런데 우리는 마르피노브가 우리를 이렇게 비난한데 대하여 그에게 큰 감사를 드린다! 그는 이와 같은 비난의 공식을 제공함으로써 신이스크라파와의 투쟁에서 우리에게 귀중한 방조를 주었다! 우리는 정말 《무산자》지에 대한 공격을 《심각화》하며 또 그 공격을 《참으로 원칙적으로》 정식화

하기 위하여 더 자주 마르띠노브를 내세워서 우리를 반대하게 할것을 《이스크라》지 편집부에 요구하여야 하겠다. 왜냐 하면 마르띠노브가 원칙적으로 론술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더 쫓겨나며 신이스크라파의 결함을 더 똑똑히 드러내며 자기와 자기의 친구들에 대한 유익한 교육적해부, 즉 *reductio ad absurdum*(신《이스크라》지의 원칙을 모순에 빠지게 하는것)을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할것이기때문이다.

《전진》지와 《무산자》지는 혁명이라는 개념과 독재라는 개념을 《바꾸어놓는다》. 《이스크라》지는 그와 같이 《바꾸어놓는》것을 원하지 않는다. 참말 그렇다, 존경하여 마지않는 마르띠노브동지여! 당신은 무심결에 위대한 진리를 말하였다. 당신은 새 규정으로써—《이스크라》지는 혁명의 뒤꼬리에 끌려다니며 해방파처럼 혁명의 임무를 정식화하는 기로에서 헤매지만 《전진》지와 《무산자》지는 민주주의혁명을 추진시킬 구호를 제기하고있다는—우리의 명제를 확인하였다.

마르띠노브동지여! 당신은 이것을 모르는가?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하므로 우리는 힘을 아끼지 않고 당신에게 상세히 해설하여주려 한다.

민주주의혁명의 자산계급적성격은 사유재산과 상품경제를 승인하는 지반위에 완전히 딛각한, 그리고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허다한 사회적 계급, 집단 및 계층들이 형세에 끌리어 부득이 전제제도 및 전반 농노제도가 소용이 없다는것을 인정하게 되며 자유를 요구하는데 가담하게 된다는 점에서 특히 나타난다. 이와 아울러 《사회》가 요구하고 지주들과 자본가들이 무수한 말로써(단지 말로써만!) 옹호하는 이 자유의 자산계급적성격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그와 함께 자유를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과 자유를 위한 자산계급의 투쟁과의 사이의 근본적차이와 또 무산계급적민주주의와 자유주의적민주

주의와의 사이의 근본적차이가 더욱 뚜렷하여진다. 로동계급과 그의 작성한 대표자들은 그 투쟁을 끝까지 수행하는것을 두려워하지 않을뿐아니라 도리어 민주주의혁명의 가장 먼 종점보다 훨씬 더 멀리 나아가려고 하면서 그것을 전진시키며 추진시킨다. 자산계급은 불철저하고 리기적이기때문에 자유라는 구호를 불완전하게 위선적으로 접수할 따름이다. 자유의 자산계급적벗의 이 위선이, 또는 자유의 자산계급적벗의 자유에 대한 배반이 시작되는 한계를 특별한 계선으로써, 특별히 작성된 《조목》(스파르웨르 또는 대표회의파들의 결정서의 조목과 같은)으로써 규정하려고 하는 온갖 기도는 기필코 실패하기 마련이다. 왜냐 하면 양면(전제제도와 무산계급)으로부터의 포화의 중간에 끼여있는 자산계급은 때로는 왼쪽으로 때로는 오른쪽으로 순응해가며 항상 흥정을 하고 중개인적행동을 하면서 천만가지 방법과 수단으로써 자기의 립장과 구호를 바꾸는 능력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무산계급적민주주의의 임무는 그러한 측은 《조목》을 고안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발전하는 정치적형제를 꾸준히 비판하며, 예측할수 없는 부단히 새로 나타나는 자산계급의 타협과 변질을 폭로하는데 있는것이다.

스트루웨씨가 비합법출판물에 정치적인론을 발표한 력사와 사회민주당이 그와 투쟁한 력사를 상기하여보라. 그러면 여러분은 무산계급적민주주의의 투사인 사회민주당이 이 임무를 어떻게 실현하고있는가를 똑똑히 볼수 있을것이다. 스트루웨씨는 처음에는 《권리 및 권력있는 지방자치기관》이라는 순쉬 포브식구호를 제기하였다.(《서광》잡지147에 게재된 나의 논문 《지방자치국의 압박자들과 자유주의의 한니발들》①을 보라.) 사회민주당은 그를 폭로하였고 명확한 립헌주의적강령을 내놓

① 《베닌전집》, 한문판, 제5권, 17~63페이지를 보라.—편집자

도록 그를 추진하였다. 이 《추진》이 혁명적사변들의 특히 급속한 진전으로 하여 효과를 발생하였을 때에 투쟁은 민주주의의 다음문제, 즉 헌법일반뿐아니라 반드시 무기명투표에 의한 일반적, 직접적, 평등적 선거권으로 되어야 한다는데 돌려졌다. 우리가 《적》들에게서 이 새로운 진지를 《점령》하였을 때(《해방동맹》이 일반선거권을 택하였을 때) 우리는 더 바투다가서서 망원제가 위선적이고 허위적이라는것과 해방파의 일반선거권에 대한 승인은 불완전하다는것을 밝혔으며 또 그들의 군주주의를 실체로 그들의 민주주의의 중개인적성격을, 다시말하면 해방파의 이 돈주머니영웅들이 위대한 로씨야혁명의 리익을 **혈값으로 팔아먹고있다**는것을 밝히면서 앞으로 더 내밀기 시작하였다.

마지막으로 전제정부의 야만적완고성, 국내전쟁의 거대한 진전, 군주주의자들이 로씨야를 절망적지경으로 끌어넣은 그 상태—이 모든 사실은 가장 보수적인 인간의 머리속에까지도 뚫고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혁명은 **사실로** 되었다. 지금은 혁명가가 아닐지라도 혁명을 시인할수 있게 되었다. 전제정부는 사실상 와해되고있으며 그것도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와해되고있다. 한 자유주의자(그레제스꿀씨)가 합법적출판물에서 정당하게 지적한바와 같이 사실상 이 정부에 복종하지 않는 국면이 조성되었다. 전제제도는 표면으로는 강한것 같으나 실상은 무력하게 되었으며 발전하여가는 혁명적사변들은 산채로 썩고있는 이 기생적유기체를 아예 옆으로 밀어버리게 되었다. 자유주의적자산자들은 사실상 조성되고있는 일정한 관계의 지반우에서 자기의 활동(더 정확히 말하면 자기의 정치적투기)을 진행하는수밖에 없으므로 **혁명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느끼기 시작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것은 그들이 혁명가기때문이 아니라 혁명가는 아니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

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들은 할수없이, 마지못하여 그렇게 한다. 그들은 혁명의 성공을 증오하며 전제정부가 타협하려 하지 않고 결사적인 투쟁을 하려는것은 혁명을 돕는것이라고 비난한다. 천생 타고난 소상인인 그들은 투쟁과 혁명을 미워하지만 객관정세는 그들을 혁명의 지반우에 서게 한다. 왜냐 하면 달리는 설 지반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매우 교훈적이며 매우 희극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있다. 자산계급자유주의의 매음부들은 혁명의 걸음을 입으려고 시도한다. 해방파가—여러분! 웃음을 참으시라. —해방파가 혁명의 명의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해방파가 자기들은 《혁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스트루웨씨의 말, 《해방》잡지 제72호를 보라.)고 단언하기 시작하였다!!! 해방파가 《혁명의 앞장에 서겠다.》는 야망을 표명한다!!!

이것은 비단 자산계급자유주의의 진보를 특징지을뿐아니라 나아가서는 혁명운동의 실제적성공의 진보, 사람들로 하여금 혁명운동을 승인**하지 않을수 없게 한** 진보를 특징짓는 매우 의미심장한 현상인것이다. 심지어 자산계급까지도 혁명의 지반우에 서는것이 더 유익하다는것을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까지 전제제도는 뒤흔들리게 되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모든 운동이 새로운 보다 높은 단계에로 향양되었다는것을 증명하여주는 이 현상은 또한 마찬가지로 새롭고 보다 높은 임무를 우리앞에 제기하고있다. 자산계급이 혁명을 승인하는것은 진심일수는 없다. 그것은 자산계급의 이러저러한 사상가들의 개인적성실성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다. 자산계급은 운동의 보다 높은 이 단계에도 자기의 리기주의와 불철저성과 소상인근성과 조그마한 반동적간계를 가지고 들어오지 않을수 없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강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또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혁명의 당면한 구체적임무를 **달리**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는 충분하던것이 **오늘에는 벌써 불충분하게 된다**. 혁명을 승인하라는 요구는 어제는 선진적인 민주주의적 구호로서 충분하였을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혁명은 스트루웨씨마저도 그것을 승인하지 않을수 없게 하였다. 지금은 선진계급에게 이 혁명의 긴급하고 절박한 임무의 **내용자체**를 정확하게 규정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스트루웨씨들은 혁명을 승인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곧 평화적 종결이 가능하느니 **니플라이가** 해방파제씨를 정권으로 부르리라느니 하는 등등의 낡아빠진 소리를 되풀이하면서 또다시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고있다. 해방파제씨들이 혁명을 승인하는것은 보다 더 안전하게 이 혁명을 없애버리며 혁명을 팔아먹기 위해서이다. 지금 우리가 할일은 무산계급과 전체 인민에게 혁명이라는 구호가 불충분하다는것을 지적하고 혁명의 **내용자체**를 명백하게, 확실하게, 철저하게, 결정적으로 규정하는것이 필요하다는것을 제시하는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규정할수 있는것은 곧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정확하게 표현할수 있는 유일한 구호 즉 무산계급 및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 독재라는 구호이다²⁵⁴.

말의 랍용은 정치상에서 가장 흔히 보는 현상이다. 예를 들면 영국의 자산계급적자유주의자들이나(하커트는 《우리는 지금 모두 사회주의자이다.》—《We all are socialists now》—고 말하였다.) 비스마르크의 숭배자들이나 교황 레오13세의 벗들이나 다 《사회주의자》로 자처한 일이 한두번만이 아니다. 《혁명》이란 말도 역시 완전히 랍용될수 있으며 또 운동의 일정한 발전단계에서는 지어 불가피하게 랍용된다. 스트루웨씨가 혁명의 명의로 말하였을 때 우리는 저도 모르게 떠에르를 상기하게 되었다. 2월혁명²⁵⁵을 며칠 앞두고 이 흉악한 난쟁이—자산계급의 정치적변질의 리상적대표인물—는 인민적폭풍

우가 닥쳐오리라하는것을 예감하고는 의회연단에서 자기가 **혁명당에 속한다**고 선언하였다! (맑스의 《프랑스국내전쟁》²⁵⁶을 보라.) 해방파의 혁명당으로의 이행이 가지는 정치적인의의는 떠에르의 이 《이행》과 **완전히 동일하다**. 로씨야의 떠에르들이 자기네가 혁명당에 속한다고 말하게 되었을 때 그것은 혁명이란 구호가 벌써 불충분하며 아무것도 설명하지 못하며 아무 임무도 규정하지 못하는 구호로 되었음을 의미하는것이다. 왜냐 하면 혁명은 사실로 되었고 가지각색의 인간들이 혁명의 편으로 몰려들었기때문이다.

맑스주의적전지에서 볼 때 혁명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낡은 정치적상부구조에 대한 폭력적파괴인바 이 정치적상부구조와 새 생산관계와의 모순은 일정한 시기에 가서 이 상부구조의 붕괴를 초래한다. 자본주의적로씨야의 결구전체와 전제제도와의 모순, 자본주의적로씨야의 자산계급민주주의적발전의 요구전체와 전제제도와의 모순은 인위적으로 오래동안 억제되어온만큼 지금 한층더 힘있게 전제제도의 붕괴를 초래한것이다. 상부구조는 이미 온통 틈이 생기고 공격에 견디어 내지 못하며 약해지고있다. 인민들은 각 계급과 집단의 대표들을 통하여 자기스스로 새 상부구조를 만들지 않으면 안된다.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낡은 상부구조가 쓸모없게 된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다 명백하게 된다. 이제는 누구나 다 혁명을 승인한다. 지금의 임무는 **과연 어떤 계급들이 바로 어떻게 새 상부구조를 세우는가를 규정하는데 있다**. 이것을 규정하지 않고서는 혁명이란 구호가 오늘에 있어서도 텅 비고 내용없는 것으로 된다. 왜냐 하면 전제제도의 허약성은 대공들이나 《모스크바시보》⁶⁶까지도 죄다 《혁명가》로 만들어주기때문이다! 이것을 규정하지 않고는 선진계급의 선진적민주주의임무에 대해서는 운운할 여지도 없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으로 되는것

은 곧 무산계급 및 농민의 민주주의독재라는 구호인 것이다. 이 구호는 새 상부구조의 새 《건설자》가 의거할 수 있고 또 의거해야 할 계급들을 규정하며 또 이 상부구조의 성격(사회주의적독재와는 다른 《민주주의적》독재), 구조의 건설방식(독재, 즉 폭력적반항에 대한 폭력적진압, 인민의 혁명적계급들의 무장)을 규정하고 있다. 오늘날 혁명적민주주의독재란 이 구호, 혁명군, 혁명정부와 혁명적농민위원회의 건립에 관한 구호를 승인하지 않는자는 혁명의 임무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으며 현시기에 제기되는 새롭고 보다 높은 혁명의 임무를 규정할 능력이 없는 자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혁명》이란 구호를 람용하여 인민을 속이고 혁명을 배반하는 자이다.

마르피노브동지와 그의 벗들이 첫째 경우에 속하며 스트루웨씨와 《혁명민주주의》지방자치당전체가 둘째 경우에 속한다.

마르피노브동지는 어쩌나 평리하고 총명하였던지 혁명의 발전이 혁명의 임무를 독재라는 구호로 규정할 것을 요구하는 바로 그때에 그는 혁명이란 개념과 독재라는 개념을 《바꾸어놓았다》고 남을 비난하였다! 마르피노브동지는 사실 이번에도 불행하게 뒤꼬리를 따라가고 있으며 이미 지나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해방파의 수준에 놓이게 되었다. 왜냐 하면 지금 《혁명》을 (말로) 승인하면서도 무산계급 및 농민의 민주주의독재(실제상의 혁명)를 승인하려 하지 않는 것은 바로 해방파적정치립장, 즉 자유주의적군주주의적자산계급의 이익에 합치되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자산계급은 지금 스트루웨씨의 입을 빌어서 혁명을 찬성한다. 각성한 무산계급은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들의 입을 통하여 무산계급 및 농민의 독재를 요구한다. 바로 이럴 때에 신《이스크라》출신의 한 총명한자가 혁명이란 개념과 독재라는 개념을 《바꾸어놓지》 말라고 소리치면서 쌍

방의 논쟁에 끼여들었다! 보라, 신이스크라파의 허위적립장이 언제나 해방파의 뒤꼬리를 따라다니는 운명에 그들을 빠뜨리고 있다는것이 과연 정말이 아닌가?

우리는 해방파가 민주주의를 승인하는 점에서 한걸음한걸음씩 우로 올라가고있다는것(사회민주당이 고무추동한 영향이 없지 않다.)을 표시하였다. 처음에는 우리와 그들과의 논쟁에서 문제로 된것은 쉬보브주의(권리 및 권력있는 지방자치기관)인가, 그렇지 않으면 립헌주의인가 하는데 있었고 그다음에는 제한된 선거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선거권인가? 하는데 있었고, 또 그다음에는 혁명을 승인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전제정부와 중개인식흥정을 할것인가 하는데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지금에는 무산계급 및 농민의 독재가 없는 혁명을 승인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혁명에 있어서의 이 두계급의 독재의 요구를 승인할것인가 하는데 있었다. 해방파 제씨들(현재의 그들이나 또는 자산계급적민주파좌익에 속하는 그들의 후계자들이나를 막론하고)이 또 한걸음 우로 올라서러라는것, 즉 시간이 좀 지나면(아마도 마르피노브동지가 한걸음 더 올라서는 그때에) 그들이 독재라는 구호까지도 승인하게 되리라는것은 있을수 있는 일이며 또 꼭 있음직한 일이다. 만일 로씨야혁명이 성과적으로 진전되고 또 결정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면 이런 일은 지어 불가피하게 될것이다. 그때에는 사회민주당의 립장은 또 어떻게 될것인가? 지금의 혁명의 완전한 승리는 민주주의혁명의 종점으로, 동시에 사회주의혁명을 위한 결정적투쟁의 출발점으로 될것이다. 현재의 농민의 여러가지 요구의 실현, 반동세력의 완전한 분쇄, 민주공화제의 전취는 자산계급의 혁명성뿐아니라 심지어 초자산계급의 혁명성의 종점으로 될것이며 사회주의를 위한 무산계급의 본격적투쟁의 출발점으로 될것이다. 민주주의혁명이 완전하게 되면 될

수록 이 새 투쟁은 더 빨리, 더 광범하게, 더 순수하게, 더 결정적으로 전개될 것이다. 《민주주의》독재라는 구호는 지금의 혁명의 역사적국한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온갖 억압과 온갖 착취로부터 노동계급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이 새 제도를 기초로 하여 진행될 필연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민주주의적 자산계급이나 초자산계급이 한걸음 더 올라서는 때, 즉 혁명뿐만아니라 혁명의 완전한 승리까지도 사실로 되는 때—그때에 우리는 민주주의독재라는 구호를 무산계급의 사회주의독재, 즉 완전한 사회주의혁명이라는 구호로써 《바꾸어놓을》것이다.(아마도 장래의 새 마르띠노브일파의 공포에 찬 절규를 듣게 될것이지만)

3. 독재에 대한 속류자산계급적 서술과 그에 대한 맑스의 견해

메링은 1848년의 《신라인신문》에 게재된 맑스의 논문들을 출판하면서 쓴 그 주해에서 자산계급출판물은 《신라인신문》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유일한 수단으로서의 독재를 즉시 실시할것》(《맑스의 유저》, 제3권, 53페이지)을 요구하였다는것으로써 이 신문을 비난하였다고 썼다. 속류자산계급적전제로 보면 독재란 개념과 민주주의란 개념은 서로 배척한다. 계급투쟁의 리론을 리해하지 못하며 정치무대에서 자산계급의 각종 소집단들간의 무익한 다툼질을 보는데만 습관된 자산자는 독재를 모든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담보의 파기, 온갖 종류의 전횡, 독재자개인을 위한 권력의 온갖 탐용으로 리해한다. 사실상 바로 이 속류자산계급적전해가 우리 마르띠노브에게서도 표현되고있는데 그는 신《이스크라》지에 쓴 《새 싸움》의 결속어에서 《전진》지와 《무산자》지가 독재라는 구호를 특별히 즐기는것은 레닌이 《행복을 누리려고 열망하는》(《이스크라》지,

제103호, 제3면 2단) 까닭이라고 설명하였다. 계급독재의 개념이 개인독재와 다르고 민주주의독재의 임무가 사회주의독재의 임무와 다르다는 것을 마르띠노브에게 해명해주기 위하여 《신라인신문》의 견해를 살펴보는 것도 무익한 일은 아닐 것이다.

《신라인신문》은 1848년 9월 14일에 다음과 같이 썼다. 《혁명후의 일체 임시적국가기구는 독재를, 그것도 강력한 독재를 요구한다. 우리는 처음부터 캄프하우젠[1848년 3월 18일후의 내각수반]이 독재를 실시하지 않았고, 그가 낡은 제도의 잔재를 즉시 분쇄 제거하지 않았다고 비난하였다. 그리하여 캄프하우젠씨가 령헌적환상에 잠겨있을 때 격파당한 당파[즉 반동정당]는 관료기구와 군대안에서 자기의 진지를 강화하였으며 지어는 여기저기서 감히 공개적인 전투를 감행하게까지 되었다.》²⁵⁷

이 말은 《신라인신문》이 캄프하우젠 내각에 관한 긴 논문들에서 상세히 논술한 것들을 몇가지 명제로 요약하였다고 메링은 정당하게 말하고 있다. 맑스의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임시혁명정부는 독재를 실시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독재라는 구호를 슬슬 피하는 《이스크라》지는 이 명제를 결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 독재는 낡은 제도의 잔재를 청산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우리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바로 반혁명파의 투쟁에 관한 로씨야 사회민주노동당 제3차대회 결정서에는 명백하게 지적되어 있으나 대표회의의 결의에는 빠져있는 그것)을 말하여준다. 마지막으로 즉 셋째로 그 말은 맑스가 자산계급적민주파들이 혁명시기와 공공연한 국내전쟁시기에 《렙헌적환상》을 품고 있었으므로 그들을 비난하였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이 말의 의미는 1848년 6월 6일부 《신라인신문》의 논문에서 특히 명백하게 볼 수 있다. 맑스는 아래와 같이 썼다. 《헌법 제정국민의회는 무엇보다도 먼저

적극적인, 혁명적으로 적극적인 의회로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프랑크푸르트의회는 소학생처럼 의회정치의 학과편습을 일삼고있으며 각 정부들의 자의적행동을 방임하고있다. 가령 이 학술모임이 충분한 토론끝에 가장 훌륭한 의사일정과 가장 훌륭한 헌법을 작성하는데 성공한다고 하자. 그러나 만일 두 일 각 정부들이 이때에 벌써 총검을 의사일정에 올려놓는다면 가장 훌륭한 의사일정도, 가장 훌륭한 헌법도 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²⁵⁸

이러한것이 바로 독재라는 구호의 의미이다. 여기에서 《헌법제정회의를 조직하기로 결정》한것을 결정적승리라고 부르거나 《극단적인 혁명적반대당으로 남아있으라!》고 권유하는 결정서들에 대하여 맑스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였을것인가를 가히 짐작할수 있다!

각국민민의 생활에서의 큰 문제는 오직 폭력에 의해서만 해결된다. 로씨야전제정부가 실행하여왔으며 또 1월 9일이래 전국각지에서 일관적으로 완고하게 계속 실행하고있는바와 같이 모든 반동계급자체가 보통 먼저 폭력과 국내전쟁의 수단을 취하며 《총검을 의사일정에 올려놓는다》. 그런데 그러한 사태가 조성되어 총검이 실지로 정치적의사일정의 첫자리에 오르고 일단 봉기가 필요하고 절박한 일로 된다면 그때에는 뱀헌적환상이라든가 소학생처럼 의회정치의 학과편습을 일삼고있는것은 다만 자산계급이 혁명을 배반하는것을 가리우는것밖에 안되며 자산계급이 혁명으로부터 《떨어져나가는》것을 가리우는것밖에 안된다. 참다운 혁명적계급은 그때에 바로 독재라는 구호를 내세워야만 되는것이다.

이 독재의 임무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맑스는 《신라인신문》에서 또 다음과 같이 썼다. 《국민의회는 부패한 정부들의 반동적기도를 반대하여 도처에서 독재적행동을 취했어야만 하

였을것이다. 그래야만 그 의회는 어떠한 총검도…분쇄할수 있는 크나큰 힘을 인민의 여론에서 얻었을것이다.… 그런데 그 의회는 독일인민을 이끌고 나가거나 독일인민에게 이끌려나갈 대신에 지루한 말로써 인민에게 권태감을 자아내고있다.»²⁵⁹ 맑스의 의견에 의하면 국민의회는 《독일에 현존하는 제도에서 인민전제의 원칙에 모순되는 모든것을 제거하고》 그런 다음에 《그가. 럽각한 혁명적지반을 튼튼히 하며 혁명의 전취물인 인민전제를 모든 공격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것이였다.²⁶⁰

따라서 맑스가 1848년에 혁명정부 또는 혁명적독재앞에 내세운 임무는 그 내용으로 보아서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적혁명**을 실현하는것이였다. 즉 반혁명세력을 방위하며 인민의 전제에 모순되는 모든것을 실제상 제거하는것이였다. 이것이 바로 혁명적민주주의독재인것이다.

이제 앞으로 더 나가자. 맑스의 의견에 의하면, 당당시 어떤 계급이 이 임무(인민전제의 원칙을 참으로 끝까지 실행하며 반혁명의 공격을 격퇴하는것)를 실현할수 있었으며 또 실현하여야 하였는가? 맑스는 《인민》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인민》은 다 일치하다느니 인민내부에는 계급투쟁이 없다느니 하는 소자산계급적환상에 대하여 언제나 무자비하게 투쟁하였다는것을 알고있다. 맑스는 《인민》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그 말로 각 계급들간의 차이를 말살해버린것이 아니라 혁명을 끝까지 수행할만한 일정한 요소들을 련합시켰다.

《신라인신문》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베를린의 무산계급이 3월 18일의 승리²⁶¹를 거둔후 혁명의 결과는 2중적으로 나타났다. 즉 《한편으로는 인민의 무장, 결사의 권리, 사실상 전취된 인민의 전제였으며 다른편으로는 군주정체의 보존과 캄프라우젠-한제만내각, 즉 대자산계급의 대표자들의 정부였다.

이와 같이 혁명은 2중적성질의 결과를 가져왔는데 그것은 불가피적으로 결렬에 이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인민은 승리하였다. 인민은 완전한 민주주의적성격의 자유를 전취하였으나 직접적지배권은 그들의 손으로 넘어가지 않고 대자산계급의 손으로 넘어갔다. 한마디로 말하면 혁명은 철저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인민은 대자산계급의 대표자들에게 내각조직을 위임하였는데 한편 대자산계급의 대표들은 구프로써아의 귀족과 판로배들에게 동맹을 맺을것을 제의함으로써 자기들의 의향을 즉시 표명하였다. 그 내각에는 아르넵과 카니쯔와 슈웨린이 들어갔다.

에당초부터 반혁명적이던 대자산계급은 인민 즉 로동자와 민주주의적자산계급이 두려워서 반동파와 공수동맹을 맺었다.》(밑점은 내가 찍은것이다.)²⁶²

그러므로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위하여서는 《헌법제정회의를 조직하기로 결정》하는것만으로는 불충분할뿐아니라 그 회의실제로 소집하는것마저도 불충분하다! 심지어 무장투쟁에서 부분적으로 승리한 (군대에 대한 베를린로동자들의 1848년 3월 18일의 승리)후에도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을》수 있으며 《철저히 수행되지 못할》수 있다. 혁명의 철저한 수행은 무엇에 달려있는가? 그것은 직접적지배권이 대체 누구의 손으로 넘어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빼트룬끼위치나 로지체브과의, 즉 캠프하우젠이나 한제만파의 손으로 넘어가는가 그렇지 않으면 인민 즉 로동자와 민주주의적자산계급의 손으로 넘어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첫째 경우에는 자산계급이 정권을 잡고 무산계급은 《비판의 자유》 즉 《극단적인 혁명적반대당으로 남아있을》자유를 가질것이다. 혁명이 승리하자 자산계급은 즉시 반동파 동맹을 맺을것이다.(예를 들면 만일 빼제르부르그의 로동자와 군대와의 시가전에서 부분적승리밖에 얻지 못하고 정

부의 조직을 빼트룬게위치일파에게 맡긴다면 로씨야에서도 불가피하게 그렇게 될것이다.) 둘째 경우에는 혁명적민주주의독재, 즉 혁명의 완전한 승리가 가능하게 될것이다.

이제 남은 문제는 맑스가 대자산계급에 대립시켜 노동자와 함께 인민이라고 부른 《민주주의적자산계급》(demokratische Bürgerschaft)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더 정확하게 규정하는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848년 7월 29일부 《신라인신문》에 실린 논문의 아래와 같은 구절이 명확한 대답을 준다. «... 1848년의 독일혁명은 다만 1789년의 프랑스혁명에 대한 풍자에 불과하다.

1789년 8월 4일, 바스며유감옥점령후 3주일이 지나서 프랑스인민은 단 하루 사이에 모든 봉건적의무를 타승하였다.

3월의 바리케트전이 있은후 4개월이 지난 1848년 7월 11일에는 봉건적의무가 독일인민을 타승하였다. Teste Gierke cum Hansemanno^①.

1789년의 프랑스자산계급은 자기 동맹자인 농민들을 잡지도 내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농촌에서 봉건제도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토지소유(grundbesitzenden)농민계급을 만드는것이 자기들의 지배의 토대로 된다는것을 알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1848년의 독일자산계급은 자기의 혈육과 같은 존

① 《증인은 기르케씨와 한제만씨이다.》 한제만은 대자산계급정당의 대신이다. (로씨야의 드루베프코이, 로지체프 등등과 같음) 기르케는 한제만 내각의 농업대신으로서 마치 《보상없이》 《봉건적의무를 폐지》하는듯한 《대담한》 제안을 작성하였는데 사실에 있어서는 사소하고 긴요치 않은 의무는 철폐하고 보다 중요한 의무는 보류하거나 속매하는것이였다. 기르케씨에게는 《농민의 토지소유를 확장》하려고 하면서도 저주를할때 미움을 사지 않으려고 하는 로씨야의 까불무코프, 마누일로브, 게르젠슈테인 및 그와 유사한 자산계급-자유주의적인 농민의 벗들과 비슷한 점이 있다.

재이며 그들이 없이는 그가 귀족에 대치하여 무력하게 되는, 자기의 가장 자연스러운 동맹자인 이들 농민을 하등의 망심도 없이 내버리고있다.

봉건적권리의 보존, (가상적인)속매의 명목하에서의 이 권리의 승인—이것이 1848년 독일혁명의 결과이다. 실로 통두사미격이다.»²⁶³

이것은 우리에게 네가지 중요한 명제를 주는 매우 교훈적인 구절이다. 즉 (1) 완성되지 못한 독일혁명이 완성된 프랑스혁명과 구별되는 점은 독일자산계급이 비단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를 배반하였을뿐만아니라 특히는 농민을 배반한데 있다는것, (2) 자유로운 농민계급을 만드는것은 민주주의혁명을 완전히 실현하는 기초라는것, (3) 이러한 계급을 만드는것은 봉건적의무의 폐지, 봉건제도의 파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직 결코 사회주의혁명은 아니라는것, (4) 농민은 자산계급(즉 민주주의적자산계급)의 《가장 천연적》인 동맹자이며 이 동맹자가 없이는 자산계급은 반동세력에 대하여 《무력하다》는것이다.

이 모든 명제들은 구체적인 민족특성에 비추어 적당히 변경하고 봉건제도 대신에 농노제도를 바꾸어놓기만 하면 1905년의 로씨야에도 전부 다 적용될수 있다. 맑스가 밝힌 독일의 경험에서 교훈을 찾는다면 우리가 무산계급 및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독재라는 구호이외에는 혁명의 결정적승리를 보장할 어떠한 다른 구호도 얻어낼수 없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맑스가 1848년에 반항하는 반동세력 및 배반하는 자산계급에 대립시킨 그 《인민》의 주요구성부분이 무산계급과 농민이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우리 로씨야에서도 자유주의자산계급과 해방파제씨들이 농민을 배반하고있으며 또 계속 배반할것이라는것, 즉 가짜개량으로 눈가림하며 지주와 농민 사이의 결정적인 투쟁에서 지주의 편에 서게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오직 무산계급만이 그 투쟁에서 농민을 끝까지 지지할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로씨야에서도 농민투쟁의 성공, 즉 모든 토지가 농민에게 넘어가는것은 끝까지 수행되는 혁명의 사회적기동으로서 완전한 민주주의혁명을 의미하기는 하지만 결코 그것이 사회주의혁명이 아니며 또 소자산계급의 사상가인 사회혁명당원들이 말하는 《사회화》도 아니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농민봉기의 성공, 민주주의혁명의 승리는 다만 민주공화제의 지반우에서 진행될 사회주의를 위한 진정하고 결정적인 투쟁의 길을 닦을따름이다. 토지소유자계급으로서의 농민은 사회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지금 자산계급이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하는것과 같은 그러한 배반적이고 동요적인 역할을 할것이다. 이것을 망각하는것은 사회주의를 망각하는것이며 무산계급의 진정한 리익과 임무 문제에서 자기도 속고 남도 속이는것이다.

1848년의 맑스의 견해를 빈틈없이 서술하기 위하여 그때의 독일사회민주당(또는 그당시 용어로 말한다면 무산계급의 공산당)과 현대의 로씨야사회민주당 사이의 한가지 본질적인 차이를 지적할 필요가 있다. 메링의 말을 들어보자.

《신라인신문》은 〈민주파의 기관지〉로서 정치무대에 나섰다. 이 신문의 모든 론문에 일관되어있는 기본출거리는 누구에게나 다 명백하다. 그러나 이 신문은 자산계급의 리익을 반대하고 무산계급의 리익을 옹호하였다기보다 전제제도와 봉건제도를 반대하는 자산계급혁명의 리익을 더 옹호하였다. 물론 이 신문과 함께 쾰른로동자동맹의 전문적기관지²⁶⁴가 볼파 사페르의 편집으로 1주일에 두번씩 발행된것을 잊어서는 안되겠지만 혁명시기의 로동운동에 대한 전문적로론자료는 이 〈신라인신문〉지상에서 별로 찾아볼수 없다. 여하튼 현대독자들의 주목을 끄는것은 가장 유능한 독일로동운동의 활동가인 스페

판 보른이 빠리와 브뤼셀에서 맑스와 엥겔스에게서 배웠고 또 1848년에 베를린에서 이 신문에 통신을 보내기는 하였지만 <신라인신문>이 당시의 독일로동운동에 대하여 별로 관심을 돌리지 않았다는 그것이다. 보른은 자기의 <회상록>에서 자기가 로동자들속에서 진행한 선동에 대하여 맑스와 엥겔스가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을 한번도 한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 후에 엥겔스가 발표한 성명에 의하면 맑스와 엥겔스는 적어도 그 선동의 방법에 대하여 만족하지 않았다고 추측할수 있다. 그들이 만족하지 않은것은 근거있는 일이었다. 그것은 보른이 아직 독일의 대부분지구에서 전혀 발전되지 못한 무산계급의 계급의식에 많은 양보를, 즉 <공산당선언>의 견지에서 본다면 변명할 여지없는 여러가지 양보를 할수밖에 없었기때문이었다. 그들이 불만을 가진것은 또한 근거없는 일이었다. 그것은 보른이 자기가 지도하는 선동사업을 그래도 비교적 상당히 높은 수준에 두고있었던 까닭이다. ... 그러나 로동계급의 가장 중요한 리익이 무엇보다도먼저 되도록 자산계급혁명을 추진시키는데 있다고 본 맑스와 엥겔스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옳았던것은 의심할바없는 일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로동운동의 초보적본능이 가장 천재적인 사상가들의 관념을 정정할수 있는가 하는 훌륭한 증거로 되는것은 그들이 1849년 4월에 전문적인 로동자조직을 내오자고 주장한 사실과 특히 동엘베(동프로씨아)의 무산계급이 준비한 로동자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혁명적신문이 발간된지 거의 1년후인 1849년 4월에야(《신라인신문》은 1848년 6월 1일에 창간되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비로소 전문적인 로동자조직을 내오자고 주장하였던것이다! 그때까지 그들은 자립적로동자당과 아무 조직적련결도 없는 《민주파의 기관지》를 발간하는 일만을 하고있었다!

이 사실—오늘 우리들의 견지로 보아서 아주 기이하고 또 있을상싶지도 않은—은 당시의 독일사회민주로동당과 현재의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사이에 얼마나 커다란 차이가 있는가를 우리에게 명백히 보여준다. 이 사실은 독일의 민주주의혁명에서는 운동의 무산계급적특색과 운동에서의 무산계급적조류가 얼마나 적게 나타났는가를(1848년의 독일은 경제적면에서도 정치적면에서도 락후했던—국가의 분렬상태—까닭에) 우리에게 보여준다. 무산계급당을 자립적으로 조직할 필요성에 대하여 이 시기와 또 그로부터 얼마후에 발표한 맑스의 루차의 성명을 평가할 때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맑스는 오직 민주주의혁명의 경험을 통하여 거의 1년이 지나서야 실천적으로 이 결론을 지었다. 그때의 독일의 모든 분위기는 그토록 시정배적이었으며 소자산계급적이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결론은 국제사회민주주의운동의 반세기동안의 경험에서 오래전에 벌써 얻은 확고한 성과로서 이 성과에 의하여 우리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을 조직하기 시작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쾨켄대 무산계급의 혁명적신문이 무산계급의 사회민주당밖에 선다거나 또는 그것이 단 일분간이라도 단순히 《민주파의 기관지》로 나타난다거나 하는 일은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맑스와 스테판 보른 사이에 방금 나타나기 시작한 그 대립은 우리 나라에서는 혁명의 민주주의적조류에서의 무산계급적조류가 더 힘있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 발전된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스테판 보른의 선동사업에 대하여 맑스와 엥겔스가 아마 불만을 가졌을것이라고 하는 메링의 말은 너무 은화하고 흐리마리하다. 엥겔스가 1885년에 보른에 관하여 쓴 다음과 같은 구절을 보라.《펠른 공산주의자공판의 진상》, 1885년, 쾨리히판 서문에서)

《공산주의자동맹》⁴⁷의 맹원들은 도처에서 가장 민주주의의

적인 운동의 선두에 섬으로써 동맹이 혁명활동의 가장 훌륭한 학교라는 것을 증명하였다. 《브뤼셀과 파리에서 동맹의 맹원으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한 식자공 스테판 보른은 베를린에서 〈로동자친목회〉(《Arbeiterverbrüderung》)를 창립하였는데 이 조직은 상당히 광범위하게 발전하였으며 또 1850년까지 존속하였다. 보른은 재능있는 청년이었지만 정치활동가로 진출하려고 너무 급히 서둘렀다. 그는 별별 망나니들(Krethi und Plethi)과 다 〈친목〉하게 지내면서 자기의 주위에다 균중을 끌어모으려고만 하였다. 그는 서로 모순되는 경향을 통일시키고 혼란한 국면을 수습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은 못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친목회가 발표한 공식적문건은 항상 혼란을 일으켜서 〈공산당선언〉의 관점을 동업조합적잔재와 희망, 루이 블랑 및 프루동의 견해의 단편이나 보호관세정책의 옹호 등등과 혼동하였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사려고(Allen alles sein) 하였다. 그들은 특히 동맹파업, 직업동맹과 생산협작사를 조직하는데 열중하였지만 그런 것들이 튼튼히 믿음직하게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무대를 정치적승리를 통하여 우선 전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밀점은 내가 적은 것이다.] 그리하여 반동세력의 승리가 이 친목회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혁명적투쟁에 직접 참가할 필요성을 느끼게 하였을 때 원래 그들의 주위에 모여있던 탁후한 균중은 자연히 그들을 버리고가 버렸다. 보른은 1849년 5월에 드레즈덴의 봉기 265에 참가하였는데 요행 살아남았다. 그러나 로동자친목회는 그 대부분이 종이장우에만 존재한 고립적단체로서 무산계급의 위대한 정치운동에 대하여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하였으며 극히 미미한 역할밖에 놀지 못하였으므로 반동파도 1850년에야 겨우 그것을 폐쇄할 필요를 느끼었고 그 지부들은 그후 여러해를 지나서야 폐쇄되었다. 보른

(본명은 Buttermilch이다.)은 정치활동가로는 되지 못하고 스위스의 조그마한 교수가 되어 지금은 맑스의 저서를 동업조합적용어로 번역하는것이 아니라 온화한 레낭267의 저서를 달콤한 독일말로 번역하고있다.》268

이렇게 앵겔스는 민주주의혁명에서의 사회민주당의 두가지 전술을 평가하였다!

우리의 신이스크라파도 역시 군주주의적자산계급이 그들의 《작성》을 찬양하여주리만치 미친듯이 《경제주의》를 추구하고있다. 그들 역시 《경제주의자》들에게 아첨하며 《독자적활동》, 《민주주의》, 《자치》 등등의 구호로써 락후한 군중을 유인하면서 자기의 주위에 가지각색의 군중을 끌어들인다. 그들의 로동자단체라는것 역시 흔히 흘레스따프코브269식신《이스크라》의 지면에서만 존재하고있다. 그들의 구호나 결정서는 그들도 역시 똑같이 《무산계급의 위대한 정치운동》의 임무를 리해하지 못하고있다는것을 폭로하고있다.

1905년 6~7월에 집필

단행본 원문에 의하여 인쇄하고 원고에 의하여 교열

1905년 7월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단행본으로 출판

《제년전집》, 한문판, 제9권, 1~125페이지

- ① 나는 이 책의 제1판에서 앵겔스의 이 말을 번역할 때 Buttermilch를 교유명사로 보지 않고 보통명사로 보았던 까닭에 오유를 내었다. 그 오유는 물론 멘체위크들을 한없이 기쁘게 하였다. 끝조보는 내가 《앵겔스를 심각한화》하였다고 썼고 《2년간》이라는 문문집에 전제) 플레하노프는 지금도 《동지》266지상에서 이 오유를 제기하고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1848년의 독일로동운동에서의 두가지 경향, 즉 보른(우리의 경제파들과 근사한)의 경향과 맑스주의적경향에 관한 문제를 **달실할 훌륭한 구실을 발견하였던것이다.** 비록 보른의 성씨에 관한 문제라 할지라도 반대자의 오유를 리용하는것은 물론 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번역문을 수정한다는 수단으로 두가지 전술에 관한 문제의 본질을 말살하려는것은 논쟁의 실질을 피하려는것이다.(1907년판에 가한 저자의 두 한편적자)

농민운동에 대한 사회민주당의 태도

로씨야가 지금 겪고있는 민주주의혁명가운데서 농민운동이 가지는 거대한 의의는 사회민주당의 모든 출판물들이 이미 여러번 설명하였다. 다 알고있는바와 같이 로씨야사회민주노동당 제3차대회는 바로 현재의 농민운동에 대한 각성한 무산계급의 당전체의 활동을 더 정확히 규정하고 통일하기 위하여 이 문제에 관한 특별한 결정을 채택하였다. 이 결정서는 사전에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처음의 초안은 금년 3월 10일[23일] 《전진》270지 제11호에 실렸다.①) 또 이 결정서는 전체 로씨야사회민주당의 이미 확립된 견해를 정식화하려고 노력한 당대회에 의하여 세심히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사업하고있는 많은 동지들사이에서 의혹을 일으켰다. 싸라또브위원회는 이 결정서를 접수할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무산자》222지 제10호를 보라.)²⁷¹ 그때 우리는 이 결정을 반대하고있는 그들의 설명을 들으려고 희망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희망은 아직까지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우리는 다만 싸라또브위원회가 신이스크라파대표회의의 토지문제에 관한 결정도 또한 접수될수 없는것으로 인정하였으며 따라서 두 결정들에 공통한 점이 싸라또브위원회를 만족시키지 않은것이 두 결정들의 서로 다른 점이 불만을 일으킨것은 아니라는것을 알고있을뿐이다.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8권, 208~209페이지를 보라. —편집자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자료는 우리에게 보내온 모스크바의 한 동지의 편지(동사판의 소형신문형태로 출판된)이다. 이 편지의 전문을 다음에 게재한다.

중앙위원회와 농촌에서 사업하고 있는 동지들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동지들! 모스크바위원회 산하의 관구조직들은 이미 농민들사이에서 사업에 직접 착수하였다. 이러한 사업을 조직해온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 우리 나라 중부의 농촌들에 허다한 특수조건들이 있다는 것, 이 문제에 관한 제3차대회의 결정의 지시가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정기간행물이나 일반간행물에 농촌사업에 대한 참고자료가 거의 전혀 없다는 사정으로 하여 우리는 부득불 우리들에게 원칙적이고 실천적인 세밀한 지시들을 보내달라는것을 중앙위원회에 청원하는바이며 같은 사업을 하고있는 동지들, 당신들에게는 당신들이 경험에서 얻은 실천적 자료들을 우리에게 알려달라는것을 부탁한다.

우리는 우리들이 《농민운동에 대한 태도에 관하여》라는 제3차대회의 결정서를 읽을 때 생긴 의혹과 또 우리가 이미 우리 농촌들에서 실시하기 시작한 조직적계획을 당신들에게 알리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사회민주당은 지주, 관청, 교회, 수도원 및 황실토지의 몰수에 이르기까지의, 농민들의 처지를 개선할수 있는 농민들의 모든 혁명적조치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지지를 자기의 임무로 삼는다는것을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선전할것.》(로씨야사회민주노동당 제3차대회의 결정서중에서)

이 조목에서는 우선 당조직들이 선전을 어떻게 하게 되며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것이 명백하지 않다. 선전은 우선 선전의 대상들에 아주 접근해있는 조직을 요구한다. 농촌무산계급들로 구성된 위원회들이 이러한 조직으로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구두선전이나 서면선전을 위

하여 다른 조직적방도도 가능한가 하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한 약속에 관하여서도 동일한것을 말할수 있다. 지지하는 일, 더우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일은 역시 지방에 조직들이 있을 때에라야만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문제는 우리에게는 대체로 극히 모호한것 같이 보인다. 사회민주당은 기계 및 훌륭한 경작방법 등으로 알뜰히 경작하고있는 지주들의 토지의 몰수까지 지지할수 있는가? 이러한 토지들이 소자산계급적소유자들의 수중으로 넘어간다는것은 아무리 그들의 처지를 개선하는것이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 경제의 자본주의적발전이라는 면에서 보면 일보 후퇴인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사회민주주의자들인만큼 마땅히 《지지》에 관한 이 조항에 《만일 이 토지들을 몰수하여 농민(소자산계급)의 소유로 만드는 방법이 이런 토지에서 이런 경제발전의 고급적형태로 되는 경우에는》라는 보류조건을 첨부하여야 된다고 인정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4) 농촌무산계급을 자립적으로 조직하며 사회민주당의 기치밑에 그들을 도시무산계급과 통일시키며 그들의 대표를 농민위원회에 참가시키기 위하여 노력할것.》

이 조항의 마지막말은 의문을 자아낸다. 문제는 바로 《농민협회》와 같은 자산계급적민주주의조직, 사회혁명당원들과 같은 반동적공상주의적조직들도 저들의 기치밑에 농민들중의 자산계급분자와 무산계급분자들을 조직하고있다는데 있다. 농촌무산계급조직의 대표들을 이러한 《농민》위원회에 들여보내면 우리는 자체모순에 빠지게 되며 동맹문제 등등에 대한 우리의 견해와 모순되게 될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수정이, 그것도 대단히 큰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제3차대회의 결정에 대한 우리의 공통한 약간의 의견이다. 이것들을 될수 있는 한 빨리 그리고 되도록 상세히 분석하여주었으면 좋겠다.

우리 판구조직에 《농촌》조직을 건립할 계획에 대하여 말한다면 우리는 제3차대회의 결정이 전혀 언급하지 않고있는 그러한 조건하에서 사업하게 되어있다. 우선 지적하지 않으면 안될것은 우리의 활동구

역인 모스크바성 및 그와 연결되어있는 성의 각 현들에서는 주로 대공업생산에 종사하고있으며 수공업생산이 그리 발달하지 못하고 또 전적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극히 적다는것이다. 여기에는 1만~1만 5,000명의 노동자를 가진 큰 방직공장들이 500~1,000명의 노동자를 가진 벽지에 널려있는 작은 공장들과 섞여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사회민주당은 자신에게 대단히 적당한 지반을 여기서 발견할듯이 보일는지 모르나 사실은 이런 경솔한 생각이 타당치 않다는것을 보여주었다. 어떤 공장들은 40~50년씩이나 존재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무산계급》은 그 대부분이 아직까지 토지로부터 분리되어있지 않다. 《농촌》이 너무나도 그들을 축박하고있어서 집단적으로동행정에서 《순수한》 무산계급에게 조성되는 모든 심리적 및 기타의 전체들이 우리나라 무산계급에게서는 발전되지 못하고있다. 우리의 이런 《무산자》적농업생산은 일종의 혼혈적형태를 취하고있다. 공장의 방직공은 자기의 땅뺏기를 경작하기 위하여 사람을 고용한다. 이 땅뺏기에서 그의 처(만일 그가 공장에서 일하지 않는다면), 아이들, 로인들, 불구자들이 일하며 노동자 자신도 늙거나 불구로 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란폭하거나 또는 불온한 행동때문에 공장에서 축출당할 때에는 이 땅뺏기에서 일하게 된다. 이러한 《무산자》들을 무산자라고 부르는 곤난하다. 그들은 그 경제적지위로 보면 빈민이며 의식형태면으로 보면 소자산자이다. 그들은 무지하며 보수적이다. 《흑색단》분자들은 바로 이들과운데서 모집된다. 그러나 그들도 최근에는 차차 각성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는 《순수한》 무산계급을 거점으로 하여 이 몽매한 군중을 세기적잠으로부터 깨우고있으며 또 성과도 없지는 않다. 거점은 커지고있으며 어떤곳에서는 공교화되고있으며 공장에서도 농촌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은 점차 우리의 영향을 받으며 우리의 사상을 받아들이고있다. 그리하여 우리는 《순수》하지 않은 무산자대중층에서 조직을 세우는 일은 정통적이 아닌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다른 군중은 없으므로 만일 우리들이 정통성을 고집하며 다만 농촌《무산계급》만을 조직하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들의 조직과 우리 편집구들의 조직을 해산하여야만 될것이다. 우리는 지주가 내버려둔 경작지 및 기타 토지를 또는 승려들이 제대로 경영하지 못하고있는 토지들을 몰수하려는 심리를 반대하기가 어려우리라는것

을 알고있다. 우리는 《민주주의-군주주의》파(루스헌에는 이런 파벌이 있다.)로부터 《농민》협회에 이르기까지의 자산계급적민주파들이 《빈민》들에 대한 영향을 위하여 우리와 투쟁할것이라는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자들을 반대하여 빈민들을 무장시켜야 한다. 우리는 《빈민》들으로써 구성된 우리의 사회민주당위원회를 건립하고 공고화하기 위하여 지식인이나 무산계급적로동자들이나 할것없이 관구의 전체 사회민주당적력량을 리용하여야 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계획에 따라 사업하고 있는것이다. 우리는 모든 현소재지 또는 대공업중심지에 관구조직 직속 현위원회를 조직할것이다. 현위원회는 그 관할구내에서 공장위원회외에 또 《농민》위원회를 조직할것이다. 비밀을 지키기 위하여 이런 위원회는 인원이 많아서는 안되며 그의 성원은 혁명적정서가 가장 높고 가장 유능한 빈고농민들로 제한되어야 한다. 공장도 있고 농민도 있는곳에서는 그들을 한개의 소조위원회에 함께 조직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위원회는 무엇보다도먼저 당지의 실정을 명백히 그리고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A) 토지관계: (1) 농민들의 분여지, 소작지, 토지소유형태(농촌공동체소유, 개체농호소유 등등). (2) 주변의 토지: 1) 누구에게 속하는가, 2) 토지면적, 3) 이 토지와 농민들과의 관계여하, 4) 어떠한 조건들로 이 토지들을 리용하는가; a) 고역으로인가, b) 《매운명》을 소작하는데 대한 엄청난 소작료 및 기타로써인가, 5) 부농과 지주 등에 대한 부채. (B) 공납, 세금, 농민의 토지와 지주의 토지의 파세액. (C) 계절성품팔이, 수공업, 신분증, 겨울철 고용이 없는가 등등. (D) 당지의 공장, 거기에서의 로동조건: (1) 로임, (2) 로동시간, (3) 행정기관의 태도, (4) 주택조건 등등. (E) 행정인원들: 지방관원, 향장, 서기, 향재판관, 향순사, 신부. (F) 지방자치기관: 농민대표, 자치기관에 소속된 소학교교원, 의사, 도서관, 학교, 다방. (G) 향의회: 그 구성 및 사무처리. (H) 조직들: 《농민협회》, 사회혁명당원208들, 사회민주주의자들.

이러한 정황들을 료해한후에 사회민주당적농민위원회들은 이리저리한 불량한 현상들에 근거하여 향의회에서 결정을 채택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그러한 위원회는 대중속에서 사회민주당의 사상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며 각종 소조, 팀기집회, 군중대회 등을 조직하며 삐라와 출판물

들을 배포하며 당의 경비를 모으며 현지부를 통하여 관구조직과의 연락을 유지한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위원회를 많이 조직할수 있다면 사회민주당의 성공은 보장될것이다.

관구조직원

우리는 이 동무가 말하고있는 세부적인 실천적지시들을 작성하는 일을 자기의 임무로 삼지 않을것은 물론이다. 이것은 당지의 일군들과 실제령도사업을 하고있는 로씨야 중앙기관의 일이기때문이다. 우리는 다만 모스크바의 한 동무가 보내온 내용이 풍부한 이 편지를 제3차대회의 결정들 및 당의 긴급한 과업일반을 해석하는데 리용하려고 한다. 편지에서 알수 있는바와 같이 제3차대회의 결정에 의하여 일어난 오해는 다만 그 일부분만이 리론상의 의문으로부터 나왔다. 오해의 다른 하나의 원인은 《혁명적농민위원회》들과 농민속에서 일하는 《사회민주당위원회들》간의 관계에 관한, 전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이다. 이 문제의 제기자체가 벌써 농민속에서의 사회민주당의 사업이 현저히 전진하였다는것을 증명하고있다. 견고하고 고정된 형태를 가지기 시작한 《농촌》선동의 실제적수요에 의하여 발생된 비교적 세부적인 문제들이 이미 일정에 오르고있다. 편지의 필자는 대회의 결정이 불명확하다고 비난하면서 실지에 있어서는 당대회가 제기하지도 않았으며 또 제기할수도 없었던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고있다는것을 루차 잊어버리고있다.

레킨대 우리의 사상을 선전하는것도 농민운동을 지지하는것도 《다만》 현지에 조직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는 필자의 견해는 전적으로 옳다고는 할수 없다. 물론 이와 같은 조직이 있기를 우리는 무척 바라고있으며 또 사업이 확대되면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상술한 사업은 그러한 조직들이 없는

곳에서도 가능하며 필요한것이다. 심지어 도시의 무산계급만을 상대하는 활동에 있어서조차도 우리는 농민문제를 홀시하여서는 안되며 **각성한 무산계급의 당전체**를 대표하여 한 제3차대회의 성명, 즉 우리는 농민봉기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선전하여야 한다. 농민들로 하여금 출판물을 통하여, 노동자들을 통하여, 특수한 조직 등등을 통하여 이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 농민들로 하여금 사회민주당의적무산계급은 이러한 지지를 토지를 몰수(즉 소유자에 대한 배상없는 수탈)하기전까지는 **결코 그만두지 않을것**이라는것을 알게 하여야 한다.

편지의 필자는 여기서 하나의 이론적문제, 즉 대토지소유를 《농민적소자산계급적소유》로 수탈하는것을 특별한 보류조건으로 제한하여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하고있다. 그러나 필자가 이 보류조건을 제기하는것은 제3차대회결정의 의의를 제멋대로 좁힌것이다. 결정서에는 사회민주당이 몰수한 토지를 바로 소자산계급적소유자들의 수중으로 넘겨주는것을 지지하여야 한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다**. 결정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있다. 우리는 《토지를 몰수할 때까지》, 즉 토지를 무상으로 수탈할 때까지 농민을 지지한다고 하였지 몰수한 토지를 누구에게 넘겨주는가 하는 문제는 결의에서 전혀 밝히지 않았다. 대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채 남겨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전진》지(제11, 12, 15호)의 론문①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이 문제에 미리 해답을 주는것은 적당하지 않은것으로 인정되었던것이다. 거기에는 레킨대 민주공화국의 조건하에서 사회민주당은 토지국유화를 거절함으로써 자기의 손발을 묶어놓을수 없다고 지적되어있다.

실지에 있어서 소자산계급적사회혁명당원들과는 반대로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8권, 204~209, 219~223, 286~299페이지를 보라. —편집자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것은 농민봉기의 혁명적-민주주의적측면이며 농촌무산계급을 계급적정당으로 특별히 조직하는 문제이다. 지금 문제의 중심은 《토지의 재분배》나 토지국유화의 텅 빈 계획의 작성에 있는것이 아니라 농민들로 하여금 **혁명적수단으로써** 낡은 제도를 파괴할줄 알게 하며 또 실지로 파괴하도록 하는데 있다. 때문에 사회혁명당원들은 《사회화》 등등을 강조하고있으나 우리는 **혁명적농민위원회**를 강조하며 그것없이 모든 개혁이 전혀 헛된것이라고 말한다. **혁명적농민위원회**가 있어야 그리고 그에 의거하여야 **농민봉기의 승리가** 가능하다.

우리는 토지를 몰수하는데 이르기까지 농민봉기를 백방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소자산계급적인 텅 빈 계획을 작성할 때까지 지지하는것은 결코 아니다. 우리는 농민운동이 혁명적민주주의적운동일 경우에는 그것을 지지한다. 일단 그것이 반동적, 반무산계급적 운동으로 될 경우에는 우리는 그것과 투쟁할 준비를 할것이다.(지금 즉시로 준비할것이다.) 맑스주의의 전체 본질은 바로 이 2중적과업을 제기하는데 있다. 다만 맑스주의를 모르는자들만이 그것을 한개의 간단한 과업으로 단순화하거나 통합할수 있는것이다.

구체적실례들을 들어보자. 농민봉기가 승리했다고 가정하자. 혁명적농민위원회들과 립시혁명정부(일정한 정도에서 바로 이 위원회들에 의거하고있는)는 대토지소유를 마음대로 몰수할수 있다. 우리는 몰수하는것을 주장한다. 우리는 벌써 이것을 성명하였다. 그러나 몰수한 토지를 누구에게 넘겨주도록 주장할것인가? 여기에서 우리는 자신의 손발을 구속하지 않았으며 또 결코 편지의 필자가 경찰히 제의하는것 같은 주장으로써 구속하지 않을것이다. 편지의 필자는 바로 제3차대의 같은 결정서에 첫째로 《**농민운동의 혁명적민주주의적내**

용으로부터 온갖 반동적성분을 없앨것», 둘째로 《어떤 경우나 어떤 정황에서도 농촌무산계급을 독립적으로 조직할것》이 필요하다고 언급되어있는것을 잊어버리고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시이다. 농민운동에는 언제나 반동적성분들이 섞여있을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그것들에 대하여 전쟁을 선포하는것이다. 농촌무산계급과 농민자산계급간의 계급적적대는 불가피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그것을 폭로하고 그것을 해명하고 이 적대로부터 일어나는 투쟁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것이다. 그러한 투쟁의 동기의 하나로 될 가능성이 많은것은 몰수한 토지를 누구에게 어떻게 줄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엄폐하지 않으며 평균적분배, 《사회화》 등을 약속하지는 않는다. 그때에 우리는 투쟁할것이며 또 다시 투쟁할것이며 새로운 싸움터에서 다른 동맹자들과 함께 투쟁할것이며 그때에 우리는 무조건하고 농촌무산계급과 함께, 전체 로동계급과 함께 농민자산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이라고 말한다. 실지에 있어서 이것은 노예적이며 농노제적인 대토지소유가 우세를 차지하고 아직 사회주의적대규모생산을 위한 물질적조건들이 구비되지 않은곳에서는 소소유자-농민 계급에로의 토지의 전이를 의미할수 있으며 민주주의혁명이 완전히 승리한 조건하에서는 국유화를, 그리고 자본주의적대규모토지소유의 로동자협회들에로의 전이를 의미할수 있다. 왜냐 하면 민주주의혁명으로부터 우리는 바로 우리의 역량, 의식적이며 조직된 무산계급의 역량에 따라서 즉시 사회주의혁명에로 이행하기 시작할것이기때문이다. 우리는 부단혁명을 주장한다. 우리는 절대 중도에서 그만두지 않을것이다. 우리가 온갖 《사회화》를 즉시로 약속하지 않는것은 이 임무실현의 진정한 조건들을 알고있으며 또 농민들의 내부에서 성숙되고 있는 새로운 계급투쟁을 엄폐하는것이 아니라 폭로하려고 하

기때문이다.

우리는 처음에는 토지를 몰수하는 데 이르기까지 지주를 반대하는 농민일반을 백방으로 지지할 것이다. 그다음에는(그다음에가 아니라 동시에) 농민일반을 반대하여 무산계급을 지지할 것이다. **지금 혁명(민주주의적)이 있는 《다음날의》 농민 내부의 역량배치를 예상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공상이다.** 우리가 모험주의에 빠지지 않으며 자기의 과학적관심을 배반하지 않으며 값죽은 명성을 추구하지 않으면서 말할 수 있으며 또 말해야 할 것은 **다만 한가지이다.** 즉 우리는 전체 농민이 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하도록 전력을 다하여 그들을 도울 것이다. —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무산계급당이 새롭고 더 높은 과업인 사회주의혁명에로 될수록 빨리 넘어가는 것을 더욱 쉽게 하기 위하여서이다. 우리는 현재의 농민봉기의 승리로부터 어떠한 조화, 어떠한 균형, 어떠한 《사회화》도 약속하지 않는다. 반대로 우리는 새로운 투쟁, 새로운 불평등, 그리고 우리가 바로 지향하고 있는 새로운 혁명을 《약속》한다. 우리의 학설은 사회혁명당원들이 설교하고 있는 동화처럼 그렇게 《달콤》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만 달콤한 것 하나만을 먹여줄 것을 원하는 자는 사회혁명당원들에게로 가게 하라.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이 맑스주의적관점은 위원회에 관한 문제도 해결하고 있다.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사회민주당적 농민위원회**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 — 만일 사회민주당적인 것이라면 농민적인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며 만일 농민적인 것이라면 순 무산계급적, 사회민주당적인 것이 아니란 것을 의미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은 이 두가지를 혼동시키기가 좋아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가능한 모든 곳에서 **우리자신의 위원회를, 사회민주로동당의 위원회들을 조**

적하려고 노력할것이다. 거기에는 농민도, 빈민도, 지식인도 창기도(얼마전에 한 로동자가 왜 창기들사이에서 선동을 하지 않는가고 편지로 물었다.), 병사도, 교원도, 로동자도—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들어갈것이며 사회민주주의자가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을것이다. 이 위원회들은 사회민주당의 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할것이다. 동시에 또 사회민주당은 무산계급의 계급적정당인만큼 농촌무산계급을 특별히 조직하려고 노력할것이다. 구시대의 여타가지 잔재를 완전히는 청소하지 못한 무산계급을 조직하는것을 《비정통적》사업이라고 보는것은 극히 큰 오유이다. 때문에 편지에서 이 문제에 관련되는 부분은 단지 오해에 기초한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싶다. 도시공업무산계급은 필연코 우리 사회민주로동당의 기본적핵심으로 될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강령이 지적하고있는바와 같이 모든 피착취근로자들 즉 수공업자들도 빈민들도 거지들도 종북들도 부랑자들도 창기들도 배외없이 모두 우리 당의 주위에 끌어들이며 교양주고 조직하는 일을 해야 한다. 물론 이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사회민주당이 그들에게 가담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민주당에 가담한다는것, 무산계급이 그들의 관점으로 넘어가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산계급의 관점으로 넘어온다는것이다.

그러면 혁명적농민위원회들은 무슨 필요가 있는가고 독자는 물을것이다. 그것은 혁명적농민위원회가 필요없다는 말인가? 아니다. 필요하다. 우리의 리상은 농촌의 이르는곳마다에 순 사회민주당적인 위원회를 세우며 그다음 혁명적위원회를 조직하기 위하여 그 당위원회들이 농민가운데의 모든 혁명적민주주의분자들, 집단들, 소조들과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는것이다. 이것은 사회민주로동당이 도시에서의 자립성을 지키며

또한 봉기를 위하여 모든 혁명적민주주의분자들과 동맹을 결성한 정형과 완전히 같은것이다. 우리는 농민봉기를 주장한다. 우리는 각종 부동한 계급의 성원들과 각종 부동한 정당들을 혼동하며 융합하는것을 무조건적으로 반대한다. 우리는 봉기를 위하여 사회민주당이 전체 혁명적민주파를 추동하며 그들**전체가** 조직되도록 도와주며 그들과 **어깨걸고**—그러나 그들과 융합되지는 말며—도시에서는 시가보루에서, 농촌에서는 지주와 경찰을 반대하여 함께 나아가는것을 찬성한다.

전제제도를 반대하는 도시와 농촌의 봉기 만세! 현시기 혁명에 있어서의 전체 혁명적민주파의 선진부대로서의 혁명적 사회민주당 만세!

1905년 9월 14일(1일) 신문 《무산자》 제16호에 게재

신문 《무산자》의 원문에 의하여 인쇄

《백년전집》, 한문판, 제9권, 215~223
페이지

소자산계급적사회주의와 무산계급적사회주의

현재 구라파에서는 각종 사회주의학설중에서 맑스주의가 완전한 지배를 획득하고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실현을 위한 투쟁은 거의 전적으로 사회민주당이 명도하는 노동계급의 투쟁으로서 진행되고있다. 그러나 맑스주의학설에 기초한 무산계급적사회주의의 이 완전한 지배는 단번에 공고화된것이 아니라 소자산계급적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등등과 같은 모든 타후한 학설들과 장기간 투쟁한 결과로 비로소 이루어진것이다. 약 30년 이전에만 하여도 맑스주의는 독일에서까지도 아직 지배적인것으로는 되지 못하였었다. 바른대로 말하면 당시 독일에서는 소자산계급적사회주의와 무산계급적사회주의의 중간에 있는 과도적인, 혼합된, 절충주의적인 견해가 지배적이였다. 한편 프랑스, 에스빠냐, 벨지끄 등 로만어계국가들의 선진적노동자들사이에서 가장 널리 보급되였던 학설은 무산자의 관점이 아니라 소자산계급적관점을 명백히 표현하고있던 뿌루동주의¹¹⁷, 블랑끼주의⁶⁵ 및 무정부주의였다.

대체 어떠한 원인으로 하여 바로 최근 수십년간에 맑스주의는 이토록 급속하고도 완전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였는가? 경제 및 정치 면에서의 현대사회의 모든 발전, 피압박계급들의 혁명운동과 투쟁의 모든 경험은 맑스주의견해의 정당성을 더욱더 확인하였다. 소자산계급의 몰락은 조만간에 온갖 소자산계급적편견의 멸망을 불가피적으로 동반하기 마련이며 또한

자본주의의 발전과 자본주의사회내부에서의 계급투쟁의 첨예화는 무산계급적사회주의사상을 위한 가장 훌륭한 선동으로 되었다.

로씨야에 여러가지 락후한 사회주의학설들이 완고하게 남아있는것은 자연히 로씨야의 락후성으로써 설명된다. 최근 4분의 1세기의 로씨야의 혁명적사상의 전 력사는 맑스주의와 소자산계급적인 인민주의적사회주의와의 투쟁의 력사이다. 로씨야로동운동의 신속한 발전과 놀라운 성과는 로씨야에서도 맑스주의가 승리하게 하였지만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의심할바 없는 혁명적농민운동의 발전은—특히 1902년의 유명한 소로씨야농민봉기이후에—로씨한 인민주의에 약간의 활기를 가져다주었다. 구라파에서 유행되고있는 기회주의(수정주의, 베른슈타인주의¹¹⁵, 맑스에 대한 비판)에 의해 새로 치장된 낡은 인민주의는 소위 사회혁명당원들의 고유한 모든 사상적밑천으로 되고있다. 때문에 농민문제는 맑스주의자들과 순수한 인민파와의 론쟁에 있어서도 사회혁명당원²⁰⁸과의 론쟁에 있어서도 중심적위치를 차지하고있다.

인민주의는 어느 정도까지는 전일적이고 수미일관한 학설이었다. 그것은 로씨야에서의 자본주의의 지배를 부정하였으며 전체 무산계급의 선진적투사로서의 공장로동자들의 역할을 부정하였으며 정치혁명과 자산계급의 정치적자유 의 의의를 부정하였으며 소농경제적인 농민공동체로부터 출발하는 사회주의적변혁을 즉시 실현할것을 고취하였다. 이 전일적인 학설에서 지금 남아있는것은 단지 그 단편들뿐이다. 그러나 현재의 론쟁을 해명하기 위하여서는, 또 이 론쟁이 육지거리로까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사회혁명당원들이 범하고 있는 오류의 일반적이며 근본적인 인민주의적근원을 항상 념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인민파는 로씨야에서의 미래의 주인은 농민이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견해는 농민공동체의 사회주의적성격에 대한 신앙, 자본주의의 운명에 대한 불신임으로부터 불가피적으로 생긴것이다. 맑스주의자들은 로씨야에서의 미래의 주인은 로동자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농업과 공업에서의 로씨야자본주의의 발전은 점점 더 이들의 견해를 확증하고있다. 로씨야에서 로동운동은 이미 부정할수 없는 사실로 되었다. 그러나 농민운동에 관한 인민주의와 맑스주의간의 모든 의견상이는 지금까지 모두 이 운동에 대한 그들의 부동한 견해에서 나타나고있다. 인민파의 견해에 의하면 농민운동이야말로 맑스주의를 탄박하며 이것이야말로 직접적인 사회주의혁명에 유리한 운동이며 이것이야말로 어떠한 자산계급의 정치적자유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것이야말로 대경영이 아니라 소경영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다는것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민파에게 있어서는 농민운동이야말로 진정하고도 직접적인 사회주의적운동이라는것이다. 농민공동체에 대한 인민파의 신앙과 인민파적무정부주의는 그들이 필연적으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리란것을 완전히 설명한다.

맑스주의자에게 있어서는 농민운동은 사회주의적운동인것이 아니라 바로 민주주의적운동인것이다. 농민운동은 다른 나라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로씨야에서도 사회경제적내용으로 보아 자산계급적인 민주주의혁명의 필연적인 동반자인것이다. 이 운동은 절대로 자산계급제도의 기초를 반대하지 않으며 상품경제와 자본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그것은 농촌에서의 낡은, 농노제적, 전자본주의적인 각종 관계를 반대하며 농노제도의 모든 잔여의 주요한 기둥으로서의 지주적토지소유제를 반대한다. 그러므로 이런 농민운동의 완전한 승리는 자본주의를 제거하는것이 아니라 도리어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한 더욱 광범한 기반을 닦아줄 것이며 순 자본주의적발전을 가속화하며 강화할 것이다. 농민봉기의 완전한 승리는 오로지 자산계급민주공화국의 기반을 닦아줄 수 있을 뿐이며 이 공화국 내에서는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순수한 무산계급의 투쟁이 처음으로 전개될 것이다.

이리하여 사회혁명당원들과 사회민주주의자들간의 원칙적 분기를 구명하려고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명확히 이해하여야 할 상반되는 두개의 견해가 여기에 있다. 한가지 견해는 농민운동을 사회주의적운동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며 다른 한가지 견해는 민주주의적-자산계급적운동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로부터 마치 정통과 맑스주의자들이 어느 한때 농민문제를 《홀시한》(알려고 하지 않았던) 일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혁명당원들이 천백번이나 되풀이하고 있을 때(예컨대 《혁명적로씨야》²⁰⁷지 제75호를 참조하라.) 그들이 어떠한 무지를 나타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완전한 무지에 대해서는 오로지 한가지의 방법에 의해서만 투쟁할 수가 있다. 그것은 가장 초보적인것을 되풀이하며 낡은 철저한 인민파적견해를 설명하는 것이며 또 진실한 차이는 농민문제를 중시하려 하는가 하지 않는가 또한 이 문제를 인정하는가 혹은 홀시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로씨야에서의 현대농민운동과 현대농민문제에 대한 **부동한 평가**에 있다는 것을 백번이고 천번이고 지적하는 것이다. 맑스주의자들이 로씨야의 농민문제를 《홀시한다》고 말하는자는 첫째로는 완전한 무식자인 것이다. 왜냐 하면 플레하노프의 저서 《우리의 의견상이》(20여년전에 출판된)로부터 시작하여 로씨야맑스주의자들의 모든 주요한 저작들은 주로 로씨야의 농민문제에 대한 인민파적견해들의 오류를 해명하는데 바쳐졌기 때문이다. 둘째로 맑스주의자들이 로씨야의 농민문제를 《홀시한다》고 말하는자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가 진

정한 원칙적의견상이, 즉 현재의 농민운동은 민주주의적자산계급적운동인가 아닌가, 이 운동은 그 객관적인 의의에 있어서 농노제도의 잔재를 반대하는가 안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평가로부터 도피하려는 자기의 시도를 립증하고있다.

사회혁명당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종대로 하지 않았으며 또 영원히 할수도 없다. 왜냐 하면 그들은 로씨야의 농민문제에 대한 낡은 인민파적견해와 현대의 맑스주의자들의 견해와의 사이에서 절망적으로 혼란을 일으키고있기 때문이다. 맑스주의자들이 사회혁명당원들을 소자산계급적견해를 가지고있는자들(소자산계급사상가들)이라고 하는것도 바로 그들이 농민운동에 대한 평가에서 인민파의 소자산계급적 환상과 공상으로부터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다시금 가장 초보적인것들을 되풀이하지 않을수 없다. 로씨야의 현대농민운동은 무엇을 지향하고있는가? 토지와 자유이다. 이 운동의 완전한 승리는 어떤 의의를 가지게 될것인가? 그것은 자유를 획득함으로써 국가관리면에서의 지주와 관리들의 통치를 뒤엎어버릴것이며 토지를 획득함으로써 지주의 토지를 농민에게 넘겨줄것이다. 가장 충분한 자유와 지주에 대한 가장 철저한 수탈(지주로부터의 토지의 탈취)은 상품경제를 소멸하게 될것인가? 아니다. 소멸하지 못할것이다. 가장 충분한 자유와 지주에 대한 가장 철저한 수탈은 공동체적토지나 혹은 《사회화된》 토지에서의 농민의 개체경영을 소멸하게 될것인가? 아니다. 소멸하지 못할것이다. 가장 충분한 자유와 지주에 대한 가장 철저한 수탈은 말을 많이 가지고있는 부유한 농민과 고농 및 낱품팔이농민간의, 즉 농민자산계급과 농촌무산계급간의 깊은 심연을 제거하게 될것인가? 아니다. 제거하지 못할것이다. 반대로 상층신분(지주)의 분쇄와 소멸이 완전하면 할수록 자산계급과 무

산계급간의 계급적반복은 더욱더 깊어질것이다. 농민봉기의 완전한 승리는 어떠한 객관적의의를 가지게 될것인가? 이 승리는 농노제의 모든 잔재를 철저히 소멸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결코 자산계급적경영방식을 소멸하지 못할것이며 자본주의를 소멸하지 못할것이며 계급으로의, 즉 부자와 가난한자, 자산계급과 무산계급에로의 사회의 분렬을 소멸하지 못할것이다. 그러면 어찌서 현대농민운동은 민주주의적-자산계급적운동인가? 그것은 이 운동이 관리와 지주의 정권을 소멸하고 민주주의적사회제도를 건립하면서 이 민주주의적사회의 자산계급적기초를 변경시키지 못하며 자본의 지배를 소멸하지 못하기때문이다. 각성한 로동자, 사회주의자는 현재의 농민운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여야 하는가? 그들은 이 운동을 지지하여야 하며 농민들이 관리와 지주의 정권을 완전히 뒤엎는것을 가장 적극적이고 철저히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또 농민들에게 관리와 지주의 정권을 뒤엎는것만으로는 아직 불충분하다는것을 해설해주어야 한다. 이 정권을 뒤엎는 동시에 또 자본의 권력, 자산계급의 권력을 소멸할 준비를 하는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위하여서는 즉사 완전한 사회주의적학설 즉 맑스주의적학설을 선전하며 농민자산계급 및 전체 로씨야의 자산계급과의 투쟁을 위하여 농촌무산자들을 련합시키며 단결시키며 조직하지 않으면 안된다. 각성한 로동자는 사회주의적투쟁때문에 민주주의적투쟁을 망각하거나 혹은 민주주의적투쟁때문에 사회주의적투쟁을 망각할수 있겠는가? 그럴수 없다. 각성한 로동자가 자신을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부르는것은 바로 이 두가지 투쟁의 호상관계를 리해하고있기때문이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거치는것외에는, 정치적자유를 거치는것외에는 사회주의에로 향하는 다른 길이 없다는것을 알고있다. 때문에 그들은 종국적목적인 사회주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민

주주의의 완전하고 철저한 실현으로 나아간다. 왜 민주주의적 투쟁의 조건과 사회주의적투쟁의 조건은 다른가? 그것은 이 두가지 투쟁에 있어서 노동자들은 반드시 각이한 동맹자를 가질것이기때문이다. 민주주의적투쟁은 노동자들이 자산계급의 일부, 특히는 소자산계급과 함께 진행하는 투쟁이지만 사회주의적투쟁은 노동자들이 전체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투쟁이다. 관리 및 지주를 반대하는 투쟁은 전체 농민과 함께, 지어는 부유한 농민 및 중농과 함께 진행할수 있으며 또 진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따라서 부유한 농민도 반대하는 투쟁은 단지 농촌무산계급과 동맹함으로써만 확실하게 수행할수 있다.

만일 우리가 맑스주의의 이러한 초보적진리(사회혁명당원들은 시종 이러한 진리를 연구하려 하지 않는다.)를 상기한다면 우리는 맑스주의에 대한 사회혁명당원들의 다음과 같은 《최선의》 반박을 쉽게 평가할수 있을것이다.

《혁명적으로써야》지(제75호)는 다음과 같이 웨친다. 《무엇때문에 지주를 반대하여 즉시로 무산계급을 지지하지 않고 먼저 지주를 반대하여 농민일반을 지지하고 그다음에(즉 동시에) 농민일반을 반대하여 무산계급을 지지하여야 하는가. 이것이 맑스주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하느님이나 알 노릇이다.》

이것은 가장 원시적이며 가장 유치한 무정부주의적견해이다. 인류는 이미 몇세기전부터 지어 수천년전부터 벌써 온갖 착취를 《즉시에》 소멸할것을 몽상하여왔다. 그러나 이러한 몽상은 전 세계 수천만 피착취자들이 련합하여 자본주의사회를 사회자체의 발전방향에 따라 변경시키기 위하여 철저하고도 견결한 전면적투쟁을 벌리기까지는 몽상 그대로 남아있었다. 사회주의적몽상은 맑스의 과학적사회주의가 현상태를 개변시

키려는 지향을 일정한 계급의 투쟁과 결부시켰을 때에 비로소 수천만사람들의 사회주의적투쟁으로 전화하였다. 계급투쟁을 떠나서는 사회주의란 공담이거나 혹은 유치한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로씨야에는 지금 두가지 부동한 사회세력의 두가지 부동한 투쟁이 존재한다. 무산계급은 자본주의 적생산관계가 존재하는곳에서는 그 어디서나 자산계급을 반대하여 투쟁한다.(우리 사회혁명당원들에게 알려주거니와 이러한 관계는 심지어 농민공동체내에도 즉 그들이 완전히 《사회화된》것이라고 여기는 바로 그 토지내에도 존재한다.) 소토지 소유자, 소자산자계층으로서의 농민은 농노제의 모든 잔재들을 반대하며 관리 및 지주를 반대하여 투쟁한다. 성질이 각이한 이 두가지 사회적전쟁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정치경제학 및 세계혁명사를 조금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뿐이다. 《즉시에》라는 문구로써 눈을 가리우고 이 두가지 전쟁의 구별을 보지 않는것은 날개밑에 머리를 틀어박고 현실에 대한 모든 분석을 거부하는것을 의미한다.

구인민주주의의 견해의 전일성을 잃은 사회혁명당원들은 인민과자체의 학설가운데의 많은것들까지도 망각해버렸다. 《혁명적로씨야》지의 같은 호에는 다음과 같이 써여있다. 《케닌씨는 지주에 대한 농민의 수탈을 방조하는 동시에 무의식적으로 이미 많거나적거나 발전한 자본주의적농업형태의 폐허우에 소자산계급적경제를 건립하는것을 협력하고있다. 정통파맑스주의의 견지로 보아 이것은 일보후퇴가 아니고 무엇인가?》

제씨들, 당신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할것이다! 당신들은 정말 당신들의 웨.웨.씨를 망각하였는가! 그의 《자본주의의 운명》, 니플라이-온씨의 《개론》 및 당신들의 현인들의 기타 저작들을 살펴보라. 그러면 당신들은 로씨야의 지주경제에는 자본주의적특징과 농노제적특징이 포함되어있음을 상기

할것이다. 그러면 당신들은 부역제도의 직접적인 잔재인 고역제도가 존재하고있음을 알게 될것이다. 그런 다음 만일 당신들이 맑스의 《자본론》 제3권과 같은 정통적맑스주의의 저작을 다시 더 본다면 소자산계급적농민경제를 거치지 않고서는 부역경제가 그 어느곳에서도 발전하지 못했거나 자본주의적경제에로 전화하지 못하였으며 또 발전, 전화할수도 없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당신들은 맑스주의를 욱하기에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오래전에 폭로된 방법을 취하고있다. 즉 당신들은 부역적대경제를 자본주의적대경제로써 직접적으로 대체한다는 가소롭고도 단순한 견해를 맑스주의에 갖다붙이고 있다! 지주의 수확은 농민의 수확보다 많다. 때문에 지주에 대한 수탈은 일보후퇴이다라고 당신들은 논의하고있다! 이와 같은 논의는 중학교 4학년생들의 입에서나 나올수 있는것이다. 제씨들! 좀 생각해보라. 농노제도가 붕괴되면서 수확이 적은 농민의 토지가 수확이 많은 지주의 토지로부터 분리되었다는것은 《일보후퇴》가 아닌가?

로씨야의 현대의 지주경제에는 자본주의적특징과 농노제적특징이 포함되어있다. 지금 지주에 대한 농민의 투쟁은 객관적의의에서 보면 농노제잔재들과의 농민들의 투쟁이다. 그러나 모든 정형을 일일이 다 렬거하며 매개의 개별적경우를 저울질하여 바로 어디서 농노제가 끝나며 또한 어디서 순수한 자본주의가 시작되는가를 약제사의 저울과 같은 정확성으로써 규정하려고 시도하는것은 자기자신의 현학주의를 맑스주의자에게 들쑤우는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소장인에게서 사온 일용품의 가격중에 얼마만한 부분이 로동가치에 해당하며 얼마만한 부분이 사기에 해당한가 하는 등등을 계산할수는 없다. 제씨들, 그렇다고 해서 로동가치설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할수 있겠는가?

현대의 지주경제는 자본주의적특징과 농노제적특징이 포함되어있다. 여기로부터 매개 개별적경우에 있어서의 개개의 사소한 특징을 그의 이러저러한 사회적성격에 의해서 저울질하고 계산하며 기록하는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결론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현학자들뿐이다. 여기로부터 성질이 같지 않은 두가지 사회적전쟁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낼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공상가들뿐이다. 사실에 있어서 여기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그리고 오로지 다음과 같은 결론만이 나오게 된다. 즉 우리는 자기의 강령에서나 자기의 전술에서나 자본주의에 대한 순무산계급적투쟁을 농노제에 대한 일반민주주의적(또한 일반농민적)투쟁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만이 나오게 된다.

현대의 반농노제적지주경제에 있어서 자본주의적특징이 강하게 발전하면 할수록 농촌무산계급을 즉시 독립적으로 조직할 필요성도 더욱더 절박하게 된다. 왜냐 하면 그 어떤 물수를 실시하는지간에 순자본주의적 또는 순무산계급적 적대성이 더욱 빨리 나타날것이기때문이다. 지주경제에 있어서 자본주의적특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민주주의적물수는 더욱 급속히 사회주의를 위한 진정한 투쟁을 불러일으킬것이다. 다시말하면 《사회화》라는 문구를 빌어 민주주의적혁명을 허위적으로 리상화하는 방법이 더욱 위험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주경제에서의 자본주의와 농노제와의 혼합으로부터 얻어내야 할 결론이다.

이와 같이 순무산계급적투쟁을 일반농민적투쟁과 결부시켜야 하되 이 양자를 혼동하여서는 안된다. 일반민주주의적 또는 일반농민적투쟁을 지지하여야 하되 결코 이 비계급적투쟁과 융합시켜서는 안되며 사회화라는 이 허위적문구로써 결코 이 투쟁을 리상화하여서는 안되며 도시무산계급과 농촌

무산계급을 완전히 자립적인 계급적사회민주당으로 조직할것을 일순간이라도 망각하여서는 안된다. 이 당은 가장 견결한 민주주의를 철저히 지지하지만 그러나 결코 상품경제하에서 《균등성》을 만들어내려는 반동적인 몽상과 시도에 미혹되어 혁명도상에서 물러서지는 않을것이다. 오늘 농민이 지주와 진행하는 투쟁은 혁명적이다.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는것은 경제적 및 정치적진화의 현시기에 모든 점에서 혁명적이다. 우리는 이 혁명적민주주의적조치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 조치를 《사회화》라고 부른다는가 또 상품경제하에서의 토지사용의 《균등성》의 가능성에 대하여 자기와 인민을 기만한다면 이것은 벌써 반동적사회주의자들에게 특유한 반동적인 소자산계급적공상이다.

1905년 11월 7일(10월 25일) 신문
《무산자》 제24호에 게재

신문 《무산자》의 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9권, 426~434페이지

당조직과 당적 문학 및 출판물

10월혁명²⁷²후 로씨야에 조성된 사회민주당활동의 새로운 조건은 당적 문학 및 출판물에 관한 문제를 일정에 내세웠다. 비합법적출판물과 합법적출판물간의 차이—이 농노제적, 전제주의적 로씨야시대의 한심한 유산은 소멸되기 시작하고있다. 그것이 근절되자면 아직도 멀었다. 우리 수상의 위선적인 정부가 아직도 극히 탄폭한 행동을 하고있기때문에 《로동자대표쉴베트통보》²⁷³는 《비합법적으로》출판되고있다. 그러나 정부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막아낼수 없는것을 《금지》해보려고 하는 우둔한 시도는 다만 이 정부의 수치와 이 정부에 대한 새로운 정신적타격이외에는 아무것도 가져오지 못한다.

비합법적출판물과 합법적출판물간의 차이가 존재하는 조건하에서는 당적 및 비당적 출판물에 대한 문제는 극히 단순하게 또 극히 부당하고도 기형적으로 해결되었다. 비합법적출판물은 모두다 당적인것이였으며 그것은 각 조직들에 의하여 출판되였고 실천적인 당일군들의 단체와 어떤 방법으로든지 련계를 갖고있는 단체들에 의하여 지도되였다. 모든 합법적출판물은 비당적인것이였다.—당성은 금지되어있었기때문에—그러나 그것은 이런 또는 저런 당에 《기울어지고》있었다. 기형적인 동맹, 비정상적인 《동거》, 허위적인 엄폐 등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당적견해를 표현하려는 사람들이 부득이 표현하게 되는 두리뭉실한 말이 이러한 당적견해의 수준에까지 자라나지 못한자, 본질상 당의 사람이 아닌자들의 사상의 미숙성 또

는 사상의 비겁성과 혼동되어 있었다.

우화적인 표현, 문학상의 굴종적태도, 노예적인어, 사상적농노제의 저주로운 시기! 무산계급은 로씨야에서 모든 생기고 신선한것들을 질식시키고있던 이와 같은 추악한 현상을 종말지었다. 그러나 무산계급은 이제 겨우 로씨야를 위하여 자유의 절반을 전취했을뿐이다.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짜리제도는 이미 혁명을 타승할 힘이 없게 되었는데가 하면 혁명도 아직 짜리제도를 타승할만한 힘이 없다. 이리하여 우리는 지금 공개적이고 성실하고 솔직하고 철저한 당성과 비밀적이며 은폐되어있고 《의교적》이고 말을 교묘하게 써야 하는 《합법성》과의 이러한 부자연한 결합이 도처에서 또 모든 면에서 나타나고있는 그런 시기에 살고있는것이다. 이러한 부자연한 결합은 우리의 신문에도 나타나고있다. 구치프브씨가 자유주의자산계급적인 온건한 신문의출판을 금지하는 사회민주주의적폭정이니 뭐니 하며 제아무리 빈정댄다 할지라도 사실은 어디까지나 사실로 남아있는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중앙기관지 《무산자》²²²는 여전히 **진제적-경찰적로씨야의 대문밖에서** 출판되고있는것이다.

하여간 절반 완성된 혁명은 우리들모두가 곧 사업의 재조직에 착수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지금 문학 및 출판물은 10분의 9가 당적인것으로—그것도 《합법적으로》—필수 있다. 문학 및 출판물은 반드시 당적인것으로 되어야 한다. 자산계급적풍습과는 반대로, 자산계급의 기업적, 영리적 출판업과는 반대로, 자산계급의 문단출세주의나 개인주의, 《귀족적무정부주의》나 리윤추구와는 반대로 사회주의적무산계급은 **당적 문학 및 출판물**의 원칙을 내세우고 이 원칙을 발전시켜 가급적으로부터 완전무결하게 실현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 당적 문학 및 출판물의 원칙이란 어떠한것인가?

사회주의적무산계급에게 있어서 문필활동은 비단 개인이나 집단의 리윤 획득수단으로 될수 없을뿐만아니라 도저히 전반 무산계급사업을 떠난 개인적사업으로 될수 없는것이다. 당성이 없는 문필가들을 없애버리라! 초인간적문필가들을 없애버리라! 문필활동은 전반 무산계급사업의 한 부분으로 되어야 하며 전체 로동계급의 전체 자각적인 선봉대에 의하여 운전되는 하나의 통일적이고 거대한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기계의 《톱이 바퀴와 나사못》으로 되어야 한다. 문필활동은 조직적이며 계획적이며 통일적인 사회민주당사업의 한 구성부분으로 되어야 한다.

《어떠한 비유나 다 불완전하다.》라는 독일격언이 있다. 문필활동을 나사못에 비하고 산 운동을 기계에 비하는 나의 비유도 역시 불완전한것이다. 아마 그러한 비유는 자유로운 사상투쟁, 비판의 자유, 문학창작의 자유 등등을 비속화하며 마비시키며 《관료화》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비명을 지를 히스테리적인 지식인들도 있을것이다. 실은 이러한 비명은 자산계급-지식인적개인주의의 표현에 불과한것이다. 물론 문필활동에 있어서는 기계적인 평균화라든가, 균일화라든가 다수에 대한 소수의 복종이라든가 하는 일이 있을수 없는것이다. 물론 이 활동에 있어서는 개인의 창발성이나 개인적기호의 자유, 사색과 환상, 형식과 내용의 자유가 보다 많이 보장되도록 하는것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러한 모든것은 쟁론할 여지가 없는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것은 다만 무산계급의 당사업 중 문필활동부분이 무산계급의 당사업의 다른 부분들과 기계적으로 동일시될수 없다는것을 실증할 따름이다. 이 모든것은 자산계급과 자산계급민주주의자들이 리해할수 없고 그들에게는 기이하게 생각되는 명제, 즉 문필활동은 반드시 사회민주당사업의 한 구성부분으로서 다른 부분들과 밀접히 련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제를 결코 부인하는것이 아니다. 신문들은 각 당조직들의 기관지로 되어야 한다. 문필가는 반드시 당조직에 들어가 있어야 한다. 출판사와 서적창고, 서점과 열람실, 도서관과 여러가지 도서영업소—이것들은 모두가 당적인 기구로 되어야 하며 사업을 보고할 책임을 져야하는것이다. 조직된 사회주의적무산계급은 이 모든 사업을 감시하고 통제하여야 하며 하나의 폐외도 없이 이 모든 사업에 약동하는 무산계급사업의 생기를 불어넣어야 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집필자는 그저 쓰고 독자는 그저 읽기나 한다는, 오랜 절반 오블로모브²¹⁷적, 절반 상업적인 로씨야적원칙의 온갖 기반을 제거하여야 한다.

우리는 물론 아세아식출판물검열제도와 구라파자산계급에 의하여 훼손당한 문필활동의 이러한 개혁이 일거에 실시될 수 있으리라고는 말하려 하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규격적인 제도를 설교하려거나 몇가지 결정으로써 파업을 해결할것을 설교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다. 그렇다. 이 분야에서는 도식주의는 다른 무엇보다도 금물이다. 문제는 전체 우리 당이, 전 로씨야의 각성한 전체 사회민주주의적무산계급이 이 새로운 파업을 인식하며 그것을 명확히 제기하며 도처에서 그것의 해결에 착수하는데 있다. 농노제적출판물검열제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우리는 자산계급적-상업적저작관계의 포로로 되려고 하지 않으며 또 되지도 않을것이다. 우리가 조직하고 저 하며 또 조직할 자유로운 출판물은 비단 경찰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날뿐만아니라 자본이나 출세주의로부터도, 더 나아가서는 자산계급-무정부주의적개인주의로부터도 벗어난 그러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출판물이다.

이 마지막말은 역설같기도 하고 독자에 대한 조롱같기도 할것이다. 무어라구! 하고 아마 자유의 열렬한 옹호자인 어

면 지식인은 웨칠것이다. 무어라구! 그래 당신은 문학창작과 같은 그런 섬세한 개인적인 사업을 집체에 복종시키려는것인가! 당신은 노동자들의 다수가결로써 과학, 철학, 미학의 문제들을 해결하려는것인가! 당신은 완전히 개인적인 사상적창조의 절대적자유를 부인하는것인가!

진정하시오, 여러분! 첫째로, 우리의 문점은 당적 문학 및 출판물에 있으며 그것이 당적통제에 복종되어야 한다는데 있는것이다. 각자는 아무런 제한도 없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것을 쓰고 말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자유로운 각 단체(당도 포함한다.)는 또한 당의 명의를 리용하여 반당적견해를 설교하는 자를 추방할 자유를 가지고있다. 언론과 출판의 자유는 완전한것이여야 한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도 완전한것이여야 할것이 아닌가. 나는 여러분에게 언론의 자유를 위하여 마음대로 웨치고 거짓말을 하고 글을 쓸 완전한 권리를 줄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편 여러분은 나에게 결사의 자유를 위하여 이러저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거나 또는 파기할수 있는 권리를 줄 의무가 있다. 당이란 자원적인 동맹체인바 만일 그것이 반당적인 견해를 설교하는 성원들을 숙청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가피적으로 처음에는 사상적으로 그다음에는 물질적으로도 와해되고말것이다. 당적견해와 반당적견해와의 계선을 확정하는것은 당의 강령이며 당의 전술적결과과 당규약이며 끝으로 국제사회민주당의 전체 경험, 즉 완전히 철저하고 순전히 맑스주의적이고 완전히 옳바르다고는 할수 없는 그러한 개별적인 분자 또는 조류들을 항상 자기 당에 받아들이는 동시에 또한 자기 당을 주기적으로 《청소》하여왔던 무산계급의 국제적자원적동맹체들의 전체 경험인것이다. 자산계급적 《비판의 자유》를 옹호하는 제씨들이여, 우리 당 내부에서도 역시 그렇게 할것이다. 지금 우리 당은 대뜸 대중적당으로

되고있으며 지금 우리는 공개적인 단체에로의 일대 전환을 겪고있으며 불피코 허다한 불철저한(맑스주의적견지에서 볼 때) 사람들이, 혹 어쩌면 약간의 기독교신자들과 신비주의자들까지도 우리 당에 들어오게 될것이다. 우리는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철석같은 맑스주의자들이다. 우리는 이 불철저한 사람들을 소화해낼것이다. 당내의 사상의 자유와 비판의 자유는 결코 우리로 하여금 당이라는 자유로운 동맹체에 사람들이 결속될 자유를 망각케 하지 않을것이다.

둘째로, 자산계급적개인주의자제씨여, 당신들이 말하는 그 절대적자유란 하나의 위선에 불과하다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말해야 하겠다. 금전의 권력에 기초한 사회, 근로대중은 질식하고 한숨도 못되는 부자가 기생층생활을 하고있는 사회에서는 실재적인 참된 《자유》가 있을수 없는것이다. 작가제씨들이여, 당신들은 당신들의 자산계급출판업자로부터 떨어진 자유를 가지고있는가? 소설이나 회화에서 색정을 요구하며 《신청한》 무대예술에 대한 《보충》으로서 매음을 요구하는 당신들의 자산계급적독자와 관중들로부터 떨어진 자유를 가지고있는가? 실로 이 절대적자유란것은 자산계급적 또는 무정부주의적 공담인것이다.(왜냐 하면 세계관으로서의 무정부주의는 뒤집어놓은 자산계급근성이기때문이다.) 사회에서 살면서 사회로부터 떨어진 자유를 가질수는 없다. 자산계급 작가, 예술가, 배우들의 자유란 돈주머니와 매수와 급료에 가장된(또는 위선적으로 가장되어있는) 예속에 불과한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주의자들은 이 위선을 폭로하며 그 허위적인 간판을 벗기어버린다. —그러나 그것은 비계급적인 문학과 예술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그것은 오직 사회주의적무계급적사회에서만 가능할것이다.) 실은 자산계급과 련결된 거짓 자유로운 문학에다가 무산계급과 공공연하게 련결된 참으로 자유로운 문학을 대치시키기 위하여서이다.

이것은 자유로운 문학일것이다. 왜냐 하면 탐욕이나 출세가 아니라 사회주의사상과 근로인민에 대한 동정이 그 대렬에 더욱 새로운 력량을 끌어들이는기때문이다. 이것은 자유로운 문학일것이다. 왜냐 하면 그것은 배부른 귀부인이나 생활에 권태를 느끼며 비대증으로 하여 고통을 느끼는 《수만명의 상층계급》에 봉사하는것이 아니라 나라의 평화이며 나라의 힘이며 나라의 미래인 수백만 수천만 근로자들에게 봉사할것이기때문이다. 이것은 인류의 혁명적사상의 최신통과를 사회주의적무산계급의 경험과 산 활동으로써 풍부히 하며 과거의 경험(원시적인 공상적형태로부터의 사회주의의 발전을 완성한 과학적사회주의)과 현재의 경험(로동자동지들의 현재의 투쟁)간의 부단한 호상작용을 조성하는 자유로운 문학일것이다.

동지들! 일에 착수하자! 사회민주주의적로동운동과의 긴밀하고 불가분적인 련결하에 광범하고 다면적이며 다양한 문필활동을 조직한다는— 곤난하고도 새로운, 그러나 위대하고 보람찬 과업이 우리앞에 나서고있다. 일체의 사회민주주의적 문학 및 출판물은 당적 문학 및 출판물로 되어야 한다. 일체 신문, 잡지, 출판사 등등은 지체없이 재조직사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그리하여 이런 또는 저런 원칙우에서 이런 또는 저런 당조직의 산하에 완전히 들어갈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오직 그때에라야 비로소 《사회민주주의적》 문학 및 출판물이 진정한 사회민주주의적 문학 및 출판물로 될것이며 오직 그때에라야 비로소 그것은 자기의 책임을 리행할수 있게 될것이며 오직 그때에라야 비로소 그것은 자산계급사회의 울타리안에서도 자산계급의 예측으로부터 벗어나 참으로 선진적이고 끝까지 혁명적인 계급의 운동과 합류하게 될것이다.

1905년 11월 13일 《신생활》지 제12호에 게재

서명: 엔. 레닌

《신생활》지의 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10권, 24~29페이지

군대와 혁명

쉴레스도르프의 봉기는 날로 확대되고 있다. 사태는 중국에 가까와온다.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 해륙군병사들은 상관들을 파직시키고 있다. 질서는 완전히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크론슈타트사건²⁷⁴과 같은 비렬한 궤책을 되풀이할 수 없게 되었으며 어떠한 대학살도 감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함대는 바다로 나가는 것을 거절하였으며 도시를 위협하고 있다. —당국이 봉기자들을 진압하려고 시도하는 경우에, 10월 17일 조서에서 약속된 자유를 손에 무기를 잡고 수호하여야 한다고 한 《대담무쌍한》 연설 때문에 파직당한 퇴역해군중위 쉬미트가 《오차코프》호를 지휘하게 되었다. 《로씨야》²⁷⁵지의 보도에 의하면 해병들에게 항복하라고 지정한 기한은 오늘(15일)이 마지막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정적시기의 전야에 처해 있다. 최근 며칠 동안에(혹은 몇 시간 내일 수도 있다.) 봉기자들이 완전히 승리하느냐 그들이 진압당하느냐 또는 어떤 협정이 체결되느냐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여간 쉴레스도르프의 사건은 군대내의 낡은 노예적 제도(즉 병사들을 무장한 기계로 전화시켜 그들을 자유에 대한 그 어떤 사소한 지향까지 진압하는 도구로 만든 제도)의 완전한 파산을 표시하고 있다.

로씨야군대가(1849년 당시와 같이) 로씨야국경을 넘어 혁명을 진압하려 가던²⁷⁶ 시기는 영원히 지나갔다. 이제 군대는 전제제도로부터 영원히 떨어져나갔다. 군대는 아직 전부가 다 혁명적으로 되지는 않았다. 육해군병사들의 정치적 각성은 아

적 극히 낮다. 그러나 중요한것은 그들이 이미 작성되었고 병사들속에서 **자기의** 운동이 개시되었고 자유의 정신이 병영의 도처에 침투되어있다는 사실이다. 로씨야의 병영은 흔히 그 어느 감옥보다도 더 나빴다. 병영에서처럼 개성이 유린되고 압박되는곳은 아무데도 없었다. 고문과 구타와 인간에 대한 통육이 것처럼 심한 현상은 아무데도 없었다. 그런데 이 병영이 혁명의 책원지로 되고있는것이다.

쎄와스토폴사건은 고립된 사건이 아니며 우연한 사건도 아니다. 해군이나 육군에서 직접 봉기를 일으키려고 하던 이전의 시도들에 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하자. 단지 뻘제르부르그의 불꽃들을 쎄와스토폴의 불길과 비교하여보자. 뻘제르부르그의 각 부대의 병사들이 지금 제기하고있는 요구(이러한 요구는 우리 신문 어제 호에 게재되었다.)를 상기하자. 이 요구 목록은 얼마나 주목할만한 문헌인가! 그것은 노예적군대가 혁명적군대로 전화하고있다는것을 얼마나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가. 그대 어떠한 힘이 현재 전체 해육군내에서 이와 같은 요구가 전파되는것을 막아내겠는가?

뻘제르부르그의 병사들은 의식주를 개선하며 봉급을 인상하며 병역년한 및 매일의 훈련시간을 단축하려고 생각하고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 가운데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것은 공민으로서의 병사만이 제기할수 있는 요구들이다. 즉 어떠한 집회에는 군복을 입고 《모든 공민과 평등하게》 참석할 권리, 병영에서 **모든** 신문을 읽으며 또 보관할 권리, 신앙의 자유, 모든 민족의 일률적인 평등, 병영밖에서의 상관에 대한 복종과 존경의 완전한 폐지, 군무원의 폐지, 군사재판의 폐지 및 모든 군사소송사건의 일반민사재판에의 종속, 집단적이고소를 제출할 권리, 구타하려는 의도가 상관에게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 자신을 방위할 권리, 이러한것이 뻘제르부르그병사

들의 가장 주되는 요구들이다.

이 요구들은 군대의 대부분이 자유를 위하여 일어난 썬와 스토뿔봉기자들과 련대성을 가지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 요구들은 군대의 중립이니 군대를 정치로부터 유리시킬 필요가 있다느니 꺼니 하는 전제제도의 앞잡이들의 말들이 모두 허위적이며 병사들에게서 추호의 동정도 받을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군대는 중립적일수 없으며 또 그래서는 안되는것이다. 군대를 정치로부터 유리시켜야 한다는 이것은 자산계급과 짜리제도의 위선적인 중북들의 구호로서 실지에 있어서 그들은 언제나 군대를 반동적정치에 끌어들이 로써야병사들을 흑백단의 노복으로, 경찰의 조력군으로 전화시켰던것이다. 자유를 위한 전인민적투쟁밖에 서있어서는 안된다. 이 투쟁에 대하여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는자는 자유를 우롱하기 위하여 자유를 약속하였던 경찰정부의 전횡을 지지하는자이다.

공민으로서의 병사들이 제기한 이 요구는 사회민주당의 요구이며 모든 혁명적당들의 요구이며 각성한 로동자들의 요구이다. 자유지지자들의 대렬에 가담하며 인민의 편으로 이행하는것은 자유를 위한 위업의 승리와 병사들의 요구의 실현을 보장할것이다.

그러나 이 요구들이 참으로 철저하고 확고히 실현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좀 더 전진하여야 한다. 저주로운 병영에서 시달리고있는 병사들의 모든 개별적소원들을 하나의 전일적요구로 종합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구들을 종합해보면 그것은 곧 상비군을 폐지하고 전인민적무장으로 상비군을 대체하는것을 의미할것이다.

상비군은 어디서나 어떠한 나라에서나 외적을 반대하는데 북무하기보다는 오히려 내적을 반대하는데 북무한다. 상비군

은 어디서나 반동세력의 도구로, 로동을 반대하는 투쟁에서의 자본의 종복으로, 인민적자유의 교살자로 되어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위대한 해방적혁명에 있어서는 한갓 부분적인 요구에만 머무르지 말아야 한다. 악을 뿌리채 뽑아버리자. 상비군을 완전히 폐지하자. 군대로 하여금 무장한 인민과 합류하게 하며 병사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군사지식을 인민속으로 가지고 들어오게 하며 병영을 취소하고 그대신 자유로운 군사학교로 그것을 교체하게 하자. 만일 무장한 인민이 군벌을 폐지하고 모든 병사들을 공민으로 만들고 무기를 들수 있는 모든 공민을 병사로 만든다면, 또 만일 이러한 무장한 인민이 로씨야의 자유의 성새로 된다면 세계의 어떠한 힘도 자유로운 로씨야를 감히 침해하지 못할것이다.

서구라파의 경험은 상비군의 반동성을 완전히 증명하여 주었다. 군사과학은 방어전에서나 진공전에서나 군사적임무를 능히 수행할수 있는 민병제를 완전히 실시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하여주었다. 위선적이거나 감상적인 자산계급은 군비철폐에 대하여 몽상하려면 하라. 이 세상에 피압박자와 피착취자가 있는 동안은 우리는 군비철폐가 아니라 전인민적무장을 쟁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직 전인민적무장만이 자유를 완전히 보장할것이다. 오직 전인민적무장만이 반동세력을 철저히 타도할것이다. 오직 이러한 개혁이 실시된 조건하에서만 한층도 못되는 착취자들이 아니라 천백만 근로자들이 자유를 진정으로 향유하게 될것이다.

1905년 11월 15일(28일)에
집필

1905년 11월 16일 《신생활》
지 제14호에 게재
서명: 엔. 페닌

신문의 원문에 의하여 인
쇄

《페닌전집》, 한문판, 제10
권, 34~37페이지

사회주의당과 비당적혁명성

1

로씨야의 혁명운동은 새로운 주민층을 급격히 포괄하면서 일련의 비당적조직들을 창설하고있다. 연합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는 그것에 대한 탄압과 박해가 오래 지속될수록 더 강렬해지고있다. 여러가지 조직들이 이러저러한 형태로, 흔히는 부정형적인 형태로 부단히 산생되고있는데 이 조직들의 성격은 매우 독특하다. 거기에는 구라파의 조직들에서 볼수 있는 것과 같은 뚜렷한 틀은 없다. 직업동맹은 정치적성격을 띠고있다. 정치투쟁은 경제투쟁과 융합되어(페컨대 파업의 형태로) 임시적인 또는 비교적 항구적인 조직들의 결합된 형태를 만들어내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의의를 가지고있는가? 사회민주당은 이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엄격한 당성은 고도로 발전한 계급투쟁의 동반자이며 결과이다. 또 이와 반대로 공개적이고 광범한 계급투쟁을 위해서는 엄격한 당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기때문에 각성한 무산계급의 정당인 사회민주당은 아주 정당하게도 항상 비당성과 싸우고있으며 원칙을 견지하며 굳게 단결된 사회주의 노동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있다. 이 사업은 자본주의의 발전이 전체 인민을 각 계급으로 날로 더 심각하게 분열시켜 그들간의 모순을 첨예화시킬수록 대중속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로씨야의 목전혁명이 이렇듯 많은 비당적조직을 산생하였으며 또 산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혁명은 그 사회경제적내용에 있어서 민주주의적혁명 즉 자산계급적혁명이다. 이 혁명은 농노제적전제제도를 뒤엎고 그것으로부터 자산계급적제도를 해방시키며 그리하여 자산계급사회의 모든 계급의 요구를 실현한다. 이 의미에서 이 혁명은 전인민적혁명이다. 이것은 물론 우리 나라 혁명이 계급적혁명이 아니라는것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 물론 그렇지 않다. 그러나 이 혁명은 자산계급사회의 견지로 보아 이미 로폐했고 또 로폐해가고 있는, 그리고 자산계급사회와는 관계없으며 그 발전을 방해하는 계급 및 신분을 반대하는데 예봉을 돌리고 있다. 그리고 나라의 전체 경제생활이 이미 그 모든 기본적특징에 있어서 자산계급적으로 된만큼, 또 절대다수 주민이 이미 사실상 자산계급적인 조건하에서 생활하고 있는만큼 반혁명분자들은 자연히 극소수이며 《인민》에 비하여 그야말로 《한줌》도 못된다. 그렇기때문에 자산계급혁명의 계급적성격은 필연적으로 전제제도와 농노제도를 반대하는 자산계급사회 모든 계급의 투쟁의 《전인민적》성격으로, 일핏 보면 비계급적성격으로 표현된다.

자산계급혁명의 시대는 로씨야에 있어서도 다른 나라들과서와 마찬가지로 자본주의사회의 계급적모순들이 비교적 발전되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물론 현재의 로씨야자본주의의 발전정도는 1789년의 프랑스는 말할것도 없고 1848년의 독일보다도 훨씬 더 앞서고 있다. 그러나 순자본주의적모순이 우리 나라에 있어서 《문명》과 야만, 구라파적방식과 따따르적방식, 자본주의와 농노제 등의 모순들에 의해 아직 심하게 가리워지고 있다는것, 즉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시키며 자본주의로부터 봉건제도의 잔재를 청산하며 무산계급과 자산계급의

생활 및 투쟁의 조건을 개선할 그러한 요구가 우선 실현되어야 한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사실 지금 로씨야의 매개 공장, 매개 사무실, 매개 련대, 매개 경찰대, 매개 교회관구, 매개 학교 등등에서 제기되고있는 수다한 요구서, 위탁서와 진소서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그 대다수가 순전히 《문명한》(이렇게 표현할수 있다면) 요구라는것을 쉽게 볼수 있을것이다. 나는 이것은 본래 특수한 계급적인 요구가 아니라 초보적인 법률상의 요구, 즉 자본주의를 파괴하지 않을뿐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구라파식의 길로 나가게 하며 자본주의로 하여금 미개, 야만, 죄물 및 기타 농노제의 《로씨야적》잔재에서 벗어나게 하는 요구라고 말하고싶다. 사실 무산계급의 요구도 다수 경우에 있어서는 자본주의의 범위내에서 완전히 실현될수 있는 그러한 개혁들에 그치는것이다. 로씨야무산계급이 지금 절박히 요구하는것은 자본주의를 파괴하는것이 아니라 그의 길을 청소하며 그 발전을 촉진시키며 강화하는것이다.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의 무산계급의 특수한 처지는 로동자들의 사회주의에로의 지향, 그들과 사회주의정당과의 동맹을 운동의 초기단계에 벌써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나게 한다. 그러나 진정한 사회주의적요구는 아직 제기되지 않고있으며 일정에 제기되고있는것은 로동자들의 정치상에서의 민주주의적요구, 경제상에서의 자본주의범위내에서의 경제적요구이다. 심지어 무산계급까지도 최고강령의 범위내에서가 아니라 최저강령의 범위내에서 혁명을 진행한다고 할수 있다. 농민, 그 수에 있어서 압도적다수를 차지하는 이 광범한 주민대중에 관해서는 더 말할것도 없다. 그의 《최고강령》, 그의 종국적목적은 전체 토지가 전체 농민 및 전체 인민에게 넘어가는 조건하에서 더욱더 광범히 또 더욱더 발랄히 발전할 자본주의범

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농민혁명은 지금에는 자산계급혁명이다.—이 말이 우리의 소시민적사회주의의 감상적인 기사들의 감상적인 귀에 아무런 《거슬》린다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있는 혁명의 상술한 성격으로 보아 일련의 비당적조직들이 산생하는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경우에 전반 운동은 불가피적으로 표면상에서 비당성의 흔적이거나 비당성의 외판을 띠게 된다. 그러나 이것은 물론 외판뿐이다. 《인도적》문명생활에 대한 요구, 련합에 대한 요구, 자기의 존엄 및 인권과 공민권의 수호에 대한 요구는 일체를 포괄하며 모든 계급을 련합시키며 온갖 당성을 훨씬 초월하게 하며 아직 결코 당성의 높이에까지 자기를 올려놓을수 없는 사람들을 분발시킨다. 초보적인, 필수적인 당면의 권리와 개혁의 긴요성은 말하자면 미래의 모든 일들에 대한 사고와 고려를 밀어버린다. 당면한 투쟁에 대한 열중(이것은 필요하고 합리적인것으로서 이것 없이는 투쟁의 승리가 불가능하다.)은 이러한 초보적인 당면의 목적을 리상화하며 그것을 완전완미한것으로 그리며 지어는 그것에다 환상적인 외의를 입히기까지 한다. 보통의 민주주의 즉 보통의 자산계급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생각되어 사회주의《범주》에 들어간다. 모든것이 마치 《비당적》인것 같으며 모든것이 하나의 《해방》(실지에 있어서 전체 자산계급사회를 해방시키는)운동속에 말려들어가고 있는것 같다. 모든것이 다 특히 민주주의투쟁에서의 사회주의적무산계급의 선진적역할로 말미암아 미미한 《사회주의》적색채를 띠게 되는것이다.

비당성의 사상은 이러한 조건하에서는 일정한 일시적승리를 획득하지 않을수 없다. 비당성은 유행적구호로 되지 않을수 없다. 왜냐 하면 유행은 실제생활의 표리에 가련하게 끌려가는것인데 비당적조직, 비당적민주주의, 비당적파업주의, 비

당적혁명성이야말로 정치적피상성의 가장 《일상적인》 현상으로 보이기때문이다.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긴다. 비당성의 이러한 사실이나 비당성의 이러한 사상에 대해서 각 계급의 대표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는것이 **마땅한가?** 여기서 마땅한가 하는것은 주관적의미에서가 아니라 객관적의미에서, 즉 이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할것인가 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가 각 계급의 리해관계와 견해에 따라서 불가피적으로 형성되는가 하는 의미에서 말하는것이다.

2

우리가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비당성은 우리 나라 혁명의 자산계급적성격의 산물(또는 그 표현이라고도 할수 있다.)이다. 자산계급은 비당성에 끌리지 않을수 없다. 왜냐 하면 자산계급사회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는자들에게 정당이 없다는것은 이 자산계급사회자체를 반대하는 새로운 투쟁이 없다는것을 의미하기때문이다. 자유를 위한 《비당적》투쟁을 하는자는 자유의 자산계급적성격을 의식하지 못하거나 이 자산계급제도를 신성화하거나 자산계급제도를 반대하는 투쟁, 이 제도의 《개선》을 회람력에 초하루날이 돌아올 때까지 연기하는²⁷⁷자이다. 또 이와 반대로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자산계급제도편에 서는자는 비당성의 사상에 대한 애착을 느끼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계급분렬에 기초한 사회에서는 적대적계급들간의 투쟁은 그 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불가피적으로 정치투쟁으로 된다. 계급들간의 정치투쟁의 가장 엄숙하고 가장 완전하고 가장 뚜렷한 표현은 정당들간의 투쟁이다. 비당성은 바로 정당들간의 투쟁에 대한 무관심이다. 그러나 이 무관심은 중립이나 투쟁

의 포기와는 다르다. 왜냐 하면 계급투쟁에 있어서는 중립이란 있을수 없으며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생산물 또는 노동력교환에 참가하는것을 《포기》할수 없기때문이다. 그런데 교환은 불가피적으로 경제투쟁을 산생시키며 그뒤를 이어 또 정치투쟁을 산생시킨다. 때문에 투쟁에 대한 무관심은 사실상 투쟁을 회피하거나 투쟁을 포기하거나 또는 중립을 지키는것은 결코 아니다. 무관심은 강자, 통치자에 대한 무언의 지지인것이다. 로씨야에서 전제정부가 10월혁명²⁷²시기에 무너질 때까지 그것에 대하여 무관심하였던자는 무언중에 전제정부를 지지한 자였다. 오늘의 구라파에서 자산계급의 지배에 대하여 무관심한자는 무언중에 자산계급을 지지하는자이다. 자유를 위한 투쟁이 자산계급적성격을 띠고있는 이 점에 대하여 무관심한자는 무언중에 이 투쟁에서의 자산계급의 지배를 지지하며 탄생하고있는 자유로씨야에서의 자산계급의 지배를 지지하는자이다. 정치상에서의 맹담한 태도는 정치적만족을 의미한다. 배부른자는 빵 한조각에 대하여 《맹담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취하나 굶주린자는 언제나 빵 한조각에 대하여 《당적》으로 대할것이다. 빵 한조각에 대한 《맹담과 무관심》은 그 사람에게 빵이 필요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언제나 빵걱정이 없으며 언제나 빵이 모자라지 않다는것을 의미하며 그가 배부른자들의 《당》에 확고히 속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자산계급사회에서의 비당성은 배부른자들의 정당, 통치자들의 정당, 착취자들의 정당에 소속되어있다는것의 허위적이고 은폐적이며 소극적인 표현일따름이다.

비당성은 자산계급적사상이다. 당성은 사회주의적사상이다. 이 원리는 대체로 전반 자산계급사회에 적용된다. 물론 이 보편적진리를 개별적인 문제와 개별적인 경우에 적용할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전체 자산계급사회가 농노제와 전제제도

를 반대하여 일어서고있는 그러한 때에 이 진리를 망각한다는 것은 자산계급사회에 대한 사회주의적비판을 사실상 완전히 포기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로씨야혁명은 그것이 아직 자기 발전의 초기에 처해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술한 일반적견해의 정당성을 확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이미 적지 않게 제공하였다. 엄격한 당성을 언제나 고수하여왔으며 또 고수하고있는것은 오직 사회민주당, 각성한 무산계급의 정당뿐이다. 자산계급견해의 대표자들인 우리의 자유주의자들은 사회주의적당성에 대해서 참지 못하며 계급투쟁에 대해서 듣기 싫어한다. 그것은 국외에서 발간되는 잡지 《해방》²²³과 로씨야자유주의자의 무수한 예측적기관지가 여러 번 중박하여 말한것을 백번이나 되풀이한 로지체보씨의 최근의 연설만을 회상해보아도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중간계급, 즉 소자산계급의 사상의식은 《우리의 생활》지²⁷⁸에, 《급진적인 민주주의자》²⁷⁹로부터 《사회혁명당원》²⁰⁸에 이르기까지의 가지각색의 로씨야《급진주의자들》의 견해에 명백히 표현되었다. 사회혁명당원들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자기들의 혼동을 토지문제에서 다시말해서 《사회화》(자본의 사회화가 없는 도지의 사회화)란 구호에서 가장 명백히 표현하였다. 그들이 자산계급적급진주의는 허용할수 있으나 사회민주주의적당성의 사상은 허용할수 없다는것도 역시 분명한 일이다.

각 계급의 이해가 로씨야의 각종 자유주의자들 및 급진주의자들의 강령과 전술에 어떻게 반영되고있는가 하는것은 이 글에서 분석하지 않았다. 우리는 여기서 다만 이 흥미있는 문제를 부대적으로 언급하였을뿐이며 이제는 비당적조직들에 대한 우리 당의 태도에 관한 실천적정치적결론으로 넘어가야 하겠다.

사회주의자들이 비당적조직에 참가할수 있는가? 참가할수

있다면 어떠한 조건하에서 참가할수 있는가? 이러한 조직에서 어떤 전술을 실시할것인가?

첫째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대답할수는 없다. 어떠한 정황하에서나 사회주의자들이 비당적(즉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나 다소라도 자산계급적인) 조직에 참가할수 없다고 말하는것은 옳지 않을것이다. 민주주의혁명시대에 비당적조직에 참가하는것을 거부하는것은 어떤 경우에는 민주주의혁명에 참가하는것을 거부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지일것이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은 이 《어떤 경우》를 협소한 범위로 국한시켜야 한다는것, 그들은 엄격히 규정되고 엄격히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그와 같은 참가를 허용할수 있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왜냐 하면 만약 비당적조직이 우리가 이미 말한바와 같이 비교적 발전하지 못한 계급투쟁에 의하여 산생되는것이라면 한편으로 엄격한 당성은 계급투쟁을 의식적인, 명확한, 원칙적인 투쟁으로 만드는 조건중의 하나이기때문이다.

무산계급정당의 사상적 및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는것은 사회주의자들의 일상적이며 변함없는 그리고 무조건적인 의무이다. 이 의무를 리행하지 않는자는 그의 《사회주의적》(말로만의 사회주의적)선념이 아무리 참된것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사회주의자로는 되지 않는것이다. 비당적조직에 참가하는것은 사회주의자에 대하여서는 예외로서밖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참가의 목적자체와 그 성격, 조건 등등은 사회주의혁명을 의식적으로 령도할수 있도록 사회주의적무산계급을 준비하고 조직한다는 이 기본과업에 전적으로 복종시켜야 한다.

형제는 우리에게 비당적조직에 참가하는것을 강요할수 있다. 특히 민주주의혁명, 그중에도 특히 무산계급이 현저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민주주의혁명시대에는 더 그러하다. 이러

한 참가는, 폐권대 명확한 민주주의적사상이 없는 청중들에게 사회주의를 선전하기 위해서나 또는 반혁명세력을 반대하는 사회주의자들과 혁명적민주주의자들과의 공동투쟁을 위해서 필요하게 될수 있다. 비당조직에 참가하는것은 첫째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들의 견해를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될것이며 둘째 경우에 있어서는 일정한 혁명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투적협정으로 될것이다. 이 두 경우에 있어서 참가하는것은 다 일시적인것으로밖에 될수 없다. 이 두 경우에 있어서 로동자당의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며 비당적 련합회 또는 위원회에 《대표》로 파견되는 당원 및 당소조가 전당의 절대적인 통제와 령도를 받는 조건하에서만 참가할수 있다.

우리 당의 활동이 비밀상태에 처해있을 때에는 이러한 통제와 령도를 실행하는데 극히 커다란, 때로는 거의 극복할수 없는 곤란들이 있었다. 당의 활동이 더욱 공개적으로 진행되고있는 지금에 있어서는 이런 통제와 령도는 당의 《상층》에 의해서뿐만아니라 당의 《하층》에 의해서도 당에 가입하고있는 모든 조직된 로동자들에 의해서도 극히 광범히 실현될수 있으며 또 실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비당적 련합회 또는 위원회내에서의 사회민주당원들의 활동에 관한 총결보고, 그러한 활동의 조건과 임무에 관한 보고, 그러한 활동에 대한 모든 당조직의 결정들은 모두 로동자당의 일상활동으로 되어야 한다. 당전체가 그와 같은 모든 활동에 **실제적으로** 참가하여 **지도**하는것만이 참으로 사회주의적인 사업을 일반 민주주의적인 사업에다 실지로 대치시킬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비당적련합회내에서 어떠한 전술을 실시하여야 하는가? 첫째 독립적련계를 맺으며 우리의 전반 사회주의강령을 선전하기 위하여 온갖 가능성을 리용하는것이다. 둘째 민주주의적혁명을 가장 견결히 또 철저하게 실현하는 견지에서 현

시기의 당면한 정치적임무를 확정하며 민주주의혁명에서의 정치적구호를 제기하며 상업적자유주의적민주파와 다른 전투적인 혁명적민주파가 실현하여야 할 그런 개혁의 《강령》을 제시하는것이다.

오직 이러한 정황하에서만 오늘은 로동자들에 의하여 래일은 농민들에 의하여 모래는 병사들에 의하여 또 다음날에는 무엇무엇에 의하여 조직되는 혁명적인 비당적조직들에 우리 당원들이 참가하는것이 허용될수 있으며 또 유익한것으로 될수 있다. 오직 이러한 정황하에서만 우리는 자산계급혁명에서의 로동자당의 2중적과업, 즉 민주주의적혁명을 끝까지 수행하는 과업과 자본의 지배를 뒤엎기 위한 무자비한 투쟁을 위하여 자유를 필요로 하는 사회주의적무산계급간부들을 확대강화하는 과업을 완수할수 있을것이다.

1905년 11월 26일과 12월 2
일 《진생활》지 제22호와 27
호에 게재

서명: 엔.메닌

《진생활》지의 원문에 의하여
인쇄

《메닌전집》, 한문판, 제10
권, 54~61페이지

모스크바봉기의 교훈

《1905년 12월의 모스크바》라는 책(1906년 모스크바판)은 가장 시기적절하게 세상에 나왔다. 12월봉기의 경험을 섭취하는것은 로동자당의 긴급한 과업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 책은 옥에티라는 격으로 그 자료는—불충분하기는 하나—극히 재미있는것인데 그 결론은 턱없이 조잡하고 비속하기 짝이 없다. 우리는 이 결론들에 대하여는 따로 언급하기로 하고① 지금은 목전에 정치적으로 절박하게 나서고있는 문제인 모스크바봉기의 교훈에 대하여 논하기로 하자.

모스크바에서 일어난 12월운동의 주요한 투쟁형태는 평화적 파업과 시위운동이었다. 로동자대중의 절대대다수는 다만 이 두가지 형태의 투쟁에만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그러나 모스크바에서의 이 12월진공이야말로 독자적이고 주요한 투쟁형태로서의 총파업이 시대에 뒤떨어졌다는것, 운동은 자연발생적인 억제할수 없는 힘을 가지고 이 협애한 범위를 벗어나 더 높은 투쟁형태인 봉기를 산생하고있다는것을 뚜렷히 보여 주었다.

모든 혁명적정당들과 모스크바의 모든 직업동맹들은 파업을 선언하면서 이 파업이 봉기로 전화될 불가피성을 인식하였으며 더 나아가 절실히 느끼게까지 하였다. 12월 6일 로동자대표소베트는 《파업을 무장봉기로 전환시키도록 노력할것》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실지에 있어서 모든 조직들은 이에 대한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11권, 170~174페이지를 보라.—편집자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였으며 전투대원합위원회²⁸⁰까지도(12월 9일에!) 봉기에 대하여 마치 아직 먼 장래의 일처럼 말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두말할것없이 시가전은 이 위원회의 지도없이 그의 참가없이 진행되고말았다. 모든 조직은 다 운동의 발전과 규모에 뒤떨어지고말았다.

파업은 우선 10월이후에 조성된 객관적조건의 압력밑에서 봉기로 발전하였다. 정부는 벌써 총파업에 당황실색하고있을수 없었으며 이미 군사행동을 취할 반혁명세력을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10월이후의 로씨야혁명의 총행정이나 12월에 모스크바에서 계속 일어난 여러 사변들은 맑스의 다음과 같은 심오한 명제를 놀랄만치 훌륭히 확증하였다. 즉 혁명은 하나로 뭉친 완강한 반혁명을 만들어냄으로써 전진한다. 다시말하면 혁명은 적으로 하여금 더욱더 극단적인 방어수단을 취하지 않을수 없게 하며 따라서 혁명자체도 보다 더 강력한 공격수단을 강구하게 되는것이다²⁸¹.

12월 7일과 8일, 평화적파업과 평화적군중시위가 단행되었다. 8일 저녁, 아크바리움화원을 포위하였다. 9일 낮, 롱기병들이 스트라스트나야광장에서 군중을 학살하였다. 같은날 저녁, 피델레르의 저택이 파괴되었다. 군중의 정서는 들끓었다. 거리의 비조직군중들은 완전히 자연발생적으로 또 머뭇거리면서 최초의 시가보루를 구축하고있었다.

10일, 시가보루와 거리의 군중에 대한 포격이 개시되었다. 시가보루구축은 더는 머뭇거릴수 없는 일로 되고 벌써 개별적인것이 아니라 참말로 대중적인것으로 되어갔다. 전 시의 주민들이 모두 거리로 떨쳐나왔다. 전 시의 주요한 중심지들은 시가보루망으로 뒤덮이였다. 수일동안 전투대원들은 군대들과 완강한 유격투쟁을 벌리였다. 이 투쟁은 군대를 기진맥진케 하였으며 두바쑈브²⁸²로 하여금 부득이 증원부대를 청하게 하

였다. 12월 15일에 와서야 비로소 정부측 병력이 완전히 우세하게 되었으며 또 17일에는 세묘노브런대가 봉기의 마지막 거점인 프레스냐거리를 격파하였다.

파업과 시위운동으로부터 개별적인 시가보투의 구축으로, 개별적인 시가보투로부터 대량적시가보투의 구축 및 군대와와의 시가전으로, 조직의 지도없이 무산계급의 대중적투쟁이 파업으로부터 봉기으로 발전하였다. 이것은 1905년 12월에 거둔 로씨야혁명의 가장 위대한 역사적성과이다. 이 성과는 그전의 모든 성과들과 마찬가지로 가장 큰 희생의 대가로써 얻어진 것이다. 운동은 총정치파업으로부터 더 높은 단계으로 발전하였다. 운동은 반동파로 하여금 극단적인 저항수단을 취하게 하였으며 또 그리하여 혁명도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공격수단을 취할수 있는 시기를 훨씬 앞당기게 하였다. 반동파는 시가보투와 가옥과 거리의 군중을 포격하는것외에는 더 **나갈 길이 없었다**. 그러나 혁명세력은 모스크바전투대보다도 더 멀리 나갈 길이 있으며 널리 퍼져나갈 길도, 깊이 들어갈 길도 얼마든지 있었다. 그리하여 과연 혁명은 12월사변후에 또 앞으로 멀리 나아갔다. 혁명위기의 기초는 더욱 광범하여졌으며 칼날은 이제 더욱 날카롭게 갈리워있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무산계급은 파업으로부터 봉기으로의 이행을 요구한 객관적투쟁조건들의 변화물 그들의 령도자들보다도 먼저 느끼었다. 이 시기에도 언제나 그러하듯 실천이 이론보다 앞서 나갔다. 평화적파업과 시위운동은 다음에는 무엇을 할것인가고 묻는 로동자들을, 즉 더한층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한 로동자들을 즉시로 만족시킬수 없게 되었다. 시가보투를 구축하라는 지령은 대단히 늦게 각 지구에 하달되었다. 그때에는 벌써 중심지에서는 시가보투를 구축하고있었던것이다. 로동자들은 집단적으로 이 일을 맡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에도 만족하지 않

고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하고 또 물었다. 즉 그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였다. 우리의 사회민주주의적무장계급의령도자들은 12월사변당시에 마치 자기의 편대를 어찌나 맹랑하게 포치하였던지 자기가 지휘하는 그 군대의 대부분이 전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 못하게 한 그러한 장군에 흡사하였다. 노동자대중은 적극적인 대중적행동에 대한 지시를 찾아내려 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여기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사로잡고있는 플레하노브의 견해, 즉 원래 시기에 맞지 않는 파업은 시작할것이 아니였으며 《무기를 잡을것이 아니였다.》고 하는 그 견해보다 더 근시안적인것은 없다. 그와 반대로 한층더 견결하고 과감하고 주동적으로 무기를 잡아야 했으며 다만 평화적파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것, 용감하고 무자비한 무장투쟁이 필요하다는것을 군중들에게 해설해야 할것이였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결국 정치적파업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것을 공개적으로 승인해야 하며 가장 광범한 군중가운데서 무장봉기를 선동해야 하며 이 문제를 어떠한 《예비적단계》를 운운하는 것으로써 은폐하지 말며 어떠한 면사포로든지 가리우지 말아야 하게 되었다. 이제 곧 닥쳐올 진격의 직접적파업인 가렬한 류혈적섬멸전의 필요성을 군중들앞에 감추는것은 곧 자기를 기만하는것이며 인민을 기만하는것이다.

12월사변의 첫째 교훈은 바로 이상과 같은것이다. 다른 교훈은 봉기의 성격, 그 수행방법, 인민측에로의 군대의 전환 조건들에 관련되는 점이다. 우리 당 우익내에는 이 전환에 대해서 극히 일면적인 견해가 류행되고있다. 현대적군대를 반대하여 싸울수는 없으며 군대를 혁명적으로 되게 하는것이 필요하다라는것이다. 물론 만일 혁명이 군중적인것으로 되지 않고 또 혁명이 군대자체를 장악하지 않는다면 중대한 투쟁에 대하

여 운운할 여지조차 없는것이다. 물론 군대에 대한 공작은 필요하다. 그러나 군대의 이러한 전환을 설복과 자각의 결과에 의하여 나타나는 어떤 단순하고 단독적인 행동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된다. 모스크바봉기는 이와 같은 전해가 교조적이고 생기없는것이라는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사실 참으로 인민적인 모든 운동에서 혁명투쟁이 격화되는 때에는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군대의 동요가 **군대를 쟁탈하기 위한 진지한 투쟁**을 야기하게 되는것이다. 모스크바봉기는 군대를 쟁취하기 위한 반동파와 혁명력량간의 그야말로 가장 치열하고도 참혹한 투쟁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두바쵸브 자신이 모스크바의 1만 5,000명 군대중에서 다만 5,000명만을 믿을수 있다고 하였던것이다. 정부는 여러가지 극단적수단으로써 군대내의 동요분자들을 통제하였다. 즉 그들은 설복한다든가 그들을 유혹한다든가 시계와 금전 등등으로 그들을 매수한다든가 워트까로 그들을 마취시킨다든가 그들을 기만한다든가 그들을 협박한다든가 그들을 병영에 가두어둔다든가 무장을 해제한다든가 그들로부터 가장 신뢰할수 없는 분자라고 생각되는 병사들을 밀고와 폭력으로써 잡아낸다든가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에서 우리가 정부보다 뒤떨어져있었다는것을 솔직히 공공연하게 인정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우리는 동요하는 부대를 쟁취하기 위하여 정부가 진행했고 실현한바와 같은 그러한 적극적이고 대담하며 지혜롭고 주동적인 투쟁에 그당시 우리에게 있던 모든 힘을 리용할줄 몰랐다. 우리는 군대를 사상적으로 《감화》시킬것을 준비했으며 또 앞으로도 더욱 완강히 준비할것이다. 그러나 만일 봉기의 관건적시각에는 군대를 쟁취하기 위한 육체적투쟁도 역시 필요하다는것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보잘것없는 현학자로 되고말것이다.

모스크바무산계급은 12월사변시기에 군대를 사상적으로

《감화》시킬 때 대한 훌륭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었다. 폐를 들면 12월 8일 스트라스트나야광장에서 있던 일인데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까자크부대를 둘러싸고 그들과 뒤섞이여 편환함으로써 그들이 퇴각하게끔 하였던 것이다. 또 폐를 들면 10일에 프레스냐거리에서는 1만명이나 되는 군중가운데서 붉은기를 든 두 청년녀공이 《우리를 죽여라! 목숨이 붙어있는 한 기발을 내놓지 않겠다!》라고 웨치면서 까자크부대를 향하여 달려갔다. 그리하여 까자크부대는 당황하여 《까자크 만세!》라는 군중들의 웨침소리속에서 도망쳐버렸다. 이 용기와 영웅성의 모범은 무산계급의 가슴속에 영원히 새겨져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두바쵸브보다 낙후하였다는 폐가 있다. 12월 9일에 병사들이 봉기자들과 편합하기 위하여 마르쎈이유의 노래를 부르면서 대쎈트프홉스까야거리를 행진하고있었다. 로동자들은 그들에게 대표자를 파견하였다. 말라호브²⁸³는 친히 말을 타고 필사적으로 그들에게 달려갔다. 로동자들은 늦게 도착했고 말라호브는 제때에 도착하였다. 그는 열변을 토하여 병사들을 동요케 하였으며 또 통기병으로 그들을 포위하게 하고 그들을 영창으로 끌고가서 그곳에 가두어두게 하였다. 말라호브는 제때에 도착하였으나 우리는 제때에 도착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2일동안에 벌써 15만명이 우리의 호소에 항응하였고 그들은 가두순찰을 조직할수 있었으며 또 조직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말라호브는 병사들을 통기병으로 포위하였는데 우리는 말라호브일당을 폭탄을 가진 사람들로 포위하지 못하였다. 그당시 우리는 이렇게 할수 있었으며 또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사회민주당출판물(구《이스크라》)¹³⁸은 이미 오래전에 문무장관들을 무자비하게 소멸하는것을 봉기시의 우리들의 의무라고 지적한바가 있었던 것이다. 대쎈트프홉스까야거리에서 발생했던 사건은 확

실히 네스비츠크군영앞에서도, 크루찌스끼군영앞에서도 되풀이되었으며 무산계급이 예카제리노슬라브련대의 무장을 《해제》시키려고 시도하였을 때에도, 알렉산드로브에 있는 공병부대에 대표를 파견하였을 때에도, 모스크바로 파견되었던 로스토프보병부대를 돌려보내게 하였을 때에도 또 팔롬나에 있는 공병부대를 무장해제하였을 때에도 그리고 다른 경우에도 되풀이된 것이었다. 봉기시에 우리는 동요하는 군대를 쟁취하는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12월사변은 또 봉기는 예술이며 이 예술의 주요한 법칙은 필사적이고 대담한, 물러설 줄 모르는 결정적인 공격이라고 쓴 맑스의 다른 하나의 심오한 그리고 기회주의자들이 망각한 명제를 명백히 확증하였다²⁸⁴. 우리 자신은 이 진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 예술 즉 어떠한 일이 있어도 공격해야 한다는 이 원칙을 충분히 배우지 못하였으며 또 군중에게 충분히 가르쳐주지 못하였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실책을 전력을 다하여 만회하지 않으면 안된다. 정치적구호에 대한 태도여하에 따라 어느 파에 속하느냐 하는 것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무장봉기에 대한 태도여하에 따라서 이를 정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무장봉기를 반대하며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자는 혁명대오로부터 무자비하게 쫓아내야 하며 혁명의 적으로, 반역자로 또는 비겁한자로 인정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사태발전의 힘과 투쟁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표식에 따라 적과 벗을 분간케 할 날이 가까이 오고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극적정서를 설교하거나 군대가 《넘어올》 때를 단순히 《기다릴것》을 설교하여서는 안된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손에 무기를 들고 대담한 공세와 공격을 취하여야 하는 동시에 장관들을 섬멸하여야 하며 동요하는 군대들을 쟁취하기 위한 가장 과감한 투쟁을 하여야 한다는 경종을

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모스크바사변이 우리에게 준 세번째 위대한 교훈은 봉기를 위한 전술과 역량조직에 관한것이다. 전술은 군사기술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 진리를 엥겔스는 맑스주의자들에게 상세히 해석하여주었었다²⁸⁵. 현재의 군사기술은 19세기 50년대의 그런것이 아니다. 많은 사람으로써 포격에 대항하며 권총으로써 시가보투를 지킨다는것은 우둔한 일일것이다. 그리하여 카우쯔키가 모스크바사변 이후에는 엥겔스의 결론²⁸⁶을 재검토할 때가 왔다. 모스크바는 《새로운 시가보투전술》을 내놓았다고 쓴것은 정당했던것이다. 이 전술은 유격전술이었다. 이러한 전술이 요구하는 조직은 10인조, 3인조 지어는 2인조로 되는 민활한 극히 자그마한 부대들이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5인조나 3인조라는 말을 듣고 킁킁 코웃음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가끔 만나게 된다. 그러나 코웃음치는것은 현대군사기술의 조건하에서 진행되는 시가전이 내놓은 전술과 조직에 대한 새로운 문제를 무시하려는 값싼 방법에 지나지 않는다. 제씨들, 당신들은 모스크바봉기에 대하여 쓴것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러면 당신들은 《5인조》와 《새로운 시가보투전술》 문제와의 사이에 어떠한 련관성이 있는가를 알게 될것이다.

모스크바는 이러한 새 전술을 내놓기는 했으나 더 발전시키지 못했으며 얼마쯤이라도 광범하게 또 진실로 균중적인 규모로 더 전개시키지 못하였다. 전투대원은 너무 적었으며 노동자대중은 대담한 공격을 하라는 구호를 받지 못하였고 또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였으며 유격대의 성격은 너무나 천편일률적이었으며 그들의 무기와 활동방법은 아직 불충분했으며 그들의 대중지휘능력은 거의 발휘되지 못하였다. 우리는 현재 모스크바의 경험에서 배우며 이 경험을 대중가운데 보급시키며 이 경험을 앞으로 보다 더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대중자체

의 창발력을 자아내면서 이 모든 결함을 만회하지 않으면 안되며 또 꼭 만회할것이다. 그리하여 12월사변이후 거의 끊임없이 로씨야각지에서 일어나고있는 그런 유격전쟁이나 그런 대중적테로는 의심할바없이 대중이 봉기시에 올바른 전술을 배우도록 도와줄것이다. 사회민주당은 이 대중적테로를 시인하고 자기 전술로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되 이 테로를 조직하여 통제하며 그것을 로동운동과 일반혁명투쟁의 리익과 조건에 복종시키면서 이 유격전쟁에 손상을 주는 《무퇴한적》행위를 무자비하게 배제하고 단절해버려야 할것은 물론이다. 이 무퇴한적행위는 모스크바사람들에 의하여 봉기시기에 그리고 라트비아사람들에 의하여 이른바 라트비아공화국의 날²⁸⁷에 아주 훌륭히 또 아주 무자비하게 제재를 당하였던것이다.

최근에 군사기술은 또 새로운 진보를 가져왔다. 일로전쟁에서 수류탄이 나타났다. 병기공장은 자동총을 시장에 내놓았다. 이 두가지 무기는 어느것이나 다 벌써 로씨야혁명에 성과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나 그 사용범위는 아직도 매우 협착하다. 우리는 날로 완비되고있는 기술을 리용하여 로동자부대에 대량적으로 작탄을 만들도록 가르쳐주며 그들과 우리 전투대에 폭발물과 도화선과 자동총을 저장하여두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여야 한다. 로동자대중이 도시봉기에 참가하는 조건하에서, 적들에 대하여 대규모적인 공세를 취하는 조건하에서, 국회해산이후 그리고 스웨아보르그와 크론슈마트사변²⁸⁸이후에 더욱더 중요하고있는 군대를 생취하기 위한 건걸하고 솟씨있는 투쟁이 진행되고있는 조건하에서, 공동투쟁에의 농촌의 참가가 보장되는 조건하에서 다음에 오는 전로씨야적무장봉기의 승리는 기필코 우리의것일것이다!

로씨야혁명의 위대한 나날의 교훈을 섭취하여 우리의 사업을 더 광범히 전개하며 우리의 임무를 더 대담하게 내세우

자! 우리 사업의 기초는 현시기에 있어서의 계급들의 이해관계와 전인민적발전의 요구를 정확히 타산하는데 있다. 우리는 짜리정권의 타도와 혁명정부에 의한 헌법제정회의의 소집이라는 구호의 주위에 무산계급, 농민, 군대의 더욱더 많은 부분을 집결시키고있으며 또 앞으로도 집결시킬것이다. 대중의 각성정도를 높이는것은 언제나 마찬가지로 현재도 역시 우리의 사업전체의 기초로 되고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 되고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반적이며 경상적이며 기본적인 임무의 외에도 로씨야의 목전 국세는 또 특수하고 독특한 임무를 제기하고있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현학자나 속물로 되지 말아야 하며 또 어느때나 어떠한 조건에서나 우리에게 번차 않는 책임이 있다는 그 허위적인 구실을 가지고 현시기의 이 특수한 임무, 현 투쟁형태의 이 독특한 임무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대중적인 투쟁이 곧 닥쳐오리라는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그것은 무장봉기일것이다. 이 무장봉기는 가급적으로 동시에 일어나야 할것이다. 대중은 그들이 무장적류혈적사활적투쟁으로 나아간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대중들속에서 죽음을 각오하는 정신이 발양되게 하여야 하며 이로써 승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적에 대한 공격은 가장 과감한것이여야 한다. 대중의 구호는 방어가 아니라 공격이여야 하며 그들의 임무는 적을 무자비하게 소멸하는것이다. 투쟁의 조직은 기동적이며 평활하여야 한다. 군대내의 동요분자들을 적극적인 투쟁에 인입시켜야 한다. 각성된 무산계급의 정당은 이 위대한 투쟁에서 자기의 직책을 리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1906년 8월 29일 《무산자》지 제2호에 게재

《무산자》지 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11권, 151~159페이지

유 격 전 쟁

유격활동에 관한 문제는 우리 당과 노동자대중의 큰 관심을 자아낸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에 대하여 여러번 부대적으로 언급한바 있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약속한바와 같이 우리의 견해를 가일층 완전히 서술해보려 한다.

1

처음부터 시작하자. 맑스주의자는 누구나 할것없이 투쟁형태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본적인요구를 제출하여야 할것인가? 첫째로, 맑스주의가 사회주의의 모든 원시적형태와 다른 점은 그가 운동을 어떤 일정한 하나의 투쟁형태에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점이다. 맑스주의는 극히 다양한 투쟁형태들을 인정하며 더우기 이 형태들을 《고안》하는것이 아니라 다만 운동과정에서 저절로 발생하는 혁명적계급의 투쟁형태를 종합하며 조직하며 그것에 의식성을 부여할 따름이다. 온갖 추상적 공식과 온갖 교조적방법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맑스주의는 진행중에 있는 대중의 투쟁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할것을 요구한다. 왜냐 하면 대중의 투쟁은 운동의 발전, 대중의 각성의 제고, 정치적 및 경제적 위기의 침체화와 함께 더욱 새롭고 더욱 많은 방어 및 공격의 방법을 낳고있기때문이다. 그렇기때문에 맑스주의는 어떠한 투쟁형태도 절대로 거부하지는 않는다. 맑스주의는 결코 일정한 시기에만 가능한 투쟁형태에 머물지 않으며 일정한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라 그 시기의 활

동가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투쟁형태들이 나라날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이 점에 있어서 맑스주의는 대중의 실천에서—이렇게 표현할수 있다면—배우며 절대로 서재에만 불박혀 있는 《분류학자》들이 고안해낸 투쟁형태들을 대중에게 가르쳐야 하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케친대 카우츠키는 사회혁명의 형태를 고찰하면서 말하기를, 미래의 위기는 우리가 지금 예견할수 없는 새로운 투쟁형태를 우리에게 가져오리라는것을 우리는 알고있다고 하였다.

둘째로, 맑스주의는 투쟁형태에 관한 문제를 반드시 **역사적으로** 고찰할것을 요구한다. 이 문제를 구체적역사환경을 떠나서 제기하는것은 변증법적유물론의 초보도 모른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제발전의 각이한 시기에는 정치, 민족문화, 풍속습관 및 기타 조건들에 따라 각이한 투쟁형태가 전면에 제기되어 주요한 투쟁형태로 되며 그때문에 제2차적부차적투쟁형태들도 또한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것이다. 일정한 발전단계에 있는 어떤 운동의 구체적환경을 상세히 고찰하지 않고 일정한 투쟁방법문제에 대하여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대답을 하려고 하는것은 맑스주의의 립각점을 완전히 포기하는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준수하여야 할 두가지 기본적인 리론적원칙은 이러하다. 서구라파에서의 맑스주의의 력사는 상술한 원리를 확증하는 실례를 무수히 우리에게 제공하고있다. 구라파사회민주당은 현시기에 있어서는 의회제와 적맹운동을 주요투쟁형태로 인정하고있다. 그러나 로씨야의 령현민주주의자⁸⁴들이나 무제파¹⁴⁹와 같은 자유주의적자산자들과는 반대로 그들은 과거에는 봉기를 승인하였으며 장래에도 국세가 변화되는 때에는 봉기를 승인하려고 완전히 준비하고있다. 사회민주당은 70년대의 총과업을 사회문제해결의 만병통치약으로서나 또는 비정

치적인 방법으로 자산계급을 일거에 타도하는 수단으로서 보는것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은 대중적정치파업이 (특히 1905년의 로씨야의 경험이 있은후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필요한 투쟁수단의 하나라는것을 완전히 승인하고있다. 사회민주당은 19세기 40년대의 시가보루투쟁을 인정하였으며 그후에는 19세기말엽의 일정한 정황에 근거하여 그것을 부인하였다. 모스크바의 경험이 있은후에는 또 이 시가보루투쟁을 부인하는 견해를 시정하며 이 투쟁의 합리성을 인정할 충분한 용의를 표명하였다. 왜냐 하면 카우쯔키의 말에 의하면 모스크바의 경험이 새로운 시가보루투쟁을 제기하였기때문이다.

2

맑스주의의 일반적원리를 확정하였으니 이제는 로씨야혁명문제를 고찰하여보자. 먼저 로씨야혁명이 제기한 각종 투쟁형태의 역사적발전을 상기하여보자. 처음에는 노동자들의 경제적파업(1896~1900년), 그다음에는 노동자들과 학생들의 정치적시위운동(1901~1902년), 농민폭동(1902년), 시위운동과 여러가지 형태로 결합된 군중적정치파업의 개시(1902년의 로스토프파업, 1903년 여름의 파업, 1905년 1월9일사변226), 일부 지방들에서는 시가보루투쟁이 있었던 전 로씨야적 정치파업(1905년 10월), 대중적시가보루투쟁과 무장봉기(1905년 12월), 평화적의회투쟁(1906년 4~6월), 국부적인 군대봉기(1905년 6월~1906년 7월), 국부적인 농민봉기(1905년 가을~1906년 가을)가 있었다.

일반적투쟁형태의 전지에서 본 1906년 가을까지의 사태의 발전은 이러하다. 이에 《대답》하는 전제제도측의 투쟁형태는 1903년 봄의 끼쉬네브사건으로부터 시작하여 1906년 가을의 쉘레즈사건에 이르기까지의 흑백단적유린이다. 이 시기 전

체를 통하여 유대인, 학생, 혁명이 및 각성한 노동자에 대한 흑백단적 유린과 학살은 더욱 증대되고 완성되어 매수된 악당들의 폭행이나 흑백단군대의 폭력을 결합시키며 농촌과 도시에 대포를 들이대며 토벌대, 토벌렬차 등과 합류하는 등에게까지 이르렀다.

이러한것이 정황의 기본배경이다. 우리가 이 논문에서 고찰하며 평가하려고 하는 현상은—물론 국부적이고 제2차적이고 부대적인 현상으로서—바로 이 배경에서 뚜렷하게 보여진다. 그러면 이 현상은 어떠한것인가? 그 표현형태는 어떠한가? 그 원인은? 발생한 시기와 보급된 정도는? 혁명의 전반적 행정에서의 그 의의는? 사회민주당이 조직하고 평도하는 노동계급의 투쟁과의 그 관계는? 이러한것들이 우리가 이 정형의 일반적배경을 묘사한후에 분석하여야 할 문제들이다.

우리가 관심하는 현상은 **무장투쟁**이다. 그것은 개별적인 물과 크지 않은 집단에 의해서 수행된다. 그들중 일부는 혁명적조직에 소속되어있고 일부는(로씨야의 어떤 지방에서는 그 대부분이) 아무런 혁명적조직에도 소속되어있지 않다. 무장투쟁은 서로 **엄격히** 구별하여야 할 **상이한**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있다. 즉 이 투쟁은 첫째로, 개별적인물들이나 또는 군대, 경찰의 상관이나 그 부하들에 대한 암살을 목적으로 하고있으며 둘째로, 정부나 개인에게서 금전을 몰수하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몰수한 금전은 일부분은 당의 수요에 공급되고 일부분은 전적으로 무기구입과 봉기준비에 사용되고 또 일부분은 이러한 투쟁을 진행하는 인물들의 생활비용으로 사용된다. 수탈한 대량의 돈(잡카즈에서는 20여만루블, 모스크바에서는 87만 5,000루블)은 우선 혁명정당에 바쳐졌으며 수탈한 소량의 돈은 우선 그리고 때로는 몽땅 《수탈자》의 생활비로 사용되고있다. 이 투쟁형태는 의심할것없이 1906년에 와서야 비로

소 즉 12월봉기이후에야 비로소 광범히 발전되고 유행되었다. 무장투쟁을 일으킬 정도로 첨예해진 정치적위기와 특히 농촌 및 도시에서의 빈궁, 기아, 실업의 격화는 이러한 투쟁을 일으킨 중요한 원인의 하나로 된다. 주민중의 류탕민, 롬펜과 무정부주의자집단은 이 투쟁형태를 주요한, 심지어 **유일한** 사회적투쟁형태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답하는》 전제정부측의 투쟁형태로서는 계엄상태, 새로운 부대의 동원, 흑백단적 유턴(썬들레쯔사건), 전시군사재판 등을 들어야 할것이다.

3

여기서 고찰하고있는 투쟁에 대한 일반적평가는 다음과 같은것에 귀결된다. 즉 그것은 무정부주의이며 블랑끼주의의65이며 낡은 태로이며 로동자들의 기분을 저락시키고 그들을 광범한 주민층으로부터 리탈시키며 운동을 와해시키며 혁명에 유해하며 대중으로부터 고립된 그러한 개인적행동인것이다. 이러한 평가를 확증하는 실례는 매일 신문에 보도되는 사건에서 쉽게 찾아볼수 있다.

그런데 이 실례는 과연 확실한것인가? 이것을 검열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투쟁형태가 **가장** 발달하고있는 지방—라트위야변강지방을 들어보기로 하자. 거기에서는 《신시대》17지(9월 9일과 12일부)가 라트위야사회민주당의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평을 말하고있다. 라트위야사회민주로동당(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의 일부분)은 자기의 신문을 보통 호마다 3만부씩 발행하고있다. 공보란에는 모든 성실한 사람이 숙청할 책임을 지고있는 간첩들의 명단이 게재되어있다. 경찰국을 협력하는자들은 죄다 《혁명의 적》으로 선언되어 사형에 처할뿐만 아니라 그 재산이 몰수된다. 주민들은 날인한 령수증을 내놓는 경우에만 사회민주당을 위한 돈을 납부한다. 당의 최근

의 결산에 의하면 4만 8,000루블의 연간수입중에서 리바브지부가 수탈방법으로 획득하여 무기를 구입하는데 쓴것이 5,600루블이나 된다고 기재되어있다. 《신시대》지는 분명 이 《혁명적법제》, 이 《무서운 정부》에 대하여 통분해하고있다.

그 누구도 라트위야사회민주당의 이러한 활동을 무정부주의, 블랑끼주의, 테로주의라고 감히 부르지 못한다. 그것은 무엇때문인가? 여기에서는 12월에 있었다가 지금 또 준비되고 있는 봉기와 새로운 투쟁형태와의 련결이 명백한 까닭이다. 전 로씨야에서는 이 련결이 아직 그렇게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지 않으나 이러한 련결은 확실히 존재하고있는것이다. 《유격》투쟁이 보급된것은 바로 12월이후의 일인데 그것이 비단 경제적위기의 첨예화뿐만아니라 정치적위기의 첨예화화도 련결되어있다는것은 의심할수 없는 사실이다. 로씨야의 낡은 테로주의는 지식인밀모가들이 한것이였다. 오늘날의 유격투쟁은 대체로 로동자전투원에 의하여 또는 순전히 실업한 로동자들에 의하여 진행되고있다. 진부한 형식주의에 쫓리고있는 사람들에게는 블랑끼주의나 무정부주의라는 명사가 머리에 떠오르기 쉽지만 봉기의 환경하에서는 라트위야변강지방에서 아주 명백하게 보는바와 같이 이러한 진부한 상표는 아무 소용도 없다는것이 확연하다.

라트위야의 실패에서 명백하게 볼수 있는것은 우리 나라에서 것처럼 유행되고있는, 유격전쟁을 봉기의 환경과 련결시키지 않는 분석방법은 아주 옳지 않으며 비과학적이며 비력사적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을 넘두에 두어야 하며 큰 봉기와 큰 봉기 사이의 기간의 특점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또 그러한 환경하에서는 어떠한 투쟁형태가 불가피적으로 발생하게 되는가를 알아야 하며 련련민주주의자들이나 신시대지파들이 쓰기 좋아하는 언사 즉 무정부주의, 락탈, 류랑민행위

등의 문구를 함부로 사용함으로써 어물어물 지나가버려서는 안된다!

유격활동은 우리의 사업을 망쳐버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논의를 1905년 12월이후의 환경 즉 흑백단적유린 및 계엄상태의 시대와 대비하여보는것도 좋을것이다. 이러한 시대에는 무엇이 더 운동을 파괴하는가? 반항하지 않는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조직적유격투쟁인가? 중앙로씨야와 서부로씨야 변강일대 즉 뿔스까 및 라트위야 변강지방을 비교하여보자. 의심할것도 없이 유격투쟁은 서부변강에서 훨씬 더 널리 보급 되어있으며 고도로 발전되어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혁명운동이, 특히는 사회민주주의운동이 서부로씨야변강에서보다 중앙로씨야에서 더 파괴되었다는것도 또한 의심할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뿔스까나 라트위야에서 사회민주주의 운동이 덜 파괴된것은 유격전쟁의 덕택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런것은 아니다. 여기에서 결론을 내려야 할것은 다만 1906년의 로씨야의 사회민주주의로동운동을 파괴한 죄가 유격전쟁에 있지 않다는것뿐이다.

이 점을 논의함에 있어서는 종종 민족적조건외의 특수성이 구실로 되고있다. 그러나 이런 구실은 지금 유행되고있는 논거의 약점을 특히 명백하게 드러내고있을따름이다. 만일 문제가 민족적조건에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무정부주의나 불랑끼주의나 헤로주의—전 로씨야적 또는 심지어 전적으로 로씨야적인 죄과—에 있지 않고 어떤 다른 연고에 있다는것을 의미하게 된다. 제씨들, 이 어떤 다른 연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보라! 그러면 당신들은 민족적압박이나 민족적대항이 아무런 문제도 설명하여주지 않는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왜냐하면 민족적압박이나 민족적대항은 언제나 서부로씨야변강에 있었으나 유격투쟁은 다만 당면의 력사적시기에만 발생하였기때

문이다. 민족적압박이나 민족적대항은 있어도 유격투쟁이 없는곳이 많이 있으며 때로는 아무런 민족적압박도 없는곳에 유격투쟁이 전개될수도 있는것이다.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기만 하면 문제가 민족적압박에 있는것이 아니라 봉기의 조건에 있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유격투쟁은 군중운동이 이미 실지로 봉기에까지 이르렀을 때나 또는 국내전쟁에서 《대전투》와 《대전투》 사이에 다소간 긴 중간시기가 있게 될 때 불가피적으로 나타나는 투쟁형태인것이다.

운동이 파괴되는것은 유격활동때문인것이 아니라 당의 력량이 박약하여 이 활동을 **잠의할수** 없기때문이다. 바로 그런 까닭에 우리 로씨야사람들은 보통 한편으로는 유격진출을 저주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실지로 당을 파괴하고있는 그 비밀적이고 우연적이며 비조직적인 유격활동을 진행하고있는것이다. 어떤 력사적조건이 이 투쟁을 야기시키는가를 리해할수 없는만큼 우리는 또한 이 투쟁의 부정적인 면을 마비시킬수도 없는것이다.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투쟁은 의연히 진행되고있다. 이 투쟁은 여러가지의 중대한 경제적 및 정치적 원인에 의하여 야기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이 원인을 제기할수 없는만큼 이 투쟁을 제기할수도 없는것이다. 유격투쟁에 대한 우리들의 불만이란 기실은 봉기에 있어서의 우리 당의 취약성에 대한 불만인것이다.

조직을 파괴되게 하는 문제들에 관하여 우리가 말한 이상의 모든것은 사기를 저락시키는 문제에도 적용된다. 사기를 저락시키는것은 유격전쟁이 아니라 그 유격활동에 **조직성이 없고 절서가 없고 당성이 없는것이다.** 우리가 유격활동을 비난하거나 저주한다 해도 그것은 이 **의심할 여지없는** 사기의 저락으로부터 우리를 조금도 구출하지 못한다. 왜냐 하면 이러한 비난이나 저주는 심각한 경제적 및 정치적 원인에 의하

여 야기되는 현상을 제지시킬수는 절대로 없기때문이다. 우리가 비정상적이고 사기를 저락시키는 현상을 제지시킬수 없는 한 이것은 우리 당이 비정상적이고 사기를 저락시키는 투쟁수단을 취해도 좋다는 리유로 될수 없다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반박은 벌써 맑스주의적인것이 아니라 순전히 자유주의자산계급적인것일것이다. 왜냐 하면 맑스주의자는 국내전쟁을, 또는 국내전쟁의 한 형태로서의 유격전쟁을 **덮어놓고** 비정상적이고 사기를 저락시키는것이라고 인정할수는 결코 없기때문이다. 맑스주의자는 사회적평화가 아니라 계급투쟁을 주장한다. 날카로운 경제적 및 정치적 위기의 일정한 시기에는 계급투쟁은 직접적국내전쟁에까지 즉 인민의 두 부분 사이의 무장투쟁에까지 발전하는것이다. 이러한 시기에는 맑스주의자는 국내전쟁을 주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국내전쟁에 대한 온갖 도의적비난은 맑스주의의 견해에서는 전혀 용납될수 없는것이다.

국내전쟁시기에는 무산계급정당의 리상은 **전투적당**으로 되려는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론쟁할 여지없는 사실이다. 국내전쟁의 견지에서는 이런 또는 저런 국내전쟁형태가 이런 또는 저런 시기에 **부적당하다**는것을 증명할수 있으며 또 꼭 증명할것이라고 우리는 전적으로 가정할수 있다. 군사적**합법칙성의 견지에서** 국내전쟁의 각종 형태를 비판하는것을 우리는 완전히 승인하며 또 **이러한** 문제에서 결정권은 매개 지방의 사회민주당의 실천가들에게 속한다는것에 무조건 동의한다. 그러나 우리는 맑스주의의 원칙에 근거하여 무정부주의요, 블랑끼주의요, 페로주의요 하는 진부한 언사들으로써 국내전쟁의 조건의 분석을 회피하지 말것과 사회민주당이 유격전쟁일반에 참가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토론할 때 그 어떤 시기에 그 어떤 **뿔스까사회당조직이** 채용했던 무의미한 유격활동방식으

로써 사람을 위협하지 말것을 무조건적으로 주장한다.

유격전쟁이 운동을 파괴한다는 구실에 대하여는 비판적으로 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새로운 위협성과 새로운 희생을 조태하게 되는 **온갖** 새로운 투쟁형태는 불가피적으로 이 투쟁형태에 충분히 준비되어있지 않는 조직을 《파괴》하게 될것이다. 우리의 이전의 선전소조들은 선동사업을 한것으로 하여 파괴당한 일이 있었다. 그후 우리의 위원회들도 시위운동을 하였음으로 하여 파괴당한 일이 있었다. 어떠한 전쟁에 있어서도 모든 군사행동은 전투원들의 대오에 일정한 파괴를 가져온다. 그렇다고 해서 싸워서 안된다는 결론을 내려서는 결코 안된다. 여기서 내려야 할 결론은 싸우는것을 **배워야** 한다는것이다. 오직 이것뿐이다.

우리는 무정부주의자도 아니요 도적도 토비도 아니며 우리는 이들보다 고상한 사람이며 유격전쟁을 반대한다고 뽐내면서 오만하게 말하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을 볼 때 나는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말하고있는지를 아는가 하고 자문하게 된다. 지금 전국에서 흑백단적정부와 주민과의 무장충돌 또는 싸움이 벌어지고있다. 이러한 현상은 혁명발전의 현단계에서 는 절대로 피할수 없는 현상이다. 주민들은 자연발생적으로, 무조직적으로—따라서 또 흔히 비효과적인 **졸렬한** 형태로써— 이 현상에 무장충돌 또는 무장공격으로써 대항하고있다. 나는 우리 조직들이 능력이 약하고 준비되지 못한 까닭으로 우리가 어떤 지방에서는 또 어떤 시기에는 **이** 자연발생적투쟁에 대항당의 정도를 포기할수 있다는것을 알고있다. 나는 이 문제가 당지의 실천가들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것과 능력이 약하고 준비되지 못한 조직들을 개조하는것이 용이한 일이 아니라는것을 알고있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의 어떤 리론가나 정론가들이 이렇게 준비가 없는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자만자족과 나르키쑰스190식 자기도취와 황홀감에 싸이여

소년시절에 암송하였던 무정부주의요, 블랑끼주의요, 테로주의요 하는 인사들을 반복하는것을 볼 때 나는 세계에서 가장 혁명적인 학설을 천대하는데 대하여 격분을 금할수 없다.

유격전쟁은 각성한 무산계급을 타락한 주정뱅이부랑자나 다름없게 만든다고들 말하고있다. 이것은 옳은 말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내려야 할 결론은 다만 무산계급정당은 언제나 유격전쟁을 유일한 또는 심지어 주요한 투쟁수단으로 인정할수 없다는것, 이러한 수단은 다른 투쟁수단에 종속되어있어야 하며 주요투쟁수단에 상응하여야 하며 사회주의의 교육적 및 조직적 영향에 의하여 고상한 수단으로 되어야 한다는것뿐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조건**이 없다면 자산계급사회에 있어서의 **모든**, 단연코 모든 투쟁수단은 무산계급을 그들의 우에 또는 아래에 있는 각종 비무산계급층이나 다름없게 만들것이며 또 사태의 자연발생적발전행정에 맡겨짐으로써 방탕해지며 부화타락하게 될것이다. 사태의 자연발생적발전행정에 맡겨진 과업은 흔히 《동맹》으로—소비자를 **반대하여** 형성되는 로동자와 공장주와의 타협으로 전락하게 된다. 의회는 자산계급정객들이 《인민의 자유》,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반교권주의, 사회주의 및 기타의 각종 류행상품을 가지고 소매 또는 도매의 장사를 하고있는 유곽으로 전락하게 된다. 신문은 어떤 사람의 칭이나 다 들어주는 밀매음소개자로 전락하며 군중을 타락시키는 또는 속된 무리의 지급한 본능에 야비하게 아첨하는 등등의 도구도 전락하게 된다. 사회민주당은 만능적 투쟁수단, 즉 무산계급을 그들의 아래우에 가까이 있는 계층과 만리장성으로 격리시킬수 있는 그러한 투쟁수단이란 전혀 알지 못한다. 사회민주당은 각이한 시기에 각이한 수단을 적용하되 **언제나** 이런 수단의 적용을 위하여 **엄격히** 확정된 사상적 및 조직적 조건을 제공한다①.

① 어떤 사람들은, 사회민주당내의 불쉐위크들이 종종 유격활동에 대하여 경솔한 편견적태도를 취한다고 비난하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유격활동

4

로씨야혁명에 있어서의 투쟁형태는 구라파의 자산계급혁명에 비하여 대단히 다양하다. 카우프키는 이것을 어느 정도 예견하여 미래의 혁명(그는 로씨야는 예외로 될수 있다고 첨부하였다.)은 인민과 정부 사이의 투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두 부분 사람들사이의 투쟁일것이라고 1902년에 말하였다. 우리는 로씨야에서 이 후자의 투쟁이 의심할바없이 서방의 자산계급혁명에서보다 더 광범히 발전하고있는것을 보고있다. 우리 혁명의 적은 인민들속에서는 소수이기는 하나 그러나 그들은 투쟁이 참여화됨에 따라 더욱더 조직되고있으며 자산계급의 반동계층의 지지를 받고있다. 그렇기때문에 이러한 시기, 즉 전 인민적정치파업의 시기에는 봉기는 매우 짧은 기간과 매우 협소한 지방에 국한된 단독적행위들의 낡은 형태를 취할수 없다는것은 아주 당연하며 또 불가피한 일이다. 봉기가 전국에 파급되는 장기적인 국내전쟁, 즉 두 부분 사람들사이의 무장투쟁의 일층 높고 복잡한 형태를 취하게 되는것은 아주 당연하며 또 불가피한 일이다. 이러한 전쟁은 비교적 긴 중간기간을 사이두고 진행되는 몇차례의 대전투와 이 중간기간에 있어서

에 관한 결의초안에서(《당내소식》²⁸⁹ 제2호와 대회에 관한 레닌의 보고²⁹⁰를 보라.) 유격활동을 옹호하는 일부 볼셰위크들이 유격활동을 승인하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 즉 사유재산의 《수탈》을 전혀 용인하지 않을것, 관유재산의 《수탈》은 제창할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당의 통제를 받으며 봉기의 수요에 사용되는 조건하에서는 용인될것이라는 조건을 제출하였다는것을 지적하는것은 쓸데없는 일이 아닐것이다. 페로직유격활동은 정부의 강압자들과 적극적흑백단원을 상대하여서는 제창할수 있다. 그러나 그것도 (1) 광범한 대중의 기분을 돌보며 (2) 그 지방의 노동운동의 조건에 주의하며 (3) 무산계급의 역량을 헛켜이 망비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하에서만 제창할수 있다. 합동대회²⁹¹에서 채택된 결정서가 이 초안과 실제적으로 다른 점은 오로지 관유재산의 《수탈》을 용인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의 많은 소중돌이라고밖에는 인정할수가 없다. 과연 그렇다면—의심할 여지없이 그렇다—사회민주당은 반드시 이러한 대전투에서나 될수 있으면 이러한 소중돌에서도 최대한도로 군중을 령도할수 있는 그러한 조직의 창설을 자기의 임무로 내세워야 할것이다. 계급투쟁이 국내전쟁을 하게까지 첨예화된 시기에 있어서의 사회민주당은 비단 **이러한 국내전쟁에** 참가하는것뿐만아니라 **거기에서** 령도적역할을 노는것을 자기의 임무로 내세워야 할것이다. 사회민주당은 자기의 조직들을 그것들이 적의 력량에 타격을 줄 기회를 하나도 놓치지 않는 **교전자**로서의 역할을 실지로 일으킬수 있도록 배양하며 훈련시켜야 할것이다.

이것이 곤란한 임무라는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이 임무는 일거에 해결될수는 없다. 국내전쟁의 행정에서 전체 인민이 투쟁을 통하여 재차 교육을 받고 배우는것처럼 우리의 조직도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 임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실제경험에 기초하여 개조되어야 할것이다.

우리는 실천가들에게 어떤 고안된 투쟁형태를 강요하거나 또는 로씨야국내전쟁의 전반적행정에서의 유격전쟁의 어떤 형태의 역할에 관한 문제를 서재에 앉아서 해결하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이런 또는 저런 유격활동의 구체적평가에 대한 문제를 사회민주당의 **방침문제**로는 결코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실생활에 의하여 제기되는 새로운 투쟁형태에 될수록 **옳은 리론적평가**를 내리도록 방조하는 것—각성한 로동자들이 새로운 곤란한 문제를 옳게 제기하고 그것을 옳게 해결하려는것을 방해하는 판박이 공식 및 편견을 무자비하게 반대하는것을 자기의 임무로 인정한다.

1906년 9월 30일 《무산자》
지 제5호에 게재

《무산자》지의 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11
권, 196~206페이지

엘. 쿠겔만에게 보내는 카. 맑스의 서한집 로문판에 대한 서문

이제 우리는 독일사회민주당의 주간지 《신시대》¹⁷³에 발표된 쿠겔만에게 보내는 맑스의 서한전체를 소책자로 출판하는데 그 목적은 로씨야독자들에게 맑스와 맑스주의를 더 상세히 소개하려는 데 있다. 맑스는 서한에서 자기의 사사로운 일을 많이 말하였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모든것은 전기를 쓰는 사람에게는 극히 귀중한 자료로 된다. 그러나 광범한 독자들에게, 특히 로씨야로동계급에게 보다 더 중요한것은 서한에서 이론적, 정치적 자료를 포함하고있는 그 개소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목전의 혁명시대에 있어서 특히 교훈적인것은 로동운동문제와 세계정치문제에 대하여 맑스가 직접 응답하고 있다는것을 증시하는 그러한 자료를 세심히 연구하는것이다. 《신시대》잡지 편집부가 《위대한 변혁의 환경속에서 자기의 사상과 의지를 형성한 사람들의 면모를 앎으로써 우리는 고상해진다.》고 말한것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그것을 아는것이 1907년 로씨야사회주의자들에게는 갑절로 필요하다. 왜냐 하면 그것은 로씨야가 겪고있는 온갖 혁명들에서 사회주의자들앞에 나서는 직접적인 임무에 대하여 가장 귀중한 많은 교시를 주고있기때문이다. 로씨야는 지금 바로 《위대한 변혁》의 시대에 처해있다. 비교적 소란하던 19세기 60년대에 맑스가 취한 정책은 매우 많은 경우에 현재의 로씨야혁명에서의 사회민주

의자들의 정책의 직접적인 모범으로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맑스의 서한가운데서 이론적으로 보아 특히 중요한 개소들을 다만 간단하게 지적하고 반면에 무산계급의 대표자로서의 그의 혁명적정책에 대하여서는 보다 상세히 언급하려 한다.

맑스주의를 보다 완전히 또 보다 심오하게 인식하는 견지로 보아 각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것은 그의 1868년 7월 11일부 서한(42페이지 및 그이하)²⁹²이다. 맑스는 여기서 비속한 경제학자들에 대한 론쟁적지적의 형식을 통하여 소위 《로동》가치설에 대한 자기의 견해를 아주 뚜렷하게 서술하였다. 소양이 부족한 《자본론》독자들속에서 흔히 생기며 따라서 비속한 《교수식》자산계급《과학》인물들이 특히 열심히 리용하고있는, 맑스의 가치학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맑스는 여기서 간단명료하고 극히 투철하게 분석하였다. 맑스는 여기서 자기가 가치법칙을 어떻게 설명하였으며 또 어떻게 설명하여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가장 보편적인 반대의견을 페로 들어 자기자신의 방법을 가르치고있다. 그는 가치학설과 같은 그러한 순(이렇게 생각될지도 모른다.) 이론적이며 추상적인 문제와 《모호한 관념을 영구화》하려는 《통치계급의 리익》간의 련관성을 천명하고있다. 맑스의 저작을 연구하고 《자본론》을 읽기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본론》 첫머리의 가장 어려운 장들을 연구할 때 상술한 서한을 반복적으로 읽기를 바란다.

서한중에서 이론적으로 특히 중요한 다른 개소는 여러 문필가들에 대한 맑스의 평가이다. 맑스의 이러한 론평은 아주 생동하게 서술되고 열정에 충만되어있어 모든 중대한 사상적 조류들과 그것의 분석에 대한 대단한 흥미를 자아내기때문에 그것을 읽으면 독자들은 마치도 이 천재적인 사상가의 말소리를 직접 듣는감을 느끼게 된다. 디즈겐에 대한 부대적인 론

평의에 썩루동파에 대한 론평(17페이지를 보라.)도 독자들의 특별한 주목을 끌게 된다. 사회운동의 양양기에 《무산계급》속에 뛰어들어왔으나 로동계급의 관점을 체득할수도 없고 무산계급 조직의 《행렬속에서》 완강하게, 성실하게 사업할수도 없는 자산계급의 《우수한》 청년지식인들이 아주 간단한 필치로써 놀랄만치 설명하게 묘사되어있다²⁹³.

튀링에 대한 론평(35페이지)²⁹⁴도 있는데 그것은 9년후에 엥겔스가(맑스와 함께) 쓴 유명한 저작 《반튀링론》의 내용을 예상하고있는것 같다. 이 책은 제제르바움의 로문역본이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투락이 많을뿐만아니라 오역이 적지 않은 졸렬한 번역이다. 거기에는 또한 튀닝에 관한 론평이 있는데 그것은 리카도의 지대론에도 언급하고있다. 맑스는 벌써 1868년 당시에 《리카도의 오유》를 견결히 규탄하였고 1894년에 출판된 《자본론》 제3권에서는 이 오유를 철저히 문박하였다. 그러나 오늘날까지도 우리 나라의 초자산계급적인, 지어 《흑백단적》인 불가코브씨로부터 《거의 정통파》인 마슬로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정주의자들은 그 오유를 여전히 반복하고있다.

뷔히네르의 강연을 속류유물론이라고 평가하고 랑게(《교수식》자산계급철학은 통베로 랑게를 인증한다!)에게서 베껴온 《피상적공담》(48페이지)²⁹⁵이라고 평하고있는, 뷔히네르에 관한 론평도 역시 흥미있는것이다.

맑스의 혁명적정책으로 넘어가자. 우리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속에서는 특수한 투쟁형태와 무산계급의 특수한 임무를 가지고있는 혁명적시기는 비정상적이고 반대로 《헌법》과 《극단적반대파》는 정상적이라고 인정하는, 맑스주의에 대한 일종 소시민적관념이 놀랄만치 유행되고있다. 로씨야에서와 같은 그런 심각한 혁명적위기는 현재 세계의 어느 한 나라에도 존

재하지 않으며 또 혁명에 대하여 그렇게도 회의적이며 비속적인 태도를 취하는 《맑스주의자들》(맑스주의를 천하게 하며 비속화하는자들)은 어느 한 나라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혁명의 내용이 자산계급적이라는 이 사실에 의하여 혁명의 동력은 자산계급이고 이 혁명에서의 무산계급의 임무는 부차적이고 비독자적인 것이며 혁명에 대한 무산계급의 행동은 불가능하다는 피상적인 결론을 내리고있다!

맑스는 쿠겔만에게 보내는 서한들에서 맑스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피상적인 리해를 얼마나 힘있게 논박하고있는가! 1866년 4월 6일부 서한을 보자. 맑스는 이때 이미 자기의 주요저작을 탈고하였었다. 이 서한을 쓰기 14년전에 이미 맑스는 1848년의 독일혁명에 대하여 최종적인 평가를 내렸다²⁹⁶. 맑스는 사회주의혁명이 곧 닥쳐오리라고 1848년에 생각하던 자기의 사회주의환상²⁹⁷을 1850년에 와서는 스스로 부정하였다. 1866년에 맑스는 새로운 정치적위기가 온양되는것을 보자 곧 다음과 같이 썼다.

《우리의 속물들[독일의 자유주의적자산자를 두고 말한다.]은 합스부르크왕조와 호엔촐레른왕조를 전복하는 혁명이 없는 결국 30년전쟁을 또다시 일으키게 되리라는것을 마침내 알게 될것이다...》(13~14페이지)²⁹⁸

여기에는 곧 닥쳐올 혁명(이 혁명은 맑스가 기대하던것처럼 밑으로부터 발생한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발생하였다.)이 자산계급과 자본주의를 청산하리라는 환상은 흔적도 없다. 그 혁명은 다만 프로씨아와 오지리의 군주제도를 청산하리라는것이 가장 뚜렷하게 지적되고있다. 그는 이 자산계급혁명에 대하여 그 얼마나 큰 신념을 가지고있는가! 사회주의운동을 전진시킴에 있어서 자산계급혁명이 가지는 위대한 의의를 리해하는 이 무산계급투사는 그 얼마나 강렬한 혁명적열정에 끓어

넘치고있는가!

3년이 지나 나뿔레옹제국이 붕괴될 전야에 맑스는 당시 프랑스에는 《지극히 흥미있는》 사회적운동이 발생하고있다고 지적하면서 **환희에 넘쳐** 《파리사람들은 박두한 새 혁명투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근에 있는 자기의 혁명력사의 경험을 세심히 연구하기 시작하고있다.》고 말하고있다. 그 시기의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명확해진 계급투쟁을 서술하고나서 맑스는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56페이지) 《이렇게 역사의 마술사의 솔전체가 끊고있는것이다. 우리 나라[독일]에서도 언제인가 한번은 이렇게 될것이다!》²⁹⁹

바로 이것이 로씨야의 지식인맑스주의자들이 맑스에게서 배워야 할 점이다. 그것은 그들이 회의론때문에 무기력해지고 현학때문에 우둔해지고 참회하기 일수고 혁명에서 끈 실증을 내고 혁명을 매장할것과 혁명을 헌법조문으로 대체할것을 명절날을 기다리듯이 갈망하고있기때문이다. 그들은 무산자의 이 리론가—수령에게서 혁명에 대한 신념과 로동계급으로 하여금 직접적인 혁명임무를 끝까지 견지하게끔 불러일으킬수 있는 수완과 그리고 혁명이 일시적으로 실패했다 해서 타락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을 배워야 할것이다.

맑스주의의 현학자들은 이 모든것은 틀리적인 공담이며 랑만주의이며 현실주의의 결여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다, 제씨들, 이것은 혁명적리론과 혁명적정책의 결합이다. 이 량자의 결합이 없이는 맑스주의는 브렌타노주의¹⁸⁷, 스트루웨주의¹⁵⁷, 줌바르트주의³⁰⁰로 변하게 된다. 맑스의 학설은 계급투쟁의 리론과 그 실천을 하나의 불가분적전일체로 련결시켰다. 그러므로 객관정황을 맹정하게 긍정하는 리론을 현상태에 대한 변호로 외곡하고 그리하여 나중에는 혁명의 매차의 일시적 퇴조에 재빨리 굴종하며 《혁명적환상》을 재빨리 접어던지고

《현실주의적》인 작은 일에 매달리는자는 맑스주의자가 아니다.

일견 가장 평온하여보이는, 맑스의 형용에 의하면 《목가적인》, 그리고 《극히 침울한》(《신시대》잡지 편집자들의 말에 의하면) 시기에도 맑스는 혁명의 박두를 감촉할수 있었고 무산계급으로 하여금 그들의 선진적인 혁명임무를 **자각하게끔**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맑스를 비속화하는 우리 로씨야의 지식인들은 가장 혁명적인 시기에 무산계급에게 소극적인 정책을 취하며 《시대적조류에 따라》 공순히 추종하는 정책과 그리고 유행하는 자유주의적정당의 가장 건설치 못한 분자들을 암암리에 지지하는 정책을 취하도록 가르치고있는것이다!

품문에 대한 맑스의 평가는 쿠겔만에게 보내는 그의 서한의 정수이다. 이 평가를 로씨야사회민주당우익들의 수단과 대비하여보는것은 특히 유익한것이다. 1905년 12월사변후 《무기를 잡을것이 아니였다.》고 비겁하게 웨친 플레하노브는 어리석게도 자기자신을 맑스와 비교하였다. 그 뜻인즉 맑스 역시 1870년에 혁명을 제지하였다는것이다.

그렇다, 맑스 역시 혁명을 제지하였었다. 그러나 플레하노브자신이 취한 그와 맑스와의 이와 같은 비교속에 어떠한 심연이 가로놓였는가를 보라.

1905년 11월에, 즉 제1차로씨야혁명의 물결이 절정에 이르기 한달전에 플레하노브는 무산계급에게 단호한 경고를 주기는커녕 오히려 **무기의 사용을 배우며 또 무장하여야 할** 필요성을 직접 말하였던것이다. 그런데 한달이 지나 투쟁이 이미 폭발되었을 때 플레하노브는 그 투쟁의 의의, 사변의 전 행정에서의 이 투쟁의 역할, 종전의 투쟁형태와 이 투쟁간의 전환성에 대하여 아무런 분석도 없이 즉시로 참회하는 지식인의 추태를 부리면서 《무기를 잡을것이 아니였다.》고 말하였다.

맑스는 1870년 9월에, 즉 **꿈꾼이 성립되기 반년전에** 유명한 국제당선인³⁰¹에서 직접 프랑스로동자들에게 봉기는 **무모한 행위**로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1792년때와 같은 운동이 재차 진행될수 있으리라는 민족주의적환상을 **사전에** 폭로하였다. 그는 **사후에가 아니라** **여러달전에** 《무기를 잡을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런데 9월에 맑스 자신이 **가망성이 없다**고 설명했던 이 사건이 1871년 3월에 실현되기 시작하였을 때에 그는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가? 맑스는 꿈꾼을 명도했던 자기의 적수들인 브루동파와 블랑끼파들을 《모욕》하기 위해서만 이것을 리용했던가?(마치 플레하노브가 12월사건을 리용하듯이) 혹 맑스가 마치 소학교녀교원과 같이, **그래 내가 뭐라고 말합디까, 내가 뭐라고 경고합디까, 보십시오, 당신들의 랑만주의적행동과 혁명적몽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고 잔소리를 하였는가? 혹 맑스는 플레하노브가 12월투사들에게 훈시하듯 꿈꾼참가자들에게 《무기를 잡을것이 아니었다.》고 자만하는 속물적인 설교로써 훈시하였는가?

아니다. 맑스는 1871년 4월 12일에 쿠겔만에게 **환희에 찬** 편지를 썼다. 매개 로씨야사회민주당의자들과 글을 아는 매개 로씨야로동자들이 이 편지를 좌우명으로 삼을것을 우리는 바란다.

1870년 9월에 봉기를 일으키는것은 무모한 행위라고 말하였던 맑스는 1871년 4월에 인민적인 **균중적운동**이 일어나자 세계사적혁명운동에서의 1보전진을 의미하는 이 위대한 사변의 참가자만이 가질수 있는 그러한 거대한 관심을 이 운동에 돌리고있었다.

이것은 **관료적 및 군사적 기구를 짓부시기 위한 시도**이지 단순히 그 기구를 한부분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다른 한부분

사람들의 손으로 넘겨주려는 시도는 아니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프루동파와 블랑키파들에 의하여 령도된 《영웅한》 빠리로동자들을 진정으로 찬양하였다. 그는 《이 빠리사람들은 얼마나 훌륭한 령활성과 얼마나 훌륭한 력사적창발성과 얼마나 훌륭한 자기희생성을 가졌던가!》(88페이지)…《력사에는 이와 같은 영웅성의 모범이 일찌기 없었다.》고 쓰고있는것이다.

맑스는 군중의 력사적창발성을 무엇보다도 중시한다. 아! 만일 우리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이 로씨야 로동자와 농민 군중이 1905년 10월과 12월에 발휘한 력사적창발성을 평가함에 있어서 맑스를 본받을수만 있다면!

가장 심원한 사상이가 반년전에는 실패를 예견하고도 군중의 력사적창발성에 대하여 존경을 표시한것과 이와는 반대로 《무기를 잡을것이 아니였다.》고 한 활기없고 뻔뻔하고 현학적인 말을 비교해보라. 과연 이것은 찬양지차가 아닌가?

그리고 맑스는 추방되어 런던에 가있으면서도 그에게 특유한 열정과 정력을 가지고 군중투쟁에 뛰어들었으며 또 그 투쟁의 한 참가자로서 《하늘을 찌르려는》 《자기희생적인》 빠리사람들의 직접적인 대책을 평가하고있다.

맑스주의자들중에서 1906~1907년의 로씨야에서 혁명적량만주의를 비난하던 우리의 오늘의 《현실주의적인》 현자들은 그당시에 얼마나 맑스를 비웃었으랴! 이 유물론자이며 경제학자이며 유토피아의 적이 하늘을 찌르려는 《시도》를 찬양한데 대하여 그들은 얼마나 조소하였으랴! 폭동의 의도 및 유토피아주의 등등에 대하여, 하늘을 찌르려는 운동에 대한 이와 같은 평가에 대하여 갑축에 든 사람²³²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며 얼마나 쓴웃음과 동정을 보냈으랴!

그러나 맑스는 혁명투쟁에서의 최고형태의 기술문제를 론하는것을 두려워하는 모래무치³⁰²들의 총명으로 충만되어있지

않았다. 그는 바로 봉기의 기술적문제를 논한다. 방어인가, 진공인가?—하고 그는 군사행동이 마치 런던부근에서나 일어난 듯이 말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한다. 반드시 공격하여야 한다, 《즉시로 베르사이유로 진격하여야 할 것이었다...》.

이것은 위대한 피의 5월에 이르기 몇주일전인 1871년 4월에 쓴 것이다...

하늘을 찌르려는 《무모한 행위》(1870년 9월에 한 말)를 개시한 봉기자들은 《즉시로 베르사이유로 진격해야 할 것이었다》.

이미 획득한 자유를 탈취하려는 최초의 시도들을 무력으로 반대하기 위하여 1905년 12월에는 《무기를 잡을 것이 아니었다》...

과연 플레하노프가 자신을 맑스와 비교한것은 공연한 일이 아니었다!

맑스는 기술적문제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면서 아태와 같이 말한다. 《둘째 오유는 중앙위원회가〔주의하라, 이것은 군사지휘기관 즉 국민자위군 중앙위원회를 말한다.〕 너무 일찌기 자기의 권력을 버린 데 있다...》

맑스는 령도자들에게는 봉기가 시기상조하다는 것을 경고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하늘을 찌르려는 무산계급에게는 실천적인 충고자로서, 군중투쟁의 참가자로서 대하였던 것이다. 왜냐 하면 군중들은 블랑끼와 프루동의 황당한 리론과 오유에도 불구하고 전반 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 올려세우고 있기 때문이었다.

맑스는 이렇게 쓰고있다. 《가령 파리봉기가 낡은 사회의 승냥이들과 돼지들과 비렬한 개들에 의하여 진압되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도 이 봉기는 6월봉기 이후 우리 당의 가장 영광스러운 공훈으로 된다.》³⁰³

맑스는 품류이 범한 오류를 무산계급에게 **조금도** 음폐하지 않으면서 이 **위업**을 위하여 저작³⁰⁴을 썼는바 이것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늘을 찌르는》 투쟁에서 가장 훌륭한 지침으로 되며 한편 자유주의적 또 급진적인 《**대지**》들에게는 가장 무서운것으로 된다.

플레하노프는 12월사변을 위하여 《**저작**》을 썼으나 그것은 거의 **러시아민주주의자**⁸⁴의 복음서로 되고말았다.

파연 플레하노프가 자신을 맑스와 비교한것은 공연한 일이 아니었다!

쿠겔만은 어떤 의혹을 표시한, 또 사태의 절망성, 랑만주의에 대치되는 현실주의를 지적한 회답을 맑스에게 보내면서 적어도 거기에서 그는 품류 즉 **봉기**를 1849년 6월 13일에 파리에서 진행된 평화적시위와 비교한것 같다.

맑스는 즉시(1871년 4월 17일)에 쿠겔만에게 엄격한 답변을 주고있다.

맑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만일 다만 극히 순조롭게 성공할수 있는 조건하에서만 투쟁을 개시한다면 세계사를 창조한다는것은 너무나 손쉬운 일일것이다.**》³⁰⁵

맑스는 1870년 9월에 봉기를 무모한 행위라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들이 봉기를 일으키자 맑스는 관리처럼 군중을 혼계하려고 한것이 아니라 그들과 같이 전진하며 그들과 같이 투쟁하는 과정에서 학습하려고 하였다. 그는 **사전에 완전히 정확하게 승리의 기회를 예측하려는 시도는 자기행위거나 현학적행위라는것을 리해하고있다.** 그는 **로동계급이 영웅적으로, 헌신적으로, 적극적으로 세계력사를 창조하는 행동을 무엇보다도 중시한다.** 맑스는 **완전히 정확하게 승리의 기회를 사전에 예측할수 없는, 그러면서도 역사를 창조하고있는 사람들의**

견지에서 세계력사를 보았지 결코 《예견하는것은 쉬운 일이었다…무기를 잡을것이 아니었다…》하고 허튼수작을 하는 비속한 지식인의 견지에서는 보지 않았던 것이다.

또한 맑스는 **군중의** 결사적인 투쟁은 비록 그것이 승리할 가망성이 없는 사업을 위한것이라도 그 군중들을 더한층 교육하고 **다음에 있을** 투쟁을 위하여 그 군중들을 훈련시키기 위하여서는 **필요한** 경우가 력사상에는 흔히 있다는것도 평가할 줄 알았다.

맑스에게서 미래를 창조하는것을 본받는것이 아니라 다만 과거에 대한 평가만을 취하기 위하여 함부로 맑스의 말을 인용하기 좋아하는 우리 나라의 현재의 가짜맑스주의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의 **설정**을 전혀 리해하지 못하고있으며 또 심지어는 이와 같은 문제의 설정을 근본적으로 반대하는것이다. 플레하노프는 1905년 12월사변후에…《**제지하기**》 위한 사업에 착수하였을 때 이와 같은 문제의 설정에 대하여서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러나 맑스는 1870년 9월에 자신이 봉기를 무모한 행위라고 인정하였던 사실을 추호도 잊지 않으면서도 바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있는것이다.

맑스는 이렇게 쓰고있다. 《베르사이유의 자산계급악당들은 빠리사람들에게 도전에 응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투쟁하지 않고 항복하겠는가 하는 둘중에 하나를 선택할것을 요구하였다. 후자의 경우에 초래될 **로동계급의 사기의 저락**은 많은 령도자들의 희생보다도 **훨씬 더 큰 불행**으로 될것이다.》³⁰⁶

우리는 맑스가 쿠젤만에게 보내는 서한들에서 교시하고있는 무산계급의 진정한 정책에 대한 교훈의 서술을 이것으로써 간단히 끝내기로 한다.

로씨야의 노동계급은 자기들이 《하늘을 찌를》 능력을 가지고있다는것을 이미 한번 증명하였으며 또 앞으로 여러번 증명하게 될것이다.

1907년 2월 5일

레닌이 편집교열하고 또 그의 서문이 붙은 소책자, 맑스 《엘.쿠겔만에게 보내는 서한집》, 쾰크르 베제르 부르그 《세 의회》출판사, 1907년판에 게재

소책자의 원문에 의하여 인쇄
《레닌전집》, 한문판, 제12권,
96~105페이지

《에프. 아. 조르게 및 기타에게 보낸
이. 에프. 베케르, 요트. 디쨌겐,
에프. 엥겔스, 카. 맑스 및 기타의
서한집》 로문판에 대한 서문

지금 로씨야독자들에게 내놓는 맑스, 엥겔스, 디쨌겐, 베케르 및 기타 19세기 국제로동운동의 수령들의 이 서한집은 우리나라의 선진적맑스주의문헌에 대한 불가결의 보충으로 된다.

우리는 이 서한들이 사회주의의 역사에서와 맑스 및 엥겔스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밝힘에 있어서 가지는 중요한 의의에 대해서는 여기서 상세히 언급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것은 설명할것도 없는 문제이다. 다만 지적하려는것은 이 서한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제당의 역사에 관한 기본저작(예크의 《국제당》, 《지식》출판사 로문판 참조)과 독일 및 미국의 로동운동사에 관한 기본저작들(에프. 메링의 《독일사회민주당사》 및 모리스 힐크위트의 《미국사회주의사》를 참조) 및 기타 등등을 잘 알 필요가 있다는것뿐이다.

우리는 또한 여기서 이 서한집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서술하거나 이 서신들에 관련되는 각이한 역사적시기들을 평가하려고도 하지 않는다. 메링은 자기의 논문 《조르게와의 왕복서한집》(《신시대》173, 제25년권, 제1호와 제2호)에서 이러한 사업을 훌륭히 수행하였는바 아마도 이 논문은 출판자가 본 로문판에 부록으로 첨가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로문판 단행본으로

발간할 것이다.

싸우는 무산계급이 맑스와 엥겔스의 근 30년간에 걸친 (1867~1895년) 친분관계를 알고 이로부터 얻어내야 할 교훈들은 우리가 처하고있는 혁명시대에 로씨야사회주의자들의 특별한 흥미를 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 나라 사회민주당의 출판물에서 조르게에게 보낸 맑스와 엥겔스의 서한들을 독자에게 소개하려는 최초의 시도들이 로씨야혁명에서의 사회민주당의 전술의 《절박한》 문제들과 련관되어서 나타났다는것(플레하노프의 《현대생활》, 멘셰위크들의 《평론》³⁰⁷)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 서한집가운데서 로씨야로동당의 목전임무에 비추어보아 특별히 중요한 그 개소들에 대한 평가에 주의를 돌릴것을 우리는 독자들에게 바라는바이다.

맑스와 엥겔스는 자기 서한들에서 영국, 미국 로동운동과 독일로동운동의 절박한 문제들에 대하여 아주 빈번히 론급하였다.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왜냐 하면 맑스와 엥겔스는 그 당시 영국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미국동지들과 서신력락을 하고있었던 독일사람이였기때문이다. 프랑스로동운동에 관해서 특히는 파리품문에 관해서 맑스는 독일사회민주주의자인 쿠겔만에게 보내는 자기의 서한^①들에서 아주 빈번하게 그리고 더욱 자세하게 이야기하였다.

맑스와 엥겔스가 영국, 미국 로동운동과 독일로동운동의 문제들에 관하여 어떠한 의견을 말하였는가를 비교해보는것은 아주 유익한것이다. 만일 독일과 그리고 영국, 미국 두 나라가 자본주의적발전의 각이한 단계에 처하여있다는 사실과 이 나라들의 모든 정치생활에서의 자산계급의 통치형태가 각이하다

① 《쿠겔만의사에게 보내는 맑스의 서한집》엔. 베닌이 편집하고 서문을 단 로문판, 1907년 쾰른트 베제르부르크판(이 선집의 890~906페이지를 참조—편집자)을 보라.

는 사실에 주의를 돌린다면 상술한 비교는 특히 커다란 의의를 가지게 된다. 과학적견지에서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유폴론적변증법의 모범을 보게 되며 이리저리한 정치적 및 경제적 조건의 구체적특점에 적응함에 있어서 문제의 각이한 중점, 각이한 측면들을 첫자리에 내놓고 강조하는 능란한 솜씨를 보게 된다. 노동자당의 실제적정책과 전술의 견지에서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공산당선언》의 저자들이 싸우는 무산계급의 임무를 어떻게 각국의 민족적로동운동의 각이한 단계들에 적용시켜 규정하였는가 하는 모범을 보게 된다.

맑스와 엥겔스는 영국과 미국의 사회주의운동에 대하여 그것이 로동운동과 리탈되어있는 점을 무엇보다도 신랄하게 비평하고있다. 영국의 《사회민주주의련맹》³⁰⁸(Social-Democratic Federation)과 미국사회주의자들에 관한 맑스와 엥겔스의 수많은 비평들을 일관하고있는것은 영국과 미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맑스주의를 교조로, 《굳어진(starre) 정통사상》으로 전화시켰다는것, 그들이 맑스주의를 《행동의 지침이 아니라 교조》³⁰⁹로 보고있다는것, 그들이 자기들의 주위에서 진행되고있는, 리론적으로는 매우 미약하나 생명력이 있고 균중적이고 강력한 로동운동에 보조를 맞출줄 모른다는것 등에 대한 책망이다. 엥겔스는 1887년 1월 27일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부르짖고있다. 《만일 1864년부터 1873년에 이르는 시기에 우리가 우리의 강령을 공공연히 승인한 그러한 사람들과만 손을 맞잡고나아가려고 하였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었겠는가?》³¹⁰ 그리고 이보다 앞서 한 서한(1886년 12월 28일)에서 엥겔스는 헨리 조지의 사상이 미국로동계급에게 주는 영향에 관한 문제에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진정한(《bona fide》) 로동자당을 옹호하여 매년 11월에 투표할 로동자들의 100만 또는 200만표는 지금에는 리론상에서 완전무결한 강령

을 옹호해서 투표한 10만표보다 한없이 더 중요하다.》

이것은 매우 흥미있는 말이다. 우리 나라에는 《로동자 대회》³¹¹라든가 라틴의 《광범한 로동당》같은 주장을 변호하는데 이 말을 인용하려고 서두른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있었다. 어째서 《좌익연맹》을 변호하는데다 그 말을 리용하지 않는가고 우리는 것처럼 급급히 앵겔스의 말을 《인용》하는자들에게 물어보려 한다. 이 인용되는 서한들은 미국의 로동자들이 헨리 조지를 찬성하여 투표한 그 시기에 쓴것이다. 위슈네웨쯔까야녀사—로씨야남자에게 출가하였으며 앵겔스의 저작들을 번역한 미국사람—은 앵겔스에게(그에게 준 앵겔스의 회답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헨리 조지를 아주 단단히 비판할것을 부탁하였다. 앵겔스는 회답하기를(1886년 12월 28일), 그렇게 하기에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왜냐 하면 로동자당이 그다지 순수하지 못한 강령우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것이 차라리 나을것이기때 문이며 그후에는 로동자들 자신이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를 리해하게 될것이며 《자신의 오유로부터 배우게 될》것이니 《(어떠한 강령에 기초했든간에) 여하튼 로동자당이 전국적범위에서 공고해지는것》을 방해하는것은 《커다란 오유라고 나는 인정한다.》³¹²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적**견지로 보아 헨리 조지사상이 가진 모든 황당한 **반동성**을 앵겔스가 이미 명확히 리해하고 무차지적한것은 물론이다. 조르게와의 왕복서한집에는 맑스의 가장 흥미있는 1881년 6월 20일부 서한이 있는데 여기에서 맑스는 헨리 조지를 **급진적자산계급의 사상가**라고 평가하였다. 맑스는 《헨리 조지는 리론면에서 극히 락후한 사람이다.》(total arriè-re)³¹³라고 썼다. 그리고 **군중들**에게 《그들자신의 오유의 후파》를 미리 말해줄줄 아는 사람들이 있기만 한다면 이런 경우에 이 **진짜반동적사회주의자**와 함께 선거에 참가하는것을

엔겔스는 두려워하지 않았다.(엔겔스의 1886년 11월 29일부 서한에서)³¹⁴

당시의 미국노동자의 조직인 《로동기사》(Knights of Labor)³¹⁵에 관해서 엔겔스는 같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로동기사〉의 가장 약한[직역하면 부패한, *faulste*] 면은 정치적직립이며... 새로 운동을 시작하는 모든 나라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으로 되어야 할것은 언제나 노동자를 독립적인 정당으로 조직하는것인바 어떤 방법으로 조직하든지간에 이 조직이 진정한 노동자당으로 되기만 하면 된다.》

여기에서는 사회민주당으로부터 비당적노동자대회 등등으로 뛰어넘는것을 변호할만한 아무런것도 이끌어낼수 없다는것이 분명하다. 엔겔스에게서 맑스주의를 《교조》, 《정통사상》, 《종파주의》 등등에까지 끌어내렸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는자는 누구나 할것없이 이로부터 때로는 급진적인 《반동적사회주의자》와 함께 선거운동을 하는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야 할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로씨야의 이러한 대비에 대해서 론하기보다는(우리는 다만 적들에게 대답하기 위하여 그것을 언급하는것이다.) 영국과 미국 노동운동의 **기본적**특점들에 대해서 론하는것이 물론 가장 중요한것이다. 이 특점들이란 무산계급앞에는 비교적 중대하고 전국적인 **민주주의적**임무가 없다는것, 무산계급이 아직 완전히 자산계급의 정치에 종속되어있다는것, 한층도 못되는 사회주의자들이 종파주의립장으로 인하여 무산계급으로부터 리탈되어있다는것, 사회주의자들이 선거에서 노동자대중의 환영을 조금도 받지 못하고있다는것 등등이다. 이러한 기본조건들을 망각하고 《미국과 로씨야의 대비》로부터 광범한 결론을 짓는자는 그자신의 더없는 피상성을 드러내게 된다.

엔겔스가 그와 같은 조건하에서 로동자들의 경제적조직을 건립할것을 것처럼 강조한것은 그당시 이미 비상히 안정된 민주제도가 무산계급에게 순수한 사회주의적임무를 제기하였기때문이다.

엔겔스가 나쁜 강령이나마 가지고있는 독립적로동자당을 세울 중요성을 강조한것은 이때까지 로동자들에게 그 어떤 정치적독립성도 없었고 또 그들이 정치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많이 자산계급의 뉘프리를 따라다니고있었으며 또 따라다니고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논의되고있기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로부터 얻어낸 결론을, 무산계급이 자기의 정당을 자유주의적자산자보다 더 일찌기 창건하였으며 무산계급에게는 자산계급정치가들을 찬성하여 투표하는 전통이 털끝만큼도 없으며 사회주의적임무가 아니라 자산계급적민주주의적임무가 직접 일정에 나서고있는 그러한 나라들이나 력사시기에 적용하려고 시도하는것은 맑스의 력사적방법을 조롱하는것이다.

만일 우리가 엔겔스의 영국과 미국 운동에 관한 평론과 독일운동에 관한 평론을 대비한다면 우리의 견해가 독자들에게 더욱더 명백해질것이다.

이 왕복서한집에도 그러한 평론들이 매우 많으며 또 그것은 매우 흥미있는것들이다. 그리고 이 모든 평론들은 전혀 다른 그 무엇으로, 즉 로동자당중의 《우익》을 반대하는 경고로, 사회민주당내의 기회주의에 대한 무자비한(1877년~1879년간에 맑스가 한것처럼 때로는 맹렬한) 전쟁으로 일관되어있다.

이것을 우선 서한에서 취한 일부 인용문계 의하여 실증하고 그다음에 이 현상에 대하여 평가하기로 하자.

여기에서 무엇보다도먼저 회히베르그와 그 일파에 대한 카.맑스의 평론을 지적하여야 할것이다. 프란쯔 메링은 자기

의 《조르게와의 왕복서한집》에서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맑스의 공격과 그후의 엥겔스의 공격을 완회시키려고 애쓰고있는데 우리는 그의 노력이 좀 지나친것이라고 본다. 특히 회히베르그와 그 일파에 대해서 논하는 경우에 베링은 맑스가 라살과 라살파¹¹⁹를 옳지 못하게 평가하였다는 자기의 견해를 고집하고있다. 그러나 거듭 말하거니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것은 바로 그 어떤 소위 사회주의자들에 대한 맑스의 공격이 정확한가 또는 지나치지 않는가 하는데 대한 역사적평가인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운동내의 어떤 **파벌**에 대한 맑스의 **원칙적** 평가인것이다.

맑스는 독일사회민주당이 라살파 및 듀링과 타협한데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면서(1877년 10월 19일부 서한) 《사회주의를 <보다 높은 이상적> 방향으로 전환시키려는, 다시말하면 사회주의의 유물론적기초(이러한 기초를 리용하기전에 객관적으로 연구할것이 요구된다.)를 정의, 자유, 평등 및 fraternité(박애)의 녀신에 관한 현대의 신화로써 대체시키려는 그러한 미숙한 대학생들과 지나치게 총명한 박사[독일어의 《박사》는 우리 나라의 《부박사》나 《대학우등졸업생》에 해당하는 학위이다.]들과의 타협》에 대해서도 비난하고있다. 《이러한 경향의 대표자들중의 하나는 당에 <돈을 내고> 가입한, 잡지 <미래>³¹⁶의 발행자 회히베르그박사씨인바 그가 <가장 고상한> 의도를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나는 그의 어떤 <의도>에 대해서든지 침을 뱉는다. 그의 잡지 <미래>의 강령보다 더 가련하며 더 <겸손히 자고자대하는것>은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서한 제70호)³¹⁷

근 2년후에(1879년 9월 19일에) 쓴 다른 한 서한에서 맑스는 자기와 엥겔스가 **이.모스트**를 옹호한다고 하는 요언을 문박하고 독일사회민주당내의 기회주의자들에 대한 자기의

래도를 조르게에게 자세히 설명하였다. 잡지 《미래》는 회히베르그, 쉬람 및 에.베른슈타인이 운영하고있었다. 맑스와 엥겔스는 그와 같은 출판물사업에 참가하는것을 거절하였으며 이 회히베르그의 참가밑에 그리고 그의 재정적방조밑에 새로운 당기관지를 창간할것이 논의되었을 때 맑스와 엥겔스는 처음에는 이 《박사, 대학생 및 강단사회주의자¹⁵³들로 구성된 혼합물》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자기네가 임명한 주필 카.히르쉬의 채용을 요구하였으며 그후에 직접 베벨, 립크네히트 및 사회민주당의 기타 수령들에게 만일 회히베르그, 쉬람, 베른슈타인 등이 자기의 로선을 개변하지 않을것 같으면 《당과 리론을 비축화[Verluderung—독일어로는 보다 더 강한 말이다.]하는 그 행위》를 공개적으로 반대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때는 독일사회민주당이 메링이 자기의 《당사》에서 《동란의 해》(《Ein Jahr der Verwirrung》)라고 쓴 그러한 시기에 처해있었다. 《특별취체법》¹⁵¹이 반포된후 당은 처음에는 모스트의 부정부주의와 회히베르그 및 그 일파의 기회주의에 물젖어 정확한 길을 단번에 찾아내지 못하고있었다. 회히베르그에 대해서 맑스는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리론면에서는 캄캄하고 실천면에서는 아무데에도 쓸모없는 이 사람들은 사회주의(그들은 사회주의에 관해서 대학처방의 개념대로 리해하고있다.)를, 주로 사회민주당을 보다 더 온화한것으로 만들고 그들 자신은 혼란된 절반지식밖에 가지고있지 못하면서 로동자들을 계몽하려고, 다시말하면 그들이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로동자들에게 〈계몽의 요소들〉을 주입시키려고 생각하고있으며 또 그뿐만아니라 그들은 무엇보다도먼저 소시민의 눈앞에서 당의 성망을 높이려 하고있다. 그들은 가련한 반혁명적공담가에 불과하다.》³¹⁸

맑스의 《맹렬한》 공격은 기회주의자들로 하여금 퇴각케 하

였으며…자취를 감추게 하였다. 1879년 11월 19일부 서한에서 맑스는 회히베르그를 편집위원회로부터 내쫓았으며 당의 중요한 모든 수령들인 베벨, 뽀프네히트, 브라케 등등이 그의 사상을 버렸다고 말하였다³¹⁹. 사회민주당의 기관지 《사회민주주의자》³²⁰는 당시에 당의 혁명파편에 서있는 폴마르가 책임지고 꾸리게 되었다. 1년이 지난후(1880년 11월 5일) 맑스는 말하기를, 자기와 엥겔스는 항상 이 《사회민주주의자》지의 《가련한》(miserable) 운영방침을 반대하여 싸웠으며 종종 날카롭게 (《wobei'soft scharf hergeht》) 싸웠다고 하였다. 뽀프네히트는 1880년에 맑스한테 가서 모든 면에서 《개선》이 있을것이라고 약속하였다³²¹.

평화는 회복되었으며 전쟁은 표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회히베르그는 물러나고 베른슈타인이 적어도 1895년 엥겔스의 서거이전까지는…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로 되었다.

1882년 6월 20일 엥겔스는 조르게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투쟁을 이미 지나간 일로서 서술하면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대체로 독일의 형편은 참 좋아지고있다. 당내의 문필가제씨들이 당내에서 반동적전변을 일으키려고 시도하였던것은 사실이나 그들은 수치스럽게도 실패를 당하였다. 사회민주주의로동자들이 도처에서 당한 모욕은 그들로 하여금 3년전보다 더욱더 혁명적으로 되게 하였다.… 이 신사제씨들[당의 문필가들]은 자기들의 원고비수입을 것처럼 참혹하게 빼앗아간 사회주의자특별취체법의 폐지를 온순과 순종과 아침의 방법으로써 구걸하려 하였다. 이 법이 폐지되는 날이면 의심할바없이 공개적인 분렬이 나타날것이고 피레크와 회히베르그류의 제씨들은 자기네끼리 우익을 형성하여 떨어져나갈것이며 그들이 최후로 완전히 사라지기전까지는 이따금 그들과 담판을 하게 될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우리는 사회주의자특별취체법실시직후

에 벌써 표명한바 있었는데 당시 회히베르그와 쉬탐은 《년지》³²²에서 당활동을 극도로 추악하게 평가하고있었고 당에서 보다 더 폐절있고 교양있고 우아한 행동방식을 취할것을 요구하였었다.³²³(원문은 《gebildetes》가 아니고 《jebildetes》이다. 엥겔스는 여기에서 독일문필가들의 베를린식악센트를 암시하고있다.)

1882년에 한 베른슈타인일파에 대한 이 예언은 1898년과 그후 년간에 훌륭히 실증되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특히 맑스의 서거이후에는 엥겔스가 꾸준하게 독일기회주의자들에 의하여 외곡된 로선을 《바로잡고있었다》고 과장없이 말할수 있다.

1884년말. 엥겔스는 기선회사에 대한 보조금(《Dampfersubvention》 메링의 《당사》를 참조)을 찬성투표한 독일사회민주당 제국국회의원들의 《소시민적편견》을 비난하였다. 엥겔스는 조르게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자기는 서신왕태를 많이 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하였다(1884년 12월 31일부 서한을 보라)³²⁴.

1885년. 기선회사에 대한 보조금안건의 전부의 경과를 평가하면서 엥겔스는 쓰기를(6월 3일), 《사태는 하마트면 분렬에까지 이를번하였다.》고 하였다. 사회민주당위원들의 《소시민적욕망》은 《굉장》하였다. 《독일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소자산계급적사회주의파벌은 불가피하다.》고 엥겔스는 말하였다³²⁵.

1887년. 조르게는 엥겔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당이 피베크(회히베르그식의 사회민주주의자)파위의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선거함으로써 망신을 당하고있다고 말하였다. 엥겔스는 조르게에게 보내는 답서에서 이렇게 해석하였다. 이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며 로동자당은 훌륭한 국회의원을 얻어낼곳이 없

다. 《우익신사제씨는 그들이 오직 사회주의자특별취체법에 의해서만 전디어나갈수 있다는것과 당이 다시금 자유로이 행동할수 있게 되는 날이면 그들은 곧 당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것이라는것을 알고있다.》 사실 《당으로 하여금 자기의 의회영웅들보다 더 높이 서있게 하는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좋은것이다.(1887년 3월 3일) 엥겔스는 그당시 렉크네히트는 타협분자이며 공담으로써 의견상이를 엄폐하고있다고 불만의 뜻을 표시하였다. 그러나 사태가 분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결정적순간에 그는 우리편에 서게 될것이라고 하였다³²⁶.

1889년. 두개의 국제사회민주주의자대회³²⁷가 빠리에서 열리었다. 기회주의자들(프랑스의 가능파141들을 위수로 한)은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들과 분렬하였다. 엥겔스는(그는 이때 벌써 68세였다.) 젊은이처럼 전투에 나섰다. 일련의 서한들(1889년 1월 12일부터 7월 20일까지의)이 기회주의자들과의 투쟁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비단 이 기회주의자들뿐만아니라 렉크네히트, 베벨 등등의 독일인들도 그들의 타협적태도때문에 비난을 받고있다.

1889년 1월 12일에 엥겔스는 가능파들이 정부에 매수되였다고 썼다. 그리고 그는 영국《사회민주주의련맹》(S.D.F.)성원들이 가능파들과 련맹을 맺고있는 점을 폭로하였다³²⁸. 그리고 《이 저주로운 대회때문에 나는 동분서주하고 많은 서신왕래를 하느라고 다른 일은 할 겨를이 없다.》(1889년 5월 11일)라고 썼다. 가능파들은 분주히 서두르고있는데 우리편사람들은 잠자고있다고 엥겔스는 성내고있다. 이제 와서는 아우에르와 쉬펠까지도 우리를 보고 가능파들의 대회에 참가할것을 요구하고있다. 그러나 이것은 《드디여》 렉크네히트의 눈을 뜨게 하였다³²⁹. 엥겔스는 베른슈타인과 더불어 기회주의자

들을 반대하는 소책자들(베른슈타인이 서명한 것들인데 엥겔스는 그것들을 《우리의 소책자들》이라고 부르고 있다.)을 썼다³³⁰.

《가능파들은 사회민주주의련맹을 제외하고는 전 구라파에서 어느 한 사회주의적조직의 옹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1889년 6월 8일〕 따라서 그들은 비사회주의적인 로동조합으로 되돌아갈수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는 것이다.》(우리 나라에서 광범한 로동당과 로동자대회 등등을 승배하는 자들은 참고하시라!) 《미국으로부터는 그들에게로 오직 **로동기사의 대표 한사람만**이 올 것이다.》 적수는 바쿠닌파들과 투쟁할 때와 똑같은 그러한 자들이다. 《다만 무정부주의자들의 기발이 가능파의 기발로 바뀌어졌다는 차이만이 있을뿐, 역시 소소한 양보, 주로는 몇몇 평도자를 위한 유리한 자리(지참의원, 로동소개소의 평도인원 등등)의 대가로 자기의 원칙들을 자산계급에게 파는 그러한 자들이다.》 브루쓰(가능파의 두목) 및 하인드만(가능파와 련합한 사회민주주의련맹의 두목)은 《권위적맑스주의》를 공격하며 《새 국제당의 핵심》을 구성하려 시도하고 있다.

《당신은 독일사람들이 얼마나 유치한가를 상상조차 할수 없을 것이다! 나는 문제의 요점이 원래 무엇인가를 베벨 자신에게 설명하는데 있어서도 아주 큰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 안되었다.》(1889년 6월 8일)³³¹ 두 대회가 이미 끝났을 때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들이 량적으로 가능파(**로동조합주의자들**, 사회민주주의련맹, 일부 오지리사람들 등등과 **련합하였다.**)를 통가하였을 때 엥겔스는 대단히 기뻐하였다(1889년 7월 17일)³³². 럽크네히트 및 기타 사람들의 타협주의적계획들과 제안들이 실패로 돌아간것은 엥겔스를 기쁘게 하였다(1889년 7월 20일). 《그런데 우리의 감상적인 타협주의자들이 화목을 극력 주장하다가 궁둥이를 호되게 채운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아마도 이때문에 그들은 병이 얼마동안 나아질 것이다.》³³³

...메링이 옳게 말한바와 같이(《조르게와의 왕복서한집》) 맑스와 엥겔스는 《사정》을 볼줄을 거의 몰랐다. 《그들은 남을 때릴 때 별로 주저하지 않았고 얻어맞을 때도 언제나 우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엥겔스는 한번은 이렇게 썼다. 《만일 당신들의 빈침이 나의 거칠고 두렵고 단단한 피부를 찢어 뚫을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들은 잘못 생각하고있는것이다.》³³⁴ 메링은 맑스와 엥겔스에 관하여 언급할 때, 그러므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도 감정에 뒤흔들리지 않는 자기들의 성격을 소유할것을 희망하였다고 쓰고있다.

1893년. 《페이비안파》¹⁴²의 제재. 이것은...베른슈타인파를 비난하기 위하여...자연히 하여야 할 일이었다(베른슈타인이 자기의 기회주의를 영국의 《페이비안파》속에서 《배양》한것은 공연한 일이 아니었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이곳 런던의 페이비안파들은 야심가들의 도당이기는 하나 사회변혁의 불가피성을 리해할만큼 상당히 명석한 두뇌를 갖고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 거대한 사업을 무모한 무산계급에게만 내맡기지 않고 자기들이 무산계급의 선두에 나서려고 하였다. 혁명을 두려워하는것—이것은 그들의 기본원칙이다. 그들의 태반은 〈지식인〉들이다. 그들의 사회주의는 처방공동소유사회주의이다. 즉 적어도 초기에는 생산수단을 국유로 할것이 아니라 품꾼의 소유로 하여야 할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자기들의 사회주의를 자산계급자유주의의 극단적인, 그러나 불가피한 결과로 묘사하고있다. 이로부터 그들의 전술 즉 자유당에 대해서는 적으로 삼아 견결히 투쟁할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회주의적결론을 얻어내도록 추동하여야 할것, 다시말하면 그들을 얼려넘기며 〈사회주의가 자유주의에 침투되게 하며〉 사회주의적립후보자로써 자유당과 대항하지 말고 자유당에 밀어넣을것, 다시말하면 기만적수단으로 그들을 당선되게 할것...이라는 전술이 나

오는것이다. ...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하면 그들자신이 기만당하거나 아니면 사회주의를 기만하게 된다는것을 물론 이해하지 못한다.

페이비안파들은 각종 악렬한 저작들의외에 일부 좋은 선전품도 출판하였는데 이것은 이 면에서 영국사람들이 출판한것들중에서 가장 좋은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계급투쟁을 말살하는 자기의 특수한 전술에로 되돌아갈 때는 사태가 잘못된다. 우리가 계급투쟁을 주장하기때문에 그들은 맑스와 우리전체를 발광적으로 증오한다.

페이비안파들은 물론 많은 자산계급층의 지지자들을 가지고있으며 그렇기때문에 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있는것이다.》...335

사회민주당내의 지식인적기회주의 파에 대한 고전적평가

1894년. 농민문제. 엥겔스는 1894년 11월 10일에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대륙에서는 운동이 날로 발전함에 따라 더 큰 성과에 대한 갈망도 증대되고있는데 문자 그대로 농민을 사냥하는 활동이 유행되기 시작하고있다. 처음에 프랑사람들이 라파르그의 입을 통하여 낭트에서 성명하기를, 우리의 사업은 소농의 파산을 촉진시키는데 아닐뿐만아니라—이 점에 대해서는 자본주의가 우리를 위하여 걱정해줄것이다.—부세, 고리대금과 대토지소유자들의 착취를 받지 않도록 소농을 직접 보호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이 점에 동의할수 없다. 왜냐 하면 이것은 첫째로 어리석은 일이고 둘째로 불가능한 일이기때문이다. 이에 뒤이어 프랑크푸르트에서 폴마르가 전체 농민들을 매수하려 한다고 언설하였

다. 그런데 그가 상부바이에른에서 매수하려는 농민이란 부채에 억눌린 라인강연안의 소농이 아니라 중농이며 심지어는 남녀고용농을 착취하고 가축과 양식을 가지고 장사하는 자립적인 대토지소유자인 것이다. 그런데 모든 원칙들을 거부하지 않고서는 이에 동의할수 없는 것이다.》³³⁶

1894년 12월 4일. ... 《바이에른사람들은 아주 기회주의적으로 되어 하마트면 일반적인 인민정당으로 전화될뻔하였다(나는 대다수의 수령과 허다한 신입당원들을 가리켜 말하고있는 것이다). 바이에른지방의회에서 그들은 예산전체에 찬성투표하였으며 특히 풀마르는 고용농이 아니라 상부바이에른대토지소유자들—25~80에이커(10 내지 30헥타르)의 토지를 가지고있는 사람들, 즉 고용로동자를 두지 않을수 없는 사람들을 자기편에 끌어들이 목적으로 농민들속에서 선동을 하였다.》...³³⁷

이로부터 우리는 맑스와 엥겔스가 10년 이상이나 독일사회민주당내의 기회주의를 반대해서 꾸준히 투쟁하였으며 사회주의운동에서의 지식인적속물근성과 소시민적근성을 타격하였다는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극히 중요한 사실이다. 광범한 균중은 독일사회민주당이 무산계급의 맑스주의적정책과 전술의 모범으로 간주되고있다는것을 알고있기는 하나 맑스주의의 창시자들이 이 당의 《우익》(엥겔스의 표현)을 반대해서 어떻게 경상적으로 투쟁하였던가 하는것을 모르고있다. 엥겔스가 서거한지 얼마 안되어 이 투쟁이 은폐적인 투쟁으로부터 공개적인 투쟁으로 되었다는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독일사회민주당의 수십년간에 걸친 력사적발전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엥겔스(및 맑스)의 충고, 지시, 지정, 위협 및 교시중에는 두갈래 로선이 관통되어있다는것을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들은 영국과 미국 사회주의자들에게 로동운동과 한 덩어리로 되며 자기의 조직내에서 협애하고 완고한 종파주의적정신을 없애버릴것을 가장 집요하게 호소하였다. 그들은 독일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대해서는 속물적근성, 《의회광신병》²³⁷(1879년 9월 19일부 서한에 있는 맑스의 표현)³³⁸, 소시민적지식인적기회주의에 빠지지 말라고 가장 집요하게 교시하였다.

우리 나라 사회민주당내의 요설쟁이들이 첫째 종류의 충고에 관해서는 재잘거리고 둘째 종류의 충고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회피하였다는것은 과연 특징적이 아닌가? 맑스와 엥겔스의 서한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표현된 **이와 같은 일면성**은 과연 우리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의...《일면성》의 가장 뚜렷한 증명이 아닌가?

국제로동운동에 심각한 배회와 동요의 징조가 나타나고 기회주의, 《의회광신병》, 속물적개량주의의 극단성이 혁명적급진로동조합주의의 대립적극단을 초래하고있는 오늘날 영국과 미국 사회주의운동과 독일사회주의운동을 《시정》할데 관한 맑스, 엥겔스의 총로선은 특별히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있다.

사회민주로동당이 **없고** 의회에 사회민주당의 대표가 **없고** 선거에서나 출판물들에서 일관적이고 견정한 사회민주주의적정책 등등이 **보이지 않는** 나라들의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맑스와 엥겔스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어코 협소한 종파주의적올타리에서 벗어나 로동운동에 참가함으로써 무산계급을 **정치적으로 분발시키라고** 항상 교시하였다. 왜냐 하면 영국에서나 미국에서나를 막론하고 19세기 마지막 3분의 1의 기간에 이르러서는 무산계급은 거의 **아무런** 정치적자립성도 표현하지 않았기때문이다. 이 두 나라의 정치무대는—자산계급민주주의적력사적임무가 거의 전혀 없는 조건하에서—거만한 자산계급이

완전히 독차지하고있었는바 노동자들을 기만하며 부식시키며 매수하는 기교에 있어서 이 자산계급과 비할만한자는 세상에 없다.

영국과 미국 노동운동에 대한 맑스와 엥겔스의 충고들이 로씨야에 단순히 직접적으로 적용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맑스주의적방법을 인식하거나 일정한 나라들의 노동운동의 구체적인 역사적특점을 연구하기 위한것이 아니라 지식분자적소분파조직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맑스주의를 운용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와는 반대로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의회적형식으로 걸치레를 한 군사적전제제도》(《고타강령비판》에 있는 맑스의 표현)³³⁹가 통치하여왔고 또 지금도 통치하고있으며 무산계급이 이미 오래전에 정치생활에 참가하여 사회민주주의적정책을 실시하고있는 그러한 나라들에서 맑스와 엥겔스는 노동운동의 임무와 규모를 의회주의와 속물적근성으로써 축소시키고 비속화하는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다.

우리가 맑스주의의 이 측면을 로씨야의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시대에 강조하며 첫자리에 내세워야 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자유주의자산계급의 광범하고 《명성을 떨치고》자금이 많은 출판물이 무산계급들에게 이웃 독일노동운동은 《모범적으로》 충성을 다하고있다느니, 의회에서 합법성을 획득하고있다느니, 결혼하고 온진하다느니 하고 굉장히 떠들어대고있기 때문이다.

로씨야혁명을 배반한 자산계급분자들의 이러한 사리사욕적인 거짓은 우연히 야기된것도 아니며 또한 령헌민주당⁸⁴진영내의 일부의 과거 또는 미래 대신들의 개인적타락으로 인하여 야기된것도 아니다. 이 거짓은 로씨야의 자유주의적지주들과 자유주의적자산자들의 심각한 경제적리해관계에 의하여 야

기된 것이다. 로씨야의 모든 사회주의자들은 이러한 거짓, 이러한 《군중의 우매화》(《Massenverdummung》—1886년 11월 29일부 편지에 있는 엥겔스의 표현)³⁴⁰와 투쟁함에 있어서 맑스와 엥겔스의 서한들을 없어서는 안될 무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자유주의적자산자들의 자사자리적인 거짓은 인민에게 독일사회민주당의자들의 모범적《결손성》을 보여주고있다. 독일사회민주당의자들의 수령들 즉 맑스주의리론의 창시자들은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프랑스사람들의 혁명적 인론과 행동은 피레크와 그 일파〔독일사회민주당 국회대표단내의 사회민주당의자기회주의자들〕의 위선을 더욱더 추악하게 드러내놓게 하였다.〔프랑스중의 원내에서 노동자당이 형성된것과 프랑스급진주의자들을 프랑스부산계급으로부터 떨어져나가게 한 데카르빌노동자들의 동맹파업을 말하는것이다.〕³⁴¹ 이미 뤼크네히트와 베렐만이 최근의 사회주의자특별취체법에 관한 변론에 참가하여 발언을 하였는데 두사람 다 아주 잘 말하였다. 이러한 변론들에 의하여 우리는 다시금 상류사회에 나타날수 있게 되었는데 유감스럽게도 이러한것이 종전에는 언제나 있었것이 아니었다. 독일사람들가운데서 특히 그들이 것처럼 많은 촉물들을 제국국회에 파견(그러나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한후에 그들과 국제사회주의운동의 명도권을 쟁탈하는 사람이 나타난것은 대체로 좋은것이다. 평온한 시대에 독일에서는 모든것이 비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순간에는 프랑스의 경쟁의 자극이 절대로 필요한것이다.》…(1886년 4월 29일부 서한)³⁴²

이것이 바로 사상상에서 주로 독일사회민주당의 영향을 받고있는 로씨야사회민주당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체득하여야 할 교훈들이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것은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두사람의 왕복서한중의 이러저러한 개별적어구가 아니라 무산계급의 국제적경험에 대한 그들의 동지적이며 솔직하고 외교적언사와 소소한 타산이 전혀 없는 비판의 정신전체와 내용전체이다.

맑스와 엥겔스의 모든 서한들이 정말 어느 정도까지 그러한 정신으로 일관되었는가는 다음과 같은 언론들에서 볼수 있다. 물론 이러한 언론들은 비교적 국부적인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문제를 아주 잘 설명해줄수 있는것들이다³⁴³.

1889년에 영국에서는 훈련을 받지 못한 미숙련보통로동자들(가스로동자, 부두로동자 등)의 젊고 생기있고 새로운 혁명적정신으로 가득찬 운동이 개시되었다. 엥겔스는 이 운동을 보고 특히 기뻐하였다. 그는 그들속에서 고동사업을 한 맑스의 딸 《투씨》(Tussy)의 역할에 대하여 대단히 칭찬하였다. 엥겔스는 1889년 12월 7일 런던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써보내었다. 《이곳에서 가장 끌보기 싫은것은 로동자들의 몰수에 박혀있는 자산계급적〈체면〉이다. 사회가 사람들이 공인하는 허다한 등급으로 분렬되고 그중의 매개 등급마다 자기의 〈자존심〉을 갖고있으며 그러면서도 이러한 〈보다 훌륭한〉, 〈보다 높은〉 등급에 대한 선천적인 존경감을 가지고있는데 그것이 대단히 오래되었고 매우 확고하여서 자산자가 균중을 수여넘기자면 상당히 용이하다. 케컨대 나는 존 번즈(Burns)가 로마법왕추밀원 맨닝 및 시장에게서와 일반적으로 자산자에게서 얻고있는 자기의 명성보다도 자기 계급속에서 얻고있는 자기의 명성을 마음속에서 더욱 자랑한다고는 결코 믿지 않는다. 그런데 챔피언(Champion)—퇴역중위—은 벌써 여러해전에 자산계급분자들, 주로는 보수파분자들과 단짝이 되어가지고도 교회의 승려회의에서는 사회주의 등등을 고취하였다. 그

리고 톰 만(Mann) 그자신까지도—나는 그들중에서 이 사람을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있다—자기가 어떻게 시장어른네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게 될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 다만 그들을 프랑스사람들과 대비한 때에라야만 이 면에서 혁명이 얼마나 좋은 영향을 주는가를 확신하게 된다.》³⁴⁴

이것을 일일이 해석할 필요는 없다.

실례를 또 하나 들자. 1891년에 구라파에는 전쟁의 위험성이 나타났다. 엥겔스는 이 문제에 관해서 늘 베벨과 서신왕태를 하였는데 그들은 독일이 로씨야의 침범을 받는 경우에는 독일사회주의자들은 로씨야사람들과 또한 로씨야사람의 모든 동맹자들과도 필사적으로 싸우지 않으면 안될것이라고 일치하게 인정하였다. 《만일 독일이 압살당하게 된다면 우리도 독일과 운명을 같이할것이다. 유리한 전환이 있을 경우에는 투쟁은 오직 혁명적수단에 의해서만 독일이 지탱될수 있을 그러한 맹렬한 성질을 띠게 될것이며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아마 부득불 정권을 잡고 1793년을 재연하게 될것이다.》(1891년 10월 24일부 서한)³⁴⁵

1905년에 로씨야로동자당이 상상하던 《자코뱅방식》의 전망은 사회민주당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전 세계에 웨친 기회주의자들은 들으라! 엥겔스는 사회민주당의자들이 립시정부에 참가하지 않으면 안될 가능성에 대해서 베벨에게 직접 지적하였던것이다.

사회민주당들의 임무에 대한 이와 같은 전해밀에서 맑스와 엥겔스가 로씨야혁명과 그의 거대한 세계적의의에 대해 가장 희망에 찬 신심으로 충만되어있었다는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이 왕복서한집에서 로씨야의 혁명에 대한 그들의 근 20년동안에 걸친 이와 같은 변함없는 열정적기대를

볼수 있다.

1877년 9월 27일부 맑스의 서한을 보기로 하자. 동방의 위기³⁴⁶는 맑스를 몹시 기쁘게 하였다. 《로씨야는 오래전에 이미 대변혁의 문턱에 서있으며 이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벌써 성숙되었다. 대담한 토이기사람들이…가한 타격때문에…변혁은 여러해 앞당겨 폭발하게 되었다… 변혁은 Secundum artem(《일반적규칙에 따라》) 헌법유히로부터 시작될 것이며 뒤이어 유별난 소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il y aura un beau tapage) 그리고 어머니인 자연이 우리를 무정히 대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이것이 승리할 날까지 살 것이다.》³⁴⁷(맑스는 이 당시 59세였다.)

어머니인 자연은 맑스에게 《이것이 승리할 날까지》 살게 해주지 않았으며 아마도 그렇게 해줄수도 없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헌법유회》를 **옳게 예언**하였는데 그의 말마디들은 제1차 및 제2차 로씨야국회에 대해서 어제 방금 써놓은 것 같다. 《헌법유회》를 방지하도록 인민에게 준 경고야말로 자유주의자와 기회주의자들이 그렇게도 중오하는 그 보이프트전술의 《평혼》이란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또 1880년 11월 5일부 맑스의 서한을 보기로 하자. 그는 로씨야에서 《자본론》이 대단한 환영을 받는데 대해서 기뻐하였으며 그당시에 방금 생긴 토지재분배주의파¹⁹²를 반대하여 인민의지파³⁶의 편을 들었다. 맑스는 토지평분주의자의 관점속에 있는 무정부주의적요소들을 옳게 간파하였으며(맑스는 인민주의적토지평분주의자가 장차 사회민주주의자로 변하리라는 것을 그당시에 몰랐으며 또 그것을 알수도 없었다.) 가장 신랄한 비양을 다하여 토지평분주의자를 공격하였다.

《이들 신사제씨는 모든 정치적인 혁명적행동을 반대한다. 그들의 견해에 의한다면 로씨야는 무정부적—공산주의적—무신론적인 천년왕

국어로 곧장 비약을 하여야 한다. 동시에 그들은 이 비약을 가장 싫증나는 학리주의로써 준비한다. 그들의 학설중의 소위 원칙들이란 죽은 바쿠닌에게서 가져온것이다.》³⁴⁸

이로부터 맑스가 1905년과 그후시기의 로씨야에서 사회민주당의 《정치적인 혁명적행동》이 가지는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였으리라는것을 알수 있다^①.

또 1887년 4월 6일부 엥겔스의 서한을 보기로 하자. 《그 대신 로씨야에서는 위기가 박두하고있는것 같다. 최근의 암살사건들은 대소동을 일으켰다...》 1887년 4월 9일부 서한에서도 역시 그렇게 말하였다...《군대내에는 비밀활동을 하고있는, 불평을 품은 군관들로 가득차있다.》(엥겔스는 그당시 인민의지파의 혁명투쟁에 대한 인상밖에 없었으므로 군관들에 대하여 기대를 걸었고 18년후에 그처럼 빛나게 표현된 로씨야병사와 해병의 혁명성은 아직 보지 못하였던것이다...) 《...지금의 사태는 년말까지 끝개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로씨야에서 혁명이 폭발하기만 한다면(《losgeht》) 그때는 만세를 부르겠다!》³⁵⁰

1887년 4월 23일부 서한에는 다음과 같이 써여있다. 《그 독일에서는 박해[사회주의자에 대한 박해]가 꼬리를 물고런이여 진행되고있다. 생각컨대 비스마르크는 로씨야에서 혁명이 폭발하기만 하면(지금 보건대는 몇달이내의 사건일지도 모른다.) 독일이 즉시 로씨야의 모범을 뒤따를수 있게끔(《losgeschlagen werden》) 모든 준비를 다하려고 생각하는것 같

① 부연하거나와 나의 기억이 틀림없다면, 《우리의 의견상이》에 관해서와 로씨야의 당면한 혁명의 성격문제에 관해서 엥겔스가 플레하노브에게 편지를 보낸적이 있다는것을 플레하노브 또는 쉐. 이. 자울리치가 1900~1903년에 나에게 말한바가 있다. 그러한 편지가 정말 있었는지, 그것이 그대로 보존되어있는지, 지금은 그것을 발표할수 있겠는지 하는것을 꼭 꼭히 아는것은 흥미있는 일일것이다³⁴⁹.

다.》³⁵¹

몇달이라던것이 대단히 장구한것으로 되었다. 얼굴을 썩고 그리고 이마에 주름살을 잡고서 엥겔스의 《혁명주의》를 날카롭게 비난하거나 혹은 오만한 태도로써 국외에 망명한 이 로 혁명가의 낯은 공상들을 비웃는 그와 같은 속물들이 있을것은 의심할바없다.

물론 맑스와 엥겔스는 혁명시기의 접근을 집착함에 있어서, 혁명의 승리에 대한 기대에 있어서(레킨대 1848년의 독일 혁명에 대하여), 독일《공화국》이 곧 성립되리라고 확신하는 데 있어서(엥겔스는 제국헌법수호운동의 참가자로서의 자기의 기분을 회상하면서 그 시기—1848~1849년에 관하여 《공화국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라》고 썼다³⁵².) 많은 오유를 범하였고 또한 종종 오유를 범하였다. 그들은 1871년에도 오유를 범하였는바, 그때 그들은 《프랑스의 남부를 쫓기》시키기에 분망히 보였으며 《그것을 위하여 그들은[베케르는 자기자신과 가장 가까운 벗들에 관해서 《우리들》이라고 쓰고 있다.—1871년 7월 21일부 제14호 서한] 인간으로 바칠수 있었던것은 죄다 바치었고 인간으로 겪을수 있는 위험은 죄다 겪었다...》. 같은 서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만일 3월과 4월에 우리에게 좀더 많은 돈이 있었더라면 우리는 전체 남부프랑스를 쫓기시켰을것이며 파리프랑스를 구원하였을것이다.》(29페이지) 그러나 소소한 보잘것없는 평소의 임무의 수준이상으로 전 세계 무산제국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며 또 제고시킨 두 위대한 혁명적사상가가 범한 **이러한** 오유는 혁명은 공연한 일이라느니 혁명투쟁은 무익한 일이라느니 《헌법》에 대한 반혁명적 환상이 매력에 있다느니 무엇이니 하고 노래하며 웨치며 호소하며 말하고있는 관청자유주의자의 저속한 총명보다 천백배나 더 고상하고 더 위대하며 **역사적으로** 천백배나 더 고귀하며

정확한것이다. ...

로씨야로동계급은 오유로 가득찬 자기들의 혁명적행동으로써 기어코 자유를 쟁취하고 구라파를 전진케 할것이다. 스물들더러 자기들이 혁명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유를 범하지 않고있다는것이나 자랑하라고 하자.

1907년 4월 6일

1907년 4월 6일(19일)에 접
필

1907년에 쾰크트 텍페르부르그
그 . 게 . 다우게출판사에
서 출판한 《에프 . 아 . 조르
게 및 기타에게 보낸 이 . 에
— . 베케르, 이 . 디르겐,
에프 . 엥겔스, 카 . 랍스 및
기타의 서한집》에 게재

서명, 엔 . 메닌

원문에 의하여 인쇄

《메닌전집》, 한문판, 제12권,
344~363페이지

보이코트를 반대하여

(사회민주당정론가의 론평에서)353

얼마전에 열린 교원대회354—대회에 참석한 대다수는 사회혁명당원208들의 영향하에 있었다. —는 사회혁명당의 저명한 대표의 직접적인 참가하에 제3차국회를 보이코트할데 관한 결정서를 채택하였다. 사회민주주의자교원들은 로씨야사회민주노동당대표들과 함께 이런 문제는 비당적이며 직업적—정치적인 동맹에서 결정할것이 아니라 당의 대회 또는 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면서 한결같이 투표를 기권하였다.

제3차국회를 보이코트하는 문제는 이렇듯 혁명적전술의 당면문제로서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가 아직 사회혁명당의 정식결정서도, 사회혁명당의 문헌도 보지 못했지만 상술한 대회에서 한 사회혁명당대표의 발언으로부터 판단한다면 사회혁명당은 이 문제를 벌써 결정하고있었다. 사회민주당내에서는 이 문제가 제기되어 토론중에 있다.

사회혁명당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써 자기들의 결정을 수호하고있는가? 교원대회의 결정서는 요컨대 제3차국회의 완전한 무용성, 6월3일정변87을 감행한 정부의 반동성과 반혁명성, 새 선거법의 지주적성격 등등을 논하고있다①. 이러한

① 이 결정서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1) 제3차국회소집의 근거로 되고있는 새로운 선거법은 근로대중이 오늘날까지 소유해왔고 또 그들이 막대한 대가로써 얻은 그 얼마 안되는 선거권마저도 그들로부터 박탈하였다.

론거는 보이프트와 같은 그런 투쟁수단이나 구호의 필연성과 합법칙성이 마치 제3차국회의 극단적반동성에서 스스로 발생한듯이 꾸며져있다. 그러한 론의의 부당성은 어느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나 뚜렷이 보인다. 왜냐 하면 거기에서는 어떤 역사적조건하에서 보이프트할수 있는가 하는것이 전혀 분석되어 있지 않기때문이다. 맑스주의에 립각하고있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그 어떤 기구의 반동성의 정도에 의하여 보이프트의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것이 아니라 로씨야혁명의 경험이 이미 보여준바와 같이 보이프트란 이 특수한 수단을 채택할수 있는 특수한 투쟁조건들의 현존여부에 의하여 보이프트의 수행 여부를 결정한다. 우리 나라 혁명의 2년래의 경험을 참작하지 않고 이런 경험을 자세히 연구하지도 않고 보이프트를 론의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그가 진망증이 대단히 심하며 또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여야 할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보이프트란 이 문제에 대한 연구를 바로 이 경험의 분석으로부터 착수하여야 한다.

1

보이프트의 적용에 있어서 우리 혁명의 가장 큰 경험은 물론 불리긴국회³⁵⁵의 보이프트였다. 뿐만아니라 이 보이프트는

(2) 이 선거법은 가장 반동적이며 특권적인 주권계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연하고도 판포하게 인민의 의사를 유린하였다. (3) 선거방법과 구성으로부터 볼 때 제3차국회는 반동적정법의 산물이다. (4) 정부는 국회선거에의 인민대중의 참가를 리용하여 이 참가에다 인민들이 정권을 승인한다는 의의를 부여하려 하고있다. 전로씨야교원및인민교육활동가련협회 제4차대회는 이상의 몇가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제3차국회 및 그의 각 기관들과의 어떠한 련계의 진행도 거부한다. (2)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나 조직적명의로써는 선거에 참가하지 않는다. (3) 본 결정서에 밝혀진 제3차국회 및 국회선거에 관한 판결을 조직적명의로써 광범하게 선전한다.)

가장 완전하고 가장 직접적인 성과를 거두었었다. 때문에 우리는 우선 불리건국회를 보이프트한 역사적조건을 연구하여야 한다.

이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우선 앞에 나서는것은 다음의 두가지 사정이다. 첫째로는 불리건국회를 보이프트한것은 우리 나라 혁명을 군주립헌의 길로 돌려세우는것(일지적이라 하더라도)을 반대하는 투쟁이었다는것이며 둘째로는 이 보이프트는 가장 광범하고 가장 보편적이며 가장 강력하며 가장 급격한 혁명적양상의 환경속에서 진행하였다는것이다.

첫번째 사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어떠한 보이프트나 모두 그 어떤 기관이 존재하는 기초우에서 진행되는 투쟁인것이 아니라 이런 기관의 산생을 반대하는 또는 좀 광의적으로 말한다면 이런 기관의 실현을 반대하는 투쟁이다. 그러므로 플레하노프 및 기타 많은 멘체위크들처럼 대의제기관을 리용하는 것이 맑스주의자들에게 필요하다는 일반적론거로써 보이프트를 반대하는자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이 가소로운 학리주의자라는것을 폭로할따름이다. 이따위의 논의는 논쟁할 여지 없는 진리를 실증이나도록 반복함으로써 논쟁되는 문제의 실질을 회피하는것과 다름없다. 맑스주의자가 대의제기관을 리용하여야 한다는것은 논쟁할 여지가 없는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맑스주의자는 일정한 조건하에서 그 어떤 기관이 존재하는 기초우에서의 투쟁만을 주장할수 있고 이런 기관의 건립을 반대하는 투쟁을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다. 그런 결론은 나오지 않는다. 왜냐 하면 이러한 일반적론의는 이런 기관의 산생을 반대하는 투쟁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만 말할수 있기때문이다. 때문에 보이프트문제에 대한 논쟁의 관점은 바로 이런 기관의 산생을 반대하는 투쟁이 허용되는가 하는데 있는것이다. 플레하노프와 그 일파는

보이코트를 반대하는 **자기들의** 논거로써 문제의 설정자체에 대한 물리해를 폭로하였던 것이다.

다음으로, 만일 온갖 보이코트가 모두 그 어떤 기관이 존재하는 기초우에서의 투쟁이 아니라 이런 기관의 건립을 반대하는 투쟁이라면 불리건국회보이코트는 또한 전반 군주립헌제 기관의 건립을 반대하는 투쟁이었다. 1905년은 총파업(1월 9일 226이후의 파업의 물결) 및 군사봉기(《포퐁전》)와 같은 직접적이고 대중적인 투쟁의 가능성이 존재하고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따라서 대중의 직접적인 혁명투쟁은 사실이었다. 다른 한편 운동을 혁명(가장 직접적이고 좁은 의미에서의)의 길로부터 군주립헌의 길에로 옮기려고 한 8월6일법령도 사실이었다. 대중의 직접적인 혁명투쟁의 길과 군주립헌의 길간의 투쟁도 객관적으로 불가피한 것이었다. 말하자면 혁명의 당면한 발전의 **길을 선택**하여야 하였는데 이 선택을 결정한 것은 물론 이러저러한 집단의 의사가 아니라 혁명적계급들과 반혁명적계급들의 력량이였다. 력량은 오직 투쟁가운데서만 측정하며 시험할수 있었다. 불리건국회를 보이코트하는 구호는 또한 군주립헌의 길을 반대하는 직접적인 혁명투쟁의 **길을** 위한 투쟁구호였다. 물론 이 군주립헌의 길에서도 투쟁은 가능하였으며 또 가능할뿐아니라 불가피한 것이였다. 군주립헌의 기초우에서도 혁명의 계속과 혁명의 새로운 양양의 준비가 가능하며 군주립헌의 기초우에서도 혁명적사회민주당의 투쟁은 가능하며 또 의무적이다. — 악셀로드와 플레하노브가 일찍 1905년에 그렇게도 열심히 그러나 그렇게도 시기에 맞지 않게 증명해온 이 초보적진리는 지금도 여전히 진리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력사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였다. 악셀로드나 플레하노브가 톤한것은 《그런 쟁마》가 아니였다. 다시말하면 그들은 투쟁하고있는 력량들이 해결하도록

역사적으로 제기된 문제를 독일사회민주당의적교과서의 최근 판에서 취한 문제로 대체하였다. 가장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의 투쟁의 길을 선택하기 위한 투쟁은 역사적으로 불가피하게 당면에 박두하였다. 낡은 정권이 로씨야의 첫번째 대의제기관을 소집하여 일정한 기간(아주 짧은 기간일지도 모르며 비교적 장기간일지도 모른다.)에 혁명을 군주립헌의 길로 옮기게 될 것인가 아니면 인민이 직접적인 공격으로써 낡은 정권을 소탕하거나 적어도 동요시키며 혁명을 군주립헌의 길로 옮기지 못하게 하고 따라서 군중의 직접적인 혁명투쟁의 길을 보장(이것도 역시 비교적 짧거나 비교적 긴 시일내에)하게 될 것인가? 악셀로드와 플레하노프가 보지 못한 이러한 문제가 1905년 가을에 로씨야의 모든 혁명적계급앞에 역사적으로 제기되었던 것이다. 적극적인 보이프트에 대한 사회민주당의 선전은 곧 이 문제를 설정하는 방식이었으며 무산계급정당이 이 문제를 의식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었으며 투쟁의 길을 선택하기 위한 투쟁의 구호였다.

적극적보이프트의 선전자들인 볼셰위크는 역사에 의해 객관적으로 설정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였다. 1905년의 10~12월투쟁은 실로 투쟁의 길을 선택하기 위한 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승리할 때도 있었고 실패할 때도 있었다. 즉 처음에는 혁명적인민들이 우세를 차지하였으며 낡은 정권으로부터 혁명을 군주립헌의 궤도로 즉시 옮길 가능성을 박탈하였으며 경찰적-자유주의형의 대의제기관 대신에 순 혁명적유형의 대의제기관인 노동자대표소베트 등을 건립하였다. 10~12월간의 시기는 대중의 최대한의 자유, 최대한의 자주적활동의 시기였으며 인민의 공격에 의하여 군주립헌적인 기관, 법률 및 기타 장애물이 일소된 거초우에서 또한 구정권이 벌써 무력하게 되고 한편 인민의 새 혁명정권(노동자, 농민, 병사대표조

베트 등)이 아직 낡은 정권을 완전히 대체할 충분한 력량이 없는 《정권공백기》의 기초우에서 전개된 가장 광범하고 급속한 로동운동의 시기였다. 12월투쟁의 결과는 이와 달랐다. 낡은 정권은 인민의 공격을 물러치고 자기의 진지를 확보하고 승리하였던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 승리를 결정적인 승리라고 인정할 리유는 그당시에는 아직 없었다. 1906년 여름의 허다한 분산적이고 국부적인 군사봉기와 파업은 1905년 12월봉기의 계속이었다. 윗때국회보이프트³⁵⁸의 구호는 이런 봉기를 집중시키며 편합시키기 위한 투쟁구호였다.

그러므로 불리긴국회보이프트에 대한 로씨야혁명의 경험을 연구하여 얻은 첫째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보이프트의 객관적내용은 력사에 의해 일정에 제기된 가까운 장래에 있어서의 발전의 길의 형태를 위한 투쟁이며 로씨야에서 첫번째 대회의 소집은 낡은 정권이 하게 될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자주적인 인민정권이 하게 될것인가를 둘러싼 투쟁이며 직접적인 혁명의 길을 걸을것인가 아니면(일정한 기간) 군주립헌의 길을 걸을것인가 하는 투쟁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나서고있는 문제는 문헌가운데서와 본 문제의 토의시에 항상 표현되고있는 보이프트란 구호의 간단명료성 및 《직선성》에 관한 문제이며 또한 직선적발전의 길과 곡선적발전의 길에 관한 문제이다. 낡은 정권을 직접적으로 뒤엎거나 적어도 약화시키며 인민들이 직접적으로 새로운 정권기관을 건립하는것은 의심할바없이 가장 직접적이며 인민에게 가장 유리한 길이기는 하나 그대신 가장 큰 힘을 요하는 길이다. 력량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면 직접적인 정면공격에 의해서도 승리할수 있다. 력량이 부족할 때에는 우회, 대기, 굴곡, 퇴각 등등의 길도 요구될수도 있다. 군주립헌의 길은 물론 아직은 혁명을 조금도 배척하지 않는다. 이 길은 혁명적

요소를 간접적으로 역시 준비, 발전시키기는 하나 비교적 장구하며 비교적 굴곡적인 길이다.

멘쉐위크의 모든 문헌 특히 1905년(10월이전)의 문헌에 판통되고있는것은 볼셰위크의 《직선성》에 대한 비난과 력사발전의 굴곡적인 길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는것을 볼셰위크들에게 가르치는 그것이다. 멘쉐위크적문헌의 이 특징은 말은 귀밀을 먹으며 불가강은 가스빠해로 흐른다는 논의처럼 의심할 여지없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방법으로써 논쟁되는 문제의 실질을 혼란시키는 논법의 표본인것이다. 력사는 보통 굴곡적인 길을 따라 발전한다는것과 맑스주의자는 반드시 력사의 가장 복잡하고 가장 기이한 굴곡적인 길을 참작할줄 알아야 한다는것은 논쟁할 여지없는것이다. 그러나 력사가 직접적인 길을 선택할것인가 아니면 굴곡적인 길을 선택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투쟁하는 력량들의 해결에 맡기고있는 때에 이 논쟁할 여지없는것의 반복적설명으로써는 맑스주의자는 어떻게 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수 없는것이다. 이런 정황이 발생한 순간이거나 또는 시기에 일반적인 력사의 곡절성만 논의하는것으로써 회피하는것은 바로 그가 갑축에 든 사람²³²이 되어 말은 귀밀을 먹는다는 이런 진리를 주무르는데 몰두하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러나 혁명적시기라는것은 주로 투쟁하는 사회력량간의 충돌이 직선적발전의 길과 비교적 아주 장기간에 걸친 굴곡적발전의 길중에서 그 나라가 어느 길을 선택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비교적 짧은 기간에 해결하는 바로 그러한 력사적시기인것이다. 굴곡적인 길을 고려할 필요성은 결코 맑스주의자들이 대중의 력사의 결정적순간에 그들에게 직선적인 길이 우월하다는것을 설명해줄줄 알아야 하며 직선적인 길을 선택하기 위한 투쟁에서 대중을 도와줄줄 알아야 하며 그런 투쟁구호 등등을 줄줄 알아야 한다는것을 조금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오직 만회할수 없는 속물들과 아주 우둔한 현학자들만이 직선적인 길 대신에 굴곡적인 길을 확정한 결정적인 역사적전투가 **결속된후** 직선적인 길을 위해 끝까지 투쟁한 사람들을 비웃을수 있을것이다. 이것은 1848년에 맑스의 혁명구호와 혁명의 직선성에 대한 트라이취케따위 독일국가경찰의 역사학가들의 비웃음과 같은것이다.

력사의 굴곡적인 길에 대한 맑스주의의 태도는 본질에 있어서 타협에 대한 그의 태도와 일치하다. 력사의 온갖 굴곡적인 전환은 곧 타협이다. 즉 이미 새 사물을 완전히 부정할만큼 충분한 힘이 없는 낡은 사물과 아직 낡은 사물을 뒤엎을만큼 충분한 힘이 없는 새 사물간의 타협인것이다. 맑스주의는 타협을 절대 부정하지는 않는다. 맑스주의는 타협을 리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맑스주의가 찬 그리고 행동하는 역사적력량으로서 전력을 다하여 타협과 두쟁한다는것을 조금도 배제하지 않는다. 모순인듯한 이것을 파악할줄 모르는자는 맑스주의를 추호도 모르는자이다.

엥겔스는 일찍 품문의 블랑끼파망명자들의 선언에 관한 논문(1874년)에서 타협에 대한 맑스주의의 태도를 아주 간단 명료하게 표명하였다①. 품문의 블랑끼파망명자들은 그들의 선언에서 자기들은 어떠한 타협이든지 허용하지 않는다고 썼다. 엥겔스는 이 선언을 비웃으면서 문제는 **형세가 우리에게 운명지어주는**(혹은 형세가 우리에게 강요하는—나는 원문을 참조할수 없어서 기억에 의하여 인용할수밖에 없게 되었다는것을 독자들에게 사과해야겠다.) **타협을** 리용하는것을 거부하는데 있는것이 아니라 무산계급의 진정한 혁명목적을 명확히 인식

① 이 논문은 독일논문문집 《신문 <인민국가>의 국제문제논문집》(《Internationales aus dem <Volksstaat>»)에 수록되었다. 로문역본: 《신문 <인민국가>의 논문집》 《지식》출판사판.

하고 온갖 정황, 굴곡적인 길 및 타협들을 통하여 이런 목적에 도달할줄 아는데 있다³⁵⁷고 하였다.

오직 이러한 관점에서만 군중들에게 제출된 보이프르트구호의 간단성, 직선성 및 명확성을 평가할수 있다. 이 구호의 상술한 모든 성질이 좋다는것은 그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다만 이 구호가 적용되는 객관형제가운데서 직선적발전의 길이나 아니면 굴곡적발전의 길이나를 택하기 위한 투쟁조건들이 존재하는 한에 있어서만이다. 불의긴국회시기에 이 구호가 노동자당의 정확하고 유일한 혁명적구호였다는것은 그것이 가장 간단하고 가장 직선적이며 가장 명확한 구호였기때문이 아니라 당시 역사적조건이 노동자당앞에 굴곡적인 군주립헌의 길을 반대하고 간단하고 직선적인 혁명의 길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참가할 임무를 제기하였기때문이다.

그런데 그당시에 이 특수한 역사적조건들이 존재하였다고 하는것의 표준은 무엇인가? 객관형제에 간단하고 직선적이고 명확한 구호를 텅 빈 구호가 아니라 실제투쟁에 유일하게 알맞는 구호로 되게 할수 있는 특수성이 있었다고 하는 주되는 표식은 무엇인가? 이제 이 문제에 넘어가기로 하자.

2

이미 끝난(적어도 직접적이고 직선적인 투쟁형태에서는 이미 끝난) 투쟁을 돌이켜보면 그당시의 서로 모순되는 각이한 현상과 징조들로부터 일반성을 띤 결론을 아주 쉽게 얻을수 있다. 투쟁의 결과는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며 온갖 의문을 아주 간단하게 제거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투쟁전의 정세를 분석하는데 유리한 현상의 징조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 하면 우리는 역사의 경험교훈을 제3차국회문제에 운용하려 하기때문이다. 우리는 우에서 이미 가장 광범하

고 보편적이고 강력하고 급격한 혁명적양상은 1905년 보이프트 성공의 조건이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이제는 먼저 투쟁의 특히 강력한 양상은 보이프트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다음으로 특히 강력한 양상은 어떤 특징과 특별한 표시가 있는가를 연구하여야 한다.

보이프트는 어떠한 기관이 현존하는 토대에서의 투쟁이 아니라 그의 건립을 반대하는 투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관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오직 이미 존재하고 있는 정권 즉 낡은 정권 가운데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즉 보이프트는 낡은 정권을 직접 뒤엎는데 돌려져 있는 투쟁수단이며 혹은 적어도 낡은 정권을 뒤엎기 위한 공격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낡은 정권이 이 기관을 건립할 수 없도록, 그것을 실현할 수 없도록 그 낡은 정권을 약화시키는데 돌려져 있는 투쟁수단인 것이다^①. 따라서 보이프트는 그 성공을 위해서는 낡은 정권과의 직접적인 투쟁과 낡은 정권을 반대하는 봉기와 많은 경우에 낡은 정권에 대한 대중적인 불복(대중적 불복은 봉기를 준비하는 조건의 하나이다.)을 요구한다. 보이프트는 낡은 정권의 승인을 거부하는 것이나 말로만의 거부가 아니라 실제상의 거부이다. 즉 조직들의 호소와 구호들에서만 표현되는 거부가 아니라 낡은 정권의 법률을 계통적으로 파괴하며 새롭고 비합법적인 그러나 실제에 존재하는 기관 등등을 계통적으로 건립하는 **인민대중**의 일정한 운동에서 표현되는 거부인 것이다. 그러므로 보이프트와 광범한 혁명적양상과의

① 이 글에서 말하는 것은 모두 적극적인 보이프트 즉 낡은 정권의 각종 사업에 단순히 참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낡은 정권을 공격하는 것이다. 불의진국회보 보이프트시기의 사회민주당의 문헌을 읽어보지 못한 독자들에게 사회민주당은 그 당시 직접 적극적인 보이프트를 말하였으며 소극적인 보이프트를 건결히 반대하였으며 심지어 적극적인 보이프트를 무장 봉기와 건결히 결부시켰다는 것을 상기시켜야 한다.

관계는 매우 명확하다. 즉 보이프트는 그 어떤 기관의 조직 형태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자체를 거부하는 가장 견결한 투쟁수단이다. 보이프트는 낡은 정권에 대해서 전쟁을 직접 선포하는 것이며 낡은 정권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인 것이다. 광범한 혁명적양양이 없다면, 낡은 합법적범위를 보편적으로 벗어난 대중적결기가 없다면 보이프트의 성공에 대해서는 굳은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1905년 가을의 양양의 특징과 표식에 언급할 때 우리는 그당시에 적들을 부단히 공격하고 추격한 혁명의 대중적이고도 부단한 **진공**이 발생하였다는것을 보아내기 어렵지 않다. 탄압은 운동을 저지시킨 것이 아니라 도리어 확대시켰다. 1월 9일 이후에는 일대 파업의 물결이 일어났고 뚝지에서는 시가보투전이 일어났고 《뽕쑤진》의 봉기가 발생하였다. 출판, 직업동맹, 교육 등 각 부문에서는 낡은 정권이 규정한 합법적울타리가 련이어 파괴되었는바 이것도 절대 《혁명가》들에 의해서만 파괴된 것이 아니고 보통사람들에 의하여 파괴된 것이다. 왜냐하면 낡은 정권은 확실히 약화되어있었고 확실히 로쇠하여 더 유지할수 없었기때문이다. 양양의 력량을 특히 뚜렷하고 틀림없이(혁명적조직의 각도에서) 보여준것은 혁명가들의 구호들이 반향을 받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생활보다 완전히 뒤떨어져있었다는 것이다. 1월9일사건도 그후의 대중적인 파업과 《뽕쑤진》호의 봉기도 모두 혁명가들의 직접적인 호소를 초월하였다. 혁명가들의 호소로서 대중들이 소극적으로, 침묵으로, 투쟁의 거부로써 맞이한 **그런 호소라고는 1905년에는 없었다.** 그런 정황하에서의 보이프트는 일촉즉발의 분위기의 자연적인 **보충물**이었다. 이 구호는 당시 아무것도 《꾸며내지》않았다. 이 구호는 다만 출판 전진하며 직접적인 공격으로 나아가는 양양을 정확하고도 충실하게 표달하였을뿐이다. 반대로 《꾸며

내는》자들은 다름아닌 우리의 멘셰위크들이었다. 그들은 혁명적양양을 피하면서 조서 또는 8월6일법률과 같은 짜리의 공허한 약속에 도취되어 군주립헌제어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참으로 믿고있었다. 참으로 멘셰위크들(빠르부스358)은 그당시 자기의 전술을 가장 광범하고 유력하고 급격한 혁명적양양의 토대우에서 제정한것이 아니라 군주립헌제어로 전환하겠다는 짜리의 약속을 토대로 하여 제정하였다! 이와 같은 전술이 가소롭고 가련한 기회주의였다는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보이프트에 대한 모든 멘셰위크적론의들에서는 혁명의 가장 풍부한 보이프트경험인 불리긴국회보이프트에 대한 분석이 조심스럽게도 포기되고있다는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나 혁명적전술에서 멘셰위크들의 이 가장 크다고 할수 있는 오유를 승인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오유의 근원은 혁명적양양을 현실로 만들었고 군주립헌제적전환을 텅 빈 경찰적약속으로 만든 객관정황을 료해하지 않은데 있다는것을 똑똑히 인식하여야 한다. 멘셰위크들이 오유를 범한 원인은 그들이 주관상에서 혁명적기분이 없이 문제를 취급하였기때문인것이 아니라 이 무능한 혁명가들의 사상이 객관적혁명정세에 뒤떨어졌기때문인것이다. 멘셰위크들이 범한 오유의 이런 원인은 자칫하면 서로 혼동하기 쉬우나 맑스주의자에게 있어서는 그것을 혼동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

보이프트와 로씨야혁명의 일정한 시기의 특수한 역사적조건과의 관계는 또 하나의 방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1905년 가을과 1906년 봄에 있는 사회민주당의 보이프트운동의 정치적내용은 어떠한것이였는가? 이 운동의 내용은 물론 보이프트라는 말을 반복하거나 또는 선거에 참가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데 있지는 않았다. 그 내용은 전제정치가 내놓은 우회적이고 굴곡적인 길을 무시하는 직접적인 공격에로의 호소에만 그치는 않는다. 그럴뿐더러 지어는 이 제기된 문제와 병행해서 아니 오히려 전체 보이프트선동의 중심문제로서 제기되었것은 **립헌적환상과의 투쟁**이었다. 이 투쟁은 그야말로 보이프트의 산정신이였다. 보이프트파의 연설과 그들의 온갖 선동을 상기하며 보이프트파의 가장 중요한 결정서를 보기만 한다면 이러한 논점의 정확성을 확신하게 될것이다.

멘쉐위크들로서는 도저히 보이프트의 이 면을 리해할수 없었던것이다. 그들은 립헌주의가 방금 나타나고있는 때에 립헌적환상과 투쟁하는것은 불합리하며 무의미하며 《무정부주의》라고 항상 인정하였다. 멘쉐위크들의 이런 견해는 멘쉐위크들의 문헌에서는 더 말할것도 없고 스투홀름대회291의 허다한 연설들에서—나의 기억에 의하면—특히 플레하노브의 연설들에서 명확히 표현되고있다.

일췌 보면 이 문제에서 멘쉐위크들의 립장은 이웃사람들에게 말은 귀밀을 먹는다고 거만하게 가르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확실히 론박할수 없는것으로 보일수도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립헌주의의 탄생기에 립헌적환상과의 투쟁을 선포하더니! 그래 이것이 무정부주의가 아니겠는가? 그래 이것이 황당무계한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말한다.

이러한 논의들에서 간단한 상식을 그럴듯하게 인증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의 용축화는, 로씨야혁명의 특수한 시기를 고의적으로 회피하는것, **볼리긴국회보이프트를 망각하는것**, 우리 나라의 과거나 미래의 전반 혁명을 립헌주의를 산생하는 혁명으로 일반적으로 표시함으로써 우리 나라 혁명이 경과한 길의 구체적단계들을 슬쩍 뒤바꾸어놓는것 등에 근거하고있다. 이것이 바로 플레하노브처럼 변증법적유물론의 방법을 가장

열광적으로 말하여온 사람들이 이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의 표본인 것이다.

물론 우리 나라의 자산계급혁명도 대체로 온갖 자산계급혁명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령헌제도를 건립하는 과정에 불과하다. 이것은 진실이다. 이것은 이리저리한 자산계급민주주의적 강령, 이론, 전술 등등의 가짜사회주의적보조를 폭로하는데 유익한 진실이다. 그러나 자산계급혁명시기에는 노동자당이 국가를 어떠한 령헌주의에로 이끌어야 하며 일정한 혁명시기에는 노동자당이 일정한(즉 공화제적) 령헌주의를 위하여 **도대체 어떻게** 투쟁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일단 봉착하였을 때 당신들은 그 진실로부터 무슨 리익을 얻어낼수 있는가? 얻어낼수 없다. 말은 귀밑을 먹는다는 이 신념이 사람들로 하여금 적당한 말을 택하여 그것을 타고다닐줄 알게 할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셀로드와 플레하노브가 즐기는 그런 진실은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당신들을 계발할수 없을것이다.

불췌위크들은 1905년과 1906년초에 령헌적황상들과의 투쟁은 헌시기의 구호로 되여야 한다고 말하였었다. 왜냐 하면 바로 이 시기에 객관형세는 최근시기에 직접적인 혁명투쟁이라는 직선적인 길, 직접 혁명에 의하여 완전한 민주화를 기초로 하는 대의제기관의 건립이라는 직접적인 길이 승리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주립헌제 또는 《국회》식의 경찰적《령헌적》(괄호안의!)기관의 우회적이고 굴곡적인 길이 승리할것인가 하는 문제를 투쟁하는 각 사회력량의 해결에 내맡기고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객관적형세가 이 문제를 제기한것인가 아니면 불췌위크들이 이론적장난에서 그것을 《꾸며냈는》가? 로씨야혁명의 역사는 지금 벌써 이 문제에 대하여 대답을 주었다.

1905년 10월의 투쟁은 곧 혁명을 군주립헌의 궤도로 전

환시키려는것을 반대하는 투쟁이었다. 10~12월시기는 곧 두 바쵸브282와 스톨리벤86 헌법의 가져립헌주의와는 전혀 다른 무산계급적인, 진짜민주주의적인, 광범하고 용감하고 자유로운, 실지로 인민의 의사를 표달한 립헌주의를 실현하는 시기였다. 진정으로 민주주의적인 립헌주의(즉 넓은 정권 및 이와 련계있는 추악한것들을 완전히 숙청한 기초우에 존재하는 립헌주의)를 위한 혁명투쟁을 진행하려면 인민에 대한 경찰식군주립헌의 유혹을 가장 견결히 반대하여야 한다. 그러나 간단한 도리도 사회민주당내의 보이프트반대자들은 도저히 리해할 수 없었다.

지금 우리앞에는 로씨야혁명발전에서의 두 시기가 아주 명료하게 나타나고있다. 그것은 양양의 시기(1905년)와 쇠퇴의 시기(1906~1907년)이다. 첫시기는 인민의 자주성이 최대한으로 개화한 시기이며 모든 주민계급이 자유롭고 광범하게 조직된 시기이며 출판이 최대한의 자유를 가진 시기이며 인민이 넓은 정권, 그 기관 및 명령을 최대한으로 무시한 시기인바 이러한 모든것은 관료주의적으로 인정된, 정식적인 법규나 조례로써 표현된 립헌주의라고는 전혀 없는 정황하에서 실현되었다. 다음에는 두바쵸브와 스톨리벤에 의하여 작성되고 두바쵸브와 스톨리벤에 의하여 승인되고 두바쵸브와 스톨리벤에 의하여 수호되는—이런 표현을 용서하라—《헌법》이 나오게 되자 인민의 자주성, 조직성, 출판자유 등등이 가장 미약하게 발전하며 부단히 쇠퇴하는 시기가 나타났다.

지난날을 돌이켜본다면 그 모든것이 그렇게도 잘 보이며 단순하고 또 명확하게 보이는 **오늘에 와서는** 사태의 군주립헌적궤도에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무산계급의 혁명적투쟁의 합법적성과 필요성 또는 립헌적환상들을 반대하는 투쟁의 합법적성과 필요성을 감히 부인할 현학자는 아마 한사람도 없을것

이다.

지금에 와서는 얼마간 학식이 있는 역사학자로서 1905년부터 1907년 가을까지의 로씨야혁명의 과정을 다음과 같은 두 시기 즉 《반립헌적》(이렇게 말할수 있다면) 양양의 시기와 《립헌적》최퇴의 시기로 인민이 자유를 쟁취하며 실현하고 경찰적립헌주의(군주립헌주의)를 반대하는 시기와 군주제적《헌법》에 의하여 인민의 자유를 압제하는 시기로 나누지 않을자는 아마 한사람도 없을것이다.

립헌적환상의 시기, 즉 제1차 및 제2차 국회의 시기가 우리에게 아주 명백하게 된 지금에는 립헌적환상을 반대한 혁명적 사회민주주의자들의 당시의 투쟁의 의의를 리해하기는 이미 어렵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1905년과 1906년초 **그당시**에는 자산계급진영내의 자유주의자들도 무산계급진영내의 멘셰위크들도 모두 이 점을 리해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제1차 및 제2차 국회의 시기는 모든 의미에 있어서 또 모든 점에 있어서 립헌적환상의 시기였다. 《어떠한 법률도 국회의 승인이 없이는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이 장엄한 약속은 이 시기에는 위반되지 않았었다. 즉 헌법은 종이장우에 의연히 존재하고있었으며 그리하여 로씨야립헌민주당⁸⁴의 모든 노예적정신을 부단히 감동시키고있었다. 이 시기에 두바쑈브도 스톨리켄도 로씨야헌법을 구전제제도에 적용시키려고 애쓰면서 그것을 실지로 시험하고 적용하고 시행해보았다. 두바쑈브씨와 스톨리켄씨는 이 시기의 가장 권세있는 사람들로 생각되었으며 그들은 《환상》을 현실로 전환시키려고 백방으로 애썼다. 환상은 결국 환상이었다. 역사는 혁명적사회민주당의 구호의 정당성을 전적으로 확증하였다. 그러나 《헌법》을 실현하려고 시도한자는 비단 두바쑈브와 스톨리켄 일파들뿐이 아니었으며 또한 군주에게는 책임이 없다느니 폭행의 책임이 그에

게 있다고 인정하는것은 불손한것이라느니 하고 군주를 변호하면서 《헌법》을 찬양하고 종북처럼 애를 쓴것은(제1차국회에서 로지체보씨처럼) 럽헌민주당의 노북들뿐이 아니었다. 그들은 뿐아니라 광범한 인민대중들도 이 시기에 사회민주당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얼마간 《헌법》을 믿었으며 국회를 믿어온것은 사실이였다.

서구라파의 전체 민족들이 때로는 자산계급민족주의, 유대인배척주의, 배외주의 등의 우상을 숭배하는것처럼 로씨야 혁명에서의 럽헌적환상의 시기는 전국적으로 자산계급적우상을 숭배하던 시기였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오직 사회민주당만이 자산계급의 기만에 미혹되지 않았으며 오직 그만이 럽헌적환상의 시기에 럽헌적환상과의 투쟁의 기치를 시종 추켜들었다는것이 그의 공적인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어째서 보이프트가 럽헌적환상을 반대하는 특수한 투쟁수단으로 되였는가?

보이프트에는 모든 맑스주의자들이 보기만 하여도 당장 질색하는 한가지 특성이 있다. 선거보이프트는 즉 의회투쟁에 대한 거부이며 소극적인 거부, 기권, 회피로 보이지 않을수 없는 그 어떤것이다. 이렇게 본것은 독일 표본에서만 배운 빠르부스였는데 그는 적극적인 보이프트는... **결국에는 보이프트이기때문에** 역시 나쁜것이라는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면서 1905년 가을에 격분하여 쓸데없이 떠들었었다. 혁명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고 또 갈수록 자유주의자로 되고있는 마르도브도 지금까지 문제를 이렇게 보고있다. 신문 《동지》286에 실린 그의 최근의 논문은 그가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답게 문제를 제기하는것조차 모른다는것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맑스주의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보이프트의 그

특성은 그런 투쟁수단을 산생시킨 그 시대의 특수성에 의해서만 완전히 설명되는 것이다. 군주제적제1차국회 즉 불리긴국회는 인민들을 혁명에서 리탈시키려는 미끼였다. 이 미끼는 럽현주의라는 겉옷을 입은 허수아비였다. 모두다 이 낚시에 걸리려고 하였다. 어떤자들은 탐욕적인 계급적리해관계로 해서, 어떤자들은 심중하지 못함으로 해서 불리긴국회의 허수아비를 붙잡으려 하였으며 뒤이어 윗배국회의 허수아비를 붙잡으려 하였다. 모두가 유혹당하였고 모두가 진정으로 믿었다. 선거에의 참가는 공민의 보통의무의 평범한, 단순한 리행이 아니었다. 그것은 군주립헌을 신성화하는 것이었으며 직접적인 혁명적길로부터 군주립헌적길에로의 전환이었던 것이다.

사회민주당은 그러한 시기에 항의와 경고의 기치를 가장 힘있게, 가장 뚜렷이 휘날리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이것은 선거에의 참가를 거부하는것을 의미하였으며 자기가 참가하지 않을뿐아니라 인민들에게도 참가하지 말것을 호소하며 낡은 정권에 의해 설치된 기관의 기초우에서 활동하는것이 아니라 낡은 정권의 타도를 호소하는것을 의미하였다. 《립헌》군주제라는 자산계급적-경찰적우상에 대한 전인민적승배로 하여 무산계급정당인 사회민주당은 이 우상을 반대, 폭로하는 자기의 견해를 전국인민앞에 《표명》하여야 하였으며 이 우상화를 구현하는 기관의 건립을 반대하여 전력을 다하여 투쟁하여야 하였다.

바로 여기에 직접적인 성공으로 끝난 불리긴국회보이프트뿐아니라 또한 외견상 실패로 끝난 윗배국회보이프트까지도 그 완전한 력사적정당성이 있다. 어째서 그것은 외견상의 실패에 불과하였으며 어째서 사회민주당은 우리 나라 혁명의 군주립헌제적전환을 반대하는 자기의 항의를 끝까지 고수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하는것이 지금에 와서는 명백하다. 그 전환은

사실상 막다른골목에로의 전환이었다. 원래 군주립헌적환상은 다만 낡은 정권이 이런 《헌법》의 폐지에 편토록 하기 위한 서막, 간판, 장식물, 눈가림에 지나지 않았다. …

사회민주당은 《헌법》으로써 자유를 압제하는데 대해 끝까지 항의하여야만 하였었다고 우리는 말하였다. 이 《끝까지》라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사회민주당이 반대하여 싸워온 기관이 사회민주당의 의사와는 반대로 사실로 되기전까지를 의미하며 필연적으로 혁명의 쇠퇴, 혁명의 패배를 의미하게 된 일정한 기간 로써야혁명의 군주립헌적전환이 사회민주당의 의사와는 반대로 사실로 되기전까지를 의미한다. 령헌적환상의 시기는 타협을 시도하던 시기였다. 우리는 타협을 반대하여 투쟁하였으며 또 전력을 다하여 투쟁하여야만 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정세가 우리 투쟁의 실패의 대가으로써 우리들에게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강요한 이상 제2차국회에 참가하지 않을수 없었으며 타협을 고려하지 않을수 없었다. 얼마동안 고려하여야 하는가 하는것은 물론 별개의 문제이다.

이 모든것으로부터 제3차국회보이프트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어떠한 결론이 나오는가? 령헌적환상의 초기에 필요한 보이프트는 이 시기의 말기에도 필요하다라는 그것일가? 이것은 《류추사회학》적인 《재간부리기》일 것이며 신중한 결론은 아닐것이다. 로씨야혁명의 초기에 보이프트가 가졌던 그 내용은 지금에 와서는 있을수 없게 되었다. 령헌적환상을 반대할것을 인민들에게 경고하는것도 혁명이 군주립헌의 막다른길로 전환하는것을 반대하여 투쟁하는것도 지금에 와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 있었던 보이프트의 정수는 있을수 없게 되었다. 만약 다시 보이프트한다면 아무튼 다른 의의를 가지게 될것이며 아무튼 다른 정치적내용을 가지게 될것이다.

이밖에 우리가 고찰한 보이프트의 그 역사적특수성은 제3차국회보이프트를 반대하는 하나의 이유를 준다. 령헌제에로의 전환의 초기에는 전국의 주의력은 필연코 국회에 집중되어 있었다. 우리는 막다른길에로의 주의력의 집중을 보이프트로써 반대하여 투쟁하였고 또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무지, 미숙, 박약 혹은 탐욕적반혁명성의 소산이었던 열중을 반대하여 투쟁하였고 또 투쟁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금에 와서는 일반적국회 혹은 제3차국회에 대한 전국적인 열중은 고사하고 지어 좀 일반적이고 좀 광범한 열중조차도 운운할수 없게 되었다. 이 면으로 말하면 보이프트는 필요하지 않은 것이다.

4

그러므로 보이프트를 적용할수 있는 조건은 의심할바없이 당시의 객관적형세로부터 찾아야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1907년 가을과 1905년 가을의 형세를 비교할 때 우리는 지금 보이프트를 선포하는것은 근거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수 없다. 직접적혁명의 길과 《굴뚝적》군주립헌의 길간의 호상관계의 견지에서나 대중적양양의 견지에서나 령헌적환상과의 투쟁의 특수한 임무의 견지에서나 당면의 형세는 2년전과는 판이하다.

그당시에는 력사의 군주립헌제적인 전환은 경찰적약속에 지나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는 이 전환은 사실로 되었다. 이 사실을 솔직하게 승인하려 하지 않는것은 진리를 두려워하는 가소로운 행위이다. 그러나 이 사실을 승인하는것이 곧 로씨야혁명에 끝났다고 승인하는것이라고 생각하는것도 잘못일것이다. 아니다, 아직 이런 결론을 지을 근거가 없다. 맑스주의자는 직접적인 혁명적발전의 길을 위한 투쟁이 객관형세에 의

하여 지시되는 때에 그것을 위하여 투쟁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다시한번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이 이미 사실로 된 골목적인 길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것은 아니다. 이 면으로부터 볼 때 로씨야혁명의 행정은 이미 완전히 확정되었다. 혁명초기에는 운동시간이 짧기는 하나 매우 광범하고 놀랄만치 빠른 양상을 보았으며 그후 1905년의 12월봉기로부터는 운동이 극히 완만하기는 하나 줄곧 쇠퇴에 들어갔다는것을 우리는 보았다. 즉 초기에는 대중의 직접적인 혁명적투쟁의 시기를, 그 후기에는 군주립헌적전환의 시기를 보게 된것이다.

이것은 이 후자의 전환이 최종적전환임을 의미하는가? 혁명은 끝나고 《립헌적》시기가 시작되었다는것을 의미하는가? 새 양상을 기대하는것도 그러한 양상을 준비하는것도 근거가 없다는것을 의미하는가? 우리 강령의 공화제적성격을 포기하여야 한다는것을 의미하는가?

결코 그런것은 아니다. 그러한 결론들은 우연한 론거로써 노예근성과 아침을 변명하며 하는 우리 립헌민주주의자들과 같은 자유주의적속물들만이 내릴수 있는것이다. 아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의 전체 강령과 우리의 전체 혁명적관점을 완전히 옹호하면서 직접적인 호소를 당면의 객관형세에 적응시켜야 한다는것을 의미할뿐이다. 혁명의 불가피성을 선전하며 모든 면에서 연료를 계통적으로 또 꾸준히 장만하며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 나라 혁명의 성과적인 시대의 혁명적전통을 조심성있게 보존하며 자유주의적기생충들의 영향을 일소하고 그 전통을 잘 보호, 육성함과 동시에 우리는 평범한 군주립헌적전환가운데서 평범하게 사업하는것도 거절하지 않는다.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은 오직 이것뿐이다. 우리는 새로운 광범한 양상을 준비하여야 하지만 정황여하를 불문하고 보이프트의 구호를 내세울 하등의 근거도 없는것이다.

우리가 이미 말한바와 같이 보이프트는 **적극적인** 보이프트만이 당면의 로씨야에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즉 선거참가를 소극적으로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공격의 임무를 위하여 선거를 무시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이프트는 이러한 의미에서 불가피적으로 가장 맹렬하고 견결한 공격에로의 호소와 같게 된다. 지금 광범하고도 일반적인 양양—그것이 없이는 이런 호소는 아무런 의의도 없다—이 존재하는가? 물론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호소》에 대하여 말한다면 이 점에서 지금의 형세와 1905년 가을의 형세간의 차이는 특히 명백하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이미 지적한바와 같이 지난 일년동안에 대중이 침묵으로써 맞이하였던 그런 호소는 없었다. 대중의 공세는 조직들의 호소들보다 앞서 나아갔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허다한 호소들이 계통적으로 대중의 반항을 받지 못하게 된** 그런 혁명휴식기에 처해있다. 윗베국회를 소탕하자는 1906년초의 호소가 그러하였으며 제1차국회해산후 1906년 여름의 봉기 호소가 그러하였으며 제2차국회의 해산 및 1907년 6월3일정변에 대응하여 **투쟁하라는 호소**가 그러하였다. 이 마지막 호소들과 관계되는 우리 중앙위원회의 격문³⁵⁹을 가지고 보자. 당신들은 이 격문에서 각지의 조건에 따라 가능한 형태(시위행진, 파업, 전제제도의 무력과의 공개적투쟁)로써 투쟁하라는 직접적인 호소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은 말로만의 호소였다. 1907년 6월 끼예브와 흑해 함대에서의 무장봉기는 행동의 호소였다. 그 어느 호소나 아무런 대중적반항을 받지 못하였다. 혁명에 대한 반동세력의 가장 로물적이고 직접적인 진공—두 국회의 해산과 정변—이 그당시 양양을 야기시키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보이프트를 선포하는 형식으로써 호소를 당장 반복할 근거는 대체 어디에 있는가? 그러한 조건하에서는

보이프트《선포》가 공허한 웨침으로 될수 있다는것이 객관적 형세라는것은 명백하지 않은가? 투쟁이 진행되며 확대되며 자라나며 사면팔방으로부터 박근하고있을 때 보이프트를 《선포》하는것은 정당하고 필요한것이며 전투적호소를 내리는것은 혁명적무산계급의 의무로 되는것이다. 그러나 이런 투쟁을 꾸며 내거나 이런 투쟁을 한갖 호소만으로써 불려일으킬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보다 직접적인 여러 경우에 비추어 시험적으로 제출한 허다한 전투적구호들도 아무런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우리는 응당 전투적호소들의 실현조건이 없이는 무의미한 것으로 되는 그 구호를 《선포》함에 필요한 유력한 근거를 찾아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적무산계급에게 보이프트구호의 정당성을 확신시키려는 사람이라면 한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혁명적역할을 논 말들에만 미혹되어서는 안된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와 같은 구호를 적용할수 있는 객관적조건을 자세히 고려하여야 하며 또 그런 구호를 제기하는것은 이미 광범하고 일반적이고 강력하고 급격한 혁명적양상의 조건들의 출현을 벌써 간접적으로 예견함을 의미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이러한 시기에 있어서는, 즉 혁명의 일시적인 휴식기에 있어서는 그러한 조건은 도저히 간접적으로 예견할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직접적이고도 명확히 알아야 하며 자기자신도 전체 노동계급도 그것을 명백히 알도록 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큰소리만 치며 그 말의 진정한 함의를 알지 못하거나 솔직히 또 허심하게 사물을 그 이름대로 감히 부르지 못하는 사람으로 될수 있다.

5

보이프트는 로씨야혁명에서 사변이 가장 많은, 가장 영웅

적인 시기의 우량한 혁명전통의 하나이다. 우에서 말한바와 같이 우리의 임무의 하나는 이 전통을 잘 보호하고 배양하며 자유주의적(또는 기회주의적)기생충들의 영향을 숙청하는 것이다. 이 임무의 내용을 옳게 규정하며 흔히 있을수 있는 꾀해와 오해를 제거하기 위하여서는 이 임무를 다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맑스주의는 객관형세의 분석과 객관적진화행정의 분석에 있어서의 완전한 과학적인 행정성을 대중의(물론 또 일부 계급과의 련계를 잘 모색해내며 이 련계를 실현할줄 아는 개인, 단체, 조직, 정당의) 혁명적의력, 혁명적창발성, 혁명적주동성의 의의에 대한 가장 결정적인 인정과 훌륭히 결합시키고있는 점에서 다른 모든 사회주의적리론과 구별된다. 맑스는 자기의 전체 역사관에 의하여 인류발전의 혁명적시기들에 대하여 아주 높은 평가를 하였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있어서야말로 소위 평화적인 발전의 시기에 서서히 축적되어오던 많은 모순들이 해결되는것이다. 바로 그러한 시기에 있어서야말로 사회생활의 형태를 확정하는데 대한 각종 부동한 계급의 직접적인 작용이 가장 힘있게 나타나며 이후에 혁신된 생산관계의 기초우에서 장기간 고정되어있을 정치적《상부구조》의 기초들이 건립되는것이다. 그리하여 맑스는 자유주의자산계급의 리론가들과는 달리 바로 그러한 시기를 《정상적》길에서의 리탈, 《사회적병태》의 표현, 극단과 오유의 비참한 결과로 본것이 아니라 인류사회의 역사에서 가장 생기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결정적인 시기로 보았던것이다. 맑스와 엥겔스의 평생사업의 돌출한 중심점은 그들이 1848~1849년의 대중적혁명투쟁에 참가한 시기이다. 그들은 각국의 로동운동과 민주주의의 운명을 판단함에 있어서 늘 이 중심점에서 출발하였다. 그들은 부동한 각 계급의 내적본성과 그 경향을 가장 명

료하고 또 순수한 형태로 판단하기 위하여서도 늘 이 중심점으로 돌아가 연구하곤 하였다. 그들은 그후의 보다 세소한 정치적파벌, 정치적조직, 정치적인무와 정치적충돌을 항상 그 당시의 혁명시기에 근거하여 평가하였다. 쾰바르트와 같은 자유주의의 사상적두목들이 맑스의 활동과 저작중의 그러한 특징을 《망명계의 원한》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극력 증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경찰식자산계급적대학 과학계의 빈대들이 맑스와 엥겔스의 전체 혁명적세계관의 가장 불가분적인 구성부분을 망명생활에서 생긴 개인의 원한과 개인의 고난에 귀착시키는것은 워낙 이상한 일이다!

맑스는 자기의 한 서한에서(쿠겔만에게 보낸 서한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들이 연구하고있는 그 문제의 전지에서 볼 때 가장 특징적이며 특히 흥미있는 견해를 부대적으로 제기하였다. 그는 반동파들이 독일에서 1848년혁명시기의 추억과 전통360을 인민의 의식가운데서 거의 완전히 없애버리다싶이 했다는것을 지적하고있다. 여기에서 한 나라의 혁명적전통에 대한 반동파의 임무와 무산계급정당의 임무가 뚜렷하게 대조되고있다. 반동파의 임무는 이 전통을 없애버리며 혁명을 《광란의 자연발생적세력》(이것은 독일어 《dastolle Jahr》의 스트루웨식번역이다. 기실 그 의미는 《광란의 해》인데 이것은 독일의 경찰식자산계급적력사학자들이, 더 광범히는 독일의 교수식력사학자들이 1848년을 형용하는데 사용한 말이다.)으로 묘사하는데 있다. 반동파의 임무는 주민들로 하여금 혁명적시기가 산생시킨 풍부하고 다양한 그런 투쟁방식, 조직형적, 사상 및 구호들을 망각케 하는데 있다. 영국소시민근성의 미련한 찬양가들인 웹브부부181가 현장운동116을, 영국로동운동의 혁명시기를 단순한 아이들의 장난으로, 《청춘시기의 잘못》으로, 신중한 주의를 돌릴만한 가치가 없는 유치한 행동으로, 우연

하고 비정상적인 편향으로 묘사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일자산계급력사가들도 독일에서의 1848년을 경시하고 있다. 여태껏 가장 격렬한 증오를 일으킴으로써 여태껏 인류에 대한 자기 영향의 생명력과 힘을 증명하고 있는 프랑스대혁명에 대한 반동파의 태도도 바로 그러하다. 우리 나라 반혁명의 영웅들, 특히 스트루웨, 밀류프브, 끼제뵈찌르 및 그 일파와 같은 지난날의 《민주주의자》출신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로씨야혁명의 혁명적전통을 경쟁적으로 비렬하게 경멸하고 있는 것이다. 무산계급이 직접적인 대중투쟁에 의하여 구정권의 자유주의적종북들이 감탄하는 그러한 부분적인 자유를 쟁취한 때로부터 2년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 나라의 정론계에서는 벌써 럽헌민주당의 출판물의 배양하에서 **자유주의적(!)**이라고 자칭하는 일대 조류, 항상 우리 나라의 혁명, 혁명의 투쟁방법, 혁명적구호, 혁명적전통을 저급적인, 천박한, 유치한, 자연발생적인, 발광적인 등등의 그 어떤 것으로…십지어는 최악적인 것으로까지 묘사하여온 일대 조류가 형성되었다. …이 면에 있어서 밀류프브와 까피산스끼간의 거리는 불과 한걸음밖에 안된다! 이와는 반대로 처음에는 인민을 노동자농민대표쑤베트로부터 두바쑤브-스플리빈적국회어로 몰아내었고 지금에 와서는 인민을 10월당원⁸⁵들의 국회어로 몰아내고있는 반동파의 일부 성공은 로씨야자유주의의 영웅들에 의하여 《로씨야에서 **립헌적의식의 장성과정**》으로서 묘사되고 있다.

로씨야사회민주당이 우리 나라의 혁명을 가장 면밀히 또 전면적으로 연구하여 이 혁명의 투쟁방식, 조직형식 등등을 대중속에 널리 인식시키며 인민속에서 혁명적전통을 공고히 하며 오로지 혁명적투쟁으로써만 어느 정도 중대하고 어느 정도 지구적인 개선을 달성할수 있다는 확신을 대중속에 넣어주며 사회의 분위기를 《립헌》충배, 반역 및 아침의 독기에 걸러

게 하는 거만한 자유주의자들의 일체 비굴성을 부단히 폭로할 책임을 지니고있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자유를 위한 투쟁의 역사에 있어서 10월혁명 또는 12월봉기시의 하루는 국회에서 령헌민주주의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 군주 또는 군주제적 령헌제도를 비굴하게 떠들어대던 몇달보다 백배나 더 많은 의의를 가졌던것이며 또 가지고있는것이다. 인민들로 하여금 생기발랄하고 내용이 풍부하며 그 의의와 그 결과가 위대한 그 나날을, 스톨리벤과 그의 출판물검열관인 현병적종복들의 호의있는 묵인하에서 우리 나라의 자유주의정당의 기관지와 무당파적《민주주의》(더럽다!)신문들이 그렇게도 열심히 떠들어대고있는, 질식과 찬가로 가득찬《령헌의》수개월보다 훨씬 더 상세히 또 철저히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하여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또 우리들 이외에는 방법을 강구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서 보이프트에 대한 동정이 일어나고있는것은 과거의 우량한 혁명적전통을 수호하며 현대의 음산한 일상생활의 침체상태를 대담하고 공개적이고 전결한 투쟁의 불길로써 활기치게 하려는 혁명가들의 참으로 존경할만한 바로 그 노력때문이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혁명적전통을 애호하는 이 태도를 귀중히 여기기때문에 마치 특정한 역사적시기의 구호들중의 하나를 적용함으로써 그 시기의 기본적인 조건들의 재생을 촉진시킬수 있는듯이 여기는 그런 관점을 전결히 반대하여야 할것이다. 혁명의 전통을 수호하며 또 이 전통을 일상적인 선전고동을 위하여, 또는 낡은 사회를 반대하는 직접적이고 공격적인 투쟁의 필요한 조건을 대중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리용할줄 안다는것과, 어떤 하나의 구호를 그의 발생과 그 성공을 보장해준 조건들의 총체와는 상관없이 되풀이하며 그것을 근본적으로 다른 조건에다 적용

한다는것—이것은 아주 판이한 두가지 일인것이다.

혁명적전통을 아주 높이 평가하였고 그것에 대한 배신적 또는 속물적 태도를 견결히 비난해온 바로 그 맑스가 동시에 혁명가들에게 **사고**할줄 알며 낡은 투쟁방법들의 적용조건들을 **분석**할줄 알며 단순히 일정한 구호들을 그대로 반복하지는 말것을 요구하였던것이다. 프랑스에서의 1792년의 《민족적전통》은 아마 영원히 일정한 혁명적투쟁수단의 한 **표본**으로서 남아 있게 될것이다. 그러나 맑스는 1870년에 제1국제당의 유명한 《선언》³⁰¹에서 프랑스무산계급에게 이 전통을 다른 시기의 조건에 잘못 옮기지 말라고 깨우쳐주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보이프트의 적용조건을 연구하여야 하며 보이프트가 혁명적양양기에 있어서는 때로는 아주 합리적이며 필요불가결한 수단이라는 사상을 대중속에 넣어주어야 한다.(맑스의 이름을 쓸데없이 사용하는 현학자들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를 막론하고) 그러나 지금 이러한 양양이 존재하는가, 보이프트를 선포할수 있는 그런 기본조건이 존재하는가 어떤가 하는 이 문제를 독자적으로 설정할줄 알며 자료를 신중히 분석하는 기초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우리가 모든 힘을 다하여 그러한 양양의 도래를 준비하며 또 시기가 적당한 때에는 보이프트를 포기하지 않는것이 우리의 책임이지만 그러나 보이프트의 구호를 언제든지 온갖 나쁜 또는 극히 나쁜 대의제기관에 적용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것은 절대적인 오유일것이다.

《자유의 날》에 보이프트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증명해온 그 론거를 보기만 한다면 당신들은 그러한 론거를 현재의 조건에 간단히 옮길수는 없다는것을 대뜸 알게 될것이다.

우리는 1905년과 1906년초에 보이프트를 주장할 때 선거에 참가하는것은 사기를 저락시키며 진지를 적에게 내주며 혁

명적인민을 혼란케 하며 짜리제도와 반혁명적자산계급의 협의 달성을 촉진시키게 된다는 등등을 말하였었다. 이 론거들의 기본전제는 어떠한것인가? 이 전제는 어느때든지 알수 있는것은 아니나. **그당시에는** 자명한 어떤것으로서 항상 리해될수 있는것이다. 이 전제는 대중의 풍부한 혁명적의력인바 이 의력은 온갖 《립헌적》통로들을 통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것이다. 이 전제는 반동파에 대한 혁명의 부단한 **진공**이다. 만일 적들이 저들에 대한 총공세를 약화시킬 목적에서 고의로 내주는 진지를 우리가 점령하고 방위하는데서 공세를 약화시키게 된다면 그것은 범죄인것이다. 이 기본전제를 떠나서 이 론거들을 억지로 반복해본다면 당신들은 자기의 전체 《음악》이 조화되지 않으며 기본음조가 틀린다는것을 즉시로 느끼게 될것이다.

제2차국회의와 제3차국회의 차이로써 보이프트를 변호하려는 시도도 역시 부질없는 일일것이다. 립헌민주주의자들(제2차국회에서 인민을 흑백단의 수중에 완전히 팔아먹은)과 10월당원들과의 사이에 중대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고 인정하며 6월 3일의 장변에 의하여 파란된 악명높은 《헌법》에 어느정도 현실적인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것—이 모든것은 혁명적사회민주당의 정신에 부합된다기보다는 비속적민주주의정신에 훨씬 더 부합되는것이다. 우리는 제1차 및 제2차 국회의 《헌법》이 환상에 불과하다는것, 립헌민주주의자들의 공담은 그들의 10월당원으로서의 본질을 엄폐하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는것, 국회라는 기구는 무산계급과 농민의 요구를 전혀 만족시킬수 없다는것을 항상 말해왔고 주장해왔고 반복해왔었다. 우리에게 있어서 1907년 6월3일정변은 1905년 12월실패의 자연적이며 불가피적인 결과이다. 우리는 어느때든지 《국회식》헌법의 매력에 《매혹》되지 않았기때문에 외모 번지르르

한 로지체브식언사로서 엄폐했던 그 반동이 로골적인, 공개적인, 횡포한 반동으로 변했다고 해서 더 실망할리도 없었다. 심지어 이 후자는 비렬한 온갖 자유주의적척치들과 그들에 의하여 미혹된 주민집단들을 각성시킬수 있는 훨씬 더 좋은 수단일수도 있을것이다. ...

국회에 관한 멘셰위크의 스톡홀름결정서와 볼셰위크의 런던결정서를 비교해보면 당신들은 첫째 결정서가 비범한것으로 자칭하며 호언장담하며 국회의 의의에 관한 굉장한 말들로 충만되어있고 국회사업의 위대성에 대한 자기 의식으로 과장되어있다는것을 알게 될것이다. 둘째 결정서는 간단하고 소박하며 맹정하고 겸손하다. 첫째 결정서는 사회민주당과 령현주의와의 결합(《인민내부로부터 산생한 새 정권》 및 기타 허위적인 관료습기에 맞는것들과의 결합)에 관한 소시민적경축의 기분으로 충만되어있다. 둘째 결정서는 대체로 다음과 같이 바꾸어말할수 있다. 즉 만일 저주로운 반혁명이 우리들을 이 저주로운 마구간속으로 몰아넣었다면 우리는 거기에서도 울상을 하지 않고 또 자만하지도 않고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사업해나갈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일찌기 직접적인 혁명투쟁시기에 멘셰위크들은 국회를 옹호하고 보이코트를 반대하면서 말하자면 인민들에게 국회는 혁명의 도구로 될것이라고 약속하였던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이 약속은 완전히 파탄되고말았다. 그런데 우리 볼셰위크들이 어떤 약속을 한것이 있다면 그것은 국회는 반혁명의 산물이며 또 그로부터는 조금이라도 이렇다 할 좋은것을 기대할수 없다는 신념을 부어넣었을뿐이다. 우리의 이 견해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훌륭히 확증되어왔으며 또 금후의 사건들이 역시 그것을 확증하리라는것을 담보할수 있다. 새로운 자료에 기초하여 10~12월전략을 《시정》하고 반복함이 없이는 로씨야에는 자유

가 있을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제3차국회를 제2차국회처럼 리용하여서는 안된다는니, 대중에게 그 국회에 참가할 필요성을 설명해주어서는 안된다는니 하고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만일 그 《리용한다》는것을 국회는 혁명의 도구니 무엇이니 하는 멘쉐위크적인 과장된 요설과 같은것으로 리해한다면 물론 그때에는 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대답하겠다. 그러나 첫 두 국회도 역시 사실에 있어서는 10월당원적국회로 향하는 자그마한 단계들에 불과하였으며 우리 역시 이 국회들을 일반적이고 보다 작은^① 목적(선전과 선동, 지금 발생하고있는 사건에 대한 비판, 대중에게 그것을 천명하는것)을 위하여 리용하였는데 이런 목적을 위하여서는 우리는 가장 추악한 대의제기관까지도 어느때든지 리용할수 있을것이다. 국회에서 연설을 한다고 해서 결코 어떤 《혁명》을 일으키게 되지는 않을것이며 또 국회를 리용하여 선전한다고 해서 결코 특별한 성질을 갖게 되지는 않을것이지만 그러나 사회민주당이 이 량자로부터 얻는 리익은 다른 회의에서 서면연설 또는 구두연설로부터 얻는 그것보다 못지않은것이며 때로는 더 많은것이다.

우리는 10월당원적국회에 우리가 참가한데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간단히 대중들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905년 12월의 실패와 이 실패를 《만회》하려는 1906~1907년의 시도들의 실패

① 신문 《무산자》²²² 1905년(제비바판)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국회의 리용을 거부하는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우리앞에 제기된 다른 임무, 즉 혁명의 직접적인 발전의 길을 위해 투쟁하는 임무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되어있는, 불리진국회를 보이프트할데 관한 논문(《레닌전집》, 한문판, 제9권, 165~172페이지—편집자)을 참조하라. 또한 신문 《무산자》³⁶¹ 1906년(로씨야판) 창간호에서, 국회사업이 가져오는 작은 리익이 강조되어있는 논문 《보이프트에 대하여》(《레닌전집》, 한문판, 제11권, 123~130페이지—편집자)를 참조하라.

때의 결과로 반동파는 불가피적으로 우리를 그야말로 나쁜 가짜립헌기관에 몰아냈으며 또 앞으로도 항상 몰아낼것이다. 우리는 어느때든지 또 어느곳에서든지 우리의 신념을 견지할 것이고 우리의 관점을 관철시킬것이며 또한 낡은 정권이 존속되는 한, 그것이 근절되지 않는 한 그것으로부터 아무런 좋은 일도 기대할수 없다는것을 어느때든지 반복해 말할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양양을 위한 조건들을 창조할것인바 그것이 도래할 때까지는 또한 그것의 도래를 위해서는 양양의 조건하에서만 의의를 가지는 구호들을 내걸것이 아니라 더 완강히 사립하는것이 필요하다.

보이프트를, 무산계급과 일부 혁명적자산계급민주파를 자유파와 반동파에 대립시키는 **전술방침**이라고 보는것도 역시 옳지 않을것이다. 보이프트—이것은 전술방침이 아니라 특별한 조건에 적용하는 특수한 투쟁수단인것이다. 불쉐위크주의를 《보이프트주의》와 혼동하는것은 불쉐위크를 《전투주의》와 혼동하는것과 동일한 오류인것이다. 멘쉐위크의 **전술방침**과 불쉐위크의 **전술방침**간의 차이는 1905년 봄에 런던에서 열린 불쉐위크 제3차대회의 결정서와 제네바멘쉐위크대표회의의 결의의 원칙적인 구별에서 완전히 설명되고 뚜렷이 표현되었던것이다. 그당시는 보이프트에 관해서나, 《전투주의》에 관해서나 말이 없었으며 또 말이 있을수도 없었다. 제2차국회선거(그때 우리는 보이프트주의자가 아니었다.)에서나 제2차국회내에서나 우리의 **전술방침**은 누구나 다 아는바와 같이 멘쉐위크의 전술방침과는 아주 확연히 달랐다. 이 두 **전술방침**은, 모든 투쟁 방법과 수단들에 있어서, 매개 투쟁무대에 있어서 서로 다를수 있는것이다. 그러나 한 특수한 전술방침에만 고유한 어떤 특수한 투쟁방법이 있는것은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만일 제1차 또는 제2차 국회에 대한 혁명적기대의

파란을, 즉 《합법적인》, 《강력한》, 《항구한》 또 《진정한》 헌법의 파란을 구실로 하여 제3차국회에 대한 보이프트의 정당성을 증명하려 하거나 또는 이런 보이프트를 야기시킨다면 이것은 최악의 멘셰위크주의일것이다.

6

우리는 보이프트를 주장하는 가장 유력하고 유일하게 맑스주의적인 론거에 대한 연구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했다. 적극적인 보이프트는 광범한 혁명적양상을 떠나서는 무의미한것이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광범한 양상은 광범하지 않은 양상으로부터 발전하는것이다. 약간의 양상의 징조는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 보이프트의 구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왜냐 하면 이 구호는 이미 시작되고있는 양상을 지지하며 발전시키며 확대시킬수 있기때문이다.

나의 견해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사회민주주의자들가운데 보이프트찬성경향의 존재를 다소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기본론거이다. 그리고 이 점에 있어서 무산계급속에서 구체적사업에 종사하고있는 동지들은 일정한 유형에 따라 《꾸며진》 론거로부터 출발하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로동자대중과의 접촉에서 얻은 인상의 총화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지금까지 사회민주당의 두 파사이에서 의견상이가 없고 또 없었던것으로 생각되는 많지 않은 문제들중의 하나는 아마도 우리 혁명의 발전에 있어서의 장기간에 걸친 중단의 원인에 관한 문제일것이다. 《무산계급은 원기를 회복하지 못하였다.》는 이것이 그 원인이다. 사실상 10~12월투쟁의 짐은 거의 전적으로 무산계급 혼자에게만 부과되어있었던것이다. 오직 무산계급 혼자만이 전 민족을 위하여 계통적으로, 조직적으로 부단히 투쟁하여왔다. 무산계급의 인구비례가 가장 낮은(구라파

를 기준으로 할 때는) 국가에서 무산계급이 그러한 투쟁에 의하여서는 믿을수 없으리만치 쇠약해지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거기에서 12월이후 정부와 자산계급반동의 연합세력은 다름아닌 그 무산계급에게 달려들었고 또한 그때로부터 끊임없이 달려들었다. 경찰의 박해와 형벌은 1년 반동안이나 무산계급을 유린하였으며 관영공장의 《징벌적인》 폐쇄로부터 시작하여 로동자대중을 반대하는 자본가들의 음모에 이르기까지의 계통적인 대량적해고는 로동자대중을 전례없는 빈궁에 빠뜨렸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군중속에서 기세양양의 징조와 무산계급의 역량축적의 징조가 보인다고 사회민주당의 일부 활동가들은 말하고있다. 완전히는 확정적이지 않은 또 완전히는 포착되지 않은 이 인상은 일부 공업부문들에서 확실히 활기를 띠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는 더욱 유력한 논거로써 보충된다. 로동력에 대한 수요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파업운동을 조장시킬것이다. 로동자들은 그들이 탄압과 대량적해고기에 받은 막대한 손실의 일부분이나마 만회하려고 시도할것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세번째의 또 가장 유력한 논거로서 들고있는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또 일반적으로 예견되고있는 정도의 그런 파업운동이 아니라 이미 로동자조직에 의해 결정된 한차례의 가장 큰 파업이다. 1만명에 달하는 방직공들의 대표들은 일찌기 1907년초에 자기들의 처지를 토론하고 이 산업부문의 직업동맹을 강화할 대책을 세웠던것이다. 2만명에 달하는 방직공들의 대표들은 이미 두번째 모임을 가지고 1907년 7월에 방직공총파업을 선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운동은 직접 40만명 정도의 로동자들을 포괄할수 있다. 이 운동은 로씨야에서 로동운동의 가장 큰 중심이며 가장 큰 공업업중심인 모스크바구역으로부터 시작될것이다. 바로 모스크바에서 또 오직 모스크바에서만 대중적인 로동운동이 가장 급속

히 결정적인 정치적의의를 가지는 광범한 인민운동으로 될수 있다. 그런데 방직공들은 모든 노동자대중가운데서 보수가 가장 낮고 가장 탁후하며 과거의 운동에 가장 소극적으로 참가하였고 농민들과 가장 밀접히 련결된 노동자들인것이다. 이러한 노동자들의 창의는 운동이 이전보다 비할바없이 광범한 무산계급계층을 포함하게 될것이라는것을 설명할수 있다. 파업운동과 대중속에서의 혁명적앙양과의 련관성은 로씨야혁명의 역사에서 이미 여러번 실증된바이다.

사회민주당의 직접적인 의무는 바로 이 운동에 큰 주의와 비상한 노력을 집중하는것이다. 바로 이 면에서의 사업은 10월당적국회의 선거와 비하면 무조건적으로 가장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이 파업운동을 전제제도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광범한 총공격으로 전환시킬 필요성에 대한 확신이 대중속에 주입되게 하여야 한다. 보이프트의 구호야말로 주의력을 국회로부터 직접적인 대중투쟁으로 옮기는것을 의미한다. 보이프트의 구호야말로 새 운동에 정치적 및 혁명적 내용을 주입시키는것을 의미한다.

일부 사회민주주의자들로 하여금 제3차국회를 보이프트할 필요성을 확신하게 하는 사유행정은 대략 이러하다. 이것은 보이프트를 지지하는 론거인데 그것은 물론 맑스주의적인 론거이며 또 특수한 력사적조건의 련계로부터 리탈된 구호의 단순한 반복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는 론거인것이다.

그러나 이 론거가 아무리 유력하다 할지라도 내가 보건대 우리가 **담장**에 보이프트의 구호를 휘하도록 하기에는 아직 불충분하다. 이 론거는 우리 나라 혁명의 교훈을 념두에 둔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문시되지 말아야 할 그런것, 즉 우리는 보이프트를 거부할리 없다는것, 우리는 적당한 시기에 이 구호를 제출하도록 준비하고있어야 한다는것,

우리의 보이프트문제에 대한 설정은 자유주의적이고 속물적으로 빈약하고 모든 혁명적내용을 상실한 문제설정—피할것이나 아니면 피하지 말것이나^① 하는—과는 아무런 공통점도 없다는것을 강조하고있는것이다.

로동자들의 기분상변화, 공업경기, 방직공들의 7월파업 등에 대하여 사회민주당내의 보이프트지지자들이 말하고있는 모든것이 이미 증명된, 그리고 완전히 현실에 부합되는것이라고 생각하자.

이 모든것으로부터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우리앞에서는 혁명적의의를 가지는 약간의 국부적인 양양^②이 일어나고있다. 우리는 그 양양을 전반적인 혁명적양양으로 그다음에는 또 공격적인 운동으로 전환시키려고 하면서 그것을 지지발전시키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는가? 무조건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사회민주주의자가운데서는(《동지》지에 기고하는자들만은 제외하고) 다른 의견이 있을수 없다. 그러나 현순간에, 이 국부적양양의 초기에, 즉 국부적양양이 전반적양양으로 종국적으로 이행하기도전에 보이프트구호를 내놓는것이 운동의 발전에 필요한가? 이 구호는 목전의

① 이전에는 사회민주당출판물의 기고자였고 지금은 자유파신문의 기고자인 엘. 마르토프의 전형적인 자유주의적론의들을 신문 《동지》에서 보라.

② 방직공의 파업은 직업동맹운동을 혁명적운동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신식운동이라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견해를 무시하고 지나간다. 그것은 첫째로 복잡한 현상의 모든 징조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것은 일반적으로 말해서 다소 《안장에 튼튼히 앉아있지》 못한 수많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을 무시로 혼란시키는 위험한 수법이기때문이다. 둘째로 만약 방직공의 파업가운데 지적된것과 같은 그런 특징들이 있다면 우리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의심할바없이 그것을 반대하여 권력으로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우리의 투쟁이 성공한 경우에는 문제는 우리가 제기하고있는것처럼 제기될것이다.

운동의 발전을 촉진시킬수 있는가? 이 문제는 다른 문제이며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대답해야 할것이라고 생각된다.

국부적양양을 전반적양양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제3차국회와는 상관없이 직접적인 론거와 구호로써 제출할수 있으며 또 제출하여야 한다. 12월이후에 발생한 사건들의 전반 과정은 군주립헌의 역할과 직접적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민주주의자들의 견해를 전면적으로 확증해주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련다—공민들, 만약 당신들이 로씨야에서 민주주의 위업이 1905년 12월이후 립헌민주주의자제씨들이 민주운동을 령도하던 때 저락되던것처럼 일락취장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면 양양되고있는 노동운동을 지지하며 직접적인 대중투쟁을 지지하라. 그것이 없이는 로씨야에서의 자유의 보장은 없을것이며 또 있을수도 없다.

이런 선동은 물론 아주 철저한 혁명적사회민주적선동으로 될것이다. 그런데도 또 공민들이여, 제3차국회를 믿지 말라, 우리의 항의의 증거로서 제3차국회를 보이프트하는 우리 사회민주주의자들을 본받으라고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겠는가!

목적의 정황하에서 이러한 보충을 한다는것은 불필요할뿐 아니라 황당하고 가소로운것이다. 기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누구나 제3차국회를 믿지 않는다. 다시말하면 민주주의운동을 촉진할수 있는 주민층에 있어서 과거 로씨야에다 립헌적기관이기만 하면 좌우간 어떤것이든 건립하고보자는 **최초의** 시도로서 제1차국회에 대하여 기울이고있던 그런 의심할바없는 광범한 열증이 립법기관인 제3차국회에 대해서는 없을것이며 또 있을수도 없다.

1905년과 1906년초에 광범한 주민들의 관심의 중심으로 될것은 군주립헌의 토대우에서일망정 첫 대의제기관을 세우는

것이였다. 이것은 사실이다. 이것을 반대하여 사회민주주의자들은 투쟁하지 않으면 안되었고 가장 명확하게 시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의 특징은 첫 《의회》에 대한 열중이 아니고 국회에 대한 신임이 아니라 **양양에 대한 불신임이다.**

이런 정황하에서 너무 일찍이 보이코트구호를 제기한다면 우리는 운동을 조금도 강화할수 없으며 이 운동에 대한 실제적장애물을 제거하지 못할것이다. 그뿐아니라 그렇게 한다면 심지어 우리의 선동력을 약화시킬 위험성까지 있다. 왜냐하면 보이코트라는것은 이미 확정된 양양에 동반하는 구호인데 지금은 딱하게도 광범한 주민들이 양양을 믿지 않으며 그 력량을 보지 못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우선 이 양양의 력량이 **실지로** 증명되도록 관심을 돌려야 한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는 이 력량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구호를 아무때든지 제기할수 있다. 동시에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바 그것은 공격적인 혁명운동을 위하여 **제3차 국회**로부터 주의를 **전이시킬** 특별한 구호가 필요한가 하는것이다. 아마 필요없을것이다. 경험이 없으며 의회를 본적이 없는 대중을 실지로 도취시킬수 있는 중요한 그 무엇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마 이 피해야 할 그것을 **보이코트**하여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현대의 민주주의적인 또는 절반민주주의적인 대중을 전혀 도취시킬수 없는 기관을 피하기 위해서는 보이코트를 선포하지 않아도 된다. 지금 문제는 보이코트에 있지 않고 국부적인 양양을 전반적양양으로, 직업동맹운동을 혁명운동으로, 대량적해고에 대한 방어를 반동파에 대한 진공으로

전환시키려는 직접적인 노력에 있다.

7

요컨대 보이프트의 구호는 특수한 역사적시기에 의하여 산생되는것이다. 1905년과 1906년초에 객관적형세는 당면해 나아갈 길의 선택문제, 즉 직접적인 혁명의 길을 택할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군주제적-립헌의 길로 넘어갈것인가 하는 문제를 투쟁하는 사회력량의 결정에 내맡기었다. 이런 조건하에서는 보이프트를 선동하는 내용은 주로 립헌적환상들과의 투쟁이었다. 보이프트의 성공의 조건은 광범한, 보편적인, 급격하고 강력한 혁명적양상이었다.

이 모든 면으로부터 볼 때 1907년 가을까지의 정황하에서는 그러한 구호를 제기할 필요성이 전혀 없었고 또 적당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선거준비에 대한 자기의 일상적사업을 계속하여야 하고 가장 반동적인 대의제기관에 참가할것을 너무 일찌기 거부하지 말아야 하며 자기의 일체 선전고동을 인민들에게 12월의 실패와 그후에 있는 자유의 일체 쇠퇴 및 헌법에 대한 모욕간의 련관성을 설명해주는데 돌려야 할것이다. 우리는 대중들로 하여금 직접적인 대중투쟁이 없다면 그러한 모욕은 불가피적으로 계속되며 더 심해지리라는것을 확신하게 하여야 할것이다.

우리는 보이프트의 구호를 양양의 시기에 즉 그러한 구호에 대한 박절한 필요성이 있을 때에 적용하는것은 결코 거부하지 않으나 현재에는 직접 영향주는 길을 통하여 모동운동의 일부 국부적인 양양을 전반적, 광범한, 혁명적인 운동으로 또

반동파전체에 대해서나 그의 토대에 대해서 진공하는 운동으로 전환시키려는데 모든 노력을 돌려야 할것이다.

1907년 6월 26일

1907년 6월 26일(7월 9일)
에 집필

소책자의 원문에 의해 인쇄

1907년 모스크바에서 출판
된 소책자 《제3차국회보
이프트에 관하여》에 수록
서명: 엠. 캐닌

《메닌권집》, 한문판, 제13
권, 1~32페이지

슈투트가르트국제사회당대회

슈투트가르트에서 최근에 끝난 대회는 무산계급국제당의 제12차대회였다. 최초의 다섯차례의 대회는 맑스가—베벨의 훌륭한 표현에 의하면—투쟁하고있는 무산계급의 국제적통일을 우로부터 조성하려고 시도하면서 지도하여온 제1국제당시대(1866~1872년)에 열리었다. 그런데 이러한 시도는 각국의 사회당들이 결속되지 않고 공고화되지 않은 한에 있어서는 성공될수 없는것이였다. 그러나 제1국제당의 활동은 모든 국가의 로동운동에 커다란 도움을 주었으며 심원한 영향을 일으켰다.

제2국제당은 1889년의 파리국제사회주의자대회에 의하여 성립되였다. 그후 브뤼셀(1891년), 쾰리히(1893년), 런던(1896년), 파리(1900년), 암스테르담(1904년) 대회들에서 이 새 국제당은 각국의 전강한 당들에 의거하면서 종국적으로 공고히 되였다. 슈투트가르트대회에는 구라파, 아제아(일본과 인도의 일부), 아메리카, 오스트랄리아, 아프리카(남아프리카의 대표 1명) 25개 국가로부터 온 대표 884명이 참석하였다.

슈투트가르트국제사회당대회의 위대한 의의는 이 대회가 제2국제당의 종국적공고화를 표시하였으며 여러차례의 국제당대회가 전 세계 사회주의운동의 성격과 방침에 극히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실무적인 회의로 전환하였음을 표시한 바로 그 점에 있다. 국제당대회의 결정서는 형식상으로는 각국에 대하여 제약력이 없지만 도의적으로는 거대한 의의가 있었으며 따

라서 그 결정서를 집행하지 않는다는것은 사실상 각 당이 자기 당대회의 결정서를 집행하지 않는것보다도 아마 더 보기도문것으로 되고있다. 암스테르담대회는 프랑사회주의자들의 통일을 달성하였고 또 내각주의¹⁴³를 반대하는 대회의 결정서는 전 세계의 각성한 무산계급의 의사를 실지로 체현하였으며 각국 노동당의 정책을 규정하였다.

슈투트가르트대회는 이와 같은 방향에서 한걸음 크게 전진하여 일련의 중요한 문제들에서 사회주의운동의 정치로선을 결정하는 최고기관으로 되었다. 슈투트가르트대회는 혁명적사회민주당이 기회주의를 반대한다는 의미에서 암스테르담대회보다 더욱 과단성있게 이 로선을 결정하였다. 클라라 제트킨이 편집하는 독일사회민주주의자녀성노동자 기관출판물인 《평등》³⁶²은 이 문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당하게 말하고있다. 《모든 문제들에서 개별적사회당들의 각종 기회주의적경향은 각국 사회주의자들의 협조로 말미암아 혁명적방향으로 시정되었다.》

이에 있어서 주의할만한 비통한 현상은 지금까지 출몰 맑스주의혁명적관점을 고수하여오던 독일사회민주당이 동요적인, 또는 기회주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는것이다. 슈투트가르트대표대회는 독일노동운동에 관한 엥겔스의 심각한 지적을 실증하였다. 엥겔스는 제1국제당의 오랜 투사인 조르게에게 보내는 1886년 4월 29일부 서한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특히 독일사람들이 그렇게도 많은 속물들을 제국국회에 보낸(그러나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후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에게서 국제사회주의운동의 령도권을 빼앗으려 하는데 이것은 대체로 좋은 일이다. 평온한 시기에 독일에서는 모든것이 속물적인것으로 되어가는바 그러한 시기에는 프랑사회사람들의 경쟁이라는 자극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러한 자극은 얼마든지 불

수 있을 것이다.》363

프랑스사람들의 경쟁이라는 자극은 슈투트가르트에서 일
 마든지 볼수 있었는데 이러한 자극은 확실히 필요한것이였다.
 왜냐 하면 당시 독일사람들은 적지 않은 속물근성을 발로하였
 기때문이다. 우리 나라의 자유파(다만 자유파들뿐이 아니다.)
 들은 바로 독일사회민주당의 가장 광채롭지 못한것들을 본보
 기로 삼으려고 몹시 애쓰고있기때문에 로씨야의 사회민주주의
 자들은 특히 이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 독일사회민주당의
 가장 명석하고 가장 걸출한 사상적지도자들은 자기자신이 이
 런 형편에 주의를 돌렸으며 모든 허위적체면을 내던지고 경교
 의 의미에서 그것을 단호히 지적하였던것이다. 클라라 제트킨
 이 편집하는 출판물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암스테르담에서
 는 드레즈덴의 결정서가 전 세계 무산계급의 의회에서 모든 론
 쟁들의 혁명적인 주제사상으로 되고있었다. 슈투트가르트대회
 에서 불쾌한 기회주의적불협화음으로 들린것은 군국주의문제
 위원회에서의 풀마르의 연설이였고 이민문제위원회에서의 페
 플로브의 연설이였고 식민지문제위원회에서의 다비드[또 첨
 가한다면 베른슈타인의]의 연설이였다. 다수의 위원회에서와
 대부분의 문제들에서 이번에는 독일대표들이 기회주의의 두목
 으로 되였다.》 카. 카우프키는 슈투트가르트대회를 평가하면
 서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지금까지 독일사회민주당이 제2국
 제당에서 사실상 일으킨 정도적역할은 이번에는 조금도 나타
 나지 않았다.》

대회에서 토의된 문제들을 고찰해보자. 식민지문제에서는
 위원회에 아직도 의견상이가 존재하고있다. 기회주의파와 혁
 명파간의 론쟁은 대회에서 결말을 보았는데 127표 대 108표,
 기권 10표의 다수로써 혁명파에게 유리하게 결속되였다. 여기
 에서 부대적으로 지적하려는것은 로씨야의 전체 사회주의자들

이 모든 문제에서 혁명적정신으로 일치하게 투표하였다는 기쁜 현상이다.(뿔스까사람을 제외하고 로씨야는 20표를 가지었는데 그중 10표는 로씨야사회민주노동당이, 7표는 사회혁명당원들²⁰⁸이, 3표는 직업동맹대표들이 가지었다. 다음으로 뿔스까는 10표, 즉 뿔스까사회민주당 4표, 뿔스까사회당과 뿔스까의 비로씨야부분 6표를 가지었다. 마지막으로 핀란드의 두 대표가 8표를 가지었다.)

식민지문제에서는 기회주의적다수가 위원회내부에 형성되었다. 그리하여 《대회는 원칙상 또 어느때나 온갖 식민지정책을 비난하는것은 아니다. 사회주의제도하에서는 식민정책이 문명을 전파하는 역할을 일으킬수 있다.》는 괴상한 문구가 결의초안에 나타났던것이다. 사실상 이 문장은 식민지전쟁과 야만행위를 변호하는 자산계급정책 및 자산계급세계관으로 퇴각하는것과 같은것이였다. 이것은 루스웰트편으로 퇴각하는것이라고 어느 한 미국대표는 말하였다. 이 퇴각을 《사회주의적식민지정책》과 식민지에서 적극적인 개혁자적사업의 임무라는 것으로써 변명하려는 시도들은 절대 성공할수 없는것이였다. 사회주의는 식민지에서 개혁도 지지하는것을 언제나 거부하지 않았으며 또 거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식민지정책》의 내용인 정복, 타민족에 대한 예측, 폭력 및 약탈을 반대하는 우리의 원칙적립장을 약화하는것과는 추호의 공통점도 가지고있지 않으며 또 가져서는 안된다. 모든 사회주의정당의 최저강령은 종주국에도 식민지에도 적응된다. 《사회주의적식민지정책》이라는 그 개념자체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 대회는 위에서 인용한 이 문구를 결정서에서 빼고 그것을 식민지정책에 대한 종전의 결정서들에서보다 더 준엄한 규탄으로써 대체하였는데 이것은 완전히 정확하다.

직업동맹에 대한 사회당의 태도문제에 관한 결정서는 우

리 로씨야사람들에게 있어서 특히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 이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일정에 오르고있다. 스톡홀름대회²⁸¹는 이 문제를 **비당적** 직업동맹에 유리하게 해결하였다. 즉 플레하노프를 위수로 한 우리 나라의 직업동맹**중립**론지지자들의 입장을 긍정하였다. 런던대회³⁶⁴는 직업동맹**중립**론을 **반대**하고 **당파적**공회의 편으로 한걸음 내디디었다. 누구나 다 알다싶이 런던대회의 결정서는 일부 직업동맹들에서와 특히는 자산계급적민주파의 출판물에서 큰 논쟁과 불만을 일으켰다.

슈투트가르트대회에서 문제는 본질상 바로 직업동맹이 중립하여야 하는가 아니면 당에 더욱더 접근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으로, 바로 이렇게 제기되었다. 그리하여 국제사회당대표대회는 독자가 그 결정서에서 확신할수 있는바와 같이 직업동맹이 당에 더욱 접근하는것을 찬성하였다. 결정서는 직업동맹의 중립성에 관해서도 그의 비당성에 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카우츠키는 독일사회민주당내에서 직업동맹이 당에 접근하는것을 주장하였으며 베벨의 중립론을 반대하였다. 그러므로 카우츠키는 라이프찌히로동자들에게 슈투트가르트대회에 관한 보고를 할 때(1907년 《전진》¹⁵² 제209호 별책부록) 다음과 같이 선포할 완전한 권리를 가졌던것이다.

《슈투트가르트대회의 결정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것을 다 말하고있다. 이 결정서는 **직업동맹중립론을 영원히 매장하고있다.**》 클라라 제트진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원칙상에서는 누구도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결합시키며 여러 조직들을 뭉수 있는 한 사회주의적로동계급의 통일된 역량으로 더욱 긴밀히 묶어세우는 이러한 무산계급계급투쟁의 기본적인 역사적추세를 반대하지 않았다.〔슈투트가르트에서〕 오직 로씨야사회민주당의 대표 플레하노프동지〔플레하노프를 《직업동맹중립론》의 옹호자로서 위원회에 파견한 멘쉐위크의 대표라고

말하여야 할 것이다.]와 프랑스대표단의 다수 성원들만이 그들 국가의 특징을 구실로 하여 근본상 성립되지 않는 리유들로써 이 원칙에 대한 어떤 제한을 정당화하려고 시도하였다. 대회의 절대다수는 사회민주당과 직업동맹이 일치하게 행동하는 결정적인 정책을 찬성하였다.…»

쾨트겐이 정당하게도 성립될수 없는것이라고 지적한 플레하노브의 이 론증은 그대로 로씨야의 합법적인 신문들에 게재되었다는것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플레하노브는 슈투트가르트대회의 위원회에서 《로씨야에는 11개의 혁명적정당들이 있다.》는것과 《직업동맹은 그중에서 어느 정당과 통일행동을 하여야 할것인가?》 하는것을 구실로 하였다.(《전진》지 제196호 별책부록 1에서 인용) 플레하노브의 이 구실은 사실에 있어서나 원칙에 있어서나 다 옳지 않다. 사실에 있어서는 로씨야의 각 민족중에서 사회주의적무산계급에게 영향을 주기 위하여 서로 투쟁하고있는 당은 두 당뿐이다. 즉 사회민주당과 사회혁명당, 뿔스까사회민주당과 뿔스까사회당, 라트비아사회민주당과 라트위야사회혁명당(즉 소위 《라트위야사회민주주의자동맹》), 아르메니아사회민주당과 다스나크쭈쭈³⁶⁵ 등등이다. 슈투트가르트대회에 참가한 로씨야대표단도 즉시 두 부분으로 갈라졌다. 11개라는 이 수자는 전혀 근거가 없는것이며 로동자들을 미혹시키는것이다. 원칙에 있어서도 플레하노브는 옳지 않다. 그것은 로씨야에서의 무산계급사회주의와 소자산계급사회주의간의 투쟁은 직업동맹도 포함하여 어디서나 불가피한것이기때문이다. 예를 들면 영국사람들은 그들도 역시 서로 싸우는 두 사회주의정당인 사회민주주의련맹(SDF^①)³⁰⁸과 《독립로동당》(ILP^②)³⁶⁶을 가지고있지만 결정서를 반대하려고는 생각하지

① Social-Democratic Federation. —편집자

② Independent Labour Party. —편집자

않았던것이다.

슈투트가르트에서 부결당한 중립사상은 이미 로동운동에 저지 않은 해독을 끼치게 되었는데 이것은 특히 독일의 실패에서 똑똑히 볼수 있다. 독일에서는 중립사상이 가장 널리 전파되고있으며 또 가장 많이 적용되어왔다. 그런 결과 독일의 직업동맹은 아주 명백하게 기회주의편으로 기울어졌으며 카우찌키같은, 이 문제에 있어서 아주 조심스러운 인간조차도 이런 경향을 솔직히 승인하였던것이다. 그는 라이프찌히로동자들에게 한 보고에서 독일대표단이 슈투트가르트에서 표현한 《그 보수성은 이 대표단의 성원을 보면 리해할수 있게 된다. 그 절반은 직업동맹의 대표였던 관계로 우리 당의 <우익>은 그가 실지로 당내에서 가지고있는것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솔직하게 말하였다.

슈투트가르트대회의 결정서는 우리 나라의 자유주의자들이 그렇게도 찬양하는 중립사상을 로씨야사회민주당이 전결히 배격하는것을 의심할바없이 가속화하게 될것이다. 필요한 신중성과 점진성을 보존하면서 또 어떠한 돌발적이고 분별없는 행동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직업동맹과 사회민주당을 더욱 더 밀접히 접근시키는 정신에서 직업동맹내에서 게으름없이 사업하여야 할것이다.

다음으로 주민의 이주문제에서 슈투트가르트대회의 위원회에서는 기회주의파와 혁명파간의 의견불일치가 아주 선명하게 표면화되었다. 기회주의파는 락후하고 작성하지 못한 로동자들(특히는 일본사람과 중국사람)의 이주권을 제한하려고 하였다. 협애성, 동업조합적폐쇄성, 로동조합주의적배타성의 정신은 그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의 임무, 즉 아직 로동운동에 참가하지 않은 무산계급층을 계발하고 조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것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였다. 대회는 이런 정

신으로부터 출발한 모든 시도를 배격하였다. 위원회에서조차 이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주장하는 사람은 불과 몇사람 안 되었다. 그리하여 국제대회의 전반 결정서는 모든 국가의 노동자들의 련대적계급투쟁에 대한 승인으로서 일관되어있다.

녀성의 선거권문제에 관한 결정서도 역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다만 반자산계급적《페이비안협회》¹⁴²출신의 한 영국 녀성만이 완전한 녀성선거권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유산자들에게 유리한, 제한된 녀성선거권을 위한 투쟁의 허용을 주장하였다. 대회는 이것을 무조건적으로 부결하고 녀성노동자들은 녀성선거권을 위한 투쟁을 자산계급적남녀평등론자들과 함께 진행할것이 아니라 무산계급의 계급적정당과 함께 진행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지지하였다. 대회는 녀성선거권을 위한 운동에서는 사회주의의 제 원칙과 남녀평등권을 완전히 견지하여야 하며 편리를 도모한다고 해서 결코 이런 원칙을 외곡하여서는 안된다고 인정하였다.

위원회내에서는 이 점에 관하여 아주 흥미있는 의견불일치가 발생하였다. 오지리사람들(빅토르 아틀레트, 아델하이드 포프)은 남성의 일반적선거권을 위한 투쟁에서의 자기들의 진출을 변호하였다. 즉 그들은 이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서는 선동에서 녀성선거권의 요구를 전면내 내놓지 않는것이 편리하다고 인정하였다.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들, 특히 췌트겐은 벌써 오지리사람들이 일반적선거권을 위하여 투쟁할 때에 이런 주장을 반대하였다. 출판물에서 췌트겐은 녀성선거권을 위한 요구를 어떠한 정황하에서나 동한시하여서는 안된다는것, 오지리사람들은 편리를 도모한다고 해서 기회주의적으로 원칙을 희생시켰다는것, 만약 녀성의 선거권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고수하였다면 그들은 선동의 규모와 인민운동의 력량을 약화시키지 않고 강화시켰을것이라고 언명하였다. 위원회에서는

독일의 다른 한 탁월한 여성사회민주주의자인 쾰프가 쾰프를 완전히 찬성하였다. 오지리사람들의 전술을 간접적으로 변호하여온 아돌프의 수정안(이 수정안에서는 실지로 전체 공민을 위한 선거권을 쟁취하는 투쟁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만이 언급되어있고 선거권을 위한 투쟁이 항상 남녀평등권을 요구하는 것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언급되어있지 않다.)은 12표 대 9표로써 **부결**되었다. 위원회와 대회의 관점은 쾰프가 국제여성사회주의자대표회의(이 회의와 대표대회는 슈투트가르트에서 동시에 열렸다.)에서 한 연설가운데 다음과 같은 말로써 완전히 정확히 표현될 수 있다. 《우리는 자기가 정확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것을 원칙상 요구하여야 한다. 그러되 투쟁력량이 부족한 경우에 있어서만은 우리는 달성할 수 있는 그것을 취하는 것이다. 사회민주당의 전술은 항상 이려하였다. 우리의 요구가 적으면 적을수록 정부의 양보도 더욱 적게 될 것이다.…» 독자들은 오지리와 독일의 여성사회민주주의자들간의 논쟁으로부터 훌륭한 맑스주의자들이 철저하고 원칙적인 혁명적전술로부터 어떤 사소한 퇴각에 대해서든지 그것을 얼마나 엄격히 취급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다.

대회의 마지막날에는 모든 대표들이 가장 관심하는 군국주의문제를 토론하였다. 악명높은 아르베는 전쟁을 자본주의 제도일반과 또 반군국주의적선동을 사회주의적사업일반과 련계시키지도 못하고 자기의 전혀 무근거한 논점을 변호해나쳤다. 어떤 전쟁에 대해서나 파업과 폭동으로써 《대답할것》이라는 아르베의 초안은 어떤 수단을 취하는가 하는 것이 혁명가의 사건의 결정여하에 달려있지 않고 전쟁이 초래할 경제적 및 정치적 위기의 객관적조건여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폭로하고말았다.

아르베가 의심할바없이 경솔성과 피상성을 그리고 또 감명깊은 문구에 대한 열중을 나타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를 반대하여 한갓 사회주의적인 일반적진리의 교조적서술만을 내놓는것은 아주 근시안적인 행동일것이다. 이런 오유(이 오유를 베벨과 게드도 완전히는 면하지 못하였다.)에 빠진것은 특히 폴마르였다. 그는 진부한 의회주의에 매혹된 인간의 비상한 만족감을 가지고 아르베를 한껏 비난하였으나 한편 그 자신의 기회주의적인 협애성과 고집불통이 사람들로 하여금 아르베 자신이 문제를 설정한것이 리론상으로 불합리하고 황당무계하기는 **하지만** 그의 사상에 한가닥의 생명력있는것이 있다는것을 **승인하지 않을수 없게 한다는 사실은** 알아차리지 못하였다. 운동이 새로운 전환에 처해있을 때 리론상의 불합리성의 배후에는 약간의 실제적진리가 숨어있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들, 특히 로자 룩셈부르그는 자기의 연설에서 문제의 이 측면을, 즉 의회적투쟁방식만 중시하지 말라는 호소를, 미래의 전쟁과 미래의 위기의 새로운 조건들에 따라 활동하라는 호소를 강조하였던것이다. 로자 룩셈부르그는 로씨야사회민주당의 대표들(레닌과 마르토프—양자는 이 문제에서 일치하였다.)과 함께 베벨의 결정서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이 수정안에서는 청년들속에서의 선동사업의 필요성, 전쟁으로 인한 위기를 리용하여 자산계급의 붕괴를 가속화할 필요성, 계급투쟁의 심화와 정치형세의 변경에 따르는 투쟁방법 및 수단의 필연적변경을 고려할 필요성이 강조되어 있었다. 베벨의 교조주의적이며 일면적인, 죽은 그리고 폴마르적해석을 허용한 결정서는 이와 같이 하여 결국 전혀 다른 결정서로 변하게 되었다. 군국주의를 반대한다 하여 사회주의를 망각하려고 하는 아르베주의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모든 리론적진리들을 이 결정서에서 재차 언명하였다. 그러나 이 진

리들은 '의회광신병²³⁷을 변호하며 단지 평화적수단만 신성화하며 비교적 평화롭고 안정한 현정제에 맹종할데 대한 서론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모든 투쟁수단을 승인하며 로씨야혁명의 경험을 참작하며 운동의 적극적이며 창조적인 측면을 발전시킬데 대한 서론으로 되는것이다.

우리가 이미 여러번 언급한 쟈트킨의 기관지에서는 반군국주의에 관한 대회결정서의 이 가장 훌륭하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아주 옳게 포착되어있다. 쟈트킨은 반군국주의결정서에 언급할 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여기에서도 로동계급의 혁명적의력(Tatkraft)과 자기들의 투쟁능력에 대한 그들의 견정한 신념은 결국 승리하였다. 즉 한편으로는 무능한 비판주의적복음서와 낡고 단순히 의회투쟁방식에만 그치려는 완강한 시도를 분쇄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의 절반무정부주의자 아르베따위들의 유치한 반군국주의수단도 분쇄하였다. 위원회에 의해서나 거의 900명에 달하는 전 세계 대표들에 의해서나 결국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정서는 최근의 국제당대회이래의 혁명적로동운동의 일대 양양을 정력적인 인사로써 표현하고있다. 또 이 결정서는 무산계급의 전술원칙으로서 그의 명활성, 그의 발전능력, 조건의 성숙에 따르는 그의 **침예화(Zuspitzung)**를 내세우고있다.》

아르베주의는 배격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것이 배격당한 것은 기회주의를 위해서가 아니며 교조주의와 소극적태도의 견지에서가 아니다. 보다 더 견정하고 새로운 투쟁방법에 대한 절박한 요구는 국제무산계급에 의해 완전히 승인되었으며 경제적모순들의 일체 침예화와 자본주의에 의해 산생되는 위기의 모든 조건들과 결부되게 되었다.

공허한 아르베식의 위협이 아니고 사회혁명의 불가피성에 대한 명확한 자각, 끝까지 투쟁하려는 굳은 결의, 가장 혁명

적인 투쟁수단을 택하려는 용의—바로 이러한것이 군국주의문제에 관한 슈투트가르트국제사회당대회결정서의 의의이다.

무산계급의 군대는 모든 나라들에서 날로 강화되고있다. 그들의 자각성, 단결성 및 결단성은 매일이 아니라 매시간마다 증대되고있다. 한편 자본주의는 이 군대가 자본주의의 파괴를 위하여 리용하게 될 위기가 빈번해지는것을 심히 넘쳐하고있다.

1907년 9월에 집필

1907년 10월 《1908년도 종합년감》에 게재

서명: 엔. 엘.

년감원문에 의하여 인쇄

《메닌전집》, 한문판, 제13권, 66~76페이지

논문집 《12년간》의 서문³⁶⁷

여기서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이 논문 및 소책자집에는 1895년으로부터 1905년에 이르는 시기의 저작들이 들어있다. 여기에 수록된 저작들의 주제로 되고있는것은 로씨야사회민주당의 강령문제, 전술문제, 조직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로씨야에서의 맑스주의사조의 우익을 반대하는 투쟁에서 언제나 제기되고 또 구명되고있다.

처음에는 이 투쟁은 90년대의 우리 나라의 합법적맑스주의¹⁵⁷의 주요한 대표자인 스트루웨씨를 반대하여 순 이론적분야에서 진행되었다. 1894년말과 1895년초는 우리 나라의 합법적정론계에 있어서 급격한 전환기였다. 해외에 있는 《로동해방단》³⁵의 활동가들에 의해서뿐만아니라 로씨야에 있는 사회민주주의자들에 의해서도 맑스주의가 처음으로 우리 나라의 정론계에 소개되었다. 활기를 띠게 된 저술활동과 그때까지 선진적저작계를 거의 독점하다싶이 한 인민파의 낡은 두목들(페컨데 엔.까.미하일롭스끼)과 맑스주의자들간에 벌어진 격렬한 논전은 로씨야에서 대중적로동운동의 양양의 발단으로 되었다. 로씨야맑스주의자들의 문필활동은 무산계급이 발동한 투쟁, 즉 1896년의 유명한 베제르부르그파업⁶²들의 직접적인 서막이었다. 이런 파업들은 그후 부단히 양양된 로동운동 즉 우리의 전반 혁명의 가장 강대한 요인으로 되는 로동운동의 새로운 기원을 열어놓았다.

당시의 저술상 조건으로 하여 사회민주주의자들은 부득불

이소프우화식언어로 말하게 되었으며 실천과 정치와는 가장 거리가 먼 아주 일반적인 명제들을 논의할수밖에 없었다. 이런 사정은 인민주의와의 투쟁에서 각종 맑스주의자들의 편명을 특히 용이하게 하였다. 해외와 국내의 사회민주주의자들과 함께 스트루웨씨, 불가코브씨, 푸간-바라놉스끼씨, 베르자예브씨 등과 같은 사람들이 이 투쟁을 진행하였다. 이들은 모두 자산계급민주주의자들로써 인민파와 결렬함으로써 소시민적사회주의(또는 농민적사회주의)로부터 우리들처럼 무산계급적사회주의(또는 농민적사회주의)로부터 우리들처럼 무산계급적사회주의(또는 농민적사회주의)로 이행하려고 한것이 아니라 자산계급적자유주의(또는 농민적사회주의)로 이행하려고 하였던것이다.

오늘 령현민주당⁸⁴의 역사도 포함하는 로씨야혁명의 역사가, 특히는 스트루웨씨의 진화(거의 10월당⁸⁵에까지 이른 진화)가 이 진리를 자명한것으로 만들었고 정론계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되게 하였다. 1894~1895년기간에는 이 진리를 맑스주의로부터 다소 떨어져나간, 이러저러한 저술가의 편향을 근거로 하여 증명하는수밖에 없었으며 그때 이 진리는 발견되는 과정에 있을따름이었다. 때문에 지금 내가 스트루웨씨를 반박한 나의 저서(까.풀린이라는 서명하에 출판물검열기관에 의하여 소각된 논문집 《로씨야의 경제적발전문제에 관한 자료》¹⁵⁹에 수록된 논문 《인민주의의 경제적내용과 스트루웨씨의 저서에 있어서의 그것에 대한 비판》, 1895년 썬크트 페테르부르그판^①)를 지금 다음과 같은 제가지 목적에서 그대로 재판하기로 한다. 첫째로 독자들이 스트루웨씨의 저작과 1894~1895년에 맑스주의자들을 반대하여 집필된 인민파의 논문들을 알고있었던만큼 스트루웨씨의 견해를 비판하는것도 의의가 있는것이다. 둘째로 인민파를 반대하는 우리의 공동행동과 때를 같이하여 스트루웨씨에게 준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들의 경고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1권, 311~481페이지를 보라. —편집자

는 그러한 신사들과 동맹한다고 우리들을 제삼 비난한 사람들에 대해 답변하는데 있어서나, 스트루웨씨의 아주 의미심장한 정치적경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나 모두 의의가 있는것이다. 셋째로 오래전에 진행된 또 많은 면에서 때가 지난 스트루웨씨의 토론전은 교훈적표본으로서의 의의를 가진다. 이 표본은 리론상에서의 비타협적인 토론의 실천적, 정치적 가치를 보여준다. 사람들은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들이 《경제주의자》나 베른슈타인파나, 멘셰위크들과 그러한 토론을 하는것을 지나치게 좋아한다고 빈번히 비난하여왔던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비난은 사회민주당내의 《용화파》와 사회민주당을 《동정》하는 당의 절반사회주의자들에게서 가장 잘 팔리는 물건으로 되고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을 포함한 로씨야사람들이 특히는 볼셰위크들이 토론과 분렬을 지나치게 즐긴다고 말하기를 좋아들 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또 로씨야자산계급혁명의 조건들을 포함한 자본주의국가의 조건들이 특히는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생활조건과 활동조건들이 사회주의로부터 자유주의에로 뛰어넘기를 지나치게 좋아하는 경향을 낳고있다는 것을 망각하기를 좋아들 한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10년전에 있던 일들, 《스트루웨주의》와의 어떠한 리론상의 의견상이가 그당시에 나타났으며 어떠한 사소한(일핏 보기에 사소한) 의견상으로부터 정당들의 완전한 정치적분리를 보게 되고 의회와 일련의 출판물과 인민집회 등등에서의 무자비한 투쟁을 보게 되였는가를 고찰하는것은 아주 유익한 일이다.

스트루웨씨를 반박하는 이 토론에 대하여 또 지적하여야 할것은 1894년 가을에 당시의 맑스주의자들의 조그마한 소조에서 내가 한 연구보고가 이 토론의 기초로 되어있다는 점이다. 그당시 뻬제트부르그에서 사업하였고 1년후에 로동계급해방투쟁동맹회를 결성한 그 사회민주주의자들로부터는 스트.

와 에르.와 내가 이 소조에 참가하였다. 당시 합법적맑스주의 저술가들중에서는 뵘.베.스트루웨, 아.엔.뵘트레쾨브 및 까.가 참가하였다. 이 소조에서 나는 《자산계급출판물에서의 맑스주의의 반영》이라는 제목으로 연구보고를 하였다. 이 제목에서 알수 있다싶이 스트루웨와의 론전은 여기서는 1895년 봄에 발표된 논문에서보다 비할바없이 더 첨예하고 더 명확하였던(사회민주주의적결론에 있어서)것이다. 그러던 론쟁이 그렇게 완화된것은 일부는 검열상 고려에서였고 또 다른 일부는 인민파를 반대하는 공동투쟁을 위하여 합법적맑스주의자들과 《동맹》을 결성할 목적에서였다. 뵘제르부르크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당시 스트루웨씨에게 준 《왼쪽으로의 추동》이 전혀 효과없는것은 아니었다는것은 조각된 논문집(1895년)에 실린 스트루웨씨의 논문과 잡지 《새말》76(1897년)에 실린 그의 몇몇 논문들이 명확히 증명해주고있다.

그의 스트루웨씨를 반박하는 1895년의 논문을 읽을 때 이 논문이 많은 면에서는 그후의 경제저작(특히는 《자본주의의 발전》)의 요강이라는것을 넘두에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맑스주의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자산계급혁명의 전야에 처해있는 나라에서의 혁명적민주주의적조류인 인민파의 긍정적인 특징과 측면이 강조되어있는 이 논문의 마지막페이지들에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겠다. 이는 12~13년후에 제2차국회선거에서의 《좌익련맹》과 《좌익련맹》의 전술에서 실천적-정치적으로 표현된 바로 그 명제들을 리론적으로 정식화한것이다. 무산계급과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독재의 사상을 반대하였고 좌익련맹을 전결히 반대하여온 일부분의 멘셰위크들은 이 점에서 《서광》잡지147와 구《이스크라》지138가 극력 지지하여온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들의 아주 오랜 그리고 아주 중요한 전통을 배반한것이다. 《좌익련맹》전술의 조건부적이고 제한된

허용이 인민주의에 대한 맑스주의의 바로 그와 같은 이론상의 기본전해들로부터 불가피적으로 나온다는것은 자명한 일이다.

스트루웨를 탄박하는 논문(1894~1895년)의 뒤에는 1895년의 빼쎄르부르그사회민주주의자들의 사업경험에 근거하여 1897년말에 집필된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의 임무》①가 수록된다. 본 논문집의 기타 논문들과 소책자들에서는 사회민주당우익파의 논전의 방식으로 서술되어있는 그 관점들이 이 소책자에서는 긍정적인 방식으로 서술되어있다. 논문《임무》와 우리 당 발전의 부동한 시기들과의 련관성을 지적하기 위하여 이 저작의 각이한 서문들(베킨대 악셀로드의 서문은 이 소책자와 《경제주의》를 반대하는 투쟁과의 련관성을 강조하고 있고 1902년의 서문은 인민의지파³⁶와 인민권리파³⁹의 진화를 강조하고있다.)이 전재되었다.

논문《지방자치국의 압박자들과 자유주의의 한니발들》②은 1901년에 국외에서 발간되던 잡지《서광》에 발표되었다. 이 논문은 말하자면 정객으로서의 스트루웨와 사회민주주의자들간의 교제를 끊는것으로 된다. 1895년에는 그에게 경고하였으며 동맹자로서의 그로부터 심중히 계선을 갈랐다. 1901년에는 또 순 민주주의적 요구조차 얼마간이라도 철저하게 견지할수 없는 자유주의자로서의 그에게 선전포고를 하였다.

나는 1895년에 즉 서방에서 《베른슈타인파》가 나타나고 로씨야에서 많은 《진보적》문필가들이 맑스주의와 완전히 결렬하기 몇해전에 스트루웨씨는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판계를 끊어야 할 믿음성없는 맑스주의자라고 지적한 일이 있다. 1901년에, 즉 령현민주당이 로씨야혁명에 진출하여 이 당이 제1차 및 제2차 국회에서 정치상의 참패를 당하기 몇해전에 나는

① 이 책의 129~156페이지를 보라. —편집자

② 《베닌전집》, 한문판, 제5권, 17~63페이지를 보라. —편집자

1905~1907년의 대중적정치활동과 진출에서 나타난 로씨야자산계급자유주의의 특징들을 지적한 일이 있었다. 논문 《자유주의의 한니발들》은 한 자유주의자의 옳지 못한 논조를 비판하는것이지만 이 비판은 오늘 우리 나라 혁명에서 가장 큰 자유주의적정당의 정책에 대해서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는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1905~1907년에 령헌적환상 및 령헌민주당을 반대하여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한것은 우리 불체위크들이 자유주의에 대한 전통적인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정책을 배반한것처럼 생각하기를 즐기는데 논문 《자유주의의 한니발들》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오류를 보여줄것이다. 불체위크들은 혁명적사회민주주의의 전통에 의연히 충실하였으며 자유주의자들이 《령헌적우여파절》의 시기에 지지하였고 또 한때 우리당 우익의 의식을 모호하게 하였던 자산계급적열광성의 영향을 받은 일은 없었다.

그다음의 소책자 《무엇을 할것인가?》^①는 1902년초에 국외에서 출판되었다. 이 소책자는 이미 출판계의 우익이 아니라 사회민주당조직내의 우익을 비판한것이였다. 1898년에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제1차대회¹²⁶가 열리었는데 이 대회는 로씨야사회민주노동당의 기초를 닦아놓았다. 《로동해방단》도 포함한 재의《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동맹》⁸⁰은 이미 당의 재외조직으로 되었다. 그러나 당중앙기관은 경찰에게 분쇄된채 재건되지 못하였다. 당의 통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당의 통일은 다만 사상, 지시로서만 남아있었다. 파업운동과 경제투쟁에 대한 열중은 그때 사회민주당내의 기회주의의 특수한 형태인 소위 《경제주의》를 산생시켰다. 바로 1900년말, 《이스크라》파가 국외에서 활동을 시작하였을 때 이 기초우에서의

① 이 책의 289~444페이지를 보라. —편집자

분렬은 이미 사실로 되었다. 1900년 봄에 플레하노브는 재의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동맹》에서 탈퇴하고 단독으로 《사회민주주의자》라는 조직을 성립하였다.

《이스크라》는 형식상에서는 이 두 분파와는 관계없이, 그러나 실상은 《동맹》을 반대하여 플레하노브집단과 함께 자기의 사업을 시작하였다. 통일하려는 시도(1901년 6월 쾰리히에서 열린 《동맹》과 《사회민주주의자》대회)는 성공하지 못하였다. 소책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의견불일치의 원인과 이스크라의 전술 및 조직활동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지금의 볼셰위크의 론적들—멘셰위크 및 자산계급자유주의 진영중의 저술가들(법헌민주주의자, 신문 《동지》²⁶⁸중의 《무제파》¹⁴⁹ 등등)은 소책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흔히 말할 한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조직관계의 세부나 또는 소소한 론전상 의견들만은 생략하고 이 소책자를 거의 그대로 재판한다. 이 소책자의 정진실질에 관하여는 지금의 독자들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소책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가지고 론쟁하고있는 사람들이 범하고있는 주요한 오류는 그들이 이 저작을 일정한 역사적배경 및 우리 당의 발전에서 지금은 이미 먼 과거로 된 시기와 완전히 분리하고있다는데 있다. 케컨대 빠르부스³⁵⁸(수많은 멘셰위크들은 말할것도 없거니와)가 이러한 오류를 뚜렷하게 드러냈었다. 소책자가 발간되어 여러해가 지난후에 그는 이 소책자가 직업적혁명가들의 조직에 관해서 옳지 않거나 또는 과장된 사상으로 집필되었다고 말하였던것이다.

지금에 와서 그런 말을 한다는것은 마치 우리 당의 발전에서의 완전한 한시기를 거부하며 그당시에는 루쟁으로써만 얻을수 있었고 또 지금에 와서는 오래전에 이미 공고히 되었고 자기의 사명을 완수한 그런 성과를 거부하려고 하는듯한

가소로운 인상을 산생시킨다.

지금에 와서 《이스크라》가 직업적혁명가들의 조직의 사상을 과장하였다(1901년과 1902년에!)고 말하는것은 일로전쟁 이후에 와서 일본사람들이 로씨야의 군사력을 과장하였다거나 또는 전쟁전에 이 군사력과 투쟁할데 대하여 지나치게 우려하였다고 비난하는것과 똑같은것이다. 일본사람들로서는 승리하기 위하여 로씨야가 동원할수 있는 최대의 력량을 반대하여 전체 력량을 집결시켜야 하였던것이다. 유감스럽게도 많은 사람들이 실정을 모르며 또 **지금에 와서는** 직업적혁명가들의 조직에 대한 사상이 **벌써** 완전한 승리를 얻었다는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 당을 시비하고있는것이다. 그러나 그때 이 사상을 첫자리에 내세우지 않았다면, 이 사상의 실현을 방해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과장해서》 납득시켜주지 않았다면 승리는 불가능한것이였다.

《무엇을 할것인가?》는 1901년과 1902년의 《이스크라》의 전술과 《이스크라》의 조직정책을 **총괄**한것이다. 확실히 그것은 알맞은 《총괄》이다. 1901년과 1902년의 《이스크라》를 읽어 보기만 한다면 누구나 의심할바없이 이 점①을 확신하게 될것이다. 그러나 그당시 **우세를 점한** 경제주의와 《이스크라》와의 투쟁을 모르며 또 이 투쟁을 리해하지 못하면서 이 총괄에 관해서 평론하는자는 정말 되는대로 말하는자이다. 《이스크라》는 직업적혁명가들의 조직의 건립을 위하여 투쟁하였으며 특히 1901년과 1902년에 **결렬**하게 투쟁하였다. 그리하여 그당시 우세를 점하였던 경제주의를 타승하고 1903년에는 중국적으로 이 조직을 **창건**하게 되었으며 그후 이스크라파가 분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풍우와 습격의 시기에 온갖 파란폭질

① 《이스크라》지에 게재된 논문들중에서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논문들은 본판 제3권368에 수록될것이다.

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직을 고수하였으며 로씨야혁명의 전 기간에 걸쳐 그것을 고수하였으며 1901~1902년부터 1907년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고수하고 보존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 조직을 위한 투쟁이 이미 오래전에 끝난 오늘에 와서 즉 씨를 뿌리고 열매가 익고 추수가 끝난 오늘에 와서 사람들이 나서서 《직업적혁명가들의 조직에 대한 사상을 파장한다!》고 선포하고있다. 과연 이것은 가소로운 일이 아니겠는가?

혁명전의 전반 시기와 혁명직후의 2년 반(1905~1907년)을 돌이켜보라. 이 기간에 있어서의 우리 사회민주당을 그의 단결성, 조직성과 계승상의 완전무결성 면에서 다른 당들과 비교해보라. 그러면 이 점에서 우리 당이 럽헌민주당이나 사회혁명당²⁰⁸이나 다른 모든 정당들보다 우월하다는것은 **다들수 없는** 사실이라는것을 사람들은 승인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사회민주당은 혁명전에 전체가 정식으로 승인한 사회민주당강령을 제정하였으며 또 거기에 약간의 수정이 가해지기는 하였지만 강령때문에 분렬되는 일은 없었다. 사회민주당은 분렬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03년부터 1907년까지(공식적으로는 1905년부터 1906년까지) 당내정황에 관한 대량적자료(당의 제2차전국대회²¹¹, 제3차불췌위크당대회²²⁴, 제4차합동당대회 즉 스톡홀름대회²⁹¹의 기록들)를 대중에게 제공하였다. 사회민주당은 분렬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조직으로서 가질수 있는 리상적인 민주제도 즉 조직된 당원수에 의하여 대회의 대표를 선거하는, 선거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른 모든 당들보다 자유의 일시적시기를 먼저 리용하였던것이다. 이런 일은 지금까지는 사회혁명당에게도 또 우리에게 비하여 헤아릴수없이 많은 자금과 출판물리용의 여지와 공개적활동의 가능성을 가지고있는 기본상 합법적이며 가장 잘 조직된 자

산계급정당인 령헌민주당에게도 없었던것이다. 그리고 모든 정당들이 참가한 제2차국회선거야말로 과연 우리 당이나 우리 국회대표단의 조직적단결성이 다른 모든 정당에 비하여 더 강하다는것을 똑똑히 증명하지 않았던가?

우리 당의 이 최대의 단결성과 공고성과 견실성은 누가 실현시켰으며 누가 구현시켰는가? 그것은 우선 《이스크라》의 참가하에 건립된 직업적혁명가들의 조직이 했던것이다. 우리 당의 역사를 잘 알고있고 그 건설을 몸소 체험한 사람은 임의의 분파의 대표성원을, 케컨대 런던대회³⁶⁴분파의 대표성원을 보기만 한다면 이 점을 확신하게 될것이며 또 누구보다도 열심히 당을 길러왔으며 또 길러낸 그런 오랜 기본적인 핵심을 단번에 알아볼수 있을것이다. 물론 이 성공의 근본조건으로 되는것은 로동계급—그의 가장 우수한 부분이 사회민주당을 창건하였다.—이 객관적인 경제적원인으로 인하여 자본주의사회의 모든 계급들중에서 가장 큰 조직능력을 소유하고있다는 점이다. 이런 조건이 없다면 직업적혁명가들의 조직은 일종의 장난감으로, 모험으로, 텅 빈 간판으로 되었을것이다. 따라서 소책자 《무엇을 할것인가?》는 《참으로 혁명적이며 자발적으로 투쟁에 참가하는 계급》과 서로 결합되어야만 그 소책자에서 수호되는 조직은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재삼 강조하게 되는것이다. 그러나 무산계급이 계급으로 통합되는 그 최대의 객관적능력은 산 사람에 의하여 실현되는것이며 일정한 조직형식을 통해서 실현되는것이다. 따라서 이스크라조직외의 다른 모든 조직은 우리 나라 역사적조건하에서는 1900~1905년의 로씨야에서는 이미 건립되어있는바와 같은 그러한 사회민주당을 건립할수 없었을것이다. 직업적혁명가들은 로씨야무산계급사회주의력사에서 자기의 사업을 완수하였다. 지금에 와서는 어떠한 세력도 이미 오래전에 1902~1905년당시의 《소

조들》의 협소한 범위를 벗어나 발전장성한 이 사업을 파괴하지는 못할 것이며 그 당시에는 오직 투쟁으로써만 전투적임무의 수행에의 정확한 착수를 보장할수 있었던 사람들이 그 임무를 과장한데 대한 뒤늦은 불평은 어떤것임을 막론하고 이미 달성된 성과의 의의를 동요시키지는 못할것이다.

나는 방금 구《이스크라》지시대의 소조들의 협소한 범위에 대하여 말하였다.(1903년말부터 즉 제51호부터 《이스크라》는 멘체위크편으로 전환하고 《구〈이스크라〉와 신〈이스크라〉사이에는 심연이 놓여있다.》고 선언하였다. 이 말은 멘체위크의 《이스크라》 편집부의 지지를 받은 소책자에서 한 프로프끼의 말이다.) 이 소조습성에 관해서는 지금의 독자들에게 약간의 해석을 주어야 하겠다. 소책자 《무엇을 할것인가?》에서나 그후 출판된 소책자 《1보전진 2보후퇴》^①에서나 독자들은 재외소조가 진행한 격렬한, 때로는 광포하고 잔혹한 투쟁을 보게 될것이다. 이 투쟁이 많은 불유쾌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소조들간의 이런 투쟁은 로동운동이 아직 매우 어리고 미숙상태에 있는 나라들에서만 가능한 현상이라는것은 의심할바없다. 로씨야현대로동운동의 현대활동가들이 사회민주당의 당면한 임무를 강력히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소조습성의 이러저러한 전통과 결렬하며 소조생활과 소조적불화의 사소한 일들을 망각하고 포기하여야 한다는것은 의심할바없다. 당이 무산계급분자들으로써 확대되고 공개적인 대중활동과 련결되어야만 당면임무에 적응되지 않는 지난 시기의 모든 소조습성의 흔적들을 제거해버릴수 있다. 볼셰위크들이 1905년 11월에 공개적활동을 위한 조건들이 조성되자 곧 《신생활》369지에서 선포한 로동자당의 민주주의적조직에로의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7권, 189~420페이지를 보라. —편집자

이행①은 실상은 낡은 소조습성중의 때가 지난것과의 철저한 결렬이었다. …

그렇다. 다름아닌 《때가 지난것과의 결렬이다》. 왜냐 하면 소조습성을 비난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그것이 지난 시기의 독특한 조건하에서 논 역할을 료해할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한때 소조들은 필요한것이였으며 적극적인 역할을 놀았다. 일반적으로 전제국가에서는, 특수적으로 **로씨야**혁명운동의 전 력사에 의하여 조성된 그런 조건하에서는 사회주의로동당은 소조들로부터 발전할수밖에 없었다. 소조들은 즉 거의 언제나 개인적인 우정에 기초하고있는 극소수인들의 긴밀한 고립적인 결합은 로씨야에서의 사회주의와 로동운동의 필요한 발전단계였다. 이 운동이 발전함에 따라 이 소조들을 련합시켜 소조들간의 공고한 련계를 건립하며 계승성을 확립할 임무가 제기되였다. 이런 임무를 해결하려면 전제제도의 《세력 범위밖에서》, 즉 **국외에서** 견고한 진지를 건립하지 않고서는 안되였다. 국외의 소조들은 이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산생된것이다. 이런 소조들간에는 련계가 없었으며 그들에게는 로씨야국내에 있는 당의 권위가 미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들은 그당시 운동의 기본임무를 리해함에 있어서 즉 이러 저러한 진지를 **어떻게** 건설할것인가, 어떠한 방향에서 전당의 건설을 촉진할것인가 하는것들을 리해함에 있어서 불가피적으로 분렬되였던것이다. 그러한 조건하에서는 이 소조들간의 두쟁은 불가피한것이였다. 지금 과거를 돌이켜볼 때 어떠한 소조가 실지로 진지의 작용을 일으킬수 있었는가를 똑똑히 보게 된다. 그러나 각 소조들이 갖 활동하기 시작했을 당시에는 누구도 이것을 긍정할수 없었으며 투쟁만이 론쟁을 해결할수 있었던것이다. 그런데 빠르부스가 후에 구《이스크라》를 잔혹한

① 《베년전집》, 한문판, 제10권, 10~19페이지를 보라. —편집자

소조투쟁을 하였다고 비난하고 조화주의정책을 때늦게 설교하였던 일이 생각난다. 그러나 사후에 이런 논의를 발표하기는 쉬운 일이며 또 이런것을 말한다는것은 당시의 조건들에 대한 물리해를 폭로함을 의미하는것이다. 첫째로 이러저러한 소조들의 역량과 **엄숙성**을 잴수 있는 아무런 기준도 없었다. 지금은 망각되었으나 그당시에는 투쟁으로써 자기의 생존권을 증명하려고 한 허명무실한 소조들이 많았다. 둘째로 소조들간의 의견상이는 당시에는 아직 새로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것인가 하는데 있었다. 나는 벌써 그당시에도(《무엇을 할것인가?》에서) 의견상이는 사소한것으로 보이지만 실지에 있어서는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한 일이 있다. 왜냐 하면 새로운 사업의 초기에는, 사회민주주의운동의 초기에는 이 사업과 운동의 일반적인 성격에 대한 규정은 선전, 선동, 조직 사업에 아주 본질적인 영향을 주기때문이다. 후에 사회민주주의자들사이에 벌어진 논쟁들은 모두 이러저러한 개별적경우에 노동자당의 정치활동을 어떻게 진행할것인가에 관한것이였지만 그당시에는 **모든** 사회민주주의적정책의 가장 일반적인 원칙과 가장 기본적인 임무들을 일반적으로 규정하는것이 문제였었다.

소조방식은 자기의 사명을 다하였으며 오늘에 있어서는 물론 때가 지났다. 그러나 그것이 때가 지났다는것은 소조들간의 투쟁이 사회민주당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극히 첨예하게 제출하고 이 문제들을 비타협적인 혁명적정신으로 해결함으로써 광범한 당사업을 위한 튼튼한 기초가 닦아졌기때문이며 또 오직 그때문이다.

소책자 《무엇을 할것인가?》와 관련하여 문필계에서 야기된 부분적문제들중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두개 문제만을 제기 하겠다. 소책자 《1보전진 2보후퇴》가 나온 직후인 1904년에

《이스크라》지를 통하여 플레하노프는 자연발생성과 자각성 문제에서의 나와의 원칙적인 의견상이를 선포하였다. 나는 이 선포에 대해서도(만약 제베바의 신문 《전진》270에 실린 각주370 하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멘셰위크의 출판물에서의 이와 유사한 많은 언론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내가 답변하지 않은것은 플레하노프의 비판이 로골적인 생트집이며 또 그것이 서로 편편이 없는 문구들이나 나의 그리 타당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리 정확하지 못하게 서술된 개별적표현들에 근거하였기때문이며 또한 소책자의 총적내용과 전반 정신을 전혀 무시하고있기때문이다. 《무엇을 할것인가?》는 1902년 3월에 출판되었다. 당강령초안(《이스크라》 편집부가 수정을 가한 플레하노프의 강령)은 1902년 6월인가 7월에 발표되었다. 자연발생성과 자각성의 관계는 이 초안에서는 《이스크라》 편집부의 일치한 합의밑에 정식화되었던것이다.(편집부내에서 플레하노프와 나 사이의 당강령에 관한 논쟁들이 벌어지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바로 이 문제에 관한것이 아니라 대생산이 소생산을 배제하는데 관한 문제와 무산계급 또는 근로계급 일반의 각이한 견해에 관한 문제였다. 앞의 문제에서 나는 플레하노프의 정식화보다 더 확정적인것을 요구하였으며 뒤의 문제에서 나는 당의 순 무산계급적성격을 더욱 엄격하게 규정할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서는 강령초안과 《무엇을 할것인가?》간에 아무런 원칙적차이도 운운될수 없었던것이다. 제2차대회에서(1903년 8월) 그당시 경제파였던 마르띠노프는 강령에 서술된 자연발생성과 자각성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반박하였다. 내가 소책자 《1보전진 2보후퇴》에서 강조한것과 같이 전체 이스크라파분자들은 모두 마르띠노프를 반박하였다. 이로부터 본질적인 의견상이는 이스크라파를 한편으로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을 할 것인가?》 및 강령초안에 공통적으로 있었던 그것을 공격하였던 경제파간에 있었다는 것이 명백하다. 또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의 나의 정식화들을 제2차 대회에서도 특별한 원칙을 이루는 그 어떤 《강령적인 것》으로 만들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와 반대로 나는 그후에 와서 자주 인용된 말 즉 지팽이를 꾸부린다는 말을 사용하였던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즉 경제파들에 의하여 꾸부러지는 지팽이가 바로잡아지고 있다. (《1903년 로씨야사회민주노동당 제2차대회 회의록》, 1904년 제네바판을 보라.) 그리고 우리가 꾸부러지고있는 것을 견결히 바로잡고있기때문에 우리의 《지팽이》는 항상 가장 곧은 것으로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①.

이 말의 의미는 명백하다. 즉 《무엇을 할 것인가?》는 논전을 통해서 경제주의를 시정하고있는바 이 소책자의 이러한 임무를 떠나서 그 내용을 고찰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반대한 플레하노프의 논문이 신《이스크라》의 논문집(《2년간》)에 수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려하여 나는 지금 플레하노프의 논거들에는 언급하지 않고 다만 허다한 멘셰위크적저작들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인증을 보게 되는 지금의 독자들에게 문제의 실질만을 설명해두는바이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경제투쟁과 직업동맹에 관한 문제이다. 출판물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나의 견해가 흔히 외포되고 있다. 그렇기때문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의 많은 편쪽은 경제투쟁과 직업동맹이 가지는 중대한 의의를 천명하는데 들려져있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더우기 나는 그때 직업동맹의 중립에 찬성한바 있었다. 나는 그때로부터 나의 논

① 《레닌전집》, 한문판, 제6권, 445페이지를 보라.—편집자

적들의 허다한 주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책자들에서도 신문론설들에서도 **그와 달리는 주장하지 않았다.** 오로지 로씨야사회민주당 런던대회와 슈투트가르트국제사회당대회만이 나로 하여금 직업동맹의 중립을 **원칙상** 견지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하였던것이다. 직업동맹을 당에 가장 긴밀히 접근시키는것—이것만이 유일하게 정확한 원칙인것이다. 직업동맹을 당에 접근시키고, 련계시키려는 지향—우리의 정책은 이러한것이여야 하며 이 정책에 대한 공허한 《승인》을 추구하지도 말며 또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을 직업동맹에서 축출하지도 말면서 우리의 모든 선전, 선동 및 조직 사업에서 **결결히 철저히** 이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는것이다.

*

소책자 《1보전진 2보후퇴》는 1904년 여름에 제네바에서 출판되었다. 그것은 제2차대표대회(1903년 8월)에서 멘쉐위크와 불쉐위크간의 분렬의 첫단계를 서술하고있다. 나는 이 소책자에서 약 절반을 삭제하여버렸다. 왜냐 하면 조직문제 특히 당중앙기관성원문제로 인한 투쟁의 세질들은 지금의 독자들의 흥미를 절대 끌수 없으며 또 그 실질로부터 보아 잊어버려도 무방한것이기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제2차대회에서 벌어진 진출상 견해와 기타 견해들의 투쟁에 대한 분석이나 멘쉐위크들의 조직상 견해와의 론전이 본질적인것으로 나에게는 생각된다. 왜냐 하면 그 분석이나 론쟁은 우리 혁명에서 로동당이 진행해온 활동에 자기의 흔적을 남긴 사상적파벌인 멘쉐위크와 불쉐위크를 리해함에 있어서 필요하기때문이다.

나는 사회민주당 제2차대회에서의 수다한 론쟁중에서도 지강령에 관한 론쟁을 특히 지적하려 한다. 사실은 당시의 우리의 강령(때운땅의 반환)이 지나치게 협소하였으며 또 농민의 혁명적-민주주의적운동의 력량을 **과소평가하고있었다**는

것을 의심할바없이 증명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 논문집의 제2권①에서 더 상세히 말하겠다. 여기서 이 지나치게 협소한 토지강령조차 당시의 사회민주당우익에게는 너무도 광범한것으로 보였다는것을 강조하는것이 중요하다. 마르띠노브와 기타의 경제주의분자들은 이 강령이 마치 지나치게 멀리 나간듯이 여기면서 그것을 반대하여 싸웠던것이다! 이로부터 알수 있는것은 경제주의에 대한 구《이스크라》의 전반 투쟁, 즉 사회민주당의 정책의 전반 성격을 모두 협소하게 만들며 저하시키는것을 반대하는 투쟁이 얼마나 중대한 실천적의의를 가졌던가 하는것이다.

그당시(1904년 상반기) 멘셰위크들과의 의견상이는 조직문제에 국한되어있었다. 나는 멘셰위크들의 입장을 《조직문제에서의 기회주의》라고 정식화하였다. 빼. 빼. 악셀로드는 이것을 반박하면서 카우쯔키에게 다음과 같이 써보냈다. 《강령상 또는 전술상 견해와의 유기적연계를 떠난 그 어떤 독립적인것으로 제기되고있는 이 〈조직문제에서의 기회주의〉라는것이 도대체 무슨 물건인지를 나의 미약한 리해력을 가지고서는 리해할수 없다.》(카우쯔키에게 보낸 1904년 6월 6일부 서한, 신《이스크라》의 논문집 《2년간》 제2권, 149페이지에 수록)

조직상 견해에서의 기회주의자와 전술상 견해에서의 기회주의의 유기적연계란 어떤것인가 하는것은 1905~1907년의 멘셰위크의 전 력사가 충분히 보여주었던것이다. 《조직문제에서의 기회주의》이라는 이 《리해할수 없는 물건》에 관하여 말한다면 현실은 나의 평가의 정당성을 나의 예상밖으로 훌륭히 확증하여주었다. 멘셰위크인 체레와닌조차도 악셀로드의 조직계획(악명높은 《로동자대회》³¹¹ 등등)으로부터는 무산계급의 사업을 망쳐먹는 분렬만이 발생한다는것을 지금에 와서

① 《베년결집》, 한문판, 제13권, 234~236페이지를 보라. —편집자

는 승인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는것(1907년의 로씨야사회민주당 동당 런던대회에 관한 체레와닌의 소책자를 보라.)을 지적하면 충분하다. 그뿐이 아니다. 멘셰위크인 체레와닌은 플레하노브가 런던에서 《조직상의 부정부주의》를 반대하여 멘셰위크파내부에서 투쟁하지 않을수 없었다는것을 이 소책자에서 말하고있다. 그러므로 1907년에 체레와닌이나 플레하노브가 유력한 멘셰위크들의 《조직상의 부정부주의》를 승인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면 내가 1904년에 《조직문제에서의 기회주의》를 반대한것은 무근거한것은 아니었던것이다.

멘셰위크들은 조직상의 기회주의로부터 전술상의 기회주의로 발전하였다. 소책자 《지방자치운동과 〈이스크라〉의 계획》①(1904년말에, 11월 혹은 12월에 제네바에서 출판되었을 것이다.)은 이 길로 나아가는 그들의 첫걸음을 지적하고있다. 지금의 출판물들에서 지방자치운동문제에 관한 의견상이는 지방자치국가의의원들앞에서의 시위에서 오는 온갖 리익을 볼셰위크들이 부정하기때문에 일어났다고 하는 말들을 흔히 들을수 있다. 독자는 이것이 전혀 그릇된 견해임을 알수 있을것이다. 의견상이가 일어나게 된것은 멘셰위크들이 당시에 자유주의자들이 **경황실색**하지 않도록 하라고 말하기 시작하였기때문이며 더우기 그것은 1902년의 로스토프파업, 1903년의 하기파업 및 시가보루전 이후와 1905년 1월 9일 전야에 멘셰위크들이 지방자치국의의원들앞에서의 시위를 시위운동의 **최고형태**로서 찬양하였기때문이다. 볼셰위크의 신문 《전진》창간호(1905년 1월 제네바에서 발간)는 멘셰위크의 《지방자치운동계획》에 대한 이러한 평가를 이에 대한 풍자소품의 다음과 같은 표제 《무산자의 훌륭한 시위와 지식인들의 졸렬한 언론》②으로써 표현하였던것이다.

① 《케닌전집》, 한문판, 제7권, 488~507페이지를 보라. —편집자

② 《케닌전집》, 한문판, 제8권, 11~16페이지를 보라. —편집자

이 논문집에 수록되어있는 마지막소책자 《민주주의혁명에
서의 사회민주당의 두가지 전술》^①은 1905년 여름에 제네바에
서 출판되었다. 여기에서는 벌써 멘셰위크들과의 전술상 **기본
적의견상**이가 계통적으로 서술되고있다. 런던에서 있던 춘기
《로씨야사회민주노동당 제3차대회》(볼셰위크의)의 결정서와 제
네바에서 있던 멘셰위크대표회의의 결정서는 이런 의견상이를
완전히 정식화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전반 자산계급혁명을 무
산계급임부의 견지에서 평가함에 있어서 그들을 **근본적으로**
분별되게 하였다. 볼셰위크들은 무산계급에게 민주주의혁명에
있어서의 **수령**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것을 지적하였다. 멘셰위
크들은 무산계급의 역할을 《극단적반대파》의 임무에 귀착시켰
다. 볼셰위크들은 승리적혁명이란 《무산계급과 농민의 혁명적
민주주의독재》의 실시라고 말하면서 혁명의 계급적성격과 계
급적의의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멘셰위크들은 자산계급혁명
의 개념을 언제나 틀리게 해석한다. 따라서 그들은 혁명에 있
어서 무산계급이 자산계급에게 종속되고 의존되는 역할을 놀
아도 좋다고 생각한다.

이런 원칙적인 의견상이가 실지사업에 어떻게 반영되었
는가 하는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볼셰위크들에 의한
볼리진국회³⁵⁵의 보이프트와 멘셰위크들의 동요, 볼셰위크들
에 의한 윗베국회³⁵⁶의 보이프트와 국회선거가 아닌 선거를 호
소한 멘셰위크들의 동요, 제1차국회에서 멘셰위크들에 의한 텃
현민주당내각과 텃현민주당정책의 지지와 볼셰위크들에 의한
텃현적환상과 텃현민주당의 반혁명성에 대한 견결한 폭로 그
리고 《좌익집행위원회》 사상³⁷¹의 선전, 다음으로 제2차국회
선거에서의 볼셰위크들의 좌익연맹과 멘셰위크들의 텃현민주
주의자들과의 연맹 등등이 그것이다.

① 이 책의 675~822페이지를 보라. —편집자

오늘에 와서는 로씨야혁명의 《립헌민주당의 시기》(이것은 1906년 3월에 출판된 소책자 《립헌민주주의자의 승리와 노동자당의 임무》의 표현^①이다.)가 종말에 이르렀다고 생각된다. 립헌민주주의자들의 반혁명성은 완전히 폭로되었다. 립헌민주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시종 혁명을 반대하였다는것을 고백하기 시작하고있으며 스트루웨씨는 립헌민주당의 자유주의의 숨은 사상을 로골적으로 다 말하고있다. 지금, 각성한 무산계급이 이 전반 립헌민주당의 시기를, 이 전반 《립헌적우여곡절》을 자세히 회고하면 할수록 볼셰위크들이 일찍부터 이 시기도 립헌민주당의 본질도 완전히 정확하게 평가하였다는것과 멘셰위크들이 실지에 있어서는, 그 정책의 개관적의의로 볼 때 무산계급의 독립적정책을 자산계급자유주의에 무산계급을 예속시키는 정책으로 대체하는것과 동일한 그릇된 정책을 실시하였다는것이 더욱더 명백하여질것이다.

*

로씨야맑스주의와 로씨야사회민주주의내부의 두 조류의 12년간(1895~1907년)에 걸친 투쟁을 개괄할 때 《합법적맑스주의》, 《경제주의》 및 《멘셰위크주의》는 동일한 역사적추세의 각이한 표현형태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수 없다. 스트루웨씨(1894년)일파의 《합법적맑스주의》는 자산계급출판물에서의 맑스주의의 반영이었다. 1897년과 그후시기에서의 사회민주주의 운동에서의 한 특수한 파벌로서의 《경제주의》는 경제투쟁은 노동자들이 할것이며 정치투쟁은 자유주의자가 할것이라는 자산계급적자유주의자의 《신조》¹¹⁴의 강령을 실지로 실현하였다. 멘셰위크주의는 저술계의 한 류파일뿐아니라 또 사회민주주의 운동의 한 파벌일뿐아니라 그것은 결속된 하나의 파벌로서 로

① 《베닌전집》, 한문판, 제10권, 170~247 페이지를 보라.— 편집자

씨야혁명의 첫시기(1905~1907년)에 무산계급을 자산계급자유의에 실지로 예속시킨 특수한 정책을 실시하였던것이다①.

모든 자본주의나라들에서 무산계급은 우측에 있는 자기의 이웃인 소자산계급과 수천개의 다리를 통하여 불가피적으로 련계되어있다. 모든 로동자당내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뚜렷하게 보이는 우익이 불가피적으로 형성되어있는바 이 우익은 그 견해에 있어서, 그 전술에 있어서, 그 조직《로선》에 있어서 소자산계급적기회주의경향을 나타내는것이다. 로씨야와 같은 소자산계급적국가에서는 자산계급혁명시기에, 청소한 사회민주로동당의 첫 맹아시기에 이러한 경향들은 구라파의 어느 나라에서보다도 훨씬 더 첨예하게 더 명확하게 더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을수 없었던것이다. 로씨야사회민주당내에서 그 발전의 각 시기에 이러한 경향이 표현되는 각종 형태를 인식하는것은 혁명적맑스주의를 공고히 하며 로씨야로동계급을 그의 해방투쟁에서 단련시키는데 있어서 필요한것이다.

1907년 9월

1907년 11월 쾰크트 페제르
부르그에서 출판된 논문집
《12년간》에 게재

논문집원문에 의하여 인
쇄
《페년전집》, 한문판, 제
13권, 77~96페이지

서명: 웨. 일러인

- ① 당의 제2차대회에서의 각종 파벌과 류파들에 대한 분석(1904년에 출판된 소책자 《1보전진 2보후퇴》를 보라.)은 1897년과 그후 몇년간의 《경제주의》와 《멘쉐위크주의》와의 직접적인 련계를 반박할 여지없이 증명하였다. 그리고 사회민주당의 《경제주의》와 1895~1897년의 《합법적 맑스주의》 또는 《스트루췌주의》와의 련계에 관하여 나는 소책자 《무엇을 할것인가?》(1902년)에서 지적하였다. 합법적 맑스주의, 경제주의, 멘쉐위크주의는 사상적으로만 련계되어있는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역사적계승성으로써도 련계되어있다.

1905~1907년 제1차로씨야 혁명에 서의 사회민주당의 토지강령³⁷²

(발 취)

결 론

토지문제는 로씨야자산계급혁명의 기초이며 이 혁명의 민족적특성을 규정한다.

이 문제의 본질을 이루고있는것은 지주의 토지소유제 및 로씨야농업제도에 있는, 따라서 또 로씨야의 모든 사회적 및 정치적 제도내에 있는 농노제의 잔재를 폐절하려는 농민의 투쟁이다.

구라파로씨야의 1,050만의 농호는 7,500만제짜짜나의 토지를 가지고있다. 주로는 귀족출신이고 일부는 벼락부자인 3만호의 대지주들이 매호당 500제짜짜나이상 도합 7,000만제짜짜나의 토지를 가지고있다. 이것이 사태의 기본적인 배경이다. 이것이 로씨야농업제도에서 따라서 또 전체 로씨야국가 및 로씨야의 전반 생활에서 농노주-지주들이 우세를 차지하고있는 기본조건이다. 대토지소유자는 경제적인 의미에서는 농노주이다. 그들의 토지소유의 기초는 농노제도의 력사에 의하여, 수세기에 걸쳐서 진행된 세가귀족에 의한 토지략탈의 력사에 의하여 형성된것이다. 그들의 지금의 경영의 기초는

부역제의 직접적잔존물인 고역제도이며 농민의 농구에 의한 경영이며 소농의 무수한 예측형태—동기고용, 1년을 기한으로 한 차지, 반작, 고역을 조건으로 한 차지, 채무에 의한 예측, 그리고 떼운땅, 삼림, 풀밭, 용수지에 의한 예측, 기타 등등의 끝없이 다종다양한 예측형태에 의하여 진행되는 경영이다. 로씨야의 자본주의의 발전은 최근 반세기동안에 이미 극히 현저한 전진을 가져왔기때문에 농업에서 농노제를 유지한다는것은 **절대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농노제의 배제는 폭력적위기의 형태 즉 전국적혁명의 형태를 취하는데 이르렀다. 그러나 자산계급국가에서 농노제를 배제하는데는 두갈래 길이 있을수 있다.

농노제의 배제는 농노주적-지주적경영을 용케르적-자산계급적경영으로 서서히 전화시키며 농민대중을 빈농과 고농으로 전화시키며 대중의 빈궁한 생활을 폭력에 의하여 유지해가며 자본주의에 의하여 농민들속에 불가피적으로 형성되는 자산계급대농민, 즉 한줌도 못되는 부농을 분리시키는 길에 의하여 가능한것이다. 흑백단적지주 및 그들의 대신 쓰뿔피뻬은 바로 이와 같은 길에 섰던것이다. 그들은 녹슨 중세기적토지소유형태를 폭력적으로 파괴하지 않고서는 로씨야의 발전을 위한 길을 닦을수 **없다는것을** 인식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지주에게 유리하게** 대담히 이 파괴의 길로 나아갔다. 그들은 최근까지도 판료와 지주들 가운데서 유행되고있던 반봉건적농촌공동체에 대한 동정을 포기하였다. 그들은 농촌공동체를 폭력으로써 파괴하기 위하여 모든 《립헌적》법률을 무시하였다. 그들은 부농들에게 농민대중을 **략탈**하며 낡은 토지소유를 파괴하며 무수한 경영을 **평락**시킬 완전한 권력을 부여하였다. 그들은 중세기적인 농촌을 돈있는자들의 《무제한한 **략탈**》에 내맡기었다. 그들은 자기 계급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이렇게 하지 않

을수 없다. 왜냐 하면 그들은 자본주의적발전과 투쟁할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응하여야 한다는것을 인식하였기때문이다. 그리고 자기들의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은 《벼락부자들》인 라주와예브 및 꼴루빠예브³⁷³ 일파와 련합하여 농민대중을 반대할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이런 꼴루빠예브들에게 다음과 같이 웨치는외에 다른 출로가 없었다. 부유해지라! 부유해지라! 우리는 당신들에게 1루블로써 100루블을 벌 기회를 주겠다. 그대신 당신들은 새로운 조건하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권의 기초를 유지하는것을 도와달라! 이러한 발전의 길이 실현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농민대중과 무산계급에 대한 끊임없는, 계통적인 무제한한 **폭력**이 필요한것이다. 그리하여 반혁명적지주들은 이런 폭력을 조직하려고 백방으로 서두르고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하나의 발전의 길을, 첫째 길, 즉 프로찌아식길과 구별하여 자본주의발전의 미국식길이라고 불렀다. 이 길도 역시 낡은 토지소유를 폭력으로써 파괴할것을 요구한다. —로씨야에서 극히 첨예화된 위기를 아무런 고통도 없이 평화로이 벗어나려고 몽상할수 있는자는 오직 로씨야자유주의의 우둔한 소시민들뿐이다.

그러나 필연적이며 불가피적인 이런 파괴는 지주도당의 리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농민대중의 리익을 위하여 실행될수 있는것이다. 그 어떤 지주경영도 동반하지 않는 자유로운 농장주들이 자본주의발전의 기초로 될수 있다. 왜냐 하면 이 지주경영은 **전반적으로 볼 때** 경제상에서는 반동적이지만 농장경영의 인소는 우리 나라의 이전의 경제발전력사에 의하여 농민경제가운데서 **조성된것**이기때문이다. 이 자본주의발전의 길에서 우리 나라의 자본주의는 국내시장이 확대되며 **전체** 주민의 생활수준, 정력, 창발성 및 문화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

라 더 광범하게, 자유롭게, 신속히, 발전하게 될것이다. 그리고 로씨야가 가지고있는 광활한 이민지—그의 리용은 로씨야 본토에 있는 농민대중에 대한 농노제적압박, 그리고 토지정책에 대한 농노제적-관료적태도로 하여 무한히 곤란하게 되어있다. —는 농업을 대규모적으로 확장하며 비단 깊이에서뿐아니라 넓이에서도 생산을 제고하기 위한 경제적기초를 보장하는것이다.

이러한 발전의 길은 지주적토지소유의 폐지를 요구할뿐이 아니다. 그것은 농노주-지주의 지배가 몇세기에 걸쳐 국내의 토지소유전체에, 즉 농민의 분여지에도, 비교적 자유로운 변강지방의 이민들의 토지소유에도 그 흔적을 남겨놓았기때문이다. 전제정부의 모든 이민정책은 완고한 관리들의 아세아적간섭으로 일관되어있었는데 이 관리들은 이민들이 자유로이 자리를 잡는것을 방해하였으며 새로운 토지관계를 극도로 혼란하게 만들었으며 중앙로씨야의 농노제적관료주의의 해독을 로씨야변강①에까지 전파하였던것이다. 로씨야에서는 지주토지소유뿐아니라 농민분여지적토지소유도 중세기적이다. 그런 소유는 극히 혼란되어있다. 그것은 농민들을 수없이 세소한 중세기적인 등급과 신분으로 나누고있다. 그것은 농민의 토지관계에 대한 중앙정권과 지방정권의 판폭한 간섭의 세기에 걸친 역사를 반영하고있다. 그것은 마치 사람들을 유대인구역에 강박적으로 몰아넣듯이 농민들을 낡세성질을 띤 중세기적인 소단체에, 분여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기 위한 단체에 즉 농촌공동체에 강박적으로 몰아넣는다. 그리고 로씨야의 경제적발전은 사실상 농민들을 이런 중세기적인 환경에서 리탈시키고있다. —한편으

① 아. 카우프만씨는 자기의 저서 《이민과 식민》(1905년 쾰른트 베제트부르그판)에서 개괄적인 이민정책사를 서술하고있다. 완전한 《자유주의자》인 저자는 농노주들의 관료제도를 그지없이 존경하고있다.

로는 분여지를 양도하게 하거나 포기하게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극히 다종다양한 토지소유, 즉 분여지적소유, 분여지차지, 매입소유지, 지주소유지의 차지, 관유지의 차지 등등의 작은 **돼기**들을 끌어모아 **장래의 자유로운 농장주(혹은 융케르적로 씨야의 장래의 부농)의 경영을 조성하는것이다.**

로씨야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운 농장주의 경영을 전립하기 위해서는 **모든 토지—지주의 토지도 분여지도—의 《지경을 타파》**하여야 한다. **모든** 중세기적토지소유를 타파하여야 하며 자유로운 경영주들이 자유토지를 경영할수 있도록 모든 토지 특권을 제거해버려야 한다. 토지교환의 자유, 이주의 자유, 구획정비의 자유, 케케묵은 납세성질을 가진 공동체 대신에 자유로운 토지조합의 창설 등을 될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보장하여야 한다. 모든 토지에서 중세기적인 폐물들을 죄다 《일소》하여야 한다.

경제적으로 말하면 토지를 국유화하여야 하며 토지의 사적소유를 폐지하여야 하며 **모든** 토지를 국가소유어로 이행시켜야 한다. 즉 농촌에서의 농노제적제도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한다. 바로 이와 같은 경제적필요성이 로씨야에서 농민대중을 토지구유화의 찬성자로 전락시키고있는것이다. 대다수 소사유농민들은 1905년의 농민동맹대회에서도, 1906년의 제1차 국회에서도, 1907년의 제2차국회에서도, 즉 혁명의 첫 시기 전체를 통하여 토지구유화를 찬성하였다. 그들이 이것을 찬성한것은 《농촌공동체》가 그들가운데서 특수한 《맹아》, 비자산계급적인 특수한 《로동원칙》을 세워주었기때문이 아니다. 그들이 이것을 찬성한것은 반대로 실제생활이 그들에게 중세기적 농촌공동체와 중세기적분여지소유로부터의 **해방**을 요구하였기때문이다. 그들이 토지구유를 찬성한것은 그들이 사회주의농업을 건설하려 하였거나 건설할수 있었기때문이 아니라 그들

이 진정으로 자산계급적인, 즉 모든 농노제의 전통으로부터 최대한으로 해방된 소농업을 건설하려 하였으며 또 하고있으며 그리고 또 건설할수 있었으며 또 건설할수 있기때문이다.

이와 같이 로씨야혁명에서 투쟁하고있는 각 계급의 토지의 사적소유문제에 대한 독특한 태도를 환기시킨것은 우연성 및 어떤 이론의 영향(근시안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듯이)이 아니다. 이런 독특한 태도는 전적으로 로씨야자본주의발전의 조건 및 이 발전의 현시기에서의 자본주의의 제 요구에 의하여 결정된다. 모든 흑백단적지주, 전체 반혁명적자산계급(10월당원⁸⁵도 **립헌민주주의자**⁸⁴도 포함하여)은 토지의 사적소유를 찬성하였다. 전체 농민과 전체 무산계급은 토지의 사적소유를 반대하였다. 융케르-자산계급적로씨야건립의 개량주의적길은 필연적으로 낡은 토지소유의 기초의 보존과 그 기초의 자본주의에의 완만한, 인민대중에게는 고통에 찬 순응을 전제로 하고있다. 낡은 제도를 실제로 뒤엎는 혁명적인 길은 자기의 경제적기초의 건립을 위하여 로씨야의 모든 낡은 토지소유형태와 아울러 모든 낡은 정치기구를 폐지할것을 필연적으로 요구하게 된다. 로씨야혁명의 제1시기의 경험은, 로씨야의 혁명은 농민적토지혁명으로써만 승리할수 있다는것, 농민적토지혁명은 토지구유화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그 역사적사명을 전부 완수할수 없다는것을 종국적으로 증명하였다.

물론, 국제적무산계급의 당이며 전 세계적 사회주의적목적 을 지향하는 당인 사회민주당은 어떠한 자산계급혁명의 어떠한 시대와도 융합할수 없으며 그 운명을 그 어떤 자산계급혁명의 그 어떤 결과와도 떼어낼수 없다. 그 결말이 어떠한간에 우리는 언제나 근로대중을 그들의 위대한 사회주의적목적에로 꾸준히 이끌어가는 독립적인, 순수한 무산계급적인 정당으로 있어야 한다. 때문에 우리는 자산계급혁명의 그 어떤

한 성과든지 그 공고성을 담보할수 없다. 왜냐 하면 자산계급 혁명의 **모든** 성과의 비공고성과 내재적모순은 이 혁명 자체에 내재적으로 고유한것이기 때문이다. 《재생방지의 보장》이란것을 《고안해내는것》은 다만 우둔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의 임무는 오직 하나이다. 즉 사회주의혁명을 위하여 무산계급을 단결시키면서 구제도와의 온갖 투쟁을 뚫수 있는 한 가장 견결히 지지하며 발전하고있는 자산계급사회에서 뚫수 있는 한 무산계급에게 가장 유리한 모든 조건을 쟁취하는것이다. 이 점으로부터 로씨야자산계급혁명에서의 우리 사회민주당의 강령은 **오직** 토지국유화만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불가피적으로 얻게 된다. 우리 당 강령의 기타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토지국유화를 정치적개혁의 일정한 형태 및 일정한 단계와 련관시켜야 한다. 왜냐 하면 정치적개혁의 규모와 토지개혁의 규모는 같은것이 아닐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당 강령의 기타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토지국유화를 소자산계급적환상과 《토지기준》이니 뭐니 하는 관료-지식인들의 공담과, 농촌공동체의 공고화 또는 평균적인 토지사용에 관한 반동적인 공담과 엄격히 구별하여야 한다. 무산계급의 리해관계는 이런 또는 저런 자산계급적혁명을 위한 특수한 구호, 특수한 《계획》 또는 《체계》를 고안해내는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다만 이 혁명의 객관적조건들을 **철저하게** 표명하며 이 경제상에서 항거할수 없는 객관적조건에 대한 환상과 공상을 제거할것을 요구할뿐이다. 토지국유화는 농업에서의 중세기적인 제도를 완전히 소멸하는 유일한 방법일뿐아니라 자본주의제도하에서 가능한 가장 좋은 토지제도이다.

세가지 사정이 로씨야사회민주당의자들로 하여금 이 정당한 토지강령을 일시 거부하게 한다. 첫째로 로씨야에서 《토지의 지방자치제소유》의 창시자인 **빠**. 마슬로브는 맑스주의리론

을 《수정》하여 절대지대론을 반박하고 토지비옥도체감의 법칙 및 이 법칙과 지대론 등등과의 연관성에 관한 절반 썩은 자산계급적학설을 재생시켰다. 절대지대를 부인하는것은 자본주의제도하에서의 토지사유의 경제적의의의 전적인 부정인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필연적으로 토지국유화에 대한 맑스주의적견해의 외곡을 초래한다. 둘째로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은 농민혁명의 개시를 똑똑히 보지 못하였기때문에 그 가능성여부에 신중히 대하지 않을수 없었다. 왜냐 하면 그 승리의 가능성은 실제에 있어서 일련의 특히 유리한 조건과 대중의 혁명적의식성, 혁명적의력과 혁명적창발성의 특히 유리한 전개를 필요로 하기때문이다. 경험을 가지지 못하여 자산계급적운동을 고안해낼수 없다고 인정한 로씨야의 맑스주의자들이 혁명전에 정확한 토지강령을 제기할수 없었던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들은 오류를 범하였다. 그것은 즉 혁명이 시작된후에도 맑스의 이론을 로씨야의 특수한 조건에 적용할 대신에(맑스와 엥겔스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이론은 교조가 아니라 행동의 지침이라고 항상 가르쳤다.) 맑스의 이론을 다른 조건, 다른시대에 적용하여얻은 결론을 무비판적으로 반복한것이였다. 제1차독일사회민주주의자들은 아주 당연하게도 토지국유화를 요구한 맑스의 모든 낡은 강령을 거부하였다. 왜냐 하면 독일은 이미 완전히 용케르-자산계급적국가로 형성되었으며 자산계급제도를 기초로 하는 모든 운동은 완전한 과거사로 되었으며 토지국유화를 위한 그 어떤 인민운동도 존재하지 않으며 또 존재할수도 없기때문이다. 용케르-자산계급분자들의 우세는 사실상 국유화계획을 하나의 놀이감으로, 또는 심지어 용케르들이 대중을 략탈하는 도구로까지 전화시켰던것이다. 독일사람들이 토지국유화에 대하여 말하는것마저 거부한것은 옳았다. 그러나 이 결론을 로씨야에 옮겨놓는것(기실

토지의 지방자치소유와 맑스의 리론의 마슬로브식의곡과의 판
 련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멘셰위크들이 하고있듯이)은 자기의
 특수한 력사발전기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임무를 고찰할줄 모
 른다는것을 의미한다.

셋째로, 토지의 지방자치소유의 강령에는 로씨야의 자
 산계급혁명에 있어서의 멘셰위크의 모든 그릇된 전술방침이
 즈 《무산계급과 농민의 동맹》^①만이 이 혁명의 승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것에 대한 물리해가 명백히 표현되어있다. 자산계급
 혁명에서의 무산계급의 평도적역할에 대한 물리해, 무산계급을
 앞으로 젖혀놓고 혁명의 불철저한 결말에 순응하여 무산계급
 을 평도자로부터 자유주의자산계급의 조수로 (기실은 자유주의
 적자산계급의 잡역부나 중복으로) 전화시키려는 시도가 표현
 되어있다. 《미련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시세에 순응하면서 근
 로인민들은 조용히 앞으로》—《경제과》(즉 로씨야사회민주로동
 당내의 최초의 기회주의자)를 반대하는 나르찌스 두뵈틸로브179
 의 이 말은 우리 당의 현재의 토지강령의 **정신**을 완전히 표현
 하고있다.

소자산계급적사회주의의 《미련》과의 투쟁은 혁명의 규모
 와 또한 무산계급에 의해 결정되는 혁명의 임무를 좁히는데로
 가 아니라 확대하는데로 인도하여야 한다. 소자산계급의 락후
 층 또는 특권적농민(까자크)들가운데 《지방주의》가 아무리 강
 력하게 보급되어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장려해서는 안
 된다. 즉 각 민족의 고립을 장려해서는 안된다. 아니다, 우리
 는 승리를 위한 통일외의 의의를 농민들에게 설명해주어야 하며
 운동을 축소하는것이 아니라 확대하며 자산계급혁명의 **불완
 전성**에 대한 책임을 무산계급의 경솔에 돌리는것이 아니라 자
 산계급의 락후성에 돌리는 구호를 제기하여야 한다. 우리는

① 카우츠키는 그의 소책자 《사회혁명》 제2판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자기의 강령을 《지방적》민주주의에 《순응》시켜서는 안된다. 우리는 비민주주의적인 중앙정권하에서는 황당하고 불가능한 농촌에서의 《지방자치제적사회주의》를 생각해내지 말며 소시민-사회주의적개량정책을 자산계급혁명에 적용시키지 말고 대중의 주의력을 자산계급혁명으로서의 이 혁명의 승리의 현실적조건에 집중시키며 또한 이 승리를 위하여서는 비단 지방의 민주주의뿐만아니라 《중앙적》민주주의, 즉 중앙국가정권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며—그것도 민주주의일반이 아니라 반드시 민주주의의 가장 완전한, 가장 고급적인 형태가 필요하다는데 주의력을 집중시켜야 한다. 왜냐 하면 이와 같은 민주주의형태가 없이는 로씨야에서의 농민의 토지혁명은 과학적인 의미에서 **공상적**인 것으로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흑백단적들소들이 제3차국회에서 미친듯이 울부짖고 반혁명적광포가 극도에 달하고 반동세력이 정치적복수의 야만적행위를 일반적으로는 혁명가에게 특수적으로는 제2차국회의 사회민주당의원들에게 감행하고있는 바로 지금의 이 역사적순간은 《광범한》 토지강령을 위해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런 생각은 로씨야에서 사회민주당에 가입하거나 또는 사회민주당을 찬성하는 광범한 소시민적지식인들의 배신, 의기소침, 타락 및 퇴폐와 마찬가지로의 것일 것이다. 이 쓰레기를 노동자당으로부터 깨끗이 쓸어내버린다면 무산계급은 다만 리득을 볼뿐이다. 반동세력이 창궐하여지면 질수록 그것은 실제에 있어서는 불가피적인 경제적발전을 더욱 더 저애하며 민주주의운동의 보다 광범한 양상을 보다 성과적으로 준비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혁명의 경험을 비판적으로 연구하며 경험을 검토하며 그가운데서 찌꺼기를 제거하며 이 경험을 앞으로의 투쟁의 지침으로서 대중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대중적행동의 일시적진정의 시기를 리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1907년 11~12월

1907년 11~12월에 집필

원고에 의하여 인쇄하고 1917
년판본의 원문에 의하여 교열

1908년에 처음으로 발표(이
미 몰수 되었음), 1917년에
생활과 지식 출판사에서 단
행본으로 인쇄

발 문

이 저서는 1907년말에 쓴것이다. 1908년에 이 저서는 뻬
제르부르그에서 인쇄되었으나 짜리의 출판물검열기관에 압수
되어 소각되었다. 다만 한부만이 남았는데 그나마 마지막 몇
페이지(본판 269페이지이하)가 없는것이였다. 때문에 이 몇페이
지를 이제 다시 써넣었다.

지금, 혁명은 로씨야에서의 토지문제를 1905~1907년보다
비할바없이 광범하고 심각하고 첨예하게 제기하고있다. 제
1차혁명에서의 우리 당 강령의 역사를 료해하는것이 지금의
혁명의 임무를 보다 옹게 리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나는 기
대한다.

특히 다음과 같은것을 강조하여야 하겠다. 전쟁은 각 교
전국에 전대미문의 불행을 끼쳤으며 동시에 자본주의의 발전
을 크게 촉진시켜 독점자본주의를 국가독점자본주의로 전화시
켰기때문에 무산계급이나 혁명적소자산계급민주파나 할것없이
자본주의의 범위안에 국한되어있을수는 없다.

실생활은 이미 이 범위를 멀리 벗어나 전국적범위에서의
생산과 분배의 조절, 보편적의무로동제, 강제적인 신지케이트

화(련맹에로의 통합) 등등을 일정에 올려놓았다.

이와 같은 사태하에서는 토지강령중의 토지국유화도 불가피적으로 다른 성격을 띠게 된다. 즉 토지국유화는 자산계급혁명의 《최고봉》일뿐아니라 **사회주의에로의 1보전진**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전진이 없이는 전쟁의 재화를 제거할수 없는 것이다.

무산계급은 가난한 농민들을 령도하면서 한편으로는 사업의 중심을 농민대표조베트로부터 농업로동자대표조베트로 옮겨야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지주령지의 농기구 등을 국유화하며 동시에 농업로동자대표조베트의 통제하에 그 령지로서 모범적인 농장을 꾸릴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나는 물론 여기에서 이 극히 중요한 문제를 상세히 언급할 여유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독자들에게는 지금 간행되고있는 불셰위크출판물들과 나의 소책자 《전술에 관한 서한》^① 및 《우리 나라 혁명에서의 무산계급의 임무(무산계급정당의 행동강령초안)》^②을 소개하는수밖에 없다.

저 자

1917년 9월 28일

1917년에 저서 《1905~1907년 제1차로씨야혁명에서의 사회민주당의 토지강령》에 게재

이 책의 원문에 의하여 인쇄

《에닌전집》, 한문판, 제13권, 399~409페이지

① 본 선집 한문판, 제3권, 23~35페이지를 보라. — 편집자

② 이와 같은 책, 36~69페이지를 보라. — 편집자

주 해

- 1 레닌의 저서 《〈인민의 벗〉이란 무엇이며 그들은 어떻게 사회민주주의자들을 공격하는가? (맑스주의자들을 반대하는 잡지 《로씨야의 재부》의 논문들에 대한 대답)》는 인민파의 이론적전해와 정치적강령을 철저히 비판하였으며 《인민의 벗》으로 가장하고서 실상은 인민을 원수로 삼는 인민파의 정체를 폭로하였으며 노동계급은 사회의 가장 선진적이고 혁명적인 계급이라는 원리를 천명하였다. 그리고 처음으로 로농련맹은 짜리제도와 지주-자산계급의 통치를 뒤엎는 주요한 수단이라는 빛나는 사상을 내놓았으며 로찌야맑스주의자들의 기본입부를 확정하였다.

이 저서는 1894년에 쓴 것이다. (제1분책은 4월에, 제2, 제3분책은 여름에 탈고되었다.) 레닌은 일찍 1892~1893년에 싸마라에서 이 저서를 집필하기 시작하였다. 레닌은 싸마라맑스주의자소조에서 일부 논문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맑스주의의 적들인 자유주의적 인민파 웨. 웨. (워른조브), 미하일롭스키, 유차프코, 크리웬코등을 예리하게 비판하였다. 이 논문들은 저서 《〈인민의 벗〉이란 무엇인가》를 위한 준비자료였다.

레닌의 이 저서는 분책별로 출판되었다. 제1분책은 1894년 6월에 페페르부르그에서 읍세트판으로 인쇄되었다. 1894년 7월에 제1분책이 읍세트판으로 재판되었다. 동년 8월과 9월에 고르가(울라지미르성)와 모스크바에서 제1분책과 제2분책 약 100부가 아. 아. 간신에 의하여 인쇄되었다. 그해 9월에 아. 아. 와비에브가 페페르부르그에서 읍세트판으로 제1분책(이것은 제4판이었다.) 50부를 출판하였고 또 제3분책을 50부가량 출판하였다. 1894년에 체르니코보성 보르즈나현의 사회민주주의자소조는 읍세트판으로

《인민의 빛》이란 무엇인가》를 출판하였다. 이 책의 제2분책은 지금까지도 찾지 못하였다.

《인민의 빛》이란 무엇인가》는 로씨야 국내와 국외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로동해방단과 국외에 있는 기타 로씨야사회민주당의 단체들에게도 광범히 알려지고 있었다.

이 저서의 제1분책과 제3분책의 움세트판원본은 1923년초에 베를린사회민주당의 보관서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와 거의 때를 같이하여 페닌그라드의 세드린국립도서관에서도 발견되었다.

1936년에는 또 1894년에 출판된 《인민의 빛》이란 무엇인가》의 새로운 움세트판원본이 발견되었다. 이 움세트판원본에는 국외에서 이 책의 출판을 준비하면서 페닌이 친히 가필한 문자상의 수정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제1페이지

- 2 《로씨아의 부》(*Русское Болемство*)는 1876년부터 1918년 중기까지 베체르부르그에서 발행되던 월간잡지이다. 이 잡지는 90년대초로부터 자유주의적인 민파의 기관지로 되었으며 크리웬코와 미하일롭스키에 의하여 편집되었다. 이 잡지는 짜리정부와 타협할 것을 주장하였고 짜리정부에 대한 모든 혁명투쟁을 거부할 것을 고취하였으며 맑스주의를 혹독하게 반대하였고 로씨야의 맑스주의자들에 대한 증상을 일삼았다. 1906년부터 이 잡지는 절반월간민주당인 《인민사회당》의 간행물로 되었다. —제1, 157페이지
- 3 엔. 까. 미하일롭스키의 논문 《유. 슈푸스키씨의 재판을 받는 칼 맑스》를 념두에 두고 있다. 이 논문은 1877년 10월 《조국기사》 제10호에 게재되었다. —제4페이지
- 4 맑스의 《자본론》, 제1권, 제1판 서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208페이지)을 보라. —제5페이지
- 5 맑스의 《정치경제학비판》서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82~83페이지)을 보라. —제9페이지
- 6 《사회계약론》(*Contrat social*)은 장 자크 루소의 주요저서의 하나이다.(1762년에 출판되었다.) 이 저서에는 모든 사회제도는 인간들사이의 자유협상 즉 계약의 결과여야 한다는 사상이 중심으로

서술되어있다. 《사회계약》의 이론은 기본상 관념론에 기초하였으나 18세기 프랑스자산계급혁명전야에 산생되어 그래도 혁명적역할을 놀았었다. 이 이론은 자산계급의 평등권의 요구를 포달하였으며 봉건적신분적특권의 폐결과 자산계급공화국의 건립을 호소하였다.
—제9페이지

- 7 맑스의 《자본론》, 제1권, 제13장, 제1절을 참조하라. —제17페이지
- 8 《조국기사》잡지 편집부에 보낸 맑스의 서한을 말한다. (《맑스엔겔스전집》, 한문판, 제19권, 126~131페이지를 보라.) 이 편지는 맑스가 1877년말에 엔. 까. 미하일롭스끼의 논문《유. 슈팍스끼씨의 재판을 받는 칼 맑스》와 관련해서 쓴것이다. 이 편지는 맑스가 서거한 후 엔겔스가 빼껴서 로씨야에 보낸것이다. 엔겔스의 증언에 의하면 《이 편지는 오래동안 프랑스로원문의 수사본으로써 로씨야에서 전파되다가 그후 1886년에 제비바에서 <인민의 의지통보>에 로문으로 번역발표되었으며 그후에 로씨야본국에서도 발표되었다. 이 편지는 맑스가 집필한 모든 문헌과 마찬가지로 로씨야 각계인사들의 거대한 관심사로 되었다.》(《맑스엔겔스전집》, 한문판, 제22권, 504페이지를 보라.) 맑스의 이 편지는 로씨야에서 처음으로 잡지 《법률통보》, 1888년, 제10호에 게재되었다. —제18페이지
- 9 엔겔스의 《반두링론》(《맑스엔겔스전집》, 한문판, 제3권, 189페이지)을 참조하라. —제18페이지
- 10 맑스와 엔겔스가 1845~1846년에 함께 집필한 저서 《독일의식형태》(《맑스엔겔스전집》, 한문판, 제3권, 11~640페이지를 보라.)를 가리킨다. 경찰당국의 저애와 출판상—그들은 맑스와 엔겔스가 반대하는 파벌의 유관대표였다.—들의 거절로 말미암아 이 책은 맑스와 엔겔스의 생전에 출판되지 못하고 제2권의 제4장밖에 발표되지 못하였다. 이 저서의 원고는 독일사회민주당의 보관서류속에 몇십년이나 파묻혀있다가 1932년에야 처음으로 맑스엔겔스케닌연구소에 의하여 그 전문이 독일어로 발표되었다.

여기에서 미하일롭스끼가 인용한 엔겔스의 말은 엔겔스의 저서 《루트위히 포이에르바흐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의 서문(《맑스엔겔스전집》, 한문판, 제4권, 208페이지)을 보라. —제18페이지

- 11 루이스 헨리 모트간의 저서 《고대사회, 또는 야만에서 미개를 거쳐 문명에 이르는 인류의 진보행정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제 20페이지
- 12 엥겔스의 저서 《가족, 사적소유 및 국가의 기원》 제1판의 서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페이지)을 보라. —제20페이지
- 13 씨족적조직은 인류력사상 최초의 사회경제형태 즉 원시공동체제도이다. 씨족적조직의 산생시기는 현대인형태의 최후형성시기와 같다. 씨족적조직의 발전은 두개 시기 즉 모권제시기와 부권제시기를 경과하였다. 부권제가 해체된 시기인 즉 원시사회가 계급사회로 변하고 국가가 산생된 시기이다. 《원시공동체제도하에서의 생산관계의 기초는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였다. 이것은 기본상 그 시기의 생산력의 성격에 적응되었던것이다. 적기와 그후에 나타난 활과 화살은 사람들에게 자연력 및 맹수와 단독적으로 싸울수 있는 가능성을 주지 못하였다. …공동로동은 생산수단 및 생산물에 대한 공동소유를 초래하였다. …여기에서는 아직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란 무엇인지 모르고있었다. …여기에서는 착취도 없었고 계급도 없었다.》(쓰탈린의 《레닌주의 제 문제》, 1971년 인민출판사, 한문판, 649~650페이지를 보라.)

원시공동체제도에 관해서는 맑스의 《모트간의 저서 <고대사회>의 요지》(1965년, 인민출판사, 한문판)와 엥겔스의 《가족, 사적소유 및 국가의 기원》(《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을 참조하라. —제23페이지

- 14 봉지제도는 15세기 특히 16세기에 로씨야에 나타나고 확립된 특수한 봉건토지소유제도이다. 완전한 귀족소유로 되어있는 세습적인 세습령지와는 달라서 봉지는 판적에 있는 귀족의 조건적이며 일시적인 소유였다. 봉지는 봉건군주의 재산으로서 처음에는 봉건군주에 의하여 군대 또는 조정에서 일하는 벼슬아치들에게 부여되었다. 후에 이 봉지소유제는 점차 세습적인것으로 되었다. 17세기로 부터 봉건토지소유제의 두가지 형태인 봉지와 세습령지의 차이는 점차로 소멸되어갔다. 봉지소유자와 세습령지소유자의 봉건적권리는 합치되어갔다. 18세기말의 봉지는 완전히 지주귀족의 사

유재산으로 되었다. —제26페이지

- 15 국제로동자협회 즉 제1국제당은 맑스가 런던에서 1864년 가을에 창건한 것이다. 맑스와 엥겔스가 지도한 제1국제당은 각국 로동자들의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을 병도하였으며 브루동주의, 바쿠닌주의, 로동조합주의, 라살주의 등 기타 반맑스주의적조류들과 날카롭게 투쟁하였으며 각국 로동자들간의 국제적단결을 강화하였다. 제1국제당은 1872년 헤그대회 이후 실제적으로는 자기의 활동을 중지하였으며 1876년에 정식으로 해산을 선포하였다. 제1국제당의 역사적의의는 그것이 《자본에 대한 로동자들의 혁명적수급의 준비를 위한 국제로동자조직의 기초를 닦아놓았다.》(이 선집의 한문판, 제3권, 809페이지를 보라.)는데 있다. —제29, 126, 259페이지
- 16 웨. 베. 부레닌은 로씨야의 반동적정론가이며 작가로서 1876년부터 《신시대》지 편집부에서 일하였다. 그는 사회사상의 모든 진보적조류의 대표자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하고 요언을 날조하여 증상하였다. 레닌은 부레닌의 이름을 비렬한 론전수범의 대명사로 삼았다. —제30페이지
- 17 부레닌이 1894년 2월 4일 신문 《신시대》에 잡문을 발표하여 맑스주의자들을 반대한 엔. 까. 미하일롭스끼의 투쟁을 극구 찬양한것을 말한다.

《신시대》(《Новое Время》)지는 1868년부터 1917년까지 베제르부르크에서 발간되던 일간신문으로서 처음에는 온화한 자유파의 신문이었으나 1876년부터는 반동적귀족 및 관료집단의 후설로 변하여 혁명운동뿐아니라 자유주의자산계급운동도 반대하였다. 1905년부터 이 신문은 흑백단분자들의 기관지의 하나로 되었다. 《신시대》지는 매수당한 신문의 전형이라고 레닌은 지적하였다. 2월혁명후 이 신문은 자산계급임시정부의 반혁명적정책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볼셰위크를 미친듯이 공격하였으며 1917년 11월 8일에 페트로그라드 쏘베트군사혁명위원회에 의하여 폐간되었다. —제33, 881페이지

- 18 엥겔스의 《가족, 사적소유 및 국가의 기원》, 제1판 서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1페이지)을 참조하라. —제36페이지

19 맑스의 《자본론》, 제1권, 제2판 발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211페이지)을 보라. —제37페이지

20 잡지 《독일프랑스년지》를 가리킨다.

《독일프랑스년지》(《*Deutsch-Französische Jahrbücher*》)는 파리에서 출판되던 독일문잡지로서 맑스와 아. 루게가 주필을 담당하였다. 이 잡지는 1844년 2월에 쌍월간 한호밖에 내지 못하였다. 이 잡지가 폐간된 주요원인은 맑스와 자산계급급진주의자인 루게와의 사이에 원칙적인 의견상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제38, 123페이지

21 1843년 9월에 루게에게 보낸 맑스의 서한(《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416~417페이지)을 보라. —제38페이지

22 루. 길바니는 18세기 이탈리아의 해부학자이며 물리학자이며 전기공학의 창시자의 한사람이다. 그는 개구리의 근육신경조직실험에서 질적으로 서로 다른 금속이 접촉할 때 충전현상이 생긴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제39페이지

23 《반두링론》, 제1편, 제13장, 《변증법. 부정의 부정》(《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169~183페이지를 보라.)을 가리킨다. —제40페이지

24 《구라파통신보》(《*Вестник Европы*》)는 로씨야의 자산계급자유파의 역사, 정치 및 문학월간잡지이다. 이 잡지는 1866년부터 1908년까지 베제르부르그에서 스파쉴레위치에 의하여 창간되고 편집출판되었다. 이 잡지는 19세기 90년대초에 혁명적맑스주의자들을 반대하는 논문을 빈번히 실었다. 1909년부터 1918년 여름까지는 엠. 엠. 포알테브스키에 의하여 편집되었다. —제43, 184, 216페이지

25 이 단평의 필자(이. 까—엔)는 베제르부르그대학 교수 이. 이. 카우프만이다. 이 단평은 변증법적방법을 적절하게 서술하였다고 맑스는 인정하였다. 《자본론》, 제1권, 제2판 발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215~217페이지)을 참조하라. —제43페이지

26 다음의 인용문(이 선집의46~52페이지)은 레닌이 친히 엥겔스의 《반두링론》, 제1편, 제13장에서 일부분을 뽑아서 번역한것이다. 《맑스

- 앵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169~174페이지를 보라. —제46페이지
- 27 **주피터**는 로마신화에 나오는 최고의 신인 우피의 신으로서 회랍의 신들중의 제우스에 해당된다. 전설에 의하면 주피터는 황소로 변하여가지고 페이니지왕 아거노이의 딸 우로바를 피여간적이 있다. 여기에서는 주피터가 할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모든 황소들이 다 할수 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두고 한 말이다. —제54페이지
- 28 《조국기사》(*Отечественные Записки*)는 문학 및 정치 잡지로서 1820년부터 뻬체르부르크에서 출판되기 시작하였다. 1839년부터 웨. 게. 벨런스끼가 이 잡지의 편집부에 참가하였으며 아. 이. 게르젠 등 사람들이 투고하였다. 1868년부터는 엔. 아. 네크라쑈브와 엠. 예. 샬피코프-쎬드린이 이 잡지를 지도하였다. 이 시기에 잡지는 혁명적민주주의지식인들을 자기 주위에 집결시켰다. 네크라쑈브가 서거(1877년)한후 이 잡지는 주로 인민파의 영향을 받았다.

《조국기사》는 출판물검열기관의 부단한 박해를 받았으며 1884년 4월에 짜리정부에 의하여 폐간되었다. —제54, 158, 221페이지

- 29 성경 《출애굽기》의 기재에 의하면 《**금송아지**》는 이스라엘사람들이 애굽에서 벗어나오기 위하여 야문(고대유태인의 최고제사관)에게 빌어서 만든 황금으로 된 향도신이다. —제56페이지
- 30 맑스와 앵겔스가 《공산당선언》에서 규정한 다음과 같은 원리를 말한다.

《공산주의자들의 이론적원리들은 결코 이러저러한 세계개혁가에 의하여 발명 또는 발견된 사상이나 원칙에 법각하고있는것이 아니다.

이 원리들은 다만 지금 진행되고있는 계급투쟁의 현실적인 관계, 우리의 눈앞에서 진행되고있는 역사적운동의 현실적인 관계를 일반적으로 표현한것에 불과하다.》(《맑스-앵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264페이지를 보라.) —제58페이지

- 31 앵겔스의 《반듀링톤》(《맑스-앵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132~133페이지)을 참조하라. —제60페이지

- 32 엔. 까. 미하일롭스끼의 두편의 문론 《맑스의 저서의 로씨야문출판에 관하여》(《조국기사》, 제4호, 1872년 4월) 및 《유. 슈팍스끼의 재판을 받는 칼 맑스》(《조국기사》, 제10호, 1877년 10월)를 가리킨다. —제62페이지
- 33 1843년 9월에 루게에게 보낸 맑스의 편지(《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1권, 418페이지)를 보라. —제66, 110페이지
- 34 《로씨야사상》(《Русская Мысль》)은 자유주의적인민파의 월간잡지로서 1880년부터 1918년 중기까지 모스크바에서 출판되었다. 1905년 혁명후에는 법원민주당우익의 기관간행물로 되었으며 때때로 스트루웨가 주필로 있었다. —제69페이지
- 35 로동해방단을 념두에 두고 있다. 이 단은 1883년 제네바에서 게. 웨. 플레하노프가 창설한 로씨야의 첫 맑스주의자단체로서 로씨야 사회민주당 제2차대회(1903년)때까지 존재하였다.
- 로동해방단은 《로씨야에 맑스주의사상을 전파하는 면에서 많은 일을 하였다. 그는 리론면에서 사회민주주의운동을 발기하였으며 로동운동을 맞이하기 위한 첫걸음을 실현하였다》. (《쓰레프산당(불쉐위크) 역사간략독본》, 1954년, 인민출판사, 한문판, 32페이지를 보라.) 로동해방단은 맑스주의창시인들의 저서들 즉 맑스와 엥겔스의 《공산당선언》, 맑스의 《임금로동과 자본》, 엥겔스의 《공장에서 과학에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등을 로어로 번역하고 국외에서 발간하여 로씨야경내에 비밀리에 전파하였다. 플레하노프 및 로동해방단은 인민주의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로동해방단은 인민주의관점의 잔여, 농민의 혁명성에 대한 과소평가, 자유자산계급의 역할에 대한 과대평가 등 엄청난 오류들도 범하였다. 이런 오류들은 플레하노프와 로동해방단의 기타 일부 성원들이 후일에 범한 멘셰위크적전해의 맹아로 되었다. —제78, 139, 253, 273, 313, 633, 978페이지
- 36 인민의지주의란 인민의지당이라는 말에서 왔다. 인민의지당은 인민파의 조직으로서 토지와 자유(주해 192를 보라.)단체가 분열된후 1879년에 세워진 비밀단체이다. 이 당은 짜리정부의 개별적인 대표인물들에 대한 암살을 주요한 투쟁방법으로 삼았다. 짜리 알렉산

- 드르2세가 인민의지주의자에게 절러죽은(1881년 3월 1일—신력 13 일) 직후에 인민의지당은 짜리정부에 의하여 분쇄되었다. 그후로는 인민파의 대다수 사람들이 짜리제도에 대한 혁명투쟁을 단념하고 짜리전제제도와와의 융화와 타협을 설교하였다. 19세기 80년대 및 90년대에 자유주의적인민파들은 부농계급의 이익의 대표자로 되었다. —제84, 129, 266, 274, 293, 602, 922, 982페이지
- 37 유다스가 골로볼로브는 샬피코브-셰드린의 소설 《골로볼로브나오리들》에 나오는 극히 리기적이고 하위적이며 잔혹하고 탐욕적이며 미련한 지주이다. —제95페이지
- 38 아락체예브는 짜리 바벨1세와 알렉산드르1세 시기의 목군대신이다. 그는 포악한 군벌통치의 실시자로서 소문이 났다. —제95페이지
- 39 인민권리당을 넘두에 두고있다. 이 당은 로씨야민주주의적지식인의 비밀단체로서 1893년에 이전의 인민의지주의자들의 참가밑에 성립되었으며 1894년 봄에 짜리정부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인민권리당 당원들은 정치적개혁을 위한 투쟁에 모든 반대파세력들을 결속시키자는 임무를 내세웠다. 이 당은 일찍 강령적인 두편의 문헌 즉 《절박한 문제》와 《선언》을 발표하였었다. 인민권리당에 대한 레닌의 평가에 대해서는 이 선집의 112~116, 129~156페이지를 보라. 후에 인민권리당의 대다수 당원들이 사회혁명당에 가입하였다. —제96, 129, 982페이지
- 40 맑스의 《자본론》, 제1권, 제2판 발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218페이지)을 보라. —제109페이지
- 41 나이제노브, 모로조브, 까쯔 및 벨로브는 로씨야 모스크바공장업자본가였다. —제113페이지
- 42 엔.아.네크라쑈브의 《도브롤류보브를 기념하여》(《네크라쑈브저작 및 서한전집》, 1948년, 로문판, 제2권, 200페이지)에서 인용한것이다. —제117페이지
- 43 엥겔스의 《독일의 농민전쟁》 서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300페이지)을 참조하라. —제120페이지
- 44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269~587페이지를 보라. —제121

폐지

- 45 우와 같은 책, 3~268페이지—제122페이지
 46 《탑스앵겔스전집》, 한문판, 제1권, 596~625페이지를 보라.—제123페이지

- 47 **공산주의자동맹**은 무산계급의 첫 국제공산주의조직이다. 이 동맹은 탑스와 앵겔스의 령도하에서 1847년 6월초에 런던에서 창건되었다. 동맹의 강령 및 조직원칙도 탑스와 앵겔스의 직접적인 참가하에 제정되었다. 동맹의 제2차대회(1847년 11월 29일~12월 8일)는 탑스와 앵겔스가 제정한 과학적공산주의의 원칙을 일치하게 채택하였다. 탑스와 앵겔스는 대회의 위탁을 받고 강령적문헌 즉 1848년 2월에 발표된 《공산당선언》을 기초하였다.

1851년 5월에 경찰들이 박해하고 맹원들이 체포된 결과 독일에서는 공산주의자동맹의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1852년 11월 17일에 쾰른공산주의자공판이 있은후 얼마 안되어 동맹은 탑스의 진의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공산주의자동맹은 거대한 역사적역할을 놀았다. 그것은 무산계급혁명가를 배양하는 학교였으며 무산계급정당의 맹아였다. 공산주의자동맹 맹원이었던 허다한 사람들이 국제로동자협회를 창건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동맹의 역사에 관하여서는 앵겔스의 저서 《공산주의자동맹의 역사에 대하여》(《탑스앵겔스전집》, 한문판, 제4권, 186~206페이지)를 보라. —제123, 820페이지

- 48 《신라인신문. 민주파기관지》(《*Neue Rheinische Zeitung, Organ der Demokratie*》)는 1848년 6월 1일부터 1849년 5월 19일까지 쾰른에서 발간된 일간신문인데 이 신문의 주필은 탑스였다. 편집부에는 앵겔스, 윌헬름 윌프, 게오르그 웨르트, 페르디난트 윌프, 에른스트 드롱케, 페르디난트 프라일리히라트 및 하인리히 뷔르게르스가 참가하였다.

민주파가운데의 무산계급적일익으로서의 전투적기관지 《신라인신문》은 인민대중을 교양하는 역할을 놀았으며 그들에게 반혁명파의 투쟁으로 걸기할것을 호소하였다. 독일과 구라파 혁명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신문의 입장을 규명하는 사실들은 흔히

맑스와 엥겔스가 집필하였다.

《신라인신문》의 비타협적인 확고한 립장과 전투적국제주의 정신, 프로씨아정부와 켈른지방당국에 대한 정치적폭로로 하여 이 신문은 창간초기부터 봉건적왕당파 및 자유주의자산계급의 출판물들의 공격과 정부의 박해를 받았다. 이런 박해는 1848년 11~12월에 있는 프로씨아반혁명정변후에 더욱 혹심해졌다.

이러저러한 박해와 경찰당국의 저애에도 불구하고 《신라인신문》은 혁명적민주주의의 이익, 무산계급의 이익을 영용하게 수호하였다. 1849년 5월에 반혁명세력이 전반적공세를 들이대는 정형하에서 프로씨아정부는 맑스가 프로씨아국적을 가지고있지 않다는 것을 구실로 명령을 내려 그를 프로씨아경외로 추방하였다. 맑스가 추방당하고 《신라인신문》의 기타 편집자들이 박해를 받게 되었으므로 이 신문은 더는 발간될수 없었다. 1849년 5월 19일에 《신라인신문》은 마지막호인 301호를 붉은 인쇄용잉크로 찍어냈다. 신문의 편집자들은 켈른노동자들에게 보내는 작별인사에서 《언제나 또 어디서나 그들의 마지막말은 **로동계급의 해방일것이다!**》라고 하였다. —제123, 695페이지

- 49 엥겔스의 저서 《반두링론》(《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45~364페이지를 보라.)을 가리킨다. —제125페이지
- 50 1892년에 이 제목으로 엥겔스의 저서 《공상에서 과학에로의 사회주의의 발전》(《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404~443페이지를 보라.)의 로문역본이 출판되었다. 엥겔스의 이 저서는 《반두링론》에서 3개 장을 차지하고있다. —제125페이지
- 51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1~175페이지를 보라. —제125페이지
- 52 엥겔스의 저서 《투드위히 포이에르바흐와 독일고전철학의 종말》(《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07~254페이지를 보라.)을 가리킨다. —제125페이지
- 53 엥겔스의 저서 《로씨야짜리정부의 대외정책》(《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2권, 13~57페이지를 보라.)을 가리킨다. 이 문헌은 일찍 《짜리로씨야의 대외정책》이라는 제목으로 잡지 《사회민주주의자》 1890년 제1호와 제2호에 발표되었다.

- 《사회민주주의자》(《Социал-Демократ》)는 로동해방단에 의하여 발간된 맑스주의적문학-정치잡지로서 1890년에는 런던에서, 1892년에는 제네바에서 출판되었다. 이 잡지는 비정기간행물로서 도합 4호가 발간되었다. —제125페이지
54. 엥겔스의 저서 《주택문제에 대하여》(《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권, 459~550페이지를 보라.)를 가리킨다. —제125페이지
55. 엥겔스의 저서 《로씨야의 사회문제》(《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권, 616~629페이지를 보라.)와 《로씨야의 사회문제》 발문(《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2권, 494~510페이지를 보라.)을 가리킨다. —제125페이지
56. 레닌은 엥겔스의 제의에 의하여 맑스의 저서 《잉여가치학설사》를 《자본론》 제4권이라고 불렀다. 엥겔스는 《자본론》 제2권 서문에서 《나는 이 원고의 비판적부분을 남겨두었다가 <자본론> 제4권으로 발표하려 한다. 동시에 제2권과 제3권에 이미 자세히 논술된 부분들은 거기에서 삭제하려 한다.》고 썼다. 이 저작은 엥겔스가 서거한후 카우츠키가 정리하여 1905~1910년에 독일문으로 발표하였다. —제125페이지
57. 1884년 10월 15일에 이.에프.베케르에게 보낸 엥겔스의 편지(《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4권, 449페이지)를 참조하라. —제126페이지
58.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의 임무》는 레닌이 1897년말에 씨비리류형지에서 쓴 소책자로서 1898년에 제네바에서 처음으로 로동해방단에 의하여 출판되었다. 1902년에 소책자의 제2판이 발행되었고 1905년에는 제3판이 발행되었다. 레닌은 이 두판에 서문을 썼다.(《레닌전집》, 한문판, 제6권, 186~191페이지, 제9권, 194~195페이지를 보라.) 이 소책자는 1907년에 발행된 레닌의 문집 《12년간》에도 수록되었다. 이 책의 초고의 사본과 제1판에는 《<투쟁동맹>으로부터 페쾨프부르그의 로동자 및 사회주의자들에게》라는 페라가 부록으로 들어있었다. —제129페이지
59. 인민의지파그루빠는 1891년에 성립되어 1896년에 해산되었다. 이 그루빠는 당시 로씨야국내로동운동의 영향을 받아 인민의지주의

로부터 점차적으로 사회민주주의에로 넘어갔다. 그들중의 개별적 성원들은 후에 로씨야사회민주노동당의 적극적인 활동가로 되었다. 인민의지그루빠는 자기의 인쇄소에서 페레르부르그로동계급해방투쟁동맹의 출판물들을 인쇄하였다. 예를 들면 케닌의 소책자 《공장노동자들로부터 징수되는 벌금에 관한 법령해설》을 찍어냈다. 인민의지그루빠는 1894년에 경찰의 파괴를 받았지만 인차 활동을 회복하였다. 1896년에 인민의지그루빠의 인쇄소가 파괴되었고 이 그루빠의 대부분 성원들이 체포되었다. 그후 인민의지그루빠는 다시 회복되지 못하였다. —제129페이지

- 60 재외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동맹은 로동해방단의 창의를 의하여 1894년에 제네바에서 창건되었다. 이 동맹은 자기의 인쇄소를 가지고 혁명적출판물들을 인쇄하였으며 문헌집 《일군》을 출판하였다. 최초에는 로동해방단이 이 동맹을 명도하였으며 그 출판물도 로동해방단이 편점하였다. 로씨야사회민주노동당 제1차대회에서는 이 동맹을 당의 재외대표기구로 인정하였다. 그후 기회주의분자들(경제파—또는 이른바 청년파들)이 동맹안에서 우세를 차지하였으며 1898년 11월에 로동해방단은 동맹 제1차대회에서 동맹의 출판물편집을 거부한다고 성명하였다. 로동해방단이 동맹과 철저히 갈라지고 동맹에서 퇴출한것은 1900년 4월 동맹 제2차대회에서였다. 그때 로동해방단 및 그와 견해가 일치한 사람들은 대회에서 퇴출하고 자기들의 독자적조직인 《사회민주주의자》를 창건하였다. 로씨야사회민주노동당 제2차대회에서는 동맹을 해산할때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일군》은 재외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동맹이 1896~1899년에 외국에서 출판한 비정기적문헌집으로서 도합 6호(세책)가 발행되었다. 이 문헌집의 출판은 케닌이 맡기하였다. 케닌은 로동해방단과 연계를 맺고 서구라파로동운동의 정황을 료해하기 위하여 1895년 5월 7일에 외국으로 떠났다. 그는 스위스에서 게.웨.플메하노브, 페.베.악셀로드 및 이 단의 기타 일군들과 문헌집의 출판 및 편집사업에 관하여 상의하였다. 케닌은 1895년 9월에 귀국한후 이 문헌집에 대한 로씨야로부터의 기고와 자금지불을 위하여 많은 일들을

하였다. 《일군》 제1호에는 레닌의 논문 《프리드리히 엥겔스》가 게재되었다. 레닌은 이밖에도 제1호를 위하여 몇편의 통신을 보냈는데 문헌집은 1896년 3월이후에 가서야 출판되었다. —제129, 266, 298, 983페이지

- 61 **로동계급해방투쟁동맹**은 1895년 가을에 레닌에 의하여 조직되었다. 이 동맹은 뉘체르부르크의 모든 맑스주의로동자소조들을 통일하였다. 투쟁동맹은 레닌을 위수로 한 중심소조가 명도하였다.

투쟁동맹은 로씨야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와 로동운동을 결합시키기 시작하였으며 소수의 선진적로동자들속에서의 맑스주의의 선전을 광범한 로동계급대중속에서의 정치적선동으로 전화시켰다. 투쟁동맹은 로동운동을 명도하였으며 경제적요구의 실현을 위한 로동자들의 투쟁을 짜리제도를 반대하는 정치적투쟁과 연결시켰다. 투쟁동맹은 로동자들을 위하여 삐라와 소책자를 발행하였으며 파업운동을 명도하였다. 투쟁동맹의 영향력은 뉘체르부르크로부터 전국에 널리 퍼졌다. 그것은 로씨야 기타 도시들과 지구들에 있는 로동자소조들도 그러한 동맹에 통합하도록 추동하였다.

1895년 12월 20일 밤에 레닌을 위수로 한 투쟁동맹의 핵심적지도자들이 체포되었다. 레닌은 감옥에서도 혁명투쟁을 계속하였다. 레닌은 조인파 지시로써 투쟁동맹을 도와주었으며 자기가 친히 쓴 삐라와 소책자를 내보냈다. 당강령초안도 레닌이 옥중에서 쓴 것이다.

《뉘체르부르크로동계급해방투쟁동맹의 의의는 레닌이 말한바와 같이 그것이 로동운동에 의거하는 혁명적당의 최초의 귀중한 맹아라는 데 있다.》(《조선공산당(불채위크) 역사간략독본》, 1954년 인민출판사판, 학문판, 23페이지를 보라.) —제129, 324, 980페이지

- 62 1896년 5~6월 뉘체르부르크방적로동자들의 대파업을 말한다. 파업은 뉘체르부르크로동계급해방투쟁동맹의 명도밑에서 진행되었는데 파업의 기본요구는 로동시간을 단축시키려는 것이었다. 투쟁동맹은 하나로 굳게 뭉쳐 확고부동하게 자기의 권리를 수호할것을 로동자들에게 호소하는 삐라를 뿌렸다. 이번 파업은 착취자를 반대하여 광범위한 전염을 결성한 뉘체르부르크무산계급의 처음으로

- 로 되는 투쟁으로서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수는 3만여명에 달하였다. 베제르부르그파업은 로씨야의 전국적파업운동의 발전을 추진하였으며 공장법을 속히 수정하도록 짜리정부를 압박함으로써 1897년 6월 2일(신력 14일) 각 유형의 공장들에서 노동시간을 11시간 반으로 단축시킬때 대한 법률을 공포하게 하였다. 레닌은 이번 파업은 《전반 우리 혁명의 가장 강대한 요인으로 되는 노동운동, 즉 그 후 계속 양양되는 노동운동에 새로운 기원을 열어놓았다.》(이 선집의 978페이지를 보라.)고 지적하였다. —제129, 209, 321, 978페이지
- 63 소책자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의 임무》의 초고에는 이 개소가 《사회》라고 쓰여있지 않고 《생산》이라고 쓰여있다. 소책자 제1판(1898년)에서는 이 말이 잘못 해득되어 《정부》라고 인쇄되었다. 제2판(1902년)에서 레닌이 《정부》라는 단어를 《사회》라는 단어로 바꾸어놓음으로써 이 확연한 착오를 시정하였다. —제130페이지
- 64 내무대신 엔. 페. 이그나찌예브가 실시한 정책(1881~1882년)을 말한다. 레닌이 말한바와 같이 이그나찌예브는 자유파를 극력 조롱하였으며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수단으로써 알렉산드르3세정부가 토골적인 반동으로 전환하는것을 애써 비호하였다. 그리하여 속대금을 낮추며 이주민을 정돈하고 지방행정을 개혁하는 등 문제를 토론하기 위하여 《유지》들을 모았으며 지어는 이른바 《국민대표회의》까지 열려고 하였다. 이 모든 행위는 이그나찌예브의 사적파함께 종말을 고하였다. 그후에는 《방자하고 극히 무의미하고 야수적인 반동적형태》의 시기가 출현하였다.(이 선집의 88페이지를 보라.) —제139페이지
- 65 블랑끼주의는 프랑스무산계급혁명운동의 걸출한 지도자 루이 오구스트 블랑끼를 위수로 한 류파의 하나이다.
- 블랑끼는 프랑스의 혁명운동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두차페나 사형선고를 받았었다. 그는 거의 반평생을 감옥에서 지냈다.
- 레닌은 블랑끼를 의심할바없는 혁명가로, 사회주의의 열렬한 옹호자로 인정한 동시에 그의 종파주의 및 음모적활동방법에 대하여서는 건결히 비판하였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블랑끼주의는 계급투쟁을 부정하는 이론이다. 블랑끼주의는 무산계

- 급의 계급투쟁에 의해서가 아니라 소수의 지식인들의 음모적수단에 의하여 인류를 고용노예제로부터 해방하려고 하였다.》(《페닌전집》, 한문판, 제10권, 361페이지를 보라.)—제145, 259, 631, 835, 881페이지
- 66 《모스크바시보》(《Московские Ведомости》)는 러시아에서 가장 일찍 발간된 신문으로서 1756년부터 발행되었다. 시초에는 모스크바대학의 소형신문이었다. 1863년에 엠.엔. 카프코브의 수중에 장악되면서부터 이 신문은 가장 반동적인 지주 및 승려의 견해를 반영하는 군주제적민족주의의 간행물로 되었다. 1905년부터는 흑백단의 주요한 기관지의 하나로 되었다. 이 신문은 출판 10월혁명전까지 발행되었다. —제157, 808페이지
- 67 《제자들》이란 맑스와 엥겔스의 학설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말한다. 이 술어는 19세기 90년대에 맑스주의자들에 대한 합법적칭호로서 사용되었다. —제157페이지
- 68 스갈진은 러시아의 저술가이며 정론가인 에프. 베. 엘레네브의 필명이다. 19세기 60년대에 그는 자산계급적자유주의의 대표인물이었다. 80~90년대에는 극히 반동적인 인간으로 전락되어 짜리정부의 출판물검열관, 내부부판리로 있었다. —제158페이지
- 69 농노제를 철폐한 1861년의 러시아의 개혁을 말한다. 이것은 농노제적착취를 반대하는 농민군중운동의 양양 및 혁명적민주주의자들의 투쟁에 의하여 짜리정부가 부득이 실시한 개혁이었다. 1861년 2월 19일(신력 3월 3일) 짜리 알렉산드르2세는 농민들을 농노제적예속관계로부터 해방할데 관한 개혁법령을 비준하였으며 러시아에서 농노제를 철폐할데 관한 특별조서에 서명하였다. 페닌은 이 농노개혁의 기본특점에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악명높은 <해방>은 기실 농민들에 대한 가장 파렴치한 약탈이었으며 폭력의 편속이었으며 그들에 대한 순전한 모욕이었다.》(《페닌전집》, 한문판, 제17권, 102~103페이지를 보라.)—제159페이지
- 70 민체스터주의자란 19세기 전반기에 무역자유 및 자본주의발전의 제한법(케하면 곡물법 등) 폐절을 주장한 자산계급정치경제학에서

의 만체스터학파의 지지자들이다. 만체스터주의자들의 활동중심은 영국의 대공업도시인 만체스터였다. 만체스터주의자들의 지도자는 두 방직공장의 공장주 꼽넨과 브라이트였다. —제163페이지

- 71 지방자치국은 혁명전로씨야의 지방자치기구로서 전적으로 농촌주민들의 순지방사무(메킨대 도로를 수축하며 병원, 학교를 세우는 등)만을 관리하였는데 그중 자유파지주들이 주요한 역할을 놀았다. —제171, 390, 730, 995페이지
- 72 엥겔스의 《로씨야의 사회문제》(《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625페이지)를 참조하라. —제172페이지
- 73 케닌은 19세기 60년대의 사상적《유산》에 관하여 언급할 때 출판물 검열을 고려하여 스칼진을 인용할수밖에 없었다. 케닌은 사실에 있어서 엔. 게. 체르니쎬스끼를 상술한 《유산》의 주요한 대표자로 간주하였다. 케닌은 씨비리류형지에서 1899년 1월 26일에 아. 엔. 포르테쎬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스칼진의 유산을 접수할것을 아무데서도 제기하지 않았다. 유산을 다른 사람에게서 접수하여야 한다는것은 더 논쟁할 여지가 없는 일이다. 237페이지의(이 선집의171~173페이지를 보라. —편집자) 주해가 나를 위한 번호(적의 가능한 공격으로부터)로 될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주해에서 나는 바로 체르니쎬스끼를 넘두에 두었으며 또 대비를 위하여 그를 취하는것이 무엇때문에 부당한가 하는 리유도 설명하였다.》(《케닌선집》, 한문판, 제34권, 11~12페이지를 보라.) —제172페이지
- 74 초과가치란 잉여가치(Mehrwert)이다. 케닌은 90년대의 자기 저서에서 늘 초과가치라는 술어를 잉여가치라는 술어와 함께 사용하였다. 그후에 그는 잉여가치라는 술어만을 사용하였다. —제179, 220페이지
- 75 《농업신문》(《Земледельческая Газета》)은 로씨야 국가산업부(1894년부터는 국가산업및농업부로 되었다.)의 신문으로서 1834년부터 1917년까지 페페르부르그에서 출판되었다. —제179페이지
- 76 《새말》(《Новое Слово》)은 과학-문학-정치잡지로서 1894년부

- 더 베제르부르크에서 자유주의적인 민파들에 의하여 출판되었으며 1897년 봄부터는 《합법적 맑스주의자》에 의하여 출판되었다. 《세말》은 케닌의 두 편의 논문 《경제학상의 랑만주의의 특성을 논함》과 《신문기사에 관하여》를 게재하였다. 이 잡지는 1897년 12월에 정부에 의하여 폐간되었다. —제193, 981 페이지
- 77 《맑스엔겔스전집》, 한문판, 제2권, 104페이지를 보라. —제195페이지
- 78 게. 웨. 플레하노프의 논문 《유물사관에 관하여》를 말한다. 이 논문은 1897년 9월에 엔. 까펜스끼라는 닉명으로 《세말》 12호에 게재되었다. 《플레하노프철학저작선집》, 5권집, 1956년, 로문판, 제2권, 236~266페이지를 보라. —제203페이지
- 79 《슈몰레르년지》(《Schmollers Jahrbllch》) 즉 《독일제국의 법률, 행정 및 국민경제 년지》(《Jahrbuch für Gesetzgebung, Verwaltung und Volkswirtschaft im Deutschen Reich》)는 정치경제학잡지로서 1877년부터 독일자산계급경제학자이며 강단사회주의의 대표자인 에프. 호르젠도르프 및 엘. 브렌라노에 의하여 출판되었으며 1881년부터는 게. 슈몰레르에 의하여 출판되었다. —제207페이지
- 80 《일요주간》(《Неделя》)은 1866년부터 1901년까지 베제르부르크에서 탈간된 자유주의적인 민파의 주간신문이다. 이 신문은 전체정치와의 투쟁을 반대하여나섰으며 소위 《사소한 사업》론 즉 지식인에게 혁명적투쟁을 포기하고 《문화주의》사업에 종사할것을 고취하였다. —제208페이지
- 81 《로시아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이란 저서는 케닌의 거대한 연구사업의 성과이다. 그것은 맑스주의경제리론발전에 대한 중대한 기여로서 인민주의를 사상적으로 분쇄하는 과업을 완수하였다. 이 책에 대한 저술사업은 3년 이상 계속되었다. 케닌은 1896년 1월 즉 로동계급해방투쟁동맹사건으로 하여 체포된 직후에 이 책의 저술에 착수하였다. 1896년 1월 14일 감옥에서 내보낸 첫번째 편지에서 케닌은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체포당한후로 몹시 열중하고있는 계획이 하나 있는데

날이 갈수록 그 생각이 더 간절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의 경제문제(국내가공공업품의 판매문제)를 연구하여왔는데 문헌도 약간 수집하였으며 그 연구계획도 세우고 이미 좀 쓰기까지 하였습니다. 만약 그것이 잡지문헌의 분량을 넘게 되면 단행본으로 출판할가 합니다.》(《태닌전집》, 한문판, 제37권, 21페이지를 보라.)

같은 편지에서 태닌은 자기가 작성한 목록에 의하여 서적을 찾아줄것을 부탁하면서 자기의 저술계획에 언급하고있다.

태닌은 다음과 같이 쓰고있다. 《도서목록을 두 부분으로 구분하였습니다. 나의 저술도 역시 그렇게 될것입니다. (1) 일반적인 이론부분인데 이것은 서적이 그리 많이 요구되지 않으며 따라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쓸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대신 많은 준비사업이 필요합니다. (2) 이론적원리를 로써야실정의 연구에 적용하는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주 많은 서적을 필요로 합니다. 주요한 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국의 출판물. 그러나 이것은 더러는 나에게 있고 더러는 주문할수 있을것이고(작은 단행본) 또 더러는 아는 통계학자들을 통하여 구할수 있을것입니다. (2) 정부출판물—각 위원회의 문헌, 대회의 보고와 회의록 등등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구하기도 어려울것입니다. 그중 어떤것은 자유경제학회의 도서관에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이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와 같은 책 22~23페이지)

태닌은 갖은 애로를 박차면서 자기의 연구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성과적으로 수집하였다. 《로씨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의 자료준비는 이 저작의 준비과정에서 진행한 태닌의 연구사업의 범위 및 방법을 특징지으며 그 자료의 일부분은《태닌문헌집》, 로문판, 제33권에 게재되었다.

《로씨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의 초고는 1898년 8월에 끝났다. 이 원고를 최후로 수정하자면 아직 적지 않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였다.

1898년 11월중순에 저서의 첫 두장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출판사에 넘기기 위하여 엔. 가. 크롭스까야가 따로 필기장에 베껴 친척에게 보낸것이였다.

1899년 2월 11일에 레닌은 《로씨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의 마지막 주장과 부록의 저술사업을 끝마쳤다. 원고의 이 부분은 1899년 2월 15일에 출판사로 보냈다.

로씨야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레닌의 이 저서는 전문가나 학자들을 위하여 쓴것이 아니다. 그는 이 저서를 광범한 독자들의 연구에 편도록 출판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친척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저서의 규격, 활자호수 및 인쇄, 통계표의 배치, 교정순서 등에 관하여 자세하게 지시하였다.

이 저서는 1899년 3월 26~31일에 올라지미르 일리인이란 이름으로 출판되었다.

자산계급출판물은 레닌의 이 과학적로작을 목살하려고 시도하였다. 1899년 가을에야 비로소 처음으로 적대적성격을 띤 평론들이 나타났다. 그 평론중의 하나에 대하여 레닌은 1900년 5~6월의 《과학평론》에 실린 논문 《비판이 아닌 비판》에서 치명적인 반격을 가하였다. —제209페이지

82 《로씨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전》 제2판은 1908년에 출판되었다.

제2판을 위하여 레닌은 원문을 다시 교열하면서 틀린 글자를 고치고 많은 수정과 보충을 가하고 새로운 각주를 더 달았으며 새 서문을 썼다. 《로씨야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 제2판에서 레닌은 검열을 고려하여 사용하였던 《제자》요, 《근로인민들의 지지자》요 하는 단어들을 《맑스주의자》요, 《사회주의자》요 하는 직접적단어로 바꾸었으며 《새로운 이론》이라고 표현한것을 맑스 및 맑스주의의 인용문으로 바꾸었다.

레닌은 보다 새로운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자기의 저서에다 많은 보충을 가하였다. 제2장에 새로 보충한 절(제11절)은 1896~1900년의 근마조사총결에 대하여 분석한것이다. 레닌은 로씨야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그의 종래의 결론을 확증하는 새로운 사실 특히 공장통계기관의 새로운 자료를 인용하였다. 그는 1897년의 전반적인구조조사총결에 대하여 분석을 가하고 로씨야의 계급적결구의 전상을 더욱 전면적으로 보여주었다. (《레닌전집》, 한문판, 제3권, 456~461페이지 《제2판에 대한 보충》을 보라.)

제2판에는 《로씨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에 언급된 기본적문제들을 둘러싸고 《합법적맑스주의자》들과 진행한 논쟁도 종결되어있다. 《합법적맑스주의자》들을 맑스주의의의를 쓰고 로동운동을 자산계급의 이익을 위하여 리용하려고 시도한 '자산계급자유주의자'라고 한 레닌의 평가는 1905~1907년의 제1차로씨야혁명의 경험에서 완전히 증명되었다.

제2판 서문에서 레닌은 앞으로 자기의 저작을 수정할 가능성에 언급하면서 그때에는 이 저작을 두권으로 나누어 제1권에서는 로씨야의 혁명전 경제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분석하며 제2권에서는 혁명의 종결 및 성과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제209페이지

- 83 이것은 하이네가 그의 말공부쟁이 추종자들을 유하여 한 말인데 맑스는 《독일의식형태》 제2권 제4장에서 이 말을 인용하였다.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권, 604페이지를 보라. —제211페이지
- 84 **립헌민주당**은 로씨야의 주요한 자산계급정당인 자유주의군주파자산계급의 정당으로서 1905년 10월에 창립되었다. 지도자는 베.엔. 밀류크브였다. 립헌민주주의자들은 자신을 민주주의자로 가장하고 《인민의 자유》당으로 자처하면서 농민을 자기편에 끌어들이려고 애썼다. 그들은 립헌군주제의 형식으로 짜리제도를 유지하려고 시도하였다. 그후 립헌민주당은 제국주의-자산계급정당으로 전락하였다. 10월혁명이 승리한후 립헌민주주의자들은 쏘베트공화국을 반대하는 반혁명적음모활동과 폭동을 조직하였다. —제211, 298, 680, 878, 899, 918, 941, 979, 1004페이지
- 85 **10월당** 또는 **10월17일동맹**은 대공업자산계급과 자본주의적으로 산업을 경영하는 대지주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반혁명정당으로서 1905년 짜리의 10월17일조서가 발표된후에 성립되었다. 10월당원들은 10월17일조서(이 조서에서 혁명에 절집한 짜리는 인민에게 공민권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를 말로는 승인하면서도 실지에 있어서는 짜리제도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도 하며 하지 않았으며 짜리정부의 대내외정책을 완전히 지지하였다. 이 당의 지도자는 대공업가 야. 구치코브와 대령 지스유자 엠. 로드잔코였다. 1906년

- 가을부터 10월당은 집정당으로 되었다. —제211, 951, 979, 1004페이지
- 86 **뵘 . 아 . 스톨리벤**은 토씨야의 반동관료이다. 1906년 4월부터 내무대신을 담임하였고 1906년 7월부터 대신회의 주석을 담임한 그는 혁명운동을 잔혹하게 탄압하였다. —제212, 940페이지
- 87 **1907년 6월3일(신력 16일)정변**은 반동적인 정변이었다. 이 정변에서 정부는 제2차국회를 해산하고 국회선거법을 뜯어고치었다. 새 선거법은 국회내에서의 지주와 공상업자산계급의 의원석을 많이 증가시키고 원태도 많지 않던 농민과 노동자의 의원석을 절반이나 축소시켰다. 새 선거법은 토씨야의 아세아부문의 주민대부분의 선거권을 박탈하였으며 팔스카와 갑까즈의 의원석을 절반이나 축소시켰다. 이 선거법에 의하여 선출되었고 1907년 11월에 소집된 제3차국회는 그 의원들의 구성요소로 보아 흑백단-립헌민주당적인 국회였다. —제212, 926페이지
- 88 **인민사회당**은 1906년에 성립된 소자산계급정당으로서 사회혁명당 우익으로부터 갈라져나온 사회혁명당원들로 구성되었다. 이 당은 립헌군주제범위내에서의 온화한 민주주의적요구를 제기하였다. 인민사회당원들은 토지사회화에 대한 사회혁명당원들의 강령적원칙을 거부하고 속매하는 방법으로 지주의 토지를 징수할것을 주장하였다. 태닌은 인민사회당원들을 《소시민적기회주의자》, 《사회립헌민주당원》, 《사회혁명당멘웨워크》라고 불렀다. 인민사회당의 지도자들로는 아 . 웨 . 베레호노브, 웨 . 아 . 마코진, 엔 . 에프 . 안넨스키 등이었다.

2월자산계급민주혁명후 인민사회당은 자산계급립시정부를 적극 지지하고 반혁명전령으로 넘어갔다. —제213페이지

- 89 **근로파**는 소자산계급민주파집단으로서 1906년 4월에 제1차국회내의 농민의원들로 조직되었다. 근로파대표단은 4차의 당회에 다 존재하였다.

근로파는 일제 신분적제한 및 민족적제한의 철폐, 지방 및 도시 자치기관의 민주화, 일관적선거에 의한 국회선거를 요구하였다. 근로파의 토지강령은 인민파의 토지평균사용제한적에 근거하여 제정되었는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관유지, 황족령지, 황실

명지, 사원소유지 및 사적소유토지(단일 사적소유면적이 규정된
로동토지량을 초과하였다면)으로써 전인민적토지를 구성하고 토지
경작자본인만이 토지사용권을 가지는것을 허용한다. 그리고 내놓
은 사적소유의 토지에 대해서는 보수를 주기로 규정한다. 토지개
혁은 지방농민위원회가 책임지고 진행한다.

-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근로파는 배외주의립장을 취하였다. 2월
자산계급민주혁명후에 근로파는 인민사회당원들과 함께 반혁명진
영으로 넘어갔다. 근로파는 10월혁명을 적대시하였다. —제213페이지
- 90 《로씨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전》 제1판(1899년)에서는 이 장
의 제목이 《리론적검토》로 되어있다. —제214페이지
- 91 맑스의 《자본론》, 제3권, 제37장을 보라. —제215, 218페이지
- 92 맑스의 《자본론》, 제1권, 제24장, 제5절(《맑스엥겔스선집》, 한문
판, 제2권, 250, 252페이지)을 보라. —제220페이지
- 93 맑스의 《자본론》, 제2권, 제20장, 제12절을 보라. —제225페이지
- 94 같은 책 제19장, 제2절의 3을 보라. —제227페이지
- 95 이것은 성경 《루가복음》 제23장에 있는 말이다. 예수가 체포된
후 로마총독 폰티우 빌라도(Pontius pilatus)의 심문에 교부되었
다. 폰티우 빌라도는 예수가 갈릴리사람인것을 알고 그를 갈릴
리지방 총독 헤롯에게 넘겼다. 그런데 헤롯은 심문할것을 거절하고
예수를 폰티우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사람들은 이 말을 인
용할 때 헤롯을 빼버리고 《폰티우스부터 빌라도에게로 미루었다.》
라고 한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서로 미루는것을 의미
한다. —제227페이지
- 96 맑스의 《자본론》, 제1권, 제22장, 제2절을 보라. —제227, 228페이지
- 97 같은 책 제6장을 보라. —제228페이지
- 98 맑스의 《자본론》, 제2권, 제19장, 제2절의 1을 참조하라. —제229
페이지
- 99 맑스의 《자본론》, 제2권, 제20장, 제1절을 보라. —제232페이지
- 100 같은 책 제18~21장 —제233페이지
- 101 맑스의 《자본론》, 제3권, 제18장을 보라. —제235페이지
- 102 맑스의 《자본론》, 제2권, 제20장, 제10절을 보라. —제236페이지

- 103 같은 책 제16장, 제3절을 보라. —제237페이지
- 104 맑스의 《자본론》, 제3권, 제15장, 제1절을 보라. —제237페이지
- 105 맑스의 《자본론》, 제3권, 제15장, 제2절을 보라. —제237페이지
- 106 헤로스트라트는 기원전 4세기의 회합사이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후세에 이름을 남기기 위하여 그의 고향도시 에페즈에 있는 유명한 신전 아르테미스를 불태웠다고 한다. 헤로스트라트의 이름은 개인의 명예라면 범퍼행위도 서슴지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명사로 되었다. —제237, 307페이지
- 107 에. 베른슈타인의 소책자 《사회주의의 전제 및 사회민주당의 과업》은 혁명적맑스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이 책은 1899년에 출판되었다. 레닌이 류형지에서 이 책을 입수하였을 때는 《로씨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전》 제1판이 이미 출판된후였다. 그리하여 레닌은 베른슈타인의 견해에 대한 비판을 《로씨야에 있어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의 제2판에 미룰수밖에 없었다. —제237페이지
- 108 맑스의 《자본론》, 제3권, 제30장을 보라. —제238페이지
- 109 《신의세계》(《*Мир божий*》)는 자유주의자들의 통속적인 문학 및 과학 월간잡지로서 1892년부터 1906년까지 베제르부르크에서 발행되었다. 로씨야 제1차혁명시기에 멘셰위크들은 이 잡지에 기고하였다. 1906년 10월부터 1918년까지의 기간에 이 잡지는 《현대세계》란 이름으로 계속 발행되었다. —제238페이지
- 110 맑스의 《자본론》, 제3권, 제18장을 보라. —제238페이지
- 111 같은 책 제49장을 보라.
레닌이 《자본론》 제3권 로문역본에 오역이 있다고 한것은 엔. -은(다니엘쑤)의 1896년 역본을 가리킨다. —제241페이지
- 112 맑스의 《자본론》, 제3권, 제49장을 보라. —제245페이지
- 113 《로씨야사회민주당의자들의 합의서》는 레닌이 일부 경제주의자들의 선언—《신조》(《*Credo*》)를 반대하여 1899년에 류형지에서 쓴것이다.

《합의서》는 레닌이 소결한(미누센스크주 예르마프스크촌에서) 류형생활을 하고있는 17명의 맑스주의자의 회의에서 심의되고 단

장일치로 채택되었다. 푸루한스크와 오를로브(바트카성)의 류형자들은 이 《항의서》에 찬동하였다.

《항의서》는 폐んに 의하여 국의에 있는 로동해방단에 부송되었다. 1900년초에 《항의서》는 게. 웨. 플레하노브에 의하여 문헌집 《로동자사업》 편집부를 위한 안내서》에 게재되었다. —제253페이지

114 《신조》(《Credo》)는 일부 경제주의자들이 1899년에 발표한 문헌의 명칭이다. 이 문헌은 무산계급의 독자적정치적역할과 로동계급정당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경제주의자들의 기회주의적견해를 극히 명백하게 보여주고있다. 《신조》의 저자로는 에스. 엔. 프로코프우치와 예. 데. 쿠스꼬와인데 그들은 후에 모두 텃헌민주주의자로 되었다. —제253, 273, 308, 770, 997페이지

115 베른슈타인의 19세기말에 나타난 국제로동운동에서의 수정주의적사조인데 그것은 독일사회민주당의 에. 베른슈타인의 이름으로써 명명한것이다. 베른슈타인은 1896~1898년에 독일사회민주당의 리론잡지 《신시대》에 발표한 논문과 《사회주의의 전제 및 사회민주당의 과업》(1899년)이라는 소책자에서 맑스주의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였다. 그는 계급투쟁에 관한 맑스주의의 리론을 반대하고 자본주의의 붕괴의 불가피성에 관한 학설을 반대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무산계급독재를 반대하였으며 사회민주당의 과업은 개량을 전취하는것이라고 인정하였다. 베른슈타인의 기회주의적 및 수정주의적 견해는 독일사회민주당의 우익파 제2국제당의 기타 당들의 지지를 받았다. 다만 폐년을 수반으로 하는 볼셰위크당만이 베른슈타인주의와 그 옹호자 및 추종자들에 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였다.

로씨야에서는 《합법적맑스주의자》, 경제파, 분드분자, 멘셰위크가 베른슈타인의 프리를 따라갔다. —제255, 274, 294, 747, 836페이지

116 **헌장운동**은 19세기 30년대로부터 50년대중기까지 인민현장의 채택을 전취하기 위한 영국로동자들의 정치운동이다. 인민현장에는 일

반적선거권에 대한 요구 및 노동자들에게 이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규정된 일련의 조건들이 망라되어 있다. 케닌은 헌장운동을 《세계적으로 처음으로 되는 광범하고 참으로 대중적이고 정치적인 무산계급혁명운동이다.》(《케닌선집》, 한문판, 제3권, 811페이지를 보라.)고 하였다. 영국공상업의 독점적지위가 강화되고 영국자산계급이 초과리윤으로 영국로동계급의 상층(《로동자귀족》)을 배수한 데서 영국로동계급가운데의 기회주의적경향은 날로 커졌으며 로동조합의 지도자들은 더는 헌장운동을 지지하지 않게 되었다. 이리하여 헌장운동은 점차 약화되었다. —제258, 950페이지

- 117 **쁘루동주의**는 소자산계급적사회주의의 한 류파로서 프랑스무정부주의자 삐에르 조제프 뿌루동에 의하여 명명된 것이다. 뿌루동은 소자산계급적립장에서 자본주의적대소유제를 비판하였으며 소사유제의 영구화를 환상하였다. 그는 《인민》은행과 《교환》은행을 세울 것을 주장하면서 노동자들이 이런 은행의 도움을 받아 자기에게 필요되는 생산수단을 구입하며 자기의 생산물을 《공정하게》 팔수 있게 되리라고 인정하였다. 뿌루동은 무산계급의 역할과 의의를 알지 못하였으며 계급투쟁과 사회주의혁명과 무산계급독재를 극력 반대하였다. 그는 무정부주의적립장으로부터 출발하여 국가의 필요성을 부인하였다. 뿌루동파는 소상품의 생산과 교환을 리상화하였다. 《자본주의와 그 기초인 상품생산을 폐절할것이 아니라 이 기초에서 갖은 병집과 흑 등을 제거할것, 교환과 교환가치를 폐절할것이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구성하며> 그것을 보편적이며 절대적이며 <공정하며> 파동, 위기, 병집이 없는것으로 만들것—바로 이것이 뿌루동의 사상이다.》(《케닌선집》, 한문판, 제20권, 17페이지를 보라.)—제259, 288, 317, 835페이지

- 118 **맑스의 《철학의 빈곤》**(《맑스엔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154~161페이지)을 보라. —제260페이지

- 119 **라살파**에 관하여서는 주해 140을 보라. —제260, 908페이지

- 120 케닌은 여기에서 라살파의 반동적론점, 즉 로동계급에 대하여 말한다면 다른 모든 계급은 하나의 반동적무리일따름이라는 론점을 비판하였다. 라살파의 이 론점은 1875년 고라에서 열린 아이제나

흐파와 라팔파의 통합대회에서 채택된 독일사회주의로동당강령(고타강령)에 들어갔다.

맑스는 《고타강령비판》에서 이 반동적문제를 비판하였다. (《맑스 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13~15페이지를 보라.)—제261페이지

- 121 **북로씨야로동자동맹**은 로씨야로동계급의 최초의 혁명적정치조직의 하나로서 1878년에 베제르부르그에서 조직되었다. 이 동맹의 경도자로는 목공 스제반 할투린과 선반공 워도르 오브노르스끼였다. 동맹은 로동자의 파업을 여러차례 령도하였으며 파업자들에게 배라를 발송하였다. 그 동맹의 맹원은 200명에까지 달하였었다. 이 동맹은 1879년에 짜리정부에 의하여 파괴당하였다. 체포되지 않은 맹원들은 1880년 2월에 신문 《로동자서광》 한호를 발행하였는데 이것은 로씨야의 최초의 로동자신문이었다. —제262페이지
- 122 **남로씨야로동자동맹**은 로씨야의 첫 혁명적정치적성격을 띤 로동자조직으로서 예. 오. 자슬랍스끼에 의해 1875년에 오데싸에서 창립되었다. 동맹은 8,9개월간 존재한후 짜리정부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제262페이지
- 123 신문 《로동자사상》(《Рабочая Мысль》)은 경제파들의 신문이다. 1897년 10월부터 1902년 12월까지 선후로 베제르부르그, 베를린, 와르샤와, 제네바에서 발간되었는데 도합 16호가 나왔다. 테닌은 허다한 저서들에서 특히는 《이스크라》지에 발표한 논문들과 저서 《무엇을 할것인가?》에서 신문 《로동자사상》의 견해를 로씨야에서의 국제기회주의의 변종이라고 지적하였다. —제263, 270, 273, 309, 771페이지
- 124 《싼크트 베제르부르그로동자소형신문》(《С.-Петербургский Рабочий Листок》)은 베제르부르그로동계급해방투쟁동맹의 비밀적신문이다. 모두 두호가 나왔는데 제1호는 1897년 2월에 (신문에는 인쇄날자가 1월로 되어있다. 이 호는 로씨야에서 300~400부가 등사되었다.) 발행되고 제2호는 1897년 9월에 제네바에서 발행되었다. —제263, 325페이지
- 125 《로동자신문》(《Рабочая Газета》)은 끼예보사회민주주의자소

조의 비밀적기관지이다. 모두 두호가 발행되었는데 제1호는 1897년 8월에 발행되고 제2호는 같은 해 12월(신문의 날자는 11월로 되어 있다.)에 발행되었다. 로씨야사회민주당 제1차대회는 《로동자신문》을 당의 공식적기관지로 인정하였다. 대회후 인쇄소가 경찰에 의해 파괴되고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체포된탓으로 인쇄회부되었던 제3호는 발행되지 못하였으며 그후 이 신문은 다시 발간되지 못하였다. —제263, 290페이지

- 126 로씨야사회민주당 제1차대회는 1898년 3월에 민스크에서 열리었다. 이 대회에는 6개 조직(백제르부르그, 모스크바, 예카제리노슬라브, 기예브의 로동계급해방투쟁동맹, 기예브의 《로동자신문》소조 및 분드)의 9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대표대회는 《로씨야사회민주당선언》을 공포하였다. 《선언》은 정치적자유를 쟁취하고 전제제도를 전복하기 위한 투쟁을 로씨야사회민주당의 주요과업으로 삼고 정치투쟁을 로동운동의 일반적과업에 결부시킬것을 제기하였다.

대회는 중앙위원회를 선거하였으며 《로동자신문》을 당의 공식적기관지로 비준하였으며 제의로씨야사회민주당의자동맹을 당의 제의대표기관으로 선포하였다.

로씨야사회민주당 제1차대회의 의의는 이 대회가 자기의 결의와 《선언》에서 로씨야사회민주당의 창건을 선포하였다는 데 있다. —제264, 272, 278, 325, 983페이지

- 127 플레하노브의 논문《베른슈타인과 유물론》을 가리킨다. 이 논문은 1898년 7월에 독일사회민주당의 잡지《신시대》제44호에 실렸다. 《플레하노브전집》, 1928년, 로문판, 제11권, 13~26페이지를 보라. —제268페이지

- 128 독일사회민주당 한노베르그대회는 1899년 10월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었다. 대회는 대회일정의 주요문제인 《당의 기본적결해 및 전술에 대한 공격》에 관해서 하나의 결의(한노베르그결의)를 채택하였다. 대회가 이 문제를 심의하고 특별결의를 채택하게 된것은 베른슈타인을 우두머리로 하는 기회주의자들이 맑스주의리론에 대한 수정을 들고나오고 사회민주당의 혁명적 정책 및 전술의 재검

- 토를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대표대회의 결의는 수정주의자들의 요구를 거부하기는 하였으나 베른슈타인주의를 적발비판하지 못하였다. —제268, 301페이지
- 129 1897년 6월2일(신력 14일)법령을 가리킨다. 이 법령은 짜리정부가 레닌의 로동계급해방투쟁동맹이 지도하는 로동운동에 겁을 먹고 막부득이하여 발포한것이다. 이 법령은 공업기업소 및 철로공장의 로동시간을 11시간 반으로 규정하였다. 이 법령이 발포되기 전에 로씨야에서는 로동시간이 무제한하여 14~15시간에까지 달하였다. 레닌은 소책자 《새 공장법》에서 이 법령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과 비판을 가하였다.《레닌전집》, 한문판, 제2권, 228~271페이지를 보라.)—제271페이지
- 130 론문 《우리 운동의 절박한 임무》는 《이스크라》지 창간호의 사설이다. —제273페이지
- 131 《〈로동자사상〉 부록》은 1899년 9월에 《로동자사상》 편집부에 의하여 출판된 소책자이다. 이 소책자는 특히 에르. 엠. 이라고 서명한 론문 《우리의 실제정황》은 경제주의자들의 기회주의적전해를 공개적으로 설교하였다. —제273, 312페이지
- 132 레닌은 맑스가 서술한 《국제로동자동맹 총칙》의 기본원리를 인용하고있다.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권, 136 페이지를 참조하라. —제275페이지
- 133 이것은 로씨야로동자혁명가인 보프르 알렉세예브가 1877년 3월 22일에 페페르부르그의 짜리법정에서 한 연설에서 인용한것이다. 이 연설은 1877년에 런던에서 출판되는 로문잡지 《전진! (비정기평론)》에 처음으로 게재되었다. 그후 이 연설은 여러번 비밀리에 재판되어 로씨야의 광범한 로동자들의 환영을 받았다. —제279페이지
- 134 1857~1859년의 인도봉기를 가리킨다. 이 봉기는 영국의 통치를 반대하고 민족적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인도인민이 단행한 규모가 가장 큰 한차례의 봉기였다. —제282페이지
- 135 1899년 10월~1902년 5월의 영국-보아전쟁을 가리킨다. 그 전쟁은 남아프리카 보아인의 두개 공화국(트란스발공화국 및 오렌지자치방)에 대한 영국의 침략전쟁이었다. 전쟁의 결과 두 공화국은

대브리텐제국의 식민지로 되었다. —제282페이지

- 136 바쿠닌주의는 무정부주의사조로서 엠. 아. 바쿠닌에 의하여 명명된 것이다. 바쿠닌주의는 계급의 평등을 주장하며 상속권폐절을 사회혁명의 출발점으로 삼으면서 노동계급에게 모든 정치적활동을 포기할것을 고취하였다. 바쿠닌주의는 무산계급독재와 무산계급정당을 반대하며 국가를 모든 재난의 근원으로 보면서 모든 국가를 즉시 철폐하고 무정부상태를 실시할것을 주장하였다. 바쿠닌주의자는 맑스주의의 흉악한 적이다. 바쿠닌과 그 옹호자들은 맑스가 평도하는 제1국제당내에서 분열활동을 획책하면서 국제노동운동의 평도권을 빼앗으려고 시도하였다. 1872년에 바쿠닌은 제1국제당에서 제명되었다.

바쿠닌주의자의 이론과 전술은 맑스와 엥겔스의 엄한 비판을 받았다. 레닌은 바쿠닌주의를 《절망적인 소자산자의 세계관》(《레닌전집》, 한문판, 제18권, 11페이지를 보라.)이라고 하였다. 바쿠닌주의는 인민파의 사상적근원의 하나이다. —제288페이지

- 137 레닌의 저서 《무엇을 할것인가?(우리 운동의 긴급한 문제들)》는 기회주의의 사상적근원을 철저히 폭로하고 혁명적리론과 사회주의적각성의 위대한 의의를 제시하였으며 무산계급정당이란 노동운동과 사회주의의 결합이라는 맑스주의근본원리를 튼튼하였으며 맑스주의정당의 리론적기초를 규정하였다. 저서 《무엇을 할것인가?》에 천명된 리론적원리는 볼셰위크당의 리론적기초를 닦아놓았다.

이 저서는 레닌이 1901년말부터 1902년초까지에 쓴 것이다. 레닌은 1901년 봄에 이 저서를 쓰려고 하였었다. 그가 1901년 5월에 쓴 논문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것인가?》는 《무엇을 할것인가?》를 집필하기 위한 계획초안(《레닌전집》, 한문판, 제5권, 6페이지를 참조하라.)이라고 레닌은 말하였다. 이 저서를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것은 1901년 가을부터였다. 레닌은 1901년 11월에 쓴 《〈합동〉대회문헌집》 서문에서 이 책이 《준비되고있으므로 멀지 않아 출판될 것이다.》(《레닌전집》, 한문판, 제5권, 272페이지를 보라.)라고 말하였다. 1901년 12월에 《이스크라》 제12호에 발표한 《경제주의의 옹호자들과의 담화》(후에 레닌은 이 논문을 《무엇을 할것

인가?》의 대강이라고 불렀다.)에서 레닌은 《우리는 여기에 논쟁되고있는 문제를 대체적으로 제기하였을뿐이다. 이 문제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이제 한달 반쯤후에 발간할 예정인 특별소책자에서 하게 될것이다.》라고 썼다. (같은 책, 287페이지) 레닌은 1902년 1월에 《무엇을 할것인가?》를 다 썼고 2월에는 그 저서의 서문을 썼다. 그해 3월초에 저서 《무엇을 할것인가?》가 슈투트가르트의 더쵸출판사에서 발행되었다.

1907년에 《무엇을 할것인가?》를 문헌집 《12년간》에 수록하면서 레닌은 제5장의 제(1)절(《누가 논문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것인가?>에 분개하였는가?》)을 삭제하고 이 문헌집의 서문에서 이번에 이 책을 출판할 때 《내용을 약간 줄이고 조직문제에 관계되는 세 절들과 사소한 논쟁적인 의견을 삭제하였다.》(《레닌전집》, 한문판, 제13권, 84페이지를 보라.)고 지적하였다. 동시에 레닌은 새로운 각주 다섯개를 첨가하였다. —제289페이지

- 138 《이스크라》(Искра)는 1900년에 레닌에 의하여 창간된 최초의 전로씨야적 맑스주의의 비합법적신문이었다. 《이스크라》는 로씨야로동계급의 혁명적맑스주의정당을 창건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놀았다.

경찰의 박해로 하여 로씨야에서 혁명적신문을 발행할수 없음을 고려하여 레닌은 씨비리류형당시에 벌써 국외에서 그것을 발간할 상세한 계획을 생각하였다. 1900년 1월에 레닌은 유형이 끝나자 곧 이 계획의 실현에 착수하였다.

《이스크라》창간호는 1900년 12월 24일에 라이프찌히에서 발간되었으며 그후의 호는 룬덴에서, 그리고 1902년 4월부터는 런던에서, 1903년 봄부터는 제네바에서 발간되었다.

《이스크라》편집부에는 레닌, 게. 웨. 플레하노프, 유. 오. 마르토프, 맥. 베. 악셀로드, 아. 엔. 포트레쵸브, 웨. 이. 자쉴리치 등이 들어있었다. 1901년 봄부터 엔. 까. 크롭스까야가 편집부의 비서로 있었다. 사실에 있어서는 레닌이 《이스크라》의 주필이었으며 지도자였다. 그는 《이스크라》에 당의 건설 및 로씨야무산계급투쟁의 근본문제들에 관한 여러가지 논문들을 발표하였으며

국제생활에서의 증대한 사건들에 대한 논평을 썼다.

로씨야의 많은 도시(뻬체르부르그, 모스크바 등)들에서 레닌적 이스크라파의 로씨야사회민주당 소조 및 위원회가 건립되었다.

이스크라파조직들은 레닌에 의하여 배양된 직업적혁명가들(엔.에.바우만, 이.뵘.바부슈긴, 에스.이.구제브, 엠.이.갈리닌 등)의 직접적인 지도하에서 탄생되고 사업하였다.

《이스크라》편집부는 레닌의 창의와 그의 직접적인 참여하에 당의 강령초안을 작성하고 1903년 7~8월에 진행될 로씨야사회민주당 제2차대회를 준비하였다.

대회가 소집되기전에 로씨야의 사회민주당지방조직들의 대다수가 《이스크라》를 옹호하였으며 그의 전술, 강령 및 조직계획을 찬성하고 그것을 자기들의 지도기관으로 인정하였다. 대회는 특별결의에서 당건설을 위한 투쟁에서의 《이스크라》의 특수한 역할을 지적하고 그것을 로씨야사회민주당의 중앙기관지로 선포하였다.

제2차대회에서 레닌, 플레하노브, 마르토프를 정원으로 하는 이스크라의 편집부가 확정되었다. 마르토프는 당대회의 결의에도 불구하고 편집부에 드는것을 거절하였다. 그리하여 《이스크라》제46~51호는 레닌과 플레하노브의 편집하에 출판되었다. 후에 플레하노브는 멘셰위크주의의 립장으로 넘어가 대표대회에서 이미 부결된 원 멘셰위크편집원들을 《이스크라》편집부에 쫓다 참가시킬것을 요구하였다. 레닌은 이에 동의할수 없었다. 그리하여 당중앙위원회를 강화하며 거기에서 멘셰위크적기회주의자들을 분쇄하기 위하여 레닌은 1903년 11월 1일에 《이스크라》편집부를 탈퇴하였다. 제52호는 플레하노브 한사람의 편집하에 출판되었다. 1903년 11월 26일에 플레하노브는 대회의 의사를 어기고 재음대로 이전의 멘셰위크편집원들을 《이스크라》편집부에 보충하여 넣었다. 이리하여 멘셰위크들은 《이스크라》를 제52호부터 자기들의 기관지로 만들었다. 《이때로부터 당내에서는 레닌의 불셰위크적〈이스크라〉를 구〈이스크라〉라고 부르고 멘셰위크의 기회주의적〈이스크라〉를 신〈이스크라〉라고 부르게 되었다.》(《조선공산당(불셰위크)력사간략독본》, 1954년, 인민출판사, 한문판, 57페이지를

보라.)—제289, 594, 599, 678, 872, 981페이지

- 139 《로동자사업》(《Рабочее Дело》)은 경제파의 잡지로서 제의로써야사회민주주의자동맹의 비정기적기관지이다. 베.엔.크리첸스끼, 아.에스.마르피노브, 웨.뻬.이완신이 편집을 맡은 이 잡지는 1899년 4월~1902년 2월까지 제네바에서 발간되었다. 이 잡지는 도합 12호에 9책이 나왔다. 레닌은 《이스크라》에 발표한 논문들과 서와 저서 《무엇을 할것인가?》에서 《로동자사업》의 견해를 비판하였다. —제290, 635, 740페이지

- 140 라살파와 아이제나흐파는 19세기 60년대 및 70년대초의 독일로동운동내의 두 당파이다.

라살파는 에프.라살의 지지자이며 신봉자들이다. 라살파는 프로씨아반동정부의 지지를 받는 로동자조합에 의하여 자본주의를 평화적으로 사회주의어로 이행시킬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을 일반적인 선거권을 위한 투쟁과 의회내의 평화적인 활동으로 대치할것을 주장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라살파를 날카롭게 비판하였으며 그들은 《다년간 무산계급을 조적하는때의 장애물로 되어있다가 나중에는 순전히 경찰의 손아귀에 든 도구로 되었다.》(《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18권, 36페이지를 보라.)고 지적하였다. 맑스의 저서 《고타강령비판》(《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권, 5~25페이지를 보라.) 및 맑스와 엥겔스와의 왕복서한에서 라살파의 이론적견해 및 그들의 견술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였다.

아이제나흐파는 맑스와 엥겔스의 사상적영향하에 있는 맑스주의의 지지자들이다. 아이제나흐파는 웨.립크네히트와 아.베벨의 명도밑에 1869년의 아이제나흐대회에서 독일사회민주로동당을 창건하였다.

이 두 당파사이에는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다.

로동운동이 양양되고 정부의 탄압이 심해짐에 따라 이 두 당파는 1875년 고타대회에서 단일한 독일사회주의로동당으로 통합되었는데 라살파는 이 당내의 기회주의파였다.

테닌은 《아우구스트 베벨》이란 저서에서 라팔파와 아이제나흐파에 대하여 평가를 내렸다. (《테닌전집》, 한문판, 제19권, 290~296페이지를 보라.) —제293페이지

141. 게드파와 가능파는 프랑스로동자당이 분열된후 1882년에 산생된 프랑스사회주의운동내의 두 류파이다.

게드파는 지.게드의 지지자들이다. 게드와 라파르그를 지도자로 한 게드파는 19세기말부터 20세기로에 이르는 프랑스사회주의운동에서의 좌익이다. 게드파는 일적 무산계급의 독자적인 혁명적 정책을 견지하였으며 1901년에는 프랑스사회당을 결성하였다.

가능파는 브루스, 말롱 등을 위수로 한 프랑스사회주의운동에서의 기회주의류파이다. 이 류파의 지도자들은 실제에 있어서는 혁명적전술을 반대하였다. 그들은 다만 《가능한》(《possible》)것만을 즉 로동계급의 활동을 자본주의제도하에서 《가능한》범위내에만 국한시킬것을 주장하는 개량주의적원칙을 선포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가능파》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1902년에 가능파는 다른 개량주의파벌들과 함께 프랑스의 사회당을 결성하였다.

1905년에 프랑스사회당과 불란서의 사회당은 한 당으로 통합되었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지.게드는 프랑스의 사회당의 전체 지도자들과 함께 사회배의주의의 립장으로 넘어갔다. —제293, 912페이지

142. **페이비안협회 회원들**이란 1884년에 영국자산계급 지식인들에 의하여 건립된 개량주의적이며 기회주의적인 페이비안협회의 참가자들이다. 그의 주요지도자로서는 시드니.웹브와 베.웹브이다. 페이비안협회란 고대로마의 통수 페이비안 막섬의 이름으로 명명한것이다. 페이비안은 한니발과의 전쟁에서 결전을 회피하고 기회를 엿보는 전술을 썼기때문에 《콩크타르트》(《우물쭈물하는 사람》)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다. 페이비안협회 회원들은 무산계급의 계급투쟁과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맑스의 학설을 반대하고 소소한 개량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사회를 개조할것을 고취하면서 이른바 《지방공동소유의 사회주의》의 방법으로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 이행할것을 설교하였다. 페이비안협회는 영국로동운동에서의 기회주의

와 개량주의 사상의 발원지의 하나로서 로동계급내부에 자산계급 사상을 전파하였다. 레닌은 페이비안협회는 《기회주의와 자유주의적 로동자정치를 가장 완성된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레닌전집》, 한문판, 제21권, 237페이지를 보라.)고 하였다. 1900년에 페이비안협회는 로동당에 통합되었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페이비안협회 회원들은 사회배외주의립장을 취하였다. 《페이비안사회주의》는 수정주의와 개량주의의 사상적근원의 하나이다.

사회민주주의자란 사회민주주의동맹(주해 308을 보라.)에 참가한자들을 가리킨다. —제293, 914, 973페이지

- 143 **입각파** 또는 입각주의, 밀테랑주의란 반동적내자에 가담한 프랑스사회당원 밀테랑에 의하여 명명된 기회주의류파이다. 밀테랑은 1899년에 프랑스반동적자산계급정부에 가담하여 파리공문을 탄압한 사형러인 갈리페장군과 결탁하였다. —제294, 629, 690, 967페이지
- 144 회랍로마신화에 의하면 미네르바녀신은 투구에다 갑옷을 펼쳐입고 보검을 든채 우뢰의 신 쥬피터의 머리에서 태어났다는것이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이나 그 어떤 일이 처음부터 완전무결하다는것을 비유할 때 흔히 이 말을 쓴다. —제295페이지
- 145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1권, 601페이지를 참조하라. —제295페이지
- 146 크뵐로브의 우화 《두개의 통》을 보라. 이 우화의 내용은 이러하다. 수레 한대에 통 두개를 싣고 가는데 그중 통 하나는 텅 빈것이어서 흔들거리면서 어쩌나 아츠러운 소리를 냈던지 길가던 손님들이 서로 앞다투어 길을 피하였다 한다. —제297페이지
- 147 《서광》(《Заря》)은 맑스주의적과학정치잡지로서 《이스크라》편집부에 의하여 1901~1902년의 기간에 슈투트가르트에서 출판되었다. 이 잡지는 도합 4호(3책)가 출판되었는데 첫호는 1901년 4월에 출판되었고 제2~3호 합간은 1901년 12월에 출판되었으며 제4호는 1902년 8월에 출판되었다. 《서광》잡지는 《시론》, 《지방자치국의 압박자들과 자유주의의 한니발들》 및 《토지문제와 <맑스의 비판가들>》

의 전4장, 《내정평론》, 《로씨야사회민주당의 토지강령》과 같은 레닌의 글을 실었다. —제298, 594, 804, 981페이지

- 148 산악파와 지롱드파는 18세기말 프랑스자산계급혁명시기의 두 자산계급정치파벌이다. 산악파는 일명 자코뱅파라고도 하는데 당시의 혁명적계급 즉 자산계급중의 가장 견결한 대표자들로서 그들은 군주제도와 봉건주의를 소멸할것을 주장하였다. 지롱드파는 산악파와는 달리 혁명과 반혁명 사이에서 뒤흔들리다가 나중에는 군주파와 결탁하는 길로 나아갔다.

레닌은 사회민주당내의 기회주의파를 《사회민주당적지롱드파》라고 불렀으며 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를 무산계급적자코뱅파(산악파)라고 불렀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이 볼셰위크와 멘셰위크로 분열된후 레닌은 멘셰위크들을 로동운동내의 지롱드파라고 여러번 지적하였다. —제298, 631, 726페이지

- 149 무제파란 1906년에 베제르부르그에서 출판된 잡지 《무제》의 조직자들 및 참가자들인 에스.엔.프로코피우치, 예.데.구스코와, 웨.야.보구차르스끼 등을 가리킨다. 무제파는 자기들을 수정주의의 지지자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멘셰위크와 자유파를 지지하였으며 무산계급의 자립적정책을 반대하였다. 레닌은 무제파를 멘셰위크식의 럽헌민주주의자 또는 럽헌민주주의자식의 멘셰위크라고 불렀다. —제298, 878, 984페이지

- 150 일로와이스끼는 로씨야귀족군주파의 력사학자로서 혁명전 로씨야의 중소학교에서 널리 보급된 정칙력사교과서를 많이 편찬하였다. 그의 교과서에서는 력사를 주로 제왕장상들의 활동에 귀착시켰으며 력사적과정울 여러가지 2차적이며 우연적인 사실로써 해석하였다. —제300페이지

- 151 사회주의자특별취체법은 비스마르크정부가 사회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을 반대하기 위하여 1878년 10월 21일에 제국국회의 다수의 지지하에 채택한것이다. 이 법률은 독일사회민주당을 비합법적지위에 처하게 하였으며 당의 모든 조직, 대중적인 로동자단체, 사회주의적 및 로동자들의 간행물들을 금지시키고 사회주의저작을 몰수하고 사회민주주의자들을 탄압하였다. 그러나 사회민주당은 맑스

와 엥겔스의 적극적인 방조하에 자기 대오내의 기회주의자들과 극히 《좌》적인자들을 타승하였으며 비상법의 유효기간에 비밀사업을 합법적기회의 리용과 정확하게 결합시켰으며 대중가운데서의 자체의 영향을 크게 강화확대하였다. 대중적인 노동운동의 압력하에 진압법은 1890년 10월 1일에 철폐되었다. 이 법률에 대한 엥겔스의 평가는 《비스마르크와 독일노동자당》이라는 논문에 있다. (《맑스 엥겔스전집》, 한문판, 제19권, 308~310 페이지를 보라.)—제300, 909페이지

- 152 《진진》(《Vorwärts》)은 독일사회민주당의 중앙기관으로서 1876년 10월에 라이프찌히에서 발행되었다. 엥겔스는 일찍이 신문에서 온갖 기회주의적인 표현들을 반대하여 투쟁하였다. 90년대 후반기부터 즉 엥겔스가 서거한후 《진진》은 독일사회민주당과 제2국제당내에서 지배적지위를 차지하고있던 기회주의자들의 논문들을 자주 실곤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진진》은 사회배외주의적립장에 서있었다. 이 신문은 베를린에서 1933년까지 발행되었다. —제300, 970페이지

- 153 **강단사회주의자**란 19세기 70~90년대의 자산계급사상의 한 류파의 대표로서 주로는 독일의 대학교수들이었다. 강단사회주의자들은 대학의 강단에서 (독일문으로 Katheder) 사회주의간판을 들고 자산계급개량주의를 실교하였다. 강단사회주의는 착취계급들이 맑스주의의 전파와 노동운동의 발전을 두려워하며 자산계급사상가들이 근로대중을 굴종시키는 새로운 수단을 찾아내려고 애쓰면서 생겨난 것이다. 강단사회주의대표자들(아.외그네르, 게.쉬물베르, 엘.브렌타노, 웨.쑤바르트 등)은 국가는 자본가들의 리익을 전드리지 않고 적대적계급들을 서로 화해시키면서 점차 《사회주의》를 실시할수 있는 초계급적인 조직이라고 역설하였다. 강단사회주의의 강령은 질병과 불상사에 대한 노동자들의 보험을 조직하며 공장의 립법면에서 약간한 조치를 취하는 등에만 국한되어있었다. 그 목적은 계급투쟁을 포기하도록 노동자들을 유인하는데 있었다. 강단사회주의는 수정주의의 사상적근원의 하나이다. —제300, 909페이지

- 154 노즈드로브는 고골리의 소설 《죽은 녀》에 나오는 지주로서 싸움질과 험잡질을 일삼았다. 고골리는 노즈드로브를 《력사적》인물로 간주하였다. 그것은 노즈드로브는 가는곳마다에서 더러운 《력사》와 소동을 빚어냈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한 《력사적》의 의란 이것을 가리켜 한 말이다. —제301페이지
- 155 뤼베크결의란 1901년 9월 22~28일에 뤼베크에서 진행된 독일사회민주당대회에서 채택된 결의이다. 대회에 제기된 중심문제는 이 시기에 자체의 강령과 간행물 《사회주의월간》을 가지고 당의 우익으로 편락된 수정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는 것이었다. 대표대회에 훨씬 앞서 과학적사회주의에 대한 수정을 들고나선 수정주의자들의 두목인 베른슈타인은 대회에서의 자기의 연설에서 맑스주의에 대한 《비판의 자유》를 요구하였던 것이다. 대회는 베른슈타인파들이 제의한 결의초안을 거부하였다. 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는 베른슈타인에게 공개적인 경고는 주었으나 베른슈타인주의자들이 노동자당내에 남아있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적인 문제는 제기하지 않았다. —제301페이지
- 156 독일사회민주당 슈루트가르트대회는 1898년 10월 3일부터 8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는데 그 대회에서 처음으로 독일사회민주당내의 수정주의에 관한 문제가 심의되었다. 대회에서는 결석한 베른슈타인의 성명서가 랑독되었다. 그는 성명서에서 이전에 일련의 문에서 발표한 자기의 기회주의적 견해를 서술하고 그것을 변호하였다. 대회에서 베른슈타인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합의를 보지 못하였다. 일부 사람들(베켈, 카우프키 등)은 베른슈타인과 사상투쟁을 진행하며 그의 오류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자고는 주장하였으나 그에게 조직적인 대책을 취하는 것은 반대하였다. 에르. 록셀부르그를 위수로 한 다른 일부 사람들은 비교적 단호하게 베른슈타인주의를 반대하였다. —제302페이지
- 157 《합법적맑스주의》 즉 스트루웨주의는 맑스주의에 대한 자산계급계량주의적외곡이다. 에. 베. 스트루웨 및 기타 《합법적맑스주의자》들은 맑스주의기치와 노동운동을 타용하여 자산계급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시도하였다. 해넌은 자기의 저서에서 스트루웨주의는 국

- 제기회주의의 맹아이며 후에는 배른슈타인주의 및 카우즈키주의 형태를 취하게 된 수정주의의 맹아라는것을 폭로하였으며 스트루웨주의는 필연적으로 자산계급의 민족자유주의어로 발전하게 되리라는것을 지적하였다. 제1차세계대전시기에 스트루웨는 로씨야제국주의사상가의 한사람으로서 맑스주의어구들을 리용하여 사회배의주의를 고수하였으며 《우리 나라의 승리는 국내에서의 자본주의의 발전을 촉진하게 되리라는, 즉 사회주의의 도래를 촉진하게 되리라》는 허위적구실로 약탈적인 전쟁, 병란과 민족압박을 변호하였다.(본전집, 한문판, 제2권, 628페이지를 보라.)—제304, 630, 702, 894, 978페이지
- 158 아.엡.고리끼의 초기의 한 단편소설 《거만하여진 작가》를 가리킨다. —제305페이지
- 159 《우리 나라 경제발전형편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집을 가리킨다. 이 자료집은 1895년 4월에 합법적인채소에서 2,000부를 찍었다. 자료집에는 《합법적맑스주의자들》을 반대하기 위하여 테닌이 가.뎀린이라는 필명으로 쓴 논문 《인민주의의 경제내용 및 스트루웨씨의 저서(자산계급문헌에 있어서의 맑스주의의 반영)》에서의 그 비판》이 포괄되어있다. 《테닌전집》, 한문판, 제1권, 311~481페이지를 보라. —제306, 979페이지
- 160 《과거사》(《Былое》)(월간)는 력사잡지로서 1906년부터 1907년까지 페체르부르그에서 발간되었다. 1908년에 이 잡지는 《지나간 시대》라는 이름으로 발간되다가 짜리정부에 의하여 폐간되었다. 이 잡지는 1917년 7월에 페트로그라드에서 다시 발행되어 1926년까지 발행되었다. —제308페이지
- 161 《<로동자사업> 편집부를 위한 지침》을 가리킨다. 이것은 재외로씨야사회민주당의자동맹 및 이 동맹의 기관지인 잡지 《로동자사업》 편집부의 기회주의적결해를 폭로하는 자료및문헌집이다. 그것은 플레하노프가 서문을 쓰고 편찬하였는데 1900년에 제네바에서 로동해방단에 의하여 발간되었다. —제309페이지
- 162 《신앙의 선언》(《Profession de foi》)은 1899년에 끼예브위원회에서 작성한 페라이다. 이 페라는 끼예브위원회의 기회주의적결해를 보

- 여주고 있으며 내용에서는 많은 점에서 경제주의자들의 유명한 《신조》(《Credo》)와 일치되고 있다. 레닌은 논문 《〈Profession de foi〉에 관하여》에서 이 문헌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였다.)(《레닌전집》, 한문판, 제4권, 251~260페이지를 보라.)—제309페이지
- 163 **재외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동맹 제3차대회**는 1901년 9월 하반월에 쾰리히에서 진행되었다. 이 대회의 결의는 동맹에서 기회주의가 철저한 승리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있다. 대회는 1901년 6월에 열린 제네바회의에서 제정된 재외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조직의 원칙적협약초안에 대한 수정안 및 보충안을 채택하였는데 거기에는 기회주의적성격이 뚜렷이 드러나 있었다. 이것은 이 대회가 지난 며칠 후에 열린 재외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조직 《합동》대회의 실패를 미리 정해놓았다. 제3차 대회는 또 《〈로동자사업〉 편집부의 준칙》을 비준하였는데 이 준칙에는 국제사회민주운동 및 로씨야사회민주주의운동에서의 혁명적경향과 기회주의적경향과의 투쟁 그리고 수정주의를 비판할 필요성 및 맑스주의혁명의 본성을 천명할 필요성이 한마디도 제기되지 않았다. —제314페이지
- 164 1875년 5월 5일에 윌헬름 브라케에게 보낸 맑스의 편지(《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3페이지)를 보라. —제315페이지
- 165 **고타강령**이란 1875년에 고타에서 열린 아이제나흐파와 라팔파의 통합대회에서 채택된 독일사회주의로동당강령이다. 이 강령은 철두철미 기회주의적강령으로서 무산계급독재에 대하여서는 전혀 제기조차 하지 않았으며 농민들이 혁명에 참가할 가능성에 대하여 부인하였으며 로동자생산조합에 대한 국가의 부조를 사회주의에로 이행하는 방법으로 삼을것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모든 합법적수단으로 자유로운 인민국가를 진립할것을 요구하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두파가 기회주의적강령에 기초하여 통합되는것을 단호히 반대하였을뿐만아니라 고타강령에 섬멸적인 비판을 가하였다.)(《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권, 1~25페이지를 보라.) —제315페이지
- 166 레닌은 엥겔스의 저서 《독일의 농민전쟁》의 제2판 서문의 보충부분을 손수 발췌하여 번역인용하고 있다.)(《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300~302페이지를 보라.) —제319페이지

- 167 《로씨아의 옛일》(《Русская Старина》)은 주로 역사적문헌과 회상기 등을 게재하는 역사잡지로서 1870년부터 1918년까지 페체르부르그에서 월간으로 발간되었다. —제324, 706페이지
- 168 비정식회의는 1897년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페체르부르그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에는 페닌, 아.아.와네예브, 게.엠.크르지자눅스끼 및 페체르부르그로동계급해방투쟁동맹의 기타 성원, 즉 씨비리류형지로 출발하기전에 3일간 보석출옥한 《로년파》와 페닌이 체포된후 투쟁동맹을 명도한 《청년파》가 참석하였다. —제327페이지
- 169 《《일군》신문소형판》(《Листок <Работника>》)은 1896년부터 1899년까지 제네바에서 재의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동맹에 의하여 발간된 비정기적간행물이다. 모두 10호가 나왔다. 제1~8호는 로동해방단에서 책임지고 편집하였는데 후에 동맹의 대다수 성원들이 경제주의에로 넘어갔기때문에 로동해방단은 동맹을 위하여 출판물을 편집하는것을 거부하였다. 《《일군》신문소형판》 제9~10호(합간호)는 동맹에서 조직한 새로운 편집부에 의하여 발간되었다. —제327페이지
- 170 12월당원이란 짜리정부와 농노제를 반대하여 일으킨 1825년 12월 14일봉기에 의하여 명명된 로씨야의 귀족혁명자들이다.

12월당원은 세개의 비밀단체 즉 엔.엘.무라비요브가 지도하
는 북방협회, 페.이.페스켈리가 지도하는 남방협회 및 아.이.
포레쓰브와 페.이.포레쓰브 형제가 지도하는 슬라브인연합회 등
으로 구성되었다. 이런 단체들에는 모두 농노제의 폐지와 짜리전
제통치의 제한을 요구하는 자기의 강령이 있었다. 그러나 12월당
원들은 귀족의 국한성으로 하여 광범한 인민들의 봉기를 두려워
하였으며 군사적정변으로 자기들의 강령을 실현하려고 시도하였다.

12월당원들의 봉기는 짜리정부의 잔혹한 탄압을 당하여 몇백
명의 봉기자들이 체포되고 무라비요브, 페스켈리 등 저명한 12월
당원들이 교형을 당하였다. 페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혁명가들의 범위는 협소하다. 그들은 인민들로부터 아주 멀리 멀어
져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사업은 허사로 되지는 않았다. 12월당

- 원은 게르젠을 깨우쳐주었고 게르젠은 혁명적선동을 벌리었다。」
(본 선집, 한문판, 제2권, 422페이지를 보라.) —제327페이지
- 171 짜리경찰을 가리킨것이다. 그때 짜리경찰들은 쪽빛소매끝동의 제복을 입었다. —제328페이지
- 172 웨 . 웨 . 란 19세기 80~90년대의 자유주의적인민파의 사상가의 한 사람인 웨 . 웨 . 워몬조브의 필명이다. 케닌이 《로씨야사회민주당 내의 웨 . 웨.》라고 한것은 로씨야사회민주당내의 기회주의적사조의 대표자들—경제주의자들을 말하는것이다. —제329페이지
- 173 《신시대》(《Die Neue Zeit》)는 독일사회민주당의 리론잡지로서 1883년부터 1923년 가을까지 슈투트가르트에서 발간되었다. 1890년 10월전까지는 월간으로 발간되었으나 그후에는 주간으로 발간되었다. 잡지의 편집은 1883년부터 1917년 10월까지 카 . 카우프키였으며 1917년 10월부터 1923년 가을까지는 하 . 쿠노브였다. 1885~1894년사이에 엥겔스는 이 잡지에다 많은 론문을 발표하였으며 편집부를 도와 늘 많은 충고를 제기하였을뿐만아니라 또 맑스주의적견해에 대한 편집부의 배신적행위를 무시로 비판하였다. 엥겔스가 서거한후인 90년대 후반기로부터 이 잡지는 수정주의자들의 글을 체계적으로 실기 시작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이 잡지는 중간파적립장을 취하느라 하였으나 실상은 사회배외주의자들을 지지하여 나섰다. —제332, 654, 890, 902페이지
- 174 1901년 11월 2~6일사이에 진행된 오지리사회민주당 원내대회에서 낡은 하인펠드강령(1888년) 대신에 새 당강령을 채택하였다. 새 당강령은 1899년에 브룬대회에서 특별위원회에 위탁하여 작성한것이다. 새 당강령초안은 베른슈타인주의에 크게 양보한것으로 하여 비판을 많이 받았다. —제332페이지
- 175 진보당이란 1861년 6월에 건립된 프로씨야자산계급정당이다. 진보당은 프로씨야의 명도하에 독일을 통일하고 전 독일의회를 소집하며 중의원에 책임지는 강유력한 자유파내각을 세울것을 요구하였다. 진보당은 로동계급을 두려워하고 사회주의운동을 적대시하였으므로 절반전제적인 독일의 조건하에서 프로씨야옹케르(지주)의 통치를 용인하였다. 진보당의 정치적동요는 그 당이 의거하고있는

- 상업자산계급, 소공업가 및 부분적인 수공업자의 불안정성을 반영하고있다. —제335페이지
- 176 히르쉬-동케르식로동조합은 1868년에 독일의 자유주의적자산자 히르쉬와 동케르에 의하여 창건되었다. 이들은《계급적리해의 조화》를 설교하고 로동자들을 자산계급을 반대하는 혁명적계급투쟁으로부터 리탈하도록 유혹하고 공회운동의 임무를 호조기금회 및 문화교육단체를 조직하는 범위에 국한시켰다. —제336, 798페이지
- 177 《자기해방단》이란 로동계급자기해방단을 말한다. 이 조직은 경제파들의 한 자그마한 조직으로서 1898년 가을에 베제르부르그에서 조직되어 몇달동안 존재하였다. 이 조직은 자기들의 목적을 천명한 선언, 규약 및 로동자들에게 알리는 몇부의 페타 등을 발표하였다. —제338페이지
- 178 《전야》(《Накануне》)는 인민파의 잡지로서 1899년 1월부터 1902년 2월까지 런던에서 로어로 출판되었는데 모두 37호가 나왔다. 이 잡지는 자기의 주위에 각종 소자산계급정당의 대표자들을 집결시켰다. —제339페이지
- 179 잡지《서광》제1호(1901년 4월)에 나르저스 두뵈릴로브라는 필명으로 발표된 풍자시 《현대로써야사회주의자송가》를 말하는 것이다. 시는 자연발생적운동에 대한 경제주의자들의 순응을 조소하였다. 시의 저자는 마르토프였다. —제347, 1007페이지
- 180 분드 즉 리트와, 팔스카 및 로써야유태인로동자총동맹은 1897년에 건립되었는데 주로 서부로써야 각 성의 유태인수공업자들을 연합하고있었다. 1898년 3월 로써야사회민주로동당 제1차대회에서 분드는 로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하였다. 로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에서 분드파는 분드를 유태인무산계급의 유일한 대표자로 인정하여줄것을 요구하였다. 대회에서 분드의 조직상의 민족주의를 규탄한후 분드는 로써야사회민주로동당에서 탈퇴하였다.
- 1906년 제4차(합동)대회후 분드는 다시 로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하였다. 분드파는 출몰 멘쉐위크를 지지하고 불쉐위크를 반대하였다. 분드는 형식상으로는 로써야사회민주로동당에 가입하였으나 실상은 자산계급민족주의적성격을 띤 조직이었다.

분드는 볼셰위크의 민족자결권이라는 이 강령적요구와는 상반되는 민족적-문화적자치요구를 제기하였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분드파는 사회배외주의적립장을 취하였으며 1917년에는 반혁명적립시 정부를 지지하여 10월사회주의혁명의 적들편에 서있었다. 국내전쟁시기에 분드파의 저명한 성원들은 반혁명세력과 결탁하였고 보통성원들은 전변하기 시작하여 쾨베트정권과 합작할것을 주장하였다. 국내의 반혁명과 외국무장간섭자들에 대한 무산계급독재의 승리가 날로 가까와오자 분드는 더는 쾨베트정권을 반대하지 않을것을 성명하였다. 1921년 3월에 분드는 자체로 해산되었다. 그리하여 그 부분적성원들은 일반적인 원칙에 따라 로씨야공산당(볼셰위크)에 가입하였다. 볼셰위크당에 가입한 어떤 분드파성원들은 량면파로서 당을 내부로부터 파파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당에 가입하였다. 후에 그들은 인민의 원썩로서 적발되었다. —제358, 626페이지

- 181 **애스. 제이. 웹브와 캐. 웹브** 부부는 영국 소자산계급과 노동자귀족의 사상가이며 개량주의적인 페이비안협회의 주요한 지도자였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노동자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데 관한 개량주의사상을 실행하기 위하여 영국노동운동의 역사와 이론적인 저작을 많이 썼다. —제360, 950페이지
- 182 《자유》(《Свобода》)는 혁명적사회주의자유그루빠가 스위스에서 출판한 잡지로서 도합 2호가 출판되었는데 제1호는 1901년에, 제2호는 1902년에 출판되었다.

혁명적사회주의자유그루빠는 에. 오. 켈렌스끼(나제즈진)에 의하여 1901년 5월에 창설되었다. 레닌은 자유그루빠를 《아무런 도대도 갖추지 못했던 단체》, 그것들은 《전고하고 엄숙한 사상, 강령, 전술, 조직도 없었으며 대중속에 뿌리도 박고있지 못하였다.》고 귀결하여 말하였다.(《레닌전집》, 한문판, 제20권, 358페이지를 보라.) 자유그루빠는 《혁명전야》. 이론전술문제에 대한 비정기적 론평》 제1호, 《론평》 제1호 및 나제즈진의 강령적소책자 《로씨야 혁명주의의 재생》 등을 출판하였다. 자유그루빠의 이런 출판물들

은 레로주의와 경제주의 사상을 선전하였다. 자유그루빠는 1903년까지 존재하였다.

베닌은 《〈자유〉잡지를 평함》과 《〈자유〉그루빠에 대하여》라는 2편의 글에서 자유그루빠 및 그 출판물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베닌전집》, 한문판, 제5권, 278~279페이지와 제6권, 252~253페이지를 보라.)—제376페이지

183 맑스와 엥겔스의 《공산당선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285페이지)을 참조하라. —제387페이지

184 《이스크라》지 제7호(1901년 8월) 《로동운동질기 및 공장으로부터의 서한》란에 선진적로동자들에 대한 레닌적《이스크라》의 거대한 영향력을 증시한 한 방직공의 서한이 게재되었다.

필자는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많은 동무들에게 〈이스크라〉를 보여주었다. 그 신문은 몽땅 해어졌다. 그러나 그것은 귀중한 것이다. …거기에는 돈으로 값을 칠수 없으며 시간으로 계산할수 없는 우리의 문제가, 로씨야의 모든 문제가 서술되어있다. 그것을 읽으면 헌병과 경찰이 어찌서 우리 로동자들과 우리가 따라가는 지식인들을 무서워하는가를 알수 있다. 이들은 확실히 주인의 돈주머니에 대해서뿐아니라 짜리에게도, 경영주에게도, 모든자들에게 무서운 사람들이다. …로동자대중은 이제는 겁사리 불탈수 있다. 이미 모든것이 밑으로부터 몽근히 타고있다. 불꽃만 있으면 큰불이 일어날것이다. 한점의 불꽃으로부터 이글이글한 불길의 타오를것이라고 한 말은 얼마나 옳은 말인가! …이전에는 파업마다가 큰 사건이었지만 이제는 파업쯤은 보통사건이며 이제는 자유가 전취되어야 하며 그것도 가슴으로써 전취되어야 한다는것을 누구나 다 알고있다. 이제는 늙은이나 젊은이나 다 책을 읽으려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책이 없다. 나는 지난 공일날 11명을 모아 놓고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것인가?〉를 읽었다. 우리는 밤이 깊도록 헤어지지 않았다. 그 구절마다가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투철한가… 우리는 당신들의 이 〈이스크라〉에 어떻게 시작할것인가 하는것뿐만아니라 어떻게 살며 어떻게 죽을것인가 하는것도 가르쳐달라는 편지를 쓰고싶다.»—제394페이지

185 《로씨야》(《Россия》)는 1899년부터 1902년까지 뉘른베르크에서 발간된 온화한 자유주의적신문이다. —제401페이지

186 희랍로마신화에 의하면 프로메테우스는 우뢰의 신 쥬피터의 금지명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불씨를 훔쳐다가 인간세상에 주었다. 이에 노발대발한 쥬피터는 프로메테우스를 징벌하기 위하여 그를 암석에 못박아놓고 독수리더러 그의 간을 쪼아먹게 하였다.

고대희랍의 고전비극작가 에스킬로스(Æschylus)는 이 신화로 《쇠사슬에 얽매인 프로메테우스》라는 유명한 비극을 썼다. 작가는 국본에서 프로메테우스의 용감한 행동을 열정적으로 찬미하고 횡포한 쥬피터를 《쥬피터, 당신이 화를 내고있는것은 바로 당신자신이 옳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통책하였다. —제402페이지

187 《산크트 뉘른베르크시보》(《С.-Петербургские Ведомости》)는 1703년에 발간된 최초의 러시아의 신문 《시보》의 계속으로서 1728년부터 뉘른베르크에서 발간된 신문이다. 《산크트 뉘른베르크시보》는 1728년부터 1874년까지는 과학원에서 발간하다가 1875년부터는 국민교육부에서 발간하였다. 이 신문은 1917년말까지 발간되었다.

《로씨야시보》(《Русские Ведомости》)는 모스크바대학의 자유주의적교수 및 지방자치파들의 신문으로서 1863년에 모스크바에서 출판되었다. 이 신문은 자유주의적지주 및 자산계급의 이익을 반영하였다. 1905년부터는 우익혁명민주당의자들의 기관지로 되었다. 10월혁명이후 이 신문은 다른 반혁명적신문들과 함께 폐간되었다. —제403페이지

188 브렌타노적계급투쟁관은 엘. 브렌타노가 설교한 《무산계급의 비혁명적(계급)투쟁을 인정하는 자유주의적자산계급학설》(본 선집, 한문판, 제3권, 616페이지를 보라.) 다시말하면 브렌타노주의라고도 한다. 엘. 브렌타노는 독일자산계급경제학자이며 이른바 《국가사회주의》의 지지자이다. 그는 개량적인 방법, 자본가와 노동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통하여 자본주의범위내에서 사회평등을 실현할수 있다는것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였다. 브렌타노와 그의 추

- 종자들은 맑스주의 어구들을 방패로 로동운동을 자선계급의 이익에 복종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제403, 798, 894페이지
- 189 **자본과의 투쟁을 위한 로동자**를 넘두에 두고있다. 이것은 1899년 봄에 베제르부르그에서 조직되었는데 견해로 보아 경제주의에 가까운 작은 조직이다. 이 조직은 《우리의 강령》이라는 폐라를 등사하였었는데 그 폐라는 이 조직이 파괴당하였으므로 배포되지 못하였다. —제411페이지
- 190 **나르키소스**란 고대회랍의 신의 이름이다. 전설에 의하면 나르키소스는 자기의 아름다운 용모를 가지고 몹시 뽐내면서 자기와 사랑을 맺자고 하는 모든 녀신들을 거절하였다. 그러므로 에신 아프로디테가 그를 징벌하기 위하여 그더더 물속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사랑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눈이 빠지도복 물에 비친 그림자를 들여다보다가 나중에는 초췌해져서 죽었다 한다. 후에 와서 나르키소스란 이름은 오만하게 뽐내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로 쓰여졌다. —제414, 886페이지
- 191 **아파나씨 이와노위치**와 **뵈헤리야 이와노브나**는 고골리의 소설 《낡은 풍의 지주들》에 나오는 지주부부이다. —제426페이지
- 192 **토지자유파**는 토지및자유그루빠의 성원들이다. 토지및자유그루빠는 인민파의 조직으로서 1876년에 베제르부르그에서 창건되었다. 그 주요성원들로는 아. 데. 미하일로브, 게. 웨. 플레하노브, 에스. 엠. 크라브친스키, 오. 웨. 아프트크만 등이 있다. 토지자유파는 로씨야의 주요한 혁명력량은 로동계급이 아니라 농민이라고 그릇되게 인정하면서 농민에 의거하기만 하면 짜리정부를 뒤엎을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들은 짜리정부를 반대하도록 농민을 발동하기 위하여 농촌에 가서 선동사업을 진행하였다. 농민들은 그들의 선전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일부 성원들은 인민들의 참가가 없이 다만 자체의 힘으로써 암살수단에 의하여 짜리정부를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할것을 주장하였다. 이로하여 토지및자유파는 두파로 갈라졌다. 그중 한파는(아. 이. 젤랴보브를 위수로 한) 새로운 투쟁수단(테로수단)을 취할것을 주장하였으며 다른 한파는(게. 웨. 플레하노브를 위수로 한) 원래의

전술대로 할것을 주장하였다. 두파는 1879년에 인민의지당(주해 36을 보라.)과 토지재분배주의사로 분열되었다.

토지재분배주의자는 1879년에 토지및자유그루빠가 분열된후 건립된 토지재분배주의그루빠의 성원들이다. 토지재분배주의파는 데로정책을 실시하는것을 반대하고 이전의 토지및자유그루빠의 강령과 전술을 고수하였다. 후에 토지재분배주의파의 일부 저명한(게. 웨. 플레하노브, 베. 베. 악셀로드, 웨. 이. 자찰리치 등) 사람들은 인민파에서 탈퇴하여 로씨야의 첫번째 맑스주의단체—로동해방단(주해 35를 보라.)을 건립하였으며 다른 사람들은 인민의지당에 가담하였다. —제450, 602, 922페이지

- 195 소책자 《국제사회주의자대회에서의 로씨야사회민주당의운동에 관한 보고(1900년, 파리)》를 넘두에 두고있다. 이 보고는 《제의로씨야사회민주당의자동맹》의 위임에 의하여 《로동사업》잡지 편집부가 대회에 제출하였고 또 동맹에 의하여 1901년 제네바에서 단행본으로 출판되었다. 이 소책자에는 분드의 보고 《로씨야 및 폴스까에 있어서의 유대인로동운동사》도 망라되었다. —제461페이지
- 194 돈 끼호테는 세르반테스의 동명소설 《돈 끼호테》의 주인공으로서 허황하고 실제를 떠난 인물의 전형이다. —제461페이지
- 195 《남방로동자》(《Южный Рабочий》)지는 1900년 1월~1903년 4월기간에 남방로동자그루빠에 의하여 발간된 비합법적인 사회민주당의적신문으로서 도합 12호가 발간되었다. 이 신문은 주로 남부 로씨야사회민주당조직들에 전파되었다. 남방로동자그루빠는 《말로는 <이스크라>를 지도적인 기관지로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실지는 자체의 독특한 계획을 추구하였으며 원칙면에서는 동요성을 보였다》.(《페닌전집》, 한문판, 제7권, 195페이지를 보라.) 남방로동자사는 로씨야사회민주당 제2차대회가 소집될 때까지 존재하였는데 그후 그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멘셰위크로 되었다. —제468페이지
- 196 회람신화에 의하면 아우기아스왕에게는 3,000마리의 소를 키우는 큰 외양간이 있었는데 30년동안이나 외양간을 쳐내지 않았다고 한다. 후에 사람들은 제일 더러운곳을 《아우기아스의 외양간》이라

- 고 비유하였다. —제474페이지
- 197 이 주해는 테닌이 적들을 미혹시키기 위하여 단 것이다. 사실 여기서 모든 사실들이 실제적으로 발생한 그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다. —제478페이지
- 198 노동자문고를 발행할 때 관하여 페제르부르그로동계급해방투쟁동맹과 테닌이 한 1897년 여름의 답판을 넘두에 두고 있다. 이에 테닌은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두 소책자를 썼다. —제478페이지
- 199 테닌의 팔기하에 1901년 10월에 성립된 재외로씨야혁명적사회민주주의자동맹을 넘두에 두고 있다. 거기에는 《이스크라》—《서팜》잡지 조직의 국외부와 《사회민주주의자》조직(로동해방단도 망라하여) 등이 참가하였다. 동맹은 《이스크라》의 재외대표였다. 동맹은 《통보》와 소책자들을 출판하였는데 거기에는 테닌의 소책자 《농촌빈민들에게 고향》도 들어 있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는 동맹을 국외에 있는 당의 유일한 조직으로 비준하였으며 당규약에 규정된 위원회의 권리를 함수하게 하였다. 제2차대회후 동맹 내부에는 멘셰위크들이 기여들어 내부로부터 테닌을 반대하고 볼셰위크를 반대하였다. —제478, 599페이지
- 200 《로동자신문》복간문제에 관하여 1899년에 진행된 분드중앙위원회와 테닌과의 답판을 넘두에 두고 있다. 테닌은 복간하게 될 《로동자신문》 제3호를 위하여 본문에 있는 몇편의 문물들을 썼다. —제478페이지
- 201 1900년 봄에 재외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동맹과 분드가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를 소집하려고 시도한것을 넘두에 두고 있다.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위원회의...한 위원》이란 테닌과 답판하기 위하여 1900년 2월에 모스크바에 간 예카제리노슬라브사회민주로동당위원회 위원 이. 하. 탈라얀조를 말한다. —제479페이지
- 202 여기서 테닌은 로씨야의 저명한 혁명적민주주의자이며 문학평론가이며 유물론적철학자인 테. 이. 삐싸레브의 논문 《미숙한 사상의 실패》를 인용하고 있다. (《삐싸레브전집》, 1956년, 로문판, 제3권, 147, 148, 149 페이지를 보라.) —제496페이지

- 203 《〈로동사업〉별책부록》(《Листок <Рабочело Дела>》)은 《로동자사업》잡지의 비정기적인 별책부록이며 1900년 6월부터 1901년 7월까지 제네바에서 모두 8호가 출판되었다. —제496페이지
- 204 레닌은 맑스의 저서 《루이 보나파르트의 안개달18일》중의 다음과 같은 한 단락을 넘두에 두고 있다.

《해결은 어딘가에서 모든 세계사적인 대사건이나 대인물은 말하자면 두번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첨가하는 것을 잊었다. 즉 첫번에는 비극으로서, 둘째번에는 희극으로서 나타났다는 것을.》(《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603페이지를 보라.) —제497페이지

- 205 야니차르란 14세기 슬란토이기의 특권적보병인데 1826년에 폐지되었다. 야니차르들은 주인을 약탈하였으며 남달리 잔인하였다. 레닌은 자리경찰을 야니차르라고 불렀다. —제501페이지

- 206 레닌의 소책자 《농촌빈민들에게 고향》은 1903년 3월 상반월에 찍어졌다. 레닌은 이 소책자를 쓴 목적에 관하여 1903년 3월 15일에 플레하노프에게 보내는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나는 지금 우리의 토지강령에 관하여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속적인 소책자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농촌주민의 네 계층(지주, 농민자산계급, 중농 및 반부산자와 무산자)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농촌의 계급투쟁에 관한 우리의 견해를 해설하고 싶습니다.》(《레닌전집》, 한문판, 제34권, 144페이지를 보라.) 이 소책자는 1903년 5월 재외로씨야혁명적사회민주당의자동맹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출판되었다. 소책자에는 로씨야사회민주당강령초안의 원문 및 레닌이 강령초안에 쓴 서문이 첨부되었다. 레닌의 이 소책자는 아주 널리 배포되었다. 소책자는 국외로부터 비밀리에 로씨야에 들어왔으며 여러 도시들에 수송되어 거기로부터 다시 농촌으로 배포되었다.

1904년에 이 소책자는 로씨야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에 의하여 국외에서 재판되었으며 로씨야에서도 여러번 재판되었다. —제509페이지

207 《혁명적으로씨야》(《Революционная Россия》)지는 사회혁명당원들의 비합법적신문으로서 1900년말에 사회혁명자동맹에 의하여 로씨야에서 발간되었다. 이 신문은 사회혁명당 중앙기관지로서 1902년 1월부터 1905년 12월까지 제네바에서 발간되었다. —제527, 838페이지

208 사회혁명당은 로씨야의 소자산계급정당으로서 1902년초에 몇개의 각이한 인민파 단체와 소조들이 통합되어 이루어진것이다. 사회혁명당은 부농계급의 이익을 대표하였다. 사회혁명당원들의 견해는 인민주의와 수정주의가 절충된 혼합물이다. 사회혁명당원들은《인민주주의의 결합들을 맑스주의에 대한 유행식기회주의적<비판>의 조각저들로 미봉하려고 애쓴다.》고 레닌은 지적하였다.(《레닌전집》, 한문판, 제9권, 295페이지를 보라.)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사회혁명당원들은 사회배외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1917년, 2월 자산계급민주혁명후 사회혁명당원들은 멘셰위크, 립헌민주주의자들과 함께 반혁명립시정부의 주요골간으로 전락되었다. 사회혁명당원들은 지주토지소유를 폐절하려는 농민들의 요구를 지지하지 않고 지주의 토지소유권을 보존할것을 주장하였다.

1917년 12월, 사회혁명당원좌익들은 자립적좌익사회혁명당을 결성하였다. 좌익사회혁명당원들은 걸으로는 쏘베트정권을 승인하고 볼셰위크와 협의를 달성하였으나 인차 또 쏘베트정권을 반대하기 시작하였다.

외국의 무력간섭 및 내전기간에 사회혁명당원들은 수차 부농반란을 획책하고 공산당과 쏘베트국가의 령도자들을 암해하기 위한 반혁명적음모를 책동하였다. 내전이 끝난후 사회혁명당은 쏘베트국가를 반대하는 활동을 계속 감행하여오다가 나중에는 쏘베트정권에 의하여 분쇄되고말았다. —제544, 676, 827, 835, 863, 926, 969, 986페이지

209 규약증서란 1861년의 개혁에 의하여 농민을 《해방》할 때 지주들이 작성한 법령문이다. 규약증서에는 개혁전에 농민들이 부치던 토지의 면적이 기입되어있으며 《해방》시에 약탈당한 농민에게 남아있

던 부여지의 면적이 기입되어있다. 규약증서에는 또 농노적농민들이 지주를 위하여 종전에 지고있던 의무들도 날날이 털거되어있다. 규약증서에 근거하여 농민으로부터 받아낼 토지속매금의 액수가 결정되어있다. —제568페이지

- 210 저서 《1보전진, 2보후퇴(우리 당내의 위기)》는 당에 관한 학설을 전면적으로 서술하였고 무산계급혁명정당의 조직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조직문제에서의 멘셰위크의 기회주의를 분석하였으며 볼셰위크당의 조직적기초를 닦아놓았다.

레닌은 로씨야사회민주당 제2차대회의 회의록 및 결의문들과 대개 대표의 연설 및 대회에서 형성된 여러 정치파벌, 당중앙위원회 및 총위원회의 여러가지 문헌들을 수개월에 걸쳐 면밀히 연구한 끝에 이 저서를 썼다. 레닌의 이 저서는 멘셰위크들을 격노시켰다. 플레하노프는 중앙위원회가 레닌의 이 저서를 찬동하지 말것을 요구하였다. 중앙위원회내의 조화파들은 이 저서의 인쇄와 발행을 제지시키려고 시도하였다.

《1보전진, 2보후퇴》는 1904년 여름에 제네바에서 출판되어 로씨야의 선진적로동자들사이에 널리 보급되었다. 이 저서는 이미 모스크바, 베제르부르그, 리가, 짜라토프, 톨라, 오를, 우파, 베름, 프스트로마, 씨그라, 사블리(프웬성) 등지에서 체포하고 수색할 때 여러권이 발견되었다. 레닌은 이 저서를 1907년(표지에는 1908년)에 출판된 논문집 《12년간》 제1권에 수록하였다. —제598페이지

- 211 로씨야사회민주당 제2차대표대회는 1903년 7월 30일부터 8월 23일까지 진행되었다. 대표대회는 초기에 브뤼셀에서 13차 열렸다. 그후에는 경찰들의 박해로 하여 런던에 옮겨가서 열었다. 회의는 도합 37차 진행되었다. 대회의 일정에는 모두 20개 문제가 들어있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것은 당의 강령, 당의 조직(로씨야사회민주당규약비준), 당의 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 편점부의 선거문제였다. 대회에는 26개 조직을 대표하여 43명의 대표들이 참가하였으며 그들은 51표의 표결권을 가지었고(그중 8명의 대표는 제각기 표결권 2표씩 가졌다.) 14명의 대표들이

발언권을 가지였다.

대회는 레닌이 지도하는 《이스크라》에 의하여 준비되었다. 레닌은 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거대한 사업을 하였다.

이 대회의 주요한 임무는 《〈이스크라〉가 제기하고 작성한 원칙적 및 조직적 기초우에서 진정한 당을 창건하는데 있었다》. (《레닌전집》, 한문판, 제7권, 195페이지를 보라.) 로씨야에 혁명적 무산계급정당을 창건하기 위하여 진행한 레닌의 거대한 투쟁은 제2차대회에서 끝내 승리하였다.

제2차대회의 역사적의의는 바로 맑스, 엥겔스가 서거한후의 국제로동운동사에서 처음으로 무산계급독재를 전취하는것을 기본 임무로 한 혁명적강령을 채택한데 있다. 레닌은 무산계급독재의 승리를 전취하기 위한 임무를 제기하면서 농민혁명투쟁의 중대한 의의를 치중하여 지적하였다. 대회는 민족자결권을 당강령에 기입함으로써 무산계급국제주의원칙을 수호하였다.

제2차대회에서는 건당조직원칙을 둘러싸고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다. 레닌과 그의 전우들은 당의 역할에 대한 맑스주의기본원리를 수호하였다. 즉 당은 로동계급의 선진적이고 자각적이며 조직적인 부대로서 혁명적리론, 사회발전법칙과 계급투쟁법칙의 지식 및 혁명운동의 경험으로 무장되었다. 오직 이처럼 고도로 자각적이고 조직적이며 단결, 집중되고 통일적인 의지가 있는 당만이 로동계급을 인도하여 승리로 나아갈수 있으며 정권을 탈취할수 있다. 제2차대회에서 기회주의분자들과의 레닌의 비타협적투쟁은 중대한 국제적의의를 가진다.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2차대회의 의의에 대한 평가는 《쓰련공산당(볼셰위크) 역사간략독본》, 1954년, 인민출판사, 한문판, 55~56페이지를 보라. —제598, 986페이지

- 212 마닐로브는 코골리의 소설 《죽은 녀》에 나오는 지주로서 그는 다정다감하고 엉터리없는 환상에 사로잡힌 성격의 소유자이다. 마닐로브란 말은 엉뚱한 생각을 하며 놀고먹기를 좋아하며 아양을 떨며 허위와 위선을 일삼는자들에 대한 통용어로 쓰고있다. —제605페이지

- 213 1900년에 함부르크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한다. 이 사건은 《적공자유연합회》의 일부 성원들이 중앙연합회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파업중에 도급제로 일한것으로 하여 일어났다. 함부르크적공연합회 2 당지의 당조직에 연합회의 성원들인 일부 사회민주주의자들이 파업을 파피한 행위에 대하여 제기하였다. 독일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가 임명한 당의 중재재판은 《적공자유연합회》내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이런 행동을 결재하였으나 그들을 출당시킬때 대한 제의는 부결하였다. —제610페이지
- 214 대회에서 부결된 즈보롭스끼(프스찌치)의 결의안에 제기된 당규약 제1조 조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무릇 당강령을 인정하고 물질적으로 당을 도와줄뿐아니라 당의 어느 한 조직의 명도 하에서 언제나 당을 친히 협조하는 사람이면 이 조직에서는 모두 당원으로 인정할수 있다.》(《로씨야사회민주노동당 제2차대표대회 회의록》, 1959년, 로문판, 281페이지를 보라.)—제616페이지
- 215 《합법적맑스주의》의 대표자 페. 베. 스트루웨가 자산계급을 위하여 변호한 견해를 말한다. 베닌은 일찍 1894년 가을에 페체르부르크 맑스주의자소조에서 《자산계급문헌에서의 맑스주의의 반영》이라는 논문을 읽음으로써 스트루웨의 견해를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제630페이지
- 216 《이스크라》지에 발표된 마르토프의 논문 《우리는 과연 그렇게 준비할수 있는가?》를 말한다. 이 논문에서 마르토프는 무장봉기의 준비를 공상과 음모활동으로 보면서 전로씨야적무장봉기를 준비하는것을 반대하였다. —제634페이지
- 217 **오블로모브**는 로씨야작가 곤차로브의 장편소설 《오블로모브》에 나오는 주인공으로서 그는 라태하기 그지없고 변천을 겁나하며 진종일 환상속에 파묻혀 생활을 소극적으로 대하는 인간이다. 이 말은 일반적으로 인습의 잔재와 부가장적락후성을 비유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제645, 849페이지
- 218 **독일사회민주당 드레즈덴대회**는 1903년 9월 18일부터 20일 사이에 진행되었다. 드레즈덴대회는 페른슈타인, 부라운, 피케, 다비드 등 수정주의자들을 규탄은 하였으나 출당시키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기들의 기회주의적 견해를 거침없이 계속 선전하였다. — 제651페이지

219 《사회주의월간》(《*Sozialistische Monatshefte*》)은 독일사회민주당내 기회주의자들의 주요한 기관지인 동시에 국제기회주의자들의 기관간행물의 하나로서 1897년부터 1933년까지 베를린에서 발간되었다. 이 간행물은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사회배외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 제652페이지

220 프랑크푸르트신문(《*Frankfurter Zeitung*》)은 《프랑크푸르트 신문과 상보》(《*Frankfurter Zeitung und Handelsblatt*》)의 약칭이며 독일소자산계급민주파의 일간신문으로서 1856~1943년에 프랑크푸르트 암마인에서 발간되었다.(1866년부터 이 명칭을 썼다.) — 제657, 743페이지

221 레닌의 저서 《민주주의혁명에서의 사회민주당의 두가지 전술》은 민주주의혁명에서의 무산계급의 명도권에 관한 학설과 노동계급을 명도로 하는 노동동맹에 관한 학설 및 자산계급민주주의혁명을 사회주의혁명으로 전환시킬데 관한 학설을 완벽하게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혁명리론으로 맑스주의를 풍부히 하였으며 멘셰위크의 전술을 철저히 비판한 동시에 국제기회주의의 전술도 폭로하였다. 저서 《두가지 전술》은 볼셰위크당의 전술의 토대로 되었다.

이 저서는 레닌이 1905년 6~7월에 제네바에서 집필한것이다. 1905년 7월달에 로씨야사회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제네바에서 이 책을 출판하였다.

레닌의 저서 《민주주의혁명에서의 사회민주당의 두가지 전술》은 뉘른베르크, 모스크바, 카잔, 쾰른, 바우 등 전국의 여러 도시들에서 비밀리에 배포되었다. 1907년 2월에 뉘른베르크 출판사업관리위원회는 이 저서에 대하여 압수령을 내렸다. 같은 해 12월에 뉘른베르크고등법원은 이 저서의 발행을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

1907년에 레닌은 《두가지 전술》에 새로운 각주를 추가하여 문헌집 《12년간》에 수록하였다. 레닌이 《두가지 전술》을 집필하면서 준

비한 자료들—대강, 제강 및 비망록 등—은 《레닌론문집》, 문공판, 제5권, 315~320 페이지와 제16권, 151~156 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다.

《두가지 견술》이 가지는 역사적의의에 대해서는 《조선공산당 (불체위크) 역사간략두본》, 1954년, 인민출판사판, 84~98 페이지를 보라. —제675 페이지

- 222 《무산자》(《Пролетарий》)는 불체위크들의 비합법적주간신문이며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3차대회의 결정에 의하여 창간된 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이다. 1905년 5월 10일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결정에 의하여 레닌이 중앙기관지의 주필로 임명되었다.

《무산자》는 1905년 5월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제네바에서 발간되었는데 도합 26호가 발행되었다. 웨.웨.워릅스끼, 아.뵈.루나차르스끼 및 엠.에스.울딘스끼가 편집사업에 경성적으로 참가하였다. 《무산자》는 레닌적구《이스크라》의 로선을 계속 집행하였으며 불체위크의 신문《전진》지의 전통을 그대로 보전하였다. 《무산자》에 발표되었던 레닌의 문설들 가운데서 어떤 것들은 각지의 불체위크간행물에 전재되었으며 개별적책자로 출판되었다.

레닌이 귀국하려고 제네바를 떠나자 1905년 11월에 《무산자》의 발간은 중지되었다. 신문의 마지막 두호(제25호, 제26호)는 웨.웨.워릅스끼의 편집하에 발행되었다. —제675, 823, 847, 856 페이지

- 223 《해방》(《Освобождение》)은 자선계급자유주의자들의 격주간잡지로서 1902~1905년간에 페.베.스트루웨의 편집에 의하여 국외에서 출판되었다. 1904년 1월부터 자유주의적이며 군주주의적인 해방동맹의 기관간행물로 되었다. 후에 해방파는 톨린민주당의 핵심으로 되었다. —제677, 863 페이지

- 224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3차대표대회는 1905년 4월 25일~5월 10일에 런던에서 진행되었다. 대표대회는 레닌의 지도하에 불체위크들에 의하여 준비되고 소집되었다. 이 대표대회는 불체위크들의 첫 대표대회였다.

레닌이 작성하고 대회에서 채택된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제

3차대회의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다. 1. 조직위원회의 보고. 2. 전술문제 즉 (1) 무장봉기 (2) 변혁전야와 변혁시기에 있어서의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이 조항에는 아래와 같은 두가지 문제가 포함된다. (7) 변혁전야의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 (ㄴ) 임시혁명정부에 관하여) (3) 농민운동에 대한 태도. 3. 조직문제. (4) 당조직내에서의 노동자와 지식분자와의 관계. (5) 당규약. 4. 다른 정당과 파벌들에 대한 태도. (6) 로씨야사회민주당내에서 이미 분열되어나간 부분들에 대한 태도. (7) 각 민족의 사회민주주의적단체들에 대한 태도. (8)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태도. (9) 사회혁명당원들과의 실제적협정. 5. 당내부의 생활문제. (10) 선전과 선동. 6. 대표들의 보고. (11) 중앙위원회의 보고. (12) 지방위원회대표들의 보고. 7. 선거. (13) 선거. (14) 대회의 결의 및 회의록 발표절차와 책임자들의 취임절차.

레닌은 대회전에 벌써 제3차대회의 주요문제들에 대한 결의 초안을 작성하고 《전진》지에 발표한 문설들에서 그것들에 대하여 논술하였다. 레닌은 대회에서 무장봉기문제, 사회민주당의 임시혁명정부에의 참가문제, 농민운동에 대한 태도문제, 당규약 및 기타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연설하였다. 대회의 회의록에는 레닌의 138차의 연설과 제의가 기록되어있다.

대회는 당규약을 수정하고 당규약 제1조에 관한 (당원자격문제에 관한) 레닌의 조항을 채택하였으며 레닌을 수반으로 하는 통일된 령도기관인 당중앙위원회를 창설함으로써 본래 당내에 있던 두개 중심체제(중앙위원회와 중앙기관지)를 변경시켰으며 중앙위원회의 권리 및 그와 지방위원회들과의 관계를 정확히 확정하였다.

제3차대회의 사업과 의의에 관하여서는 레닌의 논문 《제3차대회》(《레닌전집》, 한문판, 제8권, 412~418페이지)와 《쓰련공산당(불셰위크) 역사간략독본》, 1954년, 인민출판사판, 80~84페이지를 보라. —제678, 986페이지

225 불리긴위원회는 짜리의 명령에 의하여 1905년 2월에 내부대신 아.게.볼퇴긴을 주석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위원회는 자문국회창

실에 관한 법령초안과 국회선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것들은 1905년 8월 6일(신력 19일) 짜리의 조서와 함께 발표되었다. —제680페이지

- 226 1905년 1월 9일에 정탐국의 간첩인 가쁜신부는 도발적목적으로 베제르부르그로동자들이 평화적인 대오를 조직하여 동궁에 들어가 짜리정부에 청원서를 바치도록 하였다. 이에 짜리는 적수공권인 로동자들에게 사격할것을 군대에 명령하였다. 짜리정부의 이런 포행은 전국로동자들의 거대한 반항을 불러일으켰다. 이리하여 1월 9일은 1905~1907년의 로씨야혁명의 출발점으로 되었다. —제694, 879, 929페이지

- 227 프랑크푸르트의회란 1848년 5월 18일에 전독일헌법제정을 목적으로 프랑크푸르트암마인에서 소집된 전독일국민의회를 가리킨다. 의회는 자유주의적자산계급의 대표들과 그에 붙어있는 자산계급지식인들의 다수로 이루어졌다. 대다수 자유주의자들의 비협성과 타협성 및 소자산계급파의 동요성과 불철저성으로 하여 의회는 진정으로 통일된 전독일적기구로 되지 못하였을뿐만아니라 실제적권력을 상실한, 균중을 혁명투쟁으로부터 이탈하도록 인도하는 순론쟁적인 구락부로 전락되었다. 1849년 여름에 의회는 활동을 중지하였다. —제695페이지

- 228 《국민대표회의와 우리의 전술》이란 논문은 그루지야멘체워크의 지도자 엔.쵸르다니아가 쓴것으로서 신문 《사회민주주의자》 1905년 4월 7일(신력 20일) 제1호에 실렸다. 이 논문에 대한 레닌의 비판은 이 책 제728페이지를 보라.

《사회민주주의자》(《Социал-Демократ》)는 엔.쵸르다니야의 지도하에 1905년 4월부터 11월까지 그루지야문으로 켄플리스에서 발간될 멘체워크들의 신문으로서 도합 6호가 발간되었다. —제697페이지

- 229 19세기 90년대와 20세기 첫 10년간의 지방자치자유주의운동의 지도자의 한사람인 데.엔.쉬보브의 《법원적》강명을 가리킨다. 그 강령의 실질은 《짜리가 하사한》 헌법으로써 짜리제도를 약간 제한하면서 그 제도를 그대로 보존하려는것이다. —제699페이지

230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19페이지를 참조하라. —제707페이지

231 《조국의 아들》(《Сын Отечества》)은 자유주의자들의 일간신문으로서 1856~1900년, 1904~1905년 기간에 베제르부르그에서 발행되었다. 해방파와 형형색색의 인민파가 이 신문에 기고하였다. 이 신문은 1905년 11월 28일부터 사회혁명당의 기관지로 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15일에 폐간되었다.

《우리의 생활》(《Наша Жизнь》)은 자유파의 일간신문으로서 며염며염 중단되곤 하면서 1904년 11월 19일부터 1906년 7월 24일까지 베제르부르그에서 발행되었다.

《현시대》(《Наши Дни》)는 자유주의자들의 일간신문으로서 1904년 12월 31일부터 1905년 2월 18일까지 베제르부르그에서 발행되었다. 1905년 12월 20일에 다시 발행되었으나 겨우 2호밖에 발행하지 못하였다.

《로씨야시보》에 관해서는 주해 188을 보라.

《해방》에 관해서는 주해 223을 보라. —제716페이지

232 갑숙에 든 사람은 체호프의 동명소설의 주인공으로서 낡은것을 고집하는 전형적인물이였다. —제718, 897, 932페이지

233 프란츠 메링이 편찬한 《칼 맑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및 페르디난드 라살의 유저》 1902년 슈투트가르트판에서 인용하였다. 이 인용문은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321페이지를 보라. —제725페이지

234 1905년 6월 19일에 니콜라이2세가 지방자치국대표단을 접견한것을 가리킨다. 이 대표단은 1905년 6월 6~7일에 모스크바에서 진행된 지방자치국과 시의회의 대표회의에서 귀족대표의 참가하에 선출되었다. 메닌은 《자산계급의 반역의 첫 몇걸음》과 《흰장갑을 낀 <혁명가들>》이라는 2편의 논문에서 갖은 수단을 다하여 인민들 몰래 짜리와 결탁한 자산계급의 이런 배신행위를 통책하였다. (《메닌선집》, 한문판, 제8권 486~492, 493~497페이지를 보라.) —제726페이지

235 스태로웨르(멘셰위크 아.엔.포트케초프의 가명)의 제의에 의해 로

- 짜야사회민주당 제2차대회에 제기되었고 토론을 거쳐 채택된 자유주의자들에 대한 결의를 말한다. 케닌은 논문《로동자민주주의와 자산계급민주주의》에서 이 결의를 비판하였다. (《케닌전집》, 한문판, 제8권, 53~62페이지를 보라.)—제727페이지
- 236 일로전쟁때 1905년 5월 27~28일에 쓰시마부근에서 있던 한차페의 해전을 말한다. 그 해전에서 로씨야함대는 격파당하였다. —제729페이지
- 237 의회광신병이란 맑스와 엥겔스가 사용하던 슬어로서 기회주의자들이 의회제도를 만능적인것으로 믿으며 의회투쟁을 유일한것으로, 또 어떠한 조건에서도 주요한 투쟁형태로 보는 기회주의자들을 가리켜 말한다. 엥겔스는 《의회광신병》은 불치의 병으로서 《이 병에 걸린 불행한 환자들은 마치도 전 세계, 그의 력사와 그의 미래가 영광스럽게도 자기들을 의원으로 가지게 된 바로 이 대의기관의 다수표에 의해서 좌우되고 결정된다고 장엄하게 확신하였다.》고 하였다.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578페이지를 보라.)—제732, 917, 976페이지
- 238 1895년 10월 6~12일 독일사회민주당 브레슬라브대회에서 토지강령초안을 토론할 때 있는 의견상이를 두고 말한다. 토지강령초안에는 엄중한 오류가 있었으며 특히 그속에는 무산계급정당을 《전인민적》당으로 전변시킬 경향까지 있었다. 기회주의자들의 예 배벨과 립크네히트도 이 강령을 옹호하였다. 토지강령은 일찍 쾨트진을 비롯한 많은 사회민주주의자들의 신랄한 비판을 받았다. 대회는 158표 대 63표의 다수표로 이 토지강령초안을 부결하였다. —제735페이지
- 239 케닌의 《이스크라》의 계획을 반대하여 출판물에 발표된 나제즈진(예. 오. 켈렌스키의 가명)의 언론을 가리킨다. 케닌은 일찍 1902년에 자기의 저서《무엇을 할것인가?》에서 이러한 언론을 비판하였다. (이 선집 473, 476, 481, 504페이지를 보라.)—제740페이지
- 240 볼셰위크의 《진진》지 제13호와 제14호에 발표된 케닌의 2편의 논문《사회민주당과 립시혁명정부》, 《무산계급 및 농민의 혁명적인

주주의독제》를 가리킨다. (《레닌전집》, 한문판, 제8권, 247~262, 263~273페이지를 보라.)—제750페이지

- 241 일찍 파리공문에 참가하였던 블랑끼주의자들이 1874년에 런던에서 발표한 선언 《공문성원들에게》라는 소책자(엥겔스의 논문집 《망명가 문헌》중의 제2편 《공문의 블랑끼주의자망명가들의 강령》을 보라.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권, 587~595페이지)를 가리킨다.

블랑끼주의자에 관하여서는 주해 65를 보라. —제752페이지

- 242 독일사회민주당의 **에르푸르트강령**은 1875년의 고타강령을 대신하는 것으로서 1891년 10월에 에르푸르트대표대회에서 채택되었다. 에르푸르트강령은 라살주의의 교조적인것을 없애버렸기때문에 고타강령보다 진보적인것이였다. 그러나 에르푸르트강령에는 주로 무산계급독재에 관한 원리를 제기하지 못했으며 군주제를 뒤엎고 민주공화국을 건립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지 못한 등의 엄중한 오유도 있다. 1891년 6월에 엥겔스는 이 강령의 초안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였다.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2권, 263~280페이지를 보라.)—제759페이지

- 243 이 비고는 레닌이 《민주주의혁명에서의 사회민주당의 두가지 전술》을 집필하는 과정에 쓴것이다. 레닌은 이 비고를 별지에 쓰고 거기에서 《제10장에 추가함》이라고 표기해놓았다. 그러나 이 저서의 초판에는 이 비고가 들어가지 못하고 1926년에야 《레닌문헌집》로문판 제5권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제760페이지

- 244 엥겔스의 논문 《미래의 이탈리아혁명과 사회당》(《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4권, 288~292페이지)을 보라.

이 논문은 엥겔스가 이탈리아로동사회당의 지도자들인 쿠리쵸와와 투라티의 요구에 의하여 쓴것이다. 쿠리쵸와와 투라티는 엥겔스에게 보내는 1894년 1월 19일부 편지에서 엥겔스에게 그당시 이탈리아국내에서 배태되고있던 혁명위기에 대하여 당의 전술문제를 말해줄것을 요구하였다. 이 논문은 엥겔스로부터 투라티에게 보내는 편지형식으로 1894년 2월 1일에 잡지 《사회평론》 제3호에 발표되었는데 편집부에서는 거기에서 《미래의 이탈리아혁명

- 파 사회당'이라는 제목을 달았다. —제760페이지
- 245 《무산자》지 제3호에 테닌의 논문 《림시혁명정부에 관하여》(제2권)(《테닌전집》, 한문판, 제8권, 430~449페이지를 보라.)가 발표되었는데 이 논문에서는 엥겔스의 논문 《활동중의 바쿠닌주의자들. 1873년 여름 에스파냐봉기에 관한 수기》(《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561~579페이지를 보라.)를 인용하였다. 엥겔스는 이 논문에서 바쿠닌주의자들의 결의를 비판하였다. —제768페이지
- 246 맑스의 저서 《〈해결법철학비판〉서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9페이지)을 참조하라. —제771페이지
- 247 《인도》(《L'Humanité》)지는 장 조레스가 1904년에 창간한 프랑스사회당기판지이다. 제1차세계대전기간에 이 신문은 프랑스사회당우익의 장악하에 사회배외주의적립장을 취하였다. 1920년 12월 대회에서 사회당이 분렬된 직후에 프랑스공산당이 성립되자 이 신문은 프랑스공산당의 기관지로 되었다. —제773페이지
- 248 루이-애제느 바를랭은 제본공출신으로서 프랑스로동운동과 제1국제당의 이름난 활동가이다. 그는 국민자위군 중앙위원회 위원과 1871년 파리공포의 위원으로 있었다. 1871년 5월 28일에 반혁명적인 베르사이유분자에게 피살당하였다. —제785페이지
- 249 보나파르트주의는 폭력과 기반에 의한 대자산계급의 통치형태의 일종으로서 18세기말 프랑스자산계급혁명이후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통치시기에 산생되었으며 나폴레옹3세통치시기에 더한층 발전되었다. 테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보나파르트주의라는 것은 자기의 총태의, 부가장적 또는 봉건적인 튼튼한 기둥을 상실한 군주주의가 취하지 않으면 안되는, 즉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으며 통치하기 위해서는 몰락을 일삼으며 빌붙기 위해서는 사람을 매수하며 총검이외의 수단으로라도 지탱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폐물들, 날도적들 및 사기군들과 친교를 맺는 그러한 우회적인 수단이다.》(《테닌전집》, 한문판, 제15권, 245페이지를 보라.) 보나파르트주의는 각국 자산계급들이 늘 사용하고있는 통치방법으로서 일정한 단계에서는 반혁명통치의 주요형식으로 되었다. —제787

페이지

- 250 1905년에 멘셰위크대표회의에서 채택된 조직에 관한 규약을 가리킨다. 케닌은 논문 《세걸음째의 후퇴》와 《소책자 <당의 분열에 관한 로동자들의 논술>에 대한 서문》에서 이 규약을 비판하였다. (《케닌전집》, 한문판, 제8권, 511~520페이지와 제9권 149~154페이지를 보라.)—제787페이지
- 251 맑스의 《1848년부터 1850년까지의 프랑스계급투쟁》(《맑스엔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474페이지)을 참조하라. —제790페이지
- 252 《러명》(《Рассвет》)지는 자유주의자들의 합법적신문으로서 1905년 3월 14일부터 12월 12일까지 뻬제르부르그에서 발행되었다. —제798페이지
- 253 엔겔스의 논문 《활동중의 바꾸닌주의자들. 1873년 여름 에스파냐 봉기에 관한 수기》(《맑스엔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561~579페이지를 보라.)의 로문역본은 케닌의 교열을 거쳐 1905년에 로씨야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에 의하여 제네바에서 단행본으로 발행되었으며 또 1906년에 뻬제르부르그에서 재판되었다.
- 맑스와 엔겔스의 《공산주의자동맹에 보내는 중앙위원회의 호 소문》(《맑스엔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381~392페이지를 보라.)은 1850년 3월에 집필되고 1906년에 로문으로 번역되어 뻬제르부르그 마치출판사에서 발행한 맑스의 소책자 《켈른공산주의자 공판의 진상》에 부록으로 수록되었다. —제801페이지
- 254 이 구절뒤로부터 《우리는 해방파가…것을 표시하였다》까지의 앞 몇단락(이 선집 제807~810페이지를 보라.)이 《민주주의혁명에서의 사회민주당의 두가지 전술》 초판에는 빠져있다. 이 원문은 1940년 4월 22일부 《프라우다》 제112호에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제807페이지
- 255 1848년 프랑스2월혁명을 가리킨다. 1848년 2월 24일에 프랑스인민들은 루이-필리프왕조를 뒤엎었다. —제807페이지
- 256 《맑스엔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353~404페이지를 보라. —제808페이지
- 257 맑스의 저서 《위기와 반혁명》(《맑스엔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 308페이지)을 보라. —제812페이지
- 258 《맑스엔겔스전집》, 한문판, 제5권, 45페이지를 보라. —제813페이지
- 259 같은 책, 46페이지를 보라. —제814페이지
- 260 같은 책, 14페이지를 보라. —제814페이지
- 261 1848년 3월 18일 베를린의 무산계급과 혁명적군중들은 봉기를 일으켜 프로쾨아반동정부의 군대와 시가보투전을 벌리었다. 프로쾨아자산계급민주혁명은 이날부터 시작되었다. —제814페이지
- 262 엔겔스의 《혁명에 관한 베를린의 토론》(《맑스엔겔스전집》, 한문판, 제5권, 72~73페이지)을 보라. —제815페이지
- 263 맑스의 《봉건적의무폐지법안》(《맑스엔겔스전집》, 한문판, 제5권, 331페이지)을 보라. —제817페이지
- 264 《켈른로동자동맹기관지》(《*Zeitung des Arbeiter-Vereins zu Köln*》)를 가리킨다. 이 기관지는 선후로 공산주의자동맹의 맹원인 아.곳살크와 이.몰의 편집하에 1848년 4월부터 10월까지 도합 40호가 발행되었다. 이 기관지는 켈른로동자동맹파 라인성의 기타로동자동맹의 활동정황을 소개하였다. 이 기관지가 폐간된 뒤 켈른로동자동맹은 1848년 10월 26일부터 《자유, 박애, 로동》이라는 명칭으로 새로운 기관지를 발행하였는데 웨.프린츠의 편집하에 매주 두번씩 발행되었다. 이 기관지는 이 이름으로 1849년 6월까지 도합 32호가 발행되었다. —제818페이지
- 265 1849년 5월 3~8일 기간에 드레즈덴에서 무장봉기가 발생하였다. 작센국왕이 제국헌법을 거절하고 악질적반동분자 쾨스끼를 수상으로 임명한것이 이번 봉기의 도화선으로 되었다. 자산계급과 소자산계급은 거개가 이 투쟁에 참가하지 않았으며 시가보투전에서 주요한 역할을 논것은 로동자와 수공업자들이었다. 봉기는 정부의 군대와 작센에 파견된 프로쾨아군대에 의하여 탄압되었다. 드레즈덴봉기는 제국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의 지반으로 되었다. 1849년 5~7월 기간에 독일 남부와 서부에서 발생된 이 투쟁은 민주주의력량의 실패로 결말을 지었다. —제821페이지
- 266 《동지》(《*Товарищ*》)는 1906년 3월부터 1908년 1월까지 페체르

- 부르그에서 발간된 일간신문이다. 이 신문은 형식상에서는 그 어느 당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았으나 실상은 좌익집권민주주의자들의 기관지였다. 멘셰위크도 이 신문의 사업에 참가하였다. —제822, 942, 984페이지
- 267 **에 . 이 . 레남**은 프랑스의 종교력사학자이며 관념론적철학가로서 초기의 기독교력사에 관한 저술에 의하여 명성을 날리었다. —제822페이지
- 268 **잉겔스의 《공산주의자동맹의 력사에 대하여》**(《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200~201페이지)를 보라. —제822페이지
- 269 **츄레스파파프**는 고골리의 희극 《검찰관》에 나오는 주요배역으로서 일링동맹 남을 속이는데 이골이 난 사람이다. 후에 와서 그의 이름은 거짓말쟁이와 허풍쟁이의 대명사로 되었다. —제822페이지
- 270 **《전진》(《Вперед》)**은 볼셰위크의 비합법적신문으로서 1905년 1월 4일부터 5월 18일까지 제네바에서 도합 18호가 발행되었다. 레닌은 이 신문의 조직자였으며 사상적 고무자 및 지도자였다. 쉐. 웨. 워롭스끼, 엠. 에스. 울딘스끼 및 아. 웨. 투나차르스끼도 편집부의 성원이었다.
- 로씨야사회민주당 제3차대회는 멘셰위크주의를 반대하며 당성을 회복하기 위한 투쟁에서와 혁명운동에 의하여 제시된 건설문제들을 제기하며 해명함에 있어서 《전진》지가 논 탁월한 역할을 할을 지적하는 특별결의를 채택하였다. —제823, 991페이지
- 271 1905년 8월 2일 《무산자》지 제10호에는 로씨야사회민주당 싸라프브위원회(라혈적립장을 취하고있던)가 당의 제3차대회와 멘셰위크대표회의에 관한 통지를 들은후 채택한 결의가 게재되었다. 《무산자》지는 이 결의를 레닌이 쓴 편집후기와 함께 발표하였다. (《레닌문헌집》, 로문판, 제16권, 130페이지를 보라.) —제823페이지
- 272 1905년 10월의 전로씨야정치파업을 가리킨다. 이 파업은 1905~1907년의 제1차로씨야혁명에서 무산계급혁명운동의 강대한 힘을 보여준 가장 중요한 사건의 하나이다. 파업은 먼저 모스크바—까잔철

- 도로부터 시작되어 재빨리 전로씨야적 대과업으로 발전하였다. 과업에는 200만 이상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가하였다. 10월과업의 구조는 전체제도를 타도하며 불퇴권국회를 건설히 보이프르하며 립헌회의를 소집하며 민주공화국을 세우자는 것이었다. 10월정치과업의 폭풍은 불퇴권국회를 없애버리고 무산계급을 12월무장봉기로 끌어갔다. 10월과업에 관해서는 케닌의 논문 《전로씨야정치과업》(《베닌전집》, 한문판, 제9권, 377~380페이지)을 참조하라. —제846페이지
- 273 《로동자대표소베트통보》(《Известия Совета Рабочих Де-пнятов》)는 베제르부르그로동자대표소베트의 공식적기관지로서 1905년 10월 30일부터 12월 27일까지 통보의 형식으로 발행되면서 소베트의 활동정황을 보도하였다. 이 통보는 고정된 편집부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모두 10호가 나왔으며 11호는 인쇄도중에 경찰에게 몰수당하였다. —제846페이지
- 274 크론슈타트해육군병사들의 봉기는 1905년 10월 26일(신력 11월 8일)에 시작되었다. 봉기자들은 일반적선거에 기초하여 립헌회의를 소집하며 민주공화제도를 건립하며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실시하며 해육군병사들의 처지를 개선할데 대한 요구를 내세웠다. 크론슈타트봉기는 10월 28일(신력 11월 10일)에 탄압되었다. —제853페이지
- 275 《로씨야》(《Русь》)는 자유주의적자산계급의 일간신문으로서 1903년 12월부터 1908년 6월까지 베제르부르그에서 비정기적으로 발행되었는데 《로씨야》, 《평론》, 《20세기》라는 몇가지 이름으로 발행되었다. —제853페이지
- 276 짜리 니콜라이1세가 1849년에 출병시켜 헝그리아혁명을 탄압한 것을 가리킨다. —제853페이지
- 277 고대로마사람들은 매달 초하루를 **삭일**이라고 불렀다. 회랍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명칭이 없었다. 회랍의 삭일 즉 초하루날까지 연기한다는것은 결코 실현하지 못한다는것, 일을 망친다는것을 의미한다. —제861페이지

- 278 《우리의 생활》지에 관해서는 주해 231을 보라. —제863페이지
- 279 급진적민주주의자는 1905년말부터 1906년초까지 존재하였던 소자산계급의 단체로서 혁명민주주의자들과 멘체위크들 사이에서 중간 입장을 취하고있었다. 급진적민주주의자들은 민주공화제의 실현을 요구하였지만 의회앞에 책임지는 내각이 존재하는 조건하에서 군주립헌제를 허용하였다. 토지문제에서 최소한의 보상에 의한 사적소유지의 정수를 주장하였다. 급진적민주주의자들의 단체는 얼마안가서 해산되었다. 그 단체의 성원들은 절반혁명민주주의자들의 기관지인 잡지 《무제》와 신문 《동지》의 편집사업에 참가하였다. —제863페이지
- 280 전투대련합위원회는 로씨야사회민주로동당 모스크바위원회의 전투대, 사회민주당 모스크바소조, 사회혁명당 모스크바위원회 및 《자유구역전투대》, 《대학전투대》, 《인쇄업전투대》, 《잡가즈전투대》라고 불리우는 전투대의 대표들로 구성되었다. —제868페이지
- 281 맑스의 《1848년부터 1850년까지의 프랑스계급투쟁》(《맑스엔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393페이지)을 참조하라. —제868페이지
- 282 페. 웨. 두바소브는 로씨야해군장장이다. 1905년 11월에 모스크바총독으로 있으면서 1905년의 모스크바12월무장봉기를 잔혹하게 진압하였다. —제868, 940페이지
- 283 엔. 엔. 밀라흐브는 로씨야의 장군이다. 1905년 2월부터 1906년 1월까지 모스크바군구 사령관으로 있으면서 1905년의 모스크바12월무장봉기를 잔혹하게 진압하였다. —제872페이지
- 284 엔겔스의 《독일에서의 혁명과 반혁명》(《맑스엔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585~586페이지)을 참조하라. 편속논문인 《독일에서의 혁명과 반혁명》은 1851년 10월 25일부터 1852년 10월 23일까지의 사이에 맑스의 서명으로 《뉴유 매일연단》에 발표되었다. 1913년에 맑스와 엔겔스의 왕복서한이 발표된후에야 이 저작은 엔겔스가 쓴것임을 알게 되었다. —제873페이지
- 285 엔겔스는 많은 저서들에서, 특히는 《반두링튼》에서 이 명제를 무차 전개하였던것이다. —제874페이지
- 286 맑스의 저서 《1848년부터 1850년까지의 프랑스계급투쟁》에 대한

앵겔스의 서문(《맑스앵겔스전집》, 한문판, 제22권, 591~612페이지)을 가리킨다. 이 서문은 1895년에 발표될 때 독일사회민주당의자들에 의하여 외박되었다. 그들은 이 서문을 무장봉기와 시가보투쟁투를 부인한것처럼 해석하였다.

이 문제에 대하여 레닌은 《로씨야혁명과 무산제급의 임무》에서 상세히 이야기하였다.(《레닌전집》, 한문판, 제10권, 119~120페이지를 보라.)—제874페이지

- 287 1905년 12월에 라트위야에서 발생한 사변을 가리킨다. 그때 봉기한 로동자, 고농 및 농민의 무장대오는 라트위야의 허다한 도시들, 페킨대 꾸꿈, 딸리쎬, 루엔, 프르드리흐슈타트 등을 점령하였으며 또 적령군대와 유격전을 하였다. —제875페이지
- 288 스웨아보르그봉기와 크론슈타트봉기를 두고 말한다.

스웨아보르그봉기는 1906년 7월 17일(신력 30일)에 자연발생적으로 폭발한것인데 후에 로씨야사회민주당 군사조직내의 당원인 아.에멜리아노브와 예.프한스끼에 의하여 지도되었다. 페제르부르그당위원회는 스웨아보르그의 정황과 무장봉기의 가능성에 관한 소식을 받은후 즉시 대표단을 스웨아보르그에 파견할때 관한 레닌이 작성한 결의(《레닌전집》, 한문판, 제11권, 114페이지를 보라.)를 채택하였다. 봉기는 3일동안 계속되었다. 7월 20일(신력 8월 2일)에 발적해함대의 포사격을 받은데서 봉기는 탄압당하고말았다.

크론슈타트봉기는 1906년 7월 19일(신력 8월 1일)에 스웨아보르그봉기의 영향하에서 폭발되었다. 이 봉기도 7월 20일(신력 8월 2일)에 진압당하였다. —제875페이지

- 289 《당내소식》(《Партийные Известия》)은 로씨야사회민주당 통일중앙위원회의 기관지로서 당의 제4차(통일)대표대회가 열리기 직전에 페제르부르그에서 비합법적으로 발행되었다. 1906년 2월 20일에 한호가 나오오 4월 2일에 한호가 나와 모두 2호가 발행되었다. 《당내소식》의 편집부는 불쉐위크신문(《무산자》)의 편집위원회와 멘쉐위크신문(신《이스크라》)의 편집위원회가 평등한 원칙에 의하여 구성한것이다. 레닌과 투나차트스끼 등이 불쉐위크를 대표하여 편집부에 들어갔다.

《당내소식》에는 《볼셰위크》라는 서명으로 레닌의 2편의 논문 《로씨야의 현정세와 노동자당의 전술》, 《로씨야혁명과 무산계급의 임무》가 게재되었다. (《레닌전집》, 한문판, 제10권, 89~95, 113~123페이지를 보라.) 대회가 있은후 《당내소식》은 폐간되었다. —제 889페이지

290 레닌의 논문 《로씨야사회민주당노동대회에 관한 보고(베제르 부르그로동자들에게 보내는 서한)》(《레닌전집》, 한문판, 제10권, 286~351페이지)를 가리킨다. —제889페이지

291 로씨야사회민주당 제4차(합동)대회를 두고 말한다. 이 대표 대회는 1906년 4월 23일~5월 8일기간에 스톡홀름에서 열렸다.

대회에는 57개 지방당조직을 대표하여 표결권을 가진 대표 112명과 발언권을 가진 대표 22명이 참가하였다. 그밖에도 대회에는 또 각 민족 사회민주당대표—폴스카 및 리트와 사회민주당, 분드 및 라트위야 사회민주당의 대표 각 3명, 우크라이나사회민주당과 핀란드노동당의 대표 각 1명, 또 벨가리아사회민주당의 대표—들이 참가하였다. 대회에 참가한 볼셰위크대표는 46명이었고 멘셰위크대표는 62명이었다. 대회에서는 주로 토지문제, 현정세와 무산계급의 계급적임무에 대한 평가문제, 국회에 대한 태도문제, 조직문제들이 심의되었다. 이 모든 문제들에서 볼셰위크와 멘셰위크간에는 치열한 투쟁이 벌어졌다. 레닌은 대회에서 토지문제, 현정세에 관한 문제, 국회선거에 대한 전술문제, 무장봉기 문제에 관하여 보고와 연설을 하였다.

보잘것없는것이기는 하였으나 대회에서의 멘셰위크의 우세는 대회의 모든 결의들의 성격을 결정하였다. 일련의 문제들에서 대회는 멘셰위크의 결의들(토지강령, 국회에 대한 태도문제 및 기타에 관하여)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레닌이 제기한 당원자격에 관한 당규약 제1조의 조항을 채택하였다. 대회는 폴스카 및 리트와의 사회민주당, 라트위야사회민주당과 같은 민족적사회민주주의 단체들을 로씨야사회민주당에 가입시키고 분드의 로씨야사회민주당가입문제를 미리 결정하였다.

대회에서 선거된 중앙위원회는 볼셰위크 3명, 멘셰위크 7명으

- 로 구성되었고 중앙기관지 편집부는 멘체위크들만으로 구성되었다.
- 대회의 사업에 대한 분석은 테닌의 논문 《로씨야사회민주당 당합동대회에 관한 보고》(《테닌전집》, 한문판, 제10권, 286~351페이지)와 쓰딸린의 《현정세와 노동당합동대회》(《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권, 231~253페이지)와 《제1권에 대한 저자의 서문》(《쓰딸린전집》, 한문판, 제1권, 7~10페이지)을 보라. —제889, 938, 970, 986페이지
- 292 1868년 7월 11일에 엘.쿠겔만에게 보낸 맑스의 서한(《맑스엔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68~370페이지를 보라.)을 가리킨다. —제891페이지
- 293 1866년 10월 9일 엘.쿠겔만에게 보낸 맑스의 서한(《맑스엔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61페이지)을 참조하라. —제892페이지
- 294 1868년 3월 6일 엘.쿠겔만에게 보낸 맑스의 서한(《맑스엔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65~366페이지)을 보라. —제892페이지
- 295 1868년 12월 5일 엘.쿠겔만에게 보낸 맑스의 서한(《맑스엔겔스선집》, 제32권)을 보라. —제892페이지
- 296 《맑스엔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500~597페이지를 보라. —제893페이지
- 297 맑스, 엔겔스의 논문 《국제평론(3)》(《맑스엔겔스선집》, 한문판, 제7권, 513~514페이지)과 맑스의 논문 《1848년부터 1849년까지의 프랑스계급투쟁》(《맑스엔겔스선집》, 한문판, 제1권, 488페이지)을 보라. —제893페이지
- 298 1866년 4월 6일 엘.쿠겔만에게 보낸 맑스의 서한(《맑스엔겔스선집》, 한문판, 제31권, 518페이지)을 보라. —제893페이지
- 299 1869년 3월 3일 엘.쿠겔만에게 보낸 맑스의 서한(《맑스엔겔스선집》, 한문판, 제32권)을 보라. —제894페이지
- 300 **쾨바르트주의**는 자유주의자산계급의 한 류파이다. 독일자산계급의 속물적경제학가 쾨.쾨바르트에 의하여 명명된것이다. 테닌은 일찍 쾨바르트는 《맑스의 용어를 사용하고 맑스의 개개의 주장들을 인용하고 맑스주의를 위조하면서 맑스주의를 브덴타노주의로 슬쩍 바꾸어놓았다.》(《테닌전집》, 한문판, 제10권, 231페이지를 보라.)고

- 썼다. —제894페이지
- 301 1870년 9월 6~9일에 맑스가 쓴 《프로씨아-프랑스전쟁에 관한 국제 로동자동맹총위원회 제2선언》(《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343~352페이지를 보라.)을 가리킨다. —제896, 953페이지
- 302 세드린의 풍자이야기 《명리한 모래무지》를 보라. 이 이야기는 조심성이 강하고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면서 투쟁을 회피하는 사람을 풍자하였다. —제897페이지
- 303 1871년 4월 12일에 엘.쿠겔만에게 보낸 맑스의 서한(《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93페이지)을 보라. —제897페이지
- 304 맑스의 《프랑스내전》(《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353~404페이지를 보라.)을 가리킨다. —제899페이지
- 305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93페이지를 보라. —제899페이지
- 306 1871년 4월 17일 엘.쿠겔만에게 보낸 맑스의 서한(《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394페이지)을 보라. —제900페이지
- 307 《현대생활》(《Современная Жизнь》)은 멘체위크의 잡지로서 1906년 4월부터 1907년 3월까지 모스크바에서 발행되었다.
- 《평론》은 1906년과 1907년에 베제르부르그에서 발행된 멘체위크의 논문집이다. 모두 3책이 발행되었다. —제903페이지
- 308 사회민주주의련맹은 영국의 사회주의적단체로서 1884년 8월에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각양각색의 사회주의자들, 주로는 지식인층의 사회주의자들로 결성되었다. 련맹은 기회주의적 및 종파주의적 정책을 실시하여온 하인드만을 위수로 하는 개량주의분자들에게 장기간 장악되어있었다. 련맹에 가입한 일부 혁명적맑스주의자들(이.맑스-아벨링, 에드워드 아벨링, 톰멘 및 기타)은 하인드만의 로선과는 반대로 대중적인 로동운동과의 밀접한 련계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벌리었다. 1884년 가을에 련맹은 분열되어 그 좌익은 독자적조직인 사회주의동맹을 건립하였다. 그후로부터 사회민주주의련맹내에서의 기회주의자들의 영향력은 강화되었다. 그러나 대중의 혁명적정서의 영향하에 련맹내부에는 의연히 기회주의적경도에 불만을 가지는 혁명분자들이 계속 생겨났다. 1907년에 로동운동이 양

- 양되는 조건하에서 런맹은 사회민주당으로 재조직되었으며 1911년에는 또 독립노동당의 좌익파 합병하여 영국사회당이라고 명명하였다. —제904, 971페이지
- 309 1886년 11월 29일에 에프.아.조르게에게 보낸 앵겔스의 서한(《맑스 앵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456페이지)을 보라. —제904페이지
- 310 《맑스앵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460~461페이지를 보라. —제904페이지
- 311 소위 《노동자대회》를 열자는 주장은 악셀로드가 제기하고 기타 멘셰위크들이 지지한것인데 그 목적은 이러한 대회를 리용하여 사회민주당의자, 사회혁명당원 및 무정부주의자들이 참가한 《광범한 노동자당》을 조직하여 로씨야사회민주당로동당을 대체하려는데 있었다. 로씨야사회민주당 제5차(런던)대회는 멘셰위크의 이러한 주장을 건결히 논박하고 이러한 주장을 선전하는것은 무산계급의 의식수준을 제고시키는데 해로운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노동자대회》에 대한 비판은 《레닌선집》, 한문판, 제11권, 229~239, 324~347페이지, 제12권, 300~303, 304~317페이지를 보라. —제905, 994페이지
- 312 《맑스앵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458~459페이지를 보라. —제905페이지
- 313 《맑스앵겔스선집》, 한문판, 제35권, 191페이지를 보라. —제905페이지
- 314 《맑스앵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457페이지를 보라. —제906페이지
- 315 《로동기사》는 《로동기사단》의 약칭이다. 이것은 1869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조직된 미국노동자조직으로서 1878년전까지는 비합법성을 띤 단체였다. 기사단은 주로 많은 흑인을 망라한 미숙련노동자들을 편합하였는데 로동조합과 호조조직을 건립하고 로동계급의 허다한 진출에 참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기사단의 지도자들은 사실상 노동자들이 정치투쟁에 참가하는것을 거절하였으며 계급합작을 주장하였다. 1886년에 기사단의 지도자들은 전국적파업을 반대하였으며 그의 성원들이 파업에 참가하는것을 금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사단의 일반성원들은 파업에 참가

- 하였다. 그후 기사단은 노동자대중속에서 자체의 영향력을 상실하였으며 90년대말에 가서는 와해되었다. —제906페이지
- 316 《미래》(*Die Zukunft*)는 독일사회민주당의 일부 당원들이 발행한 사회개량주의적잡지이다. 1877년 10월부터 1878년 11월까지 베를린에서 발행되었다. 이 잡지의 발행자로는 카. 헤이베르그였다. 맑스와 엥겔스는 당을 개량주의길로 끌고가려는 이 잡지의 시도를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제908페이지
- 317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4권, 417~418페이지를 보라. —제908페이지
- 318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4권, 389페이지를 보라. —제909페이지
- 319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4권, 400페이지를 참조하라.
본문에서 말하는 이 서한의 날자는 1879년 11월 14일이여야 한다. —제910페이지
- 320 《사회민주당의지》(*Der Sozialdemokrat*)는 독일사회주의노동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이며 사회주의자특별취체법이 효력을 발생하던 시기에 발행된 주간신문으로서 1879년 9월부터 1888년 9월까지 쾰리히에서 발행되었고 1888년 10월부터 1890년 9월 27일까지는 뮌헨에서 발행되었다. 맑스와 그리고 이 신문에 기고하고 있던 엥겔스는 모두 이 신문의 소유를 반대하였으며 이 신문이 당의 무산계급적로선을 관철하도록 도와주었다. —제910페이지
- 321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4권, 449페이지를 보라. —제910페이지
- 322 《사회과학및사회정치년지》(*Jahrbuch für Sozialwissenschaft und Sozialpolitik*)를 말한다. 그것은 카. 헤이베르그가 1879년부터 1881년까지 쾰리히에서 발행한 사회개량주의적잡지이다. 이 잡지는 모두 3호가 나왔다. —제911페이지
- 323 《맑스엥겔스선집》, 한문판, 제35권, 327~328페이지를 보라. —제911페이지
- 324 기선항행에 대한 수당금문제에서 생긴 독일제국국회 사회민주당대표단내의 의견장이를 두고 말한다. 1884년말에 독일수상 비스마르크

크는 독일의 식민지락탈정책을 위하여 동아세아, 오스트랄리아 및 아프리카에로의 해상항로개척을 위한 개인기업가들에 대한 수당금의 비준을 제국국회에 요구하였다. 이 문제는 국회 사회민주당대표단내에서 날카로운 의견장이를 일으켰다. 제국국회에서 아직 정식으로 토의하기전에 벌써 대표단에서 다수파를 이루는 우익은 기권회사들에 수당금을 줄것을 주장해나섰다. 1885년 3월에 제국국회에서 이 문제를 토의할 때 사회민주당대표단의 우익은 동아세아와 오스트랄리아의 해상항로의 개척에 찬성투표를 하고 아프리카항로와 기타 항로 개척에 대해서는 새 합선들이 반드시 독일조선소에서 제작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동의하겠다고 하였다. 제국국회는 이 건의를 부결하였다. 그리하여 대표단전체가 모든 수당금발급에 반대투표하였다.

앵겔스는 1884년 12월 31일에 에프.아.조르게에게 보내는 서한(《맑스앵겔스전집》, 한문판, 제36권을 보라.)에서 사회민주당대표단 우익의 기회주의적립장을 규탄하였다. —제911페이지

325 1885년 6월 3일에 에프.아.조르게에게 보낸 앵겔스의 서한(《맑스앵겔스전집》, 한문판, 제36권)을 보라. —제911페이지

326 1887년 3월 3일에 에프.아.조르게에게 보낸 앵겔스의 서한(《맑스앵겔스전집》, 한문판, 제36권)을 보라. —제912페이지

327 국제사회주의로동자대표대회와 가능파의 대표대회를 두고 말한다.

국제사회주의로동자대회 1889년 7월 14~20일기간에 파리에서 열리었는데 이 대회는 실제상 제2국제당의 성립대회였다. 대회직전에 맑스주의자들은 앵겔스의 직접적인 지도하에서 프랑스의 기회주의자(가능파) 및 영국사회민주당의동맹내의 그들의 추종자들과 완강한 투쟁을 벌리었다. 기회주의자들은 대회의 준비사업을 자기들이 틀어쥐려고 시도하였는데 그 목적은 대회의 평도적지위를 빼앗아가지고 맑스주의에 기초한 각 사회주의단체들과 로동자단체들의 새로운 국제적연합을 제지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회는 맑스주의당이 우세한 정황하에서 열리었다. 대회는 바스띠유감옥폭락 100주년이 되는 날인 1889년 7월 14일에 개막되였다. 대회에는 구라파와 아메리카의 20개 국가에서 온 393명의 대표가 참

- 가하였다. 가능파의 시도는 실패를 당하였다. 맑스주의적대회와 맞서기 위하여 그들은 1889년 7월 14일에 파리에서 따로 대회를 열었다. 가능파의 대회에는 소수의 외국대표들만이 참가하였는데 그나마 대다수 사람들의 대표자격은 위조한 것이었다. —제912페이지
- 328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7권, 128~129 페이지를 참조하라. —제912페이지
- 329 우와 같은 책 193 페이지를 보라. —제912페이지
- 330 논문 《1889년의 국제로동자대표대회. 신문 <정의>에 주는 답부》와 논문 《1889년의 국제로동자대표대회. 2. <사회민주주의동맹의 선언>에 주는 답부》(《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21권, 573~585, 591~612 페이지를 보라.)을 가리킨다. —제913페이지
- 331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7권, 222, 223 페이지를 보라. —제913페이지
- 332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7권, 241~243 페이지를 참조하라. —제913페이지
- 333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7권, 245 페이지를 보라. —제913페이지
- 334 1888년 5월 2일에 에프. 켈리-위슈네웨츠키부인에게 보낸 엥겔스의 서한(《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7권, 57 페이지)을 보라. —제914페이지
- 335 1893년 1월 18일에 에프. 아. 조르게에게 보낸 엥겔스의 서한(《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4권, 498 페이지)을 보라. —제915페이지
- 336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4권, 510~511 페이지를 보라. —제916페이지
- 337 1894년 12월 4일 에프. 아. 조르게에게 보낸 엥겔스의 서한(《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9권)을 보라. —제916페이지
- 338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4권, 391 페이지를 보라. —제917페이지
- 339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권, 21~22 페이지를 보라. —제918페이지
- 340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4권, 457 페이지를 보라. —제919페이지
- 341 데카르빌로동자파업은 바로 1886년 1월에 일어난 프랑스 데카르빌 시탄광로동자들의 파업을 말한다. 이 파업은 정부군대에 의하여

탄압되어왔다. 급진파들도 포함한 자산계급의원들은 정부를 지지하고 파업자들을 탄압하는것을 지지하였다. 그리하여 로동자의원들은 급진파에서 떨어져나와 의회내에서 독립적로동자대표단을 형성하였다. —제919페이지

342 1886년 4월 29일 에프. 아. 조르게에게 보낸 엥겔스의 서한(《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6권)을 보라. —제919페이지

343 케닌의 서문에서 다음부분, 즉 《1889년에 영국에서...개시되었다》라는 구절부터 그뒤의 일부분은 볼셰위크신문 《우리의 메아리》 1907년 4월 8일부 제13호에 다음과 같은 편집부의 글과 함께 게재되었다. 즉 《맑스와 엥겔스가 미국에서 살고있는 자기들의 벗이며 친구인 조르게와 교환한 서한들이 가까운 시일내에 때. 다우게 출판사에서 발행될것이다.

이 책의 출판이 대단히 가치있다는것을 고려하여 우리는 로씨야혁명에 대한 맑스와 엥겔스의 기대를 논한 본 저서 토론역본서문중의 한단락을 여기에 전재하려는바이다. 프랑스혁명의 의의 및 독일의 가능한 혁명에 관한 엥겔스의 특징적인 두론평으로부터 시작하자.》—제920페이지

344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4권, 468페이지를 보라. —제921페이지

345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8권, 181페이지를 보라. —제921페이지

346 1877~1878년의 로씨야-토이기전쟁을 말한다. —제922페이지

347 《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4권, 275페이지를 보라. —제922페이지

348 우와 같은 책, 453페이지를 보라. —제923페이지

349 엥겔스는 1885년 4월 23일 웨. 이자쉴리치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우리의 의견상이》 및 로씨야에 닥쳐오는 혁명의 성격에 대하여 썼다. —제923페이지

350 1887년 4월 6일과 4월 9일에 에프. 아. 조르게에게 보낸 엥겔스의 서한(《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6권)을 보라. —제923페이지

351 1887년 4월 23일 에프. 아. 조르게에게 보낸 엥겔스의 서한(《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6권)을 보라. —제924페이지

352 엥겔스의 저서 《독일의 제국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운동》중의 《공화국을 위하여 목숨바치라!》라는 장(《맑스엥겔스전집》, 한문판,

- 제7권, 190~235페이지를 보라.)을 가리킨다. —제924페이지
- 353 론문 《보이프트를 반대하여》는 1907년 7월말에 소책자 《제3차국회 보이프트에 관하여》에 게재되었다. 이 소책자는 페쉴트부르그에서 사회민주당의 비법적인 인쇄소에서 인쇄되었으나 그 표지에는 《모스크바, 1907년, 고리존트보인쇄소, 트웨르스까야 40호》라는 가짜 출판지점이 적혀있었다. 이 소책자는 1907년 9월에 몰수되었다. —제926페이지
- 354 1907년 7월 2~7일에 핀란드에서 열린 전로씨야교원연합회 제4차 대표대회를 가리킨다. 대회에는 2,000여명의 교원을 대표하여 82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다. —제926페이지
- 355 불리긴국회는 1905년에 짜리정부가 소집하기로 약속한 자문성 《대의기관》이다. 자문성국회를 건립할때 관한 법안과 국회선거조례는 내무대신 불리긴을 위수로 한 위원회에 의하여 작성되어 1905년 8월 6일(신력 19일)에 공포되었다. 불웨위크는 불리긴국회를 적극적으로 보이프트할것을 선포하였다. 《불리긴국회는 끝내 소집되지 못하였다. 그것은 소집도 되기전에 혁명의 회오리바람에 날려가고 말았다.》(《매닌전집》, 한문판, 제23권, 253페이지를 보라.) —제927, 996페이지
- 356 뫼테국회는 대신회의 주석 에스. 유. 뫼테가 작성한 조례에 따라 1906년 4월 27일(신력 5월 10일)에 소집된 제1차국회이다. 제1차국회의 선거법은 반민주주의적인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짜리는 곱신곱신 말을 잘 듣는 국회를 소집할수 없었다. 국회의 대다수 성원은 뫼텐민주주의자들이었는데 그들은 개혁에 대한(토지개혁도 포함) 허위적약속으로써 농민들의 신임을 얻으려고 시도하였다. 국회는 1906년 7월 8일(신력 21일)에 짜리정부에 의하여 해산되었다. —제931, 996페이지
- 357 앵겔스의 《망명가문헌》(《맑스앵겔스선집》, 한문판, 제2권, 593페이지)을 참조하라. —제934페이지
- 358 뵘르부스는 아. 엘. 겔폰드의 필명이다. 그는 로씨야의 망명가로서 일찍 90년대 말기에 독일사회민주당내에서 사업하였으며 이 당의 좌익에 참가하였다. 20세기초에는 로씨야에 돌아와 로씨야사회

- 민주로동당의 사업에 참가하였으며 후에는 멘체위크로 되었다. 그는 제1차세계대전기간에는 극단적인 사회배외주의자였다. —제937, 984페이지
- 359 중앙위원회의 격문 즉 《당조직들에 보내는 편지》 1호를 말한다. 로씨야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즉시 행동할것을 선포한것이 아니라 당조직들에 《파야흐로 발흥되고있는 군중운동을 지지하고 이 운동을 끝까지 진행하며 광범한 군중들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지지를 받을 자신이 있는곳에서는 즉시 운동을 발동하며 정황을 중앙위원회에 보고할것》을 호소하였다. —제947페이지
- 360 1869년 3월 3일에 엘. 쿠겔란에게 보낸 맑스의 서한(《맑스엔겔스전집》, 한문판, 제32권)을 참조하라. —제950페이지
- 361 《무산자》(《Пролетарий》)는 로씨야사회민주당 제4차(통일)대표대회이후 볼셰위크들이 창간한 비합법적신문이다. 1906년 9월 3일부터 1909년 12월 11일까지 레닌의 편집하에 발간되었다. 모두 50호가 발간되었다. 《무산자》는 로씨야사회민주당 모스크바위원회 및 베제트부르그위원회 기관지의 이름으로 발간되었으며 한 때는 모스크바주, 베름, 골스크, 까잔 위원회 기관지의 이름으로 발간되기도 하였다. 사실에 있어서 《무산자》는 볼셰위크중앙기관지였다. 《무산자》의 첫 20호는 핀란드에서 발간되었다. 1908년 2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이 신문은 제네바에서 발간되었고 1909년 1월 21일부터는 파리에서 발간되었다.
- 이 신문에는 레닌의 론문과 단평이 100여편이나 실렸다. 스톨리첸반동시기에 《무산자》는 볼셰위크조직을 보존하고 강화하는 면에서 탁월한 역할을 놀았다. 1910년 1월에 조직된 로씨야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프로쯔끼의 숨어있는 대리인이며 조직자인 용화파들은 수단을 꾸며 《무산자》를 폐간할데 관한 결의를 채택하였다. —제956페이지
- 362 《평등》(《Die Gleichheit》)은 독일사회민주당의 거주간인 동시에 독일녀성로동운동의 기관간행물로서 1890년부터 1925년까지 슈투트가르트에서 발행되었으며 1892년부터 1917년까지 클라라 제트킨이 편집하였다. —제967페이지

363 1886년 4월 29일에 에프. 아. 조르게에게 보낸 엥겔스의 서한(《맑스 엥겔스전집》, 한문판, 제36권)을 보라. —제968페이지

364 로씨야사회민주당 제5차대회는 1907년 5월 13일~6월 1일기간에 런던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표결권과 발언권을 가진 대표 도합 336명이 참석하였다. 그중 볼셰위크대표가 105명, 멘셰위크대표가 97명, 분드대표가 57명, 뿔스까사회민주당대표가 44명, 라트위야사회민주당대표가 29명, 《무파벌》대표가 4명이었다. 뿔스까대표와 라트위야대표가 볼셰위크를 지지하였기때문에 볼셰위크는 대회에서 충분한 다수를 차지하였다.

대회는 아래와 같은 문제들을 토의하였다. (1) 중앙위원회의 사업보고, (2) 국회대표단의 사업보고와 국회대표단의 조직, (3) 자산계급정당에 대한 태도, (4) 국회, (5) 《로동자대회》 및 비당적로동자조직, (6) 공회 및 당, (7) 유격활동, (8) 실업, 경제공황 및 동맹휴업, (9) 조직문제, (10) 슈투트가르트국제대표대회(5.1, 군국주의), (11) 군대내에서의 사업, (12) 기타. 자산계급정당에 대한 태도문제에 관한 테닌의 보고는 본 대표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 대회는 모든 원칙적인 문제에서 볼셰위크의 결의를 채택하였다. 대회에서는 중앙위원회가 선출되었는데 볼셰위크가 5명, 멘셰위크가 4명, 뿔스까사회민주당원이 2명, 라트위야사회민주당원이 1명이었다. 그리고 볼셰위크는 10명, 멘셰위크는 7명, 뿔스까사회민주당원은 3명, 라트위야사회민주당원은 2명이 중앙위원회 후보위원으로 선거되었다.

대회는 당내의 기회주의파별인 멘셰위크에 대한 볼셰위크의 승리로 끝났다. 로씨야사회민주당 제5차대회의 정황에 관해서는 테닌의 《자산계급정당에 대한 태도》(《테닌전집》, 한문판, 제12권, 476~496페이지)와 쓰달린의 《로씨야사회민주당 런던대표대회(한 대표의 수기)》(《쓰달린전집》, 한문판, 제2권, 49~75페이지)를 보라. —제970, 987페이지

365 다스나크쭈쭈(다스나크당원)은 아르메니아의 자산계급적민족주의 정당으로서 19세기 90년대초에 탄생되었다. 이 당은 아르메니아자산계급의 이익을 수호하였으며 민족간의 반목을 조성하고 아르메

니야민족의 폐문자수정제를 실시함으로써 아르메니아인민군중을 전국적인 혁명운동과 분리시키려고 극력 시도하였다.

1918~1920년기간에 다스나크당원들은 아르메니아의 자산계급 민족주의정부를 조종하여 아르메니아를 '영국-프랑스무제한섭자와 로씨야백파분자들이 쏘베트정권을 반대하는데의 거점으로 전락시켰다.

다스나크당정부는 1920년 11월에 붉은군대가 지지한 아르메니아근로인민의 무장봉기에 의해 무너졌다. —제971페이지

- 366 영국독립로동당은 1893년에 성립되었다. 이 당의 지도자는 카이로, 하디, 아. 맥도날드 등이었다. 케닌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독립로동당은 《시중 자산계급에 달라붙은 기회주의적정당으로서》《사회주의에 대해서만 <독립>적이고 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아주 큰 의외성을 가지고있다》.《케닌전집》, 한문판, 제29권, 450페이지, 제18권, 354페이지) 제1차세계대전기간인 1914년 8월 13일에 독립로동당은 전쟁을 반대하는 선언을 발표하였다. 그후 1915년 2월에 열린 협약국사회주의자 런던대표회의에서 독립당원들은 대표회의에서 채택된 사회배외주의적결의에 동의하였다. 그때로부터 독립당의 지도자들은 평화주의란 허울밑에 사회배외주의를 실시하였다. 1919년에 국제공산당이 성립된후 좌익당원군중들의 압력하에서 독립로동당의 지도자들은 제2국제당에서 탈퇴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1921년에 독립당원들은 소위 제2절반국제당에 참가하였으며 제2절반국제당이 해산된후에는 다시 제2국제당에 가입하였다. —제971페이지

- 367 종자출판사는 1907년부터 케닌의 문문집 《12년간》(3권집)을 출판하기 시작하였다. 출판하기로 예정하였던 3권중에서 제1권과 제2권의 제1책밖에 출판되지 못하였다. 제1권에는 케닌의 다음과 같은 저작들 즉 《인민주의의 경제내용 및 스트루웨씨의 저서에서의 그 비판》, 《로씨야사회민주주의자들의 임무》, 《지방자치국의 압박자들과 자유주의의 한니발들》, 《무엇을 할것인가?》, 《1보전전 2보후퇴》, 《지방자치파의 운동과 <이스크라>의 계획》 및 《민주주의혁명에서의 사회민주당의 두가지 전술》이 수록되었다. 제1권은 1907년

11월중순(표지에는 1908년이라고 적혔음)에 출판되었고 출판후 인차 압수되었으나 그 대부분은 보존되어 계속 비밀리에 산포되었다.

제2권에는 토지문제에 관한 저작들을 수록하기로 예정하였다. 본 논문집의 제2권은 채 출판되지 못하였다. 1908년초에 제2권의 제1책밖에 출판되지 못했는데 제1책에는 케닌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저작물인 《경제학상의 랑만주의의 특성을 논함》, 《1894~1895년도의 배품성의 수공업조사와 <수공>공업중의 일반적문제》 및 《토지문제와 <값스의 비판가들>》이 수록되었다. 제2권 제2책의 내용은 《1905~1907년 제1차로씨야혁명에서의 사회민주당의 토지강령》이었다. 케닌은 제1권의 제2책으로써 로씨야의 토지분배정황(1905년의 새로운 통계자료에 근거하여)과 토지지방공동소유에 관한 방대한 저서를 쓰려고 예정하였다.

그러나 제2권 제2책은 출판되지 못하였다.

제3권에는 볼셰위크의 기관지들(《이스크라》, 《결진》, 《무산자》, 《신생활》)에 실린 논쟁적인 문설들을 수록하기로 되어있었다. 반동파들의 박해로 하여 케닌은 제3권을 출판할수 없었다. — 제978페이지

368 논문집 《12년간》의 제3권을 가리킨다. 이 논문집은 경찰의 박해로 하여 출판되지 못하였다. — 제985페이지

369 《신생활》(《Новая Жизнь》)은 볼셰위크의 최초의 합법적인간신문으로서 1905년 11월 9일~12월 16일기간에 베체르부르그에서 발간되었다. 1905년 11월초에 케닌이 국의로부터 베체르부르그에 돌아온후 이 신문은 케닌의 직접적인 지도하에서 발간되었다. 《신생활》은 사실상 로씨야사회민주당의 중앙기관지였다. 이 신문에 경장적으로 기고한 사람들로는 웨. 웨. 워롭스끼, 엠. 에스. 올민스끼, 아. 웨. 루나차르스끼 등이었다. 아. 엠. 코리끼는 《신생활》의 사업에 적극 참가하였으며 물질적으로도 매우 큰 방조를 주었다. 이 신문은 매일 8만부가 발행되었다.

《신생활》은 여러차례 박해를 받았다. 27호중에서 15호가 압수 소각되었다. 제27호까지 년후 이 신문은 정부에 의해 폐간되었다.

- 마지막호인 제28호는 비합법적으로 발간되었다. —제988페이지
- 370 웨. 웨. 위를스키의 논문 《악선동의 결과》에 단 테닌의 각주(《테닌
전집》, 한문판, 제8권, 218페이지를 보라.)를 말한다. —제991페이지
- 371 《국회좌익집단집행위원회》의 전력을 제기한 볼셰위크의 구호를 가
리킨다. 이 구호를 제기한 목적은 국회에서의 노동자대표들의 노
립적인 계급로선의 관철을 보증하며 농민대표들의 활동에 대한 병
도를 보증하며 농민대표들이 럽헌민주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지 않
도록 보증하기 위한것이다. 멘셰위크는 이 구호를 반대하여 노동
자대표와 농민대표들이 럽헌민주주의자들을 지지하도록 하기 위한
《전국적반대파》를 조직할것을 제기하였다.

1906년 7월에 제1차국회가 해산된후 《좌익집행위원회》는 사실
상 사회민주당의 국회대표단을 중심으로 하여 조직되었다. 《좌익집
행위원회》의 창의를 근거하여 사회민주당국회대표단위원회와 로
동파위원회는 연합으로 《투해군에게 알리는 글》을 발표하였으며
전로씨야농민협회, 로씨야사회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 사회혁명당
중앙위원회, 전로씨야철로공회와 전로씨야교원연합회는 연합으로
《전국농민들에게 알리는 글》을 발표하였다. 이 두 문헌은 인민들
에게 정부를 반대하는 혁명투쟁을 진행할것을 호소하였으며 럽헌
회의의의 초점을 위한 구호를 제기하였다. —제996페이지

- 372 《1905~1907년 제1차로씨야혁명에서의 사회민주당의 토지강령》은
테닌이 1907년 11~12월사이에 쓴것이다. 이 저서는 원래 1908년
에 논문집 《12년간》 제2권, 제2책에 수록되었다. 그러나 이 책은
인쇄소에서 경찰들에게 몰수, 소각되었다. 단 한책이 보존되었는
데 그것도 마지막 몇페이지가 없는것이였다. 이 책은 1917년에 와서
야. 웨. 일리인(엔. 테닌)저 《1905~1907년 제1차로씨야혁명에서의
사회민주당의 토지강령》(페제르부르그생활, 지식출판사판)이라는
표제하에 처음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의 발문은 1917년에 《1905~1907년 제1차로씨야혁명에서
의 사회민주당의 토지강령》을 출판할 때 테닌이 쓴것이다. —제999
페이지

- 373 라주와예브와 플루뵈예브는 세드린의 소설 《몬테바피난소》에 나
오는 인물로서 로씨야신용자산계급의 두 전형이다. —제1001페이지

인명색인

Г

가뮌, 게오르기 아폴로노위치(加邦, 格奧爾基·阿波洛諾維奇 Гапон, Георгий Аполлонович 1870~1906년) —제721페이지

갈와니, 루이지(伽法尼, 魯伊治 Galvani, Luigi 1737~1798년) —제39페이지

골드블라트(哥里德勃拉特Гольдблат 1879~1923년) (본명은 그린베르그 울라지미르 다위도위치 格林別爾格, 弗拉基米爾·達維多維奇 Гринберг, Владимир Давидович) —제632페이지

구치코프, 알렉산드르 이와노위치(古契柯夫, 亞歷山大·伊萬諾維奇 Гучков, 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1862~1936년) —제847페이지

그레제스쿨, 니콜라이 안드레예위치(格烈迭斯庫爾, 尼古拉·安得列也維奇 Гредескул, Николай Андреевич 1864년에 출생) —제805페이지

기르케(吉爾克 Gierke) —제816페이지
게드, 쥘(蓋得, 茹爾 Guesde, Jules 1845~1922년) (본명은 바질, 마뎀

의 巴集爾, 馬蒂約 Basile, Mathieu) —제367, 975페이지

게르젠, 알렉산드르 이와노위치(赫爾岑, 亞歷山大·伊萬諾維奇 Герцен, 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1812~1870년) —제316페이지

게르젠슈타인, 미하일 야코블레위치(格爾岑施坦, 米哈伊爾·雅柯夫列維奇 Герценштейн, Михаил Яковлевич 1859~1906년) —제816페이지

괴레, 파울(覺勒, 保爾 Göhre, Paul 1864~1928년) —제651~652페이지

L

나르저스 루돌프르코(納爾蘇修斯·士波雷洛夫) —마르토프를 보라.

나제즈진, 엘.(納杰日丁, 尔·Надеждин, Л. 1877~1905년) (본명은 젤렌스키, 예브게니 오씨포위치 捷连斯基, 叶甫盖尼·奧西波維奇 Зеленский, Евгений Осипович) —제473, 476, 481~490, 497~502, 606, 740페이지

나폴레옹1세(나폴레옹 보나파르트) (拿破仑第一[拿破仑·波拿巴] Na-

po léon I, Napoléon Bonaparte 1769~1821년) —제45페이지

나이트, 로버트(奈特, 罗伯特 Knight, Robert) —제384~385페이지

니콜라이-온(尼古拉-逊) —다니엘손을 보라.

니콜라이2세(尼古拉二世 Николай II 1868—1918년) (르마노프, 니콜라이 알렉산드로비치 罗曼诺夫, 尼古拉·亚历山大罗维奇 Романов, 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제515, 726, 733, 807페이지

C

다니엘손, 니콜라이 프란체위치(丹尼尔逊, 尼古拉·费兰策维奇 Даниельсон, Николай Францевич 1844~1918년) (필명은 엔. —온 니. —온, 니콜라이-온 尼古拉-逊 Николай-он) —제183, 216~225, 240, 246, 842페이지

다비드, 에두아르트(大卫, 爱德华 David, Eduard 1863~1930년) —제302, 547페이지

다윈, 찰스 로버트(达尔文, 查理·罗伯特 Darwin, Charles Robert 1809~1882년) —제2, 12, 20페이지

두바초프, 포도르 와실리예위치(杜巴索夫, 费多尔·瓦西里也维奇 Дубасов, Федор Васильевич 1845~1912년) —제868, 871, 872, 940~941페이지

듀링, 오이겐 칼(杜林, 欧根·卡尔

Dühning, Eugen Karl 1833~1921년) —제40, 43, 46~50, 52, 53, 59, 65, 300, 892, 908페이지

디즈겐, 요제프(狄慈根, 约瑟夫 Dietzgen, Josef 1828~1888년) —제891, 902페이지

딜, 칼(迪尔, 卡尔 Diehl, Karl 1864~1943년) —제240, 243페이지

E

라드첸코, 스테판 이와노위치(拉德琴柯, 斯切潘·伊万诺维奇 Радченко, Степан Иванович 1868~1911년) (에르. 라·P.) —제981페이지

라브로프, 페트르 라브로위치(拉甫罗夫, 彼得·拉甫罗维奇 Лавров, Петр Лаврович 1823~1900년) —제143~145, 147~150, 451페이지

라파르그, 폴(拉法格, 保尔 Lafargue, Paul 1842~1911년) —제367, 915페이지

라살, 페르디난트(拉萨尔, 斐迪南 Lassalle, Ferdinand 1825~1864년) —제259, 289, 300, 335, 908페이지

라우, 칼 하인리히(劳, 卡尔·亨利希 Rau, Karl Heinrich 1792~1870년) —제243페이지

랑게, 프리드리히 알베르트(朗格, 弗里德里希·阿尔伯特 Lange, Friedrich Albert 1828~1875년) —제892페이지

로가초프, 드미트리 미하일로위치(罗加乔夫, 德米特利·米哈伊洛维奇 Rogachev, Дмитрий Михайлович 1851~1884년) —제457페이지

로드베르투스-야게조프, 요한 칼(洛贝尔图斯-亚格措夫, 约翰·卡尔 Rodbertus-Jagetzow, Johann Karl 1805~1875년) —제237~238, 241~242페이지

로자노프, 와실리 와실리예위치(罗扎诺夫, 瓦西里·瓦西里也维奇 Rozanov, Василий Васильевич 1856~1919년) —제157, 199페이지

로디체프, 표도르 이즈마일로위치(罗迪切夫, 费多尔·伊兹马伊洛维奇 Родичев, Федор Измайлович 1856년에 출생) —제797, 815, 816, 863, 942페이지

로제노프, 에밀(罗津诺夫, 艾米尔 Rosenow, Emil 1871~1904년) —제651페이지

루게, 아르놀트(卢格, 阿尔诺德 Ruge, Arnold 1802~1880년) —제38, 123페이지

루스벨트, 시어도(罗斯福, 西奥多 Roosevelt, Theodore 1858~1919년) —제969페이지

루소, 장 자크(卢梭, 让·雅克 Rousseau, Jean-Jacques 1712~1778년) —제52페이지

루소프(鲁索夫 Русов 1878~1911년)(본명은 크누난츠, 보그단 미르자차노위치 克努尼扬茨, 波格丹·米尔札占诺维奇 Кнуляци, Богдан

Мирзаджанович) —제627페이지
 룩셈부르크, 로자(卢森堡, 罗莎 Luxemburg, Rosa 1871~1919년)(필명은 유니우스 尤尼乌斯 Junius) —제975페이지

리베르(李伯尔 Либер 1880~1937년)(본명은 골드만, 미하일 이사코위치 戈德曼, 米哈伊尔·伊萨柯维奇 Гольдман, Михаил Исаакович) —제616, 619, 623, 625, 633페이지

리카도, 데이워드(李嘉图, 大卫 Ricardo, David 1772~1823년) —제228, 230, 892페이지

리팅하우젠, 모리츠(里廷豪森, 摩里茨 Rittinghausen, Moritz 1814~1890년) —제459페이지

림크네히트, 윌헬름(李卜克内西, 威廉 Liebknecht, Wilhelm 1826~1900년) —제104, 345, 384~385, 433, 909~910, 913페이지

레낭, 에르네스트 조제프(勒南, 厄内斯特·约瑟夫 Renan, Ernest Joseph 1823~1892년) —제822페이지

레오13세(利奥十三世 Leo XIII 1810~1903년) —제807페이지

렌스끼(连斯基 Ленский 1880~1950년)(본명은 위렌스끼, 페오니드 세메노위치 维连斯基, 列奥尼德·谢明诺维奇 Виленский, Леонид Семенович) —제627페이지



마누일로프, 알렉산드르 아폴로노위

- 치 (曼努伊洛夫, 亚历山大·阿波洛诺维奇 Мануилов, Александр Аполлонович 1861~1929년) — 제816페이지
- 마르토프, 엘. (马尔托夫, 尔·Мартов, Л. 1873~1923년) (본명은 제제르 바움, 율리 오씨포위치 策杰尔包姆, 尤利·奥西波维奇 Цедербаум, Юлий Осипович. 필명은 나르제스 투포필로프 纳尔苏修斯·土波雷洛夫 Нарцис Тупорылов) — 제347, 363, 595, 599, 600, 603, 606, 607, 609, 611, 613, 614~621, 623~628, 634, 636, 644, 649, 653, 659, 660, 667, 670, 671, 749, 892, 942, 961, 975, 1007페이지
- 마르티노프 (马丁诺夫 Мартынов 1865~1935년) (본명은 피게르, 알렉산드르 싸모일로위치 皮凯尔, 亚历山大·萨莫依洛维奇 Пикерь Александр Самойлович) — 제342~343, 251, 356, 360, 361~362, 364, 365~368, 372, 374, 377~378, 384~385, 389, 391, 396~397, 414, 418, 423, 473, 486, 495, 503, 506~507, 608, 614, 616~617, 631, 636, 659, 690, 694, 696, 704~705, 736, 746~747, 749, 754, 770, 772, 784~785, 801~803, 809~810, 811, 991, 994페이지
- 마슬로프, 로드르 파블로위치 (马斯洛夫, 彼得·巴甫洛维奇 Маслов,

- Петр Павлович 1867~1946년) — 제892, 1005, 1007페이지
- 마호프 (马霍夫 Махов 1871~1940년) (본명은 갈라파찌, 드미트리 파블로위치 卡拉法提, 德米特利·巴甫洛维奇 Калафати, Дмитрий Павлович) — 제662, 670페이지
- 마이에르, 로베르트 (迈耶尔, 罗伯特 Meyer, Robert 1855~1914년) — 제243페이지
- 마이에르, 지그문트 (迈尔, 济格蒙德 Mayer, Sigmund) — 제37페이지
- 말라호프, 니콜라이 니콜라에위치 (马拉霍夫, 尼古拉·尼古拉也维奇 Малахов, 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 1827년에 출생) — 제872페이지
- 말사스, 토마스 로버트 (马尔萨斯, 托马斯·罗伯特 Malthus, Thomas Robert 1766~1834년) — 제230페이지
- 맑스, 칼 (马克思, 卡尔 Marx, Karl 1818~1883년) — 제2~7, 9, 11~12, 14, 16~22, 24~25, 29~33, 37~54, 57~58, 62~65, 67~69, 72, 76~80, 98, 109~111, 117~120, 122~127, 195, 211~212, 215, 220~223, 225~230, 231, 233, 234, 236~241, 244, 246, 251, 260, 267~268, 289, 295, 315, 323, 332, 342, 384, 495, 594, 695, 535, 725, 752, 761, 771, 790, 801, 808, 811~814, 816~820, 822, 836, 841, 873, 890~900, 902~903, 905,

907~911, 914~922, 924, 933, 949
~950, 953, 966, 1006~1007페이지
탑스-에이블링, 엘리너(马克思-艾威
林, 爱琳娜 Marx-Aveling, Elea-
nor 1855~1898년)(투씨 杜西 Tu-
ssy) —제920페이지

모르간, 루이스 헨리(摩根, 路易
斯·亨利 Morgan, Lewis Henry
1818~1881년) —제20, 23페이지

모스트, 요한 요제프(莫斯特, 约翰·
约瑟夫 Most, Johann Joseph 1846
1906년) —제300, 345, 434, 908페
지

몰, 요제프(莫尔, 约瑟夫 Moll, Jo-
seph 1812~1849년) —제818페이지

미하일로브, 니콜라이 니콜라예위치
(米海洛夫, 尼古拉·尼古拉也维奇
Михайлов, Николай Николаевич
1870~1905년) —제 329페이지

미하일로브, 알렉산드르 드미트리예
위치(米海洛夫, 亚历山大·德米特
利也维奇 Михайлов, Александр
Дмитриевич 1855~1884년) —제
457페이지

미하일투스끼, 니콜라이 콘스탄찌노
위치(米海洛夫斯基, 尼古拉·康斯
坦丁诺维奇 Михайловский, Ни-
колай Константинович 1842~
1904년)(필명은 포스포론니 波斯
托龙尼 Посторонний) —제2~86,
109~111, 157, 175, 184, 199~
208, 347, 505, 978페이지

민스끼(明斯基 Минский 1885~1937
년)(본명은 윌렌킨 니콜라이 막씨
오위치 维连金, 尼古拉·马克西莫
维奇 Виленкин, Николай Мак-
симович) —제157페이지

밀, 존 스튜어트(穆勒, 约翰·斯图亚
特 Mill, John Stuart 1806~1873
년) —제 228, 230페이지

밀류코브, 파벨 니콜라예위치(米留可
夫, 巴维尔·尼古拉也维奇 Милю-
ков, Павел Николаевич 1859~
1943년) —제951페이지

밀레랑, 알렉상드르 에띠앵(米勒兰,
亚历山大·埃蒂耶纳 Millerand,
Alexandre Etienne 1859~1943년)
—제294, 295, 659, 784페이지

맨닝, 헨리 에드워드(曼宁, 亨利·爱
德华 Manning, Henry Edward
1808~1892년) —제920페이지

맨, 톰(曼, 汤姆 Mann, Tom 1856~
1941년) —제921페이지

메드웨제브(梅德维捷夫 Медведев
1866년에 출생)(본명은 니콜라예
브, 테오니드 울라지미로위치 尼古
拉也夫, 列奥尼德·费拉基米罗维奇
Николаев, Леонид Влади-
мирович) —제627페이지

메링, 프란츠(梅林, 弗兰茨 Mehring,
Franz 1846~1919년) —제345, 725
811~812, 818~820, 902, 907~
909, 911, 914페이지

메셰르스끼, 울라지미르 페트로위치
(美舍尔斯基, 弗拉基米尔·彼得罗

- 维奇 Мещерский, Владимир Петрович 1839~1914년) — 제394페이지
- 이스킨, 이폴리트 니끼저치(梅什金, 伊波利特·尼基提奇 Мышкин, Ипполит Никитич 1848~1885년) — 제415, 457, 609페이지
- 밀 페르게르, 아르투르(米尔柏格, 阿尔都尔 Mülberger, Arthur 1847~1907년) — 제300페이지

남

- 바쿠닌, 미하일 알렉산드로위치(巴枯宁, 米哈伊尔·亚历山大罗维奇 Бакунин, Михаил Александрович 1814~1876년) — 제287, 317, 923페이지
- 바우에르, 브루노(鲍威尔, 布鲁诺 Bauer, Bruno 1809~1882년) — 제122페이지
- 바우에르, 에드가르(鲍威尔, 埃德加尔 Bauer, Edgar 1820~1886년) — 122페이지
- 발호른, 요한(巴耳霍恩, 约翰 Ballhorn, Johann) — 제368페이지
- 번즈, 존(白恩士, 约翰 Burns, John 1858~1943년) — 제920페이지
- 보른, 스테판(波尔恩, 斯蒂凡 Born Stephan 1824~1898년) (본명은 부테르밀히, 시몬 布特米尔希, 西蒙 Buttermilch, Simon) — 제819~822페이지
- 보보퇴긴, 요즈프 드미트리예위치(博

- 博雷金, 彼得·德米特利也维奇 Боборыкин, Петр Дмитриевич 1836~1921년) — 제193페이지
- 부레닌, 빅토르 페트로위치(布勒宁, 维克多·彼得罗维奇 Буренин, Виктор Петрович 1841~1926년) — 제33, 65페이지

- 불가코프, 세르게이 니콜라예위치(布尔加柯夫, 谢尔盖·尼古拉也维奇 Булгаков,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1871~1944년) — 제223, 230~231, 233, 247, 312, 506, 892, 979페이지

- 불리긴, 알렉산드르 그리고리예위치(布里根, 亚历山大·格里哥里也维奇 Булыгин, Александр Григорьевич 1851~1919년) — 제724, 732페이지

- 브라케, 윌헬름(白拉克, 威廉 Bracke, Wilhelm 1842~1880년) — 제910페이지

- 브루케르(勃鲁克尔 Брукер 1877년에 출생) (본명은 마흐노베츠, 리지야 페트로브나 马赫诺韦茨, 莉迪娅·彼得罗夫娜 Махновец, Лидия Петровна) — 제614, 618, 626~627, 664페이지

- 브루즈, 폴(布鲁斯, 保尔 Brousse, Paul 1844~1912년) — 제913페이지

- 블랑, 루이(勃朗, 路易 Blanc, Louis 1811~1882년) — 제821페이지

- 블랑끼, 루이 오귀스트(布朗基, 路易·奥古斯特 Blanqui, Louis-August

ste 1805~1881년) — 제898페이지
 블로스, 윌헬름(布洛斯, 威廉 Bloss, Wilhelm 8149~1927년) — 제17, 37페이지
 비비코프, 로프르 알렉세예위치(比比科夫, 彼得·阿列克谢也维奇 Бибииков, Петр Алексеевич 1832~1875년) — 제226페이지
 비스마르크, 오토(俾斯麦, 奥托 Bismarck, Otto 1815~1898년) — 제253, 807, 923페이지
 벡-코(勃-夫) — 짜윈코프를 보라.
 베르자예프, 니콜라이 알렉산드로위치(别尔嘉也夫, 尼古拉·亚历山大罗维奇 Бердяев, 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1874~1948년) — 제506, 979페이지
 베른슈타인, 에두아르트(伯恩施坦, 爱德华 Bernstein, Eduard 1850~1932년) — 제237, 268, 294, 295, 301~302, 307, 311, 345, 360, 362, 633, 660, 783, 909~910, 912, 914, 968페이지
 베벨, 아우구스트(倍倍尔, 奥古斯特 Bebel, August 1840~1913년) — 제302, 367, 433, 448, 494, 734, 909~910, 912~913, 919, 921, 966, 970, 975페이지
 베크어, 요한 필리프(贝克尔, 约翰·菲力浦 Becker, Johann Philipp 1809~1886년) — 제902, 924페이지
 벨린스키, 위싸리온 그리고리예위치(别林斯基, 维萨里昂·格里哥里也维

奇 Белинский, Виссарион Григорьевич 1811~1848년) — 제316페이지
 벨토프, 엔.(别尔托夫, 恩·) — 폴레하노프를 보라.
 뷔히네르, 루드위히(毕希纳, 路德维希 Büchner, Ludwig 1824~1899년) — 제892페이지

人

샤페르, 칼(沙佩尔, 卡尔 Schapper, Karl 1812~1870년) — 제818페이지
 슈티르네르, 막스(施蒂纳, 麦克斯 Stirner, Max 1806~1856년) (본명은 슈미트, 카스파르 施米特, 卡斯巴尔 Schmidt, Kaspar) — 제287페이지
 슈제-게베르니츠, 게르하르트(舒尔采-格弗尼茨, 格尔哈特 Schulze-Gaevernitz, Gerhart 1864~1943년) — 제207페이지
 슈제-델리츠, 헤르만(舒尔采-德里奇, 海尔曼 Schulze-Delitzsch, Hermann 1808~1883년) — 제335페이지
 스미스, 에담(斯密, 亚当 Smith, Adam 1723~1790년) — 제173, 226~228, 239, 242, 244, 250페이지
 스크워르츠코프, 알렉산드르 이와노위치(斯克沃尔佐夫, 亚历山大·伊万诺维奇 Скворцов, Александр Иванович 1848~1914년) — 제83, 216, 233페이지

스트.(斯塔·)—스타르코브를 보라.
스트라호프(斯特拉霍夫 Страхов 1871~1925년) (본명은 마호파베브, 콘스탄틴 미하일로위치 塔赫塔列夫, 康斯坦丁·末海洛维奇 Тахтарев, Константин Михайлович) —제622페이지

스트루베, 요르트 베른가르도위치 (司徒卢威, 彼得·别隆加尔道维奇 Струве, Петр Бернгардович 1870~1944년) —제201, 208, 212, 223, 305, 335, 362, 499, 506, 677, 691, 718, 724, 734~744, 745, 770~773, 796, 797, 804~809, 951, 978, 979, 982, 997~998페이지
스펜서, 허버트(斯宾塞, 赫伯特 Spencer, Herbert 1820~1903년) 제6페이지

스갈진(斯卡尔金 Скалдин 1828~1902년) (본명은 엘레네브, 요도르 파블로위치 叶列涅夫, 费多尔·巴甫洛维奇 Еленев, Федор Павлович) —제159~174, 179~180페이지
스타로웨이(斯塔罗维尔)—로트레소브를 보라

스타르코브, 와셀리 와셀리에위치(斯塔尔柯夫, 瓦西里·瓦西里也维奇 Старков, Василий Васильевич 1869~1925년) (스트. 斯塔·Ст.) —제981페이지

스타쉴레위치, 미하일 마트위에위치 (斯塔修列维奇, 米哈伊尔·马特维也维奇 Стасюлевич, Михаил Мат-

вевич 1826~1911년)—제172페이지
스톨피인, 요르트 아르카지예위치 (斯托雷平, 彼得·阿尔卡季也维奇 Столыпин, Петр Аркадьевич 1862~1911년)—제212, 940~941, 951페이지

스제부르, 이완 알렉산드로위치(斯捷布特, 伊万·亚历山大罗维奇 Ст-бут, Иван Александрович 1833~1923년) —제216페이지

시너, 내쉴 윌리엄(西尼耳, 纳骚·威廉 Senior, Nassau William 1790~1864년)—제235페이지

실천가(实际工作者 Практик 1876년에 출생) (본명은 마카유브, 마르크 싸울로위치 马尔克·萨乌洛维奇 Макадзюб. Марк Саулович) —제641, 643페이지

쉬람, 칼 아우구스트(施拉姆, 卡尔·奥古斯特 Schramm, Karl August) —제345, 909, 911페이지

쉬미트, 요르트 페트로위치(施米特, 彼得·彼得罗维奇 Шмидт, Петр Петрович 1867~1906년)—제853페이지

쉬펠, 막스(席佩耳, 麦克斯 Schi-ppel, Max 1859~1928년)—제912페이지

쉬와이제르, 요한 바티스트(施韦泽, 约翰·巴普提斯特 Schweitzer, Johann Baptist 1833~1875년)—제345페이지

쉬웨린, 막시밀리안(施韦林, 马克西

米利安 Schwerin, Maximilian
1804~1872년) — 제815페이지

ㄨ

자솔리치, 웨라 이와노브나(查苏利奇,
维拉·伊万诺夫娜 Засулич, Ве-
ра Ивановна 1849~1919년) (필
명은 이와노브, 웨. 伊万诺夫, 维·
Иванов, В.) — 제125, 193, 453,
657, 923페이지

조르게, 프리드리히 아돌프(左尔格, 弗
里德里希·阿道夫 Sorge, Friedrich
Adolph 1828~1906년) — 제903,
905, 909~911, 967페이지

쾨바르트, 웨르네르(桑巴特, 威纳
尔 Sombart, Werner 1863~1941
년) — 제950페이지

쥘레스, 장(饶勒斯, 让 Jaurés, Jean
1859~1914년) — 제655, 659, 773페이지

조지, 헨리(乔治, 亨利 George,
Henry 1839~1897년) — 제904~
905페이지

주바토프, 세르게이 와실리에위치(祖
巴托夫, 谢尔盖·瓦西里也维奇 Зу-
батов, Сергей Васильевич 1864
~1917년) — 제307, 335, 425~427
페이지

쥬프스키, 율리·갈락시오노위치(茹
柯夫斯基, 尤利·加拉克提昂诺维奇
Жуковский, Юлий Галактионо
вич 1822~1907년) — 제4, 48, 54페
지

지페르, 니콜라이 이와노위치(季别

尔, 尼古拉·伊万诺维奇 Зибер,
Николай Иванович 1844~1888
년) — 제230페이지

진데르만, 칼(曾德耳曼, 卡尔 Sin-
dermann, Carl 1869년에 출생) —
제658페이지

젤라보프, 안드레이 이와노위치(热
里雅鲍夫, 安得列依·伊万诺维奇
Желябов, Андрей Иванович
1850~1881년) — 제415, 457, 494,
609페이지

ㄷ

찰피온, 헨리 하이드(奏平, 亨利·海
德 Champion, Henry Hyde 1859
~1928년) — 제920페이지

찰머스, 토마스(查默斯 托马斯 Chal-
mers, Thomas 1780~1847년) 제
230페이지

체르니шев스키, 니콜라이 가브릴로위
치(车尔尼雪夫斯基, 尼古拉·加甫
利洛维奇 Чернышевский, Нико-
лай Гаврилович 1828~1889년) —
제316페이지

체베와닌, 엔. (切列万宁, 恩·Че-
реванин, Н. 1868~1938년) (본
명은 리프킨, 포도르 안드레예위
치 利普金, 费多尔·安得列也维奇
Липкин, Федор Андреевич) —
제994페이지

ㄱ

카니츠, 아우구스트(卡尼茨, 奥古斯

- 특 Kanitz, August 1783~1852년)
—제815페이지
- 카우츠키, 칼 (考茨基, 카를 Kautsky, Karl 1854~1938년)—제3, 31, 37, 332~333, 368, 459, 595, 617, 654~659, 734, 874, 878, 888, 968, 972, 994, 1007페이지
- 캄프하우젠, 루돌프 (康普豪森, 卢道夫 Camphausen, Ludolf 1803~1890년)—제812, 814페이지
- 쿠겔만, 루드위히 (库格曼, 路德维希 Kugelman, Ludwig 1830~1902년)—제890~901, 903, 950페이지
- 크리첸스키, 보리스 나우모위치 (克里切夫斯基, 波利斯·纳乌莫维奇 Кричевский, Борис Наумович 1866~1919년)—제295~301, 342, 347, 364, 385, 414, 423, 451, 466, 473, 486, 495, 506, 507, 637, 640, 659, 735페이지
- 크리렌코, 세르게이 니콜라이에위치 (克利文柯, 谢尔盖·尼古拉也维奇 Кривенко,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1847~1906년)—제1페이지
- 클라손, 로베르트 에두아르도위치 (克拉桑, 罗伯特·埃杜阿尔多维奇 Классон, Роберт Эдуардович 1868~1926년)(라.克·K.)—제981페이지
- 클로프슈토크, 프리드리히 고틀리브 (克洛普么托克, 弗里德里希·哥特利勃 Klopstock, Friedrich Gottlieb 1724~1803년)—제3페이지

키르히만, 율리우스 헤르만 폰 (基尔希曼, 尤利乌斯·赫尔曼·冯 Kirchmann, Julius Hermann von 1802~1884년)—제243페이지

켈리-위슈네펜츠키부인, 플로렌스 (凯利-威士涅威茨基夫人, 弗洛伦斯 Kelley-Wischnewetzky, Florence 1859~1932년)—제905페이지

三

투라티, 필리프 (屠拉梯, 菲力浦 Turati, Filippo 1857~1932년)—제747, 760페이지

투쨌(杜西)—압스-에이블링을 보라.
트라이취케, 하인리히 폰 (特赖奇克, 亨利希·冯 Treitschke, Heinrich von 1834~1896년)—제933페이지

트라윈스키(特拉文斯基 Травинский 1872~1959년) (본명은 크르지자누스키, 글레브 막시밀리아노위치 克日札诺夫斯基, 格列勃·马克西米利安诺维奇 Кржижановский, Глеб Максимилианович)—제667페이지

트루베츠크이, 세르게이 니콜라이에위치 (特鲁别茨科伊, 谢尔盖·尼古拉也维奇 Трубецкой,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1862~1905년)—제797, 816페이지

트카초프, 보르도 니키허치 (特卡乔夫, 波得·尼基提奇 Ткачев, Петр Никитич 1844~1885년)—제497페이지

뒤넨, 요한 하인리히(杜能, 约翰·亨利希 Thünen, Johann Heinrich 1783 ~1850년)—제892페이지

II

포르카드, 외젠느(福尔卡德, 欧仁 Forcade, Eugène 1820~1869년)—제241페이지

포민(佛敏 Фомин 1873~1933년)(본명은 크로흐말, 빅토르 니콜라예위치 克罗赫马尔, 维克多·尼古拉也维奇 Крохмаль, Виктор Николаевич)—제667페이지

포프, 아델라이드(波普, 阿德尔海德 Popp, Adelheid 1869~1939년)—제973페이지

포이에르바흐, 루드위히(费尔巴哈, 路德维希 Feuerbach, Ludwig 1804 ~1872년)—제706페이지

폰티우스 필라투스(本丢·彼拉多 Pontius Pilatus 약 기원 37년에 죽었음)—제227페이지

풀마르, 게오르그 하인리히 폰(福尔马尔, 格奥尔格·亨利希·冯·Vollmar, Georg Heinrich von 1850 ~1922년)—제295, 659, 660, 910, 915~916, 968, 975페이지

푸리에, 샤를(傅立叶, 沙尔 Fourier, Charles 1772~1837년)—제318페이지

프로코프위치, 세르게이 니콜라예위치(普罗柯波维奇, 谢尔盖·尼古拉也维奇 Прокопович,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1871~1955년)(필명은

N. N.)—제307, 308, 335, 362, 506, 798페이지

프루동, 피에르 조제프(蒲鲁东, 比埃尔·约瑟夫 Proudhon, Pierre-Joseph 1809~1865년)—제13, 204, 239~241, 333, 821, 898페이지

플레하노프, 게오르그 알렌저노위치(普列汉诺夫, 格奥尔基·瓦连廷诺维奇 Плеханов, Георгий Валентинович 1856~1918년)(필명은 펠트브, 엔. 别尔托夫, 恩·Бельтов, Н.; 월킨, 아. 沃尔金, 阿·Волгин, А.; 카멘스키, 엔. 卡缅斯基, 恩·Каменский, Н.)—제62, 78~79, 94, 125, 195, 201, 203, 210, 247, 268, 298, 340, 347, 364~368, 385, 412, 416, 456~495, 600, 602, 614, 626, 631, 636, 662, 664, 667~668, 794, 802, 822, 838, 870, 895, 900, 903, 923, 928~930, 938~939, 970 ~971, 984, 991~992, 995페이지

피그네르, 웨라 니콜라예브나(斐格涅尔, 维拉·尼古拉也夫娜 Фигнер, Вера Николаевна 1852~1942년)—제457페이지

피레크, 루이스(菲勒克, 路易 Viereck, Louis 1851~1921년)—제910, 919페이지

필라레트(菲拉列特 Филарет 1782~1867년)(본명은 드로즈도프, 와셀리 미하일로위치 德罗兹多夫, 瓦西里·米哈伊洛维奇 Дроздов, Васи-

лий Михайлович) —제586페이지
페플로브, 프리츠(彼普洛夫, 弗里茨
Päprow, Fritz) —제968페이지

ㅎ

하커트, 윌리엄(哈尔科特, 威廉 Har-
court, William 1827~1904년) —
제807페이지

하셀만, 윌헬름(哈赛尔曼, 威廉 Has-
selmann, Wilhelm 1844년에 출-
생) —제345, 434페이지

하우프트만, 게르하르트(豪普特曼, 格-
尔哈特 Hauptmann, Gerhart 1862
~1946년) —제254페이지

하이네, 하인리히(海涅, 亨利希 Hei-
ne, Heinrich 1797~1856년) —제
211페이지

하이네, 윌프강(海涅, 沃尔弗干格
Heine, Wolfgang 1861~1944년)
—제652~654, 659페이지

하인드만, 헨리 메이어스(海德门, 亨-
利·迈尔斯 Hyndman, Henry Ma-
yers 1842~1921년) —제913페이지

한제만, 다비드 유스투스(汉泽曼, 大-
卫·尤斯图斯 Hansemann, David
Justus 1790~1864년) —제815~816
페이지

할루린, 스펜 니콜라예위치(哈尔土-
林, 斯切潘·尼古拉也维奇 Халту-
рин, Степан Николаевич 1857~
1882년) —제415, 609페이지

합스부르크왕조(哈布斯堡王朝 Habs-
burger) —제893페이지

호엔졸레른왕조(霍亨索伦王朝 Ho-
henzollern) —제893페이지

히르쉬, 막스(希尔施, 麦克斯 Hirsch,
Max 1832~1905년) —제330페이지

히르쉬, 칼(希尔施, 卡尔 Hirsch,
Karl 1841~1900년) —제909페이지

힐크위트, 모리스(希尔奎特, 莫利斯
Hillquit, Morris 1869~1933년) —
제902페이지

헤겔, 게오르크 윌헬름 프리드리히
(黑格尔, 乔治·威廉·弗里德里希
Hegel, Georg Wilhelm Friedrich
1770~1831년) —제8, 39~40, 43,
45, 49, 120, 317, 669페이지

헤르크너, 하인리히(赫克纳, 亨利-
希 Herkner, Heinrich 1863~1932
년) —제243페이지

헤르츠, 프리드리히 오토(海尔茨, 弗-
里德里希·奥托 Hertz, Friedrich
Otto 1878년에 출생) —제312페이지

히히베르그, 칼(赫希伯格, 卡尔 Hö-
chberg, Karl 1853~1885년) —제
345, 907~911페이지

П

파.(克·) —클라쾨른 보라.

카르스키(卡尔斯基 Карский 1871~
1942년)(본명은 포부리제, 디오미드

알렉산드로위치 托普里捷, 迪奥米-
德·亚历山大罗维奇 Топуридзе,
Диомид Александрович) —제
627페이지

카테예프, 니콜라이 이와노위치(卡列

也夫, 尼古拉·伊万诺维奇 Кареев, Николай Иванович 1850~1931년) — 제14, 347페이지

카리셰프, 니콜라이 알렉산드로위치 (卡雷舍夫, 尼古拉·亚历山大罗维奇 Карышев, Никола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1855~1905년) — 제178페이지

카멘스키, 엔。(卡彌斯基, 恩。) — 플레하노프를 보라.

카미산스키, 페.카(卡梅珊斯基, 普·克·Камышанский, П. К.) — 제951페이지

카블루코프, 니콜라이 알렉세예위치 (卡布鲁柯夫, 尼古拉·阿列克谢也维奇 Каблуков, Николай Алексеевич 1849~1919년) — 제816페이지

카트코프, 미하일 니키포로위치(卡特柯夫, 米哈伊尔·尼基佛罗维奇 Катков, Михаил Никифорович 1818~1887년) — 제394페이지

카우프만, 알렉산드르 아르카지예위치(考夫曼, 亚历山大·阿尔卡季也维奇 Кауфман, Александр Аркадьевич 1864~1919년) — 제1002페이지

코스찌치(科斯提奇 Костич 1879~1935년)(본명은 즈보롭스키, 미하일 솔로모노위치 兹博罗夫斯基, 米哈伊尔·索洛莫诺维奇 Зборовский, Михаил Соломонович) — 제616페이지

콜조프, 데。(柯里佐夫, 德·Кольцов, Д. 1863~1920년)(본명은 긴즈부르크, 보리스 아브라모위치 金兹布尔格, 波利斯·阿布拉莫维奇 Гинзбург, Борис Абрамович. 필명은 엘.에스.耳·谢·Л. С.; 세도프, 엘.谢多夫, 耳·Седов, Л.) — 제822페이지

쿠스코와, 예카제리나 드미트리예브나(库斯柯娃, 叶卡特林娜·德米特利也夫娜 Кускова, Екатерина Дмитриевна 1869~1958년) — 제308페이지

키제웨제르,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위치(基捷韦帖尔, 亚历山大·亚历山大罗维奇 Кизеветтер, Александ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1866~1933년) — 제951페이지

II

트로즈끼, 레프 다위도위치(托洛茨基, 列甫·达威多维奇 Троцкий, Лев Давидович 1879~1940년) — 제624, 667, 678, 735페이지

투간-바라놉스키, 미하일 이와노위치(杜冈-巴拉诺夫斯基, 米哈伊尔·伊万诺维奇 Туган-Барановский, Михаил Иванович 1865~1919년) — 제185, 223, 230, 233, 238, 979페이지

티에르, 아돌프(梯也尔, 阿道夫 Thiers, Adolphe 1797~1877년) — 제807페이지

出

파르부스(帕尔乌斯 Парвус 1869~1924년)(본명은 겔판드, 알렉산드로 라자메위치 格尔方德, 亚历山大·拉札列维奇 Гельфанд, Александр Лазаревич)—제937, 942, 984, 989페이지

파블로위치(巴甫洛维奇 Павлович 1870~1939년)(본명은 크라씨코프, 요르트 아나니예위치 克拉西柯夫, 彼得·阿纳尼也维奇 Красиков, Петр Ананьевич)—제623~625페이지

포스토른니(波斯托龙尼)—미하일롭스끼를 보라.

포트레쑬프, 알렉산드르 니콜라예위치(波特列索夫, 亚历山大·尼古拉也维奇 Потресов, Алек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1869~1934년)(필명은 스타로베르 斯塔罗维尔 Старовер)—제303, 727, 736, 764, 794, 804, 951페이지

포로프(波波夫 Попов 1876~1939년)(본명은 로자노프, 올라지미르 니콜라예위치 罗扎诺夫, 弗拉基米尔·尼古拉也维奇 Розанов, Владимир Николаевич)—제608, 616, 617, 664, 668페이지

포샤돕스끼(波萨多夫斯基 Посадовский 1870년에 출생)(본명은 단겔베르그, 빅토르 열세예위치 曼迭尔别尔格, 维克多·叶夫谢也维奇

Мандельберг, Виктор Евсеевич) —제608, 632페이지

피샤레프, 드미트리 이와노위치(皮萨列夫, 德米特利·伊万诺维奇 Писарев, Дмитрий Иванович 1840~1868년) —제495페이지

페름스카야, 소피야 리워브나(彼洛夫斯卡娅, 索菲娅·李沃夫娜 Перовская, Софья Львовна 1853~1881년) —제457페이지

페트룬케위치, 이완 일리이치(彼特龙克维奇, 伊万·伊里奇 Петрункевич, Иван Ильич 1844~1928년) —제725, 797, 816페이지

从

작조노프, 게오르기 페드로위치(萨宗诺夫, 格奥尔基·彼德罗维奇 Сазонов, Георгий Петрович 1857년에 출생) —제184페이지

작윈코프, 보리스 빅토로위치(萨文柯夫, 波利斯·维克多罗维奇 Савинов, Борис Викторович 1879~1925년)(필명은 베-브 勃一夫, Б-в, 로프신 罗普申 Ропшин) —제410~411, 413, 441~444, 447, 463페이지

샬프코프-셰드린, 미하일 예브그라포위치(萨尔梯柯夫-谢德林, 米哈伊尔·叶夫格拉弗维奇 Салтыков-Щедрин, Михаил Евграфович 1826~1889년) —제447페이지

셔스몽디, 강-샤를-레오나르 셔몽 드

(西斯蒙弟, 让·沙尔·列奥纳尔·西蒙·德 Sismondi, Jean-Charles-Léonard Simonde de 1773~1842년) —제230페이지

셰드린(谢德林) —샬 피코프-셰드린을 보라.

셰페브라코프, 예스페트 알렉산드로위치(谢烈布利维柯夫, 耶斯彼尔·亚历山大罗维奇 Серебряков, Еспер Александрович 1854~1921년) —제457페이지

셰이, 장 바티스트(萨伊, 让·巴蒂斯特定 Say, Jean-Baptiste 1767~1832년) —제230페이지

셰-쾨핑, 앙리(圣西门, 昂利 Saint-Simon, Henri 1760~1825년) —제318페이지

ㄸ

차로브(蔡辽夫 Царев 1880~1937년)
(본명은 로케르만, 알렉산드르 차모일로위치 洛克尔曼, 亚历山大·萨莫依洛维奇 Локерман, Александр Самойлович) —제627페이지
쾨찌, 루이제(齐茨, 路易莎 Zietz, Luise 1865~1922년) —제974페이지.

체제르바움(策杰尔包姆) —마르도브를 보라.

체트킨, 클라라(蔡特金, 克拉拉 Zetkin, Clara 1857~1933년) —제967, 970, 971, 973, 974, 976페이지

○

아다모위치(阿达莫维奇 Адамович

1871~1923년) (본명은 위름스끼, 와폴라프 와폴라위위치 沃罗夫斯基, 瓦茨拉夫·瓦茨拉沃维奇 Воросский, Вацлав Вацлавович) —제499~500페이지

아블레르, 빅토르(阿德勒, 维克多 Abler, Victor 1852~1918년) —제125, 973~974페이지

아르님-슈코프, 하인리히 알렉산데르(阿尔宁-苏科夫, 亨利希·亚历山大 Arnim-Suckow, Heinrich Alexander 1798~1861년) —제815페이지

아브라모프, 야코프 와셀리예위치(阿布拉莫夫, 雅科夫·瓦西里也维奇 Абрамов, Яков Васильевич 1858~1906년) —제184, 199, 200페이지

아끼모프(阿基莫夫 Акимов 1872~1921년) (본명은 마흐노웨츠, 올라치미르 페트로위치 马赫诺韦茨, 弗拉基米尔·彼得罗维奇 Махновец, Владимир Петрович) —제606, 607, 608, 614, 615, 621, 625~626, 628, 632, 634, 641, 649, 659, 664, 672, 735, 796페이지

아우에르, 이그나츠(奥艾尔, 伊格纳茨 Auer, Ignaz 1846~1907년) —제448, 912페이지

악셀로드, 파벨 보리소위치(阿克塞里罗德, 巴维尔·波利索维奇 Аксельрод, Павел Борисович 1850~1928년) —제263, 815, 339~340,

365, 378, 397, 599~606, 608~611, 615~617, 620~622, 628~637, 642, 644, 648, 649, 652~653, 657, 660~663, 667, 929, 939, 982, 994페이지

알렉산드로브(亚历山大罗夫 Алек-
сандров) - 제637, 639, 646페이지

알렉산드르3세(亚历山大三世 Алек-
сандр III 1845~1894년) - 제139,
514페이지

알렉세예프, 로프르 알렉세예비치(阿
列克谢也夫, 彼得·阿列克谢也维奇
Алексеев, Петр Алексеевич
1849~1891년) - 제297, 415, 609페
지

오블렌스키, 이완 미하일로비치(奥波
连斯基, 伊万·米哈伊洛维奇 Обо-
ленский, Иван Михайлович
1845~1910년) - 제587페이지

오제로브, 이완 흐리스토포로비치(奥
捷罗夫, 伊万·赫里斯托佛罗维奇
Озеров, Иван Христофорович
1869~1942년) - 제425~427페이지

오웬, 로버트(欧文, 罗伯特 Owen,
Robert 1771~1858년) - 제318페
지

유조브(尤佐夫 Юзов 1848~1893년)
(본명은 카블리쯔, 이오찌프 이와
노비치 卡勃利茨, 约瑟夫·伊万诺
维奇 Каблиц, Иосиф Иванович)
- 제184, 200, 202페이지

유자코브, 세르게이 니콜라예비치
(尤沙柯夫, 谢尔盖·尼古拉也维奇

Южаков Сергей Николаевич
1849~1910년) - 제1, 68, 98, 178,
183, 191, 201페이지

이와노브, 웨.(伊万诺夫, 维·) - 자
출리치를 보라.

이완쎄, 올라지미르 파블로비치(伊万
申, 弗拉基米尔·巴甫洛维奇 Иван-
шин, Владимир Павлович 1869
~1904년)(필명은 웨.인-쎄 弗·伊
一申 В. И-н) - 제328, 338, 341,
506페이지

일로와이스키, 드미트리 이와노비치
(伊洛瓦斯基, 德米特利·伊万诺维
奇 Иловайский, Дмитрий Ива-
нович 1832~1920년) - 제300페이
제에드.(拉·) - 라드첸코를 보라.

에르.엠.(尔·姆 P. M.) - 제344,
362, 369, 418, 506, 507페이지

에르베, 구스타브(爱尔威, 古斯塔夫
Hervé, Gustave 1871~1944년) -
제975~976페이지

엔겔가르트, 알렉산드르 니콜라예비
치(恩格尔加尔特, 亚历山大·尼古
拉也维奇 Энгельгардт, Алек-
сандр Николаевич 1832~1893
년) - 제174~182, 190, 191페이지

엔. - 온(尼· - 逊) - 다니엘손을 보
라. N. N. - 프로코피로비치를 보라.

엘름, 아돌프 폰(艾耳姆, 阿道夫·冯
Elm, Adolf von 1857~1916년) -
제659페이지

앵겔스, 프리드리히(恩格斯, 弗里德
里希 Engels, Friedrich 1820~

- 1895년) —제18~24, 31, 36, 40~43, 40~53, 59, 60, 62, 63, 117, 128, 243, 260, 267, 268, 295, 300, 313~319, 342, 352, 384, 594, 752, 759, 760, 768, 801, 819~822, 874, 892, 902~924, 933, 949, 967, 1006페이지
- 에고로브(叶哥罗夫 Егоров 1873년에 출생)(본명은 레인, 예프렘 야코블레위치 列文, 叶弗列姆·雅柯夫列维奇 Левин, Ефрем Яковлевич) —제601, 627, 632페이지
- 에르몰로브, 알렉세이 세르게예위치(叶尔莫洛夫, 阿列克塞·谢尔盖也维奇 Ермолов, Алексей Сергеевич 1846~1917년) —제94, 556페이지
- 에크, 구스타브(耶克, 古斯塔夫 Jaekkh, Gustav 1866~1907년) —제902페이지
- 위슈네워츠키부인(威士涅威茨基夫人) —켈리-위슈네워츠키부인을 보라.
- 위테, 세르게이 울리예위치(维特, 谢尔盖·尤利也维奇 Витте, Сергей Юльевич 1849~1915년) —제284, 400페이지
- 윌헬름2세(威廉二世 Wilhelm II 1859~1941년) —제405페이지
- 와그네르, 아돌프(瓦格纳, 阿道夫 Wagner, Adolph 1835~1917년) —제243페이지
- 와네예브, 아나톨리 알렉산드로위치(瓦涅也夫, 安那托里·亚历山大罗维奇 Ванев, Анатолий Александрович 1872~1899년) —제324, 326페이지
- 와를랭, 루이 외제(瓦尔兰, 路易·欧仁 Varlin, Louis-Eugène 1839~1871년) —제785페이지
- 와셀리예브(瓦西里也夫 Васильев 1873~1936년)(본명은 렌그니크, 프리드리히 윌헬모위치 林格尼克, 弗里德里希·威廉奥维奇 Ленгник, Фридрих Вильгельмович) —제667페이지
- 와셀리예브, 니키타 와셀리예위치(瓦西里也夫, 尼基塔·瓦西里也维奇 Васильев, Никита Васильевич 1855년에 출생) —제425페이지
- 와이트링, 윌헬름(魏特林, 威廉 Weitling, Wilhelm 1808~1871년) —제333페이지
- 왈라이히, 칼 울리우스(瓦耳泰希, 卡尔·尤利乌斯 Vahlteich, Karl Julius 1839~1915년) —제300페이지
- 워론조브, 와셀리 바블로위치(沃龙佐夫, 瓦西里·巴甫洛维奇 Воронцов, Василий Павлович 1847~1918년)(필명은 웨.웨. 瓦·沃 В. В.) —제34, 93, 175, 179, 183~184, 189, 192, 201~203, 208, 216~225, 240, 246, 329~331, 339, 342, 346, 842페이지
- 워름스, 알폰스 에르네스트위치(沃尔姆斯, 阿尔丰斯·艾尔涅斯托维奇 Вормс, Альфонс Эрнестович

1868~1937년) — 제425페이지
 월킨, 아. (沃尔金, 阿·) — 플레하노
 브를 보라.
 월린스키 (沃伦斯基 Волынский 1863
 ~1926년) (본명은 플렉세르, 아킴
 티워위치 弗列克谢尔, 阿基姆·李
 沃维奇 Флексер, Аким Льво-
 вич) — 제199, 200페이지
 월트만, 루드위히 (伏尔特曼, 路德维
 希 Woltmann, Ludwig 1871~1907

년) — 제342페이지
 웨.이-선 (弗·伊一申) — 이완선을 보
 라.
 웨.워 (瓦·沃) — 워튼조코를 보라.
 웨브, 시드니 제임스 (维伯, 悉尼·詹
 姆斯 Webb, Sidney James 1859
 ~1947년) — 제360, 458, 950페이지
 웹브, 비아트리스 (维伯, 比阿特里萨
 Webb, Beatrice 1858~1943년) —
 제360, 458, 950페이지

本书根据中共中央马克思、恩格斯、列宁、斯大林著作编译局翻译的，人民出版社1976年5月出版的汉文版本翻译出版。

이 책은 중공중앙 맑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저작편역국에서 번역한, 인민출판사에서 1976년 5월에 출판한 한문판에 의하여 번역출판한다.

列 宁 选 集

(第一卷)

(朝鲜文)

中央马列著作毛泽东著作
民族语文翻译局翻译

民族出版社出版 新华书店发行
民族印刷厂印刷

开本，850×1168毫米1/32 印张，35 1/8

1979年11月第1版

1979年11月北京第1次印刷

印数，1—1,000册 定价：(上下册) 1.95元

书号：M 1049(6)292

